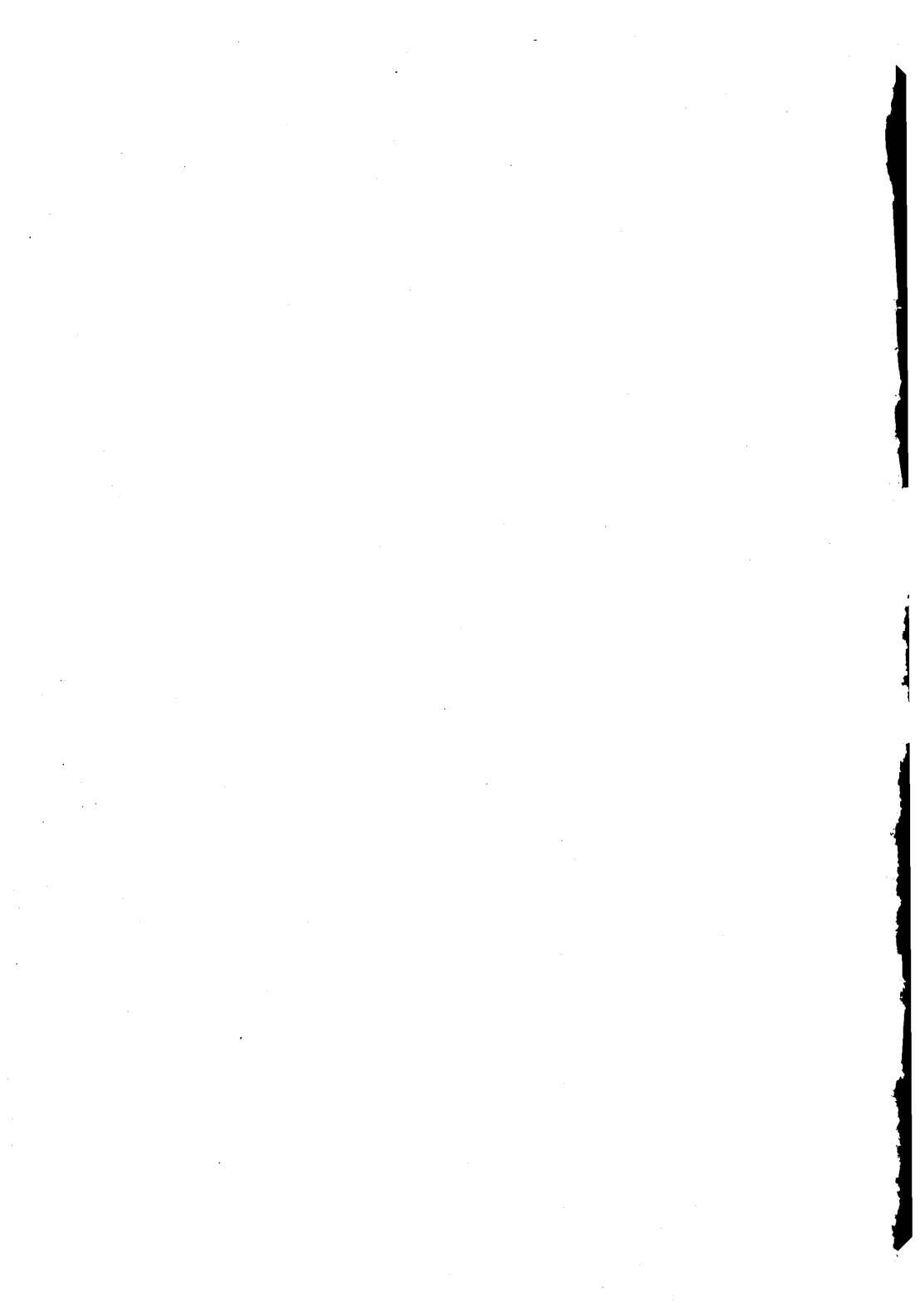


正統性理論

# 民族史的正統性研究論叢

國土統一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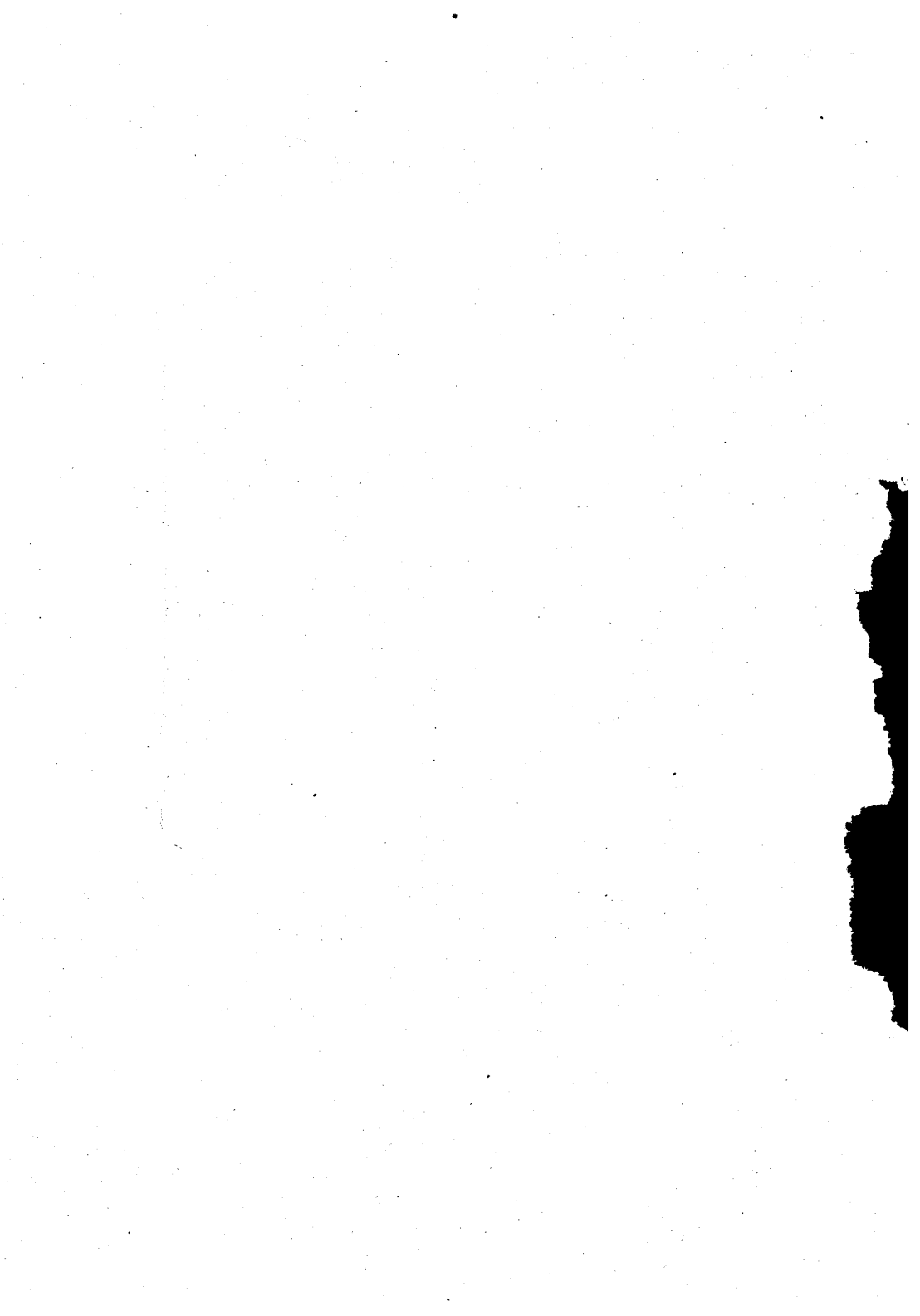


이 論叢은 民族史的 正統性研究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관련된 研究論文들을 골라 수록한 것입니다.

1976年 12月 日

刊行責任: 調査研究室補佐官 李 啓 熙

国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머 리 말

우리는 지금 지난날의 歷史가 범해온 수많은 시행착오와 모순의 遺題속에 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의 現實을 새로운 歷史創造의 信念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막중한 實務를 통감하는 世代이다.

가까운 過去만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으로 36년간이나 民族의 自由로운 生存權을 여지없이 유린당하는 민족사상 가장 치욕적인 異民族의 壓制를 경험하였다. 다행히도 民族을 守護하려는 先列들의 투철한 獨立自主精神과 끈질긴 鬪爭으로 解放을 맞았으나 또 다시 우리에게서 國土의 分斷이라는 現實政治의 와중속에서 당연히 하나이어야 할 民族의 分裂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分斷 30년이 우리 民族에게 끼친 상처와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에도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民族的 價値에 대한 저주와 질시, 모함과 自害가 자행돼왔다는 사실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異端의인 政權을 合法化하기 위하여 民族史의 改作과 날조를 서슴치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反民族의 罪過는 個人偶像化의 狂態에 빠져 民族史를 그릇되게 評價하고 민족진로를 誤導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民族史의 正統性에 대한 중대한 挑戰이며 준엄한 批判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祖國의 統一이라는 장래의 課題는 새로운 民族史의 創造라는 至高한 使命과 연결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平和統一이라는 원대한 目標을 위하여 모든 民族의 비상한 知慧와 力量을 모으고 있다. 차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所重한 民族的 價値. 또는 民族史에 대한 正當한 認識을 論究한다는 것은 統一民族史의 完成을 위한 믿음직한 出發이며, 가장 確實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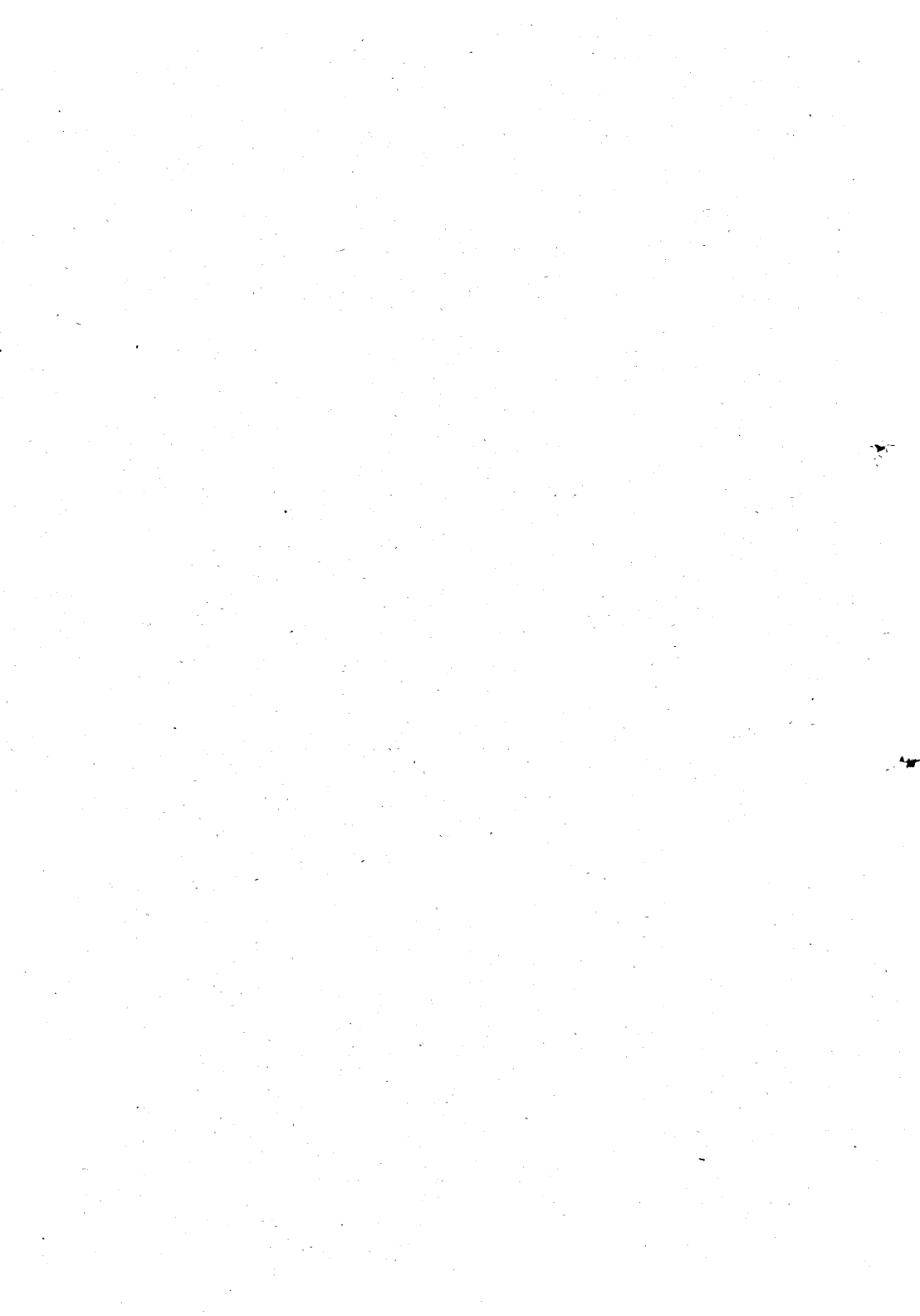
여기에 관련된 몇편의 個別的인 研究를 한데 묶어 論叢을 꾸미는 취지는 統一民族史를 위한 創造의 理念定立이라는 일용 거창한 과제를 해결하는 디딤돌로 삼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수록된 論文들은 個別研究者들의 所見이며 當院의 公式的인 見解와는 無關한 것임을 밝혀둔다.

앞으로 사제의 積極적인 參與와 精進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깊은 論議가 促進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目 次

民族史的 正統性理論体系化試論	李 秉 龍	3
民族史的 正統性研究方法論	崔 昌 圭	23
韓國의 平和統一과 正統性概念	李 聖 根	49
韓國史에 있어서 正統性的 概念	李 鉉 淙	63
民族史的으로 본 大韓民國의 正統性	李 丙 燾	77
政治史的 側面에서 본 正統性	崔 聖 俊	87
經濟史的側面에서 본 正統性	崔 載 勳	117
文化史的側面에서 본 正統性	任 東 權	159
民族主義政治와 正統性 : 3·1 運動과 臨政을 中心으로	洪 淳 鈺	177
統一理念으로서의 韓國의 民族主義에 관한 理論定立	閔 丙 天	193
主體的 民族史觀의 定立問題	林 承 國	265
主體的 史觀定立을 위한 試論	金 宗 勉	289
3·1 運動에 대한 評價와 民族史的 主体性	李 喆 周	307
分断國家主權의 合法性에 관한 論考	金 俊 熙	325
大韓民國의 法統性論究 : 法的地位를 中心으로	韓 亨 健	337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관한 法的 根拠	金 東 熙	365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에 관한 法的 究明 : 韓·日基本條約을 中心으로	朴 東 熙	395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에 관한 法的 究明 : UN의 承認과 그 效果를 中心으로	裴 載 湜	411
韓國外交와 正統性概念	李 昊 宰	417
東西獨關係와 民族史的 正統性	李 源 明	431
韓國과 獨逸의 正統性問題比較研究	金 正 煥	459
分断國에서 正統性問題가 抬頭되는 要因	李 承 憲	469



# 民族史의 正統性 理論體系化 試論

李 秉 龍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長

## 目 次

- I. 序 論
- II. 正統性 概念의 普遍的 實態
- III. 國家의 法統性
- IV. 民族遺産의 繼承과 社會實態 比較
- V. 國民厚生 및 經濟體制의 南北韓 比較
- VI. 民族史의 正統性과 平和統一의 主導力量

## I. 序 論

오늘날 分斷國에 있어서 「正統性」의 問題는 傳統的 意味에서의 現實政權의 合法性 與否의 次元을 넘어서 未來指向의 民族統一을 위한 「民族史의 正統性」의 次元에서 現存하는 韓民族內의 두정권의 合法性 問題뿐만 아니라 그 政權의 韓民族史에 對한 認識과 계승문제 그리고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위한 未來史의 主体問題가 同時에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sup>1)</sup>

더우기 우리 民族史의 正統性에 關한 理論을 定立하고 體系化하여야 할 必要性은 '70年代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問題意識으로 登場하기 始作하였는데 이같은 現實의인 必要性이 加重되기 始作한 것은 根本的으로 國際情勢의 構造的인 變化에 起因하고 있는 것이다.

1) 梁榮植, 「韓國의 民族史의 正統性」, 自由公論, 1975年 4月号

即, 1970年代에 들어와서 北傀의 政治攻勢는 지난 '60年代의 挑戰과는 그 性格上 커다란 差異가 있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的 狀況의 變化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로는 韓半島内部에 있어서의 狀況의 變化를 들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社會에 6.25를 體驗하지 못한 世代가 이미 30歲 以前의 世代를 배우고 있으며 따라서 北傀의 反民族的인 性格을 피부로 認識하지 못하는 層이 漸次 增加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15年 동안에 걸친 急激한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에 따른 生活風潮와 價值觀의 變化로 因하여 國民一部分의 安保意識이 抽象化되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둘째로, 國際的 狀況의 變化를 보면 70年代에 와서 表面化되기 始作한 東西兩陣營間의 緊張緩和( Détente ) 趨勢로서 야기되는 충격과 中共의 國際社會 進出이 가져오고 있는 충격에 이어서 第3勢力圈이 새로운 政治的 壓力勢力으로 抬頭함에 따라 北傀의 國際的 地位가 相對的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自由世界의 一角에서 北傀에 對한 批判的 視角이 鈍化되어 가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부터 國內外的인 狀況의 變化는 相對的으로 大韓民國의 民族史的인 正統性에 對한 北傀의 挑戰이 看過할 수 없는 問題로 登場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의 正統性이 單純한 直觀力에 依하여 自他가 公認하는 漠然한 타당성에만 仗어 있을 수 없다는 새로운 問題意識을 머우기 始作하였으며 우리는 北傀의 이같은 政治的 攻勢로 因한 挑戰을 克服하고 우리의 主導下에 國論을 統一하고 民族의 至上目標인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民族史的인 正統性을 確認할 수 있는 體系의인 理論의 定立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 理論의 體系化를 試圖하기 위한 것으로서 第二章에서 古代社會로부터 近代市民社會에 이르기 까지 正統性概念의 普遍的인 實態를 檢討하였고 第三章에서는 主로 民族史的으로 正統性을 立証할 수 있는 國家의 正統性을 分斷國으로서의 特殊한 狀況과 關聯하여 檢討하였으

며, 第IV章과 V章은 分繼 30年間に 걸쳐 異質化된 南北韓의 社会体制와 經濟 現況을 比較 分析함으로써 民族固有의 傳統遺産의 繼承現況과 國民厚生の 格차를 比較의 對象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우리 國의 平和統一 主導努力과 統一民族史의 創造努力에 關한 檢討를 對象으로 設定하였다.

## II. 正統性 概念의 普遍的 實態

### 1. 正統性 概念의 歷史의 事例

一般적으로 歐美의 政治學者들이 오늘날 「政治的 正統性」이라 할 때에는 「Legitimacy」란 用語를 用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Legitimacy」를 創出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Legitimation」이란 用語를 使用하여 正統性 그 自体와는 區別하고 있다. 따라서 正統性이란 實體는 결코 固定概念일 수 없으며 時間의 흐름에 따라 正統性 概念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歷史적으로 볼때 正統性의 語源은 「라틴」語의 「Legitimus」에서 온 말로서 주로 「合法的」이라는 法律的 意味로 使用되었으며 「로-마」 帝政期부터 「法에 依한 權力」의 意味로서 使用되기 始作하였다.

近代市民社会에 이르러서는 立憲君主의 權力의 合法性으로 해석되기 始作하였고 現代社会에 있어서는 대체로 大衆의 支持와 選舉를 基礎로 하는 政權의 合法性의 뜻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와같이 一般적으로 「正統性」이라는 用語는 政治的 意味에서 많이 普及되고 있는데 即, 「現存하는 제반 政治機構가 社会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正当한 것이라는 信念을 生成維持시킬 수 있는 政治体制의 能力」<sup>2)</sup>으로 表現하고 있으며 政治權力의 側面에서는 被治者의 同意를 얻어 행사하는 政府의 統治力으로 規定되

2) Lipset, Seymour M: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Garden City, Double Day & Co., Inc., 1963, p. 64.

고 있으나 時代的 背景과 狀況에 따라 相異하고 特殊한 內容을 涵攝함으로써 正統性의 精確한 定義를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다.

例컨대 中世 敎父哲學에서, 「St. Augustine」은 어떠한 集團이나 共同社會도 神의 都市를 떠날때 正統性을 상실한다고 主張함으로써 保守的 敎權主義의 性格을 띠우고 있으며, 17世紀 英國의 「록크」(John Locke)는 「政府論」에서 共同善에 기여하는 人間의 合意를 重要視함으로서 主權의 神聖不可侵論을 통렬히 批判하였다. 따라서 「록크」는 正統性問題에 있어서 市民의 合意와 同意를 基礎로 한 立憲君主制에 関心を 기울이면서 名譽革命에 기여 했고 그의 理論은 오늘날 民主的 正統性 理論의 골격을 形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近代에 이르러서 「웨버」(Max Weber)는 正統性은 「신뢰에 基礎를 둠으로써 服從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規定」<sup>3)</sup> 하면서 그의 統治社會學을 展開하였고 合理性과 合法性의 類型에 따라서 正統性의 類型을 傳統的인 것, 「카리스마」의 인 것과 合理的인 것으로 分類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考察한 것은 一般論의인 政治的 正統性의 概念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正統性의 問題는 古代「로마」時代부터 中世敎權社會를 거쳐 近代市民社會에 이르기까지 恒常 治者와 被治者間에 合意와 合法性 그리고 合理性을 土胎로 한 「政治的 權威의 能力」으로서 거론되었으며 연대의식과 非暴力的 「리더쉽」에 依한 信賴의 源泉임을 볼 수 있는데 「멘켄」(A.L. Mencken)은 「國家란 결코 힘에 依한 強制만으로 存統되는 것은 아니며 國家란 人間의 服從性(Docility)에 못지 않게 人間의 信賴性(Credibility)에 依存하고 있다」<sup>4)</sup>고 主張함으로써 國家의 目的이란 國民들로 하여금 服從을 強要하는 것이 아니고 國民들로 하여금 服從을 유도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p.328

4) H.L. Mencken, Minority Report, New York, Alfred A. Knoff, 1956. pp.217 ~218.



## 2. 韓國의 民族史의 正統性의 理論定立 方向

以上에서 正統性 概念의 普遍的 實態를 歷史的인 側面에서 檢討하였거니와 「正統性」(Legitimacy)은 主体가 같은 正當한 法統을 말하는 것으로서 民族이 主体가 되어야 하는 民族史에서는 그 民族의 正統性이 무엇보다도 重要하게 된다. 이와같이 民族史의 正統性은 民族이란 主体(Nationalism)가 갖는 「主体性」과 國家라는 主体(Statism)가 갖는 正統性 위에서 成立되는 것으로서<sup>5)</sup> 民族史의 正統性을 위하여서는 먼저 民族의 主体性을 確立해야 하며 그 위에 國家的 次元의 正統性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民族史의 正統性을 理論的으로 定立하는데 있어서 要求되고 있는 점은 다음 2가지 側面이라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歷史的, 動態的(Dynamic)接近에 依한 民族史 속에서 우리의 正統性을 連結시키는 作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平面的 또는 靜態的(Static)接近이라 할 수 있는 우리 社會의 相對的인 優秀性의 立證이야 말로 우리 民族史의 要請에 符合되는 것임을 立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民族史의 正統性의 理論的 體系化는 韓民族의 5千年 民族史와 文化的 傳統이라는 經驗的 土拾위에서 認識되어야 하고 一貫性과 永統性을 가진 韓民族 特有의 歷史的 價值型으로 設定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民族史의 正統性은 民族文化論의 概念인 「民族의 主体性」과 國家論의 概念인 「國家的 正統性」을 根本土台로 하여 形成發展된 民族의 總和性을 本質的 特性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三構成 要素의 構造的 體系化가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

5) 崔昌圭著, 새韓民族史, 金鳥出版社 1974. 7pp.144~145

### Ⅲ. 國家의 法統性

8.15 解放과 同時에 他意에 依한 國土의 分斷으로 相衝된 二個의 政治體制가 南·北韓에 構築되고 相異한 理念을 追求하는 期間이 30 餘年에 이르는 동안에 社會, 文化的 異質化는 勿論 오늘날 民族의 同質性마저 크게 毀損되고 있는 狀況下에서 國家의 法統性에 關한 올바른 규명은 大韓民國 主導下의 平和統一 成就의 當爲性을 立証하는 同時에 現在 北傀의 民族意識 抹殺政策으로 흐려진 北韓同胞들의 民族的 自我恢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最近 北傀는 國際社會에서 8·15 解放後의 新生國家인양 自處하고 合法性을 主張함으로써 지난 日帝治下의 36 年間을 民族史의 斷絶로 公式化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連綿히 이어져 내려온 발자취를 지워버리려고 劃策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問題의 解決은 韓民族 固有의 歷史의 基盤을 保存強化하는데 있어서 도 커다란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1. 大韓帝國의 法統繼承

國家의 法統性은 政治史的인 側面과 더불어 國際的인 認定과 過去, 現在, 未來를 連結하는 現實的인 國家施策等에서 明白히 論証되어야 한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法統性은 韓國이 어떠한 経緯와 어떤 臨時的인 政治機構에 依하여 계승되었는가를 論証하기에 앞서 大韓帝國의 權利와 能力의 存続與否가 論証되어야 한다.

따라서 旧韓未의 大韓帝國과 日本과의 사이에 맺어진 條約과 約定의 効力이 分析되어야 하고 이같은 事實에 對한 國際法上的 評價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乙巳條約과 韓·日合併에 수반되는 法的인 節次가 國際法上으로 大韓帝國의 權利와 能力의 終絶을 뜻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法統이 어떠한 政治機構에 계승되어 8.15 解放까지 持續되었는가가 問題로 되고 있으며 上海 臨時政府에 對한 評價와 北傀가 主張하고 있는 소위 「抗日武裝鬭爭時期」의 政

治力 行使 云云이 分析되어져야 하며 獨立運動의 主体와 獨立精神의 계승에 關한 問題가 해명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韓·日合併以後 8·15 解放까지 그리고 8·15 解放以後 南·北韓에 相反된 兩 政權이 樹立되어 어느쪽이 大韓帝國의 法統을 이어 받았는가를 史實에 依하여 考證하고 政權의 法的 地位가 國際法上으로 保障되고 있는가를 究明하지 않으면 안되고 아울러 過去로부터 現在에 이르는 法統의 所在와 繼承을 밝히는 데만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民族史의 永統化를 위해 法統의 未來指向性도 아울러 밝혀야 하는데 韓國과 北傀의 어느쪽이 겨레의 여망과 民族史의 要求에 符合되는 施策을 追求해 왔고 또 現在 追求하고 있는가를 同時에 比較的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國家의 法統性에 關한 우리의 主張은 다음 두가지 問題로 集約되고 있다.

첫째로 韓國은 大韓帝國의 法統을 계승하였으며 民族自衛抗爭을 評價하여 볼 때 獨立運動의 主体로서 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하여 왔는데 比하여 北傀는 소위 抗日 鬪爭에서 形成된 金日成의 主体의 革命傳統思想을 내세우고 있다. 教條的 共產主義體制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北傀가 革命을 「正統性」의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 國際主義的인 革命「이메올로기」인 「맑스·레닌」主義에 그 體制의 正統性을 依存하는 것은 當然하다 할수 있으나 階級史觀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가 民族主義와 調和될 수 없다는 一般論的 觀點에서도 그 矛盾이 浮刻될 수 밖에 없는 것은 勿論이다.

北傀가 내세우는 民族史의 正統性은 抗日鬪爭에서 수행한 金日成의 役割을 支配的인 것으로 誇張하는데서 그 基礎를 찾고 있으나 丙寅洋擾와 東學革命의 「反帝, 反封建鬪爭」의 傳統을 金日成의 生家가 이어받고 있으며 抗日革命鬪爭에서 金日成이 主役을 行한 것으로 主張함으로써 抗日獨立鬪爭史를 歪曲하는 데서 北傀는 政權의 正統性을 찾고 있다.

金日成大學 講義錄에 보면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기 이전에는 革命傳統이 있을 수 없었다」라든가 「조선革命의 전반기 모두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한 혁명의 전통을 기조로 해서 솟아났고 발전해 온 것이다」<sup>6)</sup> 등의 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革命傳統이란 것은 純粹한 民族主義的 抗日鬪爭이 아니라 「맑스·레닌」主義의 異邦의 傳統의 強化라는 目的에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金日成이 創始한 革命傳統에 關한 思想은 맑스 레닌主義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 했다」<sup>7)</sup>고 말한 것은 바로 이같은 事實을 立證하는 것이다.

## 2. 大韓民國 政府樹立의 經緯와 國際的 承認

分斷國問題는 基本的으로 第2次 世界大戰 以後의 美·蘇를 頂点으로 하여 形成된 冷戰體制의 産物이다. 8.15解放과 더불어 韓半島에는 美·蘇兩軍이 進駐하여 왔으며 그들의 相異한 占領政策으로 因하여 軍事的 便宜에 따라 區劃되었던 38線은 政治的 分斷線으로 固定되고 말았다.

韓半島의 北部地域에 進駐하여 온 蘇聯軍은 金聖柱一派로 構成된 約 300餘名의 訓練된 政治行政要員을 帶同하였으며 蘇聯軍은 各種 聲明과 要綱을 通하여 親日勢力을 排除한 「民族統一戰線」을 結成하고 北韓地域에 「프롤레타리아」革命의 基本條件을 準備하는 것이 占領下의 當面政策임을 分明히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同年 10月 8日 蘇聯軍은 5道臨時人民委員會를 構成하고 10月 28日에는 5道行政局으로 改編함과 同時에 蘇聯軍司令部는 北韓의 共產化를 推進할 革命政黨을 發足시킴과 同時에 10月 14日 金日成을 환영하는 「平壤群衆大會」를 열고 韓國共產主義運動의 革命的 傳統을 소위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에서부터 樹立하기 위해 抗日遊擊隊의 伝說을 誇張내지 造作하기 始作하였다.

이에 反하여 日本의 降服條件이 韓國에서 엄격히 履行되게 할것과 政治的 中立을 표방한 美軍政의 占領政策은 韓國에서 左翼共產勢力의 猛烈한 活動을 可能

6) 革命傳統講座： 金日成大學講義錄，極東問題研究所，1974. 9

7) Ibid., p.29

케 하였으며 그 결과 政局은 混亂을 면할 수 없었으나 同年 12月 16日 「모스크바」三相會議가 열렸으며 韓國問題 處理에 關한 會議內容은 原則적으로 5年間의 信託統治를 實施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1946年 3月에 第1次 美·蘇共同委員會가 召集되었으나 이에 參加할 韓國의 政黨 및 社會團體代表의 資格問題에 合議를 보지 못하고 無期休會되었 으며 1947年 5月에 召集된 2次共委에서도 同一한 問題로 論難을 거듭하다가 同年 8月에 마침내 共委는 決裂되고 말았다.

美·蘇共委의 決裂에 따라 韓國問題 處理는 다시 政府間 交涉으로 옮겨져 美國은 8月 29日 「워싱턴」에서의 4大國會議開催를 提案하였으나 蘇聯은 이를 거부했으며 美國은 結局 同年 9月 17日 韓國問題를 正式으로 國聯에 上程하게 되었다. 國聯總會는 蘇聯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韓國問題를 政治委員會에 회부(贊 41, 反 6) 하였으며 同 委員會의 결의를 거쳐 總會는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團의 設置와 南北間 總選에 關한 決議를 採択하였고 同委員團은 1948年 1월부터 서울에서 活動을 始作하였으나 蘇聯軍의 入北拒否로 完全한 機能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南韓地域에 局限하여 總選을 實施하기로 決定하게 되었고 마침내 同年 5月 10日의 總選結果 198名의 議員選出로 5月 31日 國會가 召集되고 同年 7月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을 보게 되었다.

이어서 1948年 12月 6日 第3次 國聯總會 政治委員會는 大韓民國 代表를 委員會에 招請하여 韓國國民自身の 韓國獨立問題에 關한 意見을 청취하도록 하였 으며 이에 따라 大韓民國政府 代表가 同委員會에 參席하여 韓國統一의 조속한 實現과 大韓民國 政府의 合法性을 正式으로 承認해 줄것을 力說하였다.

따라서 同年 12月 12日 總會는 決議 第195号(III)로서 韓國에서의 選舉에 關한 國聯韓國臨時委員團의 結論을 承認하고 同時에 大韓民國 政府를 韓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서 承認함을 宣言하기에 이르렀다.

反面에 北僞는 1948年 2月 25日 國際聯合이 마침내 「가능한 地域內的의 自由選舉實施」를 決議하게 되자 南韓內에 民主政府가 樹立되는 것을 妨害하기 위해 南勞黨, 左傾政治勢力, 심지어 保守勢力까지 誘引 包摂하는데 血眼이 되었

고 妨害工作과 併行하여 北傀는 소위 「統一聯合人民政權」을 세워야 한다는 口号아래 1948年 4月 南·北諸政党, 社会团体 連席會議을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樹立이 宣布되자 北傀는 同年 7月 10日 人民會議 第5次會議에서 北傀憲法을 北韓地域에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이에 따라 8月 25日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를 實施할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그 結果 北傀는 北韓地域에서의 黑白 選舉에 依하여 都合 572名의 代議員으로 1948年 9月 2日 소위 最高人民會議 第1期 1次 會議을 열고 그들의 憲法承認과 그 實施에 關한 決定이 議決되었으며 이른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는 傀儡政權 構成에 關한 決定이 採択되었던 것이며 1948年 9月 9日 北傀政權이 樹立되었는데 上記 最高人民會議 第1期 1次會議에서 最高人民會議議長에는 南勞党系인 許憲, 副議長에는 勸民党的 李英과 青友党的 金達鉉, 常任委員長에는 勞動党的 金科奉, 副委員長에는 南勞党的 洪南杓와 民主党的 洪箕疇, 書記長에는 民主党的 康良煜을 각각 내세웠으나 이들 7名 가운데 現在까지 行勢하고 있는 者는 오직 康良煜 한사람 뿐이고 그후 모두 金日成에 依해 肅清되고 말았는데 北傀는 처음부터 蘇聯軍의 힘을 背景으로 한 彈圧과 肅清, 소위 民主主義路綫에 依한 共產化過程의 強圧의 手段에 依해 北韓地域에서의 单独傀儡政權을 樹立했던 것이다.

### 3. 大韓民國의 法的 地位

韓半島의 法的 問題를 解明함에 있어서 適用될 수 있는 國際法上的 原則은 实效性의 原則과 適法性的 原則을 들수 있는데 韓半島의 問題에 對해서는 그 어느것이든지 個別的으로 適用할 수 없는 어려운 問題들이 介在되고 있다.

实效性이라 함은 終局的이며 繼統적으로 展望되는 正当하게 이루어진 事實에만 適用되는 것인데 따라서 一時的인 事態를 곧 正当한 事實로서 認定하여

서는 안되는 것이다.<sup>8)</sup> 따라서 領土取得은 單純한 事實의 結果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實質적으로 支配하는 상태가 終局的임을 要한다.

따라서 實効性의 原則을 土臺로 하여 國土의 分斷狀態를 考察하여 볼때 어떤 사람은 大韓民國과 北傀政權의 樹立으로 말미암아 潛在적으로 存統하던 大韓帝國이 兩分됨과 同時에 舊國家는 소멸되고 南·北間에 二個의 新生國家가 成立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源泉이 蘇聯의 傀僞政權에 不過하였던 北傀는 비록 北韓地域을 強占하고 있으나 이것은 一時的인 事態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을 正當한 事實로서 認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大韓民國政府는 이미 第2次 國際聯合總會決議에 따라 民主主義의 인 節次와 主權 행사에 依하여 樹立되었다면 北傀는 蘇聯의 조종하에 非國民의 節次에 따라 強權이 發動된 選舉를 通하여 操作된 政權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韓民國 政府가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國聯의 決議는 그것이 意味하는 바 分斷이라는 事實이 終局的이며 正當한 것으로 認定하고 오직 韓國政府에만 唯一合法性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韓國政府가 國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依하여 樹立되었기에 이에 實効性의 原則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適法性의 原則에 立脚하여 大韓民國의 法的 地位를 解明하여 보면 이 原則은 1792년 「Jefferson」<sup>9)</sup>에 依하여 提唱되었는데 鬪係國民은 變更된 事態에 對하여 自由롭게 表現된 意思에 依하여 樹立된 政府만이 適法性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大韓民國은 1948년 5月 國聯監視하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名實共히 國民의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의해 樹立되었음으로 이같은 適法性의 原則이 그대로 適用되는 合法政府임을 알 수 있는데 反하여 北傀는 蘇聯軍의 駐屯下에 「스탈린」이 主張한 「소비에트」化 政策을

8) A. Verdross, Die Völkerrentliebe Stellung, a. a. o. s. 133

9) J. B. Moore,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1906, p. 20

達成하는데 一翼을 担当한 北韓共產黨에 依해 造作된 것에 不過하며 결코 北韓住民들의 自由로운 意思에 依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即, 北韓住民의 自由로운 意思가 反映되어야 할 選挙는 完全히 그 意義를 상실하고 이른바 立候補推薦制度와 黑白投票方式<sup>10)</sup>에 依한 党的 恣意的인 人選을 合理化하는데 不過하였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立場에서 보드라도 그들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生疎한 權力에 不過한 것이다.

#### IV. 民族遺産의 繼承과 社会実態比較

##### 1. 固有思想과 文化的 繼承

分繼 30年間을 通하여 南·北韓이 다같이 固有의 民族, 文化的 繼承과 開發을 내세우고 있는 形便임으로 어느 쪽이 眞實인가를 判別하는 것은 民族史的 正統性的 思想, 文化的 側面과 關聯하여 重要な 意味를 갖게 되며 이같은 問題에 關한 解答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선 南·北韓의 思想·文化的 概念이나 性格上的 差異부터 究明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때 韓國에서는 純粹한 民族文化의 傳統을 發展의 으로 繼承 發展시키고 있으며 特別히 日帝期에 길러진 抗日民族文化의 命脈을 이어받고 있다. 우리는 日帝時代를 通하여 길러진 民族言論, 民族文學, 民族藝術의 傳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꾸어 나아감으로서 文化的 傳統性的 基盤을 굳히고 있으며 現在 韓國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民族文化의 振興課業도 民族文化遺産의 發展의 계승과 開發을 위한 運動의 하나임은 말할것도 없는데 이같은 事實은 「맑스」主義라는 異邦의 價值體系의 扶植을 위해서 自國文化의 傳統을 變造의 으로 解釈, 적용하는 北傀의 경우와는 明白한

10) 朴一慶, 北傀憲法論, p.15~16



對照를 이루고 있다.

全體主義者들의 基本的 態度와 信念에 따르면 文化는 功利的이고도 政治的 附屬物이라는 關係에서 떠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藝術의 경우를 보면 「藝術은 審美的 立場에서가 아니라 功利的 立場에서 概念되고 있으며 그 것은 새로운 社會를 形成하는 道具로 생각되고 있다」<sup>11)</sup>고 간주함으로써 藝術의 審美的 性格에 對한 輕視와 功利的 性格에 對한 지나친 強調은 一般의으로 文化的 침체를 招來하기 마련이다.

1934年 蘇聯에서는 「쏘비에트」藝術의 방식을 社會主義的 「리얼리즘」으로 宣 言했는데 이같은 事實은 人民과 「프롤레타리아」階級을 革命的 發展過程에서 政治的으로 教育시킬 수 있는 文化活動樣式을 말하는 것이며, 金日成體制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社會主義的 「리얼리즘」위에서 文化政策을 展開하고 있으며, 藝術家나 作家를 「스탈린」의 정의를 모방하여 「人間精神의 技士!」<sup>12)</sup>로 단정하고 「프롤레타리아」獨裁秩序의 強化에 奉仕할 수 있는 政治道具로서의 文化를 強調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 2. 社會理想의 南北韓 比較

韓國은 韓民族의 歷史的 背景과 傳統的 價值觀에 의거하여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基本으로 삼고 있는데 大韓民國 憲法前文에는 「自由主義의 基本秩序를 더욱 鞏固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를 建設함에 있어서」라고 前提하고 있으며 國家와 國民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社會는 바로 「나」와 「우리」가 國家를 構成하고 있는 構成員이며 主權을 가지고 있는 個體인 것이다. 그러나 共產獨裁下의 北韓社會는 個人에게는 北韓勞動黨에 依하여 代表되고 統制되는 全體의 한 構成要素로서의

---

11) Carl, J. Friedlich and Zbigniew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5. p.329

12) 金日成 思想理論과 批判, 極東問題研究所 1974.3.p.181

存在價値만이 認定되며, 個人은 全体를 위하여 모든 것을 犧牲한다는 集團主義 原則에 基礎하고 있는 北韓社會의 構造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私有財産을 禁止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獨裁社會로서 1946年3月 「土地改革法令」의 發表와 同時에 「産業國有化法令」을 發表하여 生産手段의 國有化를 斷行하였으며 다시 1954年부터 協同農場을 組織하기 始作하면서 '58年 까지 모든 農民은 協同農場에 強制로 加入되어 土地所有權을 剝奪당하고 말았고 小規模의 個人商工業도 同期間에 完全히 소멸되었으며 마침내 北韓住民들은 黨의 指示에 따라 움직이는 生産道具로 轉落하고 말았다.

둘째로 오늘날 北韓社會는 金日成 唯一思想體系가 모든 價値를 支配하고 있는데 北韓社會의 支配의 價値는 「金日成 思想體系」로 規範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敎示」는 어떤 法令이나 黨決定에 優先되고 있으며 集團主義 體制下의 統制社會로 北韓住民의 生活基盤은 政治的 規制를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는 條件下에 놓여 있으며 더우기 北韓을 統治하고 있는 集團은 職業的 革命分子로 構成된 「朝鮮勞動黨」이며 黨을 支配하고 있는 것은 制度的으로나 實質的으로 國家主席인 金日成 1人인 것이다.

## V. 國民厚生 및 經濟體制의 南北韓比較

### 1. 國民厚生에 對한 古典學派의 理論

經濟政策의 目標은 時代와 國家에 따라 相異하다. 私有財産을 基盤으로 하는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나 또는 生産手段이 國家의 全面 管理下에 있는 共產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나 國民經濟의 持續的 成長에 따른 富의 增大에 두고 있음은 共通의 現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도 經濟政策의 目標가 國民福祉의 增進에 있다고 하는 것도 結局은 經濟學全體에 부여된 前述한 根本課題를 어떻게 解決하여 國民의 生活를 物質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결부되어 있다.

例컨대 古典學派의 「리칼도」(David Ricardo 1772~1823)는 社會總生産物에

서 生産活動에 所要된 社会的 生産費를 差減한 純收入을 經濟的 厚生의 참다운 尺度로 보았기 때문에 總體的 福祉는 오히려 分配의 增大에 關係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3)

그러나 福祉問題에 있어서의 進一步는 後 「마샬」( Alfred Marshall, 1842~1924 ) 및 「피구」( Arthur Cecil Pigou, 1877~1958 )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特히 「피구」는 厚生經濟學的 性質을 發展시켜서 近代의 主題의 基礎를 形成하였는데 國民厚生은 대체로 國民所得의 크기와 그 社會構成要員의 分配樣式에 依存하기 때문에 國民所得增加의 어떠한 原因도 一般적으로 經濟的 厚생을 增加시키며 生産의 增大 및 分配의 均等이 總體的 福祉의 增進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14)

古典經濟學派에서 抬頭된 經濟的 厚生問題와 關聯하여 「맑스」의 分配論은 原則적으로 「리칼도」의 分配論으로 부터 影響을 받아 展開되고 있는데 「맑스」가 資本主義社會의 소멸을 豫言하게 된 것은 産業革命直後의 西歐社會 特히 英國의 初期 資本主義現實을 土台로 한 것인데 當時의 産業革命이 經濟規模의 擴大가 繁榮된 物質文明을 建設하면서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私有財產과 自由放任( Laissez-Faire )의 原則下에서 生産單位는 相互間에 치열한 競爭을 通하여 小規模의 資本이 도태하고 漸次 独占化되어 가는 傾向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맑스」는 勞動者의 賃금이 恒常 再生産過程에서 最少限의 生存을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된다고 主張하였으나 오늘날 經濟發展이 高度로 發展한 歐美諸國에서 볼 것 같으면 勞動者의 賃金도 勞動生産性과 같이 上昇하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는데 最近에 와서 先進國은 이른바 「生産性賃金制」로 말미암아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인 조치를 取함으로서 「맑스」의 豫則과는 判異한 現象이 나타나고 말았다.

13) A. Smithies and Others: Economic and Public Policy, Brookings Lectures, Washington, D.C., 1955. pp. 6~12

14) Arthur Cecil Pigou, Economics of Welfare, 1924, London, p. 104

만약 「맑스」의 理論이 타당하다면 賃金水準은 勞動者의 生存線을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같은 線以上の 것을 意味한다고 해석한다면 「맑스」의 剩餘價值說은 無意味하게 되는 것이며 오늘날 「맑스」의 豫言대로 勞動者에 對한 착취가 存在한다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勞·資間의 不均衡보다 오히려 勞動者의 範圍을 約束하고 있는 共產主義社會에 常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共產主義國家에서 「맑스」가 말한 剩餘生産物은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主로 軍事力增強이나 獨裁權力 強化에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剩餘價值와 勞動者들의 實質的인 厚生問題는 더욱 顯著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 經濟體制 및 國民厚生の 南北韓 比較

嚴格한 意味에서 國民厚生問題는 GNP의 增加와 階層間에 所得分配 양상만으로는 精確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現在의 南北間의 特徵인데 自由主義體制下에 있는 韓國에 있어서는 지난 '60年代에 이룩한 產業構造의 近代化와 함께 農·工 各 分野에서 相對的으로 北韓보다 높은 所得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階層間 所得分配의 不均衡이 多少의 問題點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社會主義 統制經濟體制下에 있는 北韓에서는 所得分配의 不均衡問題보다는 社會主義 經理收入金과 지나친 間接稅의 過多策定으로 인한 住民들의 내핍생활이 南北間의 커다란 生活水準의 격차를 招來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生活水準의 測定과 「厚生函數」(Welfare Function)의 比較는 GNP에서 擴大再生産을 위한 總投資率과 國民의 實質的인 生活水準과 相關이 없는 軍事費를 除外해야만이 眞정한 「厚生函數」를 測定할 수 있다.

1974年度 資料에 依하면(表-1) 韓國의 GNP는 '74年度에 171.6億弗이며 同年의 北韓의 GNP는 約48.2億弗로 推定되고 있으며 따라서 1人당 國民所得은 韓國이 513弗이며 北韓이 313弗로서 約 200弗 水準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南北間의 總投資率의 比率는 韓國이 對GNP 30%, 北韓이 35%로 나타나 있으며 北韓에서는 35%의 높은 投資率을 強制蓄積으로 調達함으로써

(表 - 1)

## 南北間 厚生函數의 比較

(1974)

區 分	韓 國	北 國
GNP (億弗)	171.6	482
1人當 GNP (弗)	513	313
總投資/GNP (%)	30.0	35
1人當 投資額 (弗)	154.1	109.5
國防費/GNP (%)	4.2	13.9
1人當 國防費支出額 (弗)	21.7	43.5
1人當 消費水準 (弗)	337.2	160.0

資料：南北韓 經濟現況 報告에서 作成. 國土統一院, 1975

오늘날 北韓住民들의 1人當 投資額은 約 110 弗에 達하고 있다. 또한 對 GNP 軍事費 負擔率은 1974年의 韓國은 約 4.2%인데 反하여 北韓은 13.9%의 높은 比重을 차지함으로써 韓國의 1人當 軍事費負擔額이 約 22 弗에 不過하나 北韓은 約 2 倍에 達하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現象은 南·北間의 投資率과 軍事費負擔率의 差異로 因하여 總量指標에 나타난 名目上的 1人當 GNP는 韓國의 513 弗對 北韓의 313 弗로서 韓國의 1人當 GNP가 約 1.6 倍에 達하고 있으나 實質的인 生活水準은 韓國의 337 弗對 北韓의 160 弗로서 約 2.1 倍의 懸격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이 그들의 好戰性을 버리고 軍事費負擔을 激減하여 投資의 効率을 增大시키지 않으면 南北間의 國民厚生函數는 尙차 더욱 큰 격차를 야기시킬 것이 豫想된다.

## VI. 民族史的 正統性和 平和統一의 主導力量

以上에서 우리는 不當하게 國土를 兩分當한 變則的 狀況이 30餘年이나 繼續되는 가운데 單一民族의 根基를 毀損하면서까지 두개의 相異한 體制로 併存해야만 하는 非正常的인 政治生活를 通하여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理論的으로 定立하는데 있어서 要求되고 있는 歷史的 動態的 接近에 따라 分斷國에서 正統性問題의 대두요인과 正統性 概念의 普遍的 實態와 關聯하여 大韓民國 政府樹立의 經緯와 國際的 承認, 이에 따른 國家의 法統性 問題를 檢討하였다.

또한 平面的, 靜態的 接近方法으로서 分斷 30年間 異質化된 體制下에서 우리 社會의 相對的 優位性을 立證하기 위하여, 民族遺産의 繼承樣相과 社會構造의 特徵, 特別 國民厚生에 對한 古典學派의 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南北韓의 主要 分野別 比較를 同時에 檢討하였다. 더우기 大韓民國은 政府樹立 以來 一貫하여 5千萬 民族의 自由意思가 充分히 反映될 수 있는 南北韓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國家를 樹立한다는 基本方針을 堅持해 왔으며 特別 '70年代에 들어 오면서부터 政府의 統一政策은 첫째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둘째로 民族의 同質性을 恢復하기 위한 交流와 協力을 擴大함으로써 單一民族의 一體感을 形成하고 끝으로 이같은 狀況下에서 5千萬民族의 自由意思가 尊重되는 總選舉를 實施하자는 段階的 接近方式으로 集約된다.

그러나 北傀는 6.25動亂과 같은 反民族의 行爲에 對한 아무런 反省도 없이 아직도 武力挑發만을 恣行하면서 南侵準備에 狂奔하고 있는데 北傀의 主張이 內包하고 있는 本質的 性格은 所謂 그들이 主張하는 「三大革命力量」의 強化라는 戰爭政策으로서 集約되고 있다.

따라서 첫째로 四大軍事路線의 繼續 追求와 둘째로 北傀集團의 同調勢力을 韓國內에 扶植시켜 反政府 勢力을 培養하며 끝으로 北傀에 對한 國際的 支持 勢力을 糾合하는 소위 國際革命力量이 바로 그것으로서 北傀의 統一政策의 本質은 政治的으로 韓國內部에서 暴力革命을 企圖하고 武力에 依한 南侵力量을 確保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과 祖國보다도 共產主義 教理와 理念을 앞세워 總和와 協同代身

에 階級鬭爭을 통한 民族分裂을 劃策하고 平和와 秩序를 파괴하면서 革命鬭爭을 주장하여 歷史와 傳統을 歪曲하면서 있지도 않았던 소위 「프롤레타리아」鬭爭史로 文化와 傳統을 造作하고 人間의 尊嚴성과 自由를 유린하여 共産黨과 唯一思想體制下에 規制된 오늘의 北韓共産集團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悠久한 民族史의 傳統을 發見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分斷狀態下에서 極限의 인對峙下에 있는 南北關係의 現實속에서 民族史의 正統性을 固守하고 이를 發展시켜 나아가자는 것은 우리 民族의 빛나는 傳統과 새로운 價值觀의 創造는 勿論 밖으로는 民族의 利益과 國威를 國際社會에 선양하는 것이 되며 안으로는 北傀의 再侵策動을 粉碎하고 祖國의 平和의 統一과 民族分裂의 危機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겨레가 이를 發展시켜 나아가도록 實事求是로 임해야 할 것이다.





# 民族史的 正統性 研究 方法論

崔 昌 圭  
서울대학교 社會科大學 教授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韓國史에서 찾아야 할 民族史的 正統性-歷史的 側面
- III. 韓民族이 定立해야 할 民族史的 正統性-論理的 側面

### I. 問題의 提起

#### i. 歷史的 前提 - 5천년 民族史와 韓民族

우리는 韓國사람이다. 이 같은 韓國사람은 우리가 굳이 韓國사람임을 강조하기 이전에 이미 韓國사람으로 태어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굳이 韓國사람임을 의식하려 하기 이전에 이미 韓國사람으로서 思惟하며 行動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루어져 있는 韓國사람이란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것일까? 그 生命의 源泉은 무엇이며, 그것을 生長시켜 주는 本質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4천년 이상을 살면서 쌓여서 이룩된 이 韓民族이란 우리들의 身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우선 다음과 같은 잠정적 結論이 가능하게 된다.  
즉,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것 같은 이 韓國사람은 그러나

바로 저 4천년 이상이란 긴 時間을 살아 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내세우고 있는 저 韓民族이란 生命도 바로 저 4천년 이상의 긴 時間 위에서 쌓여져 나타난 歷史의인 生命인 것이라고…………….

그 결과 오늘의 우리는 韓國사람이란 나의 身元을 떠나서 결코 나의 生命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또한 4천년 이상이란 저 歷史의 活力을 떠나서 韓民族이란 主体의 生命을 결코 論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韓國사람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저 4천년 이상을 살아온 우리들의 온 民族史 바로 그것으로 확인된다.

이같이 볼 때 나라는 生命은 韓民族이란 身元으로 하여 얻어진 生命이요 나의 身元으로서의 저 韓民族이란 바탕은 바로 우리가 걸어온 저 歷史의 時間 위에서 얻어진 活力인 것이다. 그것은 곧 나는 韓民族 속에서 얻어진 民族的인 主体이며, 韓民族은 바로 歷史의 成長 위에서 얻어진 歷史의 主体임을 의미하게 된다.

이 말을 바꿀 때에 다음과 같은 結論이 우리에게 명확해 진다. 즉, 韓國사람으로서의 나는 저 韓民族으로서의 主体 노릇을 할 때에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고, 또 韓國史 속에서 돌아난 生命으로서의 韓民族은 저 4천년 이상을 살아온 저 歷史의 主体 노릇을 제대로 할 때에만 비로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

1) 東洋文化圈에서 「正統」이란 用語는 大一統을 강조하는 中國-春秋史觀의 산물이었다.

歷史를 있어야 할 歷史, 바른 歷史로서 永統시키기 위하여 그 象徴으로서 正(治)·道·法 등이 강조되었고, 여기서 바로 歷史의 大一統은 正統(또는 治統)·道統·法統 등으로 표현되어 나왔다.

그리고 이같이 歷史가 正統·道統에 의하여 올바르게 繼承되는 모습을 一般化하여 「傳統」이라 불렀다. 여기서 쓰여진 正統성은 따라서 正統·道統·法統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傳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正統·道統·傳統 등의 개념에 대하여는 任卓宣, 孔孟學說底真相和辨正, 翰米爾書店, 民國 57, 導言 참조.

여기서 우리는 무엇 보다도 내가 우선 韓民族 속의 한 主体임을 의식하여야 하며, 또 그 같은 韓民族은 4천년 이상을 살아온 歷史의 두텁한 한 主体라는 점을 함께 분명히 의식하여야만 한다. 앞의 것을 바로 民族意識이라 한다면, 뒤의 것은 곧 歷史意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같은 民族意識이나 歷史意識은 다 같이 내가 韓民族이라는 主体요 그리고 그 韓民族은 바로 韓國史의 主体라는 것을 각각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일치한다. 그렇기에 그 意識들은 모두 主体意識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공통지워 질 수 있다.

韓民族이라는 主体로서의 나. 그리고 5천년 韓國史의 主体로서의 오늘의 韓民族.....

이같이 내가 韓民族이라는 한 主体로서 意識될 때 나의 生命力は 民族을 통하여 한없이 확대될 수 있고, 또한 그같은 韓民族은 이처럼 5천년의 긴 韓國史의 主体로서 확인될 때 그 때에 비로소 韓民族의 活力은 저 民族史를 통하여 무한히 영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우리를 韓民族이라는 主体로서 意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같이 훌륭한 韓民族 속에서도 아무런 生命력도 얻지 못하게 되며, 그래서 또한 韓民族도 그 自身이 5천년의 저 韓國史의 主体임을 意識하지 못할 때에는 저 뛰어난 5천년 韓國史 속에서도 그 어떠한 活力도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民族意識이 없을 때 나는 5천만 강인한 韓民族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없는 힘없는 나로서 밖에 살 수 없게 되며, 또한 歷史意識이 없을 때 5천만 韓民族은 저 半萬年の 끈질긴 歷史의 活力을 지녀왔으면서도 그 活力으로 뒷받침 받지 못하는 無力한 民族으로서 밖에 남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民族意識에 따라 오늘의 韓民族은 5천만 이상의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5천만 이하의 그것도 될 수 있으며, 또한 歷史意識에 따라 우리들의 民族史는 5천년 이상의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5천년 이하의 그것도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5천년의 民族史가 그대로 우리들 韓民族의 올바른 活力으로 再創造되어 지고 그래서 오늘의 韓

民族은 5천만 모두가 그 歷史 앞에 책임을 지고 創造하는 歷史的 主体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歷史 앞에서 民族을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歷史的인 主体意識이 요구되는 것이다.

歷史는 이와 같이 그 主体인 民族을 통하여 그 정확한 自己身元이 계속되어 지고 그래서 그것의 永統的인 活力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 歷史로서의 創造的 機能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歷史 앞에는 반드시 民族이라는 그것의 올바른 主人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歷史는 이 民族이란 主体의 부단한 창조를 통하여 永統적으로 그 生命력이 이어져야만 한다. 歷史가 이와 같이 民族이라는 올바른 主体를 만나 그것을 통하여 그 生命이 영속적으로 창조되어 질 수 있는 規範的 指標를 우리는 바로 民族史의 正統性이라<sup>2)</sup>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民族史의 正統性은 歷史의 主体인 民族과 그 民族의 本質인 歷史(民族의 活力)와를 올바르게 연계시키는 最大의 名分<sup>3)</sup>으로 확인된다.

- 
- 2) 여기서 民族史의 正統性은 바로 5천년 韓國史를 韓民族이라는 그 본래의 主体 앞에서 연결시키는 論理로 具體化된다. 여기서 바로 民族史의 正統性은 한편으로는 韓民族(民族史의 主体)의 主体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史(民族의 自己身元)의 永統성과 각각 연결된다.

이때 民族史의 永統性은 물론 民族의 等質性(homogeneity)과 歷史의 純潔性이 그 기반을 이루게 된다. <註1>을 다시 상기할 것.

- 3) 이 때 名分은 民族이 제 歷史 앞에서 올바른 主人 노릇을 하게 할 수 있는 突然을 의미한다.

본래 名分은 分得(応然)而名歸(突然)라 하여 自己다운 實踐을 강조하는 主体성과 연관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民族史의 名分은 한마디로 韓民族이 韓國史를 가장 歷史다운 民族史로 創造하고 繼承한다는 그 實象의 本分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本分이 특히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日帝 36년에 의하여 民族史가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는 時間的인 제약(歷史的 側面)과 光復된 民族史 앞에서 民族이란 主体가 分斷되어 있다는 空間的인 제약(民族的 側面) 등 오늘의 우리들 民族史的 狀況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拙著『새 韓民族史』金鳥出版社, 1973. 才一編 | 韓民族과 그 歷史 | 참조.

## 2. 狀況的 前提 - 解放30年과 光復 民族史

그러나 이같은 民族史의 正統性이 특히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解放 30년이라는 오늘의 民族史의 狀況과 깊게 연결된다.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1945년 解放을 통하여 民族史의 새로운 契機를 맞이하였다.

이 때 民族史의 새로운 契機는 民族이란 主体로 보았을 때는 植民의 抑壓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生命을 얻었다는 점에서 解放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었고, 歷史라는 民族的 本質에서 보았을 때는 잃었던 舊 歷史의 身元을 찾아 스스로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正統 光復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같이 兩面으로 확인된 解放이나 光復이라는 의의는 모두 民族史 앞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價值로서 合一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아닌 民族史 正統性의 恢復이었던 것이다. 즉, 民族史로 보았을 때 解放은 韓民族이 36年 잃었던 歷史를 다시 찾고 舊 歷史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民族史 主体의 恢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光復은 侵略者라는 無道한 者의 손아귀에 빼앗겼던 歷史가 다시 풀려나 그것의 올바른 主体인 韓民族에게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民族史 自體의 恢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解放과 光復은 모두 궁극적으로 韓民族 歷史의 恢復이란 單一한 指標로서 귀결되어 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民族의 解放이 歷史의 光復으로<sup>4)</sup> 직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바로 우리는 그 解放된 民族과 光復되어야 할 歷史와를 연결시켜 光復 民族史라는 우리들 最大의 民族的 課題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光復 民族史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4) 光復은 본래 「光復國家」라 하여 잃었던 國家를 빛나게 恢復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近代國家의 狀況에서 國家의 光復은 궁극적으로 民族國家의 온 歷史的 光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光復의 개념은 歷史的 光復으로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歷史的 光復은 自己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歷史的 自主와, 그리고 빛나게 前進시킨다는 점에서 歷史的 進歩와 各々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光復 民族史에는 언제나 自主와 進歩라는 二重의 創造力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民族史가 올바른 바로 잡혀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다시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民族史는 도대체 왜 바로 잡아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며, 또한 그 같은 民族史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바로잡아질 수 있는나?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는 한결같이 올바른 民族史를 가져려는 民族의 소망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올바른 民族史란 도대체 무엇이나? 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가 살피려는 올바른 民族史란 우선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에서 대략 제시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올바른 民族史에는 언제나 그것을 담당하는 올바른 歷史의 主体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다음은 올바른 民族史는 언제나 自己의 올바른 身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日帝 36년 동안에 놀려 韓民族으로서 韓國史의 올바른 主体 노릇을 하지 못하였을 때 歷史를 잃은 쓰라림을 당해야 했으며, 또 저 13세기 蒙古侵略 이후 계속된 服屬關係로 하여 元의 영향으로 인한 내 歷史의 身元이 한없이 이즈러졌을 때 歷史의 活力을 제약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올바른 民族史를 갖기 위하여 강조되는 民族史의 正統性이란?

첫째, 歷史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들 韓民族이 그 歷史의 主体 노릇을 똑바로 끝까지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그동안 民族史가 입은 事大의 제약이나 植民의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民族史 본래의 自己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前者가 民族에게서 확인되어야 할 主体性이라 한다면, 後者는 歷史에서 확인되어야 할 傳統性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연결되어야 할 民族과 歷史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歷史는 民族이라는 그 올바른 主体를 가질 때에만 그 活力이 계속적으로 창조될 수 있으며, 또 民族은 반드시 제 歷史의 올바른 主体 노릇을 할

때에만 비로소 幸福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sup>5)</sup>

여기서 올바른 歷史를 강조하는 民族史의 正統性에서는 바로 그 歷史의 活力과 民族의 幸福을 위하여서 당연히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實用性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民族史의 正統性은 民族이 歷史 앞에서 당연히 강조되어야 할 最大의 名分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民族이 歷史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最大의 規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民族史의 正統性 앞에서 오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난 民族的 狀況에는 아직도 너무나 큰 制約과 넘어야 할 矛盾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韓民族은 분명히 解放은 되었으나 아직도 그 같은 民族은 世界 歷史의 올바른 主体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제약에서 출발된다. 거기에는 民族의 分斷도 가로놓여 있고 歷史의 他律現象도 끼어 있다. 民族이 이같이 世界 歷史의 主体 노릇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民族史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늘의 우리를 民族史 속에서는 民族의 解放은 분명히 발견되었지만 民族史의 光復은 아직도 여전히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解放<sup>6)</sup>과 光復 사이의 이같은 間隔, 그것은 오늘의 우리들의 歷史 속에 저 民族的 分斷 이상의 쓰라림이 들어 있고 또한 지난 날 日帝의 상처로 얼룩졌던 植民狀態 보다는 더한 부끄러움이 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解放을 통하여 生命을 다시 찾고서도 스스로 世界 歷史의 主体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歷史的 自主에 대한 책임 때문인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日帝植民時代의 傷處를 主体의 喪失에 의한 民族史인 不幸과 歷史의 斷絶에 의한 歷史 創造力의 喪失이라는 二重의 側面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6) 원래 聯合國의 勝利로 하여 주어진 解放이란 개념속에는 이미 歷史의 他律現象이라는 제약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1945년 우리에게 주어진 저 光復 民族史의 계기가 解放과 같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勝戰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도 自律의인 개념으로 오지 못하였던 制約을 솔직히 시인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民族史의 制約 속에는 이미 韓民族을 그 歷史에서 분리시켰던 36년 植民地 時代의 상처도 있고, 解放된 民族을 他律로서 분리시켜 온 民族 分斷이란 矛盾도 있으며, 그리고 分斷된 民族의 狀況에서 韓民族으로서의 歷史的 自己身元을 한없이 變質시키고 있는 民族的 異質化의 挑戰도 들어 있는 것이다.

첫째의 상처로 하여서 民族史의 自己身元은 한없이 이즈러져 있고(植民史觀의 傷處),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둘째의 矛盾으로 民族은 제 歷史의 主体 노릇을 할 수 있는 能力과 意志를 한없이 상실하여 왔으며(民族分斷의 矛盾), 그래서 그 같은 傷處와 矛盾 속에서도 民族은 지금 歷史의 主体 노릇을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세 번째의 挑戰으로 하여 民族의 主体의 活力과 歷史의 傳統的 身元은 한없이 破綻당하고 있는 것이다(分斷 民族史와 危機).

여기서 바로 5천만 오늘의 韓民族은 사라져 가는 民族史의 自己身元을 5천년 쌓여겨온 民族史의 本質 위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회복된 民族史의 活力 위에서 우리 모두가 歷史의 올바른 主体 노릇을 할 수 있기 위하여 무엇 보다도 간절하게 우리들의 民族史의 正統性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II. 韓國史에서 찾아야 할 民族史의 正統性 - 歷史的 側面

民族史의 正統性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民族史에서 確認되어야 할 民族의 自己身元부터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곧 무엇이 韓民族史의 本質이고 그것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民族史의 自己身元은 民族의 時間的인 경험을 통하여 이룩된 歷史的 產物인 것이다. 여기서 民族史의 正統性을 위하여 강조되어야 할 民族의 自己身元이란 바로 民族이 그 歷史를 통하여 同一化될 수 있는 民族史의 自己 本質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民族史의 正統性을 위하여 먼저 찾아야 할 韓民族史의 自己本質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여기서는 우선 그것을 우리들 韓民族이란 民族史의 主体를 통하여서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들 韓民族은 여하튼 4천년 이상을 끊임없이 살아와 오늘에 살아 남은 뚜렷한 歷史의 主体인 것이다. 그것은 17세기에 우리를 侵略하였던 滿洲族(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반하여 우리는 살아 남을 수 있었다는 主体(民族)의 生命을 의미하며, 또 20세기 초 日帝의 植民은 힘으로써 우리의 歷史를 끊어 놓으려 하였지만, 우리의 歷史는 오히려 그 植民 뒤에서도 여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는 歷史의 活力을 반영한다.

여기서 우리는 韓民族史의 특징을 다음 3가지 側面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여하튼"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5천년 民族史가 아무리 어려워 왔어도 民族은 여하튼 살아 남을 수 있었다는 끈질긴 生命力이며 → 民族史의 活力

그 둘째는 그같은 끈질긴 生命力으로 民族史는 한번도 그 主体를 바꾸지 않고 이어 올 수 있었다는 저 民族史의 끊임없는 永統性이며 → 歷史의 永統性

그 셋째는 그같이 확고한 民族史의 正統性을 통하여 바로 저 어려웠던 5천년 歷史 뒤에서도 民族은 몇몇이 그 主体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저 靑한 民族的 主体性인 것이다. → 民族의 主体性

여기서 韓民族史의 특색은 바로 저 民族이 지켜온 主体성과 歷史가 지녀온 永統性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民族史의 正統性은 바로 저 같이 民族이 지켜온 主体성과 歷史가 지녀온 永統性을 다시 회복시켜 연결시키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民族史 正統性에 관한 논의는 우선 民族史에서 확인될 수 있는 民族的 主体性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 1. 民族의 主体性和 民族史의 永統性

歷史의 主体는 흔히 民族(nation), 國家(state) 그리고 文化圈(cultural sphere) 등으로 파악된다. 우리들 韓民族의 경우 그 歷史의 主体는

첫째, 통구스系 東夷 9個 種族의 統合으로 이루어진 單一民族인 韓民族<sup>7)</sup> 과, 둘째, 檀君의 神話, 이래의 5천년의 有國家經驗과, 三國統一 이래 千年 이상 의 統一民族史의 骨幹을 이루어 온 統一民族國家와, 세계, 大陸 東北에서 中華文化에서 獨立된 別個의 東夷文化를 창조하여 온 東夷文化圈 등 3側面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民族史의 경우 이같이 3側面에서 확인되는 歷史의 主体는 모두 같은 民族史 속의 同一한 主体로 合一되고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같이 民族史 앞에 合一하고 있는 3主体 가운데에서도 歷史를 中 國적으로 담당하여 준 最終의 主体는 바로 民族이었다는데 우리 韓國史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民族史는 中華의 鐵器文化가 밀려들어와 東夷의 文化를 한없이 제약하였던 漢四郡 4백년 칠락 뒤에서도 民族이라는 主体는 의연히 韓民族의 古代國家를 發展시킬 수 있었으며(部族國家聯盟으로서의 三國時代), 또한 歷史가 國家라는 主体의 側面에서 한없이 守勢에 물렸던 尙元 服屬關係(高麗)나 尙淸 主從關係(朝鮮) 뒤에서도 民族이라는 主体는 의연히 살아 남아서 民族史를 韓民族쪽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民族史의 특질은 近代初 帝國主義의 侵略으로 歷史가 國家와 文化圈 兩面에서 함께 그 消滅의 危機에 빠졌던 日帝 36年 동안에도 民族이라는

7) 東夷 9個族은 朝鮮·夫餘·濊貊·肅慎·沃沮·(東)濊 및 三韓(馬·辰·辨) 등이다.

8) 그것은 歷史의 主体가 文化圈에서는 分明하지만(中華文化), 그 國家의 側面에서는 單一性이 적었던(즉 淸~金族, 金~契丹族, 元~蒙古族) 中國의 歷史와 다른 점이며, 또한 그것은 歷史의 主体가 國家라는 側面에서는 비교적 分明하였지만, 民族이나 文化圈의 側面에서 單一性이 적었던 日本의 歷史와 각각 다른 점인 것이다.

主体가 의연히 살아 남아서 民族史의 生命력을 이어 나올 수 있었던 近代史의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9)

韓民族史의 특징인 이같은 民族的 主体性은 우선 歷史를 통하여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民族의 對外的인 自主性에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侵略과 같은 歷史의 對外的인 矛盾이 특히 많았던 우리 民族史의 產物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같이 對外的인 矛盾이 특히 많았던 民族史를 뚫고 나오게 할 수 있게 하였던 直接的인 原動力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마디로 큰 1千回에 달하는 民族的 矛盾(즉 對外的인 矛盾으로서 侵略이든 不平等 條約이든)을 겪고서도 한결같이 이어져 온 우리들 5천년 民族史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活力을 통하여 漢四郡 4백년이란 古代的인 侵略 뒤에서도 歷史를 지켰으며, 蒙古軍 40년 侵略이란 中世的인 矛盾 뒤에서도 歷史는 끊기지를 았았고, 또 저 日帝 36년과 같은 史上인 類例 없는 植民統治(憲兵·警察政治) 뒤에서도 歷史는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民族的인 主体性은 바로 民族史를 이어준 가장 궁극적인 活力으로 확 인된다.

이 活力이 있었기에 저 13세기 우리에게 40년 侵略을 강요하며 큰 소리 쳤던 北方族(蒙古族)들은 거의 사라져 가는데 그 侵略 앞에서 쓰라림을 겪었던 우리 韓民族은 오히려 청청히 살아 남고 있는 것이며, 또 저 17세기 우리 앞에 侵略으로써 國家的인 不平等(君臣 主從關係)을 강요하던 滿洲族들은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侵略과 不平等 속에서 갖은 苦難을 겪어야 했던 우리 韓民族은 의연히 살아 남아 歷史의 主体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民族의 主体性은 이와 같은 對外的인 自主性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

9) 이런 점에서 日帝 植民時代의 民族史는 國家라는 主体로 하여서는 (statism) 歷史 斷絶의 一面이 보이지만 民族이라는 主体로 하여서는 (nationalism) 어디까지나 歷史의 連續이었던 것이다.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對內的 統合性を 또한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즉, 韓民族의 主体性은 그 對外的인 主体性和 그 對內的인 統合性으로 形成되어 왔으며, 그래서 歷史에서 民族的 主体性이 더욱 요구될 때마다 그 兩者의 特質은 상호 비례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즉, 民族史에서 對外的 自主性이 강조될 때마다 그와 함께 그 對內的 統合力이 더욱 강화되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對唐抗爭이란 對外的 自主가 강조되었을 때 統一의 完成이란 對內的 統合力이 응결되었으며, 植民統治 反對라는 對外的 抵抗(3.1民族獨立運動)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韓民族에게서는 본격적인 近代的 國民으로서의 統合이란 그 對內的 活力이 發揮되었던 것이다.

民族的 主体性의 才二의 特質로서의 이같은 統合力은 이미 우리 民族史의 特質로서의 古代 支石墓文化<sup>10)</sup>나 蘇塗思想에서도 또한 뚜렷이 보이고 있었다.

즉, 數百人이 同時에 동원되어야만 이를 수 있었던 支石墓文化와, 일단 罪人이라도 蘇塗境內에 들어오면 排斥하지 않고 成員으로 흡수해 들이던 蘇塗의 精神 등은 모두 그대로 우리 民族的 主体性 속에 들어 있던 統合力의 기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다.

## 2. 民族的 等質性和 統一 民族史

이같은 民族的 統合力이 바로 民族史 發展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또한 民族史의 發展段階에서도 또 하나의 特質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같은 特質은 韓民族의 各 歷史 發展段階들을 이어 증으로써 民族史의 永統的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實質的인 活力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親族共同體의 結合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던 民族史 發展의 한

10) 韓民族의 歷史의 특징으로서 흔히 ① 支石墓文化 ② 白衣의 傳統 ③ 상투의 保存 등을 들고 있다.

(孫晉泰, 『韓國民族史概論』 乙酉文化社, 4281. 참조)

특질로 나타났던 것이다.

즉, 우리는 古代民族史에서 흔히 氏族 → 部族 → 部族國家 → 部族國家聯盟과 같은 國家 發達史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發達は 단순히 數個의 氏族이 모여 部族을 이루거나 또는 優勢部族이 他의 劣勢部族들을 일방적으로 征服하여 部族國家를 이루는 形式論理學的 發展만은 결코 아니었다.

여기서는 반드시 氏族이 部族으로 옮겨져 갈 때 일단 氏族이 解体된 다음 다시 親族共同體의 結合을 통하여 部族으로 形成되고, 또 部族은 部族國家로 갈 때 일단 그 部族 段階가 解体된 다음 다시 親族共同體의 結合을 통하여 部族國家로 形成되어 갔던 것이다.

그것은 論理的 側面에서 우리 民族의 發達에서 辯証法的 變化가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그 보다는 더 귀중한 것은 바로 이같은 親族共同體의 結合을 통하여 民族은 안으로 언제나 그 結合力을 가지고 民族發達의 원동력을 삼아 왔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같은 內容은 바로 部族國家聯盟(三國時代) 단계에서 單一民族國家로의 발달을 의미하던 民族 決定期(統一國家)의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사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部族國家聯盟에서 統一國家로 指向할 때 여기서도 部族國家聯盟이던 三國이 그대로 統一新羅로 合成된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각 部族國家聯盟 단계가 解体된 다음 親族共同體의 結合을 통하여 새로운 統一國家로 발달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7세기의 統一이 단순한 國家的 統一段階( statism )를 벗어난 民族的 統一( nationalism )임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며, 여기서 우리의 그 民族統一은 단순히 對外的으로 그 統一이 표현되는 小民族統一이 아니라 안으로 그 對內的 統合力도 겸비한 大民族統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서 韓民族의 主体性은 對外的 自主性과 對內的 統合力을 그 특질로 하고 이같이 統合力들을 그 기반으로 하는 民族的 主体性은 각 歷史段階를 각 각 새로운 歷史段階로 擴大 發展시켜 연속시키는 참된 民族史의 創造力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같은 民族的 主体性은 統一民族史 이후에는 歷史의 각 發展段階

에서 봐도 항상 그것을 이끄는 새로운 歷史의 主体的 勢力을 結成시키는 民族史의 主体問題로 뚜렷이 부각되어 나왔던 것이다.

즉, 部族國家聯盟이 극복되어야 했을 때 새 歷史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主体가 形成되어 나왔고 →花郎·皁衣仙人, 統一民族國家가 古代國家의 矛盾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시 새 歷史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歷史主体가 나왔으며 →豪族·六頭品, 다시 그 中世的 主体에 의하여 進行되어 오던 高麗時代가 다시 그 中世國家의 矛盾에 의하여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새 歷史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歷史主体가 形成되어 나왔던 것이다 →士大夫·士林

따라서 花郎이나 皁衣仙人과 같은 主体는 民族決定期인 古代統一國家를 이끌기 위한 歷史의 主体였고, 豪族이나 六頭品 등은 民族意識의 成長期인 中世國家를 이끌기 위한 歷史의 主体였으며, 士大夫나 士林 등은 國家의 主權概念의 確立期인 近世國家를 이끌기 위한 歷史의 主体였던 것이다<sup>11)</sup>.

여기서 우리에게서 그 近世國家段階(朝鮮期)가 다시 制約과 矛盾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克服하고 새 歷史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歷史主体의 形成을 당연히 기대하여야만 했었다. 그러나 民族史의 悲劇은 그같은 새로운 歷史主体의 形成 이전에 帝國主義 侵略이란 民族的 矛盾을 먼저 체험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近世末에서(朝鮮期末) 기대되어야 했던 새로운 歷史主体의 形成은(그 이름이 무엇이든) 좌절되었고, 그 위에 이미 形成 保存되어 오던 歷史的 主体마저도 상실당하는 혹심한 상처까지 입었던 것이다.

여기서 日帝 36년의 植民時代는 우리 民族史에서 主体(民族)의 상실과 歷史의 단절이라는, 2중적 制約을 우리에게 남겼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2중적 制約을 안고 있는 歷史 속에서 主体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

11) 이들 各 歷史의 主体들(花郎·六頭品·士林 등)은 모두 그 社會身分의 背景이나 知性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一致하고 있었다.

즉, 地方의 小地主(自營農)들이 동시에 당시의 知識階層이 있으며(社會身分으로), 다음으로 知識人들의 知性은 한결같이 그 對外的인 主体性이 강하였다는 특징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光復民族史라고 규정을 내릴 때 여기서 光復民族史는 당연히 斷絶된 民族史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같은 회복을 통하여 상실된 民族史의 主体를 다시 창조해 내는 2중적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오늘의 民族的 狀況에 서서 저 5천년 民族史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강조하여야 할 民族史적 正統性의 의미와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民族史의 主体로 보았을 때 여기서 7세기 統一 이후의 우리들 統一民族史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才一期： 民族統一의 決定期，花郎·皇衣仙人，對外的 自主와 對內的 統合 → 統一新羅時代

才二期： 民族意識의 成長期，豪族·六頭品，主로 對外的 自主 → 高麗朝

才三期： 主權概念의 確立期，士大夫·士林，主로 對內的 統合 → 朝鮮朝

才四期： 獨立國家의 爭取期（衛正斥邪·開化·東學·獨立協會），主로 對外的 自主 → 朝鮮朝 末~解放

才五期： 光復民族史의 實踐期，民族中興의 主体，對外的 自主와 對內的 統合 → 解放~光復（統一）

우리는 光復 民族史의 實踐이라는 오늘의 民族史의 狀況 속에 서서 우리 民族的 主体性を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실 등을 歷史에 비추어 제시하게 된다.

그 첫째는 光復 民族史를 實踐하기 위하여 民族的 主体性은 그 對外的 自主性과 對內的 統合性이라는 兩面의 課題로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것은 統一 民族史의 歷史的 段階로 보았을 때 自主（抵抗）와 統合（進歩）이 함께 요구되던 才一期 統一民族의 決定期와 유사하다.

그 둘째는 統一民族史의 各 段階를 담당해 온 모든 歷史의 主体들은 한결 같이 그 對外的 自主라는 民族的 主体性이 강하였다는 사실이며 → 花郎·皇衣

仙人(對唐抗爭), 六頭品·豪族(大陸의 影響으로부터 벗어나려는 自主意識<sup>12)</sup>)  
士大夫·士林(對元 服屬關係를 벗어나려는 主權鬭爭) 등.....,

그 세계는 民族的 統合力이나 그것에 기반한 진정한 民族史의 推進力은 主  
로 對外的 自主意識이 강할 때 그것에 比例하여 成長되어 왔다는 사실인 것  
이다. → 國境 確定 및 大陸關係(對明)의 安着 등으로 對外的인 抵抗의 自  
主가 약화되었던 朝鮮朝보다는 北方民族(蒙古)을 비롯한 四強<sup>13)</sup>의 侵略 등  
으로 對外的 抵抗(自主)이 훨씬 더 요구되던 高麗朝에서 民族史의 보다 큰  
活力이 나왔었다<sup>14)</sup>.

### Ⅲ. 韓民族이 定立해야 할 民族史의 正統性 - 論理的 側面

우리는 여기서 光復 民族史란 오늘의 歷史의 座標를 解放 이후의 民族的  
現實 위에서 바라보게 된다.

여기서 우선 民族的 主体性和 民族史의 正統性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아직도 가지지 않은 植民時代(歷史 正統性의 斷絶)의 상처로 인한  
民族史의 正統性의 계약, 둘째, 解放을 뒤따라온 民族分斷과 같은 歷史의 他律  
現象으로 인한 歷史의 自律性의 계약이며, 셋째, 解放이라는 歷史의 受惠 現象

12) 唐에서 확보된 社會的 價値를 버리고 故國으로 돌아왔던 崔致遠(孤雲)  
의 知性에서 代辯된다. 그 知性의 自主意識은 그의 유명한 靈郎碑  
序文中에서 잘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 한다. 그 教의 根源은 仙史  
에 갖추어져 있으니 실로 三教(儒·仏·道)의 뜻을 包含하고 있어  
그 教理는 殊히 群生을 接化할만 하다"(國有玄妙之道 曰風流設教之源  
詳備仙史 實及包含三教 接化群生)

13) 蒙古族의 元, 契丹族의 遼, 女真族의 金 그리고 倭族(倭)

14) 여기서 朝鮮朝 초 한글 創制나 士林政治의 發達과 같은 歷史의 對內的  
創造力은 사실은 麗末 이래로 服屬關係에 抵抗하여 왔던 士林들의 對  
外的 主体性이 낳은 歷史의 결과였던 것이다.



으로 나타난 지나친 對西方 恩惠意識이나 向外性 때문에 입어온 民族的 主体性的 제약 등인 것이다.

### 1. 民族的 論理 - 主体性和 正統性

여기서 지적되었듯이 오늘의 韓民族은 光復 民族史 속에서 이미 심각한 民族史 正統性的 제약(日帝植民의 상처)과 함께 여기에 따른 歷史的 自律性的 제약(分斷民族史) 및 民族的 主体性的 제약(恩惠意識에 의한 向外性) 아울러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日帝에 의한 植民地 상처는 그것이 5천년 歷史上 최초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오늘의 韓民族은 5천년을 이어온 歷史의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sup>15)</sup>, 거기서 입어야 하는 民族史 正統性的 제약은 자못 심각한 것이며, 또한 解放 이후 歷史의 他律로서 주어진 民族의 分斷은 이제까지 한번도 歷史上 他律現象으로 지배되어 본 적이 없었던 民族史로 볼 때, 그리고 大民族統一 이후 統一民族으로서만 살아온 民族的 經驗이 1천 수백년이 된다는 韓民族의 특수한 입장에서 볼 때 거기서 입어야 하는 歷史的 自律성에 대한 矛盾 또한 너무도 심각한 것이다<sup>16)</sup>.

그리고 解放을 계기로 나타난 지나친 恩惠意識이나 그로 인한 對外的 指向性은 이제까지 歷史의 活力이 주로 그 對外的 自主나 抵抗의 自主에서 조달

---

15) 이때 歷史의 實踐主体로 하여 빼앗긴 歷史는 36년이지만 歷史의 敘述主体를 빼앗김으로 하여 잃어야 했던 歷史는 5천년 民族史 전부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植民統治는 36년이었지만 植民史觀을 통하여 歷史에 입혔던 상처는 온 民族史 구석 구석이었음을 의미한다.

16) 여기서 우리의 경우 分斷은 단순한 國土의 分斷만이 아니고 民族의 分斷, 歷史의 分斷을 의미하고, 이때 바로 歷史의 分斷은 바로 歷史의 異質化라는 심각한 民族史의 矛盾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되어 왔던 民族史의 傳統에서 볼 때, 그리고 그같이 恩惠의 對象이 된 西歐는 바로 100년 전인 19세기 중반까지만 하여도 심각한 抵抗의 對象이었다는 狀況的 차이에서 볼 때 거기에서부터 입어야 하는 民族的 主体性的 제약 또한 결코 우리에게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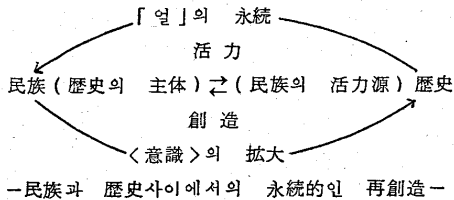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이같은 光復 民族史 앞에서 그 歷史的인 解答과 民族的인 解決을 주기 위하여 바로 民族史의 正統性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같은 民族史의 正統性은 論理的으로 우선 民族的 主体性和 연결을 갖는다. 이 때 民族的 主体性은 한마디로 歷史의 한 主体로서의 民族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正當性에 대한 名分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主体性은 民族이 제 歷史 앞에서 가장 올바른 主体 노릇을 하기 위한 名分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民族이 올바로 歷史의 主体 노릇을 할 때에만 歷史는 비로소 活力을 가질 수 있다는 實用性과 함께, 또한 民族은 歷史의 올바른 主体 노릇을 할 때에만 비로소 幸福할 수 있다는 더 없는 効率性을 수반하는 것이다.

여기서 民族的 主体性的의 論理는 民族과 歷史와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절실한 論理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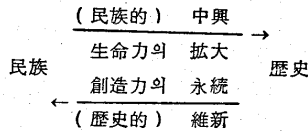
17) 즉, 18세기 西洋(天主教 등) 앞에서 關衛論, 1860년대 西洋(通商 강요 등) 앞에서 禦洋論, 그리고 1870년대 이후 西洋(通商과 膨脹) 앞에서 衛正斥邪 등 주로 抵抗과 排斥이라는 否定的 反應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여기서 우선 民族은 歷史 앞에 하나 밖에 없는 主体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歷史도 함께 終末을 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歷史는 民族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民族의 궁극적인 活力源이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 歷史의 資料 ( fyle )로서의 民族과 民族의 形態 ( form )로서의 歷史.

다음으로 民族은 意識 ( 歷史意識 )을 통하여 歷史 속으로 再創造될 때 歷史의 活力이 있는 만큼 無限한 自我로 擴大될 수 있고 歷史는 民族의 生命을 통하여 民族 앞에 계속 再創造될 때 그 生命은 民族이라는 主体를 통하여 永遠히 延長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 歷史의 永統的 主体로서의 民族과 民族의 無限한 生命源으로서의 歷史

이 論理의 結果는

民族은 歷史 앞에서 그 再創造를 통하여 무한히 自我를 擴大시켜 나가야 하며, 또 歷史는 언제나 民族을 통한 끊임없는 再創造로서 그 生命을 永遠히 深化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前者가 곧 歷史를 통한 民族의 中興이요, 後者가 곧 民族을 통한 歷史의 維新인 것이다.



따라서 民族과 歷史간의 再創造 論理에서 中興은 바로 民族的 主体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論理요, 維新은 곧 歷史的 活力의 측면을 강조하는 論理인 것이다.

그러나 歷史의 主体에는 民族 말고도 國家나 文化圈이 또한 包含되기 때문에 歷史의 무엇보다도 올바른 主体를 그 中心으로 삼는 民族史의 正統性은 여기서 또한 國家나 文化圈과 같은 主体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民族史의 正統性은 國家라는 측면에서의 올바른 主体를 위하여 다시 正統性 ( legitimacy )을 그리고 文化圈이라는 측면에서의 올바른 主体를



따라서 民族史의 正統性에서 보았을 때 國家는 그 正統性을 확인받기 위하여 먼저 民族的 主体性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며 文化的 伝通性에 密接히 연결되어야만 한다.

## 2. 歷史의 論理—歷史의 斷·統과 民族의 同·異質性

여기서 우리는 民族史의 正統性 앞에 심한 混亂을 일으키고 있는 저 北韓에 대하여 想起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저들은 왜 民族史 正統性에 대해 挑戰하고 저들의 論理는 왜 民族史 正統性의 論理에 混亂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러한 점 등은 우리들의 民族史 正統性의 論理 앞에서 너무도 선명히 지적될 수 있다.

그 첫째는 民族의 지나친 異質化로 하여 그같이 異質化된 民族으로는 적어도 5천년 韓國史의 主体 노릇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는 國史 앞에서의 民族的 主体性의 문제요,

그 둘째는 傳統 破壞라는 의식적인 唯物辯證法의 구조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歷史의 揄造와 變質로 인하여 그같은 歷史意識으로는 도저히 5천년 韓國史에 쌓여 온 創造力을 회복 계승시킬 수 없다는 文化的 傳統性의 문제이며

그 셋째는 그같이 하여 民族的 主体性이나 文化的 傳統性에 대한 근본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오직 全体主義라는 저 밖으로부터 온 異質的 이데올로기만을 國史 위에 강요하기 위하여 꾸며진 저들의 政治組織은 도저히 韓國史 속에서 그 正統性이 승인될 수 없다는 國家的 正統性의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民族的 主体性을 變質시키고 文化的 傳統性을 斷絶시켜서 그래서 民族史 속에서 그 國家的 正統性이 도리어 용인될 수 없는 北韓이란 歷史單位는 그렇기 때문에 5천년 우리들 民族史의 正統性과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같은 歷史單位는, 바로 民族的 主体性을 확립하고 文化的 傳統性을 회복함으로써, 5천년 歷史의 創造力과 연결되는 民族國家의 正統性을 세워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民族史의 正統性에 대하여는 그대로 커다란 挑戰과 矛盾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民族史的 正統性은 進歩와 自主라는 歷史의 2論理的 측면 앞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定立이 必要하게 된다.

즉, 歷史는 흔히들 말하듯이 斷絶속의 連續(不連續 속의 連續)이라 한다<sup>19)</sup> 이 때 連續은 歷史의 永統性을 보장해 주는 自主의 측면이요, 斷絶은 歷史의 새로운 창조력을 가능케 하는 進歩의 측면인 것이다.

따라서 連續의 기능은 歷史의 不變하는 本質에서 나오는 主体性이 담당하고 不連續의 기능은 歷史의 變化 위에서 나타나는 創造力과 연결된다. 歷史의 論理는 前者를 강조할 때 形式論理로, 그리고 後者를 강조할 때 辯証法論理로 나타난다. 그리고 歷史의 論理에서는 물론 이 兩面的 要素가 모두 必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民族史的 正統性 위에서는 분명히 變化보다는 主体가 그리고 不連續 보다는 連續이 그 主流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곧 우리들 民族史的 本質이 主体性(自主) 위에서의 創造(進歩)<sup>20)</sup>였고, 그래서 그 같은 歷史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形式論理的 基盤 위에서의 辯証法的 發展이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不變하는 單一民族으로서의 等質性 속에 5천년 民族史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歷史의 本質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結合되어 온 統一民族으로서 千年 이상의 統一民族史를 연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民族史的 底力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같은 民族史的 특질에서 볼 때 日帝 36년 이전의 韓民族과 그 뒤에 살

19) 그것은 Hegel 歷史哲學의 가장 중심적인 論理 背景이었다.

G.W. Hegel, Die Vernunft in der Geschichte herausge,  
V.G. Lasson, dritte Aufl.

20) 그것은 近代 民族主義 運動으로서의 3.1運動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民族的 측면에서 열린 帝國主義에 대한 抵抗은 그래서 國家的 측면에서 近代國家의 탄생(大韓臨政)이라는 더없는 創造力을 낳고 있었다.

고 있는 오늘의 韓民族은 그 사이에 비록 歷史의 斷絶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다른 民族으로 될 수 없고, 또 오늘날 斷絶民族史 속에서 歷史를 무리하게 斷絶시키려는 挑戰勢力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오늘의 韓民族이 그 歷史的 本質을 異質化 당하여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民族史의 正統성은 狀況이 아무리 변하였어도 韓民族은 여전히 5천년 民族史 속에서 韓民族이요, 千年 統一民族史를 계속 이어가야 할 韓民族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 民族史 앞에는 日帝 36년이라는 5천년 역사상 가장 큰 斷絶의 상처가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아직도 충분한 連續의 活力에 再創造되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가장 끔찍한 歷史의 斷絶 뒤에서 그에 대한 새로운 連續의 活力을 창조해 내기 위하여 우리들에게는 바로 光復 民族史가 무엇보다도 간절한 것이다.

여기에 이 글 처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民族은 自己라는 主体를 회복하기도 전에 그 民族의 本質을 異質化시키려는 또 다른 斷絶의 要素가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前者를 歷史의 斷絶이라 한다면, 後者は 民族의 異質化인 것이다.

이 때 歷史( 傳統)의 斷絶은 그대로 文化圈의 傳統性的 危機요, 民族의 異質化는 그대로 民族的 主体性的 危機( identity crisis )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民族의 主体性的 危機와 文化圈의 傳統性的 危機로 하여 새로 탄생된 民國의 國家的 正統性마저 危機에 빠질 때 그것은 그대로 5천년 우리들의 民族史 正統性的 危機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民族史의 正統성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恢復의 論理, 連續의 論理를 강조하게 된다. 그것은 곧 歷史적으로 光復의 論理를 의미하는 것이다 21) .

民族史 正統性的 회복이란 이 같은 光復을 위하여 여기서 다음과 같은 2方向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겠다.

---

21) 歷史의 올바른 회복이라는 光復民族史의 狀況의 이유에서만 보아도 우선 歷史의 斷絶과 變化만을 강조하는 唯物辯證法이 용납될 수 없음을 쉽게 알게 된다.

첫째는 光復의 主体요, 둘째는 光復의 方法인 것이다.

光復의 主体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歷史意識과 民族意識이며, 光復의 方法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正統性 회복의 前提로서의 歷史的 非正統에 대한 克服인 것이다.

歷史意識이 있을 때 自我는 5천년 歷史의 創造力 속으로 확대될 수 있고 民族意識이 있을 때 自我는 5천만 民族이라는 主体로서의 創造力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 兩者는 모두 오늘의 韓民族들로 하여금 5천년 歷史의 主体 노릇을 하게 할 수 있는 主体意識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歷史的 非正統의 克服으로서 우리는 歷史的 斷絶이라는 日帝 36년과 民族의 異質化라는 오늘의 挑戰勢力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主体 노릇을 하지 못하였던 지 歷史的 斷絶을 克服할 때 비로소 5천년 民族史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지금 돌아나고 있는 民族的 異質化의 요인을 제거할 때 비로소 歷史的 韓民族으로서의 自己 主体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22).

여기서 우리는 前者에 대한 歷史的 要因으로서 3.1 民族運動의 傳統을, 그리고 後者를 대한 現實的 主体로서 大韓民國의 正統性(legitimacy)을 내세우게 된다.

즉, 民族史 최초의 斷絶이었던 저 日帝 36년 동안에 그것을 克服(抵抗)하기 위한 새로운 創造力(進歩)으로서 民族이란 主体 속에서 솟아 올랐던 저 3.1 運動의 傳統은 그대로 바로 그 斷絶 이전의 5천년 民族史와 그 斷絶 이후의 오늘의 韓民族을 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活力이며, 그래서 그 3.1 運動의 民族的 主体성과 거기에서 탄생된 大韓臨時政府의 法統을 실질적으로 이

---

22) 따라서 우리들의 光復民族史에서도 辯證法的 克服은 요구된다. 그것은 곧 歷史的 主体를 빼앗아 갔던 저 歷史的 斷絶(植民統治時代)과 民族的 經驗을 異質化 시키고 있는 오늘의 歷史的 挑戰勢力(共產勢力) 앞에서인 것이다.

여기서 民族史의 正統性으로 보았을 때 저 異質勢力이 내세우고 있는 辯證法은 바로 自己들이 스스로 否定당하여야 할 自己否定的 論理인 것이다.



어 받은 오늘의 大韓民國은 바로 民族史를 光復시켜야 할 실질적 主体인 동시에 異質化의 混亂속에 있는 오늘의 韓民族의 本質을 確認 守護할 수 있는 唯一한 主体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大韓民國의 正統성이 5천만 韓民族의 主体성을 기반으로 하여 5천년 韓國史의 傳統성을 이어받는 民族史의 正統성이 확립될 때 바로 오늘의 5천만 韓民族은 올바른 韓國史의 主体, 즉 올바른 民族史의 主体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歷史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自主의 公式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바르지 못한 歷史의 克服이라는 점에서 또한 創造의 公式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 民族史의 正統성의 모습에는, 한편으로 歷史의 光復 民族의 主体성과 같은 自主의 측면과 함께 歷史의 維新, 民族의 中興과 같은 進歩의 측면이 아울러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前者를 民族史 正統성의 名分的 基盤이라 한다면, 後者は 바로 民族史 正統성의 効率的 側面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韓國史 속에서 歷史를 光復시킬 수 있는 民族의 主体성이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民族史 正統성의 기반을 상실한 것이요, 또한 그 같은 主体성을 비록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歷史의 維新과 民族의 中興을 이를 能力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民族史 正統성의 效率을 상실한 것이다.

여기서 歷史의 光復, 民族의 主体성을 오늘의 韓民族들이 지나온 5천년 民族史 앞에서 걸머져야 할 使命을 밝혀주는 것이고, 歷史의 維新, 民族의 中興 등은 그같은 民族이 앞으로 무궁한 民族史 앞에서 실천해야 할 使命들을 가리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民族史 正統성은 民族이란 主体가 그 歷史 속에서 마땅히 찾아야만 하는 最大의 歷史的 名分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이와 같이 民族이란 主体가 그 歷史 앞에서 반

드시 다하지 않으면 안 될 最大의 民族的 規範과 使命으로서 분명히 확  
인되어 지는 것이다.

# 韓國의 平和統一과 正統性 概念

李 聖 根  
國會議員 · 社 博

## 目 次

- I. 序 論
- II. 民族史의 正統性에 立脚한 平和統一의 概念
- III. 正統性 ( legitimacy ) 의 概念에서 본  
民族史와 社会体制의 重要性
- IV. 韓國의 民族史의 正統性
- V. 北韓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造作
- VI. 韓國의 社会体制上의 正統性

## I. 序 論

歷史적으로 볼 때에 하나의 民族이 分裂되어 제나라래로의 國家를 形成한 적도 있었는가 하면, 또한 數個의 民族이 結合되어 하나의 國家를 形成한 史實도 存在한다. 이와 같이 歷史의 흐름속에서 볼 때에 하나의 民族이 반드시 單一國家를 形成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論理는 正當化될 수 없다는 것이 自명한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에 있어서의 領土分斷의 境遇는 上記한 바와 같은 一般論理와는 本質의 意味를 달리한다는 點에서 問題가 있는 것이다. 즉, 歷史의 事實로서의 同一民族의 數個 國家形成이란 비록 民族的意志에 의하여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地理의 或는 歷史發展 가운데에서의 自然的 進步過程의 一環으로 數個의 國家形成으로 發展의 定着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各己 獨立된 社会 構成을 위한 歷史主体들의 意志에 의하여 各己 個別國家로 등장하는 등의 過

程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發展論理에 기초한 民族分割 내지는 拮散의 境遇와는 달리, 韓半島에 있어서의 分斷과 그로 인한 民族의 分裂은 極히 少數의 反民族的 意識分子를 除外하고는 모든 民族의 構成員의 意志나 願望과는 關係없이 第二次 世界大戰의 終戰 整理過程에서 파워 폴리틱스 (power politics) 의 희생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點에 그 特殊性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民族의 他律的인 分斷狀態는 悲劇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고 民族의 良心에 立脚한 모든 民族의 構成員들은 民族의 統一을 第一義的인 民族史的 課業으로 看做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이 韓民族의 統一이 民族史的 當爲性的 立場에서 至上의 課業으로 看做되고 있는 이상, 民族의 統一이 民族社會의 破綻을 前提로 한 武力的 戰爭이란 手段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할 性格의 課題가 아님은 自명한 事實이며, 따라서 真正 民族의 統一을 民族의 良心에서 希求한다면, 그 論理的 歸結은 곧 民族社會의 平和의 統一인 것이다.

한편, 分斷된 民族의 平和的인 再結合을 企圖하고, 統一된 民族社會의 發展을 企圖함에 있어서는 統一된 民族社會의 未來像과 關連하여 統一主體의 政統性이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民族의 正統性의 概念은 統一된 民族社會의 進路에 方向을 提示한다는 點에서만 重要한 것이 아니라, 全民族이 統一課業을 성취시켜 나아가는데 있어서의 原動力으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도 重要한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民族社會의 正統性概念에 關하여 再整理해 봄으로써 과연 民族統一의 主體는 어떠한 勢力이어야 하며 또한 왜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리고 統一은 어떠한 姿勢에서 이룩되어야 만 할 것이며, 그와 같은 民族統一이 民族史的으로 지니는 意味는 무엇인가,

---

1) 統一의 當爲性에 關하여서는 拙稿 「統一의 當爲性」 「民族의 統一」 (統一研究叢書 第2輯), (서울: 統一研究協會), 1972. 참고.

그리고 統一된 民族社會의 主軸은 어떤 데에 바탕을 두어야 만 할 것인가 등에 관한 暗示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 II. 民族史의 正統性에 立脚한 平和統一의 概念

위에서도 指適한 바와 같이 民族의 良心에 立脚한 統一論議는 필연적으로 平和的인 統一이라는데 歸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強調하였다. 그 이유는 民族統一이란 課題의 重要性이나 當爲性을 民族史의 발전과 直結되고 民族社會의 安定과 繁榮에 直結되는 點에서 찾아야 만 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民族社會의 파괴를 前提로 하고 民族史의 발전을 沮害하는 暴力이나 武力에 의한 統一은 否定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미 周知하는 바와 같이 民族의 「自主獨立」이다, 「解放」이다 등 상징적 슬로우건(slogan)으로 偽裝하고 實質的으로 民族史를 피로 물들게 하는 南侵을 자행하였음을 우리는 1950年6月25日의 北韓의 武力 南侵戰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sup>2)</sup>

우리는 北韓의 戰爭政策으로 말미암아 民族社會가 입은 엄청난 損失의 結果를 체험하였고, 民族史의 발전이 얼마나 兪중한 障害를 겪었는 지를 냉정히 評價해 볼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은 이와 같은 反民族의 戰爭을 분석하기 위하여 虛構「正義의 戰爭」<sup>3)</sup>이란 추상적 用語로 修飾함으로써 戰爭의 責任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人類歷史上 스스로가 저질은 侵略戰爭을 不義의 戰爭으로 자처한 例는 없었다. 비록 戰爭의 불가피성을 認定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戰爭 그 자체는 추악한 것이고 不道德한 것임을 認定하기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同族間에 戰爭을 자행하였을 때, 그 結果에 대하여서 民族의 良心이 存在한다면 民族史 앞에 罪意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金日成著作選集」(平壤)1967. pp.3.9.

3) 이와 같은 大衆意識 조작은 各種 大衆情報媒介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拙稿『金日成政治行態의 分析』(서울·國土統一院)1975年 參照.

그러나 北韓의 金日成一黨은 1970年代 國際情勢의 基軸이 「데탕트」(detent)으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第二의 民族相爭의 戰爭만을 窺視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大事變을 앞당겨 마지하자」느니, 「南朝鮮解放戰爭」을 앞당겨야 한다느니 등등은 그 修飾語의 樣相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武力에 의한 南侵과 民族社會의 파괴, 그리고 民族史의 흐름을 逆流시키겠다는 本質에는 差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反民族의 武力南侵의 企圖를 北韓은 소위 「平和統一」이란 言語의 象徴으로 분식하려 하고 있음을 看過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우리는 言語의 象徴으로서의 「平和統一」이 意味하는 實質的 內容에 關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事實상 北韓이 主張하는 「平和統一」이야말로 韓半島에서 平和가 定着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根本的 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로는 金日成 자신도 機會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北韓의 平和統一政策이란 本質적으로 全面的인 戰爭을 통한 武力南侵의 基초작업으로서, 南韓에 대한 敵對的인 心理戰, 外交戰, 經濟戰뿐 아니라 制限된 武裝세력 의 南派에 의한 韓國社會의 內部的 崩壞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와 같은 北韓의 偽裝平和政策과는 달리 韓國은 民族의 良心에 立脚하여 南北間의 現狀을 認定하는 土台 위에서 相互間의 信賴感의 회복을 위한 非政治的 측면으로부터의 交流를 시작하여 漸次 政治的, 軍事的 分野에 이르기까지 協商을 거듭하여 異質的 社會體制間의 間격을 좁혀 나감으로써 民族의 再統合으로 誘導해가자는 實質的 意味에 있어서의 平和統一政策을 主張하여 왔던 것이며 그와 같은 努力은 7.4 南北공동성명을 발의하고 6.23 宣言의 천명 등으로 나타났고, 또한 南北間의 赤十字會談을 통한 同一民族間의 人道的 問題의 妥結이란 努力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7.4 南北공동성명 직후부터 休戰線 以南으로까지 그들의 武力南侵을 위한 地下터널을 굴착하기 시작하였으며, 最近에 이르러서는 西海岸 一帶에서 軍事的 도발을 반복하고, 休戰線 一帶로 機甲師團등 軍事力을

4) 「金日成著作選集」op. cit., pp.202 ~ 203. 참조

집중시키는 등 休戰線 全域에서의 緊張을 極度로 高潮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南政策은 곧 그들이 民族史的 立場에서 民族의 分斷 問題를 正當하게 解決하겠다는 意志를 포기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民族의 良心에 背弛되는 方向에서 南北의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正當性도 찾아 볼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韓半島統一과 民族社會의 再結合을 위한 建設的이고 平和志向的인 統一政策은 民族의 良心과 民族史的 立場에서 볼 때에 그 正當性이 재확인 될 수 있는 것이다.

### III. 正統性 ( legitimacy ) 의 概念에서 본 民族史와 社會体制의 重要性

위에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韓半島에 있어서 真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平和的 過程에 의한 民族의 再統合을 試圖하고 있으며, 계속 그와 같은 民族의 良心에 立脚한 正當한 努力을 경주하여 온 것은 韓國밖에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이 北韓地域에 대하여 政治体制를 超越하여 民族史的 觀點에서 民族의 良心에 立脚한 平和政策을 견지하는 原因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北韓이 어찌하여 그들의 對南韓 자세에 있어서 真正한 意味에서의 平和的 政策을 展開치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本質的 측면을 答辯으로 提示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韓民族社會에 있어서의 正統性 ( legitimacy ) 이 韓國側에 存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正統性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간단히 定義하여, 國家의 正統性이란 一次的으로 그 國家의 全 構成員들이 國家主權의 行使에 대하여 正當하다고 認定하고 그 權威에 복종할 때, 그 國家나 政府는 비로소 正統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불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의 正統性의 概念은 歷史的으로 그 時代相과 社會相에 相應하여 그 內容을 달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때로는 國家統治의 權威와 權威에 대한 복종을 正當化하는데

있어서 神權的 統治論과 같은 超驗的 權威에 依拠한 적이 있는가 하면, 合法的 節次에 의한다고 하는 法的 正當性에 依拠한 적도 있고, 때로는 카리스마的 權威에 의거한 적도 있고 하여 時代的 空間的 條件에 따라 一律의 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比較的 東아시아社會에 있어서는 뒤늦게까지 王權的 權威가 正統性의 根幹을 形成하였는가 하면, 西歐社會에서는 市民社會의 出現과 自由主義의 隆盛과 함께, 오히려 政治權力의 分散과 相互 견제 체계 속에서 國家의 正統性을 찾으려는 경향을 질게 띠어 왔다.

이와 같은 歷史的 段階와 社會的 條件에 따라 正統性의 概念은 雜多한 內容으로 規定되어 왔으나 과연 20세기 後半期에 韓半島에 있어서의 正統性은 어디에다 기준을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結論은 民族史的인 正統性과 社會體制上의 正統性이란 두 가지 굵은 線이 中心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나라를 잃었던 민족으로서 새로 재출범한 우리로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鬭爭이 우리 近·現代民族史의 줄기를 이루는 것이며, 그와 같은 民族主義的 志向을 계승하는 社會가 韓半島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主張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모든 社會構成員이 自由롭게 主權行使에 참가할 수 있으며, 社會生活에서의 最大限의 國民福祉의 惠沢을 받을 수 있고, 社會正義가 支配하는 民主的 社會秩序가 確立된 社會에서 正統性을 찾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社會構成員이 자신의 歸屬感에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또한 소속되어 있는 社會를 正當한 社會라고 認識하고 있는 社會가 正統性을 지키고 있는 國家社會라고 定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意味에서 우리는 民族史的 正統性과 社會體制上의 正統性이란 측면에서 우리 社會가 正統性을 갖고 있음을 다시 천명코자 하는 것이다.



#### IV. 韓國의 民族史的 正統性

오늘날 韓半島의 南北關係에 있어서 民族을 代表하는 正統性的 所在가 어디인가를 明確히 하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事實은 民族史의 줄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民族史에 호르고 있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줄기가 近·現代史를 통하여 어떻게 展開되어 왔는가를 確認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위에 서 있는 社會가 어떠한가를 明確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民族的 傳統을 外面하고 民族的 生存을 外面한 民族史의 異端의 存在가 民族社會에서의 正統性을 主張할 수 없는 것임은 自명한 事實인 것이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民族史의 큰 줄기가 近·現代史를 통하여 어떻게 展開되어 왔는가를 考察함으로써 民族史的 正統性的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의 解答을 찾도록 略述하기로 한다.

東아시아 近代史에 있어서 그 어느 民族보다도 일찍이 民族운동을 강력히 展開시켜 나아간 것은 아마도 韓民族일 것이다. 그 理由로는 傳統的 文化的 뿌리가 깊은 社會로서는 가장 急激한 外勢의 侵略에 直面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全面的 植民地狀態로 轉落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韓民族의 이와 같은 民族운동은 그 時期에 따라서나 또는 階層的 区分에 따라서 民族운동의 內面的 意識狀況에는 變化가 있었으며, 결코 同一한 意識狀況에서 民族운동이 展開돼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主体的인 內面的 條件이 어떠한지 간에, 각 時期에 걸친 韓民族의 志向이 民族의 자주 獨立과 解放이란 被壓迫民族의 내셔널리즘에 立脚한 운동이었음에는 틀림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韓國社會가 日帝에 의하여 併合되었을 당시의 「義兵」들의 鬪爭은 강렬한 民族운동이었으나 그 主体들의 內面的狀況은 주로 儒敎의이거나 또는 前近代의인 君主主權에 대한 忠誠이란 意識이 支配的이었고, 또한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한 啓蒙主義에 立脚한 民族운동에 있어서는 近代의 西歐理念에 기초한 바 겠고, 3.1 민족독립운동의 指導級人士들은 압도적으로 韓大統領의

「民族自決主義」에 고무된 바 컸으며<sup>5)</sup> 一般적으로 西歐의 民主主義理念에 근거한 바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민족운동의 기반을 형성하였던 大衆의 레벨에 있어서의 主体들은 비록 前近代의 「忠誠」이란 意識을 암암리에 다수 간직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그들의 민족운동에의 情熱을 불러일으킨 기본적 意識상황은 民族社會에 대한 愛着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純朴한 내셔널리즘이었던 것이다. 그 후 1920年代나 1930年代를 통하여서도 계속 國內민족운동의 底流는 이와 같은 韓民族의 純朴한 내셔널리즘이 基調가 되어 民族운동의 母胎를 形成하여 왔던 것임이 사실이다. 다만 1920年代에 극히 일부 知識人들 가운데, 西歐의 無政府主義(anarchism)나 社會主義(socialism) 思想을 背景으로 民族運動에 加担하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로는 주로 海外에서 民族독립운동을 하여가는 과정에 있어서 각기 그 處한 社會의 환경과 條件에 따라 意識的 또는 無意識的으로 各種 思想的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을 받으며, 그와 같은 多樣한 主体의 條件을 각기 背景으로 하면서도 민족운동의 目標만은 거의 一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즉, 李東輝와 같은 사람은 비록 內面的으로는 社會主義의 受容과는 거리를 보이면서도 革命러시아의 民族운동 支援을 期待하였는가 하면, 李承晚은 民主主義理念에 立脚하여 西方 諸國에서 民族운동의 支援勢力을 求하였으며<sup>6)</sup> 金九는 시종일관 純朴한 내셔널리즘에 立脚하여 민족운동에 헌신하고 있었다.<sup>7)</sup>

5) 오늘날 北韓의 共產주의자들은 3.1 독립운동까지도 共產주의자들이 指導하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程度로 民族史의 正統性을 날조하려 하고 있으나 참아 그와같은 論調는 퍼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3.1 운동이 러시아革命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조금이라도 共產주의자들의 正統性을 認定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歷史的 事實이 証明하듯이 당시 3.1 운동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선언에 고무된 바는 컸으나 결코 10月革命에 영향을 받은 바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中國의 5.4 運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陳獨秀나 李大釗와 같이 數年 후 中共黨 창설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內面的 精神狀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6) 李承晚博士의 내셔널리즘에 관하여는 拙稿『韓國民族主義의 座標』 「白論叢」 13輯(서울: 延世大學校) pp.7 ~ 19 참조

7) 金九先生의 民族主義의 志向에 관하여는 拙稿『金九先生의 思想과 行動』(東京: 韓國研究院), 32号, 1974. pp. 46 ~ 70을 참조.

그러나 민족운동의 全過程을 통하여 볼 때에 역시 민족운동의 압도적 주류는 자유주의적 理念이나 純朴한 내셔널리즘에 立脚한 독립투쟁가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민족운동의 方式에 있어서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外交의 努力에 重點을 둔다든지 또는 抗日民族鬪爭에 重點을 둔다든지, 또는 民族社會의 內面的 近代化를 통한 底力의 增進이란 點에서 啓蒙운동에 重點을 둔다든지, 하는 等等 形態와 方式에 있어서의 差異를 보이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目標로 鬪爭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1930年代 이후 大陸 情勢를 반영하여 극히 일부의 민족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受容함과 同時에 민족운동을 이데올로기에 立脚한 「世界革命」의 一環으로 變質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中극적 目標에 있어서의 本質的 差異는 있었으나, 적어도 제한된 時期的 段階에 있어서 그들의 志向이 일단 민족운동의 客觀的 要求와 一致되는 點이 있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韓國의 近·現代民族史의 特徵은 外圧과 그에 대한 民族의 抗拒運動이었고 民族運動은 時代的 背景이나 地域的背景에 따라 多樣한 方法으로 多樣한 主體的 條件下에 展開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1945年 우리 民族이 光復을 맞이하였을 때, 民族의 指導者들은 相互 多樣한 思想的 背景과 多樣한 民族運動의 經驗을 背景으로 하여 새로운 建國의 마당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즉, 當時 國內으로는 宋鎮禹, 呂運亨, 金性洙, 張德秀, 曹晩植 諸先生과 같은 民族指導者들과, 李承晩박사를 中心으로 한 美州로부터 歸國한 民族運動家들, 그리고 金九先生을 비롯한 中國으로 부터의 民族運動家 그리고 극히 소수의 國內 左傾人士와 延安派 公산주의자들이 속속 歸國하게 되어 그야말로 民族運動이 얼마나 雜多한 背景下에 展開되어 왔는가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서울에는 한때 수백개의 政黨들이 看板을 거는 現象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8年 建國과 더불어 民族指導者들의 隊伍는 整頓되기 시작하였으며, 韓國의 民族運動은 자유·독립의 目標을 넘어서 民主主義社會 建設과 祖國의 급속한 産業化로 目標을 發展시키는 것이 었다.

이와 같이 韓民族의 民族運動家들은 光復이후 모두가 民族主義的 志向과 自由

民主主義精神에서 공통적인 목표점을 찾고, 信託統治 反對운동을 거쳐 民主韓國의 建設에 모두가 참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建國過程에 있어서는 비록 理念이 다른 공산당까지도 그 活動을 保障하고 民族社会 建設에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일부 국내와 공산주의자들은 光復이후 새로운 民主社会 建設의 機會를 스스로 拒否하고 民族的인 要求보다 이데올로기의 要求에 더욱 忠實하러 하였으며, 그 結果 스스로 民族의 隊列에서 이탈되어가고 급기야는 蘇聯의 統治下에 있던 38度線 以北으로 그들의 活動 터전을 옮겨갔다. 또한 延安出身 공산주의자들은 애초부터 소련 支配下의 38度線 이북을 土臺로 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要求를 달성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의 樣相은 南韓과는 전혀 달랐다. 즉, 소련은 北韓地域에서 韓民族의 民族史的 要請을 받아들일 意思는 初期부터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社会帝國主義의 統治政策을 具體的으로 實踐하는 데 급급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아시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衛星國家 形成이었던 것이다.<sup>8)</sup>

따라서 소련은 北韓地域을 韓民族社会에서 分離시켜 소련의 衛星國化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무엇보다도 모스크바에 忠實한 利用物을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中國의 滿洲軍閥에 소속되어 放浪하다가 소련으로 흘러들어온 金成柱(金日成)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당시 노마벙코 정치사령부는 이와같은 北韓의 分離와 소련 衛星國化의 產室이었던 것이다.

즉, 노마벙코 사령부는 모든 傳統的 民族運動家들은 물론, 中共의 영향하에 있던 관록있는 延安派 공산주의자들까지도 한낱 道具로만 사용하였지 결코 民族운동의 正統의 人物들을 保護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례로 除去하여 나아가는 方向으로 政策을 바꾸었던 것이다.<sup>9)</sup>

8) North Korea : A Case Study of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Dept. of State) 를 참고할 것.

9) 이 분야에 관하여는 美國務省 발간 上揭書와 함께 金昌順, 『北韓20年史』 등이 참고로 됨.

이와 같이 民族史의 正統性을 外面하고, 모스크바의 操作道具를 내세우고도 그것을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하여 노마넝코 사령부는 民族史의 날조행위를 犯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첫째로, 그들은 金成柱로 하여금 傳統的 民族獨立鬪爭家인 金日成의 이름을 盜用케 함으로써 指導力( leadership)의 正統性을 날조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歷史的 事實을 날조함으로써 金日成(舊 金成柱)의 地位를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하여 선전하려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마치고 金日成이 抗日투쟁을 단독으로 指揮하여 온 것처럼 날조했는가 하면 民族운동의 巨擘인양 분식하려 했던 것이다. 그 후 金日成 자신도 이 당시 날조되어 부여받기에 이른 통치권을 正統的인 것으로 印象지위 주기 위하여,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이니, “민족의 선봉”이었느니 또는 “자주노선”이니 등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민족운동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image)를 굳히기 위한 작업을 강력히 전개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新版 金日成은 韓國民族史에 있어서 民族主義的 指導者나 또는 土着的 공산주의자 내지는 海外에서 활동하던 關聯 있는 공산주의자들과도 因緣이 없는 人物로서, 단지 모스크바의 對北韓地域 操作을 위한 利用物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北韓에서의 新版 金日成의 獨裁化過程은 곧 民族主義 指導者들이나 國內派 公산주의자들 및 海外로부터의 公산주의자들인 延安派,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金日成의 忠實한 政治道具 이외의 모든 指導的 構成要素들을 除去하는 숙청의 連續을 낳았던 것으로서, 사실상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民族的 正統性 그 자체를 正面으로 否定하는 姿勢를 취하여 왔던 것이다.<sup>10)</sup>

이상에서 略述한 바와 같이 韓民族의 近·現代史에 있어서 主流를 形成하여

10) 金日成의 党内숙청에 관하여서는 數만은 자료들이 存在하나, 간략 명료한 것으로서는 梁好民『北韓의 소비에트화』[北韓共產化過程研究] (서울: 高麗大叢刊), 1972. pp. 15 ~ 17 을 참조할 것. 그 외에도 韓載德, 『金日成과 北韓의 實相』(서울·공산권문제연구소), 1969. 및 이동준 『歷史의 証人』(서울·內外문제연구소)와 金昌順『歷史의 証人』(서울·反共聯), 단기 4289年 등을 참고로 할 것.

은 民族運動史의 立場에서 볼 때에 그 根幹은 韓國社會로 連結되는 것이며 北韓의 金日成體制란 그와 같은 民族史의 줄기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소련의 北韓統治를 위한 편의적 道具의 性格에서 출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點에서 民族史的 正統性은 大韓民國에 의하여서만 主張될 수 있는 것임을 明確히 알 수 있는 것이다.

## V. 北韓에 있어서의 正統性的 造作

民族史的 立場에서 볼 때에 正統性을 主張할 수 있는 아무런 根拠도 없는 北韓의 指導層과, 그 후견인들은 소련軍의 統治下에서부터 이미 正統性을 主張할 根拠를 操作하기 위하여 民族史를 날조하고 歪曲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民主主義社會 原則에 逆行하여 金日成 獨裁體制를 그 기초 위에서 강화시킴으로써 사실상 金日成 個人的 조작된 歷史를 根拠로 全民族의 正統性과 결부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즉, 北韓에 있어서는 韓國의 近·現代史를 통하여 主流를 形成하는 國內外的으로 展開된 모든 民族獨立운동을 否認하여 버리고 金日成의 個人鬪爭記를 날조함으로써 우로 民族의 近·現代史와 바꾸어 놓는 역사를 벌였던 것이며, 따라서 正當한 民族史를 歪曲시키고 말살시키는 民族史的 犯罪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金日成個人崇拜에 의한 民族史的 正統性的 조작극은 결국 金日成 個人的 사상이 곧 北韓의 自稱正統性的 終焉를 意味한다는 그 短見性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點에서 그 操作의 限界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民族史的 날조와 並行하여 金日成은 韓民族의 내셔널리즘에 편승함으로써 正統性을 주장하여 보려는 갖가지 企圖를 하고 있으나<sup>11)</sup> 그 역시 失敗

11) 여기에 관하여는 金日成의 「主体」와 「自主」라는 言語的 「심볼」(symbol) 조작이 갖고 있는 本質이 무엇이냐를 分析한 拙稿『金日成 政治行態分析』 op.cit., pp. 52 ~ 57 을 참조할 것.

작업은 스스로가 告白한 「民族主義 否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 VI. 韓國의 社会体制上的 正統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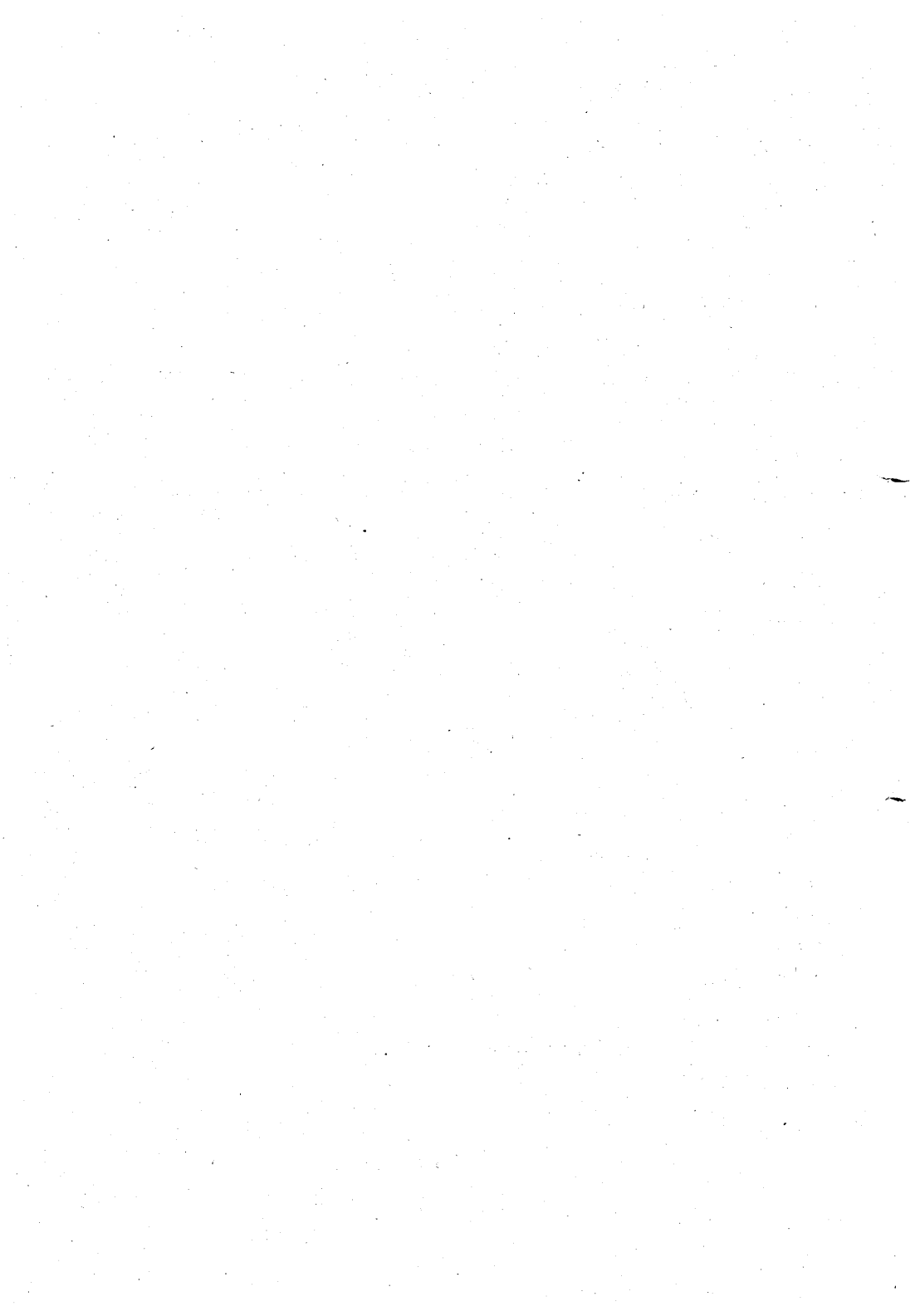
우리의 正統性은 社会体制上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실상 正統性이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社会体制의 優越性에 기초한 國民의 正統的 國家社会로서의 信任인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維新体制下에서의 韓國社会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正統性을 代表하는 社会体制임을 明確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政治体制에 있어서 韓國에서의 選舉制度, 立法, 司法, 行政制度 등의 운영에 있어서의 民主性은 北韓의 金日成 一人独裁下의 그것과는 對比될 수 없는 自由民主主義政治制度임이 事實이다. 또한 經濟制度에 있어서도 國民 各 個人의 創意力의 最大로 발휘케 하여 急速한 社会의 經濟的 建設과 아울러 國民들의 文化的 福祉生活을 保障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經濟体制와는 比較될 수 없음이 이내 經濟建設과 國民의 生活水準을 통하여 客觀的으로 證明되었다.

또한 社会正義의 측면에 있어서도, 金日成 一人独裁体制下에서 극도로 官僚化된 北韓社会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갖가지 反社会的 矛盾과 갈등, 党官僚化가 빚는 새로운 支配階級の 출현에 의한 새로운 階級社会와는 달리, 오늘날 維新韓國에 있어서는 一部社会的 不条理현상은 과감히 澈결되어 淨化되어가고 있으며, 國民 全体가 個性과 能力을 위주로 分配에 임할 수 있는 社会的 正義의 支配가 北韓社会와는 比較될 수 없을 정도로 優越하다는 諸 측면들을 감안하여 볼 때에, 우리는 우리 社会가 韓民族의 正統性을 계승하고 있는 優越한 社会体制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韓民族의 歷史的 正統성과 社会体制上에 있어서의 正統性이란 측면에서 우리는 民族의 平和的 統一에 의한 民族史의 肯定的 發展에 대한 責任感과 使命感을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12)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서울·極東문제연구소), 1974. pp. 183 ~ 184  
참조





# 韓國史에 있어서 正統性의 概念

李 鉉 淙  
國史編纂委員會 編史室長

## I

우리 歷史에서 展開된 正統의 概念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그 方面의 研究가 未盡할 뿐만 아니라 각각 存在하였던 各國別로, 또 各時代別로 편찬된 史書에 의하여 그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究明하여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다. 후세로 내려오던은 統一國家로 存在하였기 때문에 史書가 비교적 많아서 그같은 正統性을 언급한 精神面을 찾아 낼 수가 있다. 그러나 古代로 올라가면 無統一狀態下에 있었는데다가 各時代에 해당되는 史書마저 存存되어 있지 못하여 正統性을 찾아 보는데 더욱 힘든 일이다. 우리의 古代史研究가 복잡한 만큼이나 正統性을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後代의 史書에 의하여 소급해서 구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후대에 이루어진 史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것으로는 결국 金富軾의 三國史記와 그보다 약 150년後에 기록된 僧一然의 三國遺事에 의하여 古代國家, 다시 말하면 단군의 建國史話 이후 三國時代에 있었던 建國의 正統을 소급해서 살피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正統問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三國遺事に 실린 단군의 建國史話を 始原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10月3日을 國慶日인 開天節로 제정하여 단군의 거룩한 建國과 創造의 뜻을 받드는데서 우리 正統의 始原을 단군의 創造精神에 두고 그뜻을 이어받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歷史에서 正統에 대한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高麗時代부터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三國遺事に 실린 檀君의 건국 史話에서 엿볼 수가 있다. 그 이전의 三國 즉, 高句麗, 百濟, 新羅는 각각 그들의 건국에 있어서 어떠한

正統이나 傳統을 내세우고 있는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說話的인 요소를 내포한 三國의 建國史話는 과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正統性의 連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 三國의 建國史話가 어느 것이나 超人間的인 것이나 또는 우리 人間으로서의 未知의 世界로부터 오는 신성한데에 歸一시키고 있는데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正統性의 문제는 우리 歷史에서 말하는 檀君의 建國史話이외에도 三韓이라든지 그 뒤를 이은 三國이라든지 각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三韓의 경우는 記錄이나 史書編纂의 사실을 확인할 方法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三國時代에는 史書編纂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제각기 建國과 正統性을 밝혔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高句麗가 건국이래의 사실을 기록한 留記 100권이 있었고 嬰陽王 때에 太學博士 李文真으로 하여금 이것을 資料로 하여 「新集」 5권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百濟도 近肖古王 때에 博士 高興으로 하여금 「書記」를 편찬케 하였고 新羅는 眞興王때에 居叅夫로 하여금 國史를 편찬케 하였다는 記事가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비록 分國狀態에 있었다하더라도 일찍부터 史官을 두어 歷史를 編纂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각각 正統을 내세웠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같은 史書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도 伝存되지 못하여 알수 없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인 것이다.

高麗時代에 들어와서도 初期부터 史館을 두고서 史官들이 매일의 사실을 기록해 하는 동시에 實錄까지 편찬하였으나 兵火로 인해서 燒失되고 그후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이룩되어 완전한 史書로 평가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三國史의 내용이 오늘날까지 伝存함으로서 우리 歷史는 물론 그 속에 담겨진 精神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 歷史의 正統性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高麗以前의 正統性은 고려때 이룩된 史書, 주로 三國遺事に 의하여 古代의 正統性을 추리해 볼 수가 있으며, 그같은 두 史書를 통하여 고려가 志向한 正統性을 아울러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朝鮮王朝 때에도 많은 史書가 이룩되었으나 官撰이며 가장 基本이 되는 朝鮮王朝實錄에서는 그 正統을 확실히 내세우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룩된 個人들의 史書로서 儒敎至上主義 國家에서의 우리 歷史의 正統性을 어떻게 보고 志向하고 있었는가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 II

高麗王朝가 내세운 正統意識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요약된 것은 없으나 이제 高麗時代に 편찬된 史書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歷史意識을 통하여 正統意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것은 異論도 있어서 劃一的으로만 볼 수 없으나 그에 관한 論證을 綜合하여 高麗인들이 가졌던 正統意識을 규명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연관지어 보기로 한다.

高麗初期 다시 말하면 羅末麗初에 있어서 政治意識을 통하여 正統性을 본다면 中期以後로 넘어온 뒤와는 달리 약간씩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高麗初期人들은 新羅勢力圈외의 版圖에 있었으며, 그들은 주로 高句麗의 옛 땅의 領土內의 地方豪族들이었다. 그들은 高麗를 건국한 주체세력들로서 羅末에 反新羅運動으로 등장한 弓裔때부터 내려오던 反作用과 아울러 高句麗의 계승자로서 自負心을 갖고서 건국하였다. 그런 歷史意識은 高구려의 正統意識을 이어받으려는 것으로서 大陸으로의 進取的인 雄志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北進政策을 취하였으며 高구려 旧土收復의 정신을 내세웠다. 이미 7世紀末葉 高구려가 亡한 뒤에 그 옛땅에서는 高구려의 후예들이 地方地域에 渤海國을 세워 남쪽의 新羅와 對峙狀態를 이루면서 南北對立의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특히 海東盛國으로 중국에서까지 부르던 渤海國은 高구려의 계승자로서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高麗國王」이라는 名儀로 公式文書에까지 사용하였다. 渤海國이 멸망한 후에도 그 遺民들이 復興運動을 전개할 때에는 언제나 「東明旧壤」이라든가 「高麗遺黎」 등의 말로서 同族을 규합하고 對外的으로 호소해 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渤海와 新羅는 지리적으로 南北에서 對峙狀態를 이루었으나 다같이 国力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國家의 出現을 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高麗인 것이다. 특히 反新羅人의 集團地域에서 弓裔가 나타났으나 성격적인 결함과 혹독한 정치로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새롭게 高句麗의 계승자로서의 高麗가 豪族勢力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渤海때부터 계속하여 愛用하여 오던 高麗라는 명칭이 新興의 豪族勢力에 의하여 正式國號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高麗의 建國理念을 보더라도 高麗가 新羅의 境內에서 일어났고 그 文化를

토대로 하였지만 政治的으로는 新羅의 후계자라든가, 또는 新羅로 부터 禪讓을 받은 것으로 自處하거나 觀念지어 보려고 하지 않았다. 王建이 세운 고려는 泰封을 세운 弓裔를 대신하여 새로 일어난 革命政權인 만큼 계통상으로는 泰封을 계승한 후계자가 될 것이나 고려의 指導者들은 그같은 좁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미 國號가 표시하는 것처럼 고구려를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復興者로서 표방하고 나섰다. 물론 泰封도 한때는 松岳에 도읍하였을 때 國號를 고려라고 하였으며, 弓裔는 스스로 「이전에 新羅가 唐에 講兵하여 고구려를 破함으로서 옛 平壤의 旧都는 茂草가 자랐는바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고 한것은 역시 고구려의 부흥, 또는 고구려를 위한 報復運動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은 회고적인 감정을 표시하여 新羅의 版圖內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위한 가지 방법이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高麗의 지도자들은 고구려 復興을 일시적인 방편이나 일시적인 표방으로 삼지않고 그것을 하나의 建國理念으로 삼아서 항시 地方에대한 一大關心事로서 남쪽에 자리잡은 新羅에 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고 北進政策을 추진하여 나갔다. 그같은 결과는 王建太祖가 즉위 원년에 고구려의 옛 서울인 平壤을 중요시하여 大都護府로 삼고 이어서 西京으로 승격시켜 官庁과 官員을 두었으며 太祖 5년에는 良家子弟들을 평양으로 옮겨서 더욱 충실하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곳을 중심으로 北方開拓에 진력한데서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태조 15년에 이르러서는 西京을 完葺시켜서 民衆을 옮겨 충실케 하고 地方이 풍요하게 됨을 기다려 後三國을 평정한 후에 장차 이곳에 都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群臣에게 표명하였던 것이다.

高麗太祖가 이같이 南쪽 즉 新羅와 後百濟를 평정통일한 다음 西京을 都邑으로 정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뜻을 가진 것이라 보지만 高麗라는 國名과 같이 아울러서 생각하여 볼 때 고구려의 옛땅까지 復舊 統合 支配하여 보겠다는 위대한 뜻과 포부를 엿볼 수 있으며 한걸음 나아가 王建太祖가 갖는 역사적인 正統意識은 고구려의 계승자로서의 뜻을 확고히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評은 고려말의 위대한 儒學者이던 李齊賢도 王建太祖의 포부를 말하여 王建太祖는 東明의 즉, 고구려의 옛 땅을 자기집의 靑丘으로 삼으려는데 있었다고 평가하여

새로운 고려의 建国者들의 正統意識을 지적한 바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로서 보더라도 고려의 建国理念은 즉 歷史적으로 전개된 正統意識은 南쪽의 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回復하여야 되겠다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고구려 후계자로서의 正統意識은 뒤로 내려오면서 北方에서의 異民族이 강성하여짐에 따라 王建太祖의 포부와 正統意識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으나 그같은 意識은 傳承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契丹族의 강세와 東侵으로 인하여 완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羅末보다 약간 北進한데 불과한 것이었으나 傳統은 이어진 것이다. 그것은 고려 건국후 약 70년의 지난 成宗 12년(993 A.D.) 契丹의 제1차 侵入時에 고려의 대표자로 나간 內史侍郎徐熙가 敵陣에 들어가 敵將 蕭遜寧과 담판할 때 敵將은 徐熙에게 고려는 新羅땅에서 일어나 우리나라가 차지한 고구려의 옛 땅을 侵蝕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徐熙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後裔이다. 그러므로 國號를 고려라 하고 國都도 평양에 있으며 地界로 말하더라도 貴國의 東京(遼陽)도 우리의 境內에 있으니 어찌 우리더러 침략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여 그들을 불러가게 하였다. 물론 平壤이 國都라고 한 것은 臨機應變의인 말이라 하더라도 事前에 高麗政府內에서의 의견 교환이나 의견의 종합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与否는 알 수 없으나 國家代表로 나간 徐熙의 말속에서 고구려의 계승자로서의 正統性을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같은 正統意識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意識構造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徐熙의 주장은 긴박한 전쟁중에서 戰禍를 해소시켜 보려면은 오히려 契丹側의 주장에 同調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같은 반박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텐데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正統性의 의식구조가 고구려의 후계자로서 自勉하는 正統意識이 고려인의 마음속에 항상 충만되어 있는 증거라 보며 과거 화려했던 우리 民族의 활동무대를 수복하여 다시 세워보자는 歷史意識, 바꾸어 말해서 잠재되었던 正統意識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識은 고려 일대를 통하여 지도층의 理念이 되었던 것으로 석되기

에 접어든 시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麗末 元帝國이 쇠퇴할 때에 재빨리 고려의 北進政策이 적용되어 李成桂 등 諸將을 보내어 鴨綠江을 건너가 遼東의 중요한 곳인 遼陽 등지를 함락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 都評議使司가 元의 東寧府에 보낸 文書中에서도 「遼陽과 瀋陽(奉天)은 원래부터 本國의 옛 경계」라고 하였던 것에서도 그 뜻이 잘 나타나 있다. 그뿐만 아니라 李成桂가 金州 復州 등지에 내붙인 布告文書에서도 「무릇 遼河의 東쪽은 본국의 영토내에 사는 民衆」이라고 말하여 遼河東쪽의 땅을 우리나라의 옛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民族的 歷史的인 正統意識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건대 고려의 建國精神은 고구려의 부흥을 포함한 三國統一의 굳센 의욕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北方異民族의 강세로 인하여 半島를 再統一하는데 그쳤지만 그 후에 內亂이나 外侵속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통일된 民族과 國家로서 일관되었음은 고구려 옛땅을 수복한다는 적극적인 建國理念과 통일의욕과 外侵에 대한 저항 투쟁정신에서 나온 傳統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그 意志, 意識 그리고 正統性問題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구려의 後裔로서 北方收復을 위한 進取的인 면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渤海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구려의 후손들이 세웠다는 民族的 의식에서 親近感을 주었다. 이와 반대로 渤海를 滅亡시킨 契丹에 대해서는 이를 敵對視하고 그들이 선물로 보내온 駱駝는 開城의 萬夫橋에 매어서 굶주려 죽게하는 강경책까지 보였던 것이며 나라가 亡한 渤海遺民들은 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을 찾아 다정하게 흡수하였던 것이다. 그런 결과는 朝鮮王國 후기에 이르러 柳得恭같은 史家は 高麗가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史를 편찬하면서도 北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한 渤海史를 통일후의 신라사와 함께 편찬하지 않았던 사실은 잘못이라고 지적할만큼 되었지만 이말은 朝鮮王朝 후기에 있어서도 고구려를 계승한 正統意識은 그대로 계승되고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渤海의 文物을 흡수하고 그 遺民까지 받아들리면서 民族統一國家를 北으로 확대시키며 渤海와 더불어 고려 왕조의 歷史的인 正統性을 고구려에서 계승된 것으로 확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접어들어서는 歷史繼承意識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 三國史記가 편찬될 때까지는 고구려 계승자로서 그 의식과 正統性이 뚜렷하게 나타

났다. 仁宗이 金富弼에게 三國史記의 편찬을 명하였을 때 「지금의 學士 大夫가 五經 諸子의 책라든가 秦漢歷代의 史記에 대해서는 혹 널리 통하여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茫然히 그 始末을 알지 못하니 매우 遺憾된 일이다」라고 말한데서 高麗의 지도층이 自我意識, 自我窺見의 거룩한 동기에서 三國史記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같은 역사적인 意識이 없었더라면 이같은 正史類마저 편찬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데 高麗中期에 와서 三國史記와 같은 歷史書가 편찬되게 되었을 무렵의 時代背景은 그 분위기가 아주 달랐던 것이다. 고려구의 옛 영역내에서 地方豪族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던 건국의 主体勢力과는 달리 新羅의 文物과 傳統을 증지로 삼고 내려오던 文臣貴族들이 政局을 담당 지배한 다음부터 契丹과 抗戰하면서도 불굴의 民族意識과 기개를 보였던 이전까지의 자세와는 아주 달리 女真과 강화하여 국가적인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편안을 도모하였던 상황아래 놓여있었다. 고려중기에 이르러 儒敎의인 政治體制의 理念에 따라 극성을 보이게 된 文臣貴族政權은 王朝에 기생하는 王都中心, 中央貴族中心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地方的 豪族의인 社會勢力의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獨善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社會民衆으로부터 유리되어 온 貴族의 支配體制는 그들의 취약성을 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體制內의 반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까지 그토록 야망시하고 알잡아오던 女真에 대해서 까지도 이제에는 완전히 主客이 전도되어 臣事關係를 맺어야만 되는 치욕을 당하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三國史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은 門閥中心, 文治의 지나친 偏重은 귀족정권을 붕괴시키는 武臣政變으로 나타나 高麗전기와는 다른 性格의 時期를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어떻던 三國史記에 나타난 正統意識은 新羅本位 新羅中心 主義의 편찬물로서 고려초기에 渤海를 同質의인 우리 民族으로 파악하던 생각과는 달리 渤海를 송두리째 빼어놓고서 南으로 오직 新羅만을 고려에 항복하여 망할때까지 서술하여서 新羅를 高麗에 직결시켜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三國史記를 볼 때, 다시 말하여 고려중기 이후에 이르러서의 正統性을 찾을때 三國史記에 의존하는 限 新羅를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은 歷史繼承意識과 正統性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초기의 進取的인 면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高麗社會는 正統性을 찾아 볼 때 고구려가 아니라 新羅로 되어 우리역사가 韓半島에 머무르게 하는 轉換點을 주기도 한 것이다. 이같은 正統論의 전환은 大陸의 우리 옛 땅을 찾는다는 雄大한 포부는 살아 지고 이 땅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소극적인 生活方式으로의 전환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金富軾은 三國史記를 편찬하고 그 끝의 史論에서 新羅의 文物發展과 歷代王의 治績을 칭송하고 敬順王의 捲土歸附를 큰 공덕으로 찬양한 점 등은 신라의 正統과 傳統을 계승한 歷史意識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공덕으로 新羅外孫으로서 顯宗이 王位에 오르게 되었고 이후의 王統은 모두 그 子孫들이라고 하여 新羅는 사실상 고려안에서 존속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중기 이후 三國史記의 편찬을 계기로 본 歷史의 계승의식, 바꾸어 말하면 고려의 正統性의 개념은 金富軾이 新羅系統의 人物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의 歷史的인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건국초기에 있어서 大陸으로의 웅대한 꿈은 北方에서의 異民族의 출현과 강대한 힘으로 인하여 막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리어 侵略을 받아 위축되고 또 때로는 굴욕적인 강화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高麗人의 본뜻과는 달리 어느듯 他律的으로 半島內에 局限되어버린 고려의 처지가 半島國家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속에서 半島國家였던 新羅의 文物을 찬양하면서 新羅의 계승자로서 自認치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서 新羅의 正統性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환케 된 것이다. 武臣執政後 李奎報의 東明王篇에서는 고구려의 東明王의 建國說話속에서 天下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聖人의 都邑이었음을 알게 하겠다고 한것은 고려를 다시 고구려에 연결시키려는 意圖가 明白히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意識의 싹은 蒙古의 침략으로 다시금 수그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에 있어서 正統意識은 위에서 時代別로 나누어 보았지만 이와는 반대로 政治史的인면과 文化史的인 면의 두가지 면에서도 正統意識이 나타났음을 드는 경우도 있다. 政治的, 歷史的인 正統意識은 고려가 國号부터 고려라 하고 平壤을 西京이라 하면서 취한 北方進出政策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표방한 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宋나라 使臣으로 高麗에 왔다가서 펴낸 高麗圖經을 보면 徐統이 三國史記의 편찬 조금전에 고려에 와서 見聞한 바를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서 거기에 의하면 고려의 歷史의 계통을 세술하는데 新羅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고구려의 역사를 세술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 王氏高麗라 서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때 徐鏡은 高麗圖經을 편찬하는 自己意識이나 自己意恩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당시 高麗知識階級이나 各기가 外國使節로서 접할 수 있는 高麗의 政府高位階級이나 學者등 高麗의 제도층급에 속하는 인물들과의 접촉과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것을 그대로 쓴 것에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바 外國人까지도 正統性을 고구려에 두고 있음을 밝힌 것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宋史 高麗傳에도 맨처음에 高麗의 王統이 고구려의 것을 계승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 역시 그들의 主觀이라기 보다는 오직 高麗의 지식인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얻은 正統意識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고려중기에 이르러서도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歷史的으로나 정치적으로는 高麗의 正統意識이 고구려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 文化史의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正統意識이다. 예 文化面은 新羅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고려의 건국 초기에 벌써 新羅의 文人들이 대대적으로 고려에 귀부하였기 때문에 開城은 新羅文化의 移植地와 같은 느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新羅王族의 外孫인 顯宗에게 예르세는 新羅의 學者 薛聰을 弘儒侯, 崔致遠을 文昌侯로 追封하여 文廟配享을 한 것 등은 특히 주목되는 일이다. 이같은 일은 百濟나 고구려에도 있었을 것이나 오직 新羅의 文人만을 이토록 대우한 것은 바로 文化意識面에서 新羅의 正統을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理論인 것이다.

위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三國時代에서 新羅統一을 거쳐 後三國을 高麗가 再統一하는 과정을 이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歷史繼承의 正統意識이 역시 高句麗와 新羅를 이어받은 점에서는 共通點으로 나타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서 고려가 이어받은 正統意識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三國遺事에 흐르고 있는 正統性은 우리 歷史의 始原을 단군으로 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民族史의 시작이 自主性과 文化의 優位性을 강조하고 있다. 단군조선을 古朝鮮으로 삼고 中國歷史의 始祖라는 堯와 같은 시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단군을 직접 天, 즉 하늘에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國祖로서 단군에 관한 史話는 三國遺事이전의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儒敎의 이념으로 禮敎의 시초를 箕子에서 찾아 온연중에 中國에 연결시키고 있는 점도 있으나 三國遺事는 箕子를 檀君의 古朝鮮族에 흡수시켜 놓고서 國史의 계통을 잡으며 三國時代를 대체로 이뒤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歷史가 天과 직결된 神聖한 것이며 또 그 같은 天孫民族으로서 自主의 傳承의 유구한 歷史의 傳統을 강조하여 正統意識을 後代에 계승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歷史意識은 三國遺事を 펴낸 一然과 동시대에 살았던 李承休도 帝王韻記에서 檀君은 堯와 같은 時代의 對等한 國祖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新羅, 高句麗, 南北沃沮, 東北扶餘, 예맥 등 東方의 모든 同族國家가 檀君을 공통된 始祖로 모시는 우리 역사속에 들어 놓았음을 물론 종전까지 도의 의시하여 온 渤海까지도 우리 역사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三國遺事나 帝王韻記는 中國에 대한 우리역사의 對等성과 유구한 歷史성과 自主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며 自主성의 강조는 獨立自主의 民族意識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歷史의 전개에 있어서 그 正統성을 하늘에 두고 우리는 天孫民族으로서 歷史傳統의 독자적인 對等성을 보여 選擇된 民族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實世界와 敎信仰世界, 國家政治와 庶民生活,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天地自然의 渾然一體的 조화속에서 우리의 歷史가 전개되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설한 것이다. 그리하여 僧一然은 우리의 上古史를 自主의 立場에서 理解해 보려는 努力이 나타난 것이며, 韓國史의 독자적인 體系를 세워 歷史의 傳統을 지니게 하였으며 民族的 自主意識을 나타내는 正統을 세우는데 이바지 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 III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正統思想이 고려 때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가지 史書들 중에서도 民族國家를 위한 민족적인 史書에 나타나는 正統思想을 어떻게 나타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三國史節要의 序文에는 「權近이 綱目만든 법을 본받아 史略을 만들었는데 그때 三國의 세력이

서로 비등함으로 어떤 나라를 주로 삼을가에 적당한 방법이 없음을 걱정하다가 新羅가 먼저 일어나고 맨후에 亡하였다는 이유로써 新羅를 주로 삼았으나 臣의 생각에는 吳·魏·蜀 三國의 例를 상고하여 보건대 司馬溫公이 魏로서 주로 삼은것은 이어받음을 중히 여긴것이고 朱子가 蜀으로서 주로 삼은것은 正統을 존중함이었으나 지금에 와서 先起後滅하였다고 주로 삼는다함은 以前 歷史를 상고하여 証拏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三國史節要 撰修의 주동적 역할을 하였던 徐居正의 序文이니 그의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建國初에 正統論問題가 權近에 의하여 착목된 것을 짐작케 한다 그는 三國鼎立狀態에서의 正統問題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便宜主義의 처리를 하여 별다른 關心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三國遺事와 같은 歷史意識에서 檀君朝鮮을 始原으로 하는 民族史大系를 설정한 점은 주목할만하고 그후 三國史節要나 東國通鑑도 모두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던 것이다. 民族史 서술에 있어서 大統 正統을 세워야 되겠다는 의도는 이들 編史從事官들의 생각은 아니었다. 世祖가 東國通鑑의 편찬을 下命할 때에 우리나라의 歷史가 錯亂 無統하니 내가 東國史略, 三國史, 高麗史 등을 참작損益하여 한 책을 勒成하여 考閱에 便코자 한다는 下教등을 본다면 朝鮮王朝 초기에도 君主들에게 그같은 正統思想의 일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王朝의 開創에 대하여 合理化시키기 위한 程朱學的 士大夫 支配階層의 정치적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朝鮮王朝의 正統을 어디에나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韓國史의 계승문제에 대해서는 通史의인 체계를 이룩하기 위한 계통관계에 있어서 檀君朝鮮·箕子朝鮮, 衛滿朝鮮, 三韓, 三國, 統一新羅로 잡았으며 三韓까지를 外紀로 하고 그후를 三國紀로 編修한점은 東國史略과 東國通鑑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다가 朝鮮王朝 후기에 이르러 實學의 대두 발전 전개와 더불어 在野學者들의 훌륭한 史書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 歷史에서 正統성이 강조된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中國史書는 열심히 읽으면서도 우리 歷史를 읽거나 배우는 것이 度外視되었던 이전의 封建時代에 있어서 政治理念이나 教育理念이 바로 서지 못하였으며 史書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中國中心主義의인 歷史觀에 입각하여 서술되었고 우리 民族 本位의 역사서술의 정신이 결핍되었다. 그런데서 우리 歷史는 民衆들로 부터도 소외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壬辰·丙子兩亂後에

실학자들의 비판정신과 實用 實證의 利用厚生, 實事求是의 唱導는 朝鮮王朝 後期の 學界에 새로운 관념한 맛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 이런 환경속에서 새롭게 이룩된 史書의 하나가 바로 安鼎福(1712 ~ 1791)이 1756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1970년에 이룩한 歷史綱目의 東史綱目이다.

東史綱目は 編年體의 通史로서 體制上으로 綱과 目을 설정하여 敘述의 效果를 거두었고 내용상으로 우리나라 歷史의 독자적 체통을 세워 종전까지의 歷史書의 總論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東史綱目は 經世致用學派의 學問的인 달성가운데 가장 큰 업적의 하나로서 그들 學派의 史觀과 史論을 집약적으로 이루어 놓았음은 물론 個個의 史實의 성실한 고증은 선구적인 역할까지 하여 주었던 것이다.

安鼎福은 그의 史觀이나 史論이 星湖 李翼의 것을 받아드려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특히 星湖의 「三韓正統論」은 安鼎福의 가장 큰 立論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東史綱目は 이 正統論을 먼저 취급하였다. 正統論은 中國史家들이 中國皇帝를 세계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歷代로 교체되는 王朝를 일관적인 相統系譜로 줄을 대어 正統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만드는 基本意圖와 목적은 現存하는 自己王朝의 政權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中國以外的 다른 地域에서 正統이란 논의하기조차 어려운 일인데 東史綱目は 그같은 체계에서 脫皮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正統을 설정하고 檀君, 箕子, 馬韓, 新羅, (文武王9年 이후), 高麗(太祖19年 이후)를 正統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中國中心의 歷史觀에서 탈피하여 對等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歷史의 獨自性을 살리려는 意圖일 뿐만 아니라 正統論에 의한 歷史發展主流의 系統化는 우리나라 歷史學을 체계적으로 파악케 하는데까지 제시하여 주었다.

東史綱目は 東國通鑑의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첫째로 東國通鑑에서 檀君朝鮮, 箕子朝鮮뒤에 衛滿朝鮮을 붙여서 三朝鮮으로 삼는 것이 잘못이라 지적하였다. 그는 衛滿이 僭賊이니까 衛滿 대신에 馬韓을 正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둘째는 東國通鑑에서 檀君과 箕子를 모두 外紀에 넣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檀君이 創業하였으며 이어 箕子が 처음으로 文物을 일으켰는데 史實이 없어졌다고 하여 「伝記雜書」의 것을 수록한 中國의 外紀에 同質視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安鼎福은 東史綱目에서 檀君 箕子の 事實性을 강조하여 우리나라 歷史年代의 상층을 그만큼 높여 놓았던 것이

다. 그는 東史綱目を 통하여 外來侵略者를 격퇴시킨 애국적인 사실들을 들어 忠臣과 名將들의 빛나는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高句麗의 對隋·唐戰爭과 高麗의 對契丹·蒙古와의 전쟁에서 祖國을 수호한 民衆들의 분투와 乙支文德, 姜邯贊, 徐熙, 등의 훌륭한 업적을 찬양하고 新羅統一以後 文治를 숭상한 나머지 國防을 소홀히 하여 국가가 취약해진 점을 비판하고 封建國家의 對民施策에 대해서도 그것은 착취로 일관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도외시 되었음을 한탄하면서 愛民思想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제 朝鮮後期에 이르러\* 個人著書로서 가장 대표되는 文書로서 順菴 安鼎福의 東史綱目에서 檀君을 國祖로 삼고 우리 歷史上의 正統의 始原으로 삼아 활발한 理論을 전개시켰던 正統의 系譜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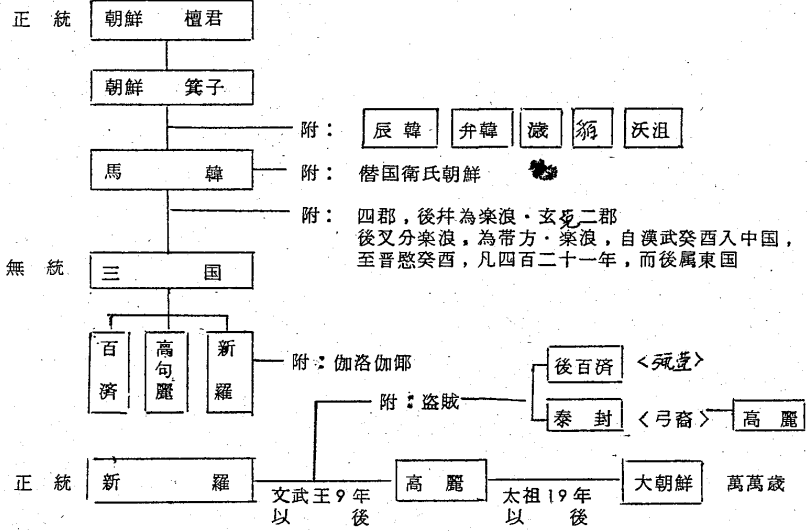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참조)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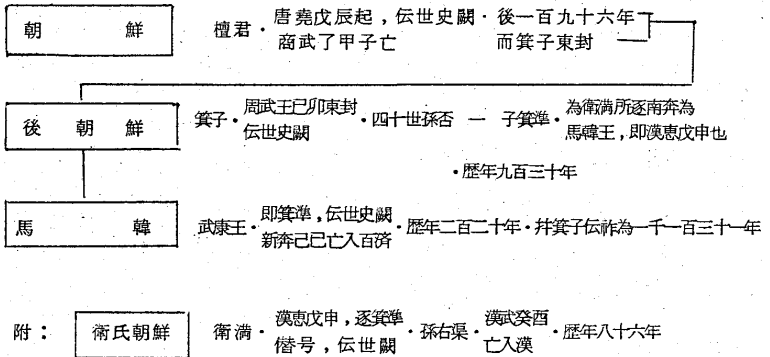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檀君을 우리나라 최초의 創業君主로 君臨한 古朝鮮의 始祖임이 歷代로 강조되었으며 우리 民族의 統一意識으로 굳혀졌고 우리 民族의 正統으로 삼아온 것이다. 朝鮮王朝는 高麗처럼 高句麗의 계승 正統으로 삼아온 것과는 달리 正統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高句麗 新羅 百濟의 始祖廟를 각각 옛 都邑地인 平壤 慶州 全州에 설치하여 후하게 祭祀를 지내며 高麗王朝의 高麗廟를 麻田에 두어 國家祭祀의 儀禮를 다하게 한데서 볼 때 朝鮮歷代의 正統과 傳統을 완전하게 이어받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그리하여 19世紀 外勢侵略이 시작되자 自強獨立의 民族意識으로 굳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日帝侵略下에서도 檀君崇拜는 바로 나라를 되찾는 獨立運動으로 전개되었고 그 正統을 이어받아 民族意識으로 더욱 굳혀졌다. 현재도 우리는 檀君의 創業을 開天節로 정하여 創業精神과 民族의 正統을 계승해 나가고 새로운 歷史發展에 宥與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여러 論文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을 종합정리했으며 註는 생략했다)

1. 東國歷代 伝授之圖



2. 檀君·箕子伝世之圖 附：衛氏



# 民族史的으로 본 大韓民國의 正統性

李 丙 燾  
学 術 院 会 長

## I

오늘의 우리 民族社会가 不幸히도 分断된 狀態로 놓여 있지만, 나의 眼目으로 볼 때는 一時的인 現象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再統一의 기쁨을 마지할 時期와 宿命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우리의 民族社会가 過去에 幾多의 波瀾과 曲折을 겪어 오면서도 오히려 維持發展을 계속하여 온 裏面에는 그 所以然의 어떤 原理와 正統性이 全失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다. 이 對目的으로 存在한 原理와 正統性의 目的에 順應하여 이를 잘 遵守하는 個人이나 國家는 반드시 榮華와 繁榮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無視하거나 違背하는 分子와 集團은 언제든지 落伍者가 되거나 自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運命을 지니게 마련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나는 우리의 追求하는바 統一이 단지 時間問題에 불과하다고 樂觀하는 터이다.

그러면 우리의 歷史를 꿰뚫어 훑어오는 本性이랄까 正統的 原理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힐 必要가 있다. 이것은 단지 過去 우리의 歷史를 檢討하고 吟味해 본 結果에서 뿐만 아니라 現在 우리 生活 속에 生生히 움직이고 있는 本然性(本性)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年來 세가지의 類型을 抽出해 보았다. 하나는 平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는 不義 不正에 대한 排擊精神이고, 또 하나는 教育과 文化를 숭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 세가지에 대하여 좀더 具體的인 說明을 하면서 주워진 表顯의 意圖하는바 意義를 披瀝해 볼까 한다.

## II

古來로 韓國民族은 農耕을 기본 產業으로 하여 土地에 定着하고 自給自足の 生活을 營爲하여 왔다. 凶年이 들어도 나무 열매나 풀 뿌리를 캐먹으면서 生活을 지탱해 왔고 오늘날과 같이 남의 援助를 구하거나 얻은 일은 없었다. 도리어 平年에는 對馬島의 倭人과 北쪽의 女真族屬에게 「回謝의 形式」으로 生活必需品(米穀, 衣服資料) 등을 대어 준 일이 있었다. 이러한 農耕民族이기 때문에 鄉土를 사랑하고 平和와 文化를 愛護해온 것은 당연한 事實이었다. 물론 平和를 사랑하는 生活의 一面에는 多少 樂天의인 정도 없지 않다. 그래서 놀기를 좋아하는 生活性格을 가지고 있다. 어느 民族이고 놀기를 싫어하는 民族이 있으리요 만은, 우리 民族은 좀더 유심한 感이 없지 않다. 卑近한 例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民謠中の 하나인 것이다. 즉「노자 노자 젊어노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하는 노래가 그것인데, 나의 寡聞으로는 다른 民族社會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民謠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절로 속이 따가워 전되기 어려운 적이 많다. 젊어서는 일을 많이 하고 늙어서 놀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나로 하여금 그런 意味로 이 노래를 고치라면 「노자 노자 늙어 노자 젊어서는 힘껏 일하세」라고.

또 하나의 例로는 옛날 이야기지만, 新羅末期에 國土가 또다시 三分되어 慶尙道一帶는 대체로 新羅本土로 줄어들고 西쪽의 忠淸一部와 全羅道는 眞堂의 後百濟가 차지하고 京畿道와 江原一帶는 弓裔의 泰封國이 樹立되었다가 그의 部下(道相)인 王建一派의 「易姓革命」에 의하여 高麗國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高麗는 孤弱한 新羅와 親善關係를 맺고 있었으나, 好戰의인 後百濟는 高麗와 對立狀態로 있었고 新羅와는 자주 衝突을 일으켜 虎視眈眈 노리고 있었다. 新羅로서는 몹시 危機感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景哀王은 하루, 妃嬪·宗戚과 기타 重臣들을 데리고 紇石亭에 나아가 流觴曲水の 놀이를 베풀고 취흥이 도도할 때에 별안간 後百濟主 眞堂(견훤)이 風雨와 같이 몰아 新羅 서울에 쳐들어 왔다. 흥겨워 놀던 이들은 그만 풍비백산(風飛石散), 王은 잠시 避身하였다가 마



침내 사로잡혀서 自盡의 逼迫을 당하고 妃嬪들은 옥을 보고, 伝來의 宝物들은 掠奪을 입는 등, 기막힌 患難을 당하였다. 凱旋은 凱旋을 부르고 돌아가는 途中에서 新羅를 구원하러 달려오는 高麗太祖와 一戰, 이를 이기고 快快히 돌아갔다. 그러나 後日 麗太祖一派의 偉大한 政略과 力量에 의해서 再統一의 大業을 이루고 말았지만 위의 景哀王의 亂 石亨 놀이는 너무도 樂天의인 放慮에서 招來된 幻滅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와 같이 우리 民族은 平和를 사랑하는 一面에 樂天性과 放心 혹은 彌縫主義에서 大事를 그르치는 일이 많은 것은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대개 農耕民族은 生活의 安定性을 얻어 郷土를 사랑하고 現實을 즐기고 平和와 文化를 사랑한 까닭에 별로 他民族에 대하여 侵略을 일삼지는 아니하였다. 이것이 저 游牧民族인 匈奴, 契丹, 蒙古族이나 半狩獵民族인 肅慎, 挹婁, 女真族과는 대단히 다른 점이다. 이들 狩獵游牧의인 民族은 移動性을 갖고 侵襲을 좋아하여 戔戔 定着한 우리 나라와 중국에 대하여 侵略行爲를 되풀이 하였던 것이다.

나는 游牧侵略民族과 農耕平和民族과의 性格의 差를 表現하는 한 興味있는 挿話(에피소드)를 여기에 提示하려고 한다. 그것은 高麗가 蒙古와의 오랫동안 抗戰 끝에 할 수 없이 講和를 締結하고 그들의 干渉과 節制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의 이야기였다.

즉 蒙將 忻(흔)都가 高麗의 서울인 開城에 와서 어느날 我將 金方慶과 만나 談話하고 있을 때 그가 部下를 시켜 堂下에 있는 새 새끼(雀雛)를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여 손으로 회롱하다가 불안간 땅에 떨어쳐 죽인 후 方慶에게 향하여 어떠하냐고 感想을 물었다. 方慶이 가로되 農夫가 괴로워 하는 것은 이 물건(새 새끼=雀雛)이 모여 들어 禾穀을 조아 먹는 까닭인데 將軍이 지금 이것을 잡아죽이니 또한 百姓을 애달피 여기는 뜻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忻都는 내가 東人(高麗人)을 봄에 다 글(書)을 알고 仏을 믿음이 漢兒(中國人)와 같아 戔戔 우리(蒙古)를 업신여기고 蒙古人은 殺戮을 業으로 하니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罪惡에 賦與한 것은 殺戮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를 順受할 따름이니 하늘이 罪로 여기지 아니할 것

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蒙古人에게 奴隸노릇을 하게 된 所以라고 말할 일이 있었다. (高麗史 金方慶傳). 이것은 물론 당시 傲慢無禮한 蒙古將領의 우리에게 대한 一種의 侮辱의인 態度요, 言辭이었다. 또 金方慶의 말도 一時를 彌縫한 君子人的의 權辭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한토막의 插話에서도 農耕民族과 遊牧民族과의 兩 反對 性格의 對照의인 表現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 III

이러한 農耕民族으로서 우리는 上述과 같이 郷土와 現實을 重히 여기고 平和와 文化를 愛護하는 만큼, 우리의 領土를 侵害하거나 우리의 生活를 威脅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연 이를 排擊하는데 鬪爭을 不辭하여 왔었다. 그러므로 한국 民族으로서 侵略行爲나 激烈한 鬪爭이 있었다면 그것은 自己의 旧疆을 回復코자 또는 既存版圖를 確保코자 하는 意慾과, 또 우리의 平和와, 文化와, 獨立을 侵害하는 不義 不正에 대한 排擊行爲, 膺懲行爲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단 外敵에만 限한 것은 아니다. 對內的으로 社會의 安寧秩序를 破壞하는 무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古來로 무수히 거듭해 온 外國 侵略者에 대하여 無抵抗으로 손을 든 일은 한번도 없었다. 반드시 그때마다 한바탕 武力戰이나, 혹은 外交戰으로써 용감히 抗爭함이 보통이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國史가 昭然히 証明하고 있는 바이다. 저 옛날 衛氏朝鮮과 같은 조그만 나라로서도 漢帝國의 水陸大軍의 侵入을 맞이하여 약 1年동안이나 軍戡 抗爭을 계속한 것이라든지, 高句麗對隋 唐戰爭, 또 高麗對契丹戰爭, 對蒙古長期戰爭, 近朝의 壬辰倭亂, 丙子胡亂에 있어서의 抗爭이라든가, 또 高麗成宗 12年(993)에 契丹將 蕭遜寧이 大軍을 몰아 高麗西北邊에 쳐들어 왔을 때, 中軍使 徐熙의 도도한 外交戰에 의하여 無事히 그들을 撤歸케

한 것과 같은 것은, 그 가장 代表的인 例라 하겠다. 간혹 勢窮力盡하여 할 수 없이 屈服한 후에도 内心에는 항상 恥辱感과 不屈의 精神을 품고 機會를 타서 再起를 꾀하는 것이 常例이었다. 日帝의 暴政下에 全民族이 蹶起하여 3.1 獨立 運動을 일으킴과 같은 것이 그 또한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우리 民族社會를 오늘에 까지 온전히 維持發展하여 온 理由의 하나가 아니고 무엇 이랴. 그러나 아니할 말로 우리 民族이 본시 侵略을 좋아하여 周圍 強大民族과 無端한 戰爭을 자주 일으켰다면 그 결과는 어찌되었을까. 그야말로 民族의 歷史的 生命을 喪失하는 큰 不幸을 招來하였을지도 모를 것이다.

#### IV

그러나 民族의 生命을 維持 發展케 한 가장 基本的인 理由를 든다면 그것은 既述한 教育과 文化를 崇尚하는 精神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平和를 情熱이 低劣하거나 위하여 鬭爭意識이 旺盛하다 할지라도, 教育과 文化에 대한 意慾과 意과 低劣하거나 薄弱하다면 그 民族의 歷史的 生命은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다. 저 이웃의 滿洲民族을 보아라, 滿洲民族은 일찍기 中國을 征服하여 大金帝國, 또는 大清帝國을 建設한 民族이었지만, 도리어 中國文化에 征服을 당하여 오늘에는 그 存在조차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어느 民族이고 自己네의 傳統文化를 重히 여기고 그 土台 위에서 항상 自己를 反省하고 責勵하여 生活文化의 水準을 높임으로써 進歩發展을 圖謀할 수 있는 것이다.

過去 우리 民族의 教育·文化에 대한 意慾이 얼마나 旺盛하였던가는 高句麗時代에 國立大學外에 私立學校라고 할 수 있는 儒堂(경당)을 首都로부터 僻巷窮村에 이르기까지 길가에 세워 未婚男子들을 모아놓고 經典과 弓術 즉 文武의 學을 가르치었다는 것이라든가, 百濟의 各種 博士의 制度, 新羅의 獨特한 花郎徒의 綜合的인 修養課程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外國文化 輸入에 대한 高度의 情熱과 不斷한 努力에서 일층 엿볼 수 있다. 특히 中國文化에 대하여는 너무도

지나칠 程度로 尙상하고 또는 利用하여 이것이 도리어 事大主義思想을 助長시키고 어느 面에 있어서의 固有色을 잃게 한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古來로 中國人이 우리 나라를 일컫어 「君子之國」이니 「禮儀之邦」이니 한 것도 실상은 우리가 너무도 中國文化를 尙상하였던 까닭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오랜 傳統文化를 밑바탕으로 하여 外來文化를 攝取融合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에 이바지하여 왔던 것이다. 저 高麗의 磁器라든가, 大藏經의 板刻, 活字의 發明, 正音의 創製, 測雨器의 發明과 같은 것은 우리가 世界的으로 誇示하는 바가 아닌가.

中國을 통하여 印度, 西域系의 文化를 導入함에 있어서도 또한 이 얼마나 熱狂的이었던가. 使節學生, 僧侶, 技術者, 商人들의 漢土往來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佛法을 求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印度에 까지 간 僧侶들도 한들이 아니었다. 渡竺僧으로서 滯國 혹은 漢土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거리 關係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生을 마치었다.

이러한 意慾과 情熱로 해서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에는 燦爛한 文化의 꽃밭을 이루게 되었고, 그후 高麗時代에는 敎敎中心의 文化, 이에 反動的인 近朝鮮은 儒敎中心의 文化를 特徵지우게 되었다.

지나치게 文을 崇尚하고 武를 賤히 여기기 때문에 文弱한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傳統文化와 文化를 崇尚하는 精神은 一時도 中斷된 적은 없었다. 비록 戰亂中이라 하더라도 後方에서는 敎育과 文化活動을 繼續하여 왔다. 옛날의 한 가지 例로는 高麗時代의 對蒙古長期戰에 江都(江華島)에 있어서의 敎育과 科擧의 實施, 또(위에서 말한) 八萬大藏經의 거창한 影板事業의 完成과 같은 文化活動을 들 수 있고, 가장 가까운 例로는 6.25動亂 때에 後方에서의 敎育과 文化活動을 回顧해 보아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近朝鮮末葉에 이르러 西域文化와의 接觸이 있게 되자 그 중에도 天主教의 浸透에 대하여는 爲政者의 무서운 彈壓과 迫害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狂信의인 學人과 信者가 나왔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理由가 있겠지만, 대개는 現實의 不滿과 自己反省에 基因한 文化意識의

昂揚이 아니고 무엇이라.

鎖國朝鮮이 그후 차차 門戶를 開放하고 歐美文化를 直接 間接으로 導入하여 急速히 近代化過程을 밟던중, 日本帝國主義의 악착스러운 侵略에 의하여 마침내 亡國의 恥辱을 당하였지만, 日帝의 武斷政治下에 있어서도 不屈의 精神과 함께 教育熱 向學心은 오히려 旺盛하였다. 8.15 祖國의 光復을 보게 되자 教育 向學의 熱은 가히 衝天의 勢로 沸騰하였으니 오늘의 國內 大學과 中·高校의 數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더욱 海外留學生의 數가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現狀은 모두 自己向上, 自己發展의 불타는 意慾과 情熱의 澎湃에서 誘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勿論 우리는 數量보다도 質의 優秀를 더 貴히 여기고 바라는 바이지만 여하튼 여기서 우리 民族의 一貫한 性格의 한 모습을 發見하게 된다. 다만 지금 民族의 南北分斷으로 政治, 經濟, 文化의 統一性을 잃은 것은 一大 遺憾이요, 不幸事로, 우리는 하루 바삐 이를 克服하여 民族 本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은 勿論이다. 이러한 念願과 追求에서 우리는 歷史를 貫流하는 民族의 正統의 原理를 되새겨 보면서 將來를 展望하지 아니할 수 없다.

## V

앞에서도 말及한 바와 같이 우리 民族이 要求하는바 正統原理(歷史的)와 意志를 올바르게 意識하면서 이를 遵守하고 強化하는 個人이나 國家는 반드시 繁榮과 進歩發展을 가져올 것이요, 여기에 違背하는 個人이나 集團은 落伍 혹은 敗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 北韓共產徒輩의 主義와 所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必要가 있다. 그들은 소위 「人民民主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과연 人民의 自由와 權利를 認定하고 保障하는 民主主義라고 하겠는가. 人民을

奴隸와 같이 酷使하고 日帝時代보다도 더 심하게 言論을 拘束하고 宗教의 信仰을 剝奪하고 大衆의 口腹을 充足시키지도 못하면서 金日成一派의 徒黨들은 배불리 먹고 가진 享樂을 누리는 것이 이른바 「人民民主主義」란 것인가. 이것은 「人民民主主義」가 아니라 人民搾取·人民酷使의 獨裁主義, 帝國主義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들의 所行이 모두가 欺瞞의이고 假飾의이고 強壓의이지만, 이러한 暴政下에서 시달리고 呻吟하는 北韓同胞가 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가 그들의 血脈에서 뛰는 義憤과 民族的正氣가 영히 사라지지는 아니하리라고 믿는다.

또 共產徒輩들의 소위 教育과 文化는 어떠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金日成崇拜와 教條主義에 立脚한 劃一的인 內容과, 宗教, 人倫, 道德 등을 無視하는 教育과 文化 또 大韓民國을 毀謗하고 攪亂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赤化統一運動」을 퍼기 위한 目的의 內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教育과 文化란 것은 人道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多樣性과 創意性을 勸奨하고 發揚함으로써 人類社會의 福祉를 초래 할 수 있는 것인데, 北傀와 같이 劃一的의이고 人權無視·平和破壞의 歪曲된 政策의 道具와 手段으로서의 그것이 무슨 價値가 있으며 向上發展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教育과 文化는 결국 人類文化世界에서 落伍者 또는 敗北者로 떨어져서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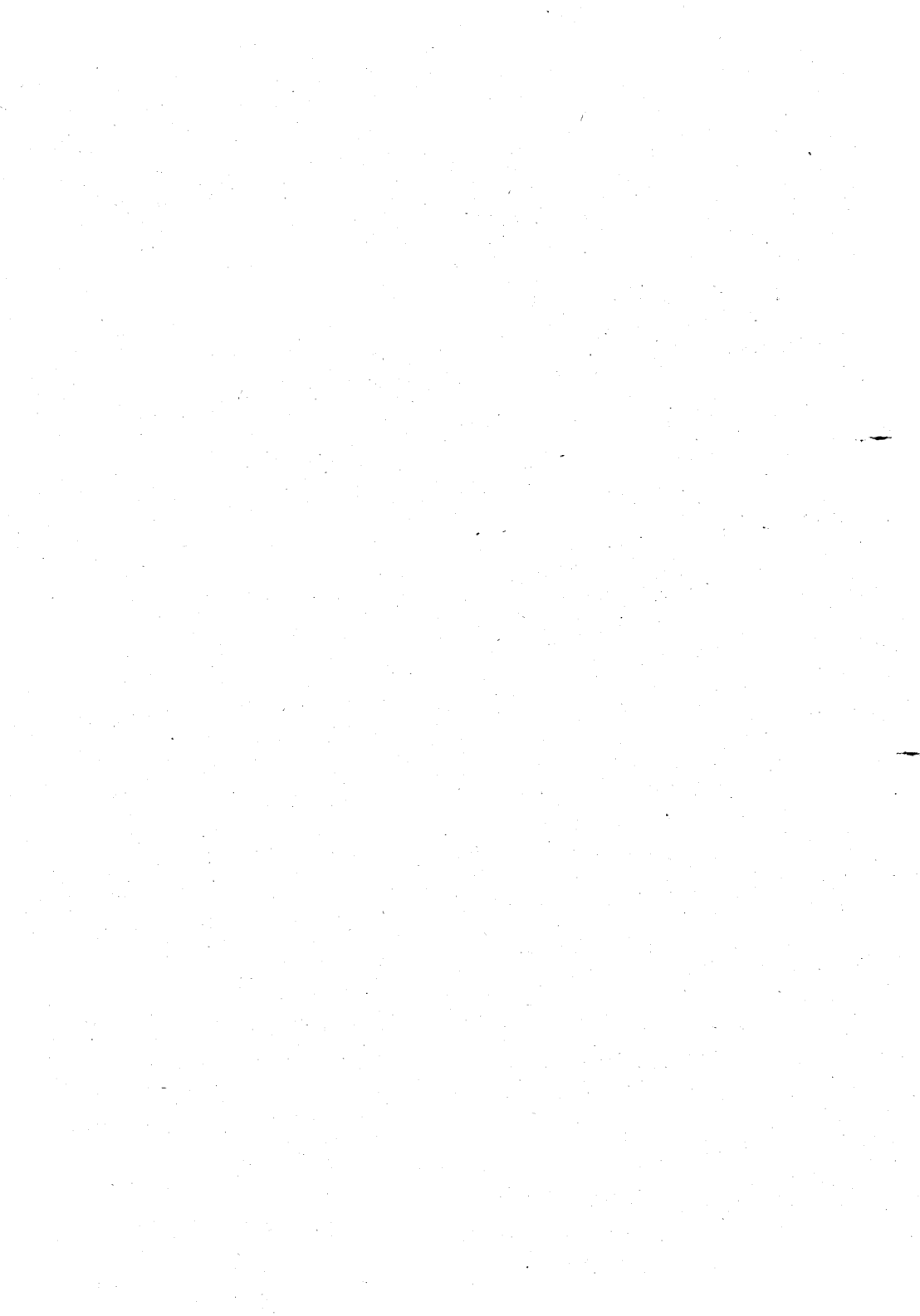
또 北傀의 好戰性과 侵略性은 世界가 周知하는 바이지만, 休戰協定以來 얼마나 많은 不法行爲를 거듭하여 왔는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休戰線에 있어서의 不法行爲는 말할 것도 없고, 固定間諜의 南派, 武裝間諜의 浸透, 漁船의 拉致, 其他 모든 方法으로 우리의 後方을 攪亂하려는 惡質의인 行動을 얼마나 빈번히 되풀이 하였으며, 심지어 非武裝地帶에 터널(땅굴)을 여러 곳에 파고 南侵을 企圖하는 능, 常套의인 野慾을 餘地없이 暴露하고 말았다. 그들은 걸핏하면 平和統一을 부르짖고 있다. 真正한 뜻에서 그것을 云謂한다면, 南韓側에서 提唱한 赤十字社의 會談이라던가, 南北調節委員會의 對話를 誠意있게 제속하여 段階의으로 可能한 範圍內에서의 協商과 交流를 실시하여 차차 統一에 接近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그렇지 않았

다. 이 機會를 利用하여 自己네의 宣傳廣場으로 利用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失敗로 돌아가자, 對話의 길을 中斷하고 단 것이었다.

같은 分斷國家라도 東西獨의 경우를 본다면, 그들은 相互間의 빈번한 對話와 協商과 交往을 實施하고 있지 아니한가. 北韓傀儡集團과 같이 閉鎖的이고, 好戰的이고, 非妥協的이고, 侵略的이고, 欺瞞的이고, 謀略的인 社會도 드물 것이다.

요컨대 北傀의 主義와 所行이 人類歷史의 發展法則에 背馳하고 逆行할 뿐더러 우리 民族社會의 正統의 原理인 「平和愛護의 精神」, 「不義不正에 대한 排擊精神」 및 「教育文化의 發揚」을 歪曲하고 沮害하고 背馳하는데 能事를 삼고 있으므로; 그들의 將來는 오래지 아니하여 自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다. 이것이 너무도 平凡하고 單純한 見解라고 할지 모르지만, 勝利는 결국 歷史的 定住속의 內在한 原理와 正路에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原理와 正路에 立脚하여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反省하고 責勵하여야 할 것이다. 平和를 사랑하면서도 위에서 말한 新羅 景哀王 때와 같이 放心과 行樂主義에서 벗어난 大悲劇을 거울로 삼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北傀와 같이 好戰的이고 侵略的인 挑發行爲를 恣行하면서 虎視眈眈 南韓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라, 그러므로 对内對外的으로 우리의 平和와 秩序와 獨立을 侵害하거나 威脅하는 不義不正에 대하여는 온 國民이 단결하여 이를 排除하여야 하며, 教育과 文化에 있어서도 人道主義와 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創意性과 科學性과 優秀性을 發揮할 것과 自富, 自強도 이러한 教育과 文化의 뒷받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再言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것이 筆者가 되풀이 하는 우리 民族의 正統性으로 이점은 우리가 教育上에 있어 항상 強調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결국 問題는 이 正統性 對 非正統性의 對決에 있다고 본다. 이 對決에서 制霸하는 쪽이 尙차 統一의 勝利를 거둘 것임을 다시 한번 力說하여 두는 바이다.





# 政治史的 側面에서 본 正統性

崔 聖 俊  
朝鮮大學校 教授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正統性의 概念
- III. 韓國政治史의 主体로서의 正統性
  1. 北韓陣營의 共產主義運動
  2. 南韓陣營의 抗日獨立運動
  3. 8.15以後의 南北關係에서의 正統性의 追求
- IV. 맺는 말

### I. 問題의 提起

韓民族의 近代史는 列強勢力들의 干涉 또는 侵略으로 인한 民族主体性의 互解, 民族의 分断에서 온 文化的 異質化, 그리고 南北韓의 國土의 分断支配에서 야기되기 國家의 正統性의 紛争等 수 많은 歷史的 問題들을 提起해 놓고 이제 이것들이 民族의 要請에 따라 肯定的으로 解決되도록 發展하고 있다. 自意的이건 他意的이건 이러한 民族國家의 分断은 民族文化發展에 至大한 沮害要因이 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 沮害要因을 除去함에 있어서도 無數한 民族의 利益의 損失과 犧牲을 甘受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沮害要因中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것은 國家의 正統性의 問題가 아닐 수 없다. 政治史의 立場에서 보아 大韓帝國의 傳統과 源泉國家의 正統性을 계승한 것은 大韓民國임에 의심의 餘地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主義의 唯物

史觀에 따라 正統性도 合法性도 否認하는 北傀集團이 革命主義를 主張하면서 同時에 그들 스스로의 正統性마저 高집 하며 歪曲함으로써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의 基本姿勢는 正統性的 否認에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革命이 있을 뿐이다. 革命은 一切의 既存秩序를 否定하며 새로운 秩序體系를 確立하여 새로운 關係, 새로운 企圖를 樹立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물며 마르크스主義에 따라 暴力革命을 手段으로 하고 있는 北傀集團은 어떠한 社會勢力 或은 어떠한 政治勢力이 우리 民族의 國家的 正統性을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本質적으로 矛盾된 位置에 서게되며 또 그 正統性을 否定하는 基本姿勢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集團은 그들 스스로가 韓半島에 있어서의 正統적인 源泉國家의 單獨代表權을 갖는 것이라고 内外에 歪曲宣傳함으로써 平和와 國際秩序를 破壞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1910年 韓日合併條約에 의하여 大韓帝國의 主權이 消滅하였기 때문에 法理論上으로는 源泉國家로서의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南北韓의 어느 쪽도 繼承할 수 없다고 할런지 모르나 특히 1919年의 3·1獨立運動을 契機로 해서 各種의 抗日獨立鬪爭期間에 있어서 大韓帝國의 傳統과 正統性을 繼承한 民族陣營의 上海臨時政府가 主動이 되어 祖國光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第2次大戰中の 카이로宣言 또는 포츠담宣言에서도 上海臨時亡命政府가 源泉國家의 法的 或은 政治的 正統性을 繼承할 것을 強大國들에 의하여 諒解된 바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 第2條에 있어서도 韓國基本條約 第2條에 있어서도 이 事實을 法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大韓民國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유구한 歷史的 傳統과 國家的 正統性的 相統者임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歷史的 事實은 論爭以前의 既定事實이기는 하나 이에대한 理論的 定立과 政治史的 實證의 體系的 確立이 必要하며 또 이러한 作業은 國土統一에 對備하여 우리 國民의 精神的 支柱가 될 것이며 이것을 國內外的으로 理解시킴으로써 平和의 統一에 이바지 하도록 誘導함에 있어서 매우 有益할 것이기 때문에 本 研究課題가 提起된 것이다. 이러한 必要性和 當爲性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南北韓의 國家的 正統性的 有無를 部分的이며 單片的이기는하나 主로

大韓帝國沒落以後의 韓國政治史를 背景으로하여 南北韓을 比較考察하면서 大韓民國의 國家的 正統性的 理論의 根拠를 摸索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正統性的 概念

正統성에 관한 概念이 古代 中世에 있어서는 道德的 宗教的 意味에서 取扱되어 왔으나 近代에 이르러서는 支配者와 被支配者間的 權力關係에서 同意 合法性 正當性 合理性을 土臺로한 支配權威의 要素로서 規定되고 있다.

近代 유럽政治史에서 政統主義(Le legitimisme)란 用語가 처음 抬頭된 것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Napoleon沒落後의 Wien會議(1814.9 ~ 1815.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Napoleon 戰爭에 의해서 攪亂된 유럽의 地域을 再建하기 위한 原則으로서 同會議가 採択한 것이다. 革命的 原則 및 征服의 權利(Droit de conquete)에 대해서 正統의 權利(La legitimité)를 尊重하며 프랑스革命 및 그에 따른 征服에 의해서 그의 地位를 상실한 諸國의 主權者(君主)에게 舊領土를 回復시킬 것을 主張한 이 正統主義는 프랑스의 Bourbon 王朝과 諸地方에 Ancien Regime 를 復活시켰으며 그 結果 近代民主主義의 基本原理인 自由主義와 國民主義를 抑壓하는 바가 되었다.

그러나 1830年 7月革命에 이르기까지 正統主義는 諸君主의 舊領土에 대한 支配權을 正當化 或은 合法化시켰으며, 그 根拠로서는 宗教的 世襲的 隨性的 支配權威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宗教界에 있어서나 經濟學界에 있어서나 또 社會主義學派間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最近에는 우리 韓半島를 비롯한 分斷國家에 있어서까지 正統性的 根拠는 激烈한 論爭의 對象이 된 것이다.

이와같이 正統性的 概念은 여러 側面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政治學의 立場에서 考察하자면 무엇보다도 支配權의 正當性에서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支配는 強制를 隨伴하게 되는 것이다. 強制는 本來 人間의 憎惡의 屬性이며 服從은 不平不滿속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더우기 政治權力이 그의 最後의 手段으로서 갖는 物理的 強制力이야 말로 憎惡와 反撥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支配者が 이러한 物理的 強制力을 独占하는 것이 當然한 것이라고 생각되기에는 여기에 무엇인가 妥當한 根柢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被支配者が 이와같이 積極的으로나 或은 消極的으로 政治權力의 支配를 承認하고 許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回答이 바로 權力의 正統性이 되는 것이다. 最近에는 正統性의 根柢로서 同意正當性 合法性 合理性을 內容으로 하는 國民意思의 支配 즉 代議制的 民主主義가 有力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이러한 權力의 正當性의 根柢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며 現實의 權力容認은 이러한 諸類型의 結合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本 研究에 주어진 範圍는 南北韓의 分斷國家가 各各 支配하는 國家의 統治權力이 어떠한 根柢에서 어느쪽이 正當한 것인가를 再確認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統治權力이 大韓帝國의 源泉國家부터 어떻게 繼承되고 어떻게 變形되고 또 어떻게 行使되고 있는지를 近代 韓國政治史를 背景으로 하여 南北韓 各勢力의 抗日獨立鬪爭의 經緯와 그 후의 權力關係를 比較考察하면서 代議制的 民主主義를 採択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統治權力이 真正한 國民意思의 支配로서 正統性의 充分한 根柢가 되며 韓半島의 唯一한 正統性과 代表權을 独占할 수 있는 國家임을 規定하는 데 있는 것이다.

### Ⅲ. 韓國政治史의 主体로서의 正統性

韓半島에 마르크스主義의 唯物思想이 上陸하여 北傀의 暴力革命集團을 集結시키기까지의 韓國政治史는 階級鬪爭이 아닌 超階級的의 民族抗爭으로서 明確한 民族史的 正統性을 維持하여온 것이 그의 特色이라 하겠다. 그것은 過去에 우리 先祖가 對漢 對唐 對女真 對蒙古 倭亂 胡亂 斥邪運動 抗日運動等 對外鬪爭을 통하여 超階級的의 民族國家를 建設하여온 歷史的 過程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8.15解放과 더불어 自主獨立國家로 承認된 우리 大韓民國은 過去 日帝의 植民統治의 犧牲이 되어 國權이 消滅되었던 大韓帝國의 國家的 正統性을 繼承한 唯一한 合法國家임에도 不拘하고 北傀를 비롯한 一部 共產國家 或은 所謂 非同

盟國家들은 이를否認하려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明確한 歷史的 根拠에 立脚하여 이를 論證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南北韓을 比較考察하면서 政治史的 立場에서 究明하자면 그것은 北韓의 共產勢力과 南韓의 民族陣營中 어느쪽이 參與 意味에 있어 서의 韓民族의 政治史的 主体勢力이 되어 抗日獨立鬪爭에서 國家的 正統性을 回復하는 데 보다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또 그 뒤에도 國家權力이 어떻게 變形되고 行使되고 있는냐에 따라 南北韓의 國家的 正統性의 繼承與否가 決定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제 大韓帝國의 消滅로부터 8.15解放까지 國家의 統治權力의 回復過程에 있어서 南北韓側 陣營의 抗日獨立鬪爭의 性格과 方法을 比較考察하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北韓陣營의 共產主義運動

### 1) 朝鮮共產主義運動의 起源

大體로 우리나라에서는 共產主義運動이 1910年代末부터 始作은 되었으나 아직 階級意識은 없었으며 民族意識만이 支配의 이 있다. 그러나 1917年의 러시아의 볼셰비키革命은 世界共產主義運動을 자극하였으며 레닌의 革命理論에 따라 아시아後進國에서는 民族解放을 共產主義運動을 통해서 遂行하여야 한다는 煽風에 자극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激動期에 있어서도 日帝의 彈壓下에 놓여 있던 國內에서는 볼셰비키革命의 消息도 모르고 또 共產主義理論 自体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을 中國領과 露領에 移住한 韓國人 또는 日本留學生들을 통해서 社會主義理論 및 그의 運動이 導入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共產主義運動은 海外에서 始作하여 國內로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17年 露領 沿海州로 亡命 或은 移住한 韓人들은 大韓民國議會를 設立하여 獨立運動을 展開하게 되었든 것이 蘇聯의 볼셰비키의 後援下에 共產主義運動을 통한 獨立鬪爭의 形態로 變化된 것이다.

먼저 蘇聯의 10月革命後 시베리아에서의 韓人의 左翼運動狀況을 보면 1918年 6月 26日 하마로스크에서 組織된 李東輝, 朴鎮淳 등의 韓人社會黨과 1918年

4月22日 일크스크( Irkusku )에서 金哲勲 吳夏默등이 組織한 일크스크共産黨 韓人支部( 러시아共産黨에 隸屬 )의 두派에서 始作된 것이다.

여기서 初期의 韓人社會主義運動의 性格은 오직 民族獨立精神의 具現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바로스크韓人 社會黨의 李東輝는 當時 大韓帝國의 軍人( 現階級制로 少領 )이었으나 1907年 日帝의 強壓에 의한 朝鮮軍의 解放으로 인하여 露領으로 亡命하여 獨立運動에 從事하게 되었다. 當時 러시아政府는 共産主義者이건 아니건 反日主義 韓人이라면 모두 환영하게 됨에 따라 李東輝도 漸次 볼셰비키政府에 包摂되어 沿海州에 8個韓人社會黨支部를 設置하고 獨立鬭爭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1918年 8月30日 李東輝를 비롯한 그의 同志一行이 브라디보스토크를 떠나 上海의 大韓民國臨時政府에 入閣함으로써 그의 理念이 社會主義國家의 建設이 아니라 韓民族의 獨立과 統治權力의 回復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上海派 高麗共産黨이라 부르게 되었으나 實은 民族陣營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크스크에서는 1919年 9月5日 前記 일크스크共産黨 韓人支部를 中心으로 全露韓人共産黨을 組織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일크스크派 高麗共産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蘇聯國籍의 韓人으로 構成되었으며 恒時 蘇聯共産黨의 支配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 2) 韓人의 海外共産主義運動의 分裂

海外에서의 韓人들의 共産主義運動에 있어서 分裂의 要因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이나 아니면 民族主義的 獨立運動이나의 路線의 相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에 上海派는 民族獨立을 위하여 自主적으로 努力하였으며, 한편 일크스크派는 蘇聯共産黨에 예속되어 蘇聯의 東方政策에 따라 祖國光復을 期待한다는 데서 路線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當時의 韓人共産主義者들은 蘇聯共産黨 地方事務局의 指導下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 그들로 부터 資金의 支援없이는 活動이 不可能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 兩派는 서로 黨의 正統性確立에 분투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上海派 李東輝는 第一次 및 第二次 코민테른에 代表를 派遣하는 등하

여 黨勢가 優勢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크스크派는 上海派高麗共產黨的 正統性을 否認하고 그 自身이 正統이라하여 이름을 일크스크派 高麗共產黨이라 稱하게 되었다.

더우기 이 兩派의 싸움을 惡化시킨 것은 蘇聯의 內政과 極東政策의 變動이었다. 當時의 蘇聯政府는 아직 國內政局이 安定되지 못한 情勢下에서 그들의 後援을 받고 있는 韓人共產主義者들이 시베리아에 出兵한 日本軍과 直接 衝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內政에 있어서 赤衛軍과 白衛軍의 싸움에서 韓人을 白衛軍에 對抗시키기 위해서 모든 露領韓人을 武裝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韓人으로 하여금 그들의 祖國獨立보다 소베트 러시아의 守護를 優先의 任務로 하도록 韓人共產主義者들을 利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17年以來 브라크웨시첸스크에 있는 大韓國民議會가 祖國光復을 위한 韓人政府로서 構成되었던 것을 當時의 蘇聯 極東共和國政府에 隸屬시켜 놓고 傀儡로 利用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大韓國民議會는 漸次 蘇聯國籍을 가진 所謂 일크스크派의 韓人들에 의해서 支配되었으며, 한편 러시아共產黨 遠東部附設 韓人部를 指導하고 있던 上海派 李東輝도 韓人武裝隊를 蘇聯에 派遣하여 赤軍과 合勢하게 하는가 하면 특히 레닌과 親密한 關係에 있기도 해서 蘇聯當局에 의해서 무시당할 만한 存在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蘇聯共產黨은 그들의 對內外政策路線에 利用하기 위해서 한때는 韓人共產主義者들의 派閥싸움을 助長시켰던 蘇聯政府當局이 이제 이들의 統合을 위해서 數次 調整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오다가 드디어 日本軍의 시베리아 撤兵交涉에 支障이 있다고 하여 韓人武裝部隊의 解体를 強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措置에 따라 韓人部隊들은 모든 派閥을 統合하여 일크스크派 大韓國民議會의 主導下에 臨時高麗革命軍政議會를 組織하는 바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蘇聯의 極東共和國領內를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蘇聯共產黨은 祖國의 獨立을 위해서 싸워야 할 韓人共產主義者들을 利用하여 赤軍에게 必要할 때에는 이들을 武裝시키기로 하고 또 시베리아에서의 日本軍의 撤收交涉을 위해서는 이들을 追放까지 하였다. 이것은 蘇聯의

國家的 利益을 위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또 이 措置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가 貫通된 基에 上에서 行해 된 것이기도 하다.

### 3) 일크쓰크·上海 兩派高麗共產黨의 統合試圖와 그 失敗

러시아 共產黨은 10月革命直後에는 유럽資本主義社會에서의 革命을 期待하여 아시아地域의 共產黨의 活動을 소홀히 하여 왔으나 1920年代 유럽革命運動이 쇠퇴하는 傾向이 나타나게 되자 一國社會主義論으로 守勢를 취하는 한편 아시아의 共產黨을 支援하여 反帝民族解放鬪爭을 支援하게 되었다.

이러한 情勢變化에 따라 러시아共產黨은 韓人共產主義자들이 모두 國內에 들어가서 反日獨立鬪爭을 하도록 兩派高麗共產黨을 統合시키려고 하였으며, 아울러 이들을 러시아共產黨의 路線에 따르도록 코민테른을 통하여 操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蘇聯國籍을 가진 少數의 일크쓰크系 韓人共產主義자들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共產主義의 使命보다 反日獨立鬪爭의 民族主義의 意識이 강하였기 때문에 結局 兩派의 統合은 容易하지 아니 하였던 것이다.

즉 1922年1月 모스크바에서 極東人民代表大會가 열렸으며, 同大會는 레닌의 共產主義革命路線에 따라 反植民地 民族解放運動을 할 것을 目的으로 하여 團結할 것을 呼訴하였으나 同大會에 派遣된 國內派 呂運亨을 비롯한 韓人代表들은 여기서도 亦是 派閥間的 對立을 피할 수 없었으며, 또 1922年11月 웨르호네우진스크에서 上海派 일크쓰크派 國內派等 모든 共產主義자들의 統合을 위한 聯合大會가 열렸으나 亦是 上海·일크쓰크 兩派의 對立으로 成功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하여 兩派의 統合이 失敗되자 코민테른은 兩派高麗共產黨의 解体를 命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韓人共產主義자들은 그들의 祖國獨立運動을 할 수도 없었고 다만 蘇聯의 東方政策에 利用되다가 1922年12月 解体되고 만 것이다.

### 4) 朝鮮共產黨의 創立工作

이와같이 露領과 中國領에서의 韓人共產主義運動은 蘇聯의 東方政策에 利用되었을 뿐 實際로는 3·1運動과 같은 國內에서의 拳族의 抗日鬪爭에는 아무런 影響을 주지 못한 채 黨權鬪爭으로 끝나고 말았다. 初期에는 上海臨時政府에



李東輝派 共產主義자들이 協力하는 척 하였으나 여기서도 亦是 그들의 指導權 爭奪이 如意치 않게 되자 1922年頃에는 李東輝의 上海派는 臨政에서 손을 떼고 그들의 근거지마저 上海에서 露領으로 옮기고 말았다.

한편 蘇聯共產黨은 國內外에 있는 모든 韓人共產主義組織을 하나의 統一체로 結合시키기 위해서 코민테른에 高麗局을 新設하여 일크쓰크系的 鄭在達을 國內에 派遣하였다. 그러나 國內에는 이미 北風會 서울青年會 등의 左翼運動의 組織體間에 派閥싸움이 있는데다가 上海派의 李東輝는 國內共產黨組織에 있어서도 일크쓰크派的 韓明瑞에게 主導權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한 暗鬪만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韓人的 統一의인 共產黨組織에 失敗하자 코민테른은 高麗局을 廢止하고 새로이 組織局을 新設하게 되었다. 이 組織局은 1924年 3月 브라지보스 토그에서 韓人共產主義者會議을 召集하고 여기서 露領 韓人共產主義者들의 主導下에 國內에 朝鮮共產黨을 創設할 것을 決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決議에도 不拘하고 如前한 派閥싸움으로 國內工作에서 失敗하게 되자 이제 組織局마저 解体가 되었으나 그래도 이것은 1925年 4月的 朝鮮共產黨創立에 크게 役割을 한 셈이된다.

##### 5) 朝鮮共產黨의 創黨

前述한 바와 같이 蘇聯共產黨은 유럽 共產主義革命에 失敗하자 그의 鬪爭 方向을 아시아地域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中國에 있어서는 1921年 7월에 日本에서는 1922年 7월에 印度는 1924年, 그리고 朝鮮에서는 1925年 4월에 各各 共產黨의 創黨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중 朝鮮共產主義의 活動은 日帝의 彈壓과 國內에 大衆組織으로서의 基盤이 없었기 때문에 蘇聯共產黨에서 訓練과 指令을 받은 金在鳳 및 그의 追從者들에 의한 工作이라 할지라도 그리 容易하지는 아니 하였다. 當時의 朝鮮 國內에는 共產主義의 主体가 될 勞動階級이 없었고 共產主義思想은 知識人의 独占物이 되었다. 따라서 共產主義思想과 運動, 그리고 理念과 實際에는 乖離가 있었다.

그러나 民族主義的인 抗日獨立運動은 民族的 것이었기 때문에 共產主義자들은 이 틈을 타서 大衆속에 파고 들지된 것이다.

그러나 初期에 있어서의 勞動共濟會를 비롯한 各種의 團體들은 抗日獨立運動의 目的을 가진 民族陣營의 指導下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共產主義者들의 浸透은 容易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民族陣營의 獨立運動은 오직 獨自의인 組織과 힘에 依存하였기 때문에 漸次 蘇聯共產黨과 그의 操從下에 있는 코민테른의 組織 및 資金의 支援을 받고 있는 海外韓人共產主義者들의 國內浸透工作을 阻止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순수한 民族陣營의 抗日運動團體로서 組織되었던 것이 共產主義者들이 이 團體들에 浸透함에 따라 그 性格이 漸次 變化하게 되었든 것이다. 예를 들면 1920年 12月 民族主義者 張德秀등의 主導下에 國內 113個의 青年組織을 統合하여 朝鮮青年聯合會를 結成하였다. 그의 서울支部인 서울青年會가 民族主義者들의 指導下에 있었기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은 이에 浸透하여 이것을 赤化시키기 위해서 1922年 1月 無產者同志會(後에 無產者同盟으로 改稱)를 組織하여 이에 對峙시켰다. 그 結果 同서울 青年會와 朝鮮青年聯合會는 李英, 金思國등 共產主義者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후에 朝鮮共產黨의 核心的 基盤이 되었으며, 따라서 서울青年會는 赤雷團 社會主義青年同盟 女子青年同盟 등의 團體를 組織하여 朝鮮共產黨 서울分派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朝鮮共產黨의 한 分派를 이루게 된 北星會(후에 北風會로 改稱)는 在日留學生들에 의해서 組織된 것인데 이들은 在日本 朝鮮勞動總同盟을 그 산하에 두고 서울에 浸透하여 新興青年會를 結成하여 抗日獨立鬪爭보다도 資本主義에 挑戰하는 것을 任務로 하였다.

서울青年會系 및 北風會系 등의 國內共產主義者들의 分派를 勾합하여 朝鮮共產黨 創黨에 決定的 役割을 하게 한 것은 朝鮮事務局이었다. 朝鮮事務局은 1923年 5月 일크르크스의 金在鳳의 國內浸透와 그의 主導下에 組織되었으며 그의 中核 組織으로서 新思想研究會라는 合法團體를 結成하는 한편 新興青年同盟 瀾陽青年同盟 朝鮮勞農同盟 등을 그 산하에 두고 大衆組織에 들어간 것이다.

그 후 新思想研究會는 曹奉岩이 指導하게 되었으며 그의 名稱도 마르크스의 誕生日을 記念하기 위해서 火曜會라고 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크르크스系的 火曜會派가 中心이 되어 그에 親近한 日本 留學生系의 北風會, 그리고 上海系의 서울派등이 基盤이 되어 朝鮮 共產黨의 創黨을 보게된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共產黨은 火曜會의 指導者 金在鳳에 의해서 1925年 4月 17日 ~ 18日 秘密裡에 創黨되었다. 初代黨首에는 金在鳳이 選出됨으로써 實權은 일크르크系의 火曜會가 掌握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過程을 거쳐서 創黨을 보게된 朝鮮共產黨은 蘇聯共產黨과 그의 操從 下에 있는 코민테른의 承認과 指示를 받아야 했고 또 치타(Chita)에 있는 일크르크派로부터 資金調達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크르크系의 人物이 黨權을 掌握하게 된 것도 當然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朝鮮共產黨은 民族國家의 獨立이라든가 統治權力の 回復보다는 蘇聯共產黨 또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東方政策을 分擔하는 役割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創黨以來 아직 大衆의 基盤組織이 미약한 朝鮮共產黨員들은 新義州에서 일어난 「朝鮮共產黨萬才」事件과 亦是, 1925年 11月の 新義州 日本人구타事件 등으로 日警에 의한 金在鳳一派의 檢挙로 인하여 그가 이끌던 朝鮮共產黨的의 指導體制는 1925年 12月 13日을 기해서 終止符를 찍게 된 것이다.

#### 6) 第二次 朝鮮共產黨

新義州事件으로 金在鳳이 체포되고 많은 共產主義者들이 海外로 逃避하게 되면서 1925年 12月 黨權을 姜達永에게 引繼하였다. 이것을 世稱 第二次 朝鮮共產黨이라 하며 前者를 金在鳳黨이라 한데 대해서 이것을 姜達永黨이라고도 부른다.

姜達永은 黨再建을 위하여 7人에 의한 中央執行委員會를 構成하여 1926年 2月中旬 第1回 中央執行委員會를 秘密裡에 召集한 以來 同年 4月 1日에 이르기까지 11回의 會議을 召集하였다 한다.

이 期間에 있어서 黨運營을 위한 重要한 議決事項은 大體로 北風會等 諸團體의 統合作과 國內외의 連絡網組織의 強化, 그리고 朝鮮獨立과 共產政治의 同一時期를 選定하는 工作들이었다. 한다.

이와 같이 朝鮮共產黨員들은 朝鮮이 獨立된 후에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그대로 繼承하려는 것이 아니라 蘇聯의 極東政策의 一環으로 朝鮮獨立과 더불어 韓半島를 赤化시킬것을 目的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目的下에서 姜達永黨은 金在鳳黨의 失敗를 經驗으로 하여 이번에는

國內組織으로서 야체िका (細胞組織 또는 基本團體) 및 푸라치 (非常設機關의 非黨員으로 하여금 党的 方針에 따르도록 大衆을 유도하는 組織體) 등의 秘密地下組織을 党的 基盤으로하게 되었다.

이것을 各分野別로 보면 學生部 勞農部 言論機關部 生性部 思想部 등의 分野로 区分되며, 서울에 9개의 야체िका를 두고 이것을 다시 二個區로 나누었다.

第一區에는 朝鮮日報社 漢陽青年聯盟 火曜會第一 火曜會第二에 두었으며, 第二區에는 印刷聯工組合 學生 時代日報 勞農總同盟 遊動隊內에 두었다. 이와같이 姜達永党的 組織事業은 푸라치工作으로 成功하였으며, 社會各階各層에 浸透하여 民族獨立鬪爭을 共產主義革命을 통해서 遂行하며 同時에 韓半島를 獨立과 더불어 共產化하기 위한 大衆組織에 힘 썼든 것이다.

한편 姜達永党은 海外組織에도 크게 활약하였다. 海外組織으로는 上海 沿海州 滿州 日本等地에 連絡部를 두고 있었다. 이들 連絡部는 1925年 11月 新義州事件에 海外로 逃避한 金燦 등 第一次 朝鮮共產党的 中央委員들이 指導하고 있었으며 同時에 그들은 同中央委員資格을 계속 行使할 것을 主張하게 됨으로써 國內의 中央機關과 多少의 마찰은 있었으나 이들을 통한 國際의 支援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海外組織中에서도 上海連絡部가 가장 強力하고 廣範한 權限과 業務를 委任받고 있었다. 여기서는 金燦 金元治 曹奉岩 趙東祐 등, 亡命幹部들이 上海에 거점을 確保하고 주로 코민테른과 國內黨과의 連絡을 취하는 役割을 하여 왔다.

또 上海連絡部는 滿州部를 設置하고 指導까지 하였다. 上海部の 金燦은 曹奉岩 崔元沅을 滿州에 派遣하여 1926年 4月~5月 滿州總局을 設置하고 曹奉岩을 責任秘書로 任命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燦의 上海部는 國內共產黨에 대하여 幹部의 入選問題에 까지 干涉하였는가 하면 1926年 6月 10日 純宗의 國葬日에 萬才騷動의 民衆運動을 일으킬 것을 指示한 바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 6.10 萬才事件의 性格을 多角度에서 考察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民族史의 한 페이지에서 外面當하고 있는 傾向이 있으나, 이 事件은 어디까지나 反日感情을 가진 民族的 울분의 發露에서 暴發된 것이며 共產主義者들이 이 民衆의 心理를 利用하여 이에 便乘하게 됨으로써 그의 性格에 오점을 남기게

된데 不過한 것이다.

如何間 이 6·10 萬才事件을 契機로 이에 關聯된 民族陣營의 人士들은 勿論 共產主義者들 까지도 日警은 모두 檢挙하게 됨으로써 1926年 7月을 기하여 姜達永黨의 活動은 事實上 끝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左翼運動은 이것으로 끝난것은 아니다. 그후 北風會의 過激派인 M·L 派가 主動이 되어 東京에 있는 月曜會派, 그리고 國內에 있는 서울青年會派와 合勢하여 第三次 朝鮮共產黨을 再建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高麗共產青年會를 再組織하였고 1927年 5月 同共產黨幹部 高光洙, 金綴洙 二名이 모스크바에 가서 第三인터내쇼날과 國際共產青年會의 承認을 받고 歸國하여 各道와 日本 上海 滿州等地에도 支部를 設置하려는 차 黨員間의 反目으로 인해서 1928年 2月 責任秘書 金俊淵을 비롯하여 崔益幹 溫樂中等 36名이 日警에게 檢挙됨으로써 亦是 第三次 共產黨도 끝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殘餘黨幹部 安光泉 韓偉健等的 계속적인 地下黨活動으로 同 1928年 4月에 第4次 朝鮮共產黨을 組織하고 責任秘書 및 幹部들을 改選하였으며 正義感과 反日感情이 무척한 青年 學生層에 침투하여 同盟休學 또는 示威行進等을 操從하는 등 反日民族感情을 利用해서 共產主義의 革命戰略을 展開하였으나 同年 7月 亦是 日警에 의한 黨幹部들의 逮捕로 失敗하고 朝鮮共產黨은 그 以後에는 再建이 不能하게 되었고 그의 活動도 中止되고 만 것이다.

以上과 같이 朝鮮共產主義者들은 第一, 二, 三, 四次의 朝鮮共產黨을 組織하여 大衆의 反日民族感情을 利用하여 그들의 革命戰略을 遂行하는 동안 오직 社會主義團體만이 真正한 愛國主義者들이요 또 民族을 救出하는 唯一한 政治團體라 自負하면서 民族主義陣營의 諸團體는 反動分子이며 民族의 叛逆者로 規定되고 그들에 대하여 테러行爲 또는 謀略等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은 暴力行爲를 行使하였는 가 하면 極端的으로는 右翼勢力의 抹殺과 自派勢力단의 擴大運動을 감행하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社會主義理念만이 抗日鬭爭의 基本인 것처럼 내세웠으며, 이에따라 朝鮮의 獨立과 더불어 共產政治가 施政되어야 한다고 策動하였으나 그 結果는 國內외의 共產主義者들간의 치열한 黨權鬭爭으로 그들 스스로를 破滅의 길로 引導하게 되었으며 또 한편에 있어서는 民族을 分裂하여 抗日鬭爭에 있어서의 學族的인 獨立運動을 沮害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8·15 以前の 朝鮮共產主義者들의 발자취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始終一貫 蘇聯共產黨과 그의 操從下에 있는 코민테른의 指示를 받고 世界共產主義革命과 蘇聯의 東方政策의 遂行을 위한 任務에 忠實하였을 뿐 日帝에게 빼앗긴 主權과 國家民族을 되찾아 民族史의 正統性을 繼承할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것마저 階級없는 社會, 所有權없는 社會를 建設하겠다는 共產主義者들끼리 主導權과 黨權다툼으로 스스로를 自滅시켰으며, 民族史의 傳統과 文化등 正統性을 回復할려는 民族陣營마저 分裂시켜 日帝의 殖民地統治를 延長 或은 有利하게 해 줌으로써 反民族的 치욕의 歷史를 記錄하여 놓은 것이다.

## 2. 南韓陣營의 抗日獨立運動

### 1) 大韓帝國의 消滅

大韓帝國末期의 아시아情勢는 韓民族을 祭物로 하여놓고 一旦거센 파도는 지나간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 期間에 있어서 周辺強國들의 干涉과 抑壓을 벗어나고 자란 韓民族의 울분은 東學亂을 비롯해서 수많은 排外自主思想의 義舉로서 폭발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日本의 成長과 大陸進出政策은 드디어 韓半島에 上陸하여 韓民族의 象徴인 王家를 逐出하고 학살 함으로써 民族史의 正統性을 斷切 시키는 데서 始作 하였으며, 主權을 박탈하기 위해서 1904 年 2 月 23 日에는 드디어 一方의인 韓日議定書라는 것을 約定하여 韓國을 그들의 保護下에 두려는 野慾을 나타내게 되었다.

1904 年 日·露戰爭에 勝利한 日本은 그의 帝國主義的 野慾을 더욱 露骨化하여 이번에는 1905 年 11 月에 日本의 樞密院長 伊藤博文을 特派大使로 任命派遣하여 所謂 乙巳保護條約을 締結할 것을 強壓 함으로써 이제 大韓帝國은 國家로서의 對外的 獨立權을 日本에게 奪取 當하고 그의 保護下에 들어간 것이다.

日本帝國主義者들의 이러한 侵略行爲에 대해서 우리民族의 울분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憤起한 人士中에는 宿儒碩學이 많았으며, 그 중 閔宗植은 忠南에서 義兵을 일으켜 同志를 糾合하여 洪川城을 占奪하였고, 崔益鉉 林炳瓚 등은 全羅北道에서 亂기하였다. 그 밖에도 慶尙道에서는 申堧石이

江原道에서는 柳麟錫등이 各各 義兵을 일으켜 한 때는 그 勢力과 意氣가 冲天하는듯 하였으나 日本軍의 殘酷한 彈壓으로 그 때 마다 鎮壓되고만 것이다. 한편 이러한 民族的 悲運에 통탄하여 걸기한 人士中에는 教育和 啓蒙을 통해서 民族意識의 覺醒 憤起를 꾀하기 위해서 各種의 政治團體 즉 共進會 憲法研究會 大韓自強會 大韓協會 人民代表議會등을 組織하여 排日興韓運動을 일으켰고, 또 그밖에도 文化 教育을 위한 學術團體를 結成하여 民族的 自覺을 促求 하였다.

한편 日帝의 만행을 國際社會에 폭로하고 억울한 韓民族의 運命을 호소하기 위해서 1907年 6月에는 海牙密使事件이 일어났다. 즉 光武帝의 密詔와 信任狀을 極秘裡에 받은 李相高 李儻 및 李揆鍾等 三人은 海牙에서 열린 第二回國際平和會議에 出席하여 韓民族의 억울함과 日帝의 強盜的 侵略을 폭로 할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割腹 自殺까지 하게 되었는데

우리 民族의 排日抵抗運動이 擴大되고 激烈해 질수록 日帝의 彈壓과 侵略根性은 더욱 늘어났으며, 海牙密使事件을 트집잡아 高宗皇帝를 退位시키고 純宗을 即位시켰는가 하면 同 1907年 8月 1日에는 大韓帝國軍隊를 解散시켰다. 이때에 解散당한 軍隊는 到處에서 武裝걸기하여 抗日鬪爭을 展開하였는데 이들 義兵은 劣勢한 人員과 武器를 들고 強力한 日本軍에 對抗해서 5年間이나 싸웠다.

또 이와같이 韓民族의 運命이 絶望속에 빠져 茫然自失하고 있는중 1909年 10月 26日 韓日併呑의 元兇 伊藤博文이 하르빈驛頭에서 安重根義士의 銃彈에 쓰러지고, 親日派의 巨頭인 壳國奴 李完用은 同年 12月 22日 李在明義士의 칼을 맞아 重傷을 입었다.

이와같은 強力한 民族的 抵抗임에도 不拘하고 日本帝國主義者들은 親日走狗의 徒黨인 一進會를 背後에서 사촉하여 1909年 4月에 李完用一黨에게 育史에 오점을 남긴 韓日合邦請願書라는 것을 發表케 하고 이것을 純宗과 朝鮮統監 및 日本總理에게 提出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日本帝國主義者들에 의해서 꾸며진 侵略文書인 韓日合邦條約文書는 最終的으로 御前會議를 거쳐 1910年 8月 29日에 締結된 것으로 發表 되었으며 이것으로써 李氏朝鮮은 建國以來 27代 519年の 王朝의 幕을 내리고 大韓帝國은 完全히 消滅되고 日本帝國主義의 植

民地統治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 2) 日帝下에서의 抗日民族獨立鬭爭

日帝의 韓日合併과 그들의 殘忍한 殖民地武斷統治는 드디어 1919年3月1日의 華族的인 抗日獨立運動으로 폭발 되었다. 이 事件에서 日帝에 의한 被殺者는 무려 7,500餘名이며 負傷者數는 15,900餘名 그리고 投獄者가 46,900餘名에 달했다.

이 時期를 前後해서 수 많은 愛國之士들이 海外로 亡命하여 祖国光復을 위한 獨立運動에 投身하게 되었다.

그 중 代表的인 것은 李承晚 金九 安昌浩 李東寧등이 中心이된 上海臨時政府라 할 것이다. 이것은 보다 組織的인 抗日獨立運動의 必要性에 의한 國民의 熱望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上海프랑스租界에 세워진 이 臨時政府는 當時 國內외의 抗日鬭士들의 總本山이었고, 또 이것은 大韓帝國의 主權의 回復이라는 民族的 使命을 띄고 있었던 것이다.

1919年4月 臨時憲章이 宣布되어 李東寧이 議長으로 李承晚 安昌浩가 各各 國務總理와 內務總長이 되었다. 同年9月에는 臨時憲法이 制定되어 李承晚이 大統領 李東寧 金九가 國務總理와 內務總長에 選出되었으며, 1926년에는 職制改編으로 金九 金奎植이 各各 主席 副主席이 되었다.

이때 宣布된 臨時政府의 憲變에는 ㉑ 韓國은 共和國이다. ㉒ 議會制度의 採択 ㉓ 宗教와 良心의 自由 ㉔ 言論出版 集會의 自由 ㉕ 貴族의 特權廢止 ㉖ 宗教와 政治의 分離 ㉗ 常備軍의 解体와 國民等의 創設 ㉘ 司法權의 獨立等의 要旨를 規定하고 있었으며, 이 臨時政府는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繼承한 海外亡命政府이며 또 이 憲法은 當時 國民의 意思와 世界的인 潮流에 따라 制定된 것으로서 韓國이 獨立된 후에 그대로 施行할 것을 豫定한 民主憲法의 性格을 가진 것이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朝鮮共產主義運動의 始發은 1910年代에서 였으나 그것은 주로 滿州 또는 沿海州地方으로 移住한 韓人들이 소련의 볼셰비키共產黨과 코민테른에 의해서 操從 되었으며 大韓獨立과는 別途로 그들의 東方政策에 利用당한 傀儡集團의 性格을 갖고 있었으나 大韓民國上海臨時政府는 처음부터 民族



의 獨立을 위하여 鬪爭할 것을 目標로 하였으며 그 運營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自主의이고 民主의이었고 獨立後에는 韓民族의 歷史 傳統文化등을 그대로 繼承할 正統性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臨時政府의 活動에 있어서도 그들은 獨立軍을 支援하였고 抗日運動의 統一的인 指揮를 하였으며 聯通制의 組織網을 통해서 各地域의 抗日鬪爭을 指導하였다. 또 光復軍을 組織하여 1942년에는 對獨 및 對日宣戰布告를 한 후 聯合軍의 一員으로 東南亞에서 直接 日本軍과 戰爭을 遂行하는 등 實際로 韓國民의 象徴的인 政府役割을 한 것이다.

臨政이 後援하고 指揮한 海外武裝獨立軍은 滿州에서 義兵出身과 結合하여 獨立軍과 軍政府를 組織하였으며 그 중에서 北間島의 國民會와 臨時傘下의 北路軍政署 西路軍政署 및 新興武官學校 등이 가장 큰 抗日團體로서 役割을 하였다. 그들의 獨立鬪爭中 鳳梧洞戰鬪는 1920年 國民會所屬의 獨立軍이 濛洲 渾春縣의 鳳梧洞에서 日軍의 大隊兵力을 全滅시킨 것이며 靑山里戰鬪는 北路軍政署獨立軍이 吉林省의 靑山里에서 日軍의 聯隊兵力을 4日間의 激戰끝에 全滅시킨 大戰鬪였다.

이 戰鬪에서는 金佐鎭 李青天 李範奭將軍 등이 큰 戰功을 세운 것이다.

그밖에도 海外獨立團體의 組織的 活動은 活潑하였던 것이다. 1925년에는 參政府 正義府 新民府 등 3團體가 統合되었고 1927년에는 다시 이 3團體가 軍民會議로 統合은 되었으나 日·露의 策動으로 큰 機能을 發揮하지는 못 하였다. 1919年 11월에 滿州에서 組織된 金元鳳의 戰烈團은 日本人의 要人暗殺과 民心교란을 目的으로 한 것으로 1926년에 羅錫濤에 의한 東洋拓殖會社 爆彈投擲事件, 金祉燮의 東京二重橋爆破事件 등을 指令 하였다. 1929年 戰烈團의 解放後 金九는 愛國團을 組織하였다. 그 團員인 李奉昌이 1932년에 日本天皇을 刺殺 하였으나 失敗하였고 尹奉吉은 上海 虹口公園에서 白川義則이하 日本將校를 殺傷하였다. 그외에 安昌浩는 美國에서 興士團을 組織하여 在美僑胞의 啓蒙과 抗日獨立運動을 指導하였던 것이다.

한편 民族의 抗日運動은 海外에서 만의 鬪爭은 아니었다. 그에 못지 않게 國內에서는 直接 日帝의 監視와 彈壓을 받아가면서 各種의 地下團體 또는 合法團體들을 組織하여 抗爭하였던 것이다. 그 중 代表的인 것은 前述한 3.1運動과 6.10萬歲運動 및 光州學生運動 그리고 그 밖에 많은 抗日義舉를 들 수 있는

것이다.

3·1運動은 學族的인 抗日獨立運動이었다. 함은 앞에서도 言及한바와 같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朝鮮共產主義者들은 四分五裂되어 團結된 힘을 發揮할 수도 없었거니와 民族의 獨立鬭爭보다도 소련의 東方政策에 忠誠했고 코민테른의 國際共產主義運動에 便乘하여 民族의 獨立은 副次的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國內에서 일어난 3·1運動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行使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關心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3·1獨立運動은 純粹한 超階級的 民族運動이며 日帝의 暴惡한 植民地 武斷統治를 排斥하고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回復하고자한 學族的 抗日鬭爭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26年6月10日의 6.10萬歲事件을 若干 그 性質을 달리 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見解를 달리하는 감도 없지 않다.

6.10萬歲事件은 3.1運動과 마찬가지로 韓民族의 抗日運動에 이어 屈指의 事件임에는 틀림 없다. 이 事件을 말하여 「民族抗爭史上 두번째로 폭발한 6.10萬歲運動」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젊은 學徒들이 奸惡한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政策에 對抗하여 두번째로 民族의 獨立運動을 일으킨 6.10萬歲運動」이라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6.10萬歲는 共產主義者들이 많이 関与한 學事였기 때문에 紀念할 만한 意義조차 없다」고 하여 忌避하는 傾向이있는가 하면, 이에 대해서 共產側에서는 「그 事件은 右翼民族主義者들에 의해서 謀議된 學事이기 때문에 紀念할만한 價值조차 없다」고 外面 당하게 되어 結局은 歷史의 흐름 속에서 冷待와 忘却이 되어가는 傾向이 없지 않은 것이다.

如何時 이 事件은 左右翼을 不問하고 當時의 狀況속에서는 韓國民族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對日憎惡感과 反抗心에서 폭발된 事件이 있음은 틀림 없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의 ایده올로기를 超越한 民族抗爭이라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事件은 當然히 民族陣營에서 主導權을 잡고 많은 群衆과 學生들이 參與하여 國家 民族의 正統性을 찾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朝鮮共產主義者들은 3·1運動은 勿論이려니와 6.10萬歲事件에 있어서도 그리고 1929年11月3日의 光州學生運動에 있어서도 實際에 있어서는 아무런 役割을 하지 못 하였으며 오히려 抗日鬭爭에 熱中하는 民族陣營의 團結된

힘을 분열 시키거나 그들 스스로의 党權爭奪으로 인한 破壞를 自招하는 등 하여 反民族的 行動으로 獨立鬭爭을 妨害하였는 것이다.

日帝의 彈圧과 共產主義者들의 分裂工作에도 不拘하고 国内에 있어서의 抗日 団体들의 活動은 활발 하였을 것이다.

1927년에는 李商在 安在鴻 趙炳玉등이 民族陣營을 中心으로 左右合作 團體로서 新幹會를 創立한 것이다. 이 新幹會의 創立經緯는 當時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批判이 国内外的으로 高潮되어가고 있는 데다가 共產陣營이건 民族陣營이건 抗日 團體에 대한 日警의 彈圧이 漸次 加重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民族單一 組織體를 形成할 必要性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1926年 左翼系에서는 朝鮮物産獎勵會와 서울青年會系를 합쳐서 朝鮮民興會를 組織中에 있었고, 또 民族陣營에서는 社會主義者 言論人 宗教人등을 모아 新幹會를 準備中에 있었는데 많은 千餘曲折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結局 左右兩者는 合意를 보아 1927年에 社會主義諸團體를 解体하고 드디어 新幹會라는 이름으로 統合되어 民族單一 組織體를 創立하게 되었는 것이다.

그리하여 新幹會는 첫째 우리는 政治的 經濟的 覺悟를 促進한다. 둘째 우리는 團結을 鞏固히 한다. 셋째 우리는 機會主義者를 一切 認定치 아니 한다는 三大目標下에 오직 超階級的으로 民族의 獨立단을 위해서 活動할 것을 다짐 하였으나 元來가 異質分子들의 一時的인 集合體라 同床異夢의 꿈속에서 큰 일도 못한채 1931年 5월에 解散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新幹會는 日帝에 대해서 우선 光州學生運動으로 拘束된 學生들의 석방을 의쳤으며, 韓國人에 대한 착취기관의 철폐, 移民政策反對, 韓國人本位의 教育實施, 韓國語教育의 實施, 科學, 思想 研究의 自由등을 들고 나와 合法的인 혹은 非合法的인 鬭爭을 展開 하였는 것이다.

한편 新幹會의 婦女團體로서 金活蘭을 中心으로 謹友會가 組織되어 활약한 바도 있다. 同會 亦是 韓國女性運動에 社會主義者들이 浸透하여 分裂시켰는 것을 新幹會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民族陣營의 女性이 中心이 되어 주로 韓國 女性의 團結과 地位向上이라는 目標를 내 세우고 左右翼의 合同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民族獨立運動을 後援하여 오다가 新幹會의 運命과 같이 左右分裂로 解体되고 만 것이다.

그 밖에도 수 많은 抗日義學와 運動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日帝下에 있어서의 抗日獨立運動이란 日本을 共同的 敵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民族陣營이나 共產陣營이나 마찬가지로 엮기는 하나 그 窮極目的에 있어서는 同一하다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民族陣營에서는 日帝로부터 獨立하여 大韓帝國의 國家的 正統성을 回復하는 데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共產主義者들은 一切의 資本主義秩序를 否定하고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日的과 基本路線 및 性格이 相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抗日鬪爭過程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은 理論 組織力 訓練된 戰術 및 強力한 國際組織의 後援이 있었기 때문에 抗日鬪爭은 그들만이 한 것처럼 떠들고 偽裝하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그들의 策略 때문에 참된 民族獨立鬪爭을 沮害 하였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다음 8.15解放以後의 南北關係에서 더욱 分明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3. 8.15以後의 南北關係에서의 正統性的 追求

1945年8月15日 日帝는 드디어 聯合國앞에 降伏하게 되었으며 우리民族은 이 순간부터 近半世紀間의 排外 排日運動의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民族解放이 우리民族의 抗日鬪爭의 結末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聯合國의 勝利가 決定的 要因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인 것이다. 그러면 果然 聯合國은 獨立된 韓國의 國家 및 政府의 形態와 性格을 어떻게 規定하였던 가를 日帝의 敗戰을 前後한 몇가지 國際公約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第2次世界大戰이 聯合國側에 有利하게 展開되던 1943年11月27日에 美, 英, 中 三大國首腦들은 Cairo에서 會談하여 「韓國國民의 奴隸狀態에 留意하여 適當한 節次를 밟아서 韓國을 自由와 獨立의 나라로 할 것」을 決意하였으며 이것을 Cairo宣言으로 世界萬邦에 宣布하였다. 聯合國側은 여기서 分明히 韓國을 日本의 殖民地로부터 解放하여 「自由와 獨立」을 시켜줄 것을 約束한 것이다.

여기서 自由라 함은 日帝의 束縛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意味하며 獨立이

라 함은 主權의 回復을 意味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回復이란 原狀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며 그 原狀은 大韓帝國의 主統性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釈되어야 할 것이다.

聯合國은 이와같이 獨立後의 韓國의 正統性을 確認하였을 뿐 아니라 그뒤 1945年 7月 26日에는 美, 英, 蘇 三巨頭에 의한 Potsdam 宣言에서 韓國의 「自由와 獨立」을 再確認한바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際的인 公約과 宣言은 當然히 준수되어야 하며 어떠한 國家도 韓國의 自由와 獨立을 가로막는 行動을 취하여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의 日本의 戰爭能力은 이미 敗戰直前의 狀態에 들어갔음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杜魯門大統領은 日本軍을 過大評價하고 소련의 흥계를 誤判하여 戰爭을 하루속히 終結시키기 위해서는 1945年 7月까지 소련이 太平洋戰爭에 參戰해야 한다고 Potsdam 會談에서 懇懇하게 되자 스탈린은 이 機會를 노치지 아니하고 終戰 不過 1週日前인 8月 8日에 極東戰爭에 參戰할 것을 宣布하였다. 그리하여 8月 9日에는 그들의 宿願인 南進政策에 着手하여 8月 11日에는 北韓의 雄基와 羅津에 同月 24日에는 平壤에 入城 하였으며 8月末까지는 北韓全域을 完全히 掌握한 것이다. 이리하여 소련 등은 聯合軍司令部 一般命令 第1号中 韓國에 관한, 38度線 分割協定條項을 違反하여 38度線을 가로 막고 北韓地域을 共產基地化 하기 始作하였는 것이다.

이 무렵에 美軍(第24軍團)은 필립핀에서 오기나와까지 겨우 進出 하였으며 1945年 9月 8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들은 仁川에 上陸하게 되었던 것이다. 美軍은 이와같이 소련軍이 北韓땅에 進駐한데 비하면 約 1個月 늦게 南韓에 上陸한 셈이다.

이리하여 韓半島는 1945年 2月の 美, 英, 蘇等 三國에 의한 Yalta 協定에 따라 38度線 以北에는 蘇聯軍이 以南에는 美軍이 各各 占領하게 되어 敗戰한 日本軍의 武裝을 解除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38度線은 美, 蘇 兩國이 軍事行動의 便宜上 設定한 一時的인 軍事行動 境界線 이었고 따라서 軍事的 目的의 終了와 더불어 消滅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38度線은 그 本來의 目的을 離脱하여 漸次 恒久的인 國境線으로 變質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当初의 Cairo 宣言이나 Potsdam 室言의 根本精神에 違背되는 処事이며 韓民族은 日本으로 부터의 解放과 同時에 다시금 美 蘇라는 強大國의 權力다툼속에 말려들게 되는 悲運의 歷史를 再演하게 된 것이다. 南北韓에는 各已 相異한 體制의 軍政을 實施하게 됨으로써 國土와 民族이 分斷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소련이 對日戰에 參加하고 戰勝國으로서 北韓地域을 占領하도록 許容한 美, 英 등 自由國家들은 1920年代부터 활발하게 進行된 소련의 東方政策 즉 아시아 共產主義 革命運動의 溫床을 提供해 줌으로써 스탈린의 計略에 속아 넘 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련이 對日參戰으로 北韓에 까지 進駐하게된 그 自体가 처음부터 韓半島 나아가서는 全 亞細亞地域의 共產化를 目標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1945年 12月 25日의 모스크바 三相會議과 美 蘇共同委員會의 協議過程에서 더욱 分明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會議에서 美, 英, 蘇等 三國外相은 韓國民의 自治能力 또는 自活能力의 不足을 理由로 하여 5年間의 信託統治와 그 過程에 있어서의 韓國臨時政府의 樹立을 決議한 바 있는 것이다. 이 會議의 決定에 대해서 36年間의 日帝의 植民地統治에서 解放된 韓國民族으로서는 이 措置를 支持할 수 없었던 것은 當然한 民族感情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스크바三相會議의 信託統治案에 대한 反對運動은 拳族的인 것으로 되었으며, 3.1運動以來 韓國人の 民衆運動史上 最大規模였던 것이다. 1946年 反對運動이 그의 極致에 달하였을 때 全 서울市는 撤市狀態였고 4,200餘名의 軍政廳中央官吏中 約 900名밖에 出勤하지 않았으며 서울市內의 8個警察署長도 總辭職하는등 하여 國內는 一大混亂을 惹起하였던 것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로 처음에는 이에 呼応하여 反託運動에 나섰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소련의 사측을 받고 贊託運動으로 突變하여 또 한번 反民族的 行動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모스크바協定에 따라 美, 蘇共同委員會를 開催하게 되며 여기서 韓國臨時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節次를 相議하게 되었다. 1946年 3月에 第1次 美, 蘇共同委員會가 豫定대로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것은 美軍側의 A. Arnold 少將과 蘇聯軍側의 T. Stikov 中將을 首席으로 하여 10名의 委員으로 構成 되었다.

이 때 美, 蘇는 會談벽두부터 意見이 對立되어 結局 會議는 停頓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韓國臨時政府를 樹立하기 위하여 協議에 招請될 政黨과 團體의 性格에 관하여 蘇聯軍側은 모스크바三相協定을 支持하고 贊成하는 政黨이나 社會團體만을 招請할 것을 固執 하였다. 즉 最高 5年間 우리民族이 四大國의 信託統治를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는 團體나 政黨만을 臨時政府樹立에 參加시킬 수 있는 集團으로 하려는 것이 소련側의 主張이었다. 當時 소련을 祖國으로 하고 그들의 指令에 따르는 集團은 左翼系의 政黨 및 社會團體 뿐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意圖는 처음부터 共產主義者들로써 韓國臨時政府를 構成하려고 하였든 것이다.

이에 대하여 美軍側은 民主主義의 根本原理가 言論의 自由에 있고 意思決定의 自律性에 있음으로 韓國에 現存하는 모든 政黨과 社會團體는 當然히 協議에 招請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韓國의 正統國家 및 政府를 세우주기 위해서는 韓國國民의 自由意思를 尊重하여야 한다는 美國의 主張으로서 韓國의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當然한 提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 蘇兩側의 意見의 對立으로 同委員會는 同年 5월에 無期休會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民族의 統一政府樹立에의 希望은 날로 높아 갔음으로 1年後인 1947年 5월에 平壤에서 第2次 美, 蘇共同委員會가 再開되기는 하였으나 亦是 第1次會談의 境遇와 같이 相互間의 意見對立으로 結局 同會談은 完全히 決裂되고 만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軍側은 東歐羅巴의 많은 그들의 占領地域과 마찬가지로 韓半島에도 그들의 傀儡集團인 所謂 人民民主主義制度를 樹立할 것을 目的으로 하였으나 韓半島와 東歐와의 差異點은 第2次大戰中 東歐에서는 소련共產黨이 操從하는 反獨 나치스의 resistance가 存在하였기 때문에 解放과 더불어 그들은 곧 共產黨을 組織하여 社會主義革命段階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韓半島에는 그러한 強力한 統一된 共產主義組織體가 없었기 때문에 5年間の 信託統治期間에 이것을 組織하여 全韓國을 共產化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于先 占領地인 北韓地域만 이라도 共產基地로 構築하기 始作 하였든

것이다. 이에 同調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日帝下에서의 共產主義運動過程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如前히 소련共產黨의 指令을 받고 소련의 東方政策에 利用되었으며 民族史의 正統性의 계승은 고사하고 反民族的인 行動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如何間 美, 蘇兩側이 利害關係의 相反으로 同會談의 決裂을 보게 되자 美國은 더 以上 소련을 相対로 하여서는 韓國問題의 解決이 可望없음을 깨닫고 1947年 9月의 第2次 UN總會에 韓國問題를 提議하게 되었다. 즉 美國의 提議은 UN에 韓國臨時委員團을 設置하여 그의 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總鮮舉를 實施하여 統一韓國을 통한 總鮮舉를 實施하여 統一韓國을 樹立한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서 소련은 極力 反對하려고 工作을 하였으나 美國側은 이를 一蹴하고 絶對多數의 贊成으로 可決을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國際聯合의 決議에 따라 1948年 1月 韓國臨時委員團이 來韓하여 南北韓을 통한 調査를 할려고 하였으나 소련의 指令을 받은 北傀는 同委員團의 入北을 阻止하였으므로 그 調査가 不可能하게 되었다. 그 結果 同委員團은 自由로운 總選이 可能한 南韓地域만이라도 于先 總選舉를 實施하기로 決議하여 1948年 5月 10日 UN監視下의 總選舉가 實施되었다.

總選舉에서 198名의 制憲議員이 選出되었으며 5月 20日에는 同議會가 歷史的인 開院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制憲議會 議長에는 李承晚氏 副議長에는 申翼熙氏가 各各 選出되었으며 7月 17日에 憲法이 公布되고 1948年 8月 15日에 드디어 大韓民國政府가 誕生된 것이다. 그 후 大韓民國은 美國을 비롯한 世界 여러 나라 承認을 받았고 그 해 12月에는 第3次 UN總會에서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認定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結果는 日本에게 主權을 빼앗긴지 40餘年만에 우리民族의 政府가 다시 成立 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民族國家의 正統性을 國際적으로 認定받게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大韓民國은 이제 國際的이나 國內的으로나 大韓帝國 나가서는 韓民族의 正統性을 繼承한 國家임에는 틀림 없음을 우리 政治史가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여러 차례 모쳐던 주어진 統一의 機會를 拒逆하고 民族史의 正統性과는 本質을 달리하는 共產主義理論에 따라 이 땅에다 프롤레타



리아階級國家를 세울 것을 構想하여 暴力革命 또는 武力에 의한 統一을 試圖한 結果 同族相殘의 6 25 悲劇을 남겨 놓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美 蘇가 韓國問題를 둘러싸고 勢力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의 南北韓의 國內実情을 살펴 보아도 共產主義者들의 不斷한 赤化工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北韓에서는 1945年 8月 17日 民族陣營의 曹晚植을 中心으로 平壤에 平南建準準備委員會가 組織되어 앞으로 中央政府의 樹立이 있기를 期待하면서 自治活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軍이 平壤에 入城하면서 이 平南建準을 解体시키고 共產陣營의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組織하였다. 이것은 소련軍政當局이 北韓地域의 經濟的 약탈을 하기 위한 組織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軍政當局은 Cairo宣言이나 Potsdam宣言에서 確認한 바 있는 「韓國의 自主獨立」을 무시하고 北韓을 分割統治하고 또 韓半島의 赤化를 위한 共產基地의 構築을 위해서 1945年 10月 28日에는 北朝鮮五道行政局을 正式으로 組織하였다. 勿論 이러한 措置는 1945年 12月 25日의 모스크바三相會議와 1946年 3月의 第1次 美 蘇共同委員會 및 1947年 5月에서 10月까지의 第2次 美 蘇共同委員會가 열리기전에 이미 計劃되었던 工作이었던 것이다

1945年 10月 13日에는 朝鮮共產黨 北朝鮮 分局을 創設하였으며, 이것이 다시 同年 12月 17日에는 北朝鮮共產黨으로 改稱되고 金日成이 同黨의 責任秘書가 된 것이다. 소련軍政은 이와같이 北韓의 五道行政組織과 또 그것을 指導 監督하는 共產黨 組織까지 完了해 놓고 同年 12月 25日에 모스크바三相會議를 召集하여 그들의 뜻을 貫徹시키기 위해서 韓國의 5年間 信託統治案을 固執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曹晚植을 中心으로한 北韓의 民族陣營이 反託運動을 하게되자 이 때부터 一切의 反對勢力을 숙청 追放 또는 학살하면서 金日成의 獨裁體制를 構築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1946年 9月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單獨으로 創設해 놓고 亦是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任命하였다. 따라서 同委員會는 所謂 20個政綱이라는 것을 發表하고 土地改革法令 選舉法令 勞動法令 男女平等權法令 重要產業國有化法令 등을 만들어 놓고 共產主義手法으로 收奪하기 시작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은 1946年 8月에 朝鮮新民黨과 北朝鮮共產黨을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하였으며 앞으로의 北韓에 單獨政府를 樹立할 日的으로 1946年 11月 3日에는 地

方行政機關인 道, 市 郡人民委員會를 選舉하였으며 1947年2月에는 各道 市 郡人民委員들의 間接選舉의 形式으로 立法機關인 北朝鮮最高人民會議를 構成해 놓고 여기에 다시 最高執行機關인 北朝鮮最高人民委員會를 組織하였으며 委員長에 金日成이 就任됨으로써 1947年5月에서 10月까지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가 平壤에서 열리기 전에 이미 政黨이나 執行機關등의 모든 權限을 金日成이 掌握하여 北韓을 共產主義革命基地로서 構築해 놓고 各種의 協商을 提案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8.15解放을 마지한 南韓에 있어서는 呂運亨을 中心으로 組織되었던 秘密結社인 朝鮮建國同盟이 解放과 더불어 表面에 나타나 建國準備委員會를 結成하고 混亂期의 治安을 確保하고 있었다. 이것은 當時 北韓에 있어서 民族陣營의 曹晩植을 中心으로 組織되어 治安을 維持하였던 平南建國準備委員會와 같은 役割을 하였으나 同委員會는 左翼의인 色彩가 濃厚하다고 하여 여기서 反共勢力이 分派하여 韓國民主黨을 組織하게 된 것이다.

韓國民主黨은 左翼系의 建國準備委員會에 對抗하기 위한 反共勢力으로 組織되기는 하였으나 元來 鳥合之卒이 甞인 集團이어서 大衆앞에 내놓을 名分이 없는 政黨으로서 다만 美軍政當局과 親近한 關係에서 維持되어 왔다. 이때 마치 歸國한 上海臨時政府의 主席 金九 副主席 金奎植 內務部長 申翼熙氏등을 奉戴하여 名分을 찾으려고 內定하고 있었으나 뒤늦게 美國에서 歸國한 李承晩博士가 이에 対応해서 別個의 組織으로 政府를 樹立하려고 하자 情勢의 不利함을 알아차린 韓國民主黨의 態度는 突變하여 李博士를 支持하고 合作하여 上海臨政派에 對抗하게 되었으니 結果적으로 볼 때 國內左翼系의 建國과 民族陣營의 上海臨政派가 反共親美勢力인 韓民黨이 李承晩博士와 結合하여 大韓民國政府를 樹立하게 됨으로써 完全히 밀려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過程에 있어서의 南韓의 社會는 安定된 것은 아니었다. 朴憲永을 中心으로한 南勞黨系 左翼分子들의 소동과 무수한 政黨 社會團體들의 亂立은 政局을 混亂시켰으며, 北韓의 金日成體制의 統制된 社會와는 對照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實情에 맞지도 않는 歐美式 自由民主主義를 無批判의으로 받아들인 結果로 招來된 混亂이라는 非難도 없지는 않으나, 한편 우리民族史

의 正統性을 繼承하기 위해서는 個人的 自由와 尊嚴性을 무시할 수 없다는 思想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指摘해야 할 것은 이러한 政局의 混亂을 틈타서 秩序를 破棄하고 顛覆시키려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暴力手段과 偽裝平和戰術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南北韓의 對峙가 時日을 끌게 되고 또 그 對立感情이 深化되어가자 全民族은 날로 統一을 熱望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며 그의 接近方法을 摸索하게 되었다. 즉 李承晩中心의 獨立促成會(左右翼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의 統合體)와 金性洙의 韓民黨은 南韓만의 總選擧를 원하였으며 金九中心의 韓獨黨은 南北協商을 통한 統一을 主張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金九 金奎植等의 合作派는 1948年3月26日 越北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과 南北協商을 하였으나 그들의 計劃에 말려들게 되어 結局은 失敗하고 돌아 왔다. 여기에 參集한 人士는 南北韓을 합하여 무려 625名이라 하며, 이 때 決議된 事項은 「韓半島에서의 外國軍隊撤収 및 南北韓不戰의 確認」이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계속해서 南北平和協商을 提案하여 亦是 平壤에서 1950年6月7日에 同會談을 再開하여 6.25前日까지 계속 하였다. 6.25南侵이야말로 그들의 南北平和協商論이 干戰術이며 偽裝平和統一攻勢였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의 6.25南侵은 侵略行爲이며 民族史의 正統性을 破壞하는 만행이었다. 그것은 韓半島에다 異質의인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려는 恫計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韓民族의 歷史 文化 傳統 藝術등의 모든 正統性을 根本的으로 否認하는 마르크스主義의 唯物史觀에 따른 革命이었기 때문이다.

1953年7月27日 休戰이 成立되고 54年4月26日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제네바會談이 열렸다. 여기서 南韓側은 UN韓國統一復興委員會의 監視下에 南北韓 土着人口에 比例한 總選擧를 實始할 것이며, UN軍은 韓國이 統一 獨立될 때까지 계속 韓國에 殘留할 것을 提案한 데 대해서, 北傀側은 모든 外國軍隊의 6個月 以內撤収와 中立國監視下의 南北總選擧를 主張하여 如前히 南韓의 軍事力의 空白을 利用하여 再南侵할 意圖를 보였으며 그 以後 잇달아 일어난 武力挑擧이나 武裝間諜의 南派들은 休戰協定의 違反은 勿論 民族史의 正統性을 破壞하려는 挑擧行爲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傀儡는 國際緊張緩和의 潮流에 따라 우리政府

가 提案한 民族의 平和의 統一을 위한 72년의 7.4 南北共同聲明에 合意해 놓고 이 精新을 一方으로 무시한 채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을 中止시킨 것도 그들의 統一方案이 平和인 것이 아니라 如前히 暴力的이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所謂 四大軍事路線의 貫徹이라는 데서 더욱 뒷받침 해 주고 있으며, 그래도 表面上으로는 高麗聯邦制나 大民族會議니 하면서 偽裝平和攻勢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 政府는 그들의 기만術策에 속지 않을뿐더러 더욱 積極的으로 모든 共產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하여 世界人類의 監視下에서 南北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73年度 6.23 平和統一外交政策案을 發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諸般措置는 正統性을 계승한 大韓民國으로서 취해야 할 當然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이것으로써 北韓傀儡集團은 韓半島의 正統性의 繼承者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破壞者임을 世界萬邦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

#### IV . 맺 는 말

日帝植民地統治下에서의 抗日運動에 있어서 北韓共產陣營은 共產主義運動을 한 것이고 南韓陣營의 民族主義者들은 民族獨立鬪爭을 하였다 함은 지금까지의 韓國政治史 혹은 政黨史가 밝혀주고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革命과 正統性이란 矛盾된 概念이며 오히려 既存秩序의 傳統 文化等의 正統性을 破壞하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目的으로 되어 있다.

더우기 日帝下에서의 朝鮮共產主義者들의 運動이란 처음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思想을 信奉해서가 아니라 露領 혹은 中國領의 韓人 移住者 및 亡命政客들의 愛國心을 國際共產主義者들이 利用해서 이것을 世界共產化革命의 遂行에 動員시키는 데서 始作된 것이다.

그럼으로 朝鮮共產主義者들은 韓國의 民族獨立이나 立權의 回復보다도 소련共產政權에 忠誠했으며 코민테른의 指令과 後援을 받고 世界共產主義革命을 위해서 活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이 國內政治에 關与하고 抗日運動에 影響을 준 것은 레닌의 共產主義革命理論에 따라 反帝民族解放鬪爭이라는

旗幟아래 共產主義革命을 통해서 日帝를 물리치고 그 땅위에 共產主義制度를 確立 한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國家的 正統性을 回復하려는 데서 抗日運動을 한것이 아니었음은 分명한 것이다.

특히 朝鮮共產主義자들이 하나의 目標 즉 世界共產主義革命이라는 것을 指向하면서 國內外로 四分五裂되어 黨權鬭爭만을 일삼아 왔다는 것만 보아도 그들에게는 어떤 民族史的 正統性도 없고 自主性도 없이 오직 소련 共產黨에 隸屬되어 利用 당하면서 自滅의 運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派閥싸움에서 異端者를 全部 숙청하고 남아있는 唯一한 生存者는 오늘의 北傀 金日成이라 할 것이다. 金日成은 原名 金成柱로 日帝時代에는 소련 軍少佐로 服務하였으며 소련을 祖國으로 모시고 소련의 國防 및 東方政策 나아가서는 世界赤化政策을 위해서 追徒하든 켜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勿論이려니와 그가 支配하는 北韓 共產政權이 民族史的 主体로서의 正統性을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金日成集團은 革命에 의해서 새로운 秩序를 確立하는 자가 正統性의 相統者로 된다고 理解하고 있기 때문에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破壞하려 하고 있으며 때로는 民主主義와 平和를 내걸고 偽裝戰術로 接近하기도 한다. 소련의 시측을 받은 北傀는 모스크바三相會議나 美 蘇共同委員會가 열리기 전에 이미 北韓地域은 完全히 共產主義革命基地로 만들어 놓고 있었으며, 또 6.25 前夜까지 南北平和協商을 한다고 煙幕戰術을 썼는가 하면 7.4 南北共同聲明도 그들의 共產主義革命戰略의 一環으로 利用하였고 大民族會議나 高麗聯邦制나 하는 등의 偽裝平和戰術은 모두 우리의 正統性의 破壞를 위한 手段으로 動員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統治權力的 構造的 側面에서 보아도 北傀의 權力構造는 正統性을 계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正統性이란 被支配者의 同意와 自律性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비록 大韓帝國이 君主國家였기는 하나 君主의 支配權力은 傳統과 慣習外에도 百姓들의 同意 또는 自發的 服從이 있었기 때문에 維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北韓共產主義體制은 個人的 經濟生活에서 부터 團體生活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共產黨에 의해서 統制되며 強制되고 있는 것이다. 個人的 尊嚴性이 無視되는 것은 勿論 個人的 自由는 처음부터 認定되지 않는 것이다. 金日成이 支配하는 共產黨이 最高命令機關이며 그 밑에 있는 各國家機關은 黨의 命令을 決定하고 執行하는 役割밖에 하지 못한다. 여기서 個人的 同意 또는 自發的 服從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絶對的 服從만이 있을 뿐이다. 國民은 支配者의 自由로운 選擇을 할 수 없으며 오직 金日成을 絶對者로 偶像화하는 金日成唯一思想만을 信條로 하여야한다. 이러한 統治權力體制가 確立되기 위해서는 무서운 刑罰과 物理的 強制力에 의해서만 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正統性의 論理는 成立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大韓民國은 大韓帝國의 歷史 傳統 文化 藝術 言語 및 其他 모든 民族文化의 要素를 繼承한 地가 國民의 同意에 의한 統治權力이 形成되고 있으며, 이 支配權力 밑에 國民이 自發的으로 또는 積極的으로 服從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國家의 正統性의 確立을 뜻하는 것이다. 이 境遇에 있어서의 正統性은 支配와 服從의 複合體에 의해서 維持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日成體制에 있어서와 같이 物理的 強制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意味에서 政治史的으로 보나 統治權力의 構造的 側面에서 보나 韓民族의 國家의 正統性은 오직 大韓民國과 우리國民의 文化生活 속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經濟史的 側面에서 본 正統性

崔 載 勳  
釜山大學校教授

## 차 례

經濟史的 側面에서 본 民族正統性

I. 經濟史的 側面에서의 正統性概念定立

II. 北韓의 經濟思想史歪曲現況

(1) 古代史에 나타난 經濟思想의 歪曲解釈

가 古朝鮮 夫 辰韓

나 三國時代

다 統一新羅時代

(2) 中世經濟思想의 誇張解釈

(3) 實學思想의 機械論的 解釈

III. 南北韓經濟体制面에서 본 正統性의 方向

(1) 理論的 側面에서 본 資本主義經濟体制

(2) 理論的 側面에서 본 社會主義經濟体制

(3) 南北韓 經濟体制의 比較

(4) 南北韓 現實經濟의 比較

IV. 結 言

## I. 經濟史的 側面에서의 正統性概念定立

國土가 兩斷된지도 於 30 년의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 보면 이 南北의 分斷은 國民生活水準向上과 經濟發展에 必要한 資源과 生活手段을 分割 내지 偏在케 하였으며 市場規模를 陔隘시켰을 뿐만 아니라 南北이 서로 다른 經濟體制를 指向하게끔 하였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韓國은 經濟的 合理化와 民主化를 指向하는 自由主義經濟體制를 採択하여 民族의 自立經濟基盤을 굳혀 왔으며 北韓은 經濟的 合理化와 民主化를 拒否하는 所謂 社會主義經濟體制를 指向하면서 그들 特有의 獨裁經濟體制를 굳혀 왔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民族經濟의 發展史를 통하여 그 正統性的 向方을 究明하기 위하여 먼저 正統性的 概念을 定立하고 北韓에서의 經濟思想史의 歪曲現況을 檢討한 다음, 南北韓의 經濟體制를 比較해 보고자 한다.

먼저 正統性이란 用語에 대해서 經濟史的 側面에서는 어떻게 理解해야 될 것인가를 잠간 言及해 두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正統性(legitimacy)이란 말은 政治學에서 사용되는 用語로서 權力的 強制性을 被治者의 同意로 轉化시키는 論理的 및 心理的 根拠를 意味한다. 그리고 이 正統性的 根拠의 問題는 오래 전부터 政治學上에 있어서 根本問題의 하나로서 安定된 支配體制는 반드시 一定한 正統性的 論理的 心理的 根拠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sup>

그러면 經濟史的 側面에서는 이 正統性이란 말을 어떻게 理解해야 할 것인가. 筆者가 생각하기로는 「經濟體制를 國民의 同意로 轉化시키기 위한 論理的 및 心理的 近拠」<sup>2)</sup>다시 말하면 「論理的 및 心理的 根拠에서 國民大衆의 支持를 받는 經濟體制」로 理解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安定된 經濟體制는 반드시 一定한 正統性的 論理的 心理的 根拠에 뒷받침 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解釋이 可能하다면 「論理性 및 心理的 및 心理的 根拠에서 國民大衆의 支持를 받는 經濟體制」란 다음이던 經濟的 合理主義 및 經濟的 民主主義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岩波小辭典, 「政治」(東京, 岩波書店, 1965) p.99 參照



이와같은 正統性的 概念은 民族經濟의 發展史를 通하여 究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近世 이후의 韓國經濟史에서 여기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李朝封建社會의 末期에 있어서 그 自体內에 近代化의 諸要因이 싹트고 있었다는 점이다. 18世紀이래 農業部門에서는 農民의 地主의 形成과 더불어 經營農이 점차 擴大되어 갔고 亂塵이 盛行하면서 特權商人(六矣廬等)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全國各地에 場市가 열렸고 交換經濟는 都市와 農村의 여러 地域을 連結시키고 있었다. 手工業部門에서는 手工業의 經營形態의 發展 및 獨立自營手工業者가 擴大되어 나갔다.

그리고 鈹山部門에서는 賃金勞動者의 發生도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變化 속에서 近世市民階層이 漸次 成長하였으며 18世紀의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이미 無視할 수 없는 社會的 勢力에 까지 成長하여 갔던 것이다. 社會思潮에서도 變化는 움트고 있었다.

實學思潮은 傳統的인 封建倫理와 價值觀에 도전하면서 近代市民意識을 고취하고 있었다. 英·正年間에 登場한 庶民文化는 이러한 새로운 社會思潮의 結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諸現象은 外勢의 侵入만 없었더라면 우리 民族도 비록 느리긴 하지만 自生的인 近代化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可能性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의 萌芽가 이미 움트고 있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이러한 萌芽가 채 자라기도 전에 19世紀 後半에 접어들면서 李朝는 外勢의 侵入을 막아내지 못하고, 끝내는 日帝의 植民統治의 길을 터 주고 말았다.

어찌하여, 外勢의 侵入을 막아내지 못하고 우리 民族의 主体的인 推進力에 의하여 近代化에의 길을 밟지 못하고 끝내 苛酷한 日帝의 資本收奪의 對象이 되어 피맺힌 恥辱의 歷史로 點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2) 趙武滄著,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p.530

여기에 대한 經濟史的인 要因으로서는 19世紀初의 그 紊亂했던 勢道政治가 앞에서 지적한 萌芽期的 發展을 鈍化시켜 勞動生産性を 低下시켰을 뿐만 아니라 農民層의 近代的인 分化를 가로 막았다는데 있다는 사실을 自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事情속에서 當時의 勢道政治의 부패상은 外國勢力을 막아낼만한 能力조차 喪失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李朝는 中國과의 交易를 除外하고는 鎖國政策을 외고집으로 밀고 나갔으며 外國事情에 어둡기만 하여 우물안 개구리 모양 새로 들어오는 新進勢力을 받아들일 包容力이나 指導力조차 갖지 못했다.

이와같이 李朝가 惡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무렵 世界史는, 과연 어떻게 돌결치고 있었던가? 이미 英國은 19世紀初에 産業革命을 完遂했거니와 19世紀中葉엔 獨·仏·美를 비롯한 後進資本主義國들이 産業革命을 치루고 市場圈을 擴大하기 위한 植民地爭奪戰에 불을 뿜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英·仏·露·美 등의 諸國은 當時 後進地域이었던 極東方面에 눈독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刺戟된 日本은 1876년에 이른바 明治維新을 斷行하고 東洋에서는 最初로 封建制의 旧殼을 脱皮하게 되었다. 以來 急速히 發展한 新興日本은 그 自體의 內在的인 矛盾으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韓國의 植民地化에 눈독을 들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1876年 江華條約을 起點으로 하여 韓國侵略에 加担하였다. 이와 같이 뒤늦게 新興資本主義國으로서 國際舞臺에 登場하게된 日本은 그 內在的인 矛盾과 後進性을 韓國과 中國大陸을 侵略함으로써 克服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資本主義는 出發부터 軍事的 侵略的 性格을 띠고 軍需工業에 倚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軍需工業의 原料供給과 아울러 低穀價政策에 의한 國內産業育成을 위해 食糧供給의 源泉(市場)을 確保하는데 注力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背景에서 韓國을 併呑한 日本은 植民地取奪을 위한 基礎工作過程으로서 土地調査事業 및 貨幣金融制度의 確立에 着手하고 또한 이를 土臺로 租稅制度의 近代化와 鐵道, 港灣, 道路, 電信, 電話등 近代的 交通通信機關의 창설에 注力하였다. 이러한 事業은 韓國의 近代化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韓國을 植民地로서 組織的인 取奪을 하기 위한 基礎工作이었음은 두말할 必要조차 없

는 것이다.

이처럼 韓國은 外勢의 侵入에 의한 他律的인 近代化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韓國經濟의 對日從屬關係는 더욱 強化되었고 韓國產業의 發展은 畸型的인 特質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日本의 大陸侵略을 위한 戰略的 要請에 의하여 급작히 建設된 補充的 工業의 發達이었으며 그 결과로 각종 生産部門 사이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同一生産部門에 있어서도 서로 橫的 또는 縱的 聯関이 欠如되어 距行的 産業構造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속에서 民族資本은 弱化一路에 있었다. 1940年末 現在 資本金 1백만圓 이상의 大規模工場을 經營하는 企業家들의 民族別 資本構成을 보면 公稱資本만을 指標로 할지라도 우리 民族資本은 겨우 6%에 지나지 않았으니 참으로 貧弱하기 짝이 없었다.

이처럼 貧弱한 民族資本과 日帝가 물려준 跛行的 産業構造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解決을 마지 했던 것이다. 「폴·바랑」이 지적한 것처럼 「英國이 印度에서 掠奪해간 經濟餘剩의 그대로 印度에 投資되었다면 오늘날까지의 印度의 經濟發展은 의심할 여지없이 現實의 陰慘한 記錄과는 전혀 달라져 있을 것이다」(3) 라는 말을 韓國의 경우를 두고 適用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들어맞는 適切한 解明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日帝가 이 땅에서 組織的으로 掠奪해간 資本收奪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우리들이 自主的인 力量으로 近代化를 遂行해 나갈 수 있었더라면 정말 그 慘憺한 歷史의 記錄은 몇몇하고 밝게 記錄되지 않았을까?

이상에서 解放을 맞이한 時点까지의 民族經濟의 發展過程과 그 特質을 概略的으로나마 살펴 보았거니와 여기에서 다시 正統性 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前述한 바와 같이 18世紀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諸 生産分野에서 資本主義的 萌芽가 움트고 있었다는 사실과.

3) 原覺天, 現代アジア經濟論(東京, 勁書房, 1967) p.38.

둘째, 그 萌芽가 成熟하기도 전에 外勢侵入에 의해 抑圧되고 他律的인 近代化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세계 그러한 經濟史的 背景으로 말미암아 民族資本의 成長이 極度로 抑圧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確認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 추구되어야 할 真正한 民族經濟의 指標은 民族資本의 成長을 基盤으로 하여 어떠한 他律的인 強壓도 없이 經濟的 合理化와 民主化를 指向하는 自由主義經濟體制가 基調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라 하겠다.

## II. 北韓의 經濟思想史 歪曲現況

### (1) 古代史에 나타난 經濟思想의 歪曲解釋

#### 가. 古朝鮮, 夫餘, 辰韓

歷史를 공부하는 것은 過去의 行蹟을 分析 검토함으로써 오늘의 位置를 把握하고 나아가서 보다 나은 未來를 設計하기 위한데 있다. 따라서 過去에 대한 把握은 科學的이고 客觀的이어야 한다. 이것이 어떠한 目的에 의해 客觀性을 喪失하게 될 때 現在에 대한 認識이 精確한 것일 수 없으며, 여기에 基礎를 둔 未來의 設計는 新기루와 같은 허황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北韓의 國史에 대한 서술은 이러한 客觀的 史實의 分析把握이라는 歷史學의 基本 명제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客觀性을 欠한 虛構的 歷史把握이 그들이 서술한 韓國 經濟 思想史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歷史를 歪曲하여 定立한 바와같은 見解의 背後에는 歷史에 대한 순수한 學問的 關心 이외의 다른 意圖가 介在되어 있다.

즉 마르크스의 唯物史觀的 歷史 解釋方法을 韓國史에 機械的으로 적용하자는 것과 韓國이 民族史에 있어 階級鬭爭을 前面에 鮮明하게 부각시킴으로써 歷史를 그들의 社會主義的 理念 具現의 道具로 삼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例로서 時代区分의 問題와 奴隸制 社會의 設定에 對한 機械論的 誇張 解釋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韓國 經濟史를 최초로 体系的으로 把握한 學者는 白南雲氏로서 그가 1932年에 「朝鮮 社會 經濟史」를 발표하고 1937年에 「朝鮮 封建社會 經濟史」 上卷을 發刊함으로써 이에 對한 問題를 提起했다. 그는 同著書를 通해서 朝國 經濟史에 나타난 時代 性格을 다음과 같이 区分했다.

즉 原始社會, 奴隸社會, 封建社會, 移植資本主義社會의 四段階로 区分하는 것이다. 이후 이 問題를 두고 많은 論爭이 거듭되어 왔으나 아직 그 時代 設定에 있어 뚜렷한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北韓 經濟學者들 간에도 이 時代区分에 있어 時期 設定에는 다소의 異見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時期 設定에 있어 발견되는 共通性은 첫째, 대체로 古代社會의 發生 時期를 올려 잡고 있다는 점, 둘째 奴隸制社會가 存在했다는 것을 전면에 강력히 내세움으로써 심한 階級 對立 및 갈등 關係를 그 社會의 焦點으로 삼는다는 점, 셋째로는 그러면서도 그 史料的 根柢提示가 희박한 견장부회식 論理로써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例로서 김광진 김광순, 변락주 三人 共著의 「朝鮮 經濟思想史」의 내용을 들 수 있다. 同書는 韓國에 있어서 古代國家 形成 時期를 B.C.500를 전후한 古朝鮮時代로 규정한다.<sup>1)</sup>

일반적으로 古代國家는 原始共同體社會의 生産力 增強에 의한 剩餘生産物의 蓄積과 이로 인한 私有 財產制가 발전함에 따라 등장하게 된다. 이리하여 私有 財產制가 확립되면 社會的 段階 關係가 形成되고 이에 따라 支配 階級에 의한 경제적 수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古代 韓國에 있어서 生産力이 증대되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는 漢族의 鐵器文化의 流入이었고<sup>2)</sup> 中國 大陸으로부터 金屬文化가 韓半島로 流入되어 온 時期는 B.C.300頃에 이르러 있다.<sup>3)</sup> 이리하여 未餘, 高句麗, 三韓 等 部族 共同體를 土

1) 김광진, 김광순, 변락주 「朝鮮經濟思想史」 p.1.

2) 崔虎鎮 韓國經濟史 博英社 1973. p.26.

3) 前掲書 p.18.

대로 하는 部族同盟體 時代의 過渡期의 단계를 거쳐 A.D. 3世紀에 이르러 高句麗, 百濟, 新羅 등 三國이 國家의 體制를 갖추어 감에 따라 古代社會의 成立을 보게 된다.<sup>4)</sup>

그러나 前記 「朝鮮 經濟 思想史」를 통해 김광진은 이러한 古代國家의 形成過程과 社會의 발전법칙에 대해서는 일체 言及을 않고, 또 史料의 根拠도 전혀 없이 古朝鮮이 隆盛하던 紀元前 5世紀를 前後한 時期를 古代國家의 形成期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한 記錄만을 引用하여 未餘 역시 古代國家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記錄은 魏書 夫餘條의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袴 履草鞵 出國則尙繪繡錦縵 大人加狽狸 軟白黑貂云茲 以金銀飾帽」로서 夫餘에서는 오곡을 심고 목축을 잘하였으며, 名馬를 產出하였고 貴族들은 衣飾할 때에 各種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족신을 신었으며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貴族들은 여러가지 動物의 모피로 만든 高級 衣服과 金, 銀으로 장식된 모자를 썼다는 內容이다.<sup>5)</sup>

어 記錄으로써 당시의 夫餘에는 私有財產制가 발달하였고 階級의 分化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것이 過渡期의 段階의 部族同盟時代의 國家인지 古代社會의 國家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史料라 하겠다. 왜냐하면 古代國家形成 以前의 部族同盟體時代에도 私有財產制 및 階級分化는 상당히 進進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同書에서는 이 時期의 古朝鮮과 夫餘 및 半島 南部의 辰國을 「奴隸所有者的 國家로 把握한다.<sup>6)</sup> 여기서 말하는 「奴隸所有者的 國家」란 用語는 그 概念에 對한 定義가 없어 확실한 것을 알 길이 없으나 奴隸가 支配的인 生産勞動의 担当者가 되는 古典的 奴隸制 生産樣式과 구별되는 東洋的 古代社會의 總體적 奴隸制社會를 가르키는 것 같다. 이처럼 用語 使用에 있어서는 모호한 表現을 해 놓고는 「奴隸 所有者的 體制의 發展과 함께 奴隸 勞動이 生産의 主要한 基礎로 되었다」<sup>7)</sup> 고 함으로써 時代性格의 定義에 있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古朝鮮 및 夫餘, 辰韓이 奴隸制 社會라고만

4) 前掲書 p.35.

5) 김광진 前掲書 p.2

6) 前掲書 p.2.

규정해 놓고는 왜 다른 部族들은 除外되고 이들 國家들만을 奴隸制 社會로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비교 설명도 또 史料의 提示도 없다. 특히 辰韓의 경우 그것이 奴隸制 社會라고 규정한 이외에는 古代의 章이 끝나도록 한 마디도 言及이 없다.

그리고 이들 部族國家를 奴隸制 社會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趙幾潛 教授는 그의 「韓國 經濟史」를 통하여 우리나라 古代 社會에서의 生産樣式 즉 農業 및 手工業의 經營樣式에는 奴隸的 經營이 한 時代의 支配的인 樣式으로 나타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에 대해서는 見解를 달리하는 여러 主張들이 있으나, 韓國 古代社會의 奴隸들이 部分的으로 生産勞動에 참가했던 것은 사실이나 支配的인 生産勞動의 担当者는 당시의 被支配 階層인 農民이며, 이 당시의 奴隸들의 성격은 生産奴隸라기 보다, 家內奴隸들이라는데 대부분 學者들의 見解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

家內奴隸는 모두 奢侈奴隸만은 아니며, 生産的 基礎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外居하여 私的 經營部分을 가진다면 그것은 이미 家內奴隸가 아니라 農奴인 것이다. 東方奴隸에는 이와 같이 本質的으로 다른 奴隸的 側面과 農奴의 側面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奴隸의 存在 여부나 性格 究明은 韓國史 時代 區分의 尺度로서는 부적당한 것이다.<sup>9)</sup> 奴隸概念을 擴大하여 農奴까지도 奴隸의 범주에 포함시켜 古朝鮮 時代를 古代 奴隸制 社會로 규정한다면 高麗時代나 李氏朝鮮도 奴隸制 社會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論理가 성립된다.

同書는 「犯禁八條」의 他人의 物건을 훔친 자는 奴婢로 삼는다는 내용의 法令<sup>10)</sup>과 夫餘의 「형법은 대단히 嚴格하여 殺人한 者는 죽이고 그 家族은 奴隸로 만들었으며, 도적질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물게 한다」(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十貫十二)<sup>11)</sup>라는 기록을 내세워, 이는 당시의 대량적

8) 趙幾潛 韓國經濟史 p.34

9) 金柄夏 「韓國의 奴隸制 社會 問題」 韓國史 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73. p.60.

10) 김광진 前掲書, p. 4.

11) 김광진 前掲書, p. 5.

노예화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로써 그들은 당시의 사회가 奴隸制 社會였음을 立證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法이 생긴 배후에는 널리 自由民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그 史的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봉건적 隸屬農民이 支配의인 사회에도 科學的 意味의 奴隸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東夷伝 夫餘條의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라는 記錄은 奴隸層이 存在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지만 이때의 奴隸가 生産에 있어 支配的 役割을 担当했던 生産奴隸로 규정하기에는 난점이 많다. 그들 共產史家들은 당시의 被支配階層인 下戶가 심한 收奪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를 下戶 까지도 奴隸로 규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下戶가 自己 經營部分을 가지고 있는 限 收奪의 가혹성이라는 이유로써 奴隸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夫餘의 統治階級인 加之 統治對象은 下戶였다는 점이나 「竊盜一責十二」<sup>12)</sup>의 刑法規定, 그리고 夫餘의 부유한 계급인 豪民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私的 經營部分이 널리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그런데 이들은 이같은 史料를 客觀的 分析없이 唯物史觀的 階級鬭爭論의 전개를 위해 歪曲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그리고 그들의 「奴隸所有者的 社會」라는 표현을 總體的 奴隸制로 받아 들이더라도, 아시아적 共同體를 基盤으로 한 여러 共同體위에 君臨한 專制君主가 存在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아무런 설명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夫餘에서는 奴隸의 殉葬風習이 있었다는 것은 곧 古代의 奴隸制 社會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反證하는 例라 하겠다.

즉 奴隸가 支配的 生産勞動의 担当者였다면 勞動手段을 것처럼 無意味하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2) 김광진 前揭書, p.5.

13) 金柄夏 前揭書論文, p.65

14) 김광진 前揭書, p.6. 參照



그러나 그들은 이것 역시 取奪의 가혹성을 말해주는 본보기로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이와 같이 이 時期의 部族國家를 古代 奴隸制 社會로 誇張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 時期의 部族國家에 있었던 모든 經濟活動을 階級的 對立 즉 奴隸階級과 그 所有者 間의 鬭爭關係만으로써 설명한다. 이를 引用해 보면.

「古朝鮮에서 奴隸所有者의 經濟思想은 그 나라의 刑法規定으로 오랫동안 實施되고 있던 「犯禁八條」에 명확히 表現되어 있다.

이 法律條項은 3個條만 전하여 지고 있는데……우리는 이 간단한 法律條項에서 그 당시의 階級的 關係의 면모와 동시에 그것을 반영한 支配階級的 經濟思想을 간취할 수 있다.

暴力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犯罪者는 穀物로써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것은 私有財産의 발전을 보여주는 同時에 자기들의 私有財産을 옹호, 보장하려는 支配階級的 思想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盜賊한 者에 대해서는 奴隸化할 것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것은 支配階級的 私有財産에 대한 侵奪을 嚴格한 法으로써 防止하기 위한 思想의 表現인 同時에 負困한 처지로 말미암아 私有財産을 侵犯하는 百姓들을 대량적으로 奴隸化하려는 統治者들의 貧慾인 思想의 노골적인 表現이다. 그리고 50萬이라는 多額의 돈을 내게하여 속죄의 可能性을 열어 준다는 것은 사실상 奴隸解放의 길을 가로막는 同時에 부유한 자들의 財産蓄積을 더 한層 容易하게 하려는 支配階級的 思想을 反映하고 있다.<sup>16)</sup>

이것은 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法律을 嚴重하게 規定한 것을 그들의 階級鬭爭論의 圖式에 맞추어 機械論的으로 解釈한 좋은 例인 同時에,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意圖를 위한 誇張된 經濟思想史 歪曲의 본보기이다. 즉 그 해석 중에 「百姓들을 <大量的으로> 奴隸化하려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바, 물건을 훔치는 자는 아무리 도둑이 범람하는 社會라 하더라도 전체 국민에 비하면 극소수에

15) 김광진 前揭書, p. 6.

16) 김광진 前揭書, p. 4.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극소수의 물건 흠친자를 奴隸化한다고 해서 결코 「大量的 奴隸化」는 달성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것을 그들의 意圖에 맞추어 과장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大量的 奴隸化란 그러한 法律規定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掠戰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証張解釈 論理는 檀君神話의 解說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同書는 「檀君의 아버지로 지목한 桓雄을 天王이라고 한 것은 후일에 윤색한 것으로서, 이것은 古朝鮮의 國王을 天의 意思를 執行하는 權力者로 가장하여 그를 추대하고 있는 奴隸所有者 集團의 權力을 合理化한 것이다」<sup>17)</sup> 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 역시 民族說話에 얽힌 史的 意味를 분석하려는 意圖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을 계급대립으로 해석하려는 것을 말해주는 예인 것이다.

夫餘에서는 五穀이 不熟할 경우에 그 責任을 王에게 轉嫁시켜 이를 罷免하거나 죽이는 풍습<sup>18)</sup>이 있었는데, 이것은 新羅의 朴燾居世가 六村의 部族共同体 成員에 의하여 選出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당시의 部族共同体는 그들의 族長에 대한 選任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意味하고, 따라서 古代的 君王의 專制力이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史實을 그들은 역시 階級鬭爭論에 걸부시켜 歪曲解釋한다. 즉 夫餘의 그러한 絶對權力의 未成熟에 基因하는 習俗을 奴隸 및 奴隸的 처지에 있던 農村住民들이 統治者의 抑壓과 擄取에 대한 鬭爭으로써 爭取한 結果로 해석한다.<sup>19)</sup> 이것은 그 妄想에서부터 그릇된 것이지만, 그 解釋論理에서도 矛盾은 발견된다. 즉 당시의 諸加라는 貴族集團에 대한 奴隸와 奴隸的

17) 김광진 前揭書, p.5.

18) 三国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旧夫餘俗, 水里不調 聊野於王 或言当易 或言当殺」

19) 김광진 前揭書, pp.8 ~ 9.

처지에 있는 農村住民의 鬭爭이라고 하지만, 이들 奴隸와 奴隸的 처지이긴 했지만 奴隸와는 신분이 다른 農民이 그들의 身分的 差異를 克服하여 對支配層의 鬭爭을 위한 힘의 규합을 이룰 수 있었을지에는 의문이 남는 것이다. 罪人は 奴婢로 삼는 다는게 벌써 奴隸的 처지에 있긴 하나 노예는 아닌 農民과 奴隸間의 신분적 격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時期에 여러 가지 記錄으로 보아 階級分化가 상당히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이처럼 階級이 發生하여 存在하고 있는 社會속에 階層間의 利害對立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의 階級分化는 原始的 단계에 있던 生産力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이며, 따라서 이것은 階級對立으로서의 意味보다 역사 발전단계에 있어서 生産力 增強이 가져온 발전적 意味가 더욱 강한 것이다.

#### 나. 三國時代

김광진은 古朝鮮과 三國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封建的 生産方式은 高句麗, 白濟, 新羅 三國의 수립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들은 그에 先行한 古朝鮮을 비롯한 古代 奴隸 所有者 國家들이 이룩한 生産力, 특히 발전한 鐵器文化와 그 社會의 代內에서 싹트고 있던 封建的 要素들을 계승하였다」<sup>1)</sup>

古代社會에 있어서 生産力의 急速한 發展은 金屬文化가 發展하게 되면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이 高조선을 古代國家로 規定하는 데 대해서 충분한 說明을 欠하고 있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아마 당시의 土塚墓 속에서 金屬文化的 遺物이 發見된 데서 이것을 生産力의 증강을 가져온 鐵器文化的 보급으로 해석하여 그렇게 規定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土塚墓에서 발굴된 遺物에 대한 客觀的 分析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古朝鮮時代의 生産工具는 여전히 石器로써 만들고 武器나 祭器만이 金屬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므로<sup>3)</sup> 비록 土塚墓의 遺物 속에서 金屬文化的 발전을

1) 김광진, 김광순, 번락주 「朝鮮 經濟思想史」, p.10.

3) 金哲俊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에 對하여) 韓國史 時代구분론 乙酉文化史一九七三 p.32

엇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古朝鮮의 生産 關係에 근본적인 變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古朝鮮代의 金屬文化는 氏族社會 關係를 해체 시키 기에는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古朝鮮은 그 末期에 이르러 古代社會의 初期 形態의 발전을 보이다. 아직 성숙기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망하고 그 뒤 그地域이 樂浪文化의 中心이 되면서부터 土着社會보다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武器뿐만 아니라 農具를 비롯한 鐵製生産工具 制作의 발달을 보아 社會 經濟 關係에 전면적인 變革을 초래하게 된 난숙한 鐵器文化는 樂浪文化에서 비롯되었던 까닭이다. 이 文化가 古朝鮮에는 그대로 氏族社會 關係를 유지하고 있던 土着社會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고<sup>4)</sup> 여기서 三國이 그 成立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鐵器文化의 영향을 받아 高句麗, 百濟, 新羅의 成立을 보게 되지만 그들이 古朝鮮文化를 그대로 계승하여 古朝鮮이 이르렀던 社會의 水準에서 출발하여 成立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三國의 支配者들은 古朝鮮代 青銅器文化期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때에는 磨制石劍이나 만들다가 뒤늦게 보급되는 鐵器文化의 時期에 와서 그 文化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古朝鮮이 青銅器文化를 成立시키고 있을 때에 아직 新石器文化 또는 青銅器文化가 겨우 始作되던 段階에 있었던 이들 勢力은 古朝鮮이나 樂浪의 支配를 받지 않았던 辺方 地域에서 그 成立을 보게 된 것이다.<sup>5)</sup> 따라서 古朝鮮의 青銅器文化를 가졌던 社會와 三國時代에 들어와서 鐵器文化가 一般化된 社會와의 사이에는 全面的인 社會的 連結性 내지 繼起性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크게 보아서 같은 種族이기는 하나 적어도 同一 部族 系統은 아닌 것이며, 그러므로 실사 古朝鮮社會가 奴隸社會였다고 하더라도 古朝鮮의 奴隸社會 그것으로 말미암아 三國時代에 들어서면서 中世社會로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古朝鮮과 夫餘, 辰韓을 奴隸制社會로 規定하고

4) 金哲俊 前掲論文 p.32.

5) 金哲俊 前掲論文 p.31.

三國時代 이후를 封建社會로 규정하려면 前者의 奴婢와 後者の 奴婢가 本質的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밝혀야 하며 또 古朝鮮이나 夫餘 및 辰韓社會에 奴婢의 숫자가 支配的으로 많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 대한 實證的인 解明이 없는 한 北韓의 繼起的 段階로서의 奴婢制 社會論과 封建社會論은 수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社會的 連結性 내지 繼起性이 없는 古朝鮮과 三國간의 멸망 成立 關係를 볼 때 그곳에 旧勢力과 新興勢力과의 사이에 對立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漢四郡 특히 樂浪이라는 異民族 勢力과 그 간재를 축출하기 위한 鬭爭은 있었지만 古朝鮮의 主体 勢力에 對한 이들 三國을 成立시킨 主人 公들의 도전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三國은 古朝鮮이나 樂浪의 支配圈을 벗어난 辺方 地域에서 成立된 國家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史實에 대해서는 일체의 言及이나 分析이 없이 封建國家로서의 三國의 成立은 심각한 社會的 모순의 해결<sup>6)</sup>이라고 鬭爭論的 해석에 걸부시키고 있다.

高句麗에는 「殺牛馬者 沒爲奴婢」<sup>7)</sup> 라는 法令이 있는 바 이는 중요한 生産手段이던 소나 말을 죽인 자는 奴婢로 한다는 極刑에 처함으로써 牛馬의 無節制한 殺生을 抑制하여 社會的 生産力 向上을 위해 最大의 노력을 기울였던 당시의 사정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들은 그들의 편리대로 다음과 같은 解釋을 한다. 「이것은 그 時代의 奴婢를 사실상 牛馬와 同一한 가치로 밖에 認定하지 않았던 支配階級의 觀點을 표시하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또 만약 三國의 辯證法的 변천과정을 거쳐서 古朝鮮의 歷史的 遺産을 이어받아 封建社會로 移行한 것이라면 公開討議를 거쳐 중요한 國事를 결정하는 原始共同體社會의 遺制로서의 新羅의 和尪制度<sup>9)</sup>를 설명할 根柢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機械論的 唯物史觀에 입각하여 古代社會를 해석한 몇가지 例들이다.

6) 김광진 前掲書 p.10.

7) 김광진 前掲書 p.13.

8)

9)

#### 다. 統一新羅時代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各國은 原始共同體의인 階級을 완전히 破壞한 形態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土臺로 하여 形成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支配關係는 集團的 支配形態를 取하고 있었으며 土地의 所有關係는 私的 所有形態가 아니라 支配共同體에 의하여 集團的으로 所有되고 있던 古代社會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階級文化가 발달하고 生産力이 더욱 增強되어 감에 따라 共同體 內部에는 私的 權力이 成長하여 갔고 또 그에 따라 支配 階級에 의한 土地兼併이라는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支配 階級에게 分與된 土地가 점차 私的 權力에 의하여 獨自的으로 支配되기 시작함으로써 支配 階層은 一般 被支配 階級の 占有地까지도 併呑하게 되었던 것이다. 1):

이처럼 서서히 變質되어 오던 古代社會的 秩序의 變化가 新羅의 三國統一을 契機로 하여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進進된다. 統一 課業을 完遂한 進取의이며 先進的인 花郎 出身 貴族과 統一 事業에서 공을 세운 軍人 幹部 등 새로운 新興 勢力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統一 前時代의 氏族 共同體의인 支配關係의 弱화 및 私的 支配關係의 強化를 가져와 骨品制의 基盤을 動搖시키는 한편 土地에 대해서도 國家의 直接的인 支配關係를 形成시켰다. 이와함께 農民의 隸屬關係에도 變化가 있었다. 즉 三國統一 이후에는 農民이 土地와 더불어 集團的인 支配關係에서 벗어나 國家 및 封建支配層에게 個別的으로 隸屬됨으로써 이들의 「農奴의」인 지위가 強化된 것이다.

이것은 支配層의 性格 變化와 共同體 內部的 人口 팽창 및 生産力 發展 등에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私的 土地占有의 擴大로 均田制가 分解되어 八世紀 초에는 農民에 對한 丁田制가 實施되었다. 2) 丁田이 支給된 精確한 시기는 聖德王 11年의 일이었다. 이것은 中央의 王權이 共同體 內部的 個個의 土地 및 農民에 對한 直接的인 關與를 試圖한 하나의 布石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中央集權化 過程에 있어서 私的

1)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第四

2) 趙璠濟, 韓國經濟史 旧新社 p.83

支配者로서의 王權의 確立과 土地와 農民에 관한 王權의 직접적인 浸透過程이 바로 이 시기부터 점차 명확하여 짐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丁田支給에 의한 土地占有의 再調整이 그 所有의 成課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新羅 後期에 이르러 土地의 私的占有關係가 더욱 盛行하고 農民의 階級 分化가 더욱 尖銳化하였으며, 貴族의 土地兼併이 擴大되었던 것이다.<sup>3)</sup>

토지소유 관계에 있어서 이와같은 變化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으나 당시 支配的인 貴族身分의 경제적 성격이 中世社會의 貴族과 같이 地主的 性격을 띤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었다.

〔唐書〕 新羅傳에

「帝相家不絶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并稱云 畜牧海中山 須食乃射息穀米干人 價不滿 庸爲奴婢」라 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와는 달리 田畠所有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는 것으로 보아 土地 兼併 및 私有化 현상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新羅 貴族의 支配的인 경제적반은 토지 所有에 보다는 奴隸와 隸民의 所有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이것은 土地 所有者의 土地를 媒介로 한 隸民의 支配가 그 基本 性格이 아니라 統治 權에 바탕을 둔 貴族에 의한 人間의 支配 다시 말해서 國家 權力 對 農民이라는 支配 隸屬關係의 형태를 취한 것이지 地主 對 農奴의 關係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新羅에 의한 三國統一이 集團의 支配 體制를 私的 支配 體制로 變化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는 하였으나 古代社會로서의 新羅의 性格에 근본적 轉換을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광진은 당시의 土地國有制는 「全體 農民의 剩餘生産物을 租稅 形態로 擄取하려는 思想이며 이 思想에는 地代=租稅의 原則이 관통하고 있었다」<sup>5)</sup>고 하고, 「三國의 統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封建主義의 성숙기에 들어 있다」<sup>6)</sup>고 규정하고 있다. 즉 土地國有制」를 「土地에 대한 地主的 支配」로 해석하

4) 金哲俊「新羅貴族勢力的 基盤」人文科學 第七輯

5) 김광진 김광순 변락주 「朝鮮經濟思想史」p.17.

6) 김광진 前掲書 p.16.

여 이러한 思想이 뚜렷하게 대두되는 統一新羅期 이후를 封建社會의 성숙단계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國有라는 점에서는 新羅 및 高麗의 토지제도에 차이가 없으나 그 所有樣式은 서로 다른 것이다. 즉 新羅에 있어서는 集團 所有 및 集團支配가 基本이었고, 私的 所有 내지 私的支配가 三國統一을 계기로 擴大되어 가기는 하였으나 下代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一般의인 形態로까지는 進前되지 못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土地가 國有制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封建的 土地支配形態로 해석하여 新羅社會가 三國統一을 계기로 封建社會의 성숙기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論理라 하겠다.

더구나 新羅의 三國統一이 社會的 모순에 대한 辯證法的 論理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三國統一 당시의 支配階級에 반대하여 나선 農民들의 思想意識의 提高와 三國社會의 不安한 社會, 經濟的 形편이라는 모순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sup>7)</sup>

이 외에도 당시 農民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모든 地業적 資料들을 수집하여 三國 및 新羅社會의 경제적 상황과 그 밑에 깔려 있는 思想的 分析은 도의시한 채 階級 鬭爭과 지배계급의 가혹한 수탈관계만을 과장적으로 나열하는 데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여러가지 史料를 보아 당시 農民에 대한 收取가 가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收取를 강요하던 支配階級에 대한 農民의 항거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先進的 鬭爭思想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羅末의 社會的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羅末에 발호한 梁吉, 箕萱, 弓裔, 甄萱 등의 성격을 볼 때, 이들은 草賊의 무리를 모은 賊黨勢力의 編成을 그 주요한 勢力 基盤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古代社會의 혼란이 빚은 賊黨勢力을 기반으로 하여 일어서긴 하였지만 보다 앞선 社會關係를 모색하거나 할 능력은 없고 또 그 收取 方法은 賊黨들의 掠奪的인 方法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甄萱의 경우 掠奪的인 方法을 그대로 쓰지는 않은 것 같으나 本質的으로 古代的인 收取 方法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政治와 外交에 기민한 수완을 보여 주었으나 그것은 기껏해야 古代社會 動搖의 제조정에 그치는 것이

7) 김광진 前揭書 p.16.



지 새로운 社會關係에 대한 전망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sup>8)</sup> 이것은 社會的 矛盾에 대한 民衆低抗의 時代的 限界性을 나타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先進的 鬭爭思想으로 무장한 民衆봉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떠한 事件에 대한 妥當性 있는 分析을 무시한 채 모든 形態의 低抗은 機械的으로 理念的 階級鬭爭論에 결부시키는 공산주의자들의 歷史 解決의 허구성을 말해 주는 것일 따름이다.

## (2) 中世 經濟思想의 誇張 解釈

김광진 등의 共同著書 「朝鮮經濟思想史」에서 제 3~7 장의 집필자는 김광순은 10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안의 여러 學者思想家들의 경제사상 및 見解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중세기에 해당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나 意見을 소개하는데 있어 그는 「階級對立의 視角」이라는 原則的 方向을 設定해두고 여기에 비추어서 劃一的 分析을 하고 있다.

그는 王建이 高麗를 建国한 후 新羅 末期에 문란했던 租稅制度를 改革하여 租稅徵收의 一般의 基準을 10분의 1로 규정 한 것에 대해 二稅制改編이 갖는 農民負擔의 輕減效果는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封建國家의 財政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收奪制度의 확립, 강화라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sup>1)</sup>

고려 숙종 2년(1097)에 이르러 정부는 鑄錢官을 두고 有文錢을 주조하는 한편 貨幣의 通用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 즈음 義天은 貨幣의 使用이 갖는 利點을 들어 貨幣의 流通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경제발전의 촉매작용을 하는 貨幣의 流通을 주장한 義天의 見解 역시 봉건 지배층의 鑄造權 独占과 그로 인한 鑄造利得의 획득 목적, 蓄財手段을

8) 金哲俊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 麗初의 轉換期에 對하여」 韓國史 時代区分論 乙酉文化史

1) 김광진 김광순 「조선경제사상사」 p.25

容易하게 하려는 目的, 그리고 人民收奪을 더욱 強化하려는 目的을 代辯하는 경제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sup>2)</sup>

그리고 社会的 生産力을 중요시하는 見解가 비치지만 하권 이것을 곧 唯物論的 辯証法的 思想이라고 추켜올려 과장 해석한다.

그가 이 唯物論的 思想家로 지목하는 사람은 麗末 鮮初의 鄭道伝, 李朝時代의 金時習과 徐敬德 등이다.

이들의 共通點은 生産의 提高 擴大를 위한 여러가지 見解를 피력했다는 점인데 生産력의 向上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針小樺大하게 해석하여 唯物論的이고 辯証法的인 先進思想家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鄭道伝은 田制改革을 통하여 農業生産의 向上을 주장하긴 했지만<sup>3)</sup> 그러나 그것이 唯物論的이고 辯証法的인 先進思想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鄭道伝은 麗末의 士大夫 출신으로서 李王朝의 建立을 도모한 開國功臣이었다. 그의 그러한 改革案과 이를 뒷받침한 理論的 바탕은 唯物論이 아니라 朱子學이었으며 당시 身分的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던 士大夫 계급의 不滿을 代辯하는 동시에 旧勢力의 경제적 기반을 崩壞시키자는 目的을 가진 王朝 交替期에 있어서 新興勢力의 利害關係를 反映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신분적 배경과 新王朝 建立에 있어서의 役割등을 고려할 때 이를 唯物論的 思想으로 把握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인 것이다.

그리고 金時習의 思想 역시 生六臣의 한사람으로 隱居生活을 하는 士大夫의 불만이 비교적 客觀的 合理性을 띤 것에 불과할 따름이며 徐敬德 역시 이러한 限界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思想的 바탕은 모두 儒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思想家들의 見解를 올바르게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階級意識을 鼓吹시키기 위한 目的에서 단편적인 몇가지 주장 중에서 발견되는 物質的 生産性을 중시하는 見解를 唯物論的 思想인 것처럼 수식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김광진, 김광순 前掲書 p.28.

3) 김광순 前掲書 pp.57 ~ 58 參照

그리고 그는 또한 燕山君 代에서 있었던 일련의 士禍와 이후의 党爭을 계급대립의 여과로서 해석한다. 이 대목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暴君 燕山君과 그를 둘러싼 權勢家들은 가혹한 擄取 행위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혹독한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민들이 遊離到散하거나 火賊으로 化하여 集團의으로 武裝을 갖추고 부호들의 농장과 관청들을 습격 소탕하였다. 봉건통치를 反對하는 人民들의 항쟁은 계급적 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는바 이들을 옹호하고 나선 士林派가 黜旧派의 무제한한 專橫을 공격하게 되었고, 여기서 벌어져진 장기적인 집요한 鬭爭의 결과가 이 시기를 특징짓는 士禍事件의 반발로서 나타났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解釈의 虛構性은 李朝王朝의 性格을 살펴보면 확연히 들어난다. 즉 당시의 權力 관계의 특징의 하나는 王權과 官僚勢力의 對立 관계이다. 이와같은 王室과 官僚勢力 간의 對立은 成宗 朝에 이르러 金宗直을 비롯한 士林派의 등용을 가져왔다. 즉 成宗은 과잉 비대해진 官僚勢力인 黜旧派의 견제를 위해 새로운 세력을 등장시킨 것이다.

이러하여 政府要職에 등용된 士林派들은 그들의 党派勢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상대세력인 黜旧派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들의 數富 및 苛斂請求를 공격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서 빚어진 兩党派間의 對立이 날이 갈수록 激化되었고 즉위때부터 王後 繼承 問題를 둘러싸고 官僚들의 강한 反撥을 받은 燕山君 代에는 그 대립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王權과 官僚勢力 그리고 党派間의 세력 다툼 등이 빚은 것이 그 이후 빈발된 士禍의 底辺에 깔려 있는 根本原因이지 결코이러한 士禍들이 北韓學者들이 말하듯 계급투쟁의 여파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士林派들의 黜旧派에 대한 비난이 民權이라든가 農民福祉라는 觀点에서 비롯되었거나 그 공격 내용이 脫時代의인 反封建思想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니다.

그들이 言必稱 내세우는 階級間의 對立에서 人民의 편에 서서 혹독한 收奪

4) 김광순 前掲書 pp.92 ~ 95.

을 恣行하는 黷旧派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士林派<sup>5)</sup>들이 이룩한 国敎政策이란 것은 실제로 있어서 秩序의 改革보다는 制度上的 未穩의 改編措置에 그쳤으며 根本的으로 現實의 秩序에 相應하고 또 그것을 先導하기에 보다는 非觀念的인 지난날의 秩序에 집착하고 거기에로의 復歸에 노력하였던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sup>6)</sup>이 이를 잘 反映해주고 있다. 이것은 士林들의 身分의 배경에서도 명백하게 들어난다. 士林의 등장은 理念이나 思想을 달리하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이 아니고 그때까지 權力의 中心에서 疎外되었던 地方 豪地主 출신 儒林들의 등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士林들의 주장은 北韓 學者들의 해석과는 달리 兩班의 特權과 利益을 保障하는 테두리 내에서의 国敎策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상 몇가지 들어본 例에서와 같이 高麗에서 李朝 中葉에 이르는 中世의 經濟思想의 서술에 있어서 그들은 收奪의 極端的인 事例들만 野話처럼 엮어 놓고 어떻게 하여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후독한 착취행위가 발생하였고 어떠한 過程을 밟아 交遷되었으며 또 그 저변에 깔려있는 時代的 思想潮流 및 大衆意識 그리고 收取形態와 이를 뒷받침한 制度에 대해서는 科學的 分析을 전혀 欠하고 있다.

5) 김광순 前掲書 p.96.

6) 韓國史大系 卷6 三珍社 1973.pp.89-90.

### (3) 实学思想의 機械論的 解釈

「조선경제사상사」의 第八章과 第九章을 통해 변락주는 实学의 内容, 역사적 背景 그리고 그 思想史의 위치와 주요 实学者들의 思想을 要約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实学思想의 解釋 역시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을 導入하여 機械的으로 해석하는 것과 모든 문제를 階級關係論에 귀결시키는 그들의 상투적 方法에서 例外는 아니다.

同書의 实学思想에 대한 서술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形式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그 직접적 發生動機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壬辰·丙亂을 거친후 内部矛盾의 激化에 의하여 權力爭奪, 財定蓄積, 土地掠奪 등이 頻行하게 되고, 이로써 社会經濟發展에 막대한 피해가 招來되었다.<sup>1)</sup>

이것은 封建的 生産關係가 生産力 發展의 桎梏으로 轉化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封建制度가 벌써 그 末期에 들어섰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sup>2)</sup> 반면에 封建的 秩序와 支配를 合理化하려는 儒敎의 事大主義와 敎條主義는 完全히 現實遊離的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支配論 思想体系의 危機속에서 儒敎의 敎條主義에 도전하여 일어난 것이 实学思想이라고 說明한다.<sup>3)</sup>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唯物論的 辯論法에 입각한 歷史的 圖式的 說明方法을 보는 同時에 그 당시의 儒林들을 敎條主義라 몰아부치는 그들 스스로는 마르크스의 敎條主義의 奴隸가 되어 있는 二律背景을 보게된다.

둘째, 이러한 实学 思想을 움트게 한 歷史的 背景인 壬辰·丙子亂 이후의 封建的 社会秩序의 瓦解요인을 搾取의 強化와 이에 對抗하는 人民의 抗争이라는 階級的 矛盾·對立의 尖銳化로 把握한다.

1) 김광진, 김광순, 변락주「조선경제사상사」, pp.183~185.

2) 前掲書, p.186.

3) 前掲書, p.186 ~ 187

支配階級에 대한 群衆의 鬭爭의 反對력이 支配體系를 強化시켜 封建社會를 解体시키는 作用을 했다는 階級關係의 側面을 크게 강조하면서<sup>4)</sup> 이 시기에 싹트기 시작한 商工系의 발달과 農業經營者의 地主의 出現 등 資本制約 萌芽에 의한 封建秩序 解体結果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 불과했다」<sup>5)</sup> 함으로써 거의 意義를 賦餘하지 않는다.

階級關係의 性格이 隨伴되지 않는 近代의 움직임이나 徵候에 대해서는 그 意義를 過小評價하는 例는 大同法에 대한 評價에서도 발견된다.

즉 「封建國家의 稅入增加와 財政困難의 完化를 目的으로 實施된 大同法은 商品流通을 발전시킨에 있어, 一定하게 骨定的인 役割을 하였다」<sup>6)</sup>고 평가하고 있다.

비록 大同法의 당초의 目的이 王朝政府의 財政確保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稅法에 의하여 政府의 需要가 「後貢」 아닌 「購買」로 調達되는 이상 그것은 자연히 調達者인 貢人 供給者인 市廛生産者인 工匠을 특히 私行을 비약적으로 성장케 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大同法은 交換經濟를 前提로 한다는 일면에서 못지 않게 交換經濟를 促進시킨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였으며,<sup>7)</sup> 이로인한 封建社會의 解体效果는 결코 소홀히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변락주는 同書에서 「一定하게 背定的인 役割」이란 표현으로 이를 매수롭지 않게 평가하는 한편, 「自由로운 商品流通에 대한 禁匠政策과 가혹한 取奪에도 불구하고 17世紀 후반기 이후 生産力은 점차적으로 복구·발전」<sup>8)</sup>

4) 前掲書, p. 186.

5) 前掲書, p. 257.

6) 前掲書, p. 185

7) 千寬宇「韓國史上的 中世·近代의 界線」韓國史時代区分論, 乙酉文化社, 1974.pp.117-118.

8) 前掲書, p. 185

했다고 함으로써 이때의 交換經濟發達도 收奪에 대한 低抗으로써 이룩된것 처럼 論理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세째, 機械論的 解釈을 論理化하기 위해 實學思想의 展開過程을 3段階로 나누어서 分析한다. 즉 恭峯 李暉光에 의하여 實學思想은 그 단서가 열리고 曝溪 柳馨遠, 星湖 李翼등에 의하여 思想體系가 形成되었으며, 堪亭 洪大容, 燕岩 朴趾遠, 楚亭 朴齊家에 의하여 深化, 發展되어 茶山丁若鏞에 의하여 集大成된다고 풀이 한다.<sup>9)</sup>

네째, 李暉光으로 부터 출발한 이 實學思想은 단계적으로 體系化되고, 深化되어 集大成된다고 하는 機械論的 역지論理를 合理的인 것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와 같이 實學者들을 時代順으로 나누어 分類한 다음, 이 時代順으로 實學思想이 伝授, 繼昇되는 연결관계를 맺으면서 繼起的 발전을 한다고 설명한다.

實學思想의 出發點을 마련한 李暉光과 金瑬은 그 思想이 改革의 이기는 하나, 아직은 封建國家의 財政收入을 보장하려는 支配階級의 立場으로 출발했고<sup>10)</sup> 또 封建國家와 支配階級의 利益을 代弁한 것이었다.<sup>11)</sup> 고 하면서 첫단계에 속하는 實學者들의 思想을 설익은 改革思想으로 풀이된다.

다음 이들의 思想을 階昇한 流馨遠, 李翼등은 그 思想的 體系를 形成시켜 農民의 立場에 서서 改革을 부르짖는다. 이와같이 그 思想의 次元은 상당히 높은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그들 역시 階級的 制限性을 完全히 벗어나지 못했으며<sup>12)</sup> 또 당시 사정으로서의 그들의 改革論이 實現되기 어려운 時代的 制限性을 말로하고 있었다.<sup>13)</sup> 고 설명을 계속한다.

이리하여 洪大容, 朴趾遠, 朴齊家등은 이렇게 한단계 성숙된 思想을 전승받아 深化, 발전시키고, 이를 丁若鏞이 다시 集大成시켰다고 함으로써, 그단계 까지는

9) 前揭書, p. 189.

10) 前揭書, p. 195.

11) 前揭書, p. 204.

12) 前揭書, p. 216.

13) 前揭書, p. 252.

이들 實學者들이 封建의 立場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反封建의 思想家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段階論의 圖式의 틀에 맞추어 實學思想의 흐름을 分析하고 있다.

즉 洪大容은 階級間的의 矛盾을 把握한 唯物論的 改革思想을 展開했고<sup>14)</sup> 朴趾遠은 農民運動의 思想的 선구자이며<sup>15)</sup> 朴齊家는 멀리 구라파 資本主義의 侵略的 魔手が 닳아 옴을 회미하게나마 감축하고 있었던 선각자이고<sup>16)</sup> 丁若鏞은 낡은 생산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하여 무자비한 통보를 가하는 한편 封建의 思想을 反對하여 鬪爭한 先進思想家<sup>17)</sup>로 그려 놓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北韓史家들의 實學에 대한 見解를 비판해 보자.

첫째, 그들은 實學思想發生의 직접적인 動機와 그 背後의 역사적 요인을 모두 階級對立으로 인한 모순의 激化에 幅着시켜 버린다.

壬辰·丙子亂후 문란해진 秩序와 弱화된 統治體系 및 이로인한 社会的 요소도 그 低辺에 깔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階級對立이 그들이 말하는것 처럼 背後要因의 모두는 아닌 것이다.

그 보다는 社会的 秩序의 문란과 政府財政의 全般的인 不均衡이 招來됨에 따라 나타나게 된 商工業의 質的 變化 현상이 封建의 秩序 위해서 더욱 支配的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이전까지 商業 및 手工業은 政府 및 地方官廳의 강한 統制아래 영위되어 왔다. 封建의 秩序確立期에 있어서는 商工業 그 자체가 封建支配層의 御用的인 存在價值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그들 支配論의 수요와 供給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商工業의 範圍와 정도를 일일히 규정하였던데서<sup>18)</sup> 비롯된 制度일 것이다. 이 制度는 需要가 增大되면서 부터 이들 官商·官貢에 대한 独占的 特權으로 作用했다.

14) 前揭書, p. 259-262

15) 前揭書, p. 289

16) 前揭書, p. 305

17) 前揭書, pp. 354-355.

18) 劉元東「韓國史에 있어서 近代의 基點」韓國史時代區分論, p. 144.



그러나 7年間に 걸친 壬辰倭亂이 몰고온 社会的 變動과 支配体制의 이완은 封建의 統制를 완파시켜, 결과적으로 私商 및 私工業의 발달을 促進시켰고, 이것은 李朝社会 身分關係의 變動을 招來케 하는 여건을 조성시킨 것이다<sup>19)</sup> 이리하여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富商大賈 및 經營的 富農의 出現을 가져와 兩班=地主的 支配体制를 動搖시키게 된다.

이와같은 商工業의 발달과 身分秩序의 質的變化라는 国内的 氣運과 清을 통해 들어온 西論文物에 대한 소개라는 外部的 衝激의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反應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 實學인 것이다. 따라서 그 內容은, 時代的 要求인 經世致用, 利用厚生, 實事求是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변략주는 「조선경제사상사」에서 末期 封建社会의 태내에서 일어난 社会的 質的 變化에 대해서 全面的이고 客觀的인 검토없이, 收奪의 強化 - 階級對立 - 封建的 生産關係와 生産力과의 모순 - 被支配層에서는 새로운 思想의 등장이라는 唯物史觀의 公式 속에 집어넣어 機械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封建社会의 변화는 곧 生産力의 발달에 따라 資本主義社会를 指向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資本主義 指向的 性格은 이 時代의 氣運을 反映한 實學思想속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實學思想이 추구한 論理는 대체로 ①利用厚生 實事求是, 經世致用 ② 葬夷의 世界觀을 깨트린 民族主義의 主体意識 ③ 民權思想 ④ 通商開國 ⑤ 營業의 自由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sup>20)</sup>

그런데 北韓經濟思想史에서는 이 時代의 資本主義指向的 性格과 實學이 표방하는 思想中에서 階級關係論과 결부되지 않는 民族主義의 主体意識論이나 通商開國論 그리고 營業의 自由論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것을 「經濟体制를 國民의 同意로 轉化시키기 위한 心理的 論理的 根柢」로 定義되는 經濟史的 側面에서의 正統性이라는 觀點에 비추어 볼때, 民族資本의 成長을 기반으로 하여 어찌한 他律的인 強壓도 없이 經濟的 合理化와 民主化를

19) 金容燮「朝鮮後期에 있어 社会的 變動」史學研究 16. 參照

20) 金泳鎬「實學과 開花思想의 聯關形態」文學과 知性(一潮關), 1975. 朴亨, 參照.

지향하는 自由主義競爭體制로 나아가기를 希求하는 우리 民族의 心理的 向方을 抹殺시키려는 그들의 政治的 意圖가 스며 있음을 쉽게 鑑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實學思想의 展開過程을 段階論的으로 발전한 것 처럼 서술한 것 역시 科學的 分析을 무시한 歷史把握을 반영하는 것이다.

實學者群 사이에 思想的 또는 論理的 차이가 있는 것은 北韓學者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時代的인테도 關係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同時에 이들의 血緣, 學統, 交友등의 關係에도 基因하는바 크다.

柳馨遠, 李翼등을 중심한 實學者들은 주로 南人系의 近畿 農村居住의 學者들이었고, 朴趾遠, 洪大容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南人小論系의 在京學者들이었다. 前者의 學者들은 당시의 社會가 토지경제가 더욱 깊숙히 기반하고 있었고, 또 그들 스스로가 農村에서 農民들과 호흡하고 生活하면서 農村의 피해를 切實히 體驗하였기 때문에 주로 土地制度의 改革에 焦點을 두었다. 反面, 後者의 學者들은 서울의 都市의 분위기 속에서 生長, 生活하였으며, 이 속에서 商人·手工業者와의 接觸을 통하여 商工業 發展의 必要性을 切實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1)</sup> 여기서 그들은 農·工·商 특히 工·商을 重視하는 論理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당시의 現實이 그들의 思想을 收容할 단계에 있지 못함을 깨닫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는데, 李翼의 후계자들은 주로 天主教에도 귀의에서 그 脫出口를 찾았고, 박지원등은 文學·藝術運動을 통하여 좌절감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sup>22)</sup>

이렇게 볼때 後期 또는 中期 實學者들이 앞서간 이들의 思想에 영향을 받을 것은 否認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 思想的 흐름이 從的인 繼昇過程을 거치면서 전개된 것이라는 주장은 그 論理的 根柢를 잃게 되는 것이다.

21) 「韓國大大系」 六卷三珍社, 1973. pp.99-103 參照.

22) 前掲書 p.103.

그리고 「조선경제사상사」에서 변락주는 實學思想을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儒敎의 敎條主義를 代替한 李朝後期の 思想的 王潮로 把握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朝鮮後期를 左右한 思想界의 本流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傳統社會 안에서의 社會·經濟的 改新의 不可繼性과 精神文化的인 再認識의 指向性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正統儒學의 本質인 論理的 牧民的인 立場<sup>23)</sup>을 벗어난 것은 아닌 것이다. 庶務出身으로 封建的 신분제도를 反對한 朴齊家<sup>24)</sup>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實學者들이 양반계급이라는 점과 당시의 田制改革論의 내용등이 이러한 實學의 本質의 성격을 反映해 주고 있다.

實學思想에 나타난 田制改革論은 모든 토지를 國有로 하여 世襲化를 배제하고, 奴婢와 商工業者에게 까지 차별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자는 公田論, 國家가 가져야 할 적당한 量의 토지 즉 永業田을 定하고 그 範圍를 초과하여 所有한 者에 한하여 판매행위를 허가하자는 均田論, 土地所有 面積에 일정한 限界를 두자는 限田論등인데<sup>25)</sup> 이 모두 土地의 私田化 및 大土地 所有에 대한 反對가 주 內容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前朝 高麗가 公田의 隱結과 그 擴大에 의하여 종내에는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過去史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王朝의 運命과 밀착될 수 밖에 없는 身分의 制約性을 자각하고 있던 士大夫<sup>26)</sup>들의 王朝維持를 위한 祈願에서 울어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23) 黃元九「實學, 私議」 문학과 지성, 1975.여름호, p.362.

24) 李成茂「實學研究八門」 일조각, 1973.p.281.

25) 姜萬吉「實學思想과 政策反映」 문학과 지성, 1973, 겨울호, p.790

26) 비록 官界에 진출을 못했더라도 신분적으로 양반계급은 王朝와 밀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思想에 있어서 實學의 위치는 傳統的 儒學의 最後를 장식한 思想<sup>27)</sup>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洪大容, 朴品遠, 朴齊家등을 反封建的 思想家로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에 불과한 것이며<sup>28)</sup> 그들이 北韓學者들은 封建的 思想을 反對하여 鬭爭한 先進思想家로 추앙하는 丁若鏞도 기본적으로 儒學者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다.

이와같이 「韓國經濟思想史」를 初至一貫하여 階級鬭爭論으로 분석하여 歪曲하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위한 學問的 科學性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強旺的 統治와 자유가 없고 통제경제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學問的 道具化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經濟史의 民族의 正統性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

27) 黃元九, 前揭論文, p.367.

28) 그들 思想 全體를 보지 않고 그중 단편적인 몇개만을 해석한 것으로 前近代의 이면 朝鮮後期社會에서 조금이라도 異色의으로 보이는 經解를 두고 反朱子學的인 破天의 學說로 속단하는 것과도 흡사하다.

### Ⅲ. 南北韓經濟体制面에서 본 正統性的 方向

여기서는 먼저 韓國과 北韓이 各各 指向하고 있는 資本主義經濟体制과 社會主義經濟体制과 社會主義經濟体制을 理論的인 側面에서 比較檢討한 다음 現實的인 側面에서 經濟成果와 實情을 比較檢討하여 우리經濟体制의 優越性을 論証함으로써 그 正統性을 解明코자 한다.

#### (1) 理論的 側面에서 본 資本主義經濟体制

韓國의 經濟体制가 基調로 하고 있는 資本主義經濟体制에 대해서는 그 뛰어난 長点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批判이나 非難을 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歷史上 처음으로 工業化가 이루어지고 物的生産力이 飛躍的으로 提高된 것은 資本主義體制下에서 었다는 事實을 明白히 認識해 둘 必要가 있다. 이렇게 보면 資本主義體制에는 物的生産力의 發展을 促進하는 長点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資本主義體制의 長点의 大部分은 自由市場機構의 存在에 依拠하고 있다. 첫째로 市場機構는 各種의 財貨에 대한 需要와 供給을 自動的으로 一致시키는 作用을 有效하게 수행한다. 거기엔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을 위한 指標로써 利潤과 自由價格이 存在하고 있다.

둘째로, 市場은 그곳에 參加할 모든 經濟主體에 대하여 差別함이 없이 同等하게 經濟的 諸機會를 提供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므로써 消費者 選擇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企業活動등이 可能케 된다. 셋째로 市場機構下의 自由로운 競爭은, 사람들의 創意를 刺戟하여 革新과 進步의 原動力이 되고 있다. 私有 財產制度의 存在는 이러한 傾向을 助長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資本主義體制의 短点으로서 지적되고 있는것을 살펴 보자. 첫째로 지적될 수 있는것은 財產 및 所得分配가 不平等하기 쉽다는 점이다. 사실 19世紀後半의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社會의 富가 小數의 資本家 階層에게만 集中되고 勞働間의 經濟的 不平等이 增大되었으나 이러한 不平等도 오늘날 資本主義의 變貌과 함께 많이 緩和되어온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經濟的混亂내지는 不安定이 나타나기 쉽다는 점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19世紀後半 이래 往往이 恐慌이 發生하고 특히 1929年의 世界恐慌에는 世界的 主要資本主義諸國이 많은 失業者를 發生시키고 危機에 直面했었다. 그러나 그후는 公的 部門의 增大나 經濟計劃의 發達을 背景으로한 여러가지 政策을 통하여 恐慌이나 大量的 失業을 回避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것은 社會資本에의 配慮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資本主義 體制下에서는 私企業이 자기의 利潤追求를 第一議的 目的으로 하여 여러가지 經濟活動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過程에서 社會全體에 있어서 重要的 物的 및 文化的資產이 破壞되어 가는것을 輕視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이것역시 오늘날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公的 部門의 增大傾向이 라는가 國家機能의 增大를 통하여 補完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現代 資本主義는 옛날과는 달리 그모습을 새로이 하고 있다.

먼저 經濟機構의 面에서 보면, 所有關係 및 市場機構가 各各 많은 變化를 遂行하고 있다. 所有關係만 보더라도 公的 部門의 增大가 顯著하다. 公的 部門의 增大傾向은 첫째로 財政規模의 漸增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그 要因으로서 는 社會保障, 教育, 衛生關係등의 社會서비스 支出과 住宅, 道路, 道市計劃등의 公共事業支出의 增大를 들 수 있다. 둘째로, 公企業의 活動分野가 增大하고 있다. 이러한 財政規模의 增大에 따른 政府投資의 增加와 公企業部門의 擴大의 結果, 公的 投資의 投資總額中에서 佔하는 比率도 높아져가는 傾向이 있다. 先進資本主義諸國에서는 機械, 建物등의 固定資產에 대한 總投資中에 點하는 公的 固定資產 投資의 比率은 4분의 1내지 3분의 1이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私企業도 公的 性格을 強化하고 있으며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進展되고 있다.

經濟機構의 面에서 또한하나의 커다란 變化는 經濟計劃化의 進行이라 할 수 있겠다. 經濟計劃은 어디까지나 市場機構를 기초로 하고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 政治社會機構의 面에서는 民主主義의 發達이 特徵이 되고 있다. 一方에서는 議會民主主義의 發達과 더불어 他方에서는 產業民主主義의 發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經濟民主主義를 理念으로 하여 公的 部門과

私의企業과의 市場競争을 通하여 不平等을 是正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2) 理論面에서 본 社會主義 經濟體制

社會主義體制的 長點과 短點은 대략 資本主義體制的 그것과 表裏關係에 있다. 社會主義體制的 長點으로 곧잘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것은 첫째, 財産 및 所得分配의 不平等을 작게 한다는 것이다.

物的生産手段의 公有制下에서는 財産分配의 不平等은 생기지 않고 따라서 所得의 不平等도 작다는 主張이다.

둘째의 主張은 經濟的 混亂내지는 不安定을 最小限 抑制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中央當局에 의한 經濟計劃의 作成과 그에 따른 各種의 指令이나 調整을 위한 措置를 통하여 極端的인 景氣循環의 發生을 防止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들고 있는 장점은 넓은 意味에서 社會資本에 대한 配慮가 잘될 수 있다고 말한다. 卽 經濟活動의 目的이 直接 社會的 利益과 連結되고 있음으로 公害防止에 있어서도 計劃作成의 段階에서 미리 對策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에서 든 세가지 長點이라는 것도 오늘날 社會主義體制下에 있는 蘇聯이나 其他諸國의 現實을 보면 그 理論의 虛構性을 알 수 있다. 蘇聯의 경우만 하더라도 黨 및 政府의 上層部를 頂點으로 하는 巨大한 「피라밋」型 官僚組織이 形成되고 있다.

따라서 重要한 意志決定은 勿論, 細部의 意思決定까지 극히 小數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理念上으로 내 세우고 있는 平等主義, 共同主義라는 것도 이러한 黨의 官僚化나 報酬差別의 現狀을 생각하면 그 虛構性을 突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最近 蘇聯에 있어서 利潤概念의 導入이라든가 蘇聯·東歐에서 表面化한 經濟自由化의 물결은 이 虛構性을 그대로 反証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非效率性을 나타내는 短點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을 促進하는 適切한 指標가 없기때문에 資源의 浪

費가 發生하기 쉽다. 이것은 自由市場下의 利潤과 自由價格과는 匹敵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問題라고 볼수 있다.

둘째, 社會의 個個人的 慾求를 社會的으로 反映하고 그것에 即應하여 經濟的 諸機會를 주는 機構가 없다는 事實이다. 中央計劃에 의한 生産과 消費者의 嗜好사이에는 항상 차질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특히 生活水準이 높아지고 消費慾求가 多樣化함에 따라서 이러한 傾向은 增大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社會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革新과 進歩를 위한 誘因이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경우와 같이 強力하게 作用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들수 있다. 即 企業의 責任자가 經營의 效率化를 위해 애쓰는 努力은 私的利潤의 追求動機에 의하여 움직이는 私企業의 經營者 경우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 (3) 南北韓 經濟體制의 比較

먼저 韓國의 經濟體制를 간략하게 把握하기 위해서 第1次 5個年計劃의 경우를 例로 들어 보자.

第1次 5個年計劃은 計劃의 基本目標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即 (1) 農業生産力の 增大에 의한 農業所得의 上昇과 國民經濟의 構造的 不均衡의 是正 (2) 電力, 石炭등의 에너지源의 確保 (3) 基幹産業의 擴充과 社會間接資本의 充足 (4) 遊休資本의 活用, 特別 雇傭의 增大와 國土의 保存 및 開發 (5) 輸出增大를 主軸으로 한 國際収支의 改善, 技術의 進興등이다. 이러한 目的 達成을 위해 必要한 政策手段으로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提示했다.

첫째로 自由市場 經濟體制의 原則에 立脚하여 民間人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하고 民間企業의 創意的 努力을 鼓吹한다.

한편 政府는 이것을 財政, 金融 및 外貨의 面에서 間接的으로 支援하고 民間企業이 參加할 수 있는 基幹産業 또는 其他重要部門에만 政府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介入하는 「指導되는 資本主義」<sup>1)</sup>를 樹立한다.

1) 趙容範, 韓國經濟論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74), P.110.



둘째로 自然資源과 人的資源을 合理的으로 結合시킴으로써 生産의 擴大를 圖謀하고 資本供給의 確保를 期한다. 그리고 이를위해 国内資源을 最大限으로 動員하고 所要外貨의 調達에 있어서는 外資導入에 重点을 두며 政府 保有달리는 事業目的을 위해 計劃적으로 使用한다. 다시 말하면 国内勞動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資本化를 期하고 安定된 基盤위의 發展이라는 健全한 成長過程을 維持할 것을 計劃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提示된 第1次 經濟開發 5年計劃이 成功的으로 遂行되었다는 事實은 周知의 事實이다. 成長目標達成에 있어서 当初 計劃은 7.1%였는데 실제 成長률은 이것을 훨씬 上廻하는 8.5%였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일이다.

南北韓의 現實經濟의 比較는 위에서 檢討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經濟體制面에서만 比較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 1, 2次 5年計劃의 具體的인 成果나 3次 5年計劃의 進行狀況은 論及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經濟開發 5年計劃을 實現하기 위한 政策手段만은 檢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의 經濟體制의 特徵을 밝혀 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現在 進行中인 3次經濟開發 5年計劃의 政策手段을 알아 보기로 하자

1972년에 시작된 3次經濟開發 5年計劃은 1次, 2次計劃의 補充을 內容으로 하면서도 民族의 宿願인 自主經濟를 達成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 基本精神은 첫째, 「成長, 安定, 均衡」의 調和를 追究하여 安定된 基盤위에서 成長을 達成하며 同時에 農漁民과 低所得層을 包含하여 全國民에게 골고루 福祉를 向上시키도록 한다. 둘째 産業構造의 高等化와 國際收支의 改善 및 主要한 穀物の 自給을 實現함으로써 自主的 經濟構造를 確立한다. 셋째, 4大河川流域의 開發, 道路網의 大幅的인 補充 등 國土의 綜合的인 開發을 促進하여 地域開發의 均衡을 期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目標의 實現을 위한 政策手段의 基調는 1次 5年計劃때와 다를 것이 없다. 即, 自由市場 經濟體制의 原則에 依拠, 民間人的 自由와 創意를 尊重하면서 國民의 福祉向上을 期하고 自然資源과 人的資源을 合理的으로 結合시켜

生産을 擴大한다는 資本主義 經濟体制의 優越性이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北韓이 經濟体制을 살펴 보기로 하자. 解放後 30年間 北韓의 經濟社會는 個人獨裁社會가 要求하는 生理에 따라 움직여 왔고 또한 變遷하여 왔다고 보아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北韓의 經濟發展政策은 傳統的으로 軍事的 潛在力을 기르는데 主眼을 둔 重工業優先政策을 實施해 왔다. 이와같은 政策의 強度는 國際緊張으로부터 받는 危機意識 및 侵略政策의 積極度에 따라서 多少間變動을 보여왔지만, 國民所得가운데 占하는 蓄積(大部分 兵器工業 및 重工業投資에 돌린)의 比重은 25%를 내려간 일이 없으며 最近數年間에는 그것이 30%에 達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經濟發展에 比例해서 民衆生活이 向上되는 것이 아니라 7個年計劃期間(1961~67)에 勞動者 公務員에 대한 賃金引上이 거의 없었던 것은 以上の 事情을 端的으로 말해주고 있다.<sup>2)</sup>

北韓은 政權層의 確立과 더불어 計劃經濟를 점차로 擴大強化시켰고 現在에 와서는 그 效果는 如何間에 經濟社會를 完全히 規定하게 되었다. 社會主義經濟의 特徵은 經濟活動과 發展을 計劃化하는 것임으로 北韓이 計劃經濟의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獨裁經濟라고까지 斷定할 수 없으나 北韓의 計劃經濟는 그것이 法的性格을 띠는 絶對權力者로부터 大衆에 주어지는 至上命令이고 또한 그 範圍가 經濟分野뿐만 아니라 文化·教育, 思想活動까지를 包含하고 있음으로 確實히 獨裁的 全支配的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經濟計劃의 修正, 變換은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만 可能하고 其他의 機關에서는 異議를 提示하지 못하며 計劃의 未達成은 下部指導機關의 無能力과 無識으로 處理되며 그 解決方案은 金日成 一個人의 思考와 行動을 模倣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獨裁經濟體制라 말할 수 있는 特徵이라 하겠다.<sup>3)</sup>

그리고 北韓은 解放後從부터 重要產業施設을 國有化하고 國家에서 直接 管理運

2) 嶺南大, 統一問題研究1輯(大邱, 嶺大統一問題研究所, 1970), p.226.

3) 徐南源, 北韓의 經濟政策과 生産管理,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P.246.

알하여 온 까닭으로 社會主義化되고 農村分野는 1955년에 들어서 급격히 協同組合을 發生시켰으므로 社會主義化되었고, 또 個人商工業도 完全히 國有化 또는 協同化를 하여 全經濟社會가 社會主義化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社會主義化의 國号는 經濟面의 意義보다 政治面의 意義가 強한 것이다. 卽 社會主義化를 經濟的 概念으로 適用한다면 適正生活規模에 다른 部分集團化가 必要하지 全國的 單一支配系統에 움직이는 統合된 組織體系가 必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北韓의 社會主義化는 單一된 支配體系下에서의 集團化와 集團活動의 全面을 規制하고 있음으로 이는 社會主義化가 아니라 組織化인 것이다. 組織化의 目的은 一般의인 強壓에 의한 政權安定을 도모하고 政治教育을 實施하며 必要한 勞動力을 마음대로 擲出動員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政治面에서의 警察國家의 確立과 生産面에서의 全國民의 勞動動員은 社會主義化라는 旗幟下에서 國民組織化를 斷行시킨다는 것이다.

北韓은 1次 5個年計劃이후 重工業優先主義의 經濟政策을 쓰고 있다. 重工業優先主義는 製鉄 製鋼 機械製作, 電力生産등을 優先적으로 發展시켜 生産을 機械化시키고 따라서 生産能率을 加一層 飛躍시킨 있고 輕工業과 農村分野의 生産은 自然增加한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北韓은 重上業生産에 있어서 消費財生産手段의 生産보다 生産財生産手段의 生産부터 시작하는 극도의 消費生活을 無視하는 政策을 一貫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政策은 將來에 있어서 高度의 消費生産을 위한 社會主義的 迂廻方法이 아닌것이다. 北韓이 重工業優先主義를 扞하게된 참다운 理由는 軍備補充을 위한 兵器彈藥生産을 確保하는 데 있는 것이다. 實際의으로도 北韓은 現在까지 工業發展計劃도 完成을 期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重工業發展이 輕工業의 飛躍의인 發展을 可能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立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經濟政策과 아울러 經濟體制面에서 보면 北韓에는 價格機構 存在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비록 社會主義經濟가 計劃生産을 하는 것이라 하여도 財貨의 流通은 價格機構의 作用에 맡길수 있는 것이며 특히 消費財貨의 경우는 그러하다. 그러나 北韓은 生産財貨나 消費財貨나 相關없이 經濟財貨의 全部가 國家에 의하여 價值가 決定되고 있으며 이는 오로지 政權者의 目的에 따라 財

貨의 分配, 消費를 規制하고 統制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價格은 需要供給의 關係를 나타내는 現象이 아니라, 需要供給을 政權者의 目的에 따라 調節하는 手段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思考方式은 獨裁意識에서 出發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이상에서 北韓의 主要經濟政策과 體制의 特徵을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았거니와, 그러한 經濟政策의 發想은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基本目標에 基調를 두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軍事的인 側面에서는 所謂 「全人民의 武裝化」 및 「全領土의 要塞化」라는 長期抵抗體制와 함께 經濟面에서도 長期持久戰을 지탱해 낼수있게 하려는데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南北韓의 經濟體制의 比較에서 나타난 事實은 北韓의 經濟體制가 극히 非效率의이며 國民의 生活水準向上을 廢外視하고 軍備擴充에만 熱中하는 獨裁經濟體制라는 것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國民의 生活水準을 抑壓하고 모든 經濟活動分野에서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抑壓하는 社會主義的 獨裁經濟體制가 民族經濟의 正統性을 云云할 資格조차 없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4) 南北韓 現實經濟의 比較

韓國開發研究院이 최근 南北韓의 經濟指標를 比較해서 만든 南北韓 經濟 現況比較를 살펴보기로 하자.<sup>4)</sup>

1人當國民所得은 韓國이 513 달러, 北韓이 313 달러로써 韓國이 200 달러나 높다. 그러나 投資率을 보면 韓國은 總投資率(對GNP比率)이 30%로 1人當 投資額이 154 달러이며 北韓에서는 1人當 約 100 달러로 나타나 있다. 軍事 費負擔率(對GNP)도 74年度에 韓國은 4.2%인데 비해 北韓은 13.9%나 되

3) 上掲書, p.248.

4) 中央日報, 1975年 6月19日字

있다. 韓國의 1人當 軍事費負擔額이 22 달러에 不過하나 北韓은 44 달러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軍事費負擔率, 投資率의 差異로 實質的인 消費水準은 韓國의 337달러 對 北韓의 160 달러란 顯著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歲出入豫算規模를 比較해 보자.

韓國의 歲出入豫算內容을 보면 總歲出豫算規模가 約 26億 6,000萬 달러로 이중 國防費가 7億 3,000萬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一般經費 11億 4,000萬 달러. 投融資 7億 9,000萬달러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反面 北韓은 74年度에 總豫算規模 41億 6,000萬달러 가운데 國防費 6億 7,000萬달러, 人民經濟費 24億 5,000萬달러, 社會文化施策費 9億 7,000萬달러 機關管理費 7,000萬달러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南北韓의 歲出豫算規模의 차이는 韓國이 擴大再生産을 위한 投資가 大部分 民間企業을 主軸으로 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면 北韓은 전적으로 公的인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는등 政府에 의한 經濟活動의 範圍가 相異함을 反映해 주고 있다.

다음 農業部門을 比較해 보자. 74年度 現在 韓國의 總耕地面積은 約 224萬 ha로 이중 논이 127萬ha이고 밭은 97萬ha이다.

北韓은 總耕地面積 207萬ha가운데 논이 69萬ha 밭이 137萬ha로 밭面積이 논의 約 2倍가 된다. 機械化現況은 韓國이 경운기 62,621臺를 保有하고 있으며 北韓은 트랙터(15馬力), 約 60,000臺를 保有하고 있다. 化學肥料의 施肥量은 成分含量으로 韓國이 ha當 379kg에 달하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ha當 施肥量이 200kg에 불과하다. 穀物生産量은 韓國이 精穀으로 676萬噸(74年度)인데 비해 北韓은 342萬噸이다. 한편 ha當 米穀生産量을 分析해 보면 74年度の 경우 韓國은 3,690kg이고 北韓은 2,700kg이다.

人口1人當 米穀消費量에 있어서도 韓國은 71年度에 이미 390kg로 나타나고 있으나 北韓은 72年度에 겨우 290kg에 不過했다.

다음 金屬工業에 있어서 南北韓을 比較해 보자. 韓國은 74年度 324萬噸의 鋼鉄을 生産함으로써 73年度 北韓의 250萬噸을 能加하고 있다. 그러나 銅生産에서는 韓國이 2.2萬噸으로 北韓의 2.8萬噸 보다 약간 덜세에 놓여있다.

다음 化学工業部門을 比較해 보자. 化学肥料의 生産量은 韓國이 163萬噸 (74年度)이며 北韓은 73年度에 156萬噸이다. 肥料의 성분함량으로 환산하면 88萬噸 對 41萬噸으로 韓國이 2倍以上을 生産하고 있는 실정이다. 農業의 生産은 韓國이 3.5萬噸이고 北韓은 1.5萬噸이며 주요 合成樹脂의 경우는 17萬噸을 生産한데 비해 北韓은 設備能力이 10萬噸으로 실제 生産은 이보다 훨씬 미달될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은 機械工業部門을 比較해 보기로 하자. 韓國은 74年度에 各種 工作機械 3,600台 내연기계 10,573台를 生産했는데 北韓은 工作機械 30,000台 내연기관 3,000馬力を 生産했다. 造船은 韓國의 現代建設이 74年度에 26萬噸級 대형유조선을 건조하였는데 비해 北韓은 淸津造船所에서 겨우 14,000톤급 화물선을 건조했다. 한편 自動車生産能力은 韓國이 60,000台인데 반해 北韓은 10,000台에 불과하다.

다음은 輕工業部門에서 比較해 보자. 北韓은 重工業優先政策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日常生活과 직결된 輕工業部門은 극도로 落後되고 있다. 우선 織物生産量은 74年度에 韓國이 8億㎡ TV受像機가 연간 116萬台 라디오 370萬台, 관유리 195萬c/日, 시멘트 1,026萬噸으로 推計되었으나 北韓은 직물 4.5億㎡ TV受像機는 量産体制을 갖추지 못했고 라디오도 国内需給을 채울 정도이다.

끝으로 社会間接部門을 比較해 보자. 發電施設容量은 韓國이 74年度에 452萬Kw인데 北韓은 73年度에 370萬Kw로 나타났고 電信, 電話는 96만회선 對 22만회선으로 거의 5배가 많은 셈이다. 鐵道の 延長길이는 韓國이 5,664km이고, 北韓이 4,380km이며 高速道路는 韓國이 1,013km인데 반해 北韓은 平壤~板門店間의 포장도로가 고작이라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南北韓의 經濟現實이 어떠한가를 보았다. 이러한 現實的인 諸經濟指標는 바로 經濟의 合理化 民主化를 추구하는 自由主義를 基調로 한 韓國의 資本主義 經濟体制의 優越性을 立証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비록 北韓이 아무리 말로만 体制의 優秀性을 떠들어 보았자 現實的인 經濟成果의 比較가 어려울지니 民族經濟의 正統性은 經濟的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韓國의 經濟体制에 連綿히 흘러오고 있음은 너무나 當然한 論理的的 歸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IV. 結 言

이상에서 論述한 바와같이 經濟史的 側面에서는 正統性이란 概念을 「心理的 論理的 根拠에서 國民大衆이 支持하는 經濟體制」에 두고, 그러한 民族經濟의 正統性的 向方을 民族經濟의 發展史를 통해서 그리고, 南北韓의 經濟體制的 比較를 통해서 追究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다.

들어켜 보면 19世紀後半의 外勢侵入이 있기전 부터 우리나라 經濟는 스스로 近代化를 向한 資本主義的 萌芽가 움트고 있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그 萌芽가 채 成熟하기도 전에 外勢侵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리고 他津의인 近代化에의 길을 걸지 못하였다. 이처럼 民族의 自主的인 推進力에 의해서 近代化에의 길을 걸지 못한 까닭으로 苛酷한 日帝의 植民統治를 經驗해야 했고, 經濟構造 역시 植民地的改路行성을 면할수가 없었던 것이다.

解放을 맞이한 시점 이후 南北은 兩斷고 서로 다른 經濟體制를 指向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韓國은 日齊가 그처럼 抑壓했던 民族資本의 育成을 통해 經濟的 自由主義를 基調한 資本主義經濟體制를 指向하면서 經濟的 合理化 民主化를 實現코자 줄기찬 努力을 傾注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努力도 民族의 自主的인 推進力에 의해서 構築되어 온 것이다.

한편 北韓에서는 經濟的 合理化와 民主化를 拒否하는 社會主義經濟體制를 指向하면서 기실은, 個人獨裁經濟體制를 굳혀 온 것이다.

이러한 全體主義的 獨裁經濟體制를 굳히기 위해서는 그들은 科學的으로 그리고 客觀的으로 把握되어야 할 經濟的 事實이나 經濟思想 마저 我田引水 격으로 왜곡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相反된 두개의 經濟體制를 理論的으로나 現實的 諸經濟指標의 比較를 통해서 韓國經濟體制的 優越성은 立證되었으리라 믿는다. 卽 國民의 消費水準을 抑壓하는 非效率的인 北韓의 社會主義的 獨裁經濟體制와 經濟的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韓國의 自由主義經濟體制를 比較할 때 體制的 優越성은 勿論이거니와 民族經濟의 正統性마저 明瞭한 모습으로 그向方이 浮刻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文化史的 側面에서 본 大韓民國의 正統性

任 東 權  
文 博 · 中央大學校教授

## 目 次

- I. 序 言
- II. 宗 教
- III. 孝와 祭禮
- IV. 農耕生活와 歲時風俗
- V. 芸 術
- VI. 結 言

### I. 序 言

우리 韓半島가 東西世界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分極化過程에서 南과 北으로 兩斷된 후 體制와 理念을 달리하는 가운데 아무런 交流와 協力없이 對峙해 온지 卅年으로 30年을 經過하고 있다. 歷史的 眼目에서 보아 30年이란 時間은 長久한 民族史의 脈絡에 비추어 그리 오랜 時間은 아니다. 그러나 他律的인 國土分斷後 南北間에는 何等의 肯定的 相互作用이 없었음으로 해서 점차 모든 面에서 異質性이 增大하고 있다. 休戰線 以南의 大韓民國에서는 우리 韓半島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根源이 되는 祖上傳來의 文化遺産을 繼承發展시키고 있는 反面에 北韓地域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社會主義 리얼리즘과 文化에 대한 金日成集團의 反歷史的 態度로 말미암아 祖上傳來의 精神·文化의 諸遺産이 歪曲, 抹殺되고 있다.

오늘날 韓半島의 諸般와件을 감안할 때 南北統一의 客觀的 準拠는 南北對立의

이데올로기 差異에서 강구될 것이 아니라 祖上의 빛난 일을 오늘에 되살리는 文化史的 統合 (Cultural integration) 에서 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 文化의 傳統的 形式과 그것의 바탕이 되는 思考를 中心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文化史的 正統性的 準拠를 摸索하는데 力點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韓國 文化史의 背景이 되는 宗教, 孝와 祭禮, 農耕生活과 歲時風俗, 芸術 등을 中心으로 正統性形成의 根源을 究明하고 이상의 要素가 北韓地域에서 과연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를 讀者들의 想像에 留保시키고자 한다.

## II. 宗 教

우리는 元來에 至上至高의 存在로 「하느님」을 設定하고 섬겨왔다. 하느님은 天 위에 있으며 生命있는 存在들의 運命과 福祿을 담당하고 災禍를 줄 수도 있다. 우리는 極에 이르러 나의 力不足을 認識하였을 때에 또는 所望이 간절할 때에는 하느님에 呼訴하여 힘의 도움을 간청했다고 所望을 이룰 수 있도록 協力해주도록 祈願했다. 하느님은 絶對者이기 때문에 그 能力이나 힘은 無窮한 것이며 超人間的인 造化는 물론 神의 意志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하느님의 正體는 視覺으로 確認할 수는 없다. 實體인 것이 아니고 信仰의 人 것이어서 形象化된 것이 아니다. 믿음 속에서만 實在하는 것이다.

實在하지 않는 하느님이지만 韓民族은 다 믿어왔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人間世상을 내려다 보고 살펴보는 하느님을 意識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다. 내가 온갖 힘을 다해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느님의 힘을 빌고자 呼訴하고 祈願했다. 오랜 勞働에 비내려 곡식이 잘 자라기를 빌었고 病들어 앓는 사람이 快癒될 지기를 하느님께 빌었다. 또 老父母의 長壽와 男便이 科擧에 불기를 빌었고 子息들의 健康을 간절히 빌 때에도 하느님이 對象이 되었다. 내 努力으로 解決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했으나 人間の 힘으로 또는 自己의 힘으로는 力不

足해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하느님의 힘을 請해 왔다.

韓民族은 善한 일에 하느님께 빌고 하느님께 請하고 하느님의 힘을 빌어 어려움을 해치고 살면서 또한 하느님의 罰을 두려워 했다. 하느님은 善人을 도와 주면서 惡人을 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個人的인 犯罪보다도 公衆의 利益을 害치는 일을 있을 때에는 하느님은 서슴치 않고 罰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그것을 天罰이라고 일러 왔다.

우리는 無道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고 말한다. 즉 無道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罰이 내린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 惡人에 대하여 叱責하는 날에 조심하라는 말을 한다. 叱責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은 惡人에 대해서 天意로 叱責을 내려 罰하기 때문이다. 叱責이 自然氣象만이 아니라 하늘이 怒하면 雷動을 일으키게 된다고 우리는 믿어 왔다. 하느님을 믿고 信仰하는 宇宙觀에서 萬羅相은 하느님의 意志와 그의 管掌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公益을 害치는 일로서 萬人이 共同으로 먹는 우물을 犯하는 일은 그 첫 對象이 되어 왔다. 우물은 神聖한 곳으로 여겨왔다. 물은 生存을 可能케하는 根本이기에 所重하게 다루어 왔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물이 있는 곳에는 聚落이 形成되었다. 生活의 源泉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所重한 우물에 大小便을 보거나 침을 뱉거나 不潔한 것을 버리는 것은 人間을 怒엽케 만들 뿐 아니라 天意를 거슬리게 되고 必然코 人間뿐 아니라 하느님이 내리는 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所願이 있으면 淨水를 떠다놓고 하느님께 두손모아 빌었다. 精誠을 다하면 至誠은 感天해서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現代宗教가 가지는 것처럼 教祖도 教團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存在를 是認하는 信仰과 原初의인 敎理가 內在해 있었다.

하느님을 믿고 自然의 順理를 人間關係에 適用시켜 倫理로 定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준수케하는 生活觀은 우리文化의 基層을 이루고 오늘날 傳承되어 왔다. 하늘에 따르는 것은 人倫에 따르는 것이 되고 하늘에 拒逆하는것으로 믿고하느님을믿고 준.

수하는 생각은 韓國人の 哲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하느님哲學은 韓國文化에 있어 原初에 속하며 基底를 이루고 있다.

佛敎는 곧 마찰이 없이 傳來되었다. 文化傳播는 授與와 受容의 與件이 一致할 때에 順調로우며 아무리 授與하고자 해도 受容에서 拒否하면 傳播하지 못하고 또 受容하고자 해도 授與하지 않으면 傳播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人類의 歷史에서 보면 異質의 宗教가 傳播되는 過程에서는 相互間에 갈등 反目이 發生하는 例는 많았다. 어느 意味에서는 當然한 現象이었다. 갈등과 反目이 甚하면 때로는 戰爭으로 發展하여 殺傷의 悲劇을 超來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佛敎의 傳來에는 多少의 마찰은 있었으나 큰 事故없이 傳播되었다. 그만큼 授受關係에 있어 共感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佛敎는 西域에서 中原을 거쳐 긴 旅行끝에 韓半島에 들어왔다.

高句麗에서는 A. D. 372 年에 秦僧 順道가 佛像과 佛經文을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佛法이 實施되었으며 百濟에는 A. D. 384 年에 胡僧 摩羅難陀가 佛으로 부터 들어와 처음으로 佛敎가 傳來했고 新羅에서는 訥相麻立干(A. D. 417 ~ 475) 때에 高句麗로 부터 僧 墨胡子가 들어와 佛法을 처음으로 傳하게 되었다.

佛敎가 들어온 후로 많은 信者들이 모이게 되고 巨刹이 세워지고 中國僧의 來往이 頻繁해지고 修道를 위해서 中原과 西域에 가는 僧侶도 있었고 佛敎를 大成코자 했으니 그 中에는 圓光, 慈藏, 元曉, 義湘같이 高僧大師가 輩出하게 되고 佛敎는 자못 旺盛해졌고 土着하는데 成功했다.

佛敎는 外來宗教이지만 韓土에 들어와 千六百年동안 傳承하여 宗教로 成長해 왔다. 全國到處에 巨刹이 있고 우리의 文化財의 大部分이 寺刹境內에 있다는 것은 佛敎가 우리文化에 寄與한 度를 알수가 있고 또 우리 先祖들이 佛敎와 얼마나 密着되어 살아왔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佛敎가 傳來하여 土着하기 까지는 수 많은 苦難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날에 評價할 때에 韓國人の 마음은 佛敎思想을 迎入할 수 있는 共感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宗教가 強旺이나 法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自由롭게 選擇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哲學과 萬物에 神이 있다는 애니미즘

( Animism ) 을 지니면서 仏教을 迎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文化的인 妥當性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

仏教가 들어와 土着하는 때에는 異教가 지나는 排他와 高踏性이 없고 融和와 包容으로 共存한 까닭으로 생각 된다 . 仏教는 들어와서 法堂을 짓고 佛法을 旅行하는데 있어 從來의 山神이나 七星을 否定하지 않고 肯定하였다 . 寺刹을 純粹하게 仏教의 境內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法堂보다도 높은 곳이나 뒤쪽 또는 左右에 山神閣 七星閣을 存統시켜 仏教以前부터 傳承되는 宗教를 그대로 是認하고 共存하여 왔다 .

仏教가 지닌 幅 넓은 包容性은 寺刹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였다 . 排他性없이 法堂에 가서 供養을 올리고 齋를 지내고 나서 山神閣과 七星閣에도 고루 參拜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 .

仏教의 因果応報나 來世觀은 많은 共鳴을 받았다 . 善惡이 分別되고 善이 勸獎되고 惡은 懲戒를 免치 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 사람은 元來에 착한 것을 理想으로 삼고 渴望하였으므로 이러한 생각이 擴大되어 人生觀이 되고 信仰이 되며 古代小說에서도 즐겨 主題로 삼아 왔다 .

우리 文化遺産중에서 併教的인 것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 古刹들과 塔, 浮屠, 石燈, 仏具, 梵唄 등 多樣하게 保存되어 왔다 . 석굴암의 仏像이나 仏國寺의 多寶塔에서 우리는 古代의 信仰의 깊이와 技術을 알 수가 있다 . 信仰心이 깊었기 때문에 藝術의 奧妙를 간지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感歎을 禁할 수가 없다 . 高麗磁器의 色과 線이 그렇게 아름답고 요즈음도 그 흥을 내기가 어려운 것도 當時에는 信仰心의 깊이가 있었고 부처님께 供養드리려는 깊은 信仰에서 磁器를 만들었기 때문에 信仰心이 없는 現代人이 技術만으로 흉내려해서 흉낼 수가 없는 것이다 .

仏教에서는 僧團의 組織이 있었고 또 信仰에 의해서 保存하려는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現物을 原形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仏教가 비록 外來의 것이지만 1600년 동안에 土着하여 우리 文化로 定着하면서 韓國仏教로 成長하여 우리 文化史의 一面을 担当하게 되었다 . 仏教의 教理를 지키면서 護國仏教를 自

稱하여 國家에 有事時에는 參與하였고 文化와 文化財의 保存者로서의 役割까지도 맡아 왔다.

그러나 庶民속에서 傳承된 하느님철학이나 萬物有神觀은 教團이 없을 뿐 아니라 具體化시키는 作業이 없었기 때문에 精神的으로 繼承되고 있을 뿐 形象的으로 傳達한 것이 없다.

韓國 仙敎가 脫俗하고 自然속에 파묻히려는 갈끔한 性格때문에 深山에 寺刹을 짓고 濁한 俗世를 멀리해 왔다. 그러나 現代의 機械文明은 都市의 形成과 產業의 發達로 必然的으로 人口의 集中을 초래하여 사람들은 俗世를 벗어나지 못하고 都市에 몰려서 生活하게 되었기 때문에 深山과 寺刹을 멀리하게 되었다. 또 基督教이 傳來됨에 따라 都市人들은 西歐文明을 받아들여 基督教에 쏠리는 現象이 強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仙敎와 基督教은 自由롭게 共存하고 있으며 하느님思想도 끈질기게 基底에 깔려 있어서 傳統文化를 形成하고 있다.

宗敎가 多樣하게 習습할 수 있다는 것은 信仰의 自由가 保證되고 國民들이 스스로의 判斷에 의하여 選擇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物質의 繁榮을 누리던 人間으로서 가져야 할 精神의 깊이를 宗敎에서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의 宗敎를 強요함이 없이 選擇할 수 있는에 真正한 自由와 文化가 있기 마련이다.

### Ⅲ. 孝와 祭禮

사람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父母에 對하여 孝道하고 父母가 죽어서 그 恩惠에 報答하려는 마음에서 祭祀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찍이 行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原始群婚時代에 있어서는 자신을 哺育하고 保護한 어머니의 存在를 意識했을 것이며 依存하고 協同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을 것이다. 家庭이 形成됨에 따라 強者인 아버지의 保護를 받았고 아버지를 따라 狩獵과 農耕과 戰鬪의 技術을 배

우게 되어 自立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生存의 必要에 의하여 父母가 必要했으나 차츰 情緒와 意識의 発達에 따라 父母가 血統上的 存在만이 아니라 情的인 存在로 認識되고 그의 勞苦가 모두 子息의 胎育, 成長, 教育, 出世를 위해서 盡力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 恩功에 報答하려는 孝誠이 싹트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孝와 祭는 人類史에서 오랜 歷史를 가지는 것이다.

儒教는 人間關係에 대하여 秩序와 規範을 體系化하고 理論化하여 사람들이 준수하기를 要求했다. 人倫의 基本을 父母와 子息과의 關係에 두고 그 다음으로 夫婦, 君臣, 長幼, 朋友등을 지켰다. 人間의 社會活動이 늘어감에 따라 複雜한 人間關係에 있어서도 五倫은 如前히 重要한 것인데 儒教에서는 그 必要性을 일찌기 主張해 왔다.

韓國人の 生活觀에는 儒教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思考와 行爲에 이르기까지 廣泛하게 儒教가 支配하고 있었다.

儒教가 언제부터 傳來하였는가에 대하여 正確한 考證은 어렵다. 그러나 漢四郡 設置로 보아 B. C. 200年쯤부터 漢文字가 들어 왔다면 그 때에 漢藉이 들어왔을 것이고 漢藉이라면 中國의 經書가 大部分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周書 異域傳과 北史 高句麗傳에 「高句麗에 五經, 三史, 三國志, 晉春秋가 있다」고 하였으니 三經이란 儒教의 基本經典인 詩傳, 書傳, 周易, 春秋, 禮記인 것으로 미루어 儒教는 일찌기 韓半島에 進出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三國史記에 의하면 小獸林王 2年 (A. D. 372)에 太學을 세워 子弟를 教育시켰고, 嬰陽王 11年 (A. D. 600)에 太學博士 李文真에 命하여 古史를 要約하여 新集 5卷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벌써 漢文教育을 實施했고 漢文字로 史記를 엮은 것으로 생각된다.

儒教는 宗教가 아니라 生活哲學이다. 사람이 生活하는데 있어 지켜야할 規範을 提示했다. 人生은 바르게 살아가고 바로 살기 위해서 規範을 지켜야 했고 規模를 서로 준수함으로써 調和를 이루어 幸福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 賢明하고 知慧로워야 했다.

儒教에서 仁과 德을 存遵하고 갖추는 것을 理想으로 했으며 孝의 實踐을 강조

했다. 不孝는 惡이기에 규탄을 받아야 했고 非倫으로 看取되었다. 人間이 動物과 구분되는 尺度를 孝로 삼았고 孝있으므로 비로소 人間이었다. 따라서 孝의 最高의 道德으로 여겨왔다.

孝와 老에 대한 尊敬은 同一視되었다. 나이 많은 어른을 恭敬하는 것은 父母나 祖父母에 準하도록 되어 있으며 敬老의 倫理를 이루고 이러한 思想이 社會秩序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어느 座席에서나 어른을 윗자리에 모시고 어른앞에서 翰부로 言動하지 않고 愼慎하며 恭敬하는 慣習은 儒敎文化가 낳은 倫理이자 敎養이었다. 位階秩序가 嚴하게 存在하고 우리의 人間과 人格형성에 절대적인 規準이 되어왔다.

우리는 父母나 年老한 사람의 말을 拒逆하거나 不遜한 것을 하거나 侮辱하는 것을 黜過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鄉約으로 다스렸고 지금도 法律以前에 道德으로 審判을 받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家庭에서는 물론이고 社會적으로 容納하지 않는다. 孝에 대해서 이토록 嚴한 것은 우리의 文化이며 精神이며 生活信條이며 行動綱領이며 慣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孝를 喪失할 때에는 家族의 秩序는 무너지고 社會는 混亂해지고 求心點을 잃게 될 것이다.

祭를 정중하게 지내는 데서 過去志向의인 一面을 찾아 볼 수 있다. 韓國人은 한끼를 굶을 망정 祭祀만은 잘 지내 왔다. 죽은 사람을 祭祀하는 것이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으나 精誠을 다하여 祭物을 다하여 마련하고 祭物을 豊富하게 마련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왔다. 祭祀를 淨하고 精誠을 다하는 것은 孝하는 것과 同一한 것이고 祭를 잘 올리지 못하게 되면 罰을 받게 되어 禍를 입는다고 傳해온다.

祭祀는 死亡한 날을 맞이하여 새벽에 鷄鳴聲을 듣고 지내게 되니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정성이 아니면 지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祭日이 되면 遠近의 親戚들이 모여 祭祀를 지내게 된다. 祭祀와 더불어 家族의 共同意識을 두텁게 하게 된다.

함께 같은 祖上을 祭祀한다는데 紐帶意識과 協同心이 생기고 親戚끼리라는 親密感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祖上만을 祭祀하지 않았다. 古代에는 山川神 서낭神 岩石神 樹木神 動物神등과 人間으로서는 王과 높은 벼슬을 한 指導者나 나라에 功을 세운 英雄들 까지도 祭祀를 지냈다. 이러한 경우에는 個人이나 한 家族에 局限되어 祭祀지내는 것이 아니라 部落單位로 또는 社會集團이나 鄉土가 單位가 되어 參加하여 規模도 크게 된다. 宗廟의 祭典, 國師서낭堂의 굿, 山神祭와 祈雨祭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祭祀는 報答의 한 形式이면서 人間의 祖上崇拜와 敬神思想의 表出이다. 바쁜 日課를 젓혀놓고 먼길을 祭祀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誠意가 있기 마련이다. 祖上神이 아니고 公益의 守護神祭인 때에는 功利性도 結付되어 있다. 즉 守護神을 잘 섬겨줌으로서 그 加護를 받아 發福하고 隆盛하게 昇進하고 致富하기를 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利害關係가 큰기 때문에 소원을 成就하고자 神祭를 정중하고 盛大하게 지내는 일도 있다.

祭祀 때에 禁忌를 지키고 不淨을 避하며 精誠을 한다는 것은 오랜 傳承에 속한다. 檀君神話에서 벌써 百日忌, 三七日忌가 記錄된 것으로 미루어 神앞에서 慎重하고 不淨을 피하고 정성을 다하여 祭祀하는 것은 文化傳承이었다. 이러한 傳承에 의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는 神앞에 自重하고 慎重하고 經學妄動하는 일이 없이 崇拜하고 信仰하였다.

韓國人은 名節이 되면 故郷에 돌아간다. 故郷에 가서 父母에게 歲拜하고 祖上의 祠堂에 祭祀를 지내며 山所에서 省墓를 하기 위해서 간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故郷에 돌아가게 되니 交通機關은 큰 混亂을 이루어 旅行하는 사람들의 苦痛이甚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故郷에 가는 것은 孝와 祭를 實踐하기 위해서이다.

分散된 家族들이 名節에 모이면 團欒한 분위기에서 祖上の 恩惠에 報恩하여 茶禮를 지내고 父母를 비롯하여 어른께 歲拜를 드려 敬意를 나타냈고 山所를 찾아가서 省墓하는 일이 不平없이 忠實하게 歲時風俗으로 지켜왔다. 故郷으로 가는 目的은 바로 이 孝와 祭를 하기 위해서이며 孝와 祭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 사람으로서의 道理를 다하지 못하는 結果가 된다. 茶禮, 歲拜, 省墓를 하지 않으면 不孝子임은 물론, 기초教養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

우리는 다행히 孝와 祭의 傳統을 준수하고 자랑으로 삼고 있다. 主義가 孝를 抑壓하거나 父母를 主義앞에 파는 일도 없다. 또 神의 存在를 否定하고 祭祀의 無意味를 主張하는 일도 없다. 그보다는 傳統的으로 繼承되는 孝道를 人倫의 基本으로 삼고 祖上의 恩功에 報答하고 老人을 존경하는 것을 人道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文化傳統은 過去에 祖上들에 의하여 共鳴되어 知慧로서 採択되었으며 現代에 이르러서도 존중되고 있다.

孝와 祭祀가 存統하는 限은 韓國의 家庭과 家族의 傳統은 持統될 것이며, 祖上들이 이룩한 知慧는 後孫들에게 따뜻한 情을 가지게 될 것이다.

#### IV. 農耕生活과 歲時風俗

韓國民族은 農을 天下의 大本으로 삼은 農耕民族임을 自稱하고 있다. 山에서 狩獵生活을 하다가 平野로 내려와서 農耕을 시작한 것은 오래이다. 檀君神話에서 熊이 人間으로 變하는 과정에서 呪術植物로 마늘과 쑥을 먹은 이야기가 있고 祭天儀式은 5月の 播種과 10月の 農功畢後에 舉行하였으니 豊年을 祈願하는 우리 祖上들의 生活 모습이다.

生存을 위해서는 食糧이 있어야 했고 食糧을 얻기 위해서는 農耕을 해야만 했다. 雨順風調해서 豊年이 들면 農事것기에 보람을 느끼고 家率을 거느리고 安定된 生活을 누릴 수가 있으나 如意치 못하여 凶作을 맞이하는 날이면 饑饉을 免할 수가 없다. 그래서 農耕生活에서는 늘 雨順風調해서 豊作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다.

農村에서는 마을을 象徵하는 旗가 있는데 農旗라고 부르고 農旗에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써 있다. 農旗가 바로 洞旗이니 農事일을 얼마나 重要視했는가 알 수가 있다.

農耕은 生活을 規制하고 文化를 낳았다. 처음에는 田作으로 보리, 콩, 조가 爲主이었으나 畚作을 하게 되면서 쌀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穀食에 따라 搗精하는 方法도 달라지고 器具에도 變化가 생겼고 饌에도 變化가 있었을 것이다. 水稻를 짓게 됨에 따라 鋤으로 만든 器具들이 생겨 새끼를 꼬고 명

석, 가마니, 구력, 짚신등의 雜製品이 등장했으며 지붕도 짚으로 하게 되었다. 出産에 있어서도 벼짚을 깔고 아이를 낳았으며 짚은 同時의 産神의 象徴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農耕의 進展에 따라 食卓은 潤沢해졌고 營養攝取는 늘어나서 사람들의 活動力도 增大되었다. 사람들이 高級한 文化生活을 하기 위해서는 生存의 根本的條件인 食生活의 充實이 크게 貢獻하였을 것은 물론이다. 또 우리의 聚落들이 平野의 기슭에 位置한 것도 農耕의 便宜를 위해서였으며 建築도 移動할 수 없게 마련된 것도 農耕을 위해서 한 곳에 定着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陰3월에 들면서 부터 農夫들은 農耕으로 바쁘게 시작하여 5월에 썩된 일을 하고 8월이면 神山이 된다. 秋收란 끝나면 新稻酒를 빚고 新稻로 울버 송편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으니 厚한 人心을 보여준다. 겨울 동안은 溫突房에서 옛날 이야기책이나 읽으면서 便宜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農耕民으로서의 特徵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價値의 規準을 쌀로 삼아 왔다. 土地를 売買할 때나 머슴의 一年賃金을 定할 때에도 쌀로서 定하고 書堂에서 訓長에 대한 報酬와 나루터에서의 一年分 船價도 穀食으로 했고, 단골 巫堂에게도 一年分을 穀食으로 주었으며, 부처님에게의 施主, 사람들의 賃金이나 報酬를 穀食으로 支払한 것은 農耕民인 까닭이었다.

歲時風俗은 季節에 따라 慣習적으로 反復되는 民俗을 말한다. 어느 民族이건 民族의 生活樣式이나 思考方法의 特徵은 歲時風俗에 反映되기 마련인데 우리의 歲時風俗은 農耕民族으로서의 特徵을 지니고 있다.

歲時風俗은 太陰曆을 爲主로 하였다. 夏의 曆法에 따라 寅月인 正月을 歲首로 삼고 農耕에 알맞게 行事를 엮어 나아갔다.

설날 福조리를 사놓고 三災를 쫓고 歲面를 그려서 부치는 것은 除禍招福의 呪術性을 內包하면서 豊年을 祈願하였다. 上子日에 쥐를 쫓는 것도 農作物이나 食穀에 鼠害를 막자는 것이며, 上丑日에 牛馬를 놀려두고 乾菜와 콩을 삶아서 주는 것은 農耕時에 일을 잘하라는 뜻이고, 上辰日에 우물에 가서 龜卵을 뜨는 것도 豊作을 바라는 마음에서 엮고 穀日에는 穀食 심을 준비를 하는 것은 豊년이 든다는 데서이니 모두 豊作을 바라는 나머지 알맞은 行事를 하기

에 이르는 것이다.

立春일에 보리뿌리를 보아 麥作의 豊凶을 미리 占쳤고, 上元무렵에 소 나무를 베어다 마당 북편에 세우고 그 위에 짚을 묶어서 쌓고 벼, 粟, 콩, 팥 등의 이삭을 꽂아 두고 長竿에 늘어 놓는데 날카 구대(禾竿)라고 부른다. 약 보름 동안 세워 두었다가 2月1日 아침에 헐면서 이때에 「벼가 몇千石이요」 「조가 몇百石이요」 「콩이 몇百石이요」 등의 소구를 외치면서 말을 되는 시늉을 한다. 이렇게 하면 豊작이 되어 富者가 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正月14일에 맛있는 飲食을 만들어 客을 請하여 먹으나 食水만은 주지 않는다. 이 날에 食水를 남에게 주면 夏節에 논두렁이 터져서 農事를 실패한다는 것이며, 설날에서 上元날까지 사이에는 食糧을 大門밖으로 내지 않는다. 穀食을 내면 山짐승에 의해서 農作物에 害를 입는다고 伝한다.

上元날 밤에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두렁 밭두렁의 잔디를 태우는 것은 害虫을 죽이고 豊작을 맞이하는 뜻이고 山神祭 洞神祭를 지내는 것도 守護神의 加護로 豊年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밤에 접시 12개에 물을 넣고 콩을 담그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느 것이 불었나를 보아 그 달의 農事일을 占친다. 궁금해서 미리 알고자하는 努力이다.

2月1일을 머슴날로 定하여 奴婢를 休暇주어 慰勞했고 風神을 제사하고 연 등제를 지내는 것도 豊作豊漁를 祈願하는 方法이었다. 이처럼 春季에는 주로 豊작을 祈願하고 豫知하려는 行事로 一貫되었다.

百種일에 新果로 茶禮지내는 것은 祖上에게 薦新하는 것이며 秋夕에 소놀이 거북놀이는 여름동안 苦生이 많았던 農夫를 慰勞하는 興겨운 놀이 들이다.

10月인 上달(上月)에 各家庭에서 떡을 만들어 高사를 지내는 것은 豊작을 이루어 感謝의 뜻을 神에게 伝達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明年에도 豊년이 들게 해 달라는 所願을 비는 儀式이었다.

이 밖에도 正初에는 謹慎하여 惡神을 쫓고 善神을 맞이하여 섬겼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齋날리기 옷놀이, 農樂으로 興겨움게 보였고 즐다리기, 石戰, 火戰, 踏橋, 고싸움, 車戰, 숫다리, 地神밟기 등을 하면서 除禍招福을 빌고 즐겁게 民俗놀이로 正月을 보냈다.

2月寒食날에는 改沙草를 했고 3월에는 春興을 즐겨 花柳놀이로 風流했으며

4月에는 仏誕日인 初八日에 燃燈을 했으며 5月 端午日에는 菖蒲湯으로 머리를 감고 天中符를 붙이고 더위를 豫防했고 6月에 三伏더위와 싸우면서 補身湯을 즐기고 藥水를 찾아 다녔고 7月에는 百種日에 薦新하여 追遠報本하고 8月에는 秋夕을 맞이하여 茶禮지내고 省墓를 하고 滿月아래 강강술래와 씨름을 했다.

9月에는 丹楓을 즐겨 山을 찾아 소풍을 했고 10月 馬日에는 고사를 지냈고 성주를 祭祀했고 時祭도 지냈다. 冬至달에는 팔죽을 주어 逐鬼했고 12月에는 북은 해를 보내고 新年맞이할 準備를 하고 守歲하여 새해를 맞이했다. 1월에는 손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해도 달이 없기 때문에 平常時에 하지 못하는 궂은 일을 윤달에 한다. 老父母를 모신 사람은 壽衣를 만들고 집수리와 土石을 움직이기도 한다.

歲時風俗은 每年 反復되며 그러는 동안 익숙해지고 더욱 確固한 文化傳統的 뿌리를 박게 된다. 그 民族生活를 알려면 歲時風俗을 살피는 것이 捷徑인데 民族生活의 特徵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文化의 純粹性은 外來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은 支配層이나 知識人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傳承된 民俗속에서 生活하는 庶民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은 外來文化와 文滲이 없을 뿐 아니라 代代로 물려받은 傳統文化 속에서 태어났고 成長했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歲時風俗은 바로 그들의 生活속에서 形成되었으며 그들의 生活로 反復되고 있어서 典型的인 民族文化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英雄들의 意志에 의해서 歪曲되지 않는 歲時風俗은 國民의 共感에 의한 것이며 그들이 스스로 選擇해서 지켜지고 傳承되었다는데 더욱 意義가 있다.

## V. 芸 術

「놀이」나 「노래」란 말은 「놀」에서 分化하였다. 즉 「놀」의 動作的인 것은 「놀이」가 되었고 音樂的인 것은 「노래」가 되었다.

놀의 原義는 마음의 뜻과 슬픔을 담은 것이지만 슬픔보다는 즐거움이 더

重要視되었다. 民俗이 欽康해서 兜率歌를 지었다는 新羅의 記錄은 즐겁고 平安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었다는 것을 뜻한다. 「놀」도 元來에는 平安하고 즐겁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이렇게 보면 藝術은 目的意識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興에서 即興으로 우러나왔던 것으로 믿어진다. 階級을 意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한 英雄을 讚揚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純粹하게 情緒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祖上들의 知慧를 엿볼 수가 있다.

민謡에 의하면 太初에 仙女가 하늘에서 내려와 山中池에서 沐浴을 하다가 나무꾼과 인연을 맺는 이야기가 있다. 이때에 仙女들은 七色 무지개를 타고 내려 왔다고 傳한다. 仙女가 하늘에서 地上으로 내려오는 民謡은 여러 民族 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나 대개 白色하나만 나타내는데 대해서 韓民族은 七色の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다고 이야기 되는 것은 일찌기 色彩에 대한 感覺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무지개는 우리의 衣裳과 美術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韓國語는 色彩에 関한 말이 分化해서 매우 多様하다. 視覺이 날카로웠고 繪画的인 民族性에서 由來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祭天儀式의 記錄에 「通日声不絶」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토록 노래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고 하였으니 노래를 잘부르는 民族性의 一端을 보여주고 있다. 韓國人이 音聲에 素質이 있다는 것은 定評으로되어 있거니와 原始時代로부터 男女가 모여 노래부르고 춤추고 즐기는 風俗이 있었다. 初期에는 打樂器가 爲主이었을 것이나 新羅時代에 벌써 絃樂器인 伽耶琴이 있었다. 傳來의 民族音樂은 農樂, 巫樂으로 傳承되고 唐樂이 들어오면서 宮中에서 그 영향을 받은 雅樂이 생기게 되었다. 農樂이나 巫樂이 郷土音樂이며 國民音樂으로서 庶民속에서 成長하고 傳授되어 그들의 生活感情을 内包시키며 對하여 雅樂은 國家儀式에서 主로 演奏되어 왔다. 따라서 韓國音樂의 傳統性은 農樂과 巫樂, 民謡에서 찾아야 한다. 豊富한 民謡는 歌詞와 가락이 多様하고 郷土性을 지니고 있다. 國民거의가 民謡를 부르며 살아 왔고 마음을 呼訴했고 生活를 노래하였다. 따라서 民族의 情緒를 理解하려면 民謡를 들으면 알게 된다.

農樂은 사람들의 마음을 興겹게 만들기에 充分하다. 면에서 農樂소리만 들려오면 사람들의 어깨는 으쓱 해지고 아이들도 물러든다. 集團音樂으로서

가장 알맞게 構成되어 있다.

元來에 韓民族은 무용을 즐겨했다. 「俗喜歌舞」라는 記錄이 여러 東夷傳에 보인다.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기를 즐겨했다. 男女老少가 함께 춤추었다는데서 古代의 祖上들의 生活이 매우 樂天的이고 藝術性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 우리는 춤을 많이 喪失하고 말았다. 그 責任은 佛敎와 儒敎에 있었다. 佛敎는 修道하는 過程에서 行動을 中止하고 面壁해서 對座해야 했고 嚴하게 座定한 상태를 理想으로 삼았다. 그래서 춤추고 심한 動作을 否定하고 去勢하였다. 그러나 佛敎에서도 音樂은 불러져서 梵唄를 비롯하여 悔心歌 會弘歌등이 있고 說經하는 것은 半은 音樂過程이어서 音樂性은 유지하였으나 舞蹈은 去勢되어 오직 僧舞가 전할 뿐이다. 그러나 農樂과 함께 農舞가 남아있고 巫樂과 더불어 巫舞가 있어 多幸한 일이다.

佛敎에 있어서도 輕快한 動作은 否定되고 靜止되고 高요한 姿勢가 要求되어 왔다. 儒生으로 嚴한 風度를 지키려면 拳動이 慎重해야 했다. 舞蹈은 男性을 接待하는 妓生에게서나 必要的 것이지 生活化는 排斥되었기 때문에 傳統藝術중에서 唯獨 傳承된 것이 적은 편이다.

演劇은 假面劇과 人形劇으로 大別한다.

假面劇은 楊州의 別山台놀이를 비롯해서 松坡別山놀이, 鳳山탈춤 北靑獅子놀음 東萊와 水營의 野遊, 統營 固城의 五度大놀음이 있고 江陵의 官奴놀이가 있다 兩班과 僧侶를 諷刺한다든가 勸善 懲惡을 試圖하는등 主題性이 類似하다. 다만 江陵의 官奴놀이는 無言劇으로 特色을 보이고 있다.

人形劇은 꼭두각시놀음 하나가 傳承되어 있다. 萬碩중놀이가 있었으나 斷切되어 傳하지 않는다. 才談과 諧謔이 豊富해서 庶民들 사이에 많은 共感을 일으켰다.

假面劇이나 人形劇은 銳利하게 諷刺하고 諧謔하는 內容으로 民間에 流浪하면서 놀이되어 겨우 傳承되었으나 近來에 와서는 文化財로 指定되어 演劇者도 育成되고 保護를 받고 있으며 젊은層에 의하여 歡迎을 받고 傳授事業이 行政的으로 進行되고 있다.

假面劇은 集團藝術이요 綜合藝術이기 때문에 音樂의 伴奏가 있고 노래가 있

고 춤이 있어서 幅넓은 藝術로 成長하여 왔다.

傳統을 지닌 傳承藝術들이 現代에 와서 더욱 關心을 모으고 脚光을 받게 된 것은 自文化에 대한 關心과 育成保存에 뜻을 두고 傳統의 繼承이라는 意味가 있다. 오래 繼承된 民族藝術을 物質文明에 의해서 시들게 放置하는 일은 文化喪失의 過誤를 犯하게 되기 때문에 保存 育成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文化傳播가 加速해서 外來文化가 쏟아져 밀려오는 이마당에 傳統있는 自己 文化를 지키는 것은 壯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文化傳統은 確立되고 正統性이 유지 되는 것이다.

## VI. 結 言

機械文明의 餘波와 時代感覺에 따라 새로운 流行의 물결에 本來의 傳統文化가 多少 褪色한다든가 進展의 걸음을 멈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人類의 歷史는 늘 그러한 繼承과 變化의 過程에서 자라왔다.

우리 民族이 지녔던 本來의 生活文化는 北韓이 아닌 大韓民國에서 現在에 있어서도 그 純粹性이 지켜지고 있다. 하느님思想이나 仏敎와 基督敎도 아무런 障礙없이 自由롭게 信仰되고 있으며 儒敎의 孝와 祭祀의 生活哲學은 여전히 우리들의 倫理로 存統하고 있으며, 農耕文化와 歲時風俗은 協同과 團結과 友愛를 維持하면서 生活底邊에 殘存하고 있다. 民族情緒와 生活感情의 表現으로 나타난 藝術은 音樂, 美術, 舞踊, 演劇分野에서 구김새없이 繼承되어 傳統을 유지하고 있다.

近來에 全體主義體制에서는 生活文化에 思想性을 強調하고 目的意識을 내세워 制度로 規制하여 文化傳承을 英雄들의 意志에 의하여 歪曲하여 傳統의 繼絶을 초래하는 現象을 흔히 본다. 이와같은 일은 오랫동안 人類가 經驗과 知慧로서 이룩한 文化傳統을 否定하는 것으로 決코 賢明한 処事가 못된다. 또 一部 沒知覺한 사람들에 의해서 傳來의 生活文化를 輕視하는 것도 止揚되어야 한다.

우리 周邊에서는 傳統文化가 純粹하고 自由롭게 保存 育成 되고 있으며 元來의 모습을 再現하려는 努力마저 傾注되고 있다. 行政의 保存과 傳授의 對策이 講究되고 있을 뿐 아니라 國民들의 自覺에 의하여 保存 育성이 協調되고



있어서 다행한 일이다.

스스로 選擇해서 스스로의 共感에 의해서 이룩한 生活文化는 民族의 知慧로 評價되어 純粹하게 傳承시켜 傳統을 유지 繼承하여야 한다. 이 能力이 대한 민국에 있느냐 아니면 북한에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문화사적 正統성이 남북의 어느 側에 귀속되는가가 결정되는데 現時點의 韓半島에서는 大韓民國만이 生活文化의 傳統을 그대로 유지, 발전, 보존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正統은 북한 지역에서 문화사의 正統이 正 위치를 찾을 때 부터 그 成就의 過程에 들어갈 것이다.



# 民族主義 政治와 正統性

—(3.1運動과 臨時政府를 中心으로)—

洪 淳 鉉  
東國大學校 教授

## I. 序 論

大韓帝國은 乙巳(1905)保護勅約으로 獨立國家로서의 外交權을 喪失하고 庚戌(1910)년에는 日帝에 併呑당하고 말았다. 이로서 李氏王朝는 壬申(1892)革命以來 27代 518年으로 그幕을 捲았는데 이것은 自國內에 있어서의 禪讓이나 易姓革命이 아니고 有史以來의 他民族에 依한 被征服을 맞은 民族的 恥辱의 事件이었다.

그리하여 無國家時代 8年 8個月을 겪고 己未(1919) 3.1獨立建國運動을 契機로 領土는 恢復치 못하였지만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세워 國脈을 維持하였으며 乙酉(1945)解放後 中國으로 부터 歸國하였으나 解放外軍의 軍政으로 統治權을 얻지 못하고 反托運動 反共鬭爭 自律政府樹立運動(=總選舉運動)으로 外國軍政과 맞섰다.

그리하여 이것이 美國政府에 받아들여지는바 되어 美國은 이를 UN에 提案하여 UN決議로 通過總選舉(1948.5.10)를 치른뒤 憲法을 制定하고 그에 의한 正式政府를 構成하여 大韓民國政府樹立을 正式으로 國內外에 宣布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뜻하지않은 不祥事가 생겼으니 그것은 蘇聯軍占領下의 北半部에서 總選舉를 拒否하고 蘇聯式共產政權을 세워 韓民族의 悠久한 歷史正統에 叛旗를 들고 나서 「自由獨立」을 외치는 民族的 悲願이 이제는 「南北統一」이라는 口號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統一完成을 可能케하는 原動力은 무엇인가 그要素는 一次的으로 그것이 어떠한 形態이든 實力이고 二次的으로는 實力の 運營 即 政策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實力이 크고 政策이 優秀해 보여도 거기에 必須不可欠한 前提條

件은 優秀한 國民의 支持이고 그支持는 被動的인것 보다는 自發的인 것이어야 할것이다. 自發的인것은 消極的인 支持가 아니고 차라리 矜持(프라이드)에 屬하며 政府를 忠告하며 激勵하고 協助하는 것이다.

오늘날 統一을 目標로 國民을 이러한 狀態로 끌어올리기 爲하여는 “大韓民國이 正統性을 承繼·保有하고 있다”는것을 널리 認識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名分論인데 次序로 말하자면 오히려 零次에 屬한다 할것이다.

一般的으로 名分과 實力은 수레(車)의 양바퀴(車輪)이다 “名分있는 實力”과 “名分없는 實力”과는 價值的으로 天國과 地獄의 明暗이고 6·25南侵은 北傀의 “名分없는 實力”行使의 커다란 例이다.

다음에 말하는 大韓民國臨時政府에 關한것은 歷史的으로 精神的(國民의 發議)으로 오늘날의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밝히는 名分論에 該當하는 것이다.

### 3·1 建 國 運 動

乙巳保護勸約에 對한 反對鬪爭과 그後의 反日鬪爭은 露西軍隊와 싸워 이긴新銳日軍앞에서 有効할수가 없어 解散된 舊軍인이 섞인 義兵들도 끝내는 숨쉬고 말았으며 나머지 民族志士들도 105人事件으로 疑獄을 일으켜 先制攻擊으로 6~700名을 檢挙하여 그銳峯을 꺾고말았다. 그러하여 獨立志士들은 間島와 沿海州를 中心으로 中國과 美洲等에 亡命하였으며 國內에는 光復會事件等外는 己未年까지 別로 事件다운 事件도 못벌어지게 一網打尽되었다.

그러나 海外에서는 國內보다는 좀 낡게 運動이 展開되었으니 義軍들의 國境侵攻들이 있었고 政治運動으로서는 高宗密使로 헤-그의 萬國平和會議에 갔던 李相高이 高宗을 露領으로 亡命시키려는 運動(1910.7)이 있었고 또한 露領에서 大韓軍政府를 만들어 李相高이 正統領에 推戴되었으나 (1914)一次世界大戰이 나서 露日이 다같이 獨逸을 相對로 싸우게 되어 解体되었는데 李相高은 다시 中國上海에 가서 志士들과 新韓革命黨을 만들어 (本部長-李相高) 高宗을 黨首로 모시려고 秘密連絡이 됐는데 關聯者들이 日帝에 被逮되어 虛事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1915)

李相高의 이와같은 一連의 運動은 義兵將으로 露領이 亡命한 柳麟錫과 13道義軍을 組織하고 高宗을 거기로 오도록 前郡守 徐相律을 보내어 上疎한 것이며

大韓軍政府組織은 當時 露日戰爭 10周年을 맞아 対日복수戰의 氣運이 当地에 있던것을 利用하였던 것인데 當時 李相高은 密使로 헤-그로 갈때 露西匪皇帝를 만나 知遇가 있는것으로 極東總督이 그를 待接하는 有利한 如地에도 있었던 背景이 있었던 것이다. 新韓革命黨은 露西匪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되자 中国上海로 申圭植 朴竜植 李東輝等 各地志士들과 會合하여 組織한 것으로 中国과 南滿 서울以北 各地에 支部를 두고 中央部署도 갖인것으로 高宗에게는 外交部長 成樂露을 보내 内官을 通하여 高宗에게 党首가 되어주고 또한 中韓誼邦條約案을 承認하여 달라는 内容이었다. 이것은 日帝에게 覺되어 關聯者가 모두 잡혀 失敗로 돌아갔는데 그條約은 一次戰에 參戰치 않은 中国政府和 韓國皇帝가 独逸皇帝의 保障으로 攻守同盟을 맺고 獨立軍에 所要되는 武器와 資金을 中国政府로부터 借款하자는 것이었다. 當時 袁世凱는 帝制運動으로 皇帝가 되려고 하고 있었을때였으며 現地 北京에서는 그交涉이 進行되고 있었다 한다.

이와같은 皇帝를 推戴하려는 亡命政府樹立運動은 大韓帝國의 前高官(議政府參贊=正二品)이고 헤-그萬國平和會議에 密使로 派遣될程度로 皇帝에 가깝고 또한 乙巳勒約때는 鍾路에서 救國演說을 하며 自殺을 企圖했던 李相高쯤되니 그名望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것도 失敗로 돌아가고 그도 또한 곳 異國땅에서 죽게 되어(1917)그後 그런 두두러진 運動은 끊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고 2年만에 己未年 獨立萬歲運動이 国内房房谷谷에서 일어나 그뜻을 받들어 亡命政府아닌 臨時政府가 서게되는 것이다.

3·1大運動의 起爆劑는 1918年의 윌슨美大統領의 年頭敎書로 發表 1次世界大戰의 戰後處理方針인 平和14個條項이다. 그속의 弱少民族의 民族自決原則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勿論 敗戰國의 植民地에 該當하는 것이라 中国山東半島의 独逸軍을 攻略하고 別로 큰 貢故도 없는 日帝가 戰勝國隊列에 끼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該當이 되지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때를 놓치고는 韓民族의 自由獨立을 表示할 機會가 그리 없다고 認識하여 国内外 各地에서 버리게 된것이다.

立地條件으로 美國의 大韓人國民會와 中國의 同濟會系가 움직여 美國에서는 李承晚等 3人을 巴里平和會議代表로 派遣하기로 하였고 上海의 申圭植은 吉林과 日本에 連絡하고 新韓青年團系는 国内에 連絡하였으며 日本留學生은 国内에 連絡하였다. 国内에서는 天道敎界에서 年末부터 움직여 基督敎界와 仏敎·儒敎界에 作

用하였다. 學生은 學生대로 움직이다가 合同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은 누가先이고後를 가릴 수 없을만치 움직였다는것이 올바른 表現일 것이다. 「獨立宣言書」가 準備되고 平和會議과 美大統領 日本政府 및 倭總督에 보내는 렛세지가 準備되고 代表者 33人을 얻어 매마침 日인에 依한 毒殺說이 있는 高宗의 因山 2日前인 3月1日로 날을 잡아 天幸으로 秘密이 維持되어 泰和館에서 民族代表들의 獨立宣言式이 舉行되고 塔洞公園에서는 學生을 主로 한 大衆集會가 獨立宣言書朗誦後 街頭示威에 나서 獨立萬歲를 부르며 市内를 휩쓸었다. 매마침 因山에 参与하려는 全国各地의 白衣의 群衆이 서울의 家家戶戶와 街頭에 露宿할만큼 많이 모였는데라고 示威는 大端했고 同日 平壤等各地方都市에서도 示威가 벌어져 全國의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이運動은 大衆化 一元化 非暴力의 三大原則으로 太極旗로 獨立萬歲를 외치며 示威를 벌였으며 大·中都市는 그렇지도 않지만 邑·面單位에서는 大概 장날(市日)이 利用되었고 場어구에서 主動者가 油印된 宣言書와 太極旗를 장꾼에게 물래 나누어 주고 正午를 지나 장이 커지면 主動者가 大型旗나 프라카-드를 높이 들고 宣言文을 읽거나 演說을 하고 獨立萬歲를 부르며 大衆示威에 들어갔다. 大略 이것이 二代表의인 페턴인데 그것이 暴動化되기는 警察이 主動者를 잡아가면 派出所에 大衆이 모여 釋放을 要求하고 거기서 投石 發砲가 交換되어 에스카레이트되는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山에 올라 蠟燭을 드는데 이것은 서로 呼應되어 곳곳으로 퍼져나가 불바다를 이루었다.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依하면 五月末現在로 參加者 200餘萬에 死亡 7.5千 負傷 15千 被囚 47千으로 統計를 내고 있다.

이運動은 例事로운 運動이 아니고 民族獨立을 외치는 民族固有의 生存權을 宣言하는 聖스러운 拳事라 그表現을 무엇으로 表現해도 그高貴함을 나타낼수가 없다.

當時 韓國에 滯在하던 美國 셔크라멘트의 “비”紙發行人 랫취는

「어떤 理想的의目標을 爲하여 組織的으로 이루어진 平和의抗爭으로서 世界歷史上에서 보는 最大의 实例」

라고 했으며 로스안젤스·타임스 4월 6일자는 「生命의 尊嚴性」이라는 題目으로

「이宣言은 美國의 獨立宣言과 더불어 人類의 金字塔으로 永遠不滅의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은 曠野에서 부르짖는 先知者의 소리다 ……」

라고 했으며 또한 시드니·그린비는 “아시아” 9월호에 「한국의 主張」이라는 글로서 이렇게 讚揚했다.

「이야말로 歷史上에서 가장 뛰어난 革命的 하나이며 모든 基督教國家를 無色케하는 一大學事이다. 이 萬歲運動이 주는 教訓은 人類의 抗争史에 있어 不滅의 빛을 쬐울것이다」

그러나 이런 높은 評들을 具體的인 性格을 나타내는것은 아니다.

民族指導者들이 이 精神을 받들어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樹立했음으로 이 運動을 우리는 「國家를 세우자」라는 議案의 人民提案(refrendum)으로 볼 수 있고 投票用紙에 記票하는 대신 雙手로 萬歲를 渾身の 힘으로 외침으로 贊成投票한 것이라. 看做할 수 있는것이다.

韓末에 日帝侵略을 받음에 反日運動을 한 이들은 一部の 知識人과 旧軍人 또는 意識分子에 不過하고 一般百姓들은 事實上 無識하여 國家가 무엇인지의 意識조차 없었기에 大衆動員이 되지못하여 그有効性を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先覺者들은 곳곳에 學校를 세워 文盲을 깨치고 民度를 올리는 敎國教育運動에 나서지 않았던가 新教育運動에는 基督教이 미친 影響이 莫大하였다. 그結果가 日帝의 憲兵警察制 武斷統治아래서 呻吟하면서도 民族意識이 徐徐히 普及되어 이제는 植民統治에 成功했다고 豪言하는 日帝의 籠방망이에 鐵鏈를 加한 것이다.

萬歲運動의 動員數는 義兵과는 次元이 다르다 맨주먹의 萬歲運動은 드디어 그들의 武斷政策을 所謂文化政策으로 바꾸게 하고말았다.

####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樹立과 그民主革命의 性格

民族代表團에서는 玄楯을 事전에 上海로 보내고(2月23日) 3月1日아침에 美大統領과 講和會議에 보내는 陳情書를 金智煥을 시켜 安東에 보내 거기서 上海玄楯에게 郵送하였다.

玄楯은 上海에 獨立事務所를 設置하고 使命을 遂行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上海에는 各處에서 志士들이 모이기 始作하여 會晤를 거듭하다가 4月10~11日에는 地方代表會議을 열고 이것을 臨時議政院으로 改稱하면서 民主共和制를 骨子로하는 臨時憲章10條를 採択하고 口號를 大韓民國 年号도 大韓民國이라 하며 李承晚을 首班으로하는 行政府를 構成하였다. 이行政府는 閣

僚就任이 늦어져 次長代理制로 하다가 各部委員制로 運營하였는데 6月 內務總長 安昌浩가 就任하고서부터 面貌를 갖추어 議會에 나가 施政演說도 하고 庁舎도 마련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한글看板도 달고 太極旗를 揭揚하며 아침마다 朝會를 하며 愛国歌도 불렀다. 新韓青年團이름으로 巴里講和會議에 먼저가 있는 金奎植(外務總長으로 선임되었음)을 國際聯盟代表로 任命하고 國民人頭稅徵收, 國史編纂 聯通制(國內地方組織)도 推進하며 一方 閣僚誘致에 힘을 썼다.

当初에 上海가 政府所在地로 定해진것은 露領은 革命과 日軍出兵의 渦中에 있고 美洲는 너무멀고하여 不適하며 上海는 國際都市에 自由主義의 僑租界가 있어 그곳에는 日帝의 힘이 미치지못하고 또한 僑租界當局도 우리를 同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하나이어야 할 政府가 이에 앞서 3月 21日에 부라지보스투에 大韓國民議會가 成立되고 그後 4月 28日에는 서울에서 13道國民代表名義로 政府가 發表되어(世稱漢城政府) 政府가 3個가 되었다. 그러나 그閣僚名單을 보면 거의 重複되어 이것은 相互連絡不足에서 나온 現象으로 보이는데 이統合作業은 于先 行政府를 充足시키지 못한 大韓國民議會가 上海議政院에 吸收되고 漢城政府는 上海議政院에서 憲法을 改定하여 行政府形態를 漢城式으로 고치고 漢城政府 閣僚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形式을 取하여 이統合作業을 完成하였다(9月 11日) 마치 漢城政府는 議會가 없어서 上海政府가 이런 融通性을 發揮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大韓民國의 統合한 臨時政府는 58條의 憲法에 議政院과 行政府 및 司法部를 두는 三權分立政府形態를 取하고 大統領에 워싱턴에서 漢城政府首班(正式名稱 執政官總裁)으로 事務所를 차리고있는 李承晚을 大統領으로 모시게됐다.

이臨時政府는 1945년까지 27年을 中國 땅에 있었는데 그間 中日戰爭이 벌어져 곳곳에 避難살이를 하다가 1940년부터는 重慶에서 中國政府와 같이 있게되었다가 歸國하였다. 그리고 反托運動으로 國際信託管理를 물리치고 自律政府樹立運動(=總選舉運動)을 벌이면서 美軍政과 對立하다가 美政府의 비슷한 政策으로 UN에 提案되어 總選舉를 통하여 오늘날의 大韓民國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면 臨時政府의 性格을 檢討해보면 于先 그存在는 3.1大運動에 淵源하고 民主共和制를 採択한것이 큰特徵이라 하겠다. 그것은 3.1建國運動이 過去の 王朝처럼 어느英雄과 그追從者들에 依해서 展開된것이 아니고 民衆에 依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民衆을 尊重하려면 主權在民의 民主共和制를 採択한것은 너무도



当然하고 賢明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王朝復活이 아닌點으로는 革命的事實이다. 이런 면에서는 革命的獨立이었고 이것은 美國獨立을 獨立革命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現象이다.

그러나 이것은 旧大韓帝國과의 無慈悲한 斷絶과는 다르다는 것은 留意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上海政府의 第1次憲章의 第8條와 統合憲法(1919-25)의 第7條는 똑같이 「大韓民國은 旧皇室을 優待함」이라는 規定을 하여 亡國皇帝에 처한 恻愍한 情을 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大韓民國臨時政府는 大韓帝國에 叛亂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大韓帝國이 亡하기 前後에 그것을 救하려고 하는 人士들이 3.1 建國大運動이라는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을 覺醒하게 된 高貴한 韓民族大衆의 呼聲을 물들인 獨立意思表示를 總和的으로 反映集約하여 世界政治史 朝上 가장 理想的인 自由民主的 近代國家形態로 復國 것이기 때문이다.

國家·民族의 心符인 太極旗만 하더라도 壬午軍亂(1882)後 修信使로 日本에 朴泳孝로부터 使用하기 始作하여 우리나라 最初의 國旗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異議없이 使用하였던 것이다.

#### 現大韓民國의 正統性

1948年 韓民族의 史上最初의 普通·秘密總選舉로 成立된 制憲議會는 建國憲法을 制定하였는데 그憲法은 前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3.1 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中略)……우리들의 正當한 또 自由로써 選舉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憲法을 制定한다.

即 現大韓民國은 “3.1 運動으로 樹立된 旧大韓民國(臨時政府時節-1919-48)의 獨立精神을 繼承한다”고 하여 己未建國으로 부터의 連綿性을 明示하였다.

언뜻보기에는 文脈上 精神의 承繼이지 旧大韓民國의 承繼라고는 說되어 있다 할지 모르나 그와같은 論法은 現大韓民國의 正統性에는 아무런 하자도 가져오지 않는다. 仔細히 살펴보면 前文은 ① “3.1 運動으로 (旧)大韓民國을 建立하고 그다음에” ② “그大韓民國이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現大韓民國

國을 “再建”하는 것으로 3·1大運動으로부터 旧大韓民國을 거쳐 現大韓民國을 再建하는 것으로 分明히 二段階로 되어 있다 (이러한 檢討는 文中의 “大韓民國”을 臨時政府時節로 보지않고 現大韓民國으로 誤認해서 新旧大韓民國間에 繼承性이 없는 것으로 잘못解釈한 어떤學者의 論文을 보았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여기에 言及하는 것이다)

5·16革命憲法(1962.12.26)의 前文中에는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繼承하고 4·19義拳와 5·16革命의 理念에 立脚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

이라고 하고 現維新憲法(1972.11.24) 前文中에는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拳 및 5·16革命의 理念을 繼承하고」

라고 하여 4·19와 5·16의 理念이 追加된것이 特徵이지만 3·1建國精神은 亦是 그大宗으로 位置하고있다.

臨時政府時節의 憲法은 形便에 따라 크게말하여 다섯번의 改憲을 하여 여섯段階의 憲法을 가졌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大韓民國 臨時憲章(1919.4.11) = 上海約法(1919.4.23) = 漢城國民大會
2. (統合)大韓民國 臨時憲法(1919.9.11)
3. 大韓民國 臨時憲法(1925.4.7)
4. 大韓民國 臨時約憲(1927.3.5)
5. 大韓民國 臨時約憲(1940.10.9)
6. 大韓民國 臨時憲章(1944.4.22)

이中에서 가장 理想的으로 近代自由 民主主義가 잘表現된 模範의인것은 第2의 統合憲法이다. 이것은 58個條로 構成되어 第1段階의 3個의 政府를 意欲으로 統合하고 將來의 正式獨立을 對備한 理想的인것으로 1948年의 現大韓民國의 建國憲法(103個條)과 가장 芳불하며 바꾸어 말하자면 條文만 約半으로된 縮少版 같아서 새삼 感嘆을 禁할 수 없다. 그것을 目次만 比較해도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 臨時憲法 (1919)

- 前 文
- 第 1 章 綱領 (A.1~7)
- 第 2 章 人民의 權利와 義務  
(A.8~10)
- 第 3 章 臨時大統領 (A.11~17)
- 第 4 章 臨時議政院 (A.18~34)
- 第 5 章 國務院 (A.35~41)
- 第 6 章 法院 (A.42~47)  
(無)
- 第 7 章 財政 (A.48~54)  
(無)
- 第 8 章 補則 (A.55~58)

大韓民國 憲法 (1948)

- 前 文
- 第 1 章 總綱 (A.1~7)
-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A.8~30)
- 第 3 章 國會 (A.31~50)
- 第 4 章 政府 (A.51~75)
  - 第 1 節 大 統 領
  - 第 2 節 國 務 院
  - 第 3 節 行 政 府
- 第 5 章 法院 (A.76~82)
- 第 6 章 經濟 (A.84~89)
- 第 7 章 財政 (A.90~95)
- 第 8 章 地方自治 (A.96~97)
- 第 9 章 憲法改正 (A.98)
- 第 10 章 附則 (A.99~103)

統合憲法後의 改正憲法들은 獨立運動界의 消長에 따라 漸漸 現實의으로 簡略化 되기도 하다가 第 6 憲法에는 前文과 7 章 62 條로 부터 나지만 3.1 淵源과 民主 共和制라는 根本理念과 體制는 變動없이 繼承되고 機構上의 變動만 있을 따름이다.

이로서 觀察할때 1948 年의 制憲議會가 制定한 憲法으로 우리나라에 西洋의 自由民主制가 비로소 導入된것으로 往往 巷間에 일컫어 지는것은 이미 그에 앞서 30 年前에 制定된 臨時政府時節의 憲法을 忘却한 沒認識에서 오는 錯誤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結 語

正統論은 論爭의 争点이다. 卽 말하자면 正統性을 서로 겨르는 複數의 相對가 있어서 서로 自己에게 正統性이 있다고 主張하는 것인데 우리가 只今 北傀를 相對로 그런 主張을 해야할 必要가 있다면 以上의 論法에서는 北傀는 全該當性의 餘地가 없다. 拳族의인 3.1 建國運動의 真相을 隱蔽歪曲하고 애매한

金聖柱(現金日成)一家의 一地方的 3·1運動指導라는것만 내세워 全國民을 모독하고 設令 있었다 할지라고 少數一支隊에 不過한 그의 遊擊活動을 그보다 더 規模가 크고 回數가 엄청나게 많은 先烈들의 鬪爭을 無視하여 거기에 金聖柱政權의 妥當性을 強調하는 論法은 어느 두매구석에서의 一夜活에서나 拳論될것이지 우리 韓民族의 獨立鬪爭史의 正論大道에서는 一顧의 餘地도 없다.

正統性에는 正當한것을 正當하게 承繼하고 또한 그正當한것이 長時日의 오랜 歷史的 傳統을 지닌것이 高貴한 것이다.

3.1獨立大運動은 소비에트制를 指向할 時機도 아니었고 또 그러지도 아니했으며 自由民主主義로 이를 받아들여 臨時政府를 樹立하였으며 그傳統만 하더라도 이미 近60年에 이르고 있으며 그臨時政府가 前의 數千年의 우리民族의 傳統을 正當히 認定하고 繼承하였던 것이다.

自由主義가 이미 當時의 要望이었다는것은 3.1民族代表의 1人인 韓龜雲이 그가 獄中에서 著述한 “朝鮮獨立의 書”에서 獨立의 理由4種을 들면서 (1) 民族自存性 (2) 祖國思想 (3) 自由主義(民族自存과 迥別) (4) 對世界의 義務를 들면서 (3) 自由主義에서

“……人生生活의 目的은 眞自由에 存하니 自由가 無한 生活 何의 趣味가 有하며 何의 快樂이 有하리오 自由를 得하기 爲하여는 何의 代價도 不惜하나니 곧 生命을 躡하여도 辭치아니할지라…….”]

고 喝破하여 民族固有의 獨立과는 別途로 人間生活의 自由를 喝求하고있다. 오늘날의 北傀에 어떤 人間生活의 自由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은 韓民族數千年의 文化를 收容하고 國民生活에 自由를 認定하는 韓民族의 正統·精粹國家이다. 國際間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自主의인 認識과 矜持로서 国力을 기르고 濁駁한 不精粹部分(北傀)를 吸收淨化함으로써 悠久한 韓民族史의 正統을 完遂해야 할것이다.

## 參 考

本人論文

「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過程」

新東亞 68-3.

「大韓民国臨時政府와 憲政(1919~25)」

政經研究 68-12

「統大韓民国臨時政府와 憲政(1925-27)」

政經研究 69-3

「漢城·上海·露領臨時政府의 統合過程」

3.1 運動 50 周年紀念論集 69-3 東亞日報社

「臨時政府 宣傳委員會刊

韓國獨立運動文類 I 沢·注」

新東亞 69-6

「臨時政府第 4 段階憲法の 復元試圖」

東国大学校 論文集 11 輯 73-6

「臨時政府의 第 5 段階憲法文案에 관한 研究

東国大学校 論文集 15 輯 74-12

#### 臨時政府의 承認問題概要

正式政府도 그렇거니와 臨時政府는 特히 그國際的承認如否가 重大한 意義를 갖는다.

大韓民国臨時政府는 金奎植이가 派遣된 巴里講和會議나 國際聯盟(L.O.N)에서 韓國의 獨立을 呼訴해서 그뜻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이루지못하였고 그後 워싱턴會議(軍縮會議)에도 大統領 李承晩이 呼訴하려했으나 이루지못하였다.

그러나 그와는 못하나 趙素昂이 出席한 萬國社會黨大會에서는 韓國獨立案이 通過되었다고 하며(1919.8.9) 또한 리우아니아國會에서도 韓國臨時政府承認案이 通過되었다(1919.9.8)고 하였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韓國獨立案이 提案되었다는 말이있었다.

1920 Lenin 이 臨時政府에서 보낸 韓鑿權에게 200 萬루블을 주기로 하고 60 萬르블을 支給한것은 그돈이 臨時政府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臨時政府에 對한 承認과 비슷한 意義가 있는것일까

이돈으로 左翼에 依해서 열렸던 國民代表大會에서 臨時政府를 否認하고 따로히 政府를 만들어 부라지보스독에 들어갔을때(1923) Lenin 이 이를 黥殺하여 그

政府라는 것이 自然解體된 것도 Lenin 이 已存의 臨時政府를 念頭에 두고 그것을 利用할 것을 劃策했던 것이리라.

中國 땅에서 臨時政府가 처음으로 承認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當時 北京政府가 建國理念을 背反했다고 해서 廣東에 세워진 孫文의 護法政府인데 여기에는 臨時政府의 總理署理 申奎植이 派遣되어 成事시켰지만 (1920.11.28) 그러나 孫文의 護法政府 자체가 臨時政府의 性格을 띠었고 그後 바로 內紛으로 解體되었으므로 臨時政府 常駐代表 派遣도 流產되었다.

그리고 記錄에는 支那政府도 우리를 承認하였다. 하지만 그政府 자체가 곧 解消되었던 것이다.

滿洲事變과 上海事變을 거쳐 尹奉吉義士가 手榴彈으로 日常의 上海派遣軍首領을 屠戮하였을 때 그反應이 좋아 翌年부터 國民政府의 實力者 蔣介石의 援助가 있기 始作하였으니 孫文이 約束한 承認은 이것으로 實効가 나기 始作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當時에 孫文의 約束은 已往之事로 다시 國民政府의 承認을 얻으려는 努力이 始作된 것은 光復軍이 發足된 翌年 美日戰爭이 始作하기 前의 1941年의 일이다.

이때까지 美英等의 國際의 同情을 받지 못했던 것은 日帝가 戰勝國이라던가 蘇聯의 南下防止勢力이라는 그들의 見解에서 오는 것이었고 또 中國의 積極的인 援助를 받지 못했던 것은 國民黨政府가 對日鬭爭보다는 中共討伐이라는 國內問題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日帝와의 軋轢을 避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中日戰이 이어나고 長期抗爭을 覺悟하고서부터는 中國의 態度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光復軍編成을 企圖하여 이를 承認받고 光復軍을 編成(1940.9) 하였는데 이것을 育成發展시키어 中國內에서의 對日戰爭과 나아가 國內侵攻이라는 本來의 目的外에 다른 면에서는 이것으로 國際적으로 交戰團體로서의 承認을 받을 수 있을 것이 目標되었던 것이다.

光復軍이 成立된 후 臨時政府는 나아가 中國政府에 對하여 政府承認問題도 交涉을 展開하였는데 于先 中國政府의 承認을 받으면 美英도 이에 따르리라는 政略이 介在되어 있었다.

政府承認을 얻으려는 國際의 刺戟은 1941年 8月 11日에 美國에서 立法된 武器貸與法(Lend Lease Act)인데 臨時政府는 그惠沢을 입고져 5月과 7月에 루즈벨트大統領에게 政府承認을 包含한 6個條의 要求를 提出하였으며 8月 14日 所

謂 大西洋憲章(Atlantic Charter)이 發表되자 29日 當場 이에 對하여 加盟과 承認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그후 中國은 1942年 蔣介石과 國民黨常務委員會에서 他國에 앞서 韓國臨時政府를 承認한다는 原則을 確定하고 그時機을 고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美英과 步調를 맞추어야 한다는 外交部의 意見으로 늦어졌는데 英國側의 韓國이 소聯에 併呑될 可能性이 있다는 年初의 이-든의 報告나 韓國問題는 國際共同管理로 解決될 것이라는 Happy, Life, Time 誌 같은 論調가 4월에 튀어나오고 12月 루즈벨트大統領의 演說도 있다고 1943년에는 루·이-든 워싱턴會談을 거쳐 11月에는 카이로會談에서 韓國은 獨立시키되 in due course라는 節次가 規定된 宣言書가 나오는 시기에서 承認獲得問題는 事實上 難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綜合은 只今에 와서 概觀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當時는 繼續 承認을 얻으려고 中國에서는 臨時政府外務部가 美國에서는 駐美外交委員長 李承晩에 依해서 안타깝도록 努力이 되풀이 되었다.

承認을 얻지못한데는 두런 두가지의 美國의 主張을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獨立運動界가 民族陣營과 左翼(當時는 本人들의 否認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라고 稱하여졌다)과의 不利이다. 이것이 駐中 美國大使館에서 國務省에 臨時政府가 各党派를 統合하지 못한것으로 報告되고 國務省과 中國外交部와 協議에서 中國側도 그不利를 否認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美國國務省이 日本에 抑留되었는 美國人들의 生命을 憂慮해서 臨時政府를 承認해서 日帝를 怒하게 할 수 없다는 論法이 李承晩에게 提示되었다.

이와는 달리 推測的인 것으로 소聯의 對日參戰을 유도하려는 試圖下에 韓國에 對한 소聯의 要求가 分明해질때까지 承認을 保留함이 可하다는 美國의 一部層의 意見이 反映될 可能性도 있다.

承認獲得外交過程은 複雜하고 거기에 亂舞하는 말은 많다 그러나 臨時政府가 承認을 못얻은데 對해서 綜合해서 그重要한것을 들면

- (1) 内部不和
- (2) 國內侵攻이나 一角의 領土支配도 없다.
- (3) 國內의 國民을 代表할 수 없다.

라는 뼈아픈것들이었고 國際信託管理案에 있어서는

(1) 40年이나 日帝統治下에 있었으니 當場獨立할 能力이 없으므로 當分間

( 처음 40年에서 5年以内까지 점점 減少 ) 國際信託管理가 可함

(2) 3~4個 (美, 소, 中, 英) 이 共同管理에 參加함

라는 것이었다.

信託統治는 카이로會談으로 確定되어 解放後에 三八線을 境界로 美소兩軍의 占領後 그의 實踐을 爲하여 모스크바三相會議와 美소共委가 서울서 열렸으나 結局 決裂되어 實現이 望되지 不하여 UN에 넘어가 現在の 分斷獨立狀態에 이른것을 생각한다면 어더까지나 推測이지만 루즈벨트大統領이 表面上 in due course로 信託統治를 내세운것을 傳統的인 南下政策을 쓰는 소聯의 韓國併呑野欲을 미리 막기爲한 裏面的인 遠慮의 政略이 介在되어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 이-튼의 報告書라던지 李承晩이 카이로會談前月에 駐中美大使에게 보낸 臨時政府를 承認해야 될 理由로 들은 소聯極東軍에 編成되어있는 韓國人師團 (實在如否는 疑問)이 韓國侵入戰에 使用되어 韓國에 소비에트共和國이 樹立될 우려가 있다는 文章의 “韓國人師團”이 韓國人師團이든 露西亞人師團이든간에 萬若 소聯軍이 侵入할때 人民委員會를 만드는 것은 事實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萬若 소聯軍이 侵入하지않을 境越에도 國際信託管理라는 허술함을 틈타 彈壓없는 共產勢力의 伸長도 計算되어 스탈린이 贊成했을 可能性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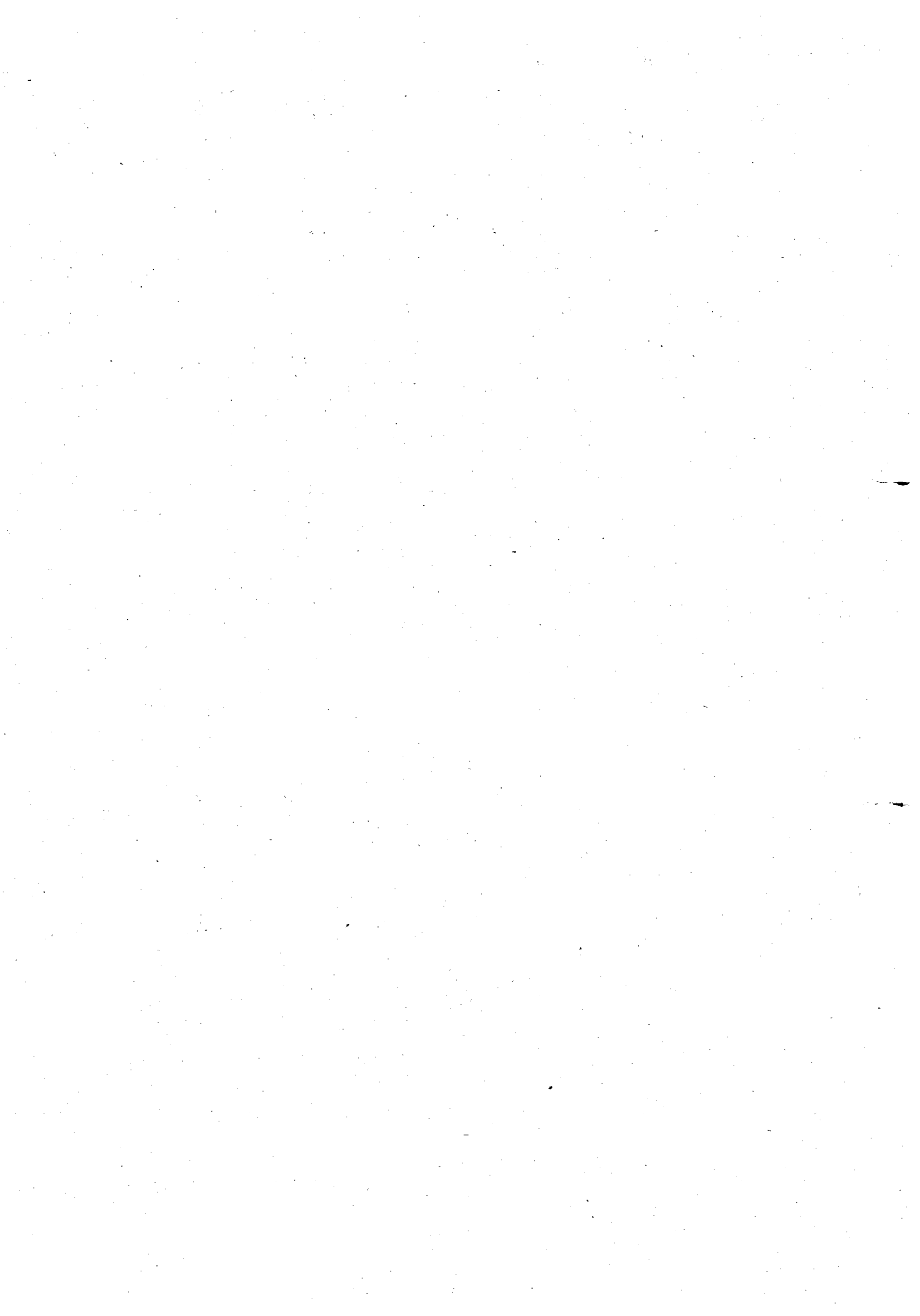
美大使 Gwus 는 李承晩의 이런 提議에 對하여 그렇다고해서 臨時政府를 承認해도 赤化를 막기 힘들것이라는 意見을 말하고 있다. ( 거기에는 Poland 軍團이 論문에있는 그 亡命政府下에 勇敢하게 美英側에서 싸웠음에도 不拘하고 소聯의 策略으로 國內가 赤化되어 론든 亡命政府가 收復하지 못한 Lublin Case 의例가 있다 )

臨時政府는 1944年 6月 Memorandum 을 30餘個國에 보냈는데 다같이 亡命政權인 仏・波 및 체코臨時政府로부터 公式回答을 받았다. 世稱 仏・波 및 체코로부터 承認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그러나 結論的으로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될것은 中國政府는 우리臨時政府를 事實的으로 承認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臨時政府의 活動을 容認하고 더 나아가 財政的으로 後援하였으며 光復軍의 編成과 活動도 容認하여 協定도 締結하였었던 것이다.



다만 中国이 蔣主席의 屢次의 指示와 各界의 支持로 承認手続을 取하고 싶어  
도 屐取하고 못한것은 已往이면 臨時政府에 實効가 있게끔 美英과 共同步調를  
취하려는 것이었고 独自の인 路線을 못取한것은 抗日戰爭遂行上 美国의 軍事援助  
가 必要한 狀態에서 美英蘇가 中国의 国力보다 優越한데 있는 것이었다.



# 統一理念으로서의 韓國的 民族主義에 關한 理論定立

閔 丙 天  
東國大學校教授

## 目 次

- 一. 民族主義에 대한 一般論
  - I. 民族 및 民族主義의 概念
  - II. 民族主義의 變遷過程
  - III. 後進國民族主義의 展開
- 二.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
  - I. 맑스·엥겔스와 民族問題
  - II. 레닌과 스탈린
  - III. 現況의 檢討
  - IV. 展 望
- 三.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의 歷史
  - I. 統一國家形成 및 維持와 民族主義
  - II. 解放後의 統一指向과 民族主義
- 四. 統一理念과 韓國的 民族主義
  - I. 民族統一의 Aporia
  - II. 統一理念의 定立
  - III. 創造的 民族主義
  - IV. 民族의 哲學과 統一
- 五. 結 論

### 一. 民族主義에 대한 一般論

#### I. 民族 및 民族主義의 概念

民族이나 民族主義가 무엇이냐를 精確하게 定義를 내린다는 것은 힘든 것으로

서 그것은 時와 場에 따라 나타나는 形態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찍이 Hans Kohn도 民族은 歷史의 生動하는 힘의 所産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變動하는 것이지 결코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가장 착잡한 性格을 지니는 集團이므로 正確한 定義를 내리기란 거의 不可能하다고 論述하고 있는 것과 같이<sup>1)</sup> 正確히 定義하기란 곤란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에 對한 概念規定은 諸學問 사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學者들 사이에도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와같은 研究의 困難性은 첫째 民族 또는 民族主義를 다루는 言語의 多樣性과 그 애매성에 유래하는 것이며, 둘째 民族 또는 民族主義가 끊임없이 變動하는 歷史的 過程의 흐름에 속해있는 어떤 動的現象이라는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sup>

그러나 多極化된 國際社會속에서 民族의 絶실한 要求인 祖國近代化와 民族統一의 課題를 自主意志로 實現해야 하는 貢務를 負荷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緊要한 主義로써 거듭 論究하여 概念定立을 서둘러야 할 時期에 處해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民族主義를 論함에 있어 民族(Nation)과의 關係가 대두된다. 民族에 對한 概念規定은 民族의 本質을 基礎로 하여 그 統一形成을 서두르기 위한 多樣化의 克服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Nation이란 用語의 語源은 羅典語에서 비롯된 것으로 race(種族)이나 birth(血統)에 해당되는 種族의인 意味를 가지고 있으나 近來에 와서 people(人民), Volk(國民) Nationality(民族性)이라는 意味로 擴大, 使用되고 있다.

이와같은 民族의 本質을 파악함에 있어 그 前提가 되는 概念規定은 主觀的인 側面과 客觀的인 側面으로 区分하여 求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의 本質的要素로서 精神, 感情, 意識, 意志등의 心理的 契機라고 보는 것으로 民族感情 또는 民族意識의 觀點에서 보는 主觀說과 歷史的 事實을 中心으로 共同血緣, 共同言語, 共同文化 나아가 政治, 經濟, 生活등의 共同體로서 民族을 說明하고자 하는 客觀說을 主張하고 있듯이 오늘날 民族에 對한 定義는 區區하다.

1) cf. Hans Kohn,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1960.

2) 李克燾, 非西歐的 民族主義의 進路, 創造, 通卷, 第26号, 第8号(1972.8月号) p.47.

레너(Renner), 짐멜(Simmel)은 민족의 본질은 主觀的 感情에 依하여 形成되며 이 感情은 家族的 感情, 계급적 感情, 黨派的 感情, 社會的 感情, 그리고 民族的 感情으로 發展하여 民族意識을 굳혀 民族結合의 強化劑가 된다는 經驗的 見解를 피력하며<sup>3)</sup> 마이네케(Meinecke), 팔켄버그(Falckenberg)와 헤겔(Hegel) 등은 形而上學的 民族精神을 내세워 民族이 最高共同社會라는 前提下에 民族理念이 拘束力을 가지며 民族文化를 創造하는 母體로 傳統化, 生活化된다는 見解이고<sup>4)</sup> 라자루스(Lazarus), 림멜린(Rumelin) 등은 經驗的 見解와 形而上學的 見解를 절충한 折衷的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sup>5)</sup>

反面에 客觀說의 立場을 취하는 見解중에서 마우렌부레허(Maurenbreche), 스테펜(G. Staffen), 미체르릿히(W. Mitscherlich), 스파(Spann) 등은 血緣共同體說,<sup>6)</sup> 피히테(Fichte), 바이스겔버(L. Weisgerber)와 프라이어(Hans Freyer)는 民族形成의 要因이 言語의 統一에 있다고 보며,<sup>7)</sup> 文化共同體說을 主張하는 피어칸트(A. Vierkant), 말리노브스키(Malinowski)는 諸文化內容의 特定方向이 精神文化의 共通性을 成立시켜 民族共同社會를 形成한다고 보며,<sup>8)</sup> 지글러(H. O. Ziegler), 헤르츠(F. Hertz), 마키버(R. M. MacIver), 맥도갈(W. Macdeugal) 등은 地域共同이 民族結合의 役割을 하며 이로 因하여 政治經

- 
- 3) Renner, Der Kampf der Oesterreichischen Nationalitäten um den Staat, 1902. Simmel, Soziologie.
  - 4) Meinecke, Weltbürger Und Nationalstaat. Falckenberg, Die Realität des objektiven Geistes bei Hegel, 1916. Hegel, Philosophie der Geschichte.
  - 5) Lazarus, Das Leben der Seele, 1876. Rumelin, Kanlerreden, 1907.
  - 6) Maurenbrecher, Staatsrecht, 1848. Gustaf Steffen, Der Weg zur Sozialen Erkenntnis. Waldemar Mitscherlich, Volk Und Nation, Handwörterbuch der Soziologie, herausgegeben von Vierkantl. Spann, Gesellschaftslehre, 1923.
  - 7) F. Fichte, Reden an die deutsche Nation.
  - 8) Malinowski,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Wa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Jun, 1941.

濟의 共同体를 구성한다는 것이며, 9) 또한 바우어 (Otto Bauer)는 民族은 歷史的 運命共同体라고 定義한다. 10)

그러나 以上과 같은 事實만으로서는 한 民族과 한 民族을 區別하는 基準으로서는 不足한 것으로 民族이란 絶對的 区分을 하기란 不可能한 것이며, 概念 또한 地域, 種族, 言語, 風習, 政治, 文化, 經濟, 歷史的 運命등의 共通性이란 客觀的 見解나 이들 事實에 입각한 主觀的 立場 중에서 어느하나 兩者拮一로 說明되지 않는다.

民族이란 血緣, 地緣과 같은 自然的 共通性的 基礎위에 言語, 伝統, 風習, 宗教 따위의 文化的 共通성을 계기로 하는 運命共同体로서 歷史的으로 形成된 것이며 그 결과 특정한 民族意識, 民族性, 民族精神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人類의 歷史的 集團이라 規定지을 수 있는 것으로 11) 端的으로 말하며 客觀的 要素와 主觀的 要素가 調和를 이룬 가운데 個性的 自覺을 가진 하나의 歷史的 集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民族을 基礎로 한 民族主義란 用語 역시 그 內包하고 있는 意味가 明確하지 못하고 多様한 것이다. 또한 西歐에서 使用되는 소위내쇼널리즘 (Nationalism)의 意味와 그 內容과도 상당한 差異가 있다.

내쇼널리즘은 民族主義, 國民主義, 國家主義 등의 意味를 內包하는 多元的인 것이지만 民族主義의 真正한 意味는 國民主義 혹은 國家主義의 意味. 內容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한스.콘 (Hans Kohn)은 民族主義란 하나의 精神狀態로, 民族의 대다수에 침투하고 全成員에게 침투할 것을 要求하는 精神狀態라고 하였으며 12) 民族主義는 民族國家를 政治組織의 이상적인 形態로 간주하고 民族을 모든 創造的인 文化活動과 經濟的福祉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 各個人의 最高의 忠誠은 그가

9) F. Hertz, "Wesen und Werden der Nation" in Nationalität, 1927.

10) Otto Bauer, Die Nationalitätfrage und die Sozialdemokratie.

11) 俞光震, 民族과 民族主義序說, 東國政治 第六輯, 東國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72. p. 15.

12) cf. Hans Kohn, The Age of Nationalism, Harper, N. Y., 1962.

속해있는 民族에 귀속되고 各個人의 생활 또는 民族에 根原을 두고, 民族의 福祉로서 可能하다는 것이다.

셰퍼 (Boyd C. Shafer) 에 의하면 民族主義를 ①공통된 鄉土, 種族, 言語 또는 歷史的 文化에 대한 사랑, ②民族의 政治的 獨立과 安定, 그리고 國威宣揚에 대한 욕망, ③民族이라는 막연한 때로는 超自然的인 사회적 有機體에 대한 신비로운 献身, ④國家 自体를 目的視함과 아울러 個人은 오직 國家만을 위하여 存在한다는 獨斷 ⑤自己 나라는 世界에 으뜸가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해야 하며 이 目的을 위하여 공격적 行動을 取해야 한다는 등 民族主義의 要素로서 5가지를 들고 있다. 13)

그러나 이들 모두 民族主義의 一面을 말하는 것으로 個別的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이며, 民族主義란 眞定한 또는 꾸며낸 共通의 歷史的 經驗을 가지고 將來도 別個의 集團으로서 共同生活을 계속 해 나가려는 公同된 욕구를 가지는 集團을 결합시키는 感情이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모든것을 종합하여 볼때 民族主義란 民族이라고 스스로 자각한 民族集團에서 나타난 民族的 傳統, 民族的 利益, 民族的 使命을 강조한 조직적 行動原理 및 이데올로기라 하겠다.

이와같이 民族을 過去와 결부시켜 民族的 傳統, 現在와 결부시키는 民族的 利益 未來와 결부시키는 民族的 使命 등이 民族主義 理念의 구성 契機라 보았을때 民族主義에 처한 이들의 구조와 기능이란 側面에서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民族主義에 있어 民族的 傳統의 강조는 「一體化的 象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民族的 文化의 보존과 신장, 民族的 궁지의 양양 民族的 영웅, 위인의 찬양, 民族的 發明 내지 예술품에 처한 존경심의 환기 나아가서는 國慶日, 紀念碑, 影像, 神話 등으로 나타난다. 14)

이러한 傳統의 강조는 民族主義의 담당세력의 性格에 따라 보수적 침략적으로도 될 수 있고 進步的 平和的 또는 구속적 전체주의적으로 될 수도 있으며 自由的 民主主義的으로 될 수도 있다.

13) Boyd E. Shafer Nationalism Myth and Realit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5. pp. 7-8.

14) 車基鏖, 戰後 民族主義의 方向, 思想界, 通卷 129号 (1963. 12号), pp. 65-66

이와같이 伝統의 강조가 지니는 政治的 的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一般적으로 보수세력이 民族主義를 담당할 때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傳統이 民族의 神話的 起源에까지 소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며 이 때에는 使命觀念과 결부되어 超國家主義의 양상을 띤다.

民族의 利益은 現實성과 觀念性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어느 면이 顯在化하는냐에 따라 民族主義는 크게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民族主義가 植民地에서 獨立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거나 그것이 上昇의인 계급에 의해 추진되어 被支配階級도 부분적이나마 利益의 分配를 받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民族의 利益이란 觀念은 現實性을 띄어 광범한 국민층에 뿌리를 박게 된다. 反面에 獨立을 쟁취한 후나 體制가 下降期에 들어서면 지배층이 내거는 民族의 利益은 觀念化하고 階級的 利益이 現實化되기 쉽다.

그리하여 現實的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 民族의 利益이란 觀念은 虛偽意識으로 转化하여 社會的 모순을 은폐하고 계급적 충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인 役割이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民族主義에는 國內의 階級的秩序를 수평화하는 경향과 反對로 그러한 계층을 고정화하는 경향이 함께 내포되고 있으므로 그중 어느 경향이 優勢하게 되는가는 民族의 利益이란 觀念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달려 있다.

民族의 未來와 결부시킨 民族의 使命의 강조는 한 民族의 世界에 있어서의 存在理由와 장래의 行動目標를 단적으로 제시하여 自國民을 정신적으로 고무하고 또는 잠재적 내지 顯在的인 敵國民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또한 民族主義의 國際主義에로의 转化와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戰의 확대는 民族의 使命感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여 메카고化的 경향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民族主義 理念의 구성 契機라 본 民族의 傳統, 民族의 利益, 民族의 使命에 對한 構造와 機能에서도 나타났듯이 民族主義에는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兩面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라든가 共產主義라면 그 理念과 制度가 있는 것이나 民族主義는 일정한 獨立的인 理念과 制度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나



독재주의와도 結付될 수 있으며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와도 社會主義와도 結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民族主義는 어떠한 形態의 이데올로기와 政治權力과도 結付되어 展開될 可能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民主主義의인 進歩的 民族主義化하기 위하여는 合理性과 自由가 民族主義의 最小限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15) 民族主義가 어떠한 樣相으로 나타나든간에 普遍的 合理性과 自由가 民族主義로 因하여 상실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現存의 民族主義는 國內에서 社會的 거리를 제지하여 民族의 團結과 結束을 圖제하려는 「團結的 民族主義」( Cohesive Nationalism )와, 國際間的 社會的 거리를 제거하여 民族의 威信을 높임으로써 國際社會에서 평등한 地位를 차지하려는 競爭的 民族主義( Competitive Nationalism ) 16) 등을 모두 추구하는 方向으로 展開시켜나가는 되며 특히 韓國의 現實에 있어 民族統一의 理念으로써 만이 아니라 國家의 近代的 發展을 위하여 國民의 분발을 촉구하고 國民의 정력을 統合하는 하나의 길이라 하겠다.

## II. 民族主義의 變遷過程

民族主義는 그의 起源을 原始 種族主義에 까지 소급하여 찾아 볼 수 있겠으나 民族主義가 歷史發展에 관여하고 歷史의 形成力으로 作用하게 된 것은 近代에 이르러서이다.

물론 民族意識이 싹트고 그것이 國家形成의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것은 中世末의일로서 中世의 普遍的 理念과 지방 할것주의를 타파하고 中央集權의인 統一國家는 形成되었으나 이는 루이14세의 「朕은 國家다」는 말이 단적으로 表現하듯이 民族國家 내지 國民國家는 아닌 것으로서 National state가 아닌 Kings state였다.

近代 내쇼날리즘 形成過程에 실천적 形態를 提共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革命 때 부터이다. 17) 中世末 이래 成長을 계속한 民族意識이 프랑스 革命을 계기로

15) 閔錫弘, 民族主義의 理念, 思想界, 通卷156号 附錄(1966.2), p.38.

16) 車基壁, 軛機를 맞은 韓國民族主義, 知性, 創刊号(1971.11月号), p.58.

17) A.Report on "Nationalism" by a study group of member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39, pp.37-39.

自發의으로 國民(民族)國家를 形成하고 이에 따라 民族主義도 나타났다. 이러한 國民國家의 成立은 特權과 身分制의 타파와 동시에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特權階級을 降等시키는 동시에 人民主權의 原理에 입각하여 國民大衆을 上昇시키고 國政과 國家利益에 참여시킴으로써 意識의인 동시에 自發의인 全國民의 堅固한 團合이 이루어진 것으로 眞正한 國民國家의 탄생을 보게된 것이다.

「自由, 平等, 博愛」란 三色旗下의 프랑스 革命에서 탄생한 民族主義는 民主主義, 人道主義와 結合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東歐쪽으로 전파되어 감에 따라 차차 變形이 나오게 되었다. 뿐더러 Napoleon의 유럽 征服은 各民族을 강하게 刺戟시켜 유럽의 諸民族은 民族的 自覺을 가지고 民族國家 樹立을 艱難하게된 것으로 「E.H. 카아」가 民族主義와 그 以後에서 分析한 바에 依하면 民族主義의 發展의 第2段階에 속하는 시기라<sup>18)</sup>라 볼 수 있다.

당시의 民族主義는 市民的인 自由와 平等 그리고 異國의 專制政治에서, 더우기 土着의 專制政治에서 解放된 모든 民族들의 市民的인 統一로 指向하고 있었다.

民衆(Le People)을 불러일으켜 國家的인 동시에 世界 市民的으로 시작된 프랑스 革命과 「나폴레옹」의 신티, 헤레나 回想錄에서 그의 意圖를 하나로 서술했고 또한 그것으로써 자신의 政治를 변호하려고 시도했던 자유로운 유럽에 대한 解釈은 광범한 영향을 미쳤으며 獨逸에서도 상당한 범위로 영향을 끼쳤다.

그 時代의 民族主義者들은 적어도 理論的인 면에서,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면에서 협소한 同情에 얽매어 있었다. 그들은 相異한 戰線에서 連帶의으로 투쟁하였으며 民族主義는 專統的 支配形成과 社會秩序를 와해시키려고 위협했던 것이며 根本的으로 國際的이고 革命的이며 그리고 自由를 위한 運動이다.

대체로 19世紀의 民族主義 運動은 세가지 形態로 区分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첫째 獨逸,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政治的 分열을 지양하고 國民的 統一을 達成하려는 形態, 둘째 포르투갈과 특히 스페인의 植民地였던 中南美의 獨立運動의 形態, 세째 함스부르크 帝國內의 少數民族(헝가리등)과 回教國家인 터키 帝國內의 基督教民族(회랍등) 등의 解放과 獨立을 指向하는 運動 등으로 나타났다.

18) cf. Edward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N.Y. St. Martin's Press, Inc, 1945, p. 2.

그러나 中南美의 植民地 獨立運動은 얼핏보아 匪.阿의 民族主義와 비슷한듯 보이니 同一한 것은 아니며 中歐나 東歐의 少數民族의 解放獨立 運動은 헤이즈(C. J. H. Hayes)가 말하는 文化的民族 主義가 政治的民族主義로 전환하는 過程을 밟은 것이다. 19)

反面에 獨逸과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는 위의 두 民族主義 形態와는 달리 政治的 分裂을 止揚하고 國民的 統一을 成就하려는 점에서 獨逸과 이탈리아의 民族主義가 동일하나 그것은 外形뿐이고 內容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다.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는 18世紀의 啓蒙思想과 프랑스 革命理念을 어느정도 계승하여 自由主義와 人道主義와 人道主義的인 普遍主義의 要素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世紀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를 代表한 사람은 마치니(Mazzini)로서 그는 民族의 統一이나 獨立을 個人의 自由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조국과 自由는 다같이 귀중한 것이고 不可分의 것으로 結合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思想이 支配的이었다.

이와같은 뜻을 지닌 마치니에 의하여 統一되지 않았으나 統一을 이룩한 카브르(Cavour)역시 自由主義와 立憲政治의 信奉者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諸여건이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를 自由主義的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獨逸의 民族主義는 헤르더(Herder)의 文化的 民族主義와 浪漫主義에서 탄생한 것으로 啓蒙思想과 프랑스 革命 理念에 반발 또는 否定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民族의 傳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獨自의인 Volk(民族)의 形成과 이의 原動力으로 신비스러운 民族精神(Volk geist)을 내세웠다.

그러므로서 他民族의 獨自性이나 特異性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닌 獨逸民族만의 獨自性, 特異性을 강조하여 구체적으로 프랑스 革命理念의 否定, 自由主義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프러시아主義(Prussianism) 즉 權威主義와 軍國主義가 첨가됨으로써 英.仏과는 다른 獨自의인 獨逸의 民族主義가 形成된 것이다. 20)

이와같이 1871年代까지는 英國과 프랑스를 中心으로 한 이탈리아 등지에서 일

19) Cartton J.H.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N.Y. Macmillan, 1960.

20) 閔錫弘, 前掲文, pp33-35 참조

어난 西歐의 民族主義 理念과 獨逸을 中心으로한 東歐의인 것으로서 두개의 서로 相違한 民族主義의 理念이 나타났다. 西歐의인 民族主義는 대체로 自由主義와 民主主義를 基盤으로 한 開放의이고 共存의인데 反하여 東歐의인 民族主義는 全體主義의이고 신비롭고 閉鎖의인 동시에 배타적이다.

1870年代 이후의 유럽의 民族主義는 이러한 두개의 對立的인 理念을 내포한 채 産業革命의 결과와 합세하여 帝國主義化 되었다.

産業革命 以後 漸進하기 始作한 資本主義는 1870年頃에 이르러 過熟(Over-ripe) 期에 들어서므로서 資本主義는 極度로 發展하게 되어 國內市場에서의 有效需要(Effective demand)의 不足으로 因하여 海外植民地를 競爭의으로 획득하게 되어, 이들 諸 植民地에 資本을 投資함으로써 唯一한 活路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필연적으로 擴大伸張의 過程을 수반하여 이른바 침략적 帝國主義의 民族主義로 發展하여 政治的, 國民統一에의 要求를 對外的 膨脹主義로 發展하게 되었다.

여기서 홉슨(J.A.Hobson)이 말한 民族主義의 「타락(debasement)과 惡用(Perversion)이 일어났다. 21)

그러므로써 맞이한 第一次 世界大戰은 最初의 가장 巨大한 諸民族主義(獨點 資本主義的 帝國主義的 性格을 帶有한) 間의 抗争의 產物이었다. 22) 第一次 大戰은 汎게르만主義(Pan-Germanism) 즉 帝國主義的 膨脹主義的 民族主義와 汎슬라브主義(pan-Slavism)인 靈西亞의 帝國主義的 膨脹主義的 民族主義의 對立 抗争과 獨 立民族對立, 및 오스트리아, 슬라비아 間의 國民的 仇敵關係가 原因인 것으로 膨脹 民族主義諸國의 決戰이었다.

이러한 第一次 世界大戰은 民族自決主義와 國際協調란 두개의 對立的인 原則을 戰後問題처리와 世界平和의 原理로 내세웠다.

民族自決主義로 말미암아 유럽의 수많은 少數民族이 獨立하게 되어 오스트리아, 터키, 러시아 等 帝國이 무너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民族主義運動이 크게

21) J.A.Hobson, A study of Imperialism. N.Y. MacMillan. 1933, pp. 4-9.

22) E.H.Carr, The Twenty year's Crisi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6. Cf. part. 2. International Crisis.

일어나게 되어 帝國主義 내지 植民主義로 부터의 解放運動이 크게 促進되었으며 이 戰爭은 民族主義를 지구상 도처에다 확산시켰을 뿐더러 民族主義는 普遍的 현상이 되었으며 「무스타파 . 케말」, 「간디」, 「孫文」 등이 近代의 위대한 民族指導者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反面에 이에 편승하여 共產主義는 反帝國主義와 反植民主義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對 資本主義의 戰述에 民族主義를 이용하였다.

一次大戰後의 民族自決主義나 위와같은 諸 추세는 如何든 以前에 비하여 매우 많은 獨立國家를 낳게 하였으며 그것은 한없이 增加할 기세를 보였다.

그러나 獨逸의 「히틀러」가 나치즘 獨裁體制 強化에 民族主義를 手段化하는<sup>23)</sup> 等 獨逸, 이탈리아, 日本 등 몇몇 國家에서 나치즘 내지 파시즘으로 알려진 膨脹主義의 民族主義가 또다시 일어나 民族主義가 軍國主義, 침략주의로 나타나 이와같은 극단적인 民族主義는 2次世界大戰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19世紀初에는 선량한 人間과 선량한 市民의 「自然스러운」 態度이고, 民族國家는 歷史發展을 충만시키며 成就시키는 것이 民族主義라 믿던 것이 19世紀 후반의 權力政治 및 現實政治史에 의하여 부정되고 낡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國際情勢속에서 民族主義는 오늘날 人類의 收斂뿐만 아니라 그들의 多樣性을 可能케하고, 人類를 테크노크라시( technocracy )에 의해서 조종되는 단일형식의 世界國家라는 위협으로 부터 보장하는 方向으로 規定하는 것이 보인다. <sup>24)</sup> 그러나 民族主義가 초래하는 相爭의인 경향을 지양하고 國際協調의 정신에 입각하여 世界平和를 達成할 수 있는 合理的인 방도를 찾는 것으로서 民族主義와 國際主義의 調和의 問題가 現代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世界史의 志向으로서 이른바 네오 . 내쇼날리즘 ( Neo Nationalism )의 潮流가 일기 始作한지 모른다.

23) 河環根 . 아프리카 政治論 . 一潮閣 . 1972 . p . 30

24) Cf. Hans Kohn. Begriffswandel des Nationalismus. Mer Kur. 198 卷

### Ⅲ. 後進國民族主義의 展開

後進國( 또는 植民地 )民族主義는 西歐의 強大帝國主義에 對한 反對라는 形態로서 즉 反植民地主義라는 形態로 始作된 것으로서 17世紀 以來의 이른바 植民地帝國主義( Colonial impercolism )에 依하여 隸屬되었던 後進地域의 植民地民族이 自主獨立과 國際的인 主權의 平等을 達成하고 植民國國으로 부터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등 모든 部分에 걸쳐 스스로를 解放하려는 民族運動인 것이다.

이러한 後進國民族主義 運動의 根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外部的 要因으로서 1905年 露日戰爭에서 有色人種인 日本이 승리했다는 점, 1911年 孫文의 辛亥革命으로 因한 華僑民族主義, 1917年 러시아 革命과 民族解放戰術, 1918年 「웰슨」의 民族自決主義 및 兩次大戰에서 帝國主義의 모순등이 民族主義成長을 促進하여 偉대한 覺醒을 하기 始作한 點을 들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웰슨」의 이른바 14個條( President Wilson's Fourteen points)<sup>26)</sup>에서의 民族自決主義는 유럽의 少數民族에만 適用되었을뿐 亞.阿의 植民地에서 적용은 거부되었으며, 1917年 10月 러시아의 프로레타리아革命으로 부터의 1920年 7月 콤인터른( Comintern )에서 「民族 및 植民地 問題에 關한 테에 제」<sup>27)</sup>는 前述한 바와같이 植民地民族主義 運動을 프로레타리아 世界革命의 手段으로 使用하였다는 點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둘째로는 인텔리겐차가 形成됨으로 民族意識을 고취시키며, 傳統的인 價值觀의 修正 및 運動形態가 大衆化된 形態로서 精神, 文化的 要因을 들 수 있으며, 세계 經濟的, 社會的, 要因으로서 부케( J.H.Boeke )가 말하는 二重社會( dual-Society ), 퍼니벌( J.S.Furnival )의 複合社會( plural Society )<sup>28)</sup>를 만

25) 俞光震 . 俞揭文 . p.20

26) D.C.Somervell.Modern Britain.London.1941 Appendix.1.pp.197-199

27) N.Lenin.「民族問題」村井繁訳 . 第三分冊 . pp.215-231

28) J.H.Boeke.Economic and Economic polloy of Dual Societies as Exemplified by Indonesia.N.Y.1953.p.324.  
J.S.Furnivall.Colonial policy and Practice.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 India London Cambridge Univ.Press.1948. p.304.

들어 經濟的 隸屬機關으로 化하여 原住民의 經濟, 社會的인 諸 秩序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므로서 支配로부터의 自由, 貧困으로 부터의 解放을 부르짖고 이의 打開을 위한 民族資本의 育成을 要請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民族主義運動을 場을 中心으로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諸 民族主義는 각기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西歐勢力에 依하여 土着原住民의 社會가 崩壞되었으므로 이곳의 民族主義는 卽, 阿地域과 다른뿐 아니라, 19世紀末에 諸 國家의 獨立解放運動은 주로 植民地에 移住한 西歐人의 獨立國家 건설운동이었으며, 卽, 阿는 被壓迫民族의 해방투쟁으로서 植民地 民族主義 運動이다.

一面 아시아, 아프리카의 民族主義는 다같이 植民地 民族主義라는 共通點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原始的인 샤머니즘과 東南亞의 仏敎, 힌두敎의 文化와 回敎의 文化圈의 社會에서는 國家와 社會에 對한 觀念上의 差異가 明白히 存在하는 것으로서 東南亞는 均質的인 民族集團의 緊密性으로 民族統一에의 욕구가 特色이고, 아프리카의 部族社會는 部族의 單位의 存全을 渴求하는 反面 全阿의 統合이라는 大命題가 存在하고 아랍世界는 宗教의 單一性, 民族의 相當한 接近性으로 統合 運動이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29)

西歐의 民族主義는 資本主義의 發達과 더불어 民族國家가 形成, 發展하였으나 卽, 阿에 있어서는 西歐資本主義 즉 帝國主義가 植民地 또는 反植民地에 남긴 遺産을 淸産하기 위한 것으로, 「스자히르」(S.Sjahir)가 民族主義를 「植民地時代에 存在한 封建的 社會關係 및 植民地專制支配의 모든 條件을 否定하는것」을 特徵으로 들고 있듯이, 대체로 後進國 民族主義는 反封建主義, 反植民主義, 反帝國主義의 性格을 띠우게 되었다.

이와같은 것을 共產主義와 同一한 概念으로 把握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共產主義는 階級社會主義로서 民族主義와는 相異한 것이며, 또한 國際共產主義는 勞動者階級の 解放을 世界的인 規模로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植民地民族의 解放을 達成하려는 植民地民族主義와는 그 性質을 달리 하는 것이다.

一面 後進國民族主義는 그 變遷에 있어 「卽, 阿」의 植民地 地帶 後進國들이 그 自由性을 確立하고 植民地的 後進性을 克服하기 위하여 資本帝國主義에 對抗할

29) 李鍾麟, 後進國民族主義의 成長過程, 東國政治 第六輯, 1972, p. 31

뿐만 아니라 共產帝國主義에 對抗할 새로운 指導理念을 창안하여 独自の 노선을 건지 않으면 안되어 이른바 「非同盟中立主義」란 것을 國際政治上에 표명했던 것이다. 30)

이러한 後進國民族主義의 課題는 앞서 民族主義의 概念에서 前述한 바와같이 國內, 國際양면에서 社會的 거리를 제거하므로써 對外的으로는 國際的 威信과 平等한 地位를 차지하는 것과 對內的으로는 民族을 團合시켜 近代化를 촉진하여 經濟的 自立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後進國 民族主義의 歷史的 使命이 文化的民族主義에서 政治的民族主義로 發展하여 植民地에서 獨立을 쟁취한 후 정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經濟的民族主義로 發展하게 되는 것이다.

經濟的 自立없이는 政治的 獨立은 기실 무의미 한 것으로서 經濟的 自立을 하기 위하여서는 國民的 統一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後進國 民族主義는 社會構造의 二重性과 複合社會( plural Society )의 양상을 지양하기 위한 社會改革을 통해 社會正義를 세움으로서 民族의 一體感을 養成하지 않고는 效果의인 自立經濟 確立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막중한 課題를 지닌 後進國民族主義는 西歐 帝國主義의 植民地民族主義의 衝擊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나, 아세아, 아프리카라는 독특한 時와 場에 따라 각기 特性을 지니고 있는것 이므로 이를 考察의 편의상 아세아 民族主義와 아프리카 民族主義로 区分하여 論하고자 한다.

#### 가. 亞細亞 民族主義

近代的 意味의 亞細亞 民族主義는 西歐植民主義( Colonialism )로 부터의 解放 및 獨立運動으로 시작된 것으로, 「亞細亞 民族主義와 共產主義」에서 맥마혼·볼( Macmahon Ball )은 그 첫머리에 Asia를 움직이는 民族主義의 革命的 에너지를 세가지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첫째 民族自決과 民族獨立을 要求하는 것으로 外國의 政治的 支配, 植民主義와 帝國主義에 對한 反抗, 둘째 貧富의 현격한 격차에 대한 平準化의 要求인 社會

---

30) 非同盟中立主義의 提昌은 印度의네루( Pandit Jawaharlal Nehru )로서 아랍共和國의 나셀( Gamel Abdul Nasser ) 열렬한 同調者로 登場하였으며 亞阿新생國의 主流的인 國際政治의 方向이 되었다.



的, 經濟的, 抵抗運動이며 세계 西洋에 對한 東洋의 反抗으로서, 人種的 反抗運動 등으로<sup>31)</sup> 亞細亞의 運命은 아시아 人種으로 決定되어야 하며 東洋의 새로운 國家가 탄생하는 것은 그 自体가 目的이지 西洋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될 手段이 아니라는 결의를 뜻하는 것이다.

이상의 所論은 亞細亞 民族主義 性格을 一般的으로 잘 표현하고 있으나 東洋社會에서도 外國을 支配한 日本이 存在하고 있는 事實과 또한 위의 세가지 重合 交錯로만 보는 것은 問題의 所在을 平面的으로 指摘할 뿐이어서 不充分한 것으로 각己 이를 推進시킨 階級層의 究明을 不充分히 하고 있을뿐 아니라 東洋의 民族運動의 推進力을 담당하는 계급층의 如何를 分析하여 民族主義의 特質을 밝혀야 비로소 內面的으로 理解할 수 있다<sup>32)</sup> 는데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세아의 社會는 傳統的으로 閉鎖的인 地緣, 血緣을 強調하는 基盤을 지닌 위에 前述한 부케(Bucke)의 二重社會, 페너벌(J.S.Furnivall)의 이른바 複合社會가 植民地化 過程에서 나타났다.

비단 社會構造 뿐만아니라 文化構造나 經濟構造 및 住民의 階層構造도 複合的이고 多元的인 形態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民族主義 運動도 여러 形態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아 民族主義는 건전한 市民階級이 發達되지 못하여 이들이 主體的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고 先進西歐勢力과 東洋封建支配勢力과 結付된 植民地化 過程에서 새로운 인텔리겐차가 形成되어 이들을 主体로 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들 인텔리겐차는 健全한 民族主義形成에 주도적 役割을 하여야 되며 하여야 할 義務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칼·만하임」이 말한 바와같이 社會內에 自由로히 浮動하고 있는 인텔리겐차는 特定한 階層意識에 從屬되지 아니하고 對立되고 있는 여러 이데올로기를 統合하여 民族運動의 主役을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서 社會의 思想體系와 民衆을 올바르게 유도해나가 조국 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民族主義를 鼓吹하여야 된다.

또한 아세아 民族主義는 특히 東南亞은 種族的, 地域的, 宗教的, 階層的 對立 및 國際政治勢力간의 對立으로 因하여 또다른 多元的이고 複合的인 特殊性을 갖고 있다.

---

31) MacMahon Ball,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 Mellburne Univ. Press 1951. p.1

32) 崔文煥. 民族主義의 展開過程. 博英社. 1959. p.462

印度와 파키스탄에서 宗教的 對立이나, 버어마의 카멘族이 獨立運動에서 種族的, 對立을 보았고 種族的 地域的 對立에서 起因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反亂 및 國際政治上으로는 네루의 非同盟中立主義 提昌등의 多·複合的인 特殊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多元性은 이미 第二次大戰 이전에 그 特性이 規定되었으며, 戰前의 共通的인 特徵은 各植民地勢力의 支配 政策에 依하여 決定되었다.

英·美의 支配하에 있던 印度, 버어마 필리핀의 植民政策은 비교적 被政治支配層으로 하여금 政治, 經濟, 社會的 行爲의 自發性과 自由를 느낄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民族運動은 柔軟하고 妥協的인 性格을 띠게 되었다. 反面에 프랑스, 和蘭에 의한 印尼, 印度支那에 있어서의 植民政策은 日本이 韓國 滿州, 中國에서 行한 것과 같은 同化政策을 本質로 하였기 때문에 民族主義 運動은 政治的 對抗感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世界二次大戰으로 말미암아 戰後의 民族主義는 새로운 局面으로 展開되어 나갔으며, 많은 國家들이 植民地에서 獨立 되었거나 植民勢力의 支配가 弱화되었으며 一面 아세아 民族主義 運動은 國際政治上에 새로운 要素를 첨가시켰다.

現分에 있어 亞細亞民族主義가 植民地支配로 부터 完全히 獨立을 爭取 - 最少한 外形의으로는 - 한以上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統一과 自由와 平等을 國內·外的으로 성취하여야 되나, 이와같은 것을 達成하기에는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諸問題는 政治的 民族的 統一國家의 形成과 經濟的 平等, 政治的 自由등을 段階的으로가 아닌 同時에 遂行하여야 된다는데 問題가 있을뿐 아니라 外的要因으로서 亞細亞 民族主義는 植民地民族主義로 그 基本的 要求는 民族의 政治的 獨立과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平等權의 主張인 것으로서<sup>33)</sup> 이는 民族의 基本權인 것이다.

그러나 所謂 列強이 이를 認定치 않으려는데서 諸問題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亞細亞 民族主義는 본래 內部的 發展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이 可能性이 如何한 方向, 樣態, 速度로 發展하느냐의 問題는 現實에 있어 外部的인 國際關係의 變化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亞細亞 自体로서 보더라도 世界의 一環으로써, 自主的 主體的인 아닌, 國際關係의 變化와 反應으로 부터 초연

33) Gerbet,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1960, pp.69-71

할 수 없는 것이 아세아 民族主義이며 後進국이 지니는 特性이라 하겠다.

#### 나. 아프리카 民族主義

殖民地 民族主義라는 共通點을 匪.阿 民族主義는 지니고 있으나,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形成과 그 性格은, 아세아 民族主義와는 社会的 文化的 基盤부터가 다른 것으로 아세아 民族主義는 西歐의 衝擊에 依하여 나타난 形態인데 反하여 아프리카 民族主義는 西歐의 衝擊보다도 變革過程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形成 契機는 「G. 발란디에」(Georges Balandier)가 말한 土着人에 對한 유럽인의 優越한 權力關係에서 形成된 植民狀<sup>34)</sup>나 「I. 예닝스」(Ivor Jennings)가 지적한 輸入된 유럽인의 特權의 官僚制<sup>35)</sup>가 土着社會에 정착함으로써 여기에 對한 土着人의 政治的 覺醒이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胎動을 가능케 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過程을 거쳐 政治的 獨立을 획득하여 個別的인 主權國家로 成立되었기 때문에 傳統的인 價值體系가 本質的으로 變모하였다.

이와같은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形成契機를 把握함에 있어 經濟的, 社会的, 宗教的, 心理的 要因 등으로 区分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生存經濟에서 貨幣經濟에 變動(Change from a subsistence to a money economy)과 賃金勞動力에 成長(growth of a wage-labor force), 新中間階層의 生成(rise of a new middle stratum) 등의 經濟的 要因과 유럽人 企業에 雇傭되기 위하여 都市로 人口가 集中되므로 發生한 都市化(Urbanization)가 血緣關係를 弱화시키게 되었으며, 非部族的 人種集團間의 社会的 疎通을 促進시켜 民族的 統合(national integration)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社会的 動員(Social mobility)은 意思疎通과 交通의 發達로 交換經濟의 成長 및 政治, 社会的 再結合을 마련한 것과 西歐의 教育에서 影響등을 社会的 要因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宗教的 心理的 要因은 基督教 福音傳道, 西方教育의 欲求不滿 등에서 찾

34) Geoges Balandier, La Situation Coloniale Approche theorique Cahiers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XI 1951. pp. 44-79.

35) Ivor Jennings Approach to Self-government Corona. The Journal of Her Majesty's Oversea Seavies, Feb. 1956. p. 62.

아 볼 수 있다. 36)

위와같은 諸 形成 要因上으로 差異가 있듯이 匪細亞 民族主義는 초기부터 反西歐的, 反帝國主義的 性格을 지니며 반하여 아프리카는 血緣的 部族的 紐帶와 緊迫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民族國家를 形成하도록 西歐勢力이 意識的으로 組織되었다.

비록 自生的으로 民族國家를 形成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19世紀末부터 아프리카의 民族運動은 組織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國家形成의 過程에서 民族과 國家가 同時에 創造되어야 하는 二重的 役割이 要求되고 있는 것으로서 37) 이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指導者들은 強力한 政治體制를 수립하여 部族主義를 止揚하면서 國家統合의 要素를 발견하고 있으나 아직도 결함의 정도가 不充分하고 內的 凝集力 내지 團結力이 未熟한 단계에 있으므로 部族線 (tribal line) 에 따른 龜裂이 잠재해 있다고 하겠다. 38)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 民族主義는 國家建設의 過程에서 한편에서는 沉亞프리카主義를 내세워 個別的 確立과 部族主義 내지 國內的 沮害要素를 克服하려는 合目的政策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는가 하면,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에 對한 理念的 代替物의 役割을 遂行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아프리카가 당면한 現實的, 歷史的 特殊事情에서 「콜만」(James Coleman)은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發展 段階를 다음과 같이 区分하고 있다. 39)

① 傳統主義運動 (Traditionalist movement) 으로 이는 原始的 底抗運動 (primary resistance) 과 原住民 保護運動 (nitivitie movement) 을 들수 있는 것으로 즉 植民地 支配者의 強制와 새로운 制度에 對한 무조건 底抗과 呪術的 宗教的 性質을 지닌 것으로 外國 支配에서는 社會, 經濟的 不平으로 야

36) 經濟的 要因은 L.P.Mair, 社會的 要因은 J.P.Rheinalt Jones 宗教的 心理的 要因은 William Bascon 이 지적한것을 要約한 것이다.

37) Louis L.Snyder, The New Nationalism, N.T. Cornell Univ, Press. 1968. p. 106.

38) Rupert Emerson, the Problem of Identity Selfhood and Image in the New Nations the Situation in Africa A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68.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cpt, 1968. p. 5.

39) James S. Coleman, Nationalism in Tropical Africa,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XLVIII No2 (June 1954) pp. 404-426.

기되는 緊張의 心理的, 感育的인 배척 ②混合主義運動( Syncretistic movements )으로 宗教的 分權主義( religious separatism )와 血緣的 社會組織( kinship association ) 및 部族的 社會組織( tribal association )의 段階로서 部族的 血緣的 단결운동과 ③近代主義運動( modernist movement )으로 經濟的 利益集團( economic interest group )이 中間階級の 形成과 民族主義運動( nationalist movement ), 汎아프리카주의 運動으로 区分지우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民族主義 運動의 段階的 發展은 傳統主義 運動 段階에서는 原住民의 自然的 反抗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混合主義 運動은 西歐式 教育을 받은 知識層 또는 都市化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近代의 民族主義 運動은 西歐化 엘리트에 의해서 組織도 引導된다. 40)

後進國 一般에서 보는 바와같이 近代의 教育을 받아 새로이 形成된 인텔리겐차에 의하여 展開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民族主義 運動으로서 이러한 運動은 아프리카 國家形成에 있어 種族的, 地理的 또는 社會배경적 동일성에 따라 合理的인 선으로 재조정하는 방향과 現在의 狀況을 그대로 인정하는 方向 및 아프리카 合衆國을 建設하는 方向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現存 國家秩序에 順應된 組織化로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方向設定이 定立된 것이다.

이와같이 아프리카社會의 多樣한 바탕에 基礎한 一種의 樣糊性이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現實的 性格이며, 또한 特徵이라 하겠다. 41)

---

40) Paul E. Sigmund(ed), The Ideology of the Developing Nations, Prager, 1963, pp.9-10.

41) 河璟根, 前掲書, p.57.

## 二. 共産主義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

### I. 맑스·엔겔스와 民族問題

共産主義의 理論과 實際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가 어떠한 것인가는 알려져 있는 것이 많지만 統一의 努力에 있어서 民族이라는 點을 強調해야 할 우리의 立場에서는 맑스 以來의 民族理論과 共産世界에 있어서의 實際를 다시 살펴 볼 必要가 있으며 民族이라는 點이 統一에의 接着劑가 될 수 있는지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以下에서는 맑스·엔겔스와 民族問題, 레닌과 스탈린, 現況의 檢討, 展望 등으로 나누어 特別히 展望에 力點을 두면서 이 問題를 살펴 보려고 하는데 資料와 時間의 不足으로 因해서 獨自인 充分한 檢討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點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主觀으로 因한 過誤를 警戒하면서도 主觀적인 見解로 끝날지도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一般의 論議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할 지도 알 수 없는데 이 問題의 檢討가 必要하다는 點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의 見解에 到達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맑스·엔겔스는 民族問題에 相當히 強한 關心을 가지고 있었으나 特別히 民族에 관해서 精緻한 理論을 展開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들은 民族性 (Nationalität)이라는 말을 國家나 國民과 거의 同義語로 使用하였고, Nation이라는 말도 「國民」과 「民族」을 明確히 區別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中 어느 것인지 明確하지 않다고 한다. 어쨌든 그들은 「民族性的 利己主義」를 批判하면서 國際主義를 主張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며, 그들의 民族問題에 관한 몇 가지 主張을 본다면 맑스는 1847년의 폴란드를 위한 演說에서 諸國民이 眞실로 團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利害가 共通이어야 하고 그들의 利害가 共通이기 위해서는 現在의 所有關係가 廢止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 푸로레타리아의 브르조아지에 대한 勝利는 同時에 全被壓迫民族解放의 信號이기도 하다고 하였으며 엔겔스도 一民族은 他民族을 壓迫하면서 同時에 自由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1848년의 「共産黨宣言」에서 「萬國의 푸로레타리아요 團結하라」는 結語에 集約되고 있으며, 共産國際主義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主義가 그 後의 過程에서 그대로 維持되지 아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民族과 階級과의 關係를 原則적으로 表示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다.

「共産黨宣言」에서는 또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엇보다도 政治的 支配를 獲得해서 民族的인 階級の 地位에 올라가 스스로를 民族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브르조아지가 말하는 것과는 完全히 다르나 그 自身 역시 民族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民族的인 階級」이란 民族의 主体로서의 階級을 意味하고 「스스로를 民族으로 한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主体로 해서 民族이 成立된다는 意味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때까지는 民族의 物質的, 精神的 財貨에서 除外되어 있는 地位 또는 民族內의 階級關係를 表示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겠고, 나아가서는 民族 그 自体에서 除外되어 있다고 誇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民族性의 否定이 아니라 止揚이라 하고 그 國際主義는 단순히 民族主義와 對立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民族主義를 止揚하는 것으로서 把握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解釋도 나오고 있다.<sup>1)</sup> 그러나 民族主義의 「否定」과 「止揚」과의 差異는 모호하며, 이렇게 해서 共産國際主義와 民族主義가 對立하지 않는다는 解釋도 모호하다.

「共産黨宣言」에 있어서의 國際主義의 立場은 그後の 맑스.엥겔스의 民族問題把握의 觀點이 되어 있고 그들은 이것을 意識的으로 戰略.戰術로서 展開해 나갔으며 다만 具體的인 情勢下에서 戰術의 適用에 있어서는 柔軟한 理論活動을 展開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後の 共産主義理論에 있어서 브르조아民族主義와 프롤레타리아 民族主義의 區別를 남게 한 起源이 되고 있다. 이러한 區別은 그들의 階級鬭爭說과 마찬가지로 對立的, 分裂的인 要素를 內包하는 것으로서 한 階級에 대한 다른 階級の 主体화와 한 階級에 의한 「民族化」를 主張함으로써 真正한 統合에 의한 「民族化」를 妨害 또는 排除하는 것이 된다. 그 國際主義도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로서 各 民族이 內部的 統合을 이루면서 民族의 線을 넘어 全世界的. 全 人類의인 觀點에서 紐帶와 結合으로 發展을 志向하게 하는 國際主義와는 다른 것이며, 나중에 소련은 이것을 러시아民族主義 또는 大國化의 擴大主義에 利用하였다. 그들이 強調한 被壓迫民族解放도 프롤레타리아의

1) 竹原 良文 編著 내셔널리즘의 政治學的研究 中 德本 正彦, 맑스.엥겔스와 民族問題, 1967年, pp.71-73.

브르조아지에 대한 勝利 또는 「被压迫階級の 解放」과 直結시키는 것이며, 한 階級을 民族과 同一視하는 態度를 그대로 나타내고 階級鬭爭 以外の 階級止揚의 方法은 생각되지 않고 있다.

맑스·엔겔스의 民族觀, 즉 그들이 民族을 어떻게 理解하고 있는가는 主로 엔겔스에 의해서 表明되고 있는데 그는 民族을 動的인 것으로서 變化하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으며, 이것은 民族을 歷史的으로 生成·發展하는 것으로 把握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民族을 地域의 共通性和 經濟生活의 共通性 위에 成立하는 歷史的 共同體로서 보고 同時에 言語의 共同性이 重視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民族自決權을 認定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被压迫民族의 解放을 重視한 것에서도 볼 수 있으며, 1896년의 第二인터내셔널·런던大會는 「모든 民族의 完全한 自決權」을 要求하는 決議를 採択하였다. 그러나 그 民族解放이라는 것이 被压迫階級の 解放에 重点을 둔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다.

맑스·엔겔스의 民族理論을 새로운 情勢下에서 보다 動的으로 適用해 나간 것은 레닌이었고 맑스主義 民族理論의 定型으로 생각되는 것은 스탈린의 民族理論이었다. 그러나 스탈린 以後의 變動은 劃期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I. 레닌과 스탈린

레닌은 殖民地 被压迫民族의 民族自決權을 強調하고 러시아内部의 民族自決權의 承認도 主張하고 있다. 被压迫民族의 民族自決權의 主張은 民族主義에 대한 尊重 또는 弱小國의 永統的 獨立을 基調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諸民族의 獨立을 위한 鬭爭이 帝國主義의 힘을 弱화시키고 이에 따라 各國內의 크게는 全世界의 푸롤레타리아트의 立場을 強化시킨다는 戰術的 計算에 立脚하고 있음을 明示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sup>2)</sup> 스탈린은 이 점을 보다 솔직하게 表明하여 压迫된 나라들의 民族解放運動 内部의 革命的 能力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그러한 能力을 帝國主義 打倒에 利用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여 푸롤레타리아트側으로부터

2)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第1卷), 1970年 再版, p.16.



決然히 積極的으로 支持할 必要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後 그가 소련 内部와 共產圈 内部의 民族이나 國家가 自決이나 離脫을 하려고 할때 慘酷하게 彈壓하였다는 事實은 民族自決에 대한 本意圖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탈린에 있어서는 러시아民族主義의 權化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에 執着하면서도 他面에서는 民族否定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어 二重性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하겠으나 이것은 오히려 소련과 소련을 中心으로 하는 共產主義를 위한 意圖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民族否定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民族은 그 自体가 本來的 存在도 永統的 存在도 아니고 人間社會의 한 發展段階 즉 資本主義時代의 産物이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레닌의 見解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레닌도 資本主義가 社會主義로 移行한 後에는 民族——民族主義——民族國家는 서서히 그 힘을 喪失하면서 消滅하지 않을 수 없고 民族自決權의 要求는 푸를레타리아트와 社會主義革命의 時代에 있어서는 브르조아의 경우에 있어서 처럼 <目的 그 自体>도 絶對的인 것도 될 수가 없다고 한다.

民族主義는 本質에 있어서 브르조아의 課題로서 過渡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民族自決權이 최후의 目標로 삼는 것도 諸民族의 割拋主義가 아니라 社會主義內에서의 自由意思에 의한 統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統一을 豫定하지 않은 分離運動, 民族自決 그 自体를 目的으로 追求하는 民族運動은 民族主義로서 필경은 反動的인 것이 된다는 것이며 레닌은 自己를 共產主義者는 <모든 民族主義의 敵>이라고 까지 公言하고 또 맑스主義는 民族主義와는 兩立하지 않고 모든 民族을 보다 高度한 統一으로 融合하는 國際主義를 앞세우고 내세운다고 한다. 3)

여기서는 그가 民族運動과 民族主義를 區別하고 民族主義를 排擊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도 共產國際主義를 위한 配慮와 그것을 위한 被壓迫民族의 民族運動 支持를 보게 되며, 러시아 國內에 있어서는 革命後 또는 帝政로시아 崩壞後에 있어서의 各 民族으로의 分解를 막을 수 있는 事前的 布石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革命後에 러시아內의 非로시아民族의 거의 全部가 民族自決權을 들고 나와 러시아로 부터의 分離를 要求하게 되어 新生 共和國이 瓦解의

3) 上掲書 p. 21, p. 23.

運命에 봉착하게 되자 레닌은 적지 않은 失望과 놀라움을 禁치 못했다고 하는데 民族自決이 統一에 優先할 수 있다는 可能性이나 必然性을 豫見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고, 소련의 聯邦制는 그에 對한 하나의 解決策으로서 取해진 것이라고 하겠다.

聯邦制로 해도 共產黨組織을 통해서 統一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基本前提는 푸를레타리아의 階級的 利害가 民族自決의 利益과 自由보다 優位에 선다는 것이나 그것은 革命當時에 있어서나 지금에 있어서나 實際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民族의 分離權을 認定하면서도 그것을 分離의 義務와 混同시 키려고는 하지 않았고, 分離權의 承認은 決코 分離反對의 宣傳과 煽動의 自由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條件을 添加했던 것이다. 民族解放鬪爭이 푸를레타리아革命에 有利하여 그것에 利用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 民族主義의 方向으로 이끌어진 때에는 이것을 볼세비즘에 있어서는 反動的 브르조아지의 <民族主義的 偏向> 이라고 낙인찍어 왔고 소위 <브르조아民族主義>를 革命에 對한 敵으로 規定했으며 푸를레타리아國際主義와는 敵對되는 것으로 보았다. 4) 푸를레타리아國際主義를 위해 民族主義를 排擊하는 이러한 教義가 그 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實現되지 아니하고 共產圈內에 있어서도 오늘날 國家別 共產主義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民族問題를 너무나 간단히 取扱한 實證을 보여주는 것이다. 共產圈內에 있어서도 國家間의 利害가 完全히 一致할 수는 없고, 푸를레타리아의 利害가 國際的 또는 超國家的으로 同一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스탈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民族運動을 共產革命을 위해서 利用하려고 하였지만 民族運動 또는 民族鬪爭은 外見上으로는 「全民族的」인 性格을 띠더라도 이것은 다만 外見上의 것에 지나지 않고 本質에 있어서는 항상 브르조아民族鬪爭이고 主로 브르조아에 有利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民族도 言語, 地域, 經濟生活, 文化的 共通性에 立脚하는 共同体로서 이러한 모든 特徵이 하나로 結合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한 特徵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다른 어떤 特徵이, 또 다른 경우에는 第三의 特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唯一한 本質的 特徵과 같은 경우 없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다만 여러 特徵의 集合에 지나지 않는 民族이라는 것은 브르조아의 이고 民族運動도 브르조아의 이라고

4) 上掲書 p.26.

規定함으로써 民族主義을 否定하고 푸를레타리아國際主義를 擁護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自決權을 認定하고 있어 矛盾된 二重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民族自決權에 대해서 留保의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民族은 自己의 運命을 自由로이 決定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라고 留保를 붙였고, 또 「民族은 自治의으로 해나갈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分離하는 權利조차 가지고 있다. 그러나……」라고 制限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現實政治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브르조아民族主義의 率直한 容認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正反對로 푸를레타리아의인 民族自治의 要求에 대해서 冷酷하고도 暴惡한 抑壓으로 나가므로서 定見이 없었다기 보다 必要에 따라 態度를 마음대로 달리하였다. 革命直後(1917年12月) 소련政府 自身에 의한 브르조아·핀랜드의 獨立宣言은 前者의 例이고, 이것을 始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中心으로 하는 全 러시아刃境地帶에서 反볼셰비키의인 브르조아 諸政府가 誕生하자 스탈린은 그 直接의 責任者로서 各 方面에서 猛烈한 非難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는 民族問題에 대한 그의 態度를 「左」로 硬化 또는 急變하여 自決權을 브르조아의인 것이 아니라 勤勞階級の 自決權으로 解釋해야 하고 自決의 原則은 社會主義의 諸原則에 從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sup>5)</sup> 그 以後에 있어서의 그의 態度는 이렇게 急轉換한 立場에 서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그의 民族理論이 質的으로 弱하다는 것과 브르조아의 民族自決에 대한 푸를레타리아의 民族自決의 本質把握에 있어서 失敗했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또한 그는 民族의 自由平等 그 自体에 대해서 조금도 敬意를 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며 結局 自決을 顯하는 少數民族彈壓의 大民族主義者로서 끝나게 하는 結果가 되었다. 그 中間에 1929년에는 브르조아의 民族과 社會主義的 民族이라는 民族의 두가지 類型을 設定하기도 하였고 1950년에는 다시 民族以前에 民族體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民族이 生成했다고 한 近代以前에도 民族은 아니지만 그 胚芽가 있었다고 追加를 하기도 하였다. 그의 理論上의 不備는 이렇게 마구 變更을 加해도 補完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根本的으로 는 스스로 러시아民族主義에 執着하고 世界的인 規模의 共產主義 擴大를 위해서

---

5) 柴田高好, 맑스主義 政治論에 있어서의 民族理論의 再檢討, 竹原 編著 前掲書 pp.95-100 參照

利用할 수 있는 경우에는 民族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抑壓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民族分裂을 助長했다는 非難을免치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러 면에서 指摘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을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는 것과 民族自決權은 勤勞階級の 自決權으로 解釈해야 한다고 한 것, 同一民族의 經營主와 勞動者가 서로 理解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民族의 「文化的 共通性」을 真正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한 것도 그 예이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結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의 民族概念에 있다. 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民族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文化的 共通性에 立脚하는 共同体로서 他 民族에 比해서 경우에 따라 그중 어느 한 特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添加해서 이러한 特徵의 하나라도 欠如하게 되면 그것만으로서 民族은 民族으로 成立하지 않게 된다고 한 점이다. 6) 이것을 萬一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그 自身에게 責任이 있는 分斷國家에 있어서는 經濟生活의 共通性이 없기 때문에 同一民族이 아니라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暫定的인 分斷도 民族을 달리하게끔 하는 것이 된다.

勿論 그의 民族概念은 二次大戰 以前에 내린 것이고 그의 死後에 있어서의 그에 대한 批判과 事態의 變遷은 그의 理論에 따를 수 없게 하는 것이지만 到處에서 民族分裂을 助長하고 實際로 두 나라의 分斷에 責任이 있다는 非難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의 末期에 衛星國家들의 自主化努力을 彈壓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民族輕視의 証拠이며, 結局 그의 死後에 있어서는 共產圈內에 있어서 國家別 共產主義의 方向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民族은 無視할 수 없는 것이고, 共產圈內에 있어서도 國家間의 利害의 對立이 있고 國家의 利害가 勤勞者의 國際的 團結에 優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맑스·엥겔스 以來의 國際主義는 幻想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

맑스·엥겔스에서 레닌을 거쳐 스탈린에 이르는 共產主義 民族理論은 지금에 와서는 古典으로 化한 것이 많고 그간에 補充 또는 變更되어 一慣性이 없었으나 共產主義와 共產化라는 基本戰略에는 다를바 없고 이 때문에 古典에서

6) 上掲書 pp.95-96參照.

「教訓」을 찾아 새로운 事態下에서도 適用해 보려고 다시 試圖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例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民族을 代表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레닌에 있어서는 社會가 브르조아民主主義(資本主義)로부터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社會主義)로 移行하는 現代에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을 그 民族의 意思를 代辯하는 者로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인 共産黨員은 각 民族의 엘리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分斷國家 雙方間의 交渉에 있어서 그들이 代表의 問題를 이러한 式으로 提起하더라도 貫徹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 交渉에 있어서 雙方의 諸政黨과 社會團體 代表를 參席케 하자고 主張하는 例를 볼때 그 底意가 共産黨의 主導權 貫徹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革命直後에 있어서 帝政로시아 領域內의 非로시아 諸民族의 分離를 赤衛軍에 의한 彈壓과 分離反對의 煽動과 少數派의 불세비키의 반란, 스탈린에서 본 바와 같은 民族自決權의 解釈變更(프롤레타리아의 自決權)과 聯邦制採択으로 謀免하는 한편 全聯邦을 통한 唯一한 存在인 共産黨을 利用하여 이 聯邦을 中央集權化 또는 統一할 수 있었듯이 衛星國家에 대해서도 各國의 共産黨과 그 「正統性」認定을 통해서 이들 國家를 統制할 수 있었는데 事情은 漸次 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革命後에 共産黨에 의한 旧로시아 帝國領土의 再征服을 여러가지의 惡棘하고 民族自決과는 背馳되는 方法으로 遂行했듯이 共産國家에 對해서 國家別 共産主義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다시 再征服을 試圖할 可能性은 남아 있는 것이며 아직 支配해 보지 못한 地域에 대해서는 「民族自決」을 煽動할 수도 있는 것이다. 旧領土의 再征服 方法을 스탈린은 國際政治面에서 適用하였고, 지금도 그것을 全的으로 拋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레닌과 스탈린에 있어서는 真正한 民族主義는 敵待視하거나 抑壓하였고, 스탈린의 말처럼 民族問題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이라는 一般의 問題의 一部分이며 프롤레타리아트는 獨裁의 問題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레닌은 韓國 共産主義運動에 대해서도 民族主義化를 反對하고 民族獨立運動의 소위 「브르조아」의 性格을 警戒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反帝國主義的 革命性 때문에 戰略적으로 그것을 利用하려고 한 것은 7) 지금까지에 본 그 一般路線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레닌과 스탈린에 있어서의 反帝國主義,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프롤레타리아

7) 梁好民, 前掲書, PP.30-35 參照.

民族自決, 帝政로시아 領土의 再征服, 國際的 共產化의 企圖 등등의 背後에는 強한 로시아民族主義가 作用하여 로시아의 大國主義 또는 새로운 共產帝國主義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資本主義 國家 特히 英, 美에 대한 競争心과 「超越慾望」이 作用하고 있다는 것은 兩人的 初期부터의 여러 發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被壓迫民族의 解放이라고 하는 것도 結局 自己들 陣營에서 自己들의 主導에 따르는 條件下에서의 支援을 통한 獨立을 말하는 것이 되며 여기에서 純粹한 民族獨立의 支援이란 볼 수 없고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冷酷性을 보여 주는 것이다. 共產主義는 소련의 大國化에 寄與 또는 利用된 面을 看過할 수 없으며, 民族問題도 또한 처음부터 無視되거나 달리 利用되어 왔다. 소련革命 初期와는 狀況이 달라진 지금에 와서 共產陣營에서 새로운 民族理論을 提示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아직도 레닌, 스탈린의 基本路線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例로서 소련이 後進國과의 關係에서 提示한 소위 「民族的 民主主義」(1960年 모스크바宣言)도 이에 바탕을 둔 民族運動을 階級鬭爭으로 移行한다는 戰術的 表現이라고 보여 지고 있다. 1968년에는 보다 民主的이고 「人間的」인 社會主義路線을 取하려고 한 체코에 대해서 소련은 武力으로 侵犯을 하였으며 체코의 狀況에 맞는 社會主義路線을 取하려고 한 共產黨 指導者들은 除去되고 말았다. 폴란드, 헝가리에 대한 抑壓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方式과 統制를 어떻게라도 強制하려는 意圖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다만 유고와 中共에 대해서는 例外로 그 強制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中共과의 關係는 이데올로기의 差異 때문이기도 하지만 兩國의 民族主義의 對立이기도 하다.

### III. 現況의 檢討

1920年代에서 50년이 지난 1970年代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소련의 民族問題에 대한 政策은 基本的으로는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殖民地 또는 從屬國에 대한 政策도 그러하다. 20世紀에 들어와서 特히 第2次大戰後에 많은 殖民地가 獨立하여 主權을 가진 民族國家가 되었으나 實際로는 아직도 政治的, 經濟的으로

從屬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植民地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소련 共產黨의 綱領은 各 民族國家에 대해서는 兄弟의인 同盟을 結成하고, 民族獨立의 獲得과 強化를 指向하는 諸民族과 植民地體制의 完全한 打破를 指向하는 全 民族에 대해서는 援助를 提供하는 것을 目標로 삼는다고 한다. 그리고 各 民族國家는 「客觀的」으로는 主로 「進歩的. 革命的. 反帝國主義的 勢力」이라고 생각되고, 被壓迫民族의 民族主義는 抑壓에 反對하는 一般民主主義的 內容을 가진다고 評價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広範한 「愛國的 民主勢力」의 統一의 可能性이 있고 또 그것이 必要하다고 한다. 8)

이와같이 如前히 弱少國家와 被壓迫民族에 呼訴하고 있는데 「從屬」, 「兄弟的」, 「進歩的. 革命的. 反帝國主義的」, 「愛國的」등의 用語에 問題가 있으며 「同盟」과 「援助」의 眞實性도 소련의 衛星國家에 대한 지금까지의 態度로 보아 問題가 된다.

中共도 또한 그들대로 反帝國主義와 反植民主義鬭爭 帝國主義者들의 「犯罪的陰謀」, 民族獨立과 國家主權, 民族的 「民主革命」등의 用語를 驅使하면서 콩고등 아프리카와 그외의 地域의 여러나라에 接近하였고 또 계속 接近을 試圖하고 있다.

이러하여 弱少國家中에서 共產主義方式을 다르려는 部類에서는 소련接近系와 中共接近系 그리고 國家的 또는 民族的 共產主義를 내세우는 系列등 세가지가 있게 된다. 이들은 모두 맑스. 레닌主義 革命論者에 속하며, 共產主義者 以外에 그 國家內에서 根本的 變動을 가져온後 그 國家利益에 따른 外交政策을 遂行하려고 하는 革命的 民族主義者 (Revolutionary Nationalists)와 한 國家의 範圍를 넘어 여러나라가 共同으로 革命運動을 遂行하려고 하는 汎民族的 革命論者 (Pan-national Revolutionaries) 그리고 한 國家의 既存 政治制度에 對抗하여 그 內部的 少數民族이나 特定地域의 自治를 要求하는 地域的 革命的 民族主義者 (Regional Revolutionary Nationalists)도 있다. 이것을 특히 아프리카에서 그러하지만 맑스. 레닌主義 革命論者가 위에서 든 그 以外의 革命論者와 다른 點은 소위 「科學的 社會主義」에 立脚하는 共產國家를 樹立하려고 하는 點과 地域的 또는 汎民族的 單位의 革命運動을 排擊하는 點, 모든 不関与

8) 中西 治, 소련의 外交, 1971年, p.138.

(nonalignment) 政策에 反對하고 어느 한 共產陣營에 公公然하게 加担하는 것을 強調하는 點에 있다. 9)

소련은 共產國家가 自己들 陣營에 加担할 것을 要求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方式에 따르고 그에 從屬할 것을 要求하며, 各國의 歷史的 發展段階, 「進歩的」인 民主的 傳統, 慣習과 文化와 理念에 따라 그에 適合한 社會主義를 建設하려고 하는 人民의 要求에도 反對했다. 소련이 要求하는 方式이란 中央集權의인 共產黨 支配方式만이 아니라 重工業爲主의 工業化方式과 모든 主要 工產品 生産에 있어서 1人當 生産業績이 短時日內에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 따라 가고 또 넘어서는 것, 스탈린이 1950年에 체코의 共產黨指導層에 要求한것 처럼 生産과 輸出을 東歐에 指向케 하도록 180度 變更하고 特別 大量的의 重工業製品을 다른 社會主義國家(特別 소련)로 보내는 것 등이 包含되어 있다. 政治的 隸屬뿐만이 아니라 經濟的 隸屬도 強要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그 結果 重工業爲主로 因해서 는 체코의 경우 農業, 輕工業 消費製品과 食料品 生産, 輸送, 住宅建築, 貿易 등 다른 모든 分野의 發展을 犧牲시키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生産의 非能率性이 增加하고, 生産技術의 現代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過去에 評價를 받던 체코 輸出品의 質은 低下하고, 其他 市場의 喪失과 貿易의 適切性 低落을 가져 왔고, 人民의 生活에 많은 支障을 가져 왔다. 完全히 中央集權化된 經濟計劃의 命令 經濟의 性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체코의 勞動生産性은 先進 資本主義國家에 따라가기는 커녕 1966年에도 벨즈, 西獨 英國의 約 半이었고 瑞西와 스웨덴의 5分の2, 美國의 約 4分の1이었다. 그해의 生産品 單位別 또는 GNP \$ 1,000 당 에너지 및 鋼鐵의 消費量도 그 消費量이 가장 적은 瑞西에 比해서 約 5倍 내지 4倍에 達하고 그외의 經濟指數도 低調하였다. 모든것의 根本原因은 中央集權의인 官僚的 經濟統制를 包含하는 소련식의 命令的 行政方式( Command System of administration)에 있었다는 것이며, 그 後의 經濟改革은 이것을 除去하고 市場과 價格 貨幣 등의 經濟的 機能을 回復하며 市場의 利潤動機를 賦與하고 貿易을 行政機關으로부터 分權化하며 各 企業체의 勞動者代表가 委員會를 構成하여 社會主義的인 管理를 맡게 하였다. 이러한 廣範한 改革은 甞경 共產

9) Colin Legum, Africa's Contending Revolutionaries, in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2, pp.6-8.



黨指導層의 更迭로 政治的 改革도 가져 와서 1968年初는 체코의 「봄」이 되었으며 체코인들은 이러한 社會主義의 經濟體制위에서 政治的 民主主義를 樹立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西歐 民主主義의 欠點을 避하면서 그보다 더 民主主義를 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그들이 目標로 한것은 스탈린식의 獨占的 權力體制와는 訣別하는 根本的 變動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그외의 共產國家 指導者들은 이러한 改革이 그들의 地位에 致命的인 威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資本主義를 再導入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코에 適合한 보다 「現代的이고 人間的이며 民主的인」 社會主義를 建設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民主的인 「傳染病」이 그들 自身의 나라에 傳播될까 해서 結局 武力으로 彈壓하고 말았으며 체코인들에게는 그들의 「自由」가 소련軍의 占領에 의해서 救濟되었다고 說得하려 하였다. 다시 소련의 方式은 強要되었고 체코는 混亂과 危機에 빠지게 되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도 事態는 크게 安定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10)

체코는 二次大戰中 소련의 占領으로 소련의 衛星國家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소련의 支配와 統制가 이렇게 強하다는 것은 다른 衛星國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과 소련의 「援助」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國家나 民族에게도 비슷한 支配와 統制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다.

共產圈內에서도 各國의 相異한 狀況과 經濟向上에 對한 人民의 要求는 소련式 方式의 劃一的인 強要를 漸次 어렵게 할 것이고 소련 自体도 經濟方式의 緩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實際로 各 國家別 社會主義와 소련經濟의 改革을 보이고 있지만 소련의 大國主義와 새로운 帝國主義, 메시아의 民族主義 (Messianic Nationalism)는 어떠한 形態로든지 緊要하게 支配를 追求할 것이다. 真正한 메시아 (Messiah)는 되지 못하였고 一定한 이데올로기와 敎義를 통해서 利他的인 救濟가 아니라 支配와 征服을 擴大하려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背後에는 圧倒的인 武力이 있고, 그 이데올로기에는 資本主義의 弱點을 指摘하는 힘도 있으며 折一的으로 어떠한 外部의 援助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弱少國家나 被壓迫民族에게는 하나의 救援要求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0) Ota Sik, Prague's Spring: Roots and Reasons - The Economic Impact of Stalinism, in Problems of Socialism, May-June 1971, pp. 2-10 參照.

그 援助라는 것에는 條件이 따르며 國際政治의 現實에서는 露骨的으로 自國의 利益이 追求되고 있다. 眞正한 國際主義는 보이지 않으며 超強大國의 하나로서의 世界的인 責任을 負擔하고 있지도 않다. 世界 여러 곳에서 分斷과 民族分裂, 民族間의 相殘이 일어난데 대해서 一方을 支援함으로써 解決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責任은 오직 相對方에게만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同一 民族間의 敵對와 相殘이 結局 누구를 위하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分斷國家의 統一은 分斷된 雙方의 合意가 가장 어려운 點이겠지만 周邊의 關係國家들의 內面的 態度에도 달려 있는 것인데 소련의 경우 그 勢力圈의 喪失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그 勢力이 縮少 또는 不確實하게 되는데 대해서도 反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非共產系에 속하는 分斷國家의 一方은 他方과의 關係改善과 함께 소련과의 關係樹立도 考慮할 必要가 있을 것이며 西獨은 이 예에 따르고 있다. 西獨은 1970年에 獨蘇基本條約을 締結하였고 最近에는 西獨議會에서 東西獨 基本條約을 批准하였으며 소련과의 經濟 文化交流 增進 및 航空交通에서의 協助를 規定한 3個 條約을 推進하고 있다.

東西獨基本條約으로 戰後 20餘年間의 敵對關係를 解消하고 東西獨 住民들의 相互訪問, 經濟 文化交流 등 關係改善의 積極 推進이 可能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東西獨 및 소련과의 關係改善이 統一에의 길이 될 수도 있겠으나 바로 統一을 保障하는 것도 아니고 統一과는 關係없이 그것만으로서의 意味를 가지는데 그칠 수도 있다. 소련은 統一된 獨逸의 強大化를 憂慮하는 나머지 그 統一을 願치 않는 것으로 一般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소련은 分斷國家의 統一에도 障礙要素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고 民族의 悲願에는 自己들의 利益 때문에 無關心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共產化統一이 不可能한 限, 分斷國家의 다른 一方과의 關係改善이 고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IV. 展 望

맑스의 여러豫言, 즉 將次的 世界革命이 資本主義社會와 民族國家를 消滅하고 勞動階級 統制下的 超國家의 國際社會를 出現시킬 것이 라는 豫言 또는 歷史分析

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共産圈内部에서도 高次的인 統一이 아니라 民族國家 單位로 利害가 對立하고 特別히 소련과의 關係가 그러하며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共産國際主義라는 理念은 民族國家의 理念이 얼마나 強간가를 옮겨 評價하지 못한 탓이고, 結局 그것을 克服하지는 못하였다. 勞動階級の 利害가 國際的 또는 全世界的으로 一致할 수는 없는 것이며 共産主義 그 自体가 本來 國家單位的 性格을 띤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따라서 全世界的인 生産, 交換, 分配의 體系를 隨伴하는 眞實로 國際的인 共産主義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勞動階級の 利益이 共産主義에 의해서 보다 向上되었다면 勞動階級은 보다더 民族主義의 傾向을 強化하고 보다더 國家에 依存하여 愛國의 또는 國家의이 될 것이다. 소련에서는 처음부터 或은 特別히 스탈린에 이르러 共産國際主義라는 것이 러시아 民族主義에 利用되거나 그것에 立脚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는 國內에서는 共産主義의 強化와 함께 民族主義를 鼓吹하였고, 民族主義 鼓吹를 통해서 共産主義를 強化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特別히 그는 二次大戰에 있어서는 民族主義를 最大限으로 利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련이외의 다른 國家나 地域의 民族主義는 無視하거나 抑壓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의 死亡後에 共産圈은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지고 國家別 共産主義의 傾向을 보이게 되었으며 각 블록사이의 對立조차 보이고 있다. 같은 블록안에서도 체코와 東獨과 의 사이에서의 Franz Kafka 에 關聯된 紛爭, 유고와 불가리아와의 사이에서의 Macedonia 에 關聯된 紛爭 등 소위 「社會主義國家聯合」, Socialist commonwealth, 内部에서도 軋轢모델 (Conflict Model) 을 보여주고 있다. 11)

國家別 共産主義의 立場에서는 共産主義世界를 成就하는 唯一의 正確한 方法은 各國에서 個別的으로 共産主義를 樹立하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며 이것은 소비에트 러시아를 母國으로해서 그 周邊에서의 共産主義軌道라는 스탈린의 主張에 挑戰하는 것이다. 共産國家들이 過去의 民族主義를 再強調하려는 決意를 높이게 되자 크레믈린에서도 不得已 漸次로 그 立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모스크는 共産主義를 規定하는 唯一의 場所는 아니라고 讓步하게 되었고 이러한 共産主義의 民族主義 또는 共産民族主義 (Communist nationalism) 는 앞으로

11) Henry Krisch, The GDR and Soviet Policy in Germany, Interest Assertion in an Unequal Alliance, 1971.p.1.

長期間의 勢力으로 남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2)

맑스의 共產主義는 本來 國家的 單位에서 可能한 것인데 國際的인 것으로 만들려는 戰略을 內包시켰으며 레닌과 스탈린은 이것을 러시아의 利益을 위해서 利用하였으나 結局 成功을 보지 못하였다. 共產國家들이 國家別로 共產主義方式에 따라 大衆 특히 勞動階級에게 生活의 向上을 가져오고 國家威信을 높여주며 資本主義國家에서 보다 더 安定되고 平等한 生活을 保障하게 되었다고 宣傳하고 資本主義國家에 대한 敵對意識을 助長한다면 大衆을 더욱더 그들대로의 民族意識을 갖게될 것이며, 맑스의 豫言과는 달리 民族主義의 傾向을 強化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大衆은 外部世界와는 遮斷되어 資本主義國家의 實情을 알지못하고 敵對心과 함께 優越感과 使命感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分斷國家에 있어서의 共產側은 보다 더 이러한 傾向을 나타낼 危險性이 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의 民族主義는 自由陣營國家의 民族主義와는 性質이 다른것이 되기 쉽고, 共產主義의 民族主義中에서도 極렬한 것이 되기 쉽다. 分斷狀態가 길어질수록 民族主義內容이 달라지고 同一한 民族이라는 觀念이 稀薄하게 되며 言語, 經濟, 生活, 文化 등의 差異때문에 事實上 民族이 달라질 可能性조차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다. 스탈린은 앞에서 본것처럼 經濟生活의 差異가 당장에 民族을 달리하게끔 한다고 하였지만 數千年의 歷史에서 20~30年의 分斷과 差異로 民族이 달라질만큼 同一性과 同一感情이 弱化한것은 아닐 것이다.

共產主義는 本來 國際的인 것이 아니라 國家的 性質의 것이며 實際로 國家單位로 組織되어 強化가 試圖되고 있으므로 國際的이기 보다 國家的이다. 自由陣營에 있어서도 民族的, 國家的 單位로의 集結傾向은 強하고 UN과 같은 國際機構도 完全히 國際的인 것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共產國家에서 그들대로의 民族主義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보다 더 優勢하나의 問題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보는 見解도 있지만 13) 北韓에서는 이데올로기가 民族主義보다 더 強調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그곳에서 強調되고 있는 것을 新聞을 통해서 細密하게 調查研究한 것에 따르면 14) 愛國보다는 社會主義, 「國家機關」이나 個人보다는 黨이 더 強調되고 있고, 32個人 되는 大衆動員方法中 黨 밑에서의 成果 黨 밑에서이 能率이 나서널리즘 밑에서의 成果

12) Louis L. Snyder, The New Nationalism, 1968, p. 312.

13) Snyder, op. cit., pp. 318-319.

14) 李文永, 北韓行政權力의 變質要因에 관한 研究, 1969年에서 申宗淳, 近代化 行政方式의 比較, 安保研究 第2輯, 1972年 P. 35에 引用.

와 能率보다 더 強調되고 있다. 그리고 黨 밑에서 能率을 올리는 방법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나누어 ① 이데올로기의 要求 ② 一般의 方法改善 ③ 具體의 方法改善 ④ 教育의 強調 등의 順位로 나타나 있고, 내셔널리즘 밑에서 能率을 올리는 方法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나누어 節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教育등이다.

共產國家는 共產主義를 樹立하려고 함에 있어 民族主義의 目標를 가지거나 그것이 基礎가 된다고 하겠지만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民族主義를 利用하며 그 이데올로기와 民族主義가 混合된 特異한 民族主義 또는 共產主義의 民族主義가 되어버린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民族主義는 그곳에서도 消滅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國家에서 이데올로기와 方式을 달리하면서도 真正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發展과 成長과 國家利益을 追求하고 있고 各國의 民族主義的 國家中心의 傾向은 오히려 增加하고 있다. 萬里長城을 살과 피로 새로 만들고자 하는 中共의 國歌에 이르기까지 150個가 넘는 國歌에는 모두 民族的, 愛國의인 內容이 담겨있다. 15)

國際主義는 共產國際主義를 包含해서 모두 民族主義에 優勢하지는 못하고 있고 많은 新生國家에 있어서는 새로이 強한 民族意慾을 나타내고 있다. 既存國家에 있어서는 民族主義的 傾向이나 國家中心, 國家利益追求에 있어서 減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國家間의 條約과 協定, UN의 여러 活動 기타 國際法의 體系는 漸次 增加하고 있으나 아직 國家中心 또는 國家單位를 벗어날 수는 없다.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힘의 關係는 여전히 存続하고 있으며, 國家利益을 위한 各國間의 同盟方式과 兩大陣營으로의 分裂도 根本的으로는 變하지 않고 있다. 相異한 이데올로기와 體制사이에서의 平和共存의 努力은 繼續되고 있으나 融合의 努力은 不足하고 또 어려워보이며, 競爭은 여전히 繼續되고 있다. 世界國家, 國際憲法, 世界語, 統一된 世界史 編纂과 같은 理想을 내세우는 사람도 많으나 아직은 理想에 지나지 않으며 UN도 本來의 目標를 充分히 達成하지는 못하고 있다.

各 國家와 民族의 利益이 中心이 되고있는 現狀態에서 民族主義의 減退는 어려워 보이고 또 將來에 있어서는 없앨수 없는 것이며 없앨 必要도 없다. 그

15) Snyder, op.cit, p.363.

러나 그 過剩은 막아야 하고 民族과 國家의 立場에 서되 同時에 國際的, 世界的인 立場을 더욱더 強化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交通 通信의 發達과 各國間의 經濟的 利益의 關聯이 增加하고 있는 現狀下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며 人類의 發達水準으로 보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民族主義가 各各 그 內容을 달리해서 利己와 敵對와 相互犧牲의 原因이 된다면 人類의 基本問題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으로서 그 基本問題의 未解決을 나타내는 것이며, 人類의 將來도 問題가 된다. 건전한 民族主義와 真正한 國際主義의 兩立 또는 後者の 前者에 대한 優勢가 漸次로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主義를 政治的으로 惡用한다든지 一定한 利己를 위한 結付시켜 歪曲한다든지 敵對時, 征服의 意圖에 動員한다든지 하는 共產主義의 民族主義는 가장 危險하고 真正한 國際主義와 人類發展의 要望에 逆行하는 것이 된다. 特別히 分斷 國家에 있어서의 共產側의 民族主義의 歪曲과 惡用은 統一에 障礙가 되는 것이며 唯物論的 歷史觀에 의해서 民族史를 달리 着色하고 自己民族에 대한 民族觀을 달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分斷 國家의 統一努力에 있어서 同一民族이라는 점이 가장 強한 接着劑이며 雙方의 모든 異質의 要素를 이것으로 解消할 수 있는 最高의 「呼訴價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問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呼訴는 繼續되어야 하고 雙方의 民族觀의 差異解消와 理解增進과 融合을 위한 모든 努力이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一方의 感傷的인 民族主義와 他方の 極烈한 共產的 民族主義와의 差異에서 새로운 真正한 民族主義를 찾아 共同의 基盤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理解增進을 위한 努力과 함께 家族찾기로 부터 始作해서 慎重하게 交流와 協力과 融合의 길을 擴大해야 할 것이다. 言語의 差異가 擴大되지 않도록 同一化의 努力이 併行해야 할 것이고 初等教育에서 부터 敵對感과 偏見의 除去는 勿論이고 一體感의 涵養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努力도 利己를 위한 差異를 解消하지 않는 限 바로 統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것이 達成할 수 있는 것은 一體感의 接近위에서의 平和共存의 程度일 것이다. 平和共存은 소련外交政策의 基本原則의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共產圈全體에서 原則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 그것은 소련이 美國을 壓倒하지 못할 뿐더러 美國과 自由陣營의 여러 國家와의 經濟, 技術面의

努力이 必要하다는 計算에서 平和무드下에서의 實力培養을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共產圈域의 現狀維持 또는 固定을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어쨌든 平和는 바라야 할 것이나 平和共存이라는 것이 共產側의 地位固定과 統一에의 障礙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分斷國家의 統一에 있어 同一 民族이라는 點이 最強의 接着劑 또는 最高의 「呼訴價值」라고 생각하는데도 問題가 없지 않고 또 共產則에 있어서는 民族보다도 이데올로기가 더 優位에 있다는 點이 統一에의 가장 큰 難關이 되고 있다. 共產側에 이것을 解消하려는 意圖가 있는것 같지는 않으나 다함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아야 한다. 以上에서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처음부터 民族主義보다도 共產國際主義를 내세우면서도 共產主義擴大를 위해서는 被壓迫民族解放을 부르짖고, 民族의 自決權을 主張하면서도 이것을 彈壓하는 兩面性과 그 背後에 러시아 民族主義 또는 大로시아主義 새로운 共產帝國主義가 強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民族의 概念을 爲始하여 부르조아 民族主義와 푸를레타리아 民族主義를 나누는 點과 經濟生活의 差異가 바로 民族을 달리하게끔 한다는 主張, 푸를레타리아 民族代表說 등에서 民族分裂 助長의 癖이 있는것도 指摘하였다. 共產國際主義는 幻想으로서 實現不可能한 것이 實增되었으며 共產主義는 本來 性質上 國際的이 아니라 國家單位의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國家別 共產主義라는 지금의 傾向속에서도 소련의 支配強化의 可能性을 볼 수 있었으며, 特히 共產國家에 있어서 民族主義가 共產主義 또는 그이데올로기를 위해 利用되거나 惡用되고 이데올로기와 結付된 共產主義의 民族主義로서 危險性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分斷國家에 있어서의 共產側의 歪曲된 民族主義가 統一에 障礙가 될 수 있는 點과 民族이라는 點이 統一에의 가장 強한 接着劑가 되지않을 수도 있는 點과 또 하나의 克服해야 할 가장 큰 難關으로서 共產側이 民族主義보다 더 優位에 두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있으므로 함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아야 한다는 點도 指摘하였다.

相互間의 接近을 위한 모든 努力을 慎重하게 展開할 必要性을 말했지만 그 限界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民族的, 國家的 單位의 國際政治라는

現實에서 漸次로 건전한 民族主義와 真正한 國際主義와의 兩立 또는 後者の 優位라는 方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民族이나 國家 相互間의 對立과 相互犠牲을 止揚해야 하는 人類의 基本問題가 남아있는 限에서는 누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三. 統一과 關聯된 民族主義의 歷史

#### I. 統一國家形成 및 維持와 民族主義

韓半島에서 統一된 民族國家를 形成한 歷史過程의 始源은 新羅의 統一이라고 하겠다. 三國以前의 時期는 民族國家라기보다는 部族國家의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三國의 競爭을 剋服한 新羅의 統一國家形成이 民族主義의 始源이며 民族國家形成의 始初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民族國家形成은 歐洲諸國의 그것보다 적어도 7世紀나 빠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新羅가 統一을 하기 이전에는 三國이 서로 同一한 民族的 環境에 있으면서도 國家意識을 달리하고 있었다. 4世紀부터 6世紀에 걸쳐 이들 三國은 各기 자기 나라의 國家意識을 높이기 위해서 佛敎思想을 方便으로 이용했다는 共通點이 있으나 競爭의인 文化와 制度를 통하여 다른 雙方을 흡수하려 하였고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났다. 특히 高句麗는 祠堂制度를 新羅는 花郎制度를 채택하므로서 競爭的 立場에서 三國統一이라는 民族國家形成의 基를 마련하여 왔다. 1)

新羅가 統一을 이루어 가는 過程에서 唐의 힘을 方便으로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때부터 우리의 民族主義의인 歷史가 淸끗하다고도 할 수 있다. 660年과 667年에 百濟와 高句麗에 進入하여 三國을 統一한 新羅는 方便으로 이용했던 唐軍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671년부터 676년에 걸쳐 新羅는 援軍의 地位에서 百濟와 高句麗地域에서 準植民經營을 하려는 唐軍을 逐出하는 싸움을 하였던 것이다. 2)

逐唐의 싸움에서 新羅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全韓半島가 이미 同一文化(文化的 統合)를 形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그에 기초한 民族意識과 民族主義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新羅統一期의 民族主義는 두가지 側面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國土統一을 위한 前提로서의 民族主義이다. 同一文化 즉 文化的 統合性을 유지하고 형성시킴으로서 韓半島의인 民族主義를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르는 國家統合을 하려는 것이다. 물론 三國間에 또 三國內에 民族的 同一體感이完

1)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1972. pp.10-11.

2) 韓佑근, 韓國通史, 1970. pp.88-91.

3) 高句麗가 祠堂을 통한 忠, 孝, 信을 敎育하고 新羅가 世俗五戒를 敎育함으로써 基本的인 精神支柱와 文化는 同一化의 可能性을 지니고 있었다.

熟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면에서의 民族主義는 萌芽의 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統一을 完成하고 民族國家의 보존을 위한 民族主義이다. 즉 唐이라고 하는 他國에 對한 排外性을 지니는 民族主義이다. 統一을 지원한 唐이 百濟地方 및 高句麗地方을 植民地하러 하자 이를 追放하기 위한 民族主義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新羅의 政治的 統一과 民族國家形成이 곧 內的인 民族意識 또는 民族主義의 形成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다. 4)

그것은 實에 지나지 않았고 支配階層의 貴族主義的인 性格을 지니는 것이었다. 國民의 이고 全般的인 民族主義는 新羅統一에서 後三國 및 高麗의 再統一이라는 긴 歷史過程을 거치는 동안에야 비로소 뿌리깊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먼저 領土的으로 統一한 新羅는 文化的 溶解過程을 거쳐 民族的 統合을 꾀하였다. 즉 政治權力의 統合을 先行시키고 民族文化統合을 後行시키는 方式를 취하였다. 民族文化統合을 위한 노력을 하는 近百年間에 韓半島에는 韓民族이 하나의 완전한 民族國家를 형성하여 갔다고 하겠다. 종래에 있었던 部族國家의 諸要素를 제거하고 三國間에 異質性을 지녔던 文化를 新羅의 인 것으로 變容시켜 가는 동안에 政治的으로 뿐만아니라 文化的으로도 同一民族國家를 형성하고 部分的으로는 國民의 民族主義를 세워갔다.

그러나 新羅의 이러한 努力은 國土를 統一한 後 100년도 못되어 萌芽되기 시작하였으니 後百濟 및 後高句麗의 등장때문이다. 三國으로의 再分裂은 政治的인 것이 그 要因이 되는 하였으나 民族史的인 입장에서 본다면 民族的인 結合력이 部族的인 結合력에 의해서 밀려났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後三國의 登場은 韓半島에 있어서 民族國家形成을 一時的으로 後退시킨 것이었다고 하겠다. 後三國이 생기게 된 것이 주로 政治的 權力鬭爭때문이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成立되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民衆의 前王朝에 대한 復古心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이 復古意識과 三國으로의 再分割은 韓半島의 인 民族意識의 形成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後三國을 타개하고 國土를 再統一(918年)한 高麗가 세워짐으로서 우리國土에

4) 統一研修所, 前掲書 p.11.

는 民族意識 및 民族主義가 기틀을 잡았다. 高麗를 創建한 王建太祖의 「十訓要」에 나타난 自主精神은 高麗朝를 一貫한 自主民族觀의 기틀이 되었고 對外政策의 理念이 되었는데 이것이 韓國民族主義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新羅가 民族을 意識한 民族統合을 한 面이 적었음에 대하여 高麗朝의 統一國家는 民族을 意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國家를 建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新羅가 民族의인 각도에서 文化統合을 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高麗는 檀君神話에 의해서 民族文化 내지는 民族精神에 의해서 民族文化의 統一化를 하였던 것이다. 5)

對內的인 結束을 위한 手段으로 활용했던 檀君神話와 敎精神은 民族的 團結의 口實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前者는 對外的인 抵抗力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後者는 固有의 敎의인 民族文化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民族的인 文化가 형성되고 對外的 民族主體性이 확립되어 民族國家가 完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高麗朝에서 民族自主意識에 依한 統一된 國家를 유지하고 發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와 같은 內治의인 것에서도 淵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外國의 作用도 적지않았다고 생각된다. 6)

그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하나는 高麗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地方이 安定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宋, 元, 明등의 滅亡을 前後하여 大陸은 政治的 不安狀態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滿州地域과 中國의 中原間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다. 大陸에서의 不安은 大陸에 대한 政策이 自主의일 수 있게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蒙古의 侵入이다. 이 侵入이 있기 前까지 內部에서 安住하던 우리 民族은 하나의 치욕의 歷史를 맞보게 되었고 이로서 民族意識이 크게 提高되기에 이른 것이다.

高麗朝를 통하여 民族意識이 確立되었다고는 하나 지금의 韓半島 全部가 우리 祖上의 生活領域圈은 아니었다. 咸鏡道와 平安道の 北部는 韓民族의 生活圈밖에 있었던 것이다. 世宗大王以後에야 비로소 지금의 우리 民族의 生活圈이 確定되었기에 이르렀다.

---

5) 上揭書, p.12.

6) 上揭書, p.12.

어떤 뜻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統一된 民族國家는 李朝에 이르러 完成을 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滿州의 諸族과 韓民族이 압록 및 頭滿의 兩江을 境界로 民族的 生活圈을 確立하였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全半島의 統一國家가 完成되고 儒教에 바탕을 둔 民族文化가 同質化 되었다고는 하나 對外的인 民族主義는 16世紀 및 17世紀에 있었던 두차례의 外侵(丙子胡亂과 壬辰倭亂)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었다.<sup>7)</sup>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民族主義는 外侵과 깊은 관련이 있다. 外侵을 豫防하기 위한 對外的 結束의 必要에서 그리고 外侵이 있는 후에는 그것에 對抗하기 위한 精神의 支柱로서 民族主義가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비록 前者의 경우는 下向的(支配者에 의해서 主導되는)이고 後者는 上向的인 것(民族的 源泉을 갖는것)이었는데도 모르나 外侵威脅이 民族主義를 자극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歷史的으로 보아 우리의 民族主義는 統一國家의 形成 또는 그 維持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어떤때(統一의 時期)에는 統一國家形成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렇지 않을때는 安全保障이라는 側面에서 民族主義가 크게 일어나고는 하였다. 그러던 것이 日本에 의해서 主權을 뺏긴 후에는 獨立을 위한 排外的이고 抗爭的인 民族主義로 변하여 갔다.

## II. 解放後의 統一指向과 民族主義

解放後의 統一을 指向한 民族主義의 전개는 크게보아 단계를 거쳐 변하여 왔다고 하겠다.

第一段階는 解放에서 46년까지이다.

즉 南北韓에서 美·蘇의 軍政의 종식되고 政治的 分割이 확정될때까지에 전개된 民族主義이다. 이때의 民族主義는 共產主義라든가 反共產主義라든가 하는 이데올로기에 덜 包裝된 것이 었다는데 그 特色이 있다. 이러한 社會 및 政治體制的인 理念이 民族主義와 別로 결부되지 않았던 때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解放後의인 民族感情이 作用했기 때문이다. 日本植民地下로 부터 解放

7) 上揭書, p.13.

되자 政治指導者들과 一般大衆은 어느 의미에서는 感傷的 統一觀과 民族主義의 意識을 가졌던 것 같다. 美國과 소련의 힘이 韓半島에 作用하고 있다는 現實性과 이러한 民族感情은 調和되지 못하고 말았다. 現實性은 冷戰的인 이데올로기였는 바 이것이 感傷的 民族主義를 壓倒하여 감으로서 純粹民族主義理論은 現實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의 것과는 관련되는 것이지만 南北韓의 各各 美軍政과 蘇軍政이 우리 民族을 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對內外的으로 힘의 源泉은 우리 民族이 아니고 美國과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運命을 決定하여가고 있었다. 美.蘇의 軍隊進駐와 그에 따르는 軍政의 實施가 單一民族의 統一을 沮害하는 障壁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해결할 者는 그들 自身이라고 美.蘇는 생각하고 있었다. 韓國이 分斷을 美.蘇가 解決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때의 美軍政當局의 생각이었고 그에 따라 「美.蘇共同委員會」가 46年 10월에 열렸던 것이다. 8)

美.蘇의 軍政과 그들의 統一努力은 마침내 兩側의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民族主義 또는 統一에 作用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作用要因은 南.北韓에서 美.蘇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民族勢力과 支援을 받는 勢力間의 葛藤을 招來했고 그 結果는 政治的 이데올로기가 感傷的 民族主義를 누르게 되었다.

따라서 解放에서 48년까지의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의 歷史는 脫國際(脫理念)的 民族勢力이 國際性과 理念性이 가미된 民族主義 또는 勢力에 의해서 沒落하는 過程의 歷史라고도 할 수 있다.

南韓에서의 脫國際的 民族主義와 그제 입각한 統一努力은 金九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바 南韓에서는 그러한 勢力의 統一努力의 적어도 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지속되어 왔고 그 힘도 매우 컸다. 9)

이에 대해서 北韓에서는, 그러한 勢力으로서 曹晩植등에 의해서 이끌어진 「朝鮮民主黨」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바 勢力은 南韓에 비하여 빨리 沒落하였

8)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1961. pp. 4-5.

9) 金九氏등이 建國直前이 1948年 4月 30일에 淸양에서의 會談을 위하여 越北하는 事例가 있었다.

다. 共產主義의 本質의 屬性인 國際主義가 이들 純粹民族主義者의 活動을 容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第2段階는 1948년부터 60年前半까지이다. 統一과 관련된 이때의 民族意識은 적어도 그것이 政治指導者의 構想이라는 점에서만 본다면 理念化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 統一政策은 相對方을 呼喚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北韓에 의해서 야기된 韓國戰爭은 理念과 國際主義가 앞서는 吸収主義의 歷史事例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問題의 國際性은 이미 分斷(解放)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후의 歷史過程에서 美·蘇 등의 影響으로 그것이 더욱 굳어져 갔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韓國戰爭을 일으킨 것은 다른 의미에서 더욱 國際主義와 관련된다.

우선 그것은 소련과 北韓이 共產主義의 戰略 및 哲學인 國際主義에 입각한 行動의 結果로 나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戰爭의 遂行過程에서 UN이 관계됨으로서 韓半島問題의 國際性은 汎世界的인 規模와 범위로 갖는 것이 되고 말았다. 또한 北韓의 國際主義와 理念의 爲先性和 強化는 相對的으로 南韓에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켰다.

이러한 過程에서 南北間에는 民族的 同一性이라든가 同胞愛라든가 하는 源泉的인 民族的 느낌보다도 敵對的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國際主義化의 強化에 의해서 結果된 同盟으로 同盟國民에 대한 사랑이 표면에 더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 나기도 하였다.

第3段階는 1960年代 後半이다. 이 時期에는 南北韓이 모두 60年代 前半까지를 기초로 하여 內實을 하여 오면서 그것을 위한 「主体性」高揚이라는 것에 의해서 民族意識을 심어 왔던 시기라고 보여진다. 물론 理念과 國際性이 완전히 除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理念의 固着化위에서의 内部指向的 民族主義가 統一의 前提로서 定立되어 갔다.

「主体性」이 강조된 内部指向的 民族主義(그것은 統一의 前提일 수도 있다)는 주로 自体力량의 整備와 同盟國의 政策變化-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르는-에 의해서 그 기반을 굳혔다.

우리는 60年代 前半의 実績을 디딤돌로 하여 60年代 後半에는 급속한 經濟成長을 하였다. 高度의 經濟成長은 우리에게 自信을 가지게 하였다. 民族的

優越성과 잘 살 수 있다는 希望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自信은 對外的인 主体意識을 낳게 한 要因이다. 한편 國際情勢의 흐름과 특히 美國의 事情은 우리에 대한 支援의 減少라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들 두개의 要因은 一次的으로 友邦에 대한 民族主義를 형성시켰고 主体性を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內實을 위한 內部指向의 民族主義가 나왔다고 하겠다.

北韓도 中.蘇紛爭과 美國과의 관계를 고려한 소련의 支援中斷-完全한 中斷은 아니고 거의 中斷되었을- 등으로 「兄弟國」을 강조하는 國際主義가 內部指向의 民族主義의인 口號로 바뀌었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自主性擁護」<sup>10)</sup>는 唯一思想으로 變容되어 韓半島에서의 긴장을 야기하고 우리에게 대한 威脅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統一問題와 관련시켜볼 때 오히려 1950년의 狀況으로 後退시킬 수도 있는 要因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때의 國際主義가 民族自主性으로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우리를 武力에 의해서 吸收하려는 行動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狀況이기 때문이다.

이 第3段階에서 國際主義보다 民族主義가 앞서고 그것이 統一의 전제로서 강조되었다고는 하나 陣營內的이고 地域內的인 限界性を 벗어 나는 것은 아니었다. 陣營內的, 地域內的인 內實이라는 面이 두드러 지고 全韓의인 超克을 하는 것일 수도 없었다는데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民族主義는 곧 統一과 直結되는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統一에의 過程을 밟는 하나의 時限的인 基盤이라는 意味가 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第4段階는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이 「8.15宣言」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것은 北韓側에서 6.25와 같은 狀況으로의 後退 및 새로운 形態의 各種 挑発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南北間의 「競爭」을 주창한 것이었다고 하겠고 그러한 前提가 받아들여진다면 民族自決의 統一을 위한 努力이 可能할 것이라는 哲學을 表明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8.15宣言」은 統一과 관련한 民族主義的 意志를 表象하는 몇가지 重要한 意義를 지닌다.

첫째 그것은 60年代 後半에 보였던 內實을 위한 主体性的 強調에서 한발짝 앞서는 것이었다. 自體內的 民族主義 또는 單位統合의 民族主体性이 外延化하여

10) 노동신문, 1966.8.12일자 「자주성을 옹호하자」참조

統一로 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南北問題에 「競争」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1950年以來 南北에 있는 民族間에 內面的으로 意識化된 不相從과 敵對概念이 後退하기에 이르렀다. 11)

이것은 南北間에 홀어진 民族이 部分的으로라도 1945年의 意識 狀況에서 統一問題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意識의 契機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뜻을 지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提議는 統治者의인 政治文化圈內에 머무는 것이었고 北韓側에서 받아 들이는 姿勢가 統治者의인 屬性을 지니고 있었다. 北韓側이 「8.15宣言」이 있는 후에도 계속적으로 韓半島에 緊張 要因이 될 수 있는 여러 行動을 한것을 보아도 받아 들이는 姿勢가 大衆의인 立場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結果로 緊張緩和를 꾀했던 이\*提議는 실제로 결정적인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提議方式이 統治者의인 것이었을 지라도 緊張要因과 人爲的 障壁을 제거하므로써 民族的 悲劇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해서 그 提議가 大衆性을 가지는 民族主義였었지만 實効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契機로 71年 8月 12日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한 提議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韓國民族主義는 原型을 되찾기에 이르렀다. 비록 南北間에는 緊張要因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라도 離散家에 대한 人道的인 問題解決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자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는 大衆性을 지니게 되었고 自決性과 主体性을 強化할 수가 있었다.

赤十字會談이 形式論理로 따진다면 人道的인 問題를 다루는 會談이지만 그것이 成功되면 統一에의 중요한 첫단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民族文化統合의 하나의 手段이 될 수도 있다.

赤十字豫備會談이 進行되는 동안에 이루어진 「7.4共同聲明」은 우리의 統一史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事件이다. 聲明에서 나타난 「自主」「平和」, 「民族團合」等 統一의 三原則은 지금까지의 地域的 民族主義를 超軀한 統一을 향한 民族主義의 表現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1945年以後의 三

11) 閔丙天, 統一論議의 諸問題,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刊, 安保研究 創刊號, 1972.p.56.



大歴史 事件中<sup>12)</sup> 우리 民族으로 보아 가장 뜻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1945年の 解放은 「他律」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1950年の 戰爭은 國際主義와 結付된 民族的 悲劇을 가져온 「욕된 事件」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의 聲明은 「自律」에 의한 民族運命決定이라는 점에서 民族史와 統一史에 있어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聲明은 戰爭을 억제(中止)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大衆의 基盤위에서 民族主義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고 하겠다.

어떻든 7.4共同聲明을 계기로 하여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는 統治者的인 것과 大衆的인 것이 완전히 합치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러한 結合 및 團속에 의한 統一에로의 길이 트이고 있는 것이다.

---

12) 三大事件은 1945年の 解放, 1950年の 戰爭, 1972年の 7.4 聲明이라고 생각된다.

#### 四. 統一理念과 韓國民族主義

##### I. 民族統一의 Aporia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는 그 根本에 있어서 對象 克服의 意志에 立脚하여 각각된 西洋 形而上學은 近代에 이르러 결국 技術의 文明으로 전개되고 그같은 技術의 文明은 美·蘇 양대진영의 對立을 자아내게 되어 여기에 이른바 世界의 밤의 時代가 펼쳐진 것이라 하고 있다. 1) 韓半島의 分斷과 6.25 動亂은 그같은 世界의 밤의 時代에 있어서 가장 悲劇的인 事例의 하나였던 것이라 하겠다.

美·蘇 양대진영의 對立은 核武器의 對立으로 전개되고 거기에서 이른바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에 世界史는 드디어 그같은 恐怖의 均衡을 廻轉軸으로 하여 일대 轉換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歷史的인 潮流의 일대 轉換은 1972년에 이르자 아시아에 있어서도 自由·共產 兩陣營間의 對立의 해소와 共存을 계획에 이르렀다.

이러한 世界史的인 轉換過程에서 分斷과 對立에서 民族分裂이 격화되어온 韓半島의 統一問題가 새로운 脚光을 받고 浮刻되기에 이른 것이다. 1972년의 7.4 共同聲明은 이와같은 歷史的인 狀況에서 對立關係에 있는 南北이 民族的인 立場으로 되돌아 가서 自主的으로 또한 平和的으로 協商에 의거하여 統一을 이룩하자고 하는 共同聲明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共同聲明과 그것에 立脚한 南北 赤十字會談 및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談等이 進行됨으로서 統一의 길이 트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 그것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北韓共產黨은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 至上의 理念으로 삼고 있으며, 그 理念의 實踐을 그 절대적인 黨是로 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唯物辯證法 및 唯物史觀에 立脚한 鬭爭的인 理念이다. 이같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信奉하는 共產黨은 브루즈와 資本家 階級 및 그들이 지배하는 브루즈와 自由國家와의 對立鬭爭에 있어서 歷史的인 最終의 勝利를 豫言하는 唯物史觀을 確信하면서 唯物辯證法에 立脚하는 共產主義의 戰略과 戰術에 의거하여 이른바 無慈悲한 鬭爭을 감행해 왔다.

1) Martin Heidegger ; Einfuhrvng in die Metaphysik, 1953.S.28.

唯物辯證法은 헤겔 ( G.W.F.Hegel, 1707 ~ 1831 ) 의 唯心辯證法을 계승한 辯證法 이기는 하나, 헤겔 辯證法의 論理範疇인 定立 ( These ), 反定立 ( Antithese ), 綜合 ( Synthese ) 의 對立的 契機의 統一過程에 있어서의 이른바 宥和思想을 철저히 배격하고 對立的 契機 상호간의 무자비한 鬪爭에 의한 그 對立的 契機의 一方의 沒落과 다른 一方의 승리로서 새로운 統一段階가 實踐의으로 정취된다는 思考方式에 立脚하고 있다. 그것은 무자비한 鬪爭의 論理인 唯物辯證法에 立脚한 共產主義의 戰略과 戰術은 本質的으로 革命手段에 의한 브루즈와 資本家 階級の 박멸을 획책하는 것이며 또한 戰爭에 의한 브루즈와 自由國家의 倒滅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黨이 브루즈와 資本家階級 및 그들의 自由國家의 協商과 平和共存을 수락하는 것은 그 真意에 있어서의 妥協과 宥和를 위한 것이 아니라, 對立鬪爭의 새로운 形態로서 즉 戰略的인 의미에서 수락하든가 아니면 임시적인 進술로서 수락할 뿐이다.

共產黨의 그것은 唯物辯證法에 立脚한 戰略과 戰術의 本質은 共產黨의 實踐의 歷史가 또한 立証한다. 東西陣營의 平和共存을 최초로 꾀턴화한 흐르시초프 ( N.Khrushchev ) 가 平和共存이란 共產主義者에 있어서는 새로운 經濟的인 對立 鬪爭을 意味한다는 것을 明言한 바 있다. 또한 往年의 中國大陸에 있어서 共產黨과 國民政府가 合作에 의하여 平和共存을 협정하였지만 그것은 合作은 共產黨의 戰略에 불과했던 것으로서 未久에 共產黨에 의한 國부군의 무자비한 소탕과 대만의 축출이 감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記憶에 새롭다. 그리고 또 1973年 2월에 협정된 越盟과 越南의 休戰協定도 休戰以後에 있어서의 越盟의 軍事力 南派를 勘案한다면 印度支那半島에 있어서의 越盟과 越南의 平和的인 共存이란 결코 존속될 수 없을 것이고, 필경 또 다시 武力에 의하여 印支半島의 統一問題가 판가름날 것임은 明白하다.

이처럼 共產黨의 戰略과 戰術의 本質은 그 唯物辯證法의 論理에 있어서 또한 그 實踐의 歷史에 있어서 對立者인 相對方의 破멸을 위한 무자비한 鬪爭을 감행하고 그 實踐方法으로서 革命과 戰爭의 手段을 취하게 되어 있고 또한 취해 온 것이다. 共產黨의 本質이 이와 같은 것이어늘 北韓共產黨이 7.4 共同聲明에 동의하고 赤十字會談 및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을 수락하였다 하여 과연 그들의 赤化統一의 基本戰略이 바뀐 것으로 判斷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革命手段과

奇襲作戰에 의한 南韓 전복의 戰略이 拋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北韓 共産黨은 적어도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共産主義를 拋棄하지 않은 限 그들의 南韓 적화의 基本戰略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꿀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北韓 共産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共産主義를 拋棄하지 않은 限 그 理念의 本質에 있어서 平和的인 협상에 應하여 南北統一을 할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 共産黨이 7.4共同聲明을 위시한 南北의 平和的 協商에 積極的으로 호응하게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南北의 緊張緩和를 假裝함으로써 對南 軍事行動에 있어서 決定的인 阻止役割을 하고 있는 駐韓 美軍의 철수를 促求하고, 日本과의 經濟交流를 트며, 國際社會에 있어서 南韓과 對等한 位置를 獲得하고자 하는 戰術의 變動인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여 北韓 共産黨이 7.4共同聲明 以來로 對南 平和協商에 積極的인 자세를 취하게 된것은 그들이 共産主義 理念에 立脚한 적화통일의 基本戰略 그리고 또 그 實踐의 手段으로서 革命과 戰爭의 手段을 拋棄한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그같은 戰略을 効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戰術의 變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南韓은 어떻게 統一을 達成하려 하고 있는가. 南韓은 7.4共同聲明 以來 그 政治體制를 變혁하고 經濟建設을 서두르고 있다. 南韓은 資本主義 體制에 立脚하여 北韓을 압도하는 經濟力을 育成함으로써 南北統一을 達成하려는 政策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輸出額 100억불, 國民所得 1,000불을 目標로 하고 있는 1980年代에 이르면 北韓을 압도하는 經濟力이 建設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統一의 길이 트일 것으로 믿고 있다. 그같은 方向에서 우선 第1段階로 南北의 平和的인 協商에 의하여 南北交流의 길을 틔우므로서 民族的인 융합을 통한 이른바 民族統一에의 길을 점차로 도모하고, 나아가서 第2段階로 經濟力이 北韓을 압도할 1980年代에 이르러 最終的으로 南北의 政治的 統一을 達成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南韓의 統一戰略은 곧 經濟力을 育成하여 北韓을 經濟的으로 압도함으로써 統一을 이룩하자는 戰略은 北韓이 萬若에 南韓과 同一한 資本主義의 經濟體制라면 効果的인 統一戰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부강한 經濟力의 建設로서 北韓經濟를 압도하고 隸屬시킴으로써 北韓의 經濟的인 屈服下에 統一이

達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아닌 共產主義 經濟體制일 뿐더러 오히려 反對로 바로 그같은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타도하는 것을 그 唯一至上의 目的으로 삼고 있는 共產主義 理念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共産黨은 南韓의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부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座視하지 않을 것이고 부강하게 성장하기도 전에 革命과 戰爭의 手段으로서 그 파괴를 劃策할 것이다. 또한 南韓의 이른바 民族的 統一을 통한 政治的 統一이라는 二段階에 걸친 漸次的인 統一戰略도 北韓의 革命과 戰爭이라는 統一戰略 때문에 實現될 可能性이 희박하게 될 것은 明白한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南韓의 統一戰略은 北韓共産主義者의 攪亂戰略때문에 統一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統一戰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南北의 統一戰略을 살폈는데 北韓이 共產主義體制로 나아가고, 南韓이 資本主義體制로 나아가는 限 즉 南北이 對立 鬪爭의인 異質的인 이데올로기 體制를 強化해 나가는 限 平和的 南北統一이란 達成될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것을 認識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사실 平和的인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難問題 즉 아포리아 (Aporia)인 것이다.<sup>2)</sup> 우리는 여기서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아포리아이고, 그같은 아포리아를 아포리아로서 認識한다는 것 그 自体가 아주 重要하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한다.

南北統一의 아포리아를 아포리아로서 認識하지 않고, 實現될 可能性이 희박한 統一의 戰略들을 마치 實現될 可能性이 있는 統一戰略처럼 假裝한다면 첫째, 그같은 虛構의 統一戰略들 때문에 真正한 統一戰略이 은폐될 것이고 둘째, 虛構의 統一戰略들은 國論의 分裂과 国力의 浪費를 招來하게 되며 셋째, 그같은 虛構의인 統一方向은 終局에 가서는 나라를 망치게 되는 무서운 結果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平和的인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아포리아임을 認識하고 實現 可能性이 없는 그 모든 虛構로서의 統一戰略論을 排除한다는 것이 重要한 일이라는 것이다.

2) Aristoteles의 形而上學에서 나오는 Aporia는 通路가 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a-poros에서 이루어진 말로서 難問을 意味하고 있다.

이처럼 革命과 戰爭의 手段을 排除한 平和의인 南北統一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아포리아인데도 불구하고 現在의 歷史的인 狀況과 地政學的인 位置를 勘案하여 南韓은 오직 다만 그같은 平和의인 南北統一의 길을 摸索해야 할 宿命에 처해 있다는 것이 바로 南韓에 있어서의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反對로 北韓은 南北統一에 있어서 革命과 戰爭의 手段을 排除하고 있지 않았을뿐 아니라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오히려 그같은 革命과 戰爭戰略을 強化하고 그 효율적인 實踐을 위하여 南北의 平和協商을 利用하며 南韓駐屯의 美軍의 徵收를 促求하고 있는 것이다.

美.蘇 및 美.中共의 격렬한 對立이 平和的인 共存으로 전환하여 越南 및 아시아에서 美國勢力이 徵收를 시작하고 世界가 多極化하는 그러한 國際狀況에 있어서 美軍의 韓國駐屯이 永続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데, 美國勢力을 代行한 日本이 또한 軍事的으로는 中立的인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앞으로의 南韓의 安全保障은 날이 갈수록 不安함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같이 생각한다면 南北對立과 그 統一問題에 있어서 앞으로의 歷史時間은 南韓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두운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歷史時間이 南韓에 不利하게 기울어지기 전에, 平和的인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가망성이 희박한 아포리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아포리아를 돌파하여 統一의 길을 틀 수 있는 어떤 高次的인 平和統一의 戰略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II. 統一理念의 定立

西歐에서 시작된 近代產業主義는 이데올로기의 對立이란 해결할 수 없는 矛盾을 자아냈다. 그것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對立이다. 資本主義는 브루즈와 資本家階級의 이데올로기이며 共產主義는 프롤레타리아 勞動者階級의 이데올로기이다.

브루즈와 階級은 封建體制를 打倒하고 이른바 產業革命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近代的 生産體制 즉 資本主義體制를 확립한 社會勢力으로서 그 歷史的 功績은 빛난다. 이러한 브루즈와階級의 이데올로기는 自由主義인데, 그와같은 自由主義의

哲學的 基礎를 確立한 思想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헤겔( G.W.F.Hegel )의 이른바 自由史觀이다. 헤겔에 의하면 精神의 本質인 自由야말로 歷史의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이다. 人類歷史는 自由의 實現을 目的으로 하여 辯證法的 三段階 즉 1人의 自由만이 실현되는 아시아적 專制政治體制, 몇사람의 自由가 실현되는 그리스, 로마의 貴族政治體制, 萬人의 自由가 실현되는 게르만계의 立憲君主政治體制로 展開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自由主義의 ایده올로기下에서 이룩된 近代資本主義社會는 資本家 브루즈와階級에 있어서는 地上樂園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階級에 대하여서는 失業과 기아의 問題때문에 그다지 달갑지 못한 社會가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ایده올로기로서 형성된 것이 마르크스의 共產主義였음은 주지하는 事實이다. 마르크스의 共產主義는 헤겔의 絶對精神의 辯證法哲學에 對立하여 辯證法的 唯物論哲學을 그 ایده올로기의 基本哲學으로서 定立했다.

마르크스는 그같은 辯證法的 唯物論에 立脚하여 헤겔의 自由史觀에 대립한 唯物史觀을 定立하였으니, 그것은 브루즈아 階級の 沒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樂園으로서의 共產主義社會의 實現을 唯物辯證法的 論理에 立脚하여 전개한 史觀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自由 資本主義社會의 矛盾과 破綻 및 沒落의 必然性을 經濟學的 영역에서 辯證法的으로 분석하고 입증한 理論이었다.

以上에서 論한 바 브루즈아 資本家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ایده올로기의 인階級對立과 鬪爭은 드디어 國境을 넘어서 世界史的인 規模로 擴大되어 第二次大戰의 終決과 더불어 美.蘇 兩大陣營의 격렬한 對立鬪爭으로 展開된다. 그리하여 分裂된 兩大陣營 사이에는 可恐할 無底의 深淵( battonless abyss )이 開였으니 여기에 人類의 沒落을 가져올 無( nichts )가 開示된 것이다.

이와같은 世界史的 矛盾의인 展開過程에서 韓民族은 그같은 ایده올로기의 對立鬪爭에의 참여를 強要당하였으니 國土의 分斷과 民族의 ایده올로기적인 分裂對立 및 6.25 動亂의 民族相殘이 바로 그 것이다.

韓民族은 他律的이기는 하였으나 그 歷史的인 宿命으로서 近代 西歐產業主義의 모순으로서 전개된 ایده올로기의 對立을 스스로의 矛盾對立으로서 받아 드려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矛盾對立을 超克하지 않고서는 民族統一을 이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참으로 韓國民族은 近代 產業主義의 罪過로서 벗어선 이른바 植民主義의 虐待 밑에서 苦難을 겪었을 뿐 아니라 또 바로 그 近代 產業主義의 모순을 스스로의 모순으로 삼아 그 解決을 強要당하고 있으니 十字架를 등에 지고 世界史의 罪惡과 모순을 贖罪하기 위하여 골고다의 피의 언덕에서 허덕이는 民族이 된 것이다.

그러나 世界史의 罪惡과 모순을 贖罪하고 이데올로기 對立의 아포리아를 해결하여 民族統一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世界史를 文化的으로 先導하는 榮光된 民族이 될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던 弱少民族이 강대국을 圧倒하여 번영하며 또한 邊境地帶의 後進國家가 文化的 中心地域을 누르기에 이른다는 逆說(Paradox)이 世界史의 進行過程이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世界史의인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벗어선 無底의 深淵은 어떻게 超克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無底의 深淵에서 開示된 無는 어떻게 突破될 수 있을 것인가.

「마루틴 하이데거」는 美·蘇의 이데올로기 對立은 그 基本에 있어서 征服意志에 立脚한 프라톤(Platon)이래의 西洋形而上學에 淵源하는 것이라 하고 西洋形而上學의 超克을 問題삼고 있다. 4)

이같은 「하이데거」의 哲學的 自覺에서 생각한다면 世界史의인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開示된 無는 西洋形而上學을 超克한 새로운 思想과 真理가 自覺되지 않는 限 克服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無底의 深淵에서 開示된 無는 새로운 思想의 創造없이 克服突破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왜냐하면 無를 克服하고 突破하는 길은 오직 創造의 길 以外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둘이켜 생각컨대 人類의 歷史에는 그들의 죽음을 意味하는 無가 여러차례에 걸쳐 開示된 바 있고, 人類은 그같은 無가 歷史의으로 開示되었을 때 언제나 創造의 活動으로서 그같은 無를 克服 突破하여 새로운 繁榮을 이룩했던 것이다.

3) Richard Hare ; Pioneers of Russian Social Thought, p.247.

4) Martin Heidegger ; Was ist Metaphysik ? Einleitung.



이러하면 아득한 原始時代 人類가 자연환경과 對立에 있어서 環境에의 適應力을 상실하여 環境과의 對立이 세차지고 그같은 세차 對立의 사이에 人類의 죽음을 意味하는 無가 開示되었을 때 人類는 도리어 자연환경을 改造함으로써 環境과의 對立을 統一하여 살아 나가는 方法 즉 文化的인 生活方式를 創造함으로써 그같은 無를 克服 突破하고 새로운 變容을 이룩했던 것이다. 가까이는 封建時代 末期 封建貴族階級과 農奴階級間的 分裂對立이 극심하여 封建社會의 終말을 意味하는 無가 開示되었을 때 브루즈와 資本家階級이 등장하여 새로운 資本主義社會를 創造함으로써 그같은 無를 克服하고 찬란한 文明과 繁榮을 가져 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歷史를 본다면 人類 歷史의 發展過程을 曷케 自由史觀처럼 단순히 自由의 발전과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며 또한 마르크스 唯物史觀처럼 단순히 經濟的인 生産力의 發展過程으로만 把握해서도 안되고, 根本的으로는 人類의 歷史를 人類生命의 創造的인 發展過程으로 自覺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創造的인 活動을 重視하여 人類歷史의 發展을 把握한 學者들 중에는 벨그손(Henri Bergson),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 등이 있는데 특히 社會科學의 分野에 있어서 政治活動을 많은 社會 勢力들간의 分裂對立을 統一하여 새로운 生活秩序를 創造하는 活動으로서 把握한 學者가 있으니 그는 바로 知識社會學 및 政治社會學을 창시한 칼.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이다. 5)

以上과 같은 創造的인 史觀의 視座에서 世界史的인 이데올로기 對立의 사이에서 開示된 可恐할 無를 어떻게 克服하고 돌파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직 對立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生活體制와는 다른 새로운 生活體制를 創造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生活體制의 創造에는 새로운 哲學과 科學이 自覺되고 탐구되어야 하며 또한 새로운 志向의 社會勢力이 形成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같은 새로운 哲學과 科學은 다음 項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새로운 志向의 社會勢力에 관하여 論하고자 한다.

5) Karl Mannheim ; Ideology and Utopi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100-104.

中世 末期 封建貴族階級과 農奴階級 사이에서 그 當時 새로운 生活體制를 創造할 社會勢力으로서 브루즈아 資本家階級이 대두하였다는 것은 이미 論하였는데 지금 近代의 終幕期에 있어서 브루즈아 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사이에서 歷史的인 새로운 生活體制를 창조할 社會勢力이 또 다시 形成되고 있으니 그 社會勢力은 이른바 인텔리겐차 新中間階層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인텔리겐차의 新中間階層은 近代의인 이데올로기 對立을 초극하여 計劃된 福祉社會構造의 高度 知識社會를 建設하려 하고 있다는 그 志向을 여기서 부연해 두고자 한다.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世界史的인 이데올로기의 對立과 거지서 開示된 無는 새로운 生活體制의 創造로서 克服 突破되는 것이라 할 때 韓半島에서 展開된 同一한 構造의 이데올로기 對立과 無의 開示 및 거지서 다른 南北統一 問題의 아프리카도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對立을 超克한 새로운 生活體制의 創造로서 비로소 克服할 수 있으며 또한 解決할 수 있는 問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對立을 超克한 새로운 生活體制는 近代의인 이데올로기의 生活體制 보다는 그 次元에 있어서 높은 體制일뿐 아니라 歷史的으로는 世界史的 潮流에 앞서는 未來志向의 前進的인 體制이다.

이같은 高次元일 뿐만 아니라 未來志向의 生活體制를 創造的으로 建設해 간다면 低次元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體制는 對立鬭爭할 相對者의 契機를 尙見할 수가 없게 되어 歷史的인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스스로 解体와 同化作用을 일으켜서 여기에 마침내 統一은 平和的 順理的으로 達成되기에 이를 것이다.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地政學的인 見地에서 본다면 現在의 이데올로기 對立의 次元에서 南北이 鬭爭을 계속할 경우 大陸의 共產大國들을 등에 업은 北韓에 對하여 앞으로의 歷史的 時間은 점차로 有利하게 作用하겠끔 되어 있다. 그러 南韓이 만약에 對立的으로 이데올로기 體制를 超克한 새로운 體制를 創造한다면 地政學的인 不利性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歷史的 時間은 오히려 南韓에 有利하게 作用하게 될 것이다.

以上에서 南北統一의 아프리카를 解決할 唯一한 길은 對立的인 이데올로기 體制를 超克한 새로운 體制를 創造하는데 있다는 것을 論하였는데 새로운 體制의 創造에는 그 體制의 建設에 앞서서 建設의 理念이 創造되어야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高次元의 體制建設에는 理念의 先導가 必須不可欠한 것인데 하물며 韓國같은 後進社會에는 計

劃된 理念의 先導가 더욱 必要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생각한다면 南北統一問題에 있어서의 가장 基本的인 問題인 同時에 또한 先決인 問題는 對立인 이데올로기를 超克한 統一理念의 創造와 그 定立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 Ⅲ. 創造的 民族主義

美·蘇의 兩大陣營의 이데올로기 對立은 1950年代에서 60年代에 이르자 可恐할 核武器의 對立으로 展開되어서 그 對立 사이에는 人類의 破滅과 總體的인 沒落을 가져올 兇惡한 無가 開示된 것이다. 이와같은 空前의 事態에서 兩大陣營間에는 人類의 破滅을 각오하지 않는 限 戰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恐怖의 均衡이 이룩된 것이다. 그것은 恐怖의 均衡을 廻轉軸으로 하여 兩大陣營은 戰爭을 拋棄하고 平和共存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나아가서 戰爭을 志向하여 편성된 兩大陣營은 드디어 그 編成의 解体를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陣營 편성의 解体는 여기에 兩極인 이데올로기 對立을 超克한 이른바 새로운 民族主義 (Neo-nationalism)의 多極化 秩序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多極化秩序의 理念인 新民族主義는 兩極인 이데올로기 對立의 사이에서 開示된 無의 深淵을 突破하여 創造되어 나온 民族主義로서 兩極인 이데올로기 對立을 超克하여 民族社會를 基盤으로 하는 後-近代인 새로운 生活體制를 創造하려는 志向의 創造인 民族主義이다.

이와같은 新民族主義는 戰爭拋棄의 이른바 恐怖의 바란스를 契機로 하여 形成된 民族主義이므로 專制主義時代의 重商主義의 民族主義 또한 帝國主義時代의 實利主義의 民族主義 등 侵略主義인 民族主義들과는 그 類를 달리하여 일체의 侵略戰爭을 否認하고 國際인 平和共存을 志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新民族主義는 새로운 生活體制의 建設에 있어서도 專制의 狹은 民族主義들과는 類를 달리하고 있다. 즉 專制의 民族主義가 有機體說에 立脚하여 個人의 實存인 獨自性을 無視하고 專制的 내지 獨裁인 政治形態를 취한

데 대하여 新民族主義의 創造的 民族主義는 無의 基盤을 자각한 個人的 實存性을 존중하고 實存 상호의 自由로운 民主主義의인 統合過程에서 새로운 生活體制를 創造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은 民主主義的 政治形態를 志向하고 있다. 이같은 新民族主義의 社會勢力基盤은 第二項에서 논했듯이 인텔리겐차의 新中間階層인데 그들은 無의 基盤위에서 不安과 孤獨을 자각하고 있는 群衆들이다. 6)

近代的인 生活體制의 終末을 의미하는 이데올로기 對立의 사이에서 개시된 無는 또한 새로운 社會的 勢力으로서 新中間階層의 基盤으로서 자각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無는 實存的인 個人 自由의 基盤으로서 個人에 대해서는 權力의 支配가 排除되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生活體制는 創造的인 民主主義의 原理에 立脚하여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無는 또한 實存的인 個人間에 資本의 支配가 배제됨으로서 經濟的, 社會的인 平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즉 그것은 無는 自由와 同時에 平等의 基盤으로서 自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이리하여 近代的인 이데올로기의 生活體制의 終末과 더불어 無의 基盤위에서 不安과 孤獨을 自覺한 新中間階層은 創造的 民族主義 내지 國民主義의 基盤위에서 保障되는 이른바 創造的인 大衆民主主義의 政治形態를 志向하며, 또한 實存的인 平等이 國家의 保障되는 福祉社會形態를 志向하고 있다.

이처럼 創造的 民族主義 내지 國民主義의 社會基盤위에서 建設되는 大衆民主主義의 福祉社會의 生活體制는 無의 自覺위에서 이룩되는 實存的 自由의 創造的인

---

6) K.Young ; Hand Book of Social Psychology 1946.p.408.

7) 無(Nichts)는 여태까지 다만 觀照의 對照으로 자각되어왔는데, 論理的으로는 否定의 根拠로서 자각되었으며(朴鍾鴻著; 否定의 研究參照), 實存哲學 및 政治 心理學에 있어서는 不安과 孤獨의 근거로서 자각되고 또한 佛敎에 있어서는 空의 근거로서 자각되었다. 그러나 無를 實踐의 對照으로 자각한다면 空間的인 分烈 對立과 存在者의 亡滅의 근거로서 또한 그것은 亡滅을 克服하는 創造的 根拠로서 자각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社會哲學의 對照으로는 無는 實存과 實存과의 사이에 連續的인 紐帶의 社會的 支配關係가 非連續的으로 단절되어서 없어졌음을 意味함으로써 自由와 平等의 眞正한 哲學的인 근거로서 자각된다.

이같은 實存的인 自由와 平等을 보장하는 政治社會形態가 바로 民主主義에 入口한 福祉社會體制라는 것이다.

結合을 그 生活原理로 삼는 生活體制로서 資本과 不平等化 原理가 支配하는 近代的인 부르주아 社會의 生活體制보다도 또한 實存的 自由가 無視되고 抑壓되는 프롤레타리아 社會의 共產主義 生活體制보다도 高次元의 生活體制일 뿐만 아니라 또한 歷史的으로 未來志向의 現代的인 生活體制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韓國의 統一理念의 問題를 論한다면 韓國은 위에서 說明한 바 創造的인 民族主義를 그 統一理念으로서 定立해야 하는 것이니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創造的 民族主義는 近代的인 이데올로기 對立을 克服 統一한 새로운 體制로서 大衆民主主義의 福祉社會體制 建設을 志向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 論하였지만 韓國의 南北統一을 現時點의 低次元의인 이데올로기 對立의 立場에서 一方이 他方을 戰爭의 手段으로써 強要하는 方法을 배제하고 오직 平和的으로 統一하고자 한다면 그같은 對立的인 이데올로기를 克服 統一한 創造的 民族主義의 高次元 且 未來志向의인 生活體制밖에는 統一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이 平和的인 統一을 意圖하는 限 統一理念으로서는 創造的 民族主義를 定立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南北統一의 理念은 南北이 이데올로기적으로 分裂 對立하기 以前에 南北民族에 共通한 政治文化의 傳統에 뿌리 박은 理念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같은 共通的인 政治文化의 傳統은 三.一運動以來의 民族主義인 것이다. 三.一運動의 韓國民族主義는 日本帝國主義와의 對自狀態(Fürsichsein)에서 形成된 民族主義로서 韓國이 日本帝國에 대해서 또한 世界列強에 대해서 그 스스로의 民族 正氣를 坦露하였던 것이다. 韓國民族의 民族正氣는 世界 各 民族의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自由와 平等이 바로 道義의 世界秩序임을 주장하고 韓國民族의 自主 獨立의 正當性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이같은 韓國民族主義는 三.一運動以來로 民族의 心田깊이 뿌리 박혀서 韓國民族의 近代的인 政治文化의 土臺가 되고 또한 傳統이 되어온 것이다. 第二次世界大戰의 終戰과 더불어 韓國民族의 分裂과 이데올로기 對立의 強要는 그같은 傳統的 民族主義의 社會底面에의 退行을 또한 不得已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民族의 分裂과 이데올로기의인 對立鬭爭은 民族社會에 죽음의 고통을 과고 民族破滅의 無를 開示한 것이다. 이에 民族社會의 底面깊이 沈潛했던 韓國民族主義의 民族正氣가 또 다시 그같은 民族破滅의 無를 超克 突破하고자 民族의 統一을

이룩할 統一理念으로서 스스로를 創造的으로 顯現한다는 것은 歷史的인 必然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韓國의 民族主義는 지금 이 歷史的 時点에서는 그 歷史的인 必然性에 立脚하여 近代 유럽 產業主義의 矛盾으로서 分裂된 이데올로기의 對立을 그 스스로의 民族正氣에서 創造的으로 超克 統一한 새로운 高次的이며 未來志向的인 生活體制로서 具體化될 段階에 이르른 것이다.

이같이 하여 韓國民族主義가 그같은 새로운 生活體制 理念으로서 創造的으로 具體化되어 民族統一 理念으로서 定立된다면 그같은 民族主義는 南北同胞의 心田 깊어 자리잡은 民族正氣의 顯現이기 때문에 南北同胞의 呼応을 얻게 되고 外來的인 이데올로기의 對立을 克服한 民族의 統一은 필경 達成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民族統一의 理念은 韓國民族의 政治文化의 傳統이며 또한 그 民族正氣의 發露인 民族主義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세째로 地政學的으로 보아 現在 南北으로 分斷되어 兩大陣營의 프론티어로서 자리잡고 있는 南北韓은 이른바 邊境地帶의 位置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分斷된 南北韓이 統一될 경우 그같은 統一韓國은 邊境地帶의 位置에서 벗어나서 地政學的으로 이른바 中央의 位置에 서게 되는 것이다. 즉 美·日의 海洋勢力과 蘇·中共의 大勢力의 中央에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地政學的으로 中央的 位置에 자리잡은 國家는 강력한 主体性이 確立되지 않으면 그 國家의 運命을 保全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中央的 位置에 있는 國家가 主体性이 強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國家들의 波動에 말려 들어 그 安定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強大國에 의하여 잠식을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獨逸과 러시아의 中央的 位置에 자리잡고 있는 폴랜드가 수차례 걸쳐 그들 強大國들에 의하여 잠식 또는 併呑당하여 왔다는 것이 그 例다.

이같은 地政學的인 고려에서 韓國이 統一될 경우에 中央的 位置로 轉換될 것이므로 韓國의 統一理念은 強力한 主体性을 갖춘 理念이 아니면 統一後에 있어서 그 國基를 保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統一理念은 強力한 主体性을 갖춘 理念이어야겠는데 그같은 強力한 主体性을 갖춘 理念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오직 民族主義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實證의인 例를 獨逸에서 볼 수 있는데 유럽의 中央의 位置에 자리잡은 獨逸은 주위의 國家들에 對하여 君臨하면서 호령하였지만 그 主体性的 根基는 켈트, 튀르키예, 헤켈 등의 이른바 獨逸觀念論 哲學에 입각한 게르만 民族主義였음을 주지하는 사실이다.

한 民族이 그들의 民族哲學을 核心으로 하여 民族共同體 意識에서 團結할 때 그들의 그 主体性은 주변의 어떠한 強大國들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지만 그들이 선진 文化國의 政治理念에 傾斜되어서 民族共同體 意識을 망각할 때에는 그 主体性은 상실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國基를 保全할 수가 없는 사태마저 초래한다. 舊 韓國말의 韓國이 그 좋은 歷史的인 例이다. 淸國, 러시아 및 日本에 둘러 싸였던 舊 韓國의 支配層은 李氏朝鮮 五百年의 전통적인 事大主義의 意識構造위에서 向內的으로 民族의 主体性 확립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向外的으로 주변 強大國들의 힘을 빌려서 國基를 保全하려 발버둥 쳤던 것이다. 이같은 向外的인 事大主義 姿勢에서 國內의 指導層은 三派로 分裂되어 三巴戰을 벌리게 되고 주변 強大國들의 勝敗에 있어 日本이 승리하게 되자 主体性이 상실된 舊 韓國은 힘없이 勝者 日本의 植民地로서 스스로의 國家主權을 讓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韓國이 統一된다면 統一韓國은 또 다시 海洋勢力과 大陸勢力의 四大國에 의하여 둘러 싸이게 될 것이다. 혹시 統一韓國에 民族主義에 입각한 強力한 主体性이 確立되지 못하고 向外的인 事大主義 指導層들의 四巴戰이 벌어지게 된다면 殷鑑은 멀지 않으니 또 다시 國基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統一후의 韓國까지 견양하는 民族統一 理念은 民族主義여야 하겠고 그 民族主義는 強力한 主体性을 갖추기 위하여 그같은 主体性的 核心으로 獨逸의 軀만 民族主義처럼 民族主義의 哲學을 확립해야 한다.

以上으로서 韓國의 南北統一理念은 對立的인 이데올로기를 統一해야 한다는 理由에서 또한 그같은 統一理念은 民族的인 政治文化的 傳統에 土臺를 두어야 한다는 理由에서 그리고 또 그같은 統一理念은 統一후의 地政學的인 位置를 勘案해야 한다는 理由에서 民族主義의 理念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究明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結論的으로 그같은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는 그 精神的 核心으로서 哲學的 土臺위에 確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 IV. 民族의 哲學과 統一

韓半島 統一理念의 定立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問題는 近代世界의 ایده올로기적 對立의 分裂에서 開示된 無의 超克方向으로서 顯現되고 있는 創造의인 民族主義의 哲學을 理論的으로 自각하는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統一理念으로서 民族主義 哲學이 理論的으로 確立되지 않는다면 첫째로 對立的인 ایده올로기 哲學의 理念體系에서 向外的 遠心的으로 分裂되어 있는 南北同胞를 向內的 近心的으로 收斂 統一할 民族의 精神의 主体性이 該같은 體系화된 哲學의 自覺없이는 確立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統一體制로서 建設할 創造의 民族主義에 입각한 高次元의 且未來志向의 새로운 生活體制의 創造에 있어서 그 體制創造를 지도하는 科學理論이 그와같은 哲學의 土臺없이는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統一理念의 土臺로서 民族主義 哲學의 理論的인 自覺을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다.

近代產業主義의 모습으로서 전개된 ایده올로기의 分裂과 對立의 底面에서 開示된 無를 知識社會學의 立場, 즉 知識의 存在被拘束性(Seinsgebundenheit)<sup>8)</sup>의 視座에서 생각한다면 該같은 無는 이미 實存哲學의 nihil리즘(Nihilism)에서 自覺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엘케골(Soren A. Kierkegaard 1813-1865)은 近代世界의 合理的인 體系의 哲學的인 表現으로서 간주되는 헤겔의 弁証法的인 合理性의 體系에 包攝되지 않는 非合理的인 例外者(Ausname)로서 實存을 自覺하였다. 즉 實存은 近代世界의 合理的 基盤에서 除外되어 無(Nichts)에 直面한 者로서 不安과 孤獨속에 스스로를 自覺한다. 이와같은 實存의 nihil리즘은 니체(F.W. Nietzsche 1844-1900) 哲學에 이르러 近代文化를 송두리채 否認하는 nihil리즘으로 展開된다.

그러나 그와같은 nihil리즘의 徹底化와 無의 심수한 自覺은 하이데거 哲學에 이르러서 이룩된다. 하이데거는 近代文化 뿐만 아니라 유럽文化의 土臺가 되고 있는 西洋形而上學을 總體的으로 否定하는 徹底한 nihil리즘에 到達하고 심수한 無의 自覺에서 全然 새로운 世紀의 文化의 根柢로서<sup>9)</sup> 이른바 存在(Sein)를 自覺하기에 이른다. 無와 더불어 있는 存在 곧 언제나 無의 面紗布를 쓴 자인

3) Karl Mannheim: Ideology and Wopia. P.69

9) Martin Heidegger: Holzwege.S.300



은 傳統的인 形而上學 때문에 陰蔽되고 忘却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無의 베일을 쓴 자인야 말로 모든 存在者의 故鄉이며 또한 그 眞正한 根源이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와같이 하여 近代世界의 종말 뿐인 아니라 나아가서 傳統的인 西洋文化의 總體的인 否定을 거쳐 새로운 世界의 根源으로서 자인을 自覺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와같은 새로운 世界의 根源으로서의 자인은 神秘的 宗教的인 自覺으로 기울어지고 實踐的인 世界의 根源으로서의 自覺은 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하이데거 처럼 世界의 根源을 時間性的인 面에 기울어져서 接近할 경우에는 그 宗教的 超越的인 面만이 自覺될 뿐이다. 그러나 世界의 根源을 時間性和 同時에 空間性的인 面에서 接近할 경우에는 그 實踐的 現實的인 面이 自覺되기에 이른다. 이와같이 하여 그 實踐的 現實的인 面을 自覺한다면, 無는 단순히 不安, 孤獨의 根拠로서만 자각되는 것이 아니라 空間性的인 分裂對立의 根拠로서 自覺되는 것이고 자인은 그와같은 分裂對立의 統一活動의 根拠로서 自覺되기에 이른다.

無의 根拠에서 分裂對立한 空間性的인 자인에 의한 統一活動은 無를 超克하고 돌파하는 活動으로서 그것은 바로 創造의 活動인 것이다. 이처럼 無의 면紗布를 쓴 자인이 無를 돌파해서 顯現한다는 것은 언제나 創造의 活動인 것이므로 하이데거가 世界의 根源으로서 自覺한 無의 面紗布를 쓴 자인은 時間性和 同時에 空間性에 있어서 自覺한다면 즉 實踐的 現實的으로 自覺한다면 創造의 活動 그 自体인 것이다.

이와같은 創造의 活動은 또한 創造的 生命의 顯現이라 하겠으므로 世界의 根源은 究境 創造的 生命으로서 自覺되는 것이라 하겠다.

世界의 根源을 生命으로서 自覺한 哲學을 주저하는 바와 같이 벨그슨(Henri Bergson 1859-1941)의 哲學이다. 벨그슨의 生命哲學은 生命의 創造的 進化的인 過程을 아름다운 行進曲처럼 展開하고 있다. 그러나 벨그슨의 生命哲學은 空間性的인 根拠인 無를 심각하게 自覺하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空間的인 分裂對立과 그 實踐的인 統一活動으로서의 非連續的인 비약적으로 이룩되는 創造의 深刻한 構造를 自覺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벨그슨의 創造的 進化的인 過程은 한갓된 물의 흐름과 같은 連續的인 生命過程에 不遇한 것이 되고 있다. 無의 深刻한 自覺을 媒介로

하여 自覺되는 創造的 生命의 實踐的인 創造의 過程을 밝힌다면 世界의 根源으로서의 創造的 生命이 스스로의 媒介인 無를 媒介로 하여 顯現할때 精神과 物質로 分裂對立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정신과 물질을 絕對視함으로써 唯心論의 哲學體系가 展開되는가 하면 反對로 또한 唯物論의 哲學體系가 展開되었다. 하이데거는 西洋形而上學을 規定하는 根本的인 思惟는 모든 存在者를 스스로의 主觀앞에 對立시켜서 認識하는 이른바 對象的 思惟라 하고 있다.<sup>10)</sup>

이와같은 對象的 思惟에 있어서 思惟하는 主觀을 爲主로한 主觀主義의 形而上學의 體系가 이룩되는가 하면 반대로 思惟의 對象을 爲主로한 客觀主義의 形而上學의 體系가 이룩되었다. 主觀主義의 形而上學의 體系가 唯心論의 體系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면 客觀主義의 形而上學의 體系는 唯物論의 體系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西洋形而上學은 그와같은 對象的 思惟에 입각하여 왔기 때문에 이같은 主觀과 客觀의 根拠로서의 世界의 심수한 根源인 자인(Sein)은 언제나 은폐되고 忘却되는 運命에 있었다는 것이다. 對象的 思惟는 모든 存在者를 主觀앞에 세워서 對象으로서 認識하는 精神姿勢인데 그와같은 精神姿勢는 根本적으로 모든 存在者를 克服하려는 意志에 底礎하고 있는 것이라 하고 그러한 克服의 意志에 입각한 形而上學은 구경 科學과 技術로 展開되어 오늘날 可憐한 美·蘇의 對立을 자아 냈다는 것이다.<sup>11)</sup>

위에서 論했듯이 오늘날 가공할 美·蘇의 이데올로기 對立은 無의 深淵을 開示하고 그와같은 無의 深淵의 開示와 더불어 그것을 契機로 하여 形而上學에 의하여 은폐되고 忘却되어온 자인(Sein)이 곧 創造的 生命이 顯現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事態를 知識社會學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唯心論과 唯物論의 形而上學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의 分裂對立이 美·蘇의 對立을 媒介로 하여 極限에 도달하고 그 分裂의 사이에 無의 深淵이 開示됨을 契機로 하여 唯心論과 唯物論의 根拠인 創造的 生命이 顯現하기에 이르고 그와같은 創造的 生命에 입각한 네오·내쇼널리즘 즉 創造的 民族主義가 이데올로기의 分裂對立을 止揚 統一할 새로운 生活體制의 理念으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0) Ibid. SS. 224-226

11) Martin Heidegger; Einfufung in die metaphysik. S. 28

이와같은 知識社會學의 視座에서 브루즈아 이데올로기인 自由民主主義의 哲學은 唯心論의 形而上學이고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인 共產主義의 哲學은 唯物論의 形而上學이며 그와같은 對立的 이데올로기를 超克 統一하려는 創造的 民族主義의 哲學은 創造的 生命의 哲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內實的으로 말하여 브루즈아 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이데올로기적인 分裂對立을 民族의 創造的 生命의 顯現으로서 새로운 高次元의 生活體制를 創造함으로써 그와같은 對立的인 이데올로기 體制를 揚棄하고 새로운 民族社會의 統一에 이루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分斷된 韓國의 南北統一은 韓國民族의 正氣 곧 正義의 生氣가 分裂對立의 高梁에서 開示된 無를 契機로 하여 創造的으로 顯現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正義의 生氣를 創造的으로 顯現시키는 活動이야말로 統一課業 수행의 唯一한 實踐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創造的으로 顯現하는 民族正義의 生氣를 理論的으로 結晶시키고 具體化하는 作業이 創造的 民族主義의 理念 밑에서 심수한 民族의 哲學體系를 자각하고 그와같은 哲學에 立脚하여 새로운 民族生活의 體制理論으로서의 科學理論을 研究하는 作業이다. 새로운 體制의 創造를 위한 科學理論은 종전의 브루즈아 社會科學과 프롤레타리아 社會科學이란 이데올로기적인 科學의 旧殼을 벗어나서 全然 새로운 次元에서 體制理論을 科學的으로 研究하는 것이다. 브루즈아 社會科學의 基本立場인 個人自由主義의 原理를 揚棄하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社會科學의 基本立場인 階級平等主義의 原理를 揚棄하고, 民族創造主義의 原理라고 하는 高次的인 立場에서 새로운 體制를 創造하는 科學理論을 研究하는 것이다.

民族創造主義의 原理는 브루즈아 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矛盾對立을 그 뿌리부터 一掃하려는 이른바 新中間階層 主導의 民族社會의 건설을 志向하는 것이다. 이같은 民族社會의 基本的인 構造의 形成과 더불어 民族構成員의 個性을 極限에 이르기까지 發展해 간다면 個性과 個性은 無의 根源에서 實存的인 對立을 이룩하게 된다. 이와같이 無의 根源에서 實存的으로 對立한 個性과 個性의 飛躍의 綜合統一은 새로운 創造를 낳는 것으로서 民族의 生命은 이에 그 質과 量에 있어서 비약적인 發展을 이룩하게 된다.

이와같은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社會에 있어서 個性과 個性의 實存的 對立의 自由와 平等을 保障하는 理論이 社會面에 있어서는 完全한 社會保障下の 이른

바 福祉社會의 理論으로 構想되고 또한 經濟面에 있어서는 公共經濟의 基幹위에서 個人的 自由平等한 經濟的 競爭이 보장되는 이른바 混合經濟理論으로 발전하며 그리고 또 政治面에 있어서는 民族生命을 創造的으로 비약시키려는 이른바 創造的 民主主義 理論으로 전개된다. 만하임(Karl mannheim)은 現代社會는 近代的인 自由放任의 社會에서 計劃된 社會으로 進展되고 있다는 것을 說明하고<sup>12)</sup> 現代社會는 이른바 自由를 위한 計劃社會로 進전되어야 한다고 論했다.<sup>13)</sup> 그러나 自由를 위한 計劃社會라는 이데올로기적인 次元을 넘어서서 創造主義의 原理에 立脚하여 생각할 때 앞으로의 韓國社會는 그 南北統一을 위하여 創造를 위한 計劃社會로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科學理論에 따라 韓國의 社會體制를 轉換해 간다면 國力の 비약적인 培養이 이룩될 것으로 感안된다. 왜냐하면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計劃社會로 발전한다면 現代의 이데올로기體制의 구각안에서 萎縮枯死하고 있는 民族의 生氣가 活潑하게 伸張되고 蘇生하여 그것이 創造的으로 發現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現在 韓國은 資本主義體制의 旧殼안에서 經濟的인 國力の 培養을 서둘러 있는데 과연 그같은 體制안에서 國民의 經濟的인 에너지가 100% 發揮되고 있는가 의문이며 또한 따라서 北韓의 이데올로기體制와의 競爭에서 그것을 압도할 經濟力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은 明白한 것은 아니다. 經濟力 建設에서 勝共統一의 길을 트려는 韓國이 만약에 資本主義體制下에서 建設하고 있는 經濟力이 北韓의 이데올로기 體制의 經濟建設을 壓倒할 自信이 없게 된다면 台灣, 越南등 아시아의 分斷國家와의 政治的 局面과 더불어 韓國의 勝共統一의 길은 암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은 그와같은 分斷國家들과는 方向을 달리하여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超克的 勝共統一의 體制를 建設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같은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새로운 經濟體制의 建設은 그러한 統一을 위한다는 政治的 意味以外에 또한 經濟的인 國力培養에 있어서도 現在의 體制보다 効率的이라는 것을 留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統一의 理念으로서 創造的 民族主義의 哲學과 科學과 科學의 理論을 그

12) Karl Mannheim; Diagnosis of our time. P.1

13) Karl Mannheim; Freedom, power, Democratic Planning P.29

대강에 있어서論하였는데 그렇다면 그와같은 理論을 어떻게 實踐에 옮겨서 統一을 成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現在 이데올로기 哲學에 立脚하고 있는 南北韓 同胞의 精神을 바꾸는 이른바 精神革命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한 現在의 이데올로기 體制를 揚棄하여 이데올로기를 超克한 高次元의 새로운 體制를 建設하는 것이다.

韓國民族은 李氏朝鮮五百年의 事大主義精神에서 그 民族의 쇠잔을 가져 왔던 것이니, 事大主義精神은 向內的으로 民族生命의 활발한 生氣를 위축시키면서 向外的으로는 旧韓國末의 歷史的인 事實에서 보다시피 周圍 強大國과의 關係에서 과별과 分裂을 이르게서 民族國家의 破滅을 가져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創造的인 民主主義의 理念에 입각하여 그와같은 事大主義精神을 一掃하고 民族의 정신을 向內的인 團結과 統一의 方向으로 바꿈으로서 바로 지금 이데올로기의 方向으로 向外化되어 있는 民族의 정신을 統一方向으로 轉換할 뿐만 아니라 장차의 統一韓國이 또 다시 旧韓國 破滅의 前徵을 밟지 않도록 정신적인 主体性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韓國民族은 지금 南北韓을 通하여 對立的인 이데올로기의 哲學體系에서 그 信念體系가 굳어져 있는데 그와같은 個人主義 또는 階級主義의 信念體系를 創造的인 民族主義 哲學의 理念體系로서 바꾸어 가는 精神革命의 作業을 遂行해 가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統一에 있어서의 가장 基礎的인 作業임을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은 民族의 精神革命의 作業과 더불어 生活體制의 轉換作業을 遂行해야 하는데 現在의 이데올로기 體制를 創造的인 民族主義의 哲學과 科學理論에 입각한 高次元의 새로운 生活體制로 전환하는 것이다. 南韓에 있어서의 그와같은 轉換作業은 바로 統一作業의 強力한 實踐으로서 北韓에 있어서의 그러한 體制 轉換作業을 誘發하고 기다려서 韓半島 統一作業은 드디어 完了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高次元의 새로운 生活體制는 단순한 勝共統一의 體制일 뿐만 아니라 世界史에 先驅하는 未來志向의 體制로서 그와같은 體制建設에 成功한다면 民族의 번영과 中興을 가져 오는 民族의 土臺가 확립되는 것이다.

創造的인 民族主義에 입각한 精神革命과 體制轉換은 이처럼 統一을 위한 作業일 뿐만 아니라 世界史에 先驅하는 民族中興의 土臺를 구축하는 作業인 것이다. 地政學的으로 北韓보다 不利한 狀況을 克服하고 勝共的으로 統一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은 오직 그와같은 創造的인 民族主義에 입각한 새로운 體制를 創造的으로

確立하는 길 뿐이다. 왜냐하면 世界史의 潮流는 앞으로 對立的인 이데올로기  
体制의 沒落을 촉구하고 그와같은 高次元 且 未來志向의 体制의 確立과 勝利에  
가담하겠기 때문이다.

## 結 論

(問題點 및 方向)

앞에서 보았듯이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할 경우 그것이 가지는 諸特性 - 自主性과 團結 - 으로 인해서 그것은 自己指向的인 것이게 된다.

民族主義가 自己指向的인 性格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統一과 關聯된 두가지 現象이 派生될수 있다. 하나는 그것이 國際主義나 帝國主義 또는 植民主義와의 鬭爭性을 가지며 그러한 鬭爭性向을 바탕으로 해서 統一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積極主義는 北韓의 경우에서 보다 맛이 붙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他國과의 關係에서 비교적 溫建하며 消極的인 性向을 보이는 것으로서 統一力量을 自体에서 찾는 것이다. 즉 鬭爭武器로서의 民族主義가 아니라 自体力量을 증대하여 그 힘을 기반으로 하려는 態度가 그것이다. 南韓은 바로 이 後者的 性向을 보이고 있다.

南韓에서는 民族主義가 民族的 正統性을 確立하고 統一基盤의 조성을 위한 힘의 內實化를 기하여 民族統合 및 統一을 指向하는 理念의 기틀로 주장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에 대해서 北韓의 경우는 美國이나 日本 및 國際聯合會의 南韓과의 關係斷切을 고려하여 民族主義가 戰略的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南韓의 民族主義는 排他的이기 보다는 오히려 內部指向的인 것이라고 하겠고 北韓의 그것은 排他的 鬭爭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할 경우에 問題가 되는 또하나는 南北韓에 그것에 대한 概念上의 差異가 있다는 點이다. 「스타린」에 의해서 規程된 民族의 概念은 「經濟生活의 共通性」과 「文化的 共通性」을 강조하고 있다.

즉 經濟生活에 共通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勞動者 또는 資本家라는 階級的 性格과도 關聯된 것이다. 따라서 이 論理에 따르면 資本家階級이나 또는 北韓과 다른 經濟生活을 하는 南韓住民은 同一民族이 될수 없다. 이러한 概念에 입각하여 民族主体에 依한 統一을 하려할 경우에는 階級鬭爭이 그 手段으로 活用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점이 우리로 하여금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定立하는데 있어 警戒하

게 하는 點이라고 하겠다.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내세울 경우에 부딪치는 또 다른 問題點은 그것이 지니는 純粹性에서 派生된다. 民族主義는 資本主義와도 또 社會主義와도 結合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政治的 ایده오로기 와도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民族主義는 無色의 理念이기 때문에 그것을 統一理念으로 내세울 때는 統一意欲을 鼓吹시키는 效果를 거둘지는 모르나 指向하는 方向이 무엇하지 못하기 때문에 問題點이 거기에 내포되는 것이다. 民族主義를 내세워 民族意識을 높이고 和解 또는 融合의 捷기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統一成就의 理念으로 그것이 확립되려면 적어도 純粹性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 때 可能하다.

民族主義가 自由主義의 인 색채를 가지고 統一을 指向할 때는 社會主義的인 統一指向과 武力衝突을 일으킬 것이고 그 反對일 때도 또한 같다.

그러하기 때문에 民族主義가 民族主義로서의 純粹性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問題가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民族主義를 統一의 理念으로 할 경우에 일어나는 問題點을 간추려 보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融合의 理念으로서는 民族主義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統一理念이 葛藤의 理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統一을 이루어 놓지 못했다는 點에서 그러하다. 統一의 可能性을 融合의 論理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民族主義에 의해서 具體化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民族主義가 統一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적어도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問題點이 해소되어야만 할 것이다.

第一의 問題의 民族主義를 「排他的」인 것에서 理解할 것인가의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特定國家에 對한 鬭爭理論으로 民族主義를 利用할 수 없다는 點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民族主義를 「排他的 鬭爭手段」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政治的 ایده오로기의 葛藤理論을 믿는 다는 것이 되며 葛藤理論에서는 融合이나 統合의 民族統一理念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民族內部問題」 또는 「民族自決의 原則」이 南韓을 「美國의 強占地帶」로 보거나 中共을 民族의 敵으로 規定한다거나 할 때는 鬭爭的 理念化하고 그것을 融合의 統一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해칠 것이다. 따라서 「自主」, 「自決」, 「民族團合」은 自体指向의 論理



여야 「排他的 鬭爭論理」에서는 안된다.

셋째의 問題인 民族概念의 相異性和 關聯하여 우리는 「民族史的 民族主義」를 主張點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經濟生活의 共通性」등의 階級主義가 止揚되려면 「民族史」를 統一의 근거로 삼는 民族史觀의 民族主義를 세워야 한다.

대체로 高麗의 建國에 의해서 韓半島의 住民은 스스로를 하나의 自己 同一性을 가진 民族으로 表象해 왔는바 이러한 民族의 一體感과 歷史過程을 歷史的 觀點에서 인식하는 것이 「民族史的 民族主義」일 것이고 이것을 「統一의 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國史」에 對한 研究와 教育은 民族主体性을 확립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民族史的 民族主義의 正統性을 우리가 차지하는데도 중요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民族史的 民族主義의 正統性은 歷史에 對한 이배오로지 적인 彩色을 할때는 확립될수 없다는 點을 우리는 강조할 必要가 있다.

셋째의 問題點인 民族主義의 純粹性에서 생기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순한 民族主義만을 統一理念으로 單一化할 것이 아니라 福祉社會와 自由社會의 理念을 修行追求할 수도 있을 것이다. 民族主義만을 내세우는 것은 表面上으로는 매우 그럴듯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좁게기만의 主張일수 있다.

마라서 民族主義를 「解放鬭爭」의 武器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알맹이를 갖는 統一理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全民族이 받아들일 수 있는 自由 社會의 理念과 福祉社會의 概念을 거기에 導入시키지 않으면 안될지 모 른다.

結局 統一을 위한 民族主義는 「排外的 鬭爭性」이나 「階級性」을 갖는 것이 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民族史的 民族主義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自由와 福祉의 理念을 包含할 수 있어야 한다.



# 主体的 民族史觀의 定立問題

林 承 國  
韓國正史學會 會長

## 目 次

1. 史觀과 史學의 問題
2. 世界主義 史觀에 對한 警告  
「民族史學= 體制哲學」의 等價式
3. 韓國史의 真相
  - 가. 「漢四郡= 朝鮮四郡國」의 正體
  - 나. 中國上古史가 말하는 朝鮮의 位置
  - 다. 漢四郡의 反證史料
  - 라. 結 言
4. 民族史學 民族史觀은 國土再統一의 基本哲學이다.
5. 結 言: 韓國史의 歷史精神

##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

### 1. 史觀과 史學의 問題

經濟立國 自主國防等 安定基調가 다져지면 갈수록 이러한 安定基調를 永統化 할 수 있는 「哲學」이나 「精神의 構造改善問題」도 손질해야겠다는 自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平和的 國土統一」이라는 民族의 宿願을 앞에 놓고 朝野는 勝共理論의 學術化 勝共戰略의 哲學化라는 次元에서 多邊的인 摸索이 試圖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정작 安定基調나 勝共理念 勝共戰略의 具體案이 무엇이나? 하는 設問에는 대개가 「沈黙!」하고 만다. 勿論 具體案은 華麗한 「口號의 合唱」이나

外向의 “캐치푸레이스”만으로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華麗한 口號나 “캐치푸레이스”의 公署속에서 살고있다. 그렇다면 問題의 具體案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 물음에 對하여 敢히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이라는 解答을 提示한다.

그러나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이라는 大命題에 한발 앞서 解決되어야 할 前提가 있다. 그것은 民族史觀을 造成하는 基盤이 되는 「史學」自體의 問題性! 곧 「民族史學에 對한 認識」의 改善이다. 歷史學會의 全海宗 教授는 말하기를 八·一五以前에는 民族史學이 主流를 이루었다. 光復後에는 經濟史學(代表 白南雲)이 盛行했다. 그러나 六·二五動亂後에는 實証史學이 主流를 이룬만큼 우리 的 使命은 크다. (歷史學報 韓國史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自負했다. 또 歷史學大會(第一五回)에서 梁秉祐教授는 말하기를 “十九世紀는 民族史學의 時代였다. 韓國에서는 丹育, 申采浩의 史學이 그 主流다. 丹育은 「歷史를 我와 非我의 鬪爭」으로 規定했는바 民族史學은 我를 爲하여 歷史를 歪曲하고 我만을 強調한 나머지 國家와 民族을 戰爭으로 물고간 先例를 남겼다”고 民族史學을 警戒했다. 한편 前記 全海宗教授는 民族史學을 規定하기를 “日本帝國主義에 對한 對抗史學으로서 實存意義가 있으며 日帝가 敗退한 지금 民族史學의 存立意義는 없다”고 한다.

實로 意味없는 獨白들이다. 民族史學의 存立意義를 否定하는 이러한 史學風土 속에서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을 외치는 오늘의 試圖가 얼마나 빛나 가고 있는가를 吟味해 볼 必要가 있다.

問題의 核心을 正確히 알고 넘어가자.

前記 全海宗教授의 指摘처럼 民族史學과 實証史學은 本是 마르마르 存立하는 二元的인 學問인가? 아니다! 實証史學은 民族史學을 研究, 發展시키는 現代的인 手段, 方法 및 傾向인 것이다.

지난날에는 民族史學이 「我」만을 爲하여 歷史를 歪曲하고 史實을 誇張 美化한 史例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韓國의 일”이 아니라 “外國에서 벌어진 일”이며 더욱이 韓國史를 直接間接으로 誤導, 歪曲한 이웃나라 日本이나 中國 및 「나치즘-獨逸」같은 나라의 史學인 것이다. 韓國史는 歷史의 紛糞이나 誇張은

枯槁하고 꺾이우고 汚染되고 侵奪당한 歷史였다. 史實의 誇張으로 因한 戰爭이  
나 國家破局보다는 오히려 民族史의 侵奪과 汚染으로 因한 民族史의 斷絶, 正統  
의 倒壞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丹齊의 「我와 非我(彼)의 鬭爭」을 나무라기에 앞서서 “外國史의  
일”과 “내나라의 일”을 識別하는 彼我的 識別眼부터 갖추어야 한다.

특히 金海宗教授의 말처럼 民族史學이 鬭爭史學(日帝에 對한)이라면 그 鬭爭  
史學의 本質은 “不變의 것”이어야 한다.

“日帝가 물러 갔다”고 해서 史學의 本質이 變質하는 그러한 間의 史學은  
存立할 수 없다. 日帝가 물러간 이나라에는 또다시 唯物史觀이라는 새敵手が  
登場했다는 論理以前의 「現實!」을 直視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勝共  
戰略으로서의 民族史學 乃至 主體的, 民族史觀의 定立을 외치는 主旨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 「史學, 歷史에 飛躍은 없다」 ~

歷史나 史學에 躍進, 跳躍은 있어도 嚴密한 意味의 “飛躍”은 없다.

十九世紀가 近代史學의 萌芽—成熟期요 民族史學의 時代였다면 梁秉祐教授의  
말처럼 韓國史에도 韓國史가 「主體的」으로 마지한 近代史學=民族史學의 時代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周知하는데로 韓國史에는 日帝가 侵略用으로 携帶한 「  
他律的 近代史學」이 있었을 뿐 우리 스스로가 마련한 主體的-近代史學」은 存  
在하지 않았다. 丹齊史學과 爲堂(鄭寅普)史學은 차라리 亡命史學이거나 民族史  
의 正統을 안간힘으로 지켜보려는 이른바 命脈史學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主體的으로 맞이하고 料理해 보지못한 近代史學(世界史의 民族史  
學)時代를 “飛躍”하여 一躍 世界主義的 現代史風에 말려들어 아직도 김치냄새  
된장냄새 풍기는 스스로를 意識하면서도 「自稱, 世界人然!」해야겠다는 이런 어  
리석은 몸부림은 하루 속히 이나라 史學風土속에서 淨化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平和統一을 爲한 勝共戰略의 要諦이며 基調인 主體的 民族史觀을  
定向, 定立하는 捷徑인 것이다.

다시금 말하거니와 “歷史에 跳躍은 있어도 飛躍은 없다.” 그러므로 民族史學  
은 韓國史가 마지한 主流史學이요 어차피 치루어야 할 歷史의 代價이요 定해진

旅程의 「史學」인 것이다. 더우기 「勝共統一- 祖國史의 永昌을 向한 「哲學」의 아쉬움때문에 이러한 認識과 正覺은 더욱 아쉽다.

## 2. 世界主義史觀에 對한 警告

- 民族史學= 體制哲學의 等價式 -

基督敎의 “四海同胞主義”나 저 古代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나 現代의 唯物史觀, 共產主義나 또 韓國의 實証史家들의 史觀! 이 모든 主義들이 理念(信仰)이나 時代的 背景이 相違하더라도 「脫民族的 世界主義라는 概念에서는 共通點을 지닌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問題로 提起코자 하는 世界主義는 唯物史觀, 共產主義의 世界觀 乃至 歷史觀인 것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歷史的으로 또 本質的으로 共產主義의 好敵手는 오직 「民族史學- 民族主義- 民族의 主體意識」이었다. 뿐만 아니라 民族意識이란 人類가 社會生活를 始作營爲하면서 最初로 갖게 마련인 人類共通의 原初的 本能意識이며 國民(民族의 一成員)이라는 身分은 人類가 갖는 最初의, 法律的 地位라는 事實이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 「國家」라는 意識은 「人類」 「世界」라는 意識에 한발앞서 갖기 마련인 人類最初의 社會的 意識이다. 그러므로 人類의 本能에 바탕한 民族, 國家에 對한 이같은 意識을 無視하고 「民族보다 人類를」 「國家보다 世界를」 高揚 注入하려는 은갖 試圖나 努力은 人類의 本能的 意識을 欺瞞하고 歪曲시킬만큼의 威壓과 暴力(壓迫)을 前提하지 않고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의 이른바 「푸로레타리아」의 階級獨裁는 그러한 論理에서 歸納되는 結論이라 할 것이다.

한편 基督敎의 四海同胞主義는 이같은 人間本能! 곧 「民族」 「國家」에 對한 意識을 稀釋시키는 作用으로 「사랑」을 原理로 하는 「信仰」에 依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階級獨裁와 같은 暴力이 作用하지 않는다. 「사랑은 죽임(暴力)보다 強하고 믿음(信仰)은 論理를 超越한다」는 真理가 基督敎의 世界主義를 지탱(支撐)하는 支柱요. 그 “에너지”源이다.

비록 共產主義와 四海同胞主義가 다같이 世界主義임에는 無違하나, 그 支柱哲學이 이토록 判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되는 것이 있다면 이 判異한 兩大世界主義의 物理的學對照다. 우리가 光復後 三〇年동안 살아온 「體制」는 어느쪽이나하면 基督敎의 四海同胞主義-말하자면 自由民主主義의 社會體制였다.

「自由·民主主義! 그것은 唯物史觀, 共產主義의 敵手는 아니다」 이것은 三〇年을 自由民主體制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體驗을 통한 結論인 同時에 判異한 兩大世界主義의 「物理的力学比重」을 对照해 본 우리의 結論이다. 이제 우리는 唯物史觀을 이기고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達成해야 할 現實的 使命을 앞에 놓고 있다. 또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우리들의 基本哲學-勝共統一의 戰略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自省과 自問이 底辺 넓게 번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序言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이같은 自省과 自問은 있으되 아직 明快한 自答이 結論되지 않았다.

祖國統一이라는 民族的課題를 앞에 놓고 우리가 「民族史學-民族主義-(主體的) 民族意識(史觀)」에 留意하는 理由는 바로 民族史觀의 性格如何가 「勝共」과 「敗共」을 가능하는 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二次大戰에 獨逸의 共產主義者, 仏蘭西의 共產主義 그리고 英國의 共產主義者들이 共產主義의 祖國-소련이나 世界의 勞農階級을 위하여 싸운것이 아니라 各其 자들이 所屬된 祖國의 勝利를 爲해 싸웠다는 事實!

그리고 「레닌. 그라드」의 陷落을 目前에 두고 쓰탈린은 世界의 勞働者여 團結하라!」를 외치지 않고 「슬라브民族이여 團結하여 祖國을 救하라!」고 외친 것! 또 三國統一을 앞두고 新羅가 그 統一戰略의 原理로서 「花郎道」를 「復活」시켜 이 偉業을 成就했다는 歷史的 教訓! 이 모두가 우리에게 示唆(시사)하는 바가 크고 實로 嚴肅하다. 다시말하면 民族主義(그바탕은 民族史學)이야말로 人類가 發見한 最大의 自衛哲學이며 人類의 公敵(共產主義)을 擊滅할 수 있는 絶妙한 戰略原理인 것이다. 多幸히도 우리에게는 弘益人間의 建國理想(念)을 비롯하여 韓國史 5,000年을 縱深으로 貫徹한 「韓國魂-歷史精神」이 嚴存한다. 이에 우리는 기구한 歷史속에 滅失 汚染된 祖國史를 「復元→光復」하고 「弘益人間」「花郎(風流-風流道)」를 비롯한 「韓國魂-韓國史의 歷史精神」을 다시 이 歷史의 地平線위에 露出, 俱顯시켜야 한다.

#### - 體制哲學의 要諦 -

「勝共統一」을 위한 體制나 그 體制哲學 그리고 오늘의 維新體制도 의당 民族史學에 바탕을 뒀야만 한다.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 / 總和維新 / 세마을精神 / 維新理念의 俱頭 / 初戰박살의 決戰態勢 / 等. 우리의 周邇에서 이같은 抽象化 機械化, 美化된 口號들이 公害를 빚고 있다. 그러나 이들 口號에 具體性, 生動感, 效率性을 賦與하는 活力素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民族史學」인 것이다. 口號나 슬로건에 앞서서 “韓國史의 正體, 真相이 어떤 것인가?”를 具體的으로 아는 「正覺」 이것을 통해서만 지금 우리가 追求하는 勝共統一을 爲한 體制哲學 곧 올바른 民族史觀이 完成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特急한것이 韓國史의 真相, 正體, 現實」을 具體的으로 알고 또 「韓國史의 榮光과 持, 偉大」를 時急히 啓蒙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作業을 통해서 비로소 「韓國民族主義-主体的民族史觀」 그리고 平和의 祖國統一과 祖國의 無窮한 永昌繁榮을 겨냥한 「體制哲學」의 完成이 있게 될 것이다. 勝共의 길이 「民族史學→民族主義→主体的民族史觀의 完成」에 있다면 勝共統一을 겨냥한 「體制」나 그 「體制哲學」도 의당 「民族史學」에 基礎해야 한다. 이것은 차라리 明若觀火한 論理일 것이다. 實로 民族史學을 外面하고 「體制的 合理性」을 찾고 「體制哲學」을 云謂한다는 것은 “년센스”다.

却說, 體制哲學은 따로 없다. 民族史學 民族史觀에 焦點을 맞추지 않은 「體制的合理性, 當爲性」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民族史學의 本格的 開究 研究를 高抑하는 真意는 오히려 「史學外的」인 要因, 말하자면 「體制的」要請이 보다 切實한 때문이다. 이같은 體制的 整備가 祖國의 勝共統一을 向한 哲學(精神)의 戰略基盤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모든 要請의 充足을 爲해 「韓國史의 真相(그一部)을 紹介코져 한다.

### 3. 韓國史의 真相

「開拓의 榮光」이 「敗北의 恥辱」으로 탈바꿈한 祖國史 / 黃河文明의 主人公이 大陸文物의 쓰레기등을 뒤지는 乞人으로 描写된 祖國史 / 半萬年史의 4/5 (4,000年)가 展開된 大陸史가 去勢되고 1,000年의 半島史觀만이 浮刻되는 祖國史의 非理 / 이같은 祖國史의 非理가운데 「勝利」가 「敗北」로 歪曲된 「漢四郡의 犯罪」가 그 庄卷이다.

이제 그 真相을 公開한다.



(1) 「漢四郡=朝鮮四郡國」의 正體

~漢四郡은 歪曲史의 一部分에 不過하다~

韓國史의 歪曲 變質을 拳論하자면 限이 없다. 그러므로 위선 韓國上古史의 最大爭點으로 浮刻되어 있는 “漢四郡의 問題”를 「組上肉」으로 하여 祖國史의 真相을 가리는 序章으로 삼겠다.

一般的으로 漢四郡을 拳論함에 있어 그 事件의 文學的의 原典이라 할 수 있는 司馬遷의 「史記」(「中國二十五史의 鼻祖」 「漢四郡의 主人公인 漢武帝의 史官-司馬遷」이 쓴 中國最初의 正史)

朝鮮列傳(第五十五)의 「遂定朝鮮爲四郡」이라는 記錄에 衛滿朝鮮은 漢武帝가 派遣한 將帥, 楊僕과 旬(순제)에게 敗亡하여 그 땅이 漢나라의 植民地-漢四郡으로 轉落한줄 안다.

勿論 잘못된 見解이다. 그러나 이같은 그릇된 見解가 成立된 裏面에는 韓國史의 距今 1,000年을 支配하여온 畧은 敗北主義意識이 깊게 作用하고 있다.

中國의 史筆精神은 本來自國의 恥辱을 숨기며 外國의 榮光을 꺾는다는 이른바 「爲中國 諱恥而陋夷狄」의 「春枝筆法」이다. 그러므로 「遂定朝鮮爲四郡」의 「定이 平定」을 意味한다고 해서 「朝鮮을 平定했다」고 額面 그대로 擴大解釋해서는 안된다. 과연 中國史筆은 「史記」以後로부터 二百年後에 쓰여진 前漢書에서 비로소「遂定朝鮮-----」을 「遂滅朝鮮-----」으로 적기 시작 했고 史記原典에는 拳論조차 않은 「樂浪, 監屯, 玄菟, 真番」의 郡名과 그 疆域(位置)을 數術(부연)하기 始作했다.

심지어 司馬相如가 著述했다는 「茂陵書」라는, 幽靈書까지 動員하여 漢四郡의 位置를 韓半島에 上陸시키느라 애를 쓰고 있다. 지금도 「臣瓚이 引用한 茂陵書의 里數에 依하면-----」하고 이 注書를 金科玉條로 들고 나서는 現役史家들이 많다. 「監屯郡의 郡治인 雲泉이 中國長安(서울)으로 부터 六千餘里 或 七千餘里 떨어져있다 ---」고 注한 이글이 況 그 孟浪한 里數(六千里, 七千里)가 東으로 變었는지 西北으로 變었는지 明示도 안했는데 어떻게 江原道 京畿道 淸州로 誘導裝置된 彈道彈마냥 韓半島로 來訪했던 말인가?

茂陵書의 著書라고 傳하는 司馬相如(BC 118 元狩五年)는 漢四郡이 設置되기 十年前에 죽은 者이다. (注. 漢四郡은 元鳳四年 即 BC 108年의 일이다) 司馬相如既卒, 正義曰元狩五年(BC118年)也

(漢書 司馬相如伝)

相如가 그의 死後 十年만에 設置될 豫定(?)인 漢四郡의 疆域位置를 말했다면 茂陸書가 무슨 默示錄인가? 丹齋先生의 말씀처럼 「妖怪談」이랄 밖에 없다.

아무튼 漢四郡의 虛構는 안(內)으로 敗北主義-半島史觀과 밖(外)으로 中國史筆과 日本植民史筆이 共同正犯이 되어 꾸며낸 東洋史學上 最大規模의 史的犯罪事件이다.

司馬遷은 漢四郡을 設한 漢武帝의 史官이며 그가 쓴 史記는 漢四郡에 關한 限 伝聞記가 아니라 目擊記-從軍記와 같은 것이며 더우기 그는 尙上陛下인 武帝의 業跡과 戰功을 針小擗大하여 誇張著史해야 할 마땅한 義務를 지닌 中國正史의 鼻祖-太史公이 아니던가? 그리하여 그의 「史記」의 「著史方法」「紀伝体」는 中國二十五史-中國 4,000年史籍의 「典型」으로 伝受踏襲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太史公-司馬遷의 尙上陛下, 武帝의 漢四郡戰功을 겨우 「遂定朝鮮爲四郡」의 「일곱字」로 매워 버렸다. 그뿐인가?

그의 「史記, 朝鮮列伝」 끝마무리에 「太史公曰」(自評)을 붙여 다음같이 漢나라의 敗北(배)를 歎息했다.

“太史公가르되 衛滿의 孫子 衛右渠는 城의 堅固를 믿고 싸우다가 祖宗의 祭祀를 끊기고 涉何(人名, 漢人)는 功을 속여 得名터니 이 때문에 이戰役(漢四郡)의 戰端을 열고 殺害되었으며 楊僕(漢의 海軍提督)은 적은 軍卒을 이끌고 難局에 빠지고 番禺(과우, 地名)의 失敗를 後悔하여 獨力으로 朝鮮을 降伏시켜 立功하려 하였으나 되려 疑心을 받게되고 旬(순채, 漢의 陸軍司官將帥)는 功을 다투다가 公孫遂와 함께 모두 誅殺되니 兩軍(楊僕, 旬)-陸海軍이 모두 恥辱을 당하고 將卒間에 侯로 對해진 者 없도다.

(太史公曰 右渠負固 國以絶祀 涉何誣功 爲兵笈首

樣船將狹 及難離答 悔夫番禺 及反見疑 旬 爭勞

与遂皆誅 兩軍俱辱 條率莫侯矣(史記 朝鮮列伝 第五十五)

그러면 司馬遷의 「遂定朝鮮爲四郡」이라고 한 그 四郡의 正体는 어떤 것인가? 從來의 史家들은 의례 이 四郡을 「樂浪監屯, 真番, 玄菟」의 四郡이라고 解釋해 왔다. 그러나 漢四郡 戰役의 目擊談이라 할 漢四郡의 原典인 史記原文에는 「樂浪, 監屯, 真番, 玄菟」等の 郡名이 登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史記에 登場된 四郡의 이름은 「樂浪, 真番-----等」이 아니라 燕人の 亡命政權----- 衛滿朝鮮

政權内部에 反抗勢力으로 溫存하던 原住民—古朝鮮族의 祖上들이 세운 四侯國—  
 涇清侯, 菽且侯, 平州侯, 遼陽侯 그리고 幾侯이다. 이 五郡(侯)에 幾侯만은  
 原住朝鮮인이 아니라 滅亡해 버린 衛滿朝鮮의 末王 右渠의 아들인 「長」의 侯  
 國人 것이다. 그러므로 司馬遷이 「遂定朝鮮爲四郡이라고한 그 四郡은 바로 古  
 朝鮮族의 大臣, 將軍(革命主體勢力)들이 滅亡한 衛滿政權의 疆域內에 세운 四郡  
 國을 專稱한 것으로 正確한 記錄이다.

司馬遷은 史記原文에서 「遂定朝鮮爲四郡의 記錄다음에 바로 「封參爲涇清侯, 陰  
 爲菽且侯, 依爲平州侯, 長爲幾侯, 最—爲溫陽侯」等 四(五)侯國의 이름과 侯(君主)  
 의 이름을 밝혔고 「史記, 卷二十建元以來 諸侯年表 第八에서도 「樂浪, 監屯, 玄菟  
 真番」의 四郡名은 실지않고 이 四侯國의 이름을 正確히 실었다. ① 特히 「史記  
 年表」에 나타난 朝鮮人—四侯國의 疆域位置는 모두 渤海—山東에 이르는 「燕齊  
 之間」 곧 BC 128年 武帝가 「燕齊之間의 穢狍 朝鮮人들을 買收하여 設置하려했  
 던 蒼海郡의 疆域이었다. 이곳이 바로 衛滿朝鮮의 基本疆域이있음은 再言의 餘地  
 가 없다. 이게 朝鮮人四侯國의 位置를 史記年表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遼陽(溫陽) ---- 南陽      ② 平州 ----- 梁父
- ③ 菽且 ----- 渤海      ④ 涇清 ----- 齊(山東省)
- ⑤ 幾 ----- 河內(河東)

(「幾」만은 「燕齊之間」아닌 黃河 北岸의 河東이다.)

却說 漢四郡戰役은 漢나라 武帝의 勝利로 評價될 戰爭이 아니라 오히려 古朝鮮  
 族(穢狍朝鮮)의 軍事革命으로 “朝鮮이 勝利한 戰爭이다.

그러므로 有史以來 「漢四郡」이라는 이름으로 稱(참칭)된 이 四郡의 號稱은  
 宜當「朝鮮四郡國」이나 或은 「穢狍四郡」(中國側의 呼稱)으로 改稱되어야 한다.

漢武帝 陸海軍의 敗戰相은 史記, 朝鮮列傳이 昭詳히 밝히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 戰役의 論功行賞 및 戰後處理過程에서 漢武帝의 慘敗相이 餘地없이 露出되고  
 있다. 즉 怪異하게도 이 戰役에 出戰한 陸海軍의 司令官과 심지어 天子(武帝)  
 의 御命을 携帶, 傳達했던 使者(衛山과 公孫遂)마저도 모조리 武帝의 손으로  
 誅殺되고 말았다. ②

反面 衛右渠(衛滿朝鮮의 末王)를 죽인것도 朝鮮人 尼谿相, 參(人名)이요. 右渠  
 政權의 後繼者 成己를 죽인 것도 朝鮮相, 賂人(人名)의 아들 最(人名)였다. ③

結局 衛滿朝鮮의 國王(右渠)과 그 後繼者(成己)를 죽이고 降伏을 받은 戰爭有功者는 漢武帝의 將帥(楊僕, 且)들이 아니라 右渠政權內部에 反抗勢力으로 溫存, 反目하던 朝鮮人將相들이었다. 一言以蔽之하고 「漢四郡戰役은 穢貊朝鮮人들에 依한 「쿠테타」에 不外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武帝의 軍士들이 기여하여 朝鮮側革命勢力에 利用當했을 뿐이다.

## (2) 中国上古史가 말하는 朝鮮位置

- 韓半島가 아니라 「北京~山東」地方이다 -

上古史學徒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必須事項이 있다. 그것은 中国的 歷史古典들이 言必稱「朝鮮」이라고 指目하는 疆域이 과연 어느 곳인가? 하는 點이다. 秦始皇은 天下의 六國을 統一하였다고 中国史筆이 大書特筆하고 있지만 그 天下 六國도 겨우 燕(河北), 齊(山東), 韓(河南), 趙(河北), 魏(山西), 楚(湖北)의 「河北-山東」에 걸친 疆域에 不過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中國人들의 宇宙觀 乃至 世界觀속에서 反映된 天下는 渤海灣과 遼東半島를 벗어나지 못한 「黃河以北-北京」 近郊가 저들의 「天下」요 「世界」였다. 그러므로 저들의 「世界」속에서 「朝鮮」을 찾는다면 오늘날의 「山東-渤海-河北」을 벗어나서 찾을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中国的 史學者 林惠祥도 그의 中国民族史에서 말하기를 「東夷는 歷史上에 広狹의 二義가 있으니 狹意는 오늘날 中国境内에 있는 東夷를 專稱하며 本書(中国民族史)가 말하는 東夷는 이 狹意의 東夷를 專稱한다. 곧 狹意의 東夷는 秦나라에 以前 中国的 東部 即 오늘날의 山東, 江蘇, 安徽의 近海 및 淮江一帶의 東夷이다. 広義의 東夷는 秦漢以後 中国版圖가 擴張됨에 따라 中国內的 東夷는 이미 中国에 同化되고 滿州, 朝鮮, 日本, 琉球等族을 東夷라고 別稱하게 됐다. ④」고 했다.

다시말하면 東夷, 朝鮮이라는 말은 秦始皇以前까지는 오늘날의 中国 本土內的 江北, 東半에 있는 民族을 뜻하고 漢以後에는 中国 本土外에 東方의 滿洲, 韓半島, 倭等의 民族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中国史家들의 一致된 見解이다. 勿論 漢四郡 當時의 朝鮮도 中国內部的 東夷를 專稱한 것이거나 或 中国에의 同化期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中国史家の 見解처럼)

그런데 燕齊之間 즉 天津에서 山東에 걸친 海岸地方은 韓國史의 三國時代까지도 여전히 東夷의 活動圈이었다.

秦은 六國을 併合하고 天下를 三十六郡으로 劃定했는데 會稽와 長沙二郡만이 楊子江 南쪽에 있고 (註, 實際로 實存하지 않는 郡이다) 나머지는 모두 江北에 있었다. 이것이 秦의 最大版圖인바 그 西部만이 實質의 秦의 版圖요. 東部는 東夷의 活動圈이었다. 이때의 秦의 領土를 말하는 글로는 「史記」의 다음 記録이었다.

地東至海 朝鮮-----北拋河爲塞竝陰山至遼東

(秦始皇本紀 第六)

(땅은 東으로 바다에 이르러 朝鮮에 미치고-----

北은 黃河에 拋하여 塞(國境)를 이루며 陰山과 나란히 遼東에 이른다.)

秦始皇은 天下富豪를 成陽(陝西省)에 옮기고 成陽의 北쪽의 언덕 甘泉山에 宮室을 짓고 南쪽으로 渭水를 바라본다 하였으니 오늘의 「黃河南쪽-渭水의 北」쪽이 그 서울인 咸陽인바(地圖參照) 여기를 중심으로 東으로 朝鮮과 黃海에 이른다고 하면 朝鮮의 位置는 山東省 南쪽-淮水가 되고 北으로 黃河를 塞(國境)로 하고 陰山과 나란히 遼東에 이른다 하였으니 遼東의 位置는 오늘날의 北京地方이다. 또 戰國時代의 蘇秦이 燕나라 文侯에게 合從策을 말하는 가운데 朝鮮을 拳論하였는데 이를 보면 朝鮮의 位置는 더욱 明若觀火하게 된다. ⑤

즉 蘇秦은 燕나라 東쪽에 「朝鮮→遼東」에 있고 北쪽에 「林胡→樓煩」이 있고 西쪽에 「雲中→九原」이 있고 南쪽에 「呼池水→易水」가 있다고 했으니 이것이 燕나라의 四方位였다. 그런데 蘇秦은 「朝鮮→遼東」「林胡→樓煩」等 二地名을 連呼하면서 가까운 地名을 먼저 말하였다. 그는 燕에서 뿐 아니라 趙에 가서도 이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燕나라 東쪽에 「朝鮮」이 「遼東」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朝鮮은 呼池水以北 燕 東쪽의 海岸地方 즉 지금의 天津以南 運河東方의 地方이고 遼東은 그 北方, 北京地區이다. 上述한 地東至海 朝鮮---北拋河爲塞竝陰山至遼東」(史記)와 꼭같은 指摘이 된다. 秦은 燕을 征服(BC 222年)하고 齊를 征服(BC 221年)함으로써 六國을 併合하였는데 「燕齊之間」(天津-山東半島의 海岸)에는 여전히 朝鮮國이 健在해 있었다. (이것은 重要한 史實이다.)

大河의 河口地方인 이곳 「벨타」地方(朝鮮)을 水上戰에 未熟한 秦나라의 地上軍이 넘보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금 強調하거나와 上古史에서 中国古典인 「朝鮮」「遼水」「遼東」「溟水」라고 指摘하는 地名들은 오늘날의 韓半島는 고사하고 오늘날의 遼東半島까지도 미치지 못한 萬里長城以西(南)의 땅(물)이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上古史의 「朝鮮의 位置가 確定될 때 從來의 漢四郡史料는 自然之勢로 一大再檢證, 再考案이 斷行되어야 한다.

### (3) 漢四郡의 反証史料

漢四郡의 首道-樂浪郡의 位置疆域을 論한 史料로는 다음 「碣石山」의 史料가 가장 正을 찌르는 것이며 그 基本史料라 할 수 있다.

碣石山在漢樂浪郡遂成縣秦築長城東截遼水起於此山(史記 卷二 夏本紀第二 및 通典 朔方門, 東夷列傳 等)

碣石山은 漢나라 樂浪郡 遂成縣에 있는데 秦始皇의 萬里長城에 東쪽으로 遼河(오늘날의 秦河-河北省)을 가로질러 이 碣石山에서 일어난다.)

오늘날 「渤海沿崇」 곧 北京의 東쪽인 秦 皇島沿岸에 우뚝 솟은 碣石山(地圖參照), 이곳이 漢樂浪郡遂成縣인 것이다. (從來의 說은 平壤을 樂浪이라 했음)

또 樂浪郡의 首縣은 「朝鮮城(縣)」이라고 했고(漢書, 地理志) 從來의 史家들은 이 朝鮮城을 「金日成의 窺地-오늘의 平壤이라고 盲信해 왔다. 그러나 中国正史 大明一統志는 그 朝鮮城(城)이 오늘날 毛沢東(死亡)의 「서울」 北京近處(永平府境內)에 있다고 銘記하고 있다. ⑥ 勿論 漢四郡의 이름이 朝鮮四郡-菽且涅陽, 溡清, 平州가 아니고 從來史說마냥 樂浪 玄菟, 監屯, 真番이라 할 적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漢四郡의 首道(樂浪) 首縣(朝鮮城)의 位置는 平南平壤-金日成의 平壤이 아니라 故毛沢東의 北京地方에서 ~ 天津(碣石山)에 이르는 地方임이 明白해졌다.

그렇다면 다음 여러 史料들이 記錄한 「玄菟」나 「樂浪」이나 「平壤」 或은 「帶方太守」 등은 韓半島와는 無關한 中原大陸의 地名(人名)들이라는 事實을 알게 될것이다. 다시말하면 高句麗가 南侵하여 韓半島에 있는 樂浪, 帶方을 席捲한 것이 아니라 西侵하여 中原大陸의 渤海之間(渤海-溟石의 사이)에 있는 樂浪, 地方을 蹂躪한 것이 判明된다.

- ① 美川王三年(AD 302年)秋 九月王率三萬侵玄菟郡虜八千人移之 平壤(三国史記 高句麗條)
- ② 美川王十四年(AD 313年)春二月 侵樂浪郡虜獲 男女二千餘口 樂浪遂滅(三国史記 高句麗條)
- ③ 太祖九十四年(AD146年)太祖王遣將襲遼東 西安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三国史記 太祖王九十四年條)

一般的으로 樂浪郡이 高句麗에게 滅亡당한 年代를 前記史料 ②의 美川王十四年(AD 313年)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樂浪이 平壤이라면 그 北方에는 高句麗라는 強大國의 疆域이 가로 막혀 樂浪은 韓半島에 四顧無援格으로 孤立된 외만섬(孤島)에 不過하다.

그러한 樂浪이 BC 108年에서 AD 313년까지 四百餘年동안 敵國의 後方에서 孤軍死鬪했더라는 말인가? 이는 通俗的인 「狀況証拠」로도 言不成說이다. 더우기 위 史料 ①은 그 樂浪이 滅亡하기 十一年前에 美川王이 玄菟郡의 捕虜 8,000名을 平壤으로 옮겼다 했으니 樂浪이 平壤이라면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東川王二十年(AD 246年 樂浪滅亡 67年前)에는 東川王이 「樂平壤城」하고 「移民及廟社」(百姓과 宗廟社稷을 平壤으로 옮기다)했으니 이러한 怪事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위 史料 ③에서는 太祖王의 將兵들이 遼東, 西安平을 襲攻하여 黃海道에 있어야 할 帶方令을 遼東에서 죽이고 平壤에 있어야 할 樂浪太守의 妻子를 遼東-西安平에서 사로 잡았으니 어찌된 일인가?

帶方令, 樂浪太守의 妻子들이 韓半島를 떠나 遼東方面으로 「바캉스」行車라도 했더라는 말인가?

要約컨대 위 史料 ①②③은 모두 平壤이나 黃海道, 江原道等地를 高句麗가 南侵한 記錄이 아니라 오늘날의 「遼西-北京-天津」地方을 西侵한 記錄들인 것이다.

却說, 高句麗를 侵攻하는 隋揚帶의 軍士들이 左十二軍은 「方」「長嶺」, 「海徑」 「蓋馬」, 「遼東」, 「玄菟」, 「扶餘」, 「朝鮮」, 「沃沮」, 「樂浪」等의 道에서 出發하고 右十二軍은 「粘蟬」, 「含資」, 「渾弥」, 「監屯」, 「提溪」, 「肅慎」, 「碣石」, 「東廳」, 「帶方」等의 道에서 出發했다. 그런데 이모든 地名들은 漢四郡의 郡名, 縣名들이다. ⑦

高句麗의 서울—平壤을 치러가는 隋場의 軍隊가 平壤(樂浪)에서 떠나고 朝鮮(城)—平壤에서 떠나다니 어찌된 일인가?

或時 隋場帝가 變節하여 朝鮮(平壤)에서 出發하여 隋나라 本國을 征伐하려 갔단말인가? 이모든 史學的 不條理가 距今 1,000年의 歲月속에 通用되어온 現代的 魔術이오 神秘다.

#### ④ 漢四郡=朝鮮四郡國의 結言

漢四郡의 陰謀와 그 真相은 近代日本의 植民史學이 韓國史에 加한 苛虐行爲의 標本이오 그 匠卷이다. 이같은 苛虐行爲의 基本哲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韓國史는 韓半島가 基本疆域(=半島史觀)이며 향차 그 半島나마 半島의 殆半(北半)을 中國에 빼앗겨 植民地 歷史로 始作된 歷史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人은 오늘 日本植民地百姓이 된 事實을 宿命的으로 當然하게 알 뿐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한다.

結局 韓國의 敗北主義 挫折 諦念 劣等意識을 부채질하고 國史에 처한 嫌惡感을 助長하는것! 그리하여 韓國人의 긍지와 自負를 꺾고 우리로 하여금 永遠토록 日本植民地百姓으로 自足하며 살수 있는 「適性!」을 培養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三〇年동안 日本植民史學의 心血을 傾注하여 만들어낸 “朝鮮史(三十五卷)”였다. 슬프게도 우리는 光復三十一年이 되는 이 時空에서 아직도 日本植民史學의 「植民哲學—朝鮮史」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合理化하려는 意識構造속에서 헤메고 있다. (이것은 一部 史學界의 現實이다.)

이같은 祖國史의 真相 現實을 外面하고 口로만 「主體的 民族史觀」을 高揚하는 오늘의 姿勢가 얼마나 「灰칠한 무덤」같은 偽善인가? 우리모두 곰곰히 反省해 볼일이다.

지난 數年동안 韓國 正統史學派들은(筆者包含) 뜻을 똥아 全力으로 「民族史觀運動」(啓蒙)을 展開해 왔다. 그러나 最近 우리는 지금까지의 啓蒙運動을 試行錯誤로 結論짓고 自省한다. 「画龍点睛」이라는 말도 있지만 “龍을 그리는데 睛(眼)을 그리는 것을 잊은것”처럼 우리들은 실로 중요한 正鵠을 逸失한 感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나?



“史觀運動이나 史觀論争에 앞서 「史學」 自體의 論争을 先行해야 했다.”  
는 自責! 後悔! 反省이 그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史觀은 史學의 土台위에서 틀이 짜여지고 영그는 「열매」  
인 것이다. 唯物史觀의 土台위에서 民族史觀이 짜여지거나 영글수 없고 實証史  
學의 (民族史學을 外面한) 土台위에서 主體의 民族史觀이 鼎立될 수 없다.

항차 日本植民史學-朝鮮史의 肯定基盤위에서 史觀 光復이 定向될 수 없다.

그렇거늘 오늘의 諸敎國史運動이 史學에 對한 올바른 論争을 거치지 않고 바  
로 史觀運動으로 直行하고 있으니 論争의 惡循環이 있을뿐이다. 史學은 오직  
「民族史學이 있을 뿐이다. 오늘의 實証史學이나 社會科學 그리고 考古學等은  
「民族史學을 研究하는 現代的方法, 傾向 및 補助學問일 뿐이다.

이같은 史學原則과 理解가 確定, 定義되어야 한다.

이러한 趣旨에서 오늘 韓國史學界의 懸案問題로 浮刻된 北傀史學-唯物史觀과  
朝鮮史의 肯定土台위에 서있는 「아카데미史學-實証史學」 그리고 國史光復 正史復  
元의 元則을 固守하는 「民族史學」 間의 大會戰을 史觀論争에 先行하여 決行할  
것을 提議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民族史學은 祖國의 平和的 國土統一을 期約하  
는 思想的 國論(總和)的 基本姿勢를 鼎立하는 體制哲學- 勝共哲學의 「核」이  
되기 때문이다.

却說, 漢四郡은 漢武帝의 「勝戰譜와 朝鮮의 敗北」로 짝 지워질 史件이 아니  
라, 朝鮮族의 勝利와 燕人, 衛滿政權의 沒落 그리고 漢武帝의 敗北와 그의  
“콤포렉스”로 連結되는 韓國史의 榮光이오 勝利의 記錄이다.

따라서 癩疾의인 韓國의 敗北主義를 治癒하는 「트리트먼트」(処方劑)의 하나  
로서 「漢四郡 곧 朝鮮四郡國의 真相」을 여기 紹介했을 뿐이다. (註, 本論에서  
衛滿의 國籍이 「燕人」이나? 「朝鮮人」이나? 에 對해서는 論外로 하였다.)

#### 4. 民族史學-民族史觀은

國土再統一의 「基本哲學」이다.

~ 民族史學은 唯物史觀을 반드시 이긴다. ~

思想的으로 理念的으로 對立分烈된 祖國을 再統合 하는 唯一한 通路는 民族  
의 同質感을 바탕으로 한 民族史學의 發展과 이에서 歸納되는 올바른 「民族史  
觀의 確立」이 存在할 뿐이다. 그러므로 平和的 祖國統一의 唯一한 「방법」

도 史學戰爭의 勝利에 있다고 하는 命題가 成立된다.

勿論 「史學은 永遠히 鬪爭의인 것이다」 더우기 二十世紀는 唯物史觀과 民族史學의 大會戰의 「期」요 決戰의 「場」이다. 孫子兵法의 「知彼知己百戰百勝」을 拳論할것도 없이 우리는 唯物史觀 共產戰略을 길히 認識해야겠고 友軍인 우리의 民族史學—民族史觀도 決戰에 앞서 點檢을 해야한다. 歷史的으로 또 本質的으로 共產主義의 敵은 民族主義였고 民族主義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祖國光復을 앞둔 지난 三十六年 동안 共產主義者들은 目前의 敵國인 日本打倒를 뒷전에 미루고 도리어 民族主義, 獨立鬪士들을 暗殺하고 虐殺하는에 血眼이 되었던 것이다. 共產主義 理念分子에게 「祖國의 勝利」와 「社會主義의 勝利」를 兩者折一하라 한다면 저는 서슴치 않고 後者를 折할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者에게 있어 「民族」이나 「國家」는 手段이지 決코 目的」이 아니다. 反面 우리에게 있어서는 「民族」, 「國家」는 다른아닌 「目的」인 것이다. 共產主義나 民族主義와 같은 政治理念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唯物史觀이나 民族史學같은 史學分野에 있어서도 이 原則은 不變의 것이다.

共產主義者에게 있어 民族, 國家, 或은 民族史學이 「目的」이 아니고 「手段」, 「戰略」이라 함은 北傀가 「民族的主体性云云」을 高唱하고 「高麗聯邦共和國」이나 「大民族會議」 또는 「南北民族指導者會議」 따위를 拳論하며 또 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의 所屬史學者(金錫亨, 朴時亨, 李址麟 ----- 等)들이 民族史學의 탈을 쓰고 南韓의 史學을 攻駁하는 따위의 陽動作戰이 이를 立證한다.

저들이 共產主義를 拋棄하지 않는 限 「唯物史觀」을 헌신적 버리듯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人民學校(國民學校)를 비롯한 한 各級 教育機關에서는 唯物史觀의 唯物論的 弁證法에 立脚한 歷史教科書를 強制 制度化해 놓고 밖으로는 「民族史學」의 탈을 쓰고 二元論的인 史學活動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率直히 말해서 唯物史觀, 共產主義는 本質的으로 「民族史學」이나 「民族史의 政統性」 따위를 拳論할 理論的 理念的 根拠나 當爲性이 全無한 것이다.

저들은 理念的으로 民族, 國家가 目的이 될수없고 오히려 民族, 國家의 超越이나 解體를 통한 共產社會—社會主義國家를 建設하는 것이 至上目標인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或 主体性, 正統性, 民族史學等을 論한다면 이는 前示한 “스탈린”의 “슬라브民族이여 鬨기하라”式의 戰爭目的의 達成勝利를 爲한 「手段」이요 「미끼」요 煙幕戰術에 不外한 것이다.

共產主義도 「民族」, 「國家」에 執着하는 人類의 本能的 原動的 意識構造를 熟知하는 가담에 共產主義運動이 破局에 접어들거나 大躍進을 위한 어떤 刺戟劑가 要請될 때마다, 世界의 勞農階級을 찾는 理念的 口号보다, 人類의 本能的 意識構造에 呼訴하는 口号 「民族」, 「(民族)國家」의 口号를 偽善的으로 高唱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羊의 剪毛기를 뒤집어쓴 「이리데」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共產哲學에도 「民族」이 있고 「民族史學」이 있고 「民族意識」이 있으려니 하고 믿는다면 이는 「작사랑」에 不過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分明히 알고 넘어가야할 決定的事項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共產北傀의 歷史政策이 二元論的으로 展開(既述)된다는 것 또 저들의 民族史學이 全的으로 大韓民國의 史學을 對抗하기 위해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 그리고 우리는 이같은 敵의 史學的, 挑戰을 正式의 宣戰布告로 받아 들여 이들과 決戰을 해야 한다는 大韓民國側의 基本立場인 것이다. 民族史學을 論할 資格이 없는 共產主義者의 妄言이라고 해서 一笑에 불이는 따위의 輕拳妄動은 嚴格히 警戒되어야 한다.

지난 七三年度 八月十一日 東亞日報記事에 依하면<sup>⑧</sup> 北傀史家-金錫享은 日本記者(秋山-야끼야마氏)에게 浪浪古墳의 被葬者가 支那人이 아니고 「當然히 朝鮮人の 무덤」이라고 北傀史學은 이미 日本植民主學의 犯罪를 깨우치고 이를 克服한 양 報道되었는데 이 記事만을 좇는다면 北傀의 民族史學은 오히려 韓國의 그것을 圧倒한 듯한 威圧感마저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報道 亦是 金錫享의 戰略의 布石이 갈끔히 담겨진 偽善的 發言이다. 그의 이른바 「朝鮮通史」는 아직도 「漢四郡의 正體」를 깨치지 못하고 半島史觀의 迷夢에서 벗어나지 않은 橫說整說로 充滿해 있다. 李進熙가 쓴 「廣開土王陵碑의 研究」(日語版)에 紹介된 北傀史學者 李址麟, 李相昊 兩人的 『「韓國史」(震檀學會)를 論評한다』는 글은 “日本學者에 依하여 歪曲된 「朝鮮史」를 그대로 繼承, 踏襲하고 朝鮮史發展의 合法則性을 無視하고 있는 韓國史(震檀學會編)을 辛辣하게 攻擊하고 있다.”고 伝한다. 또 同書가 伝하는 北傀의 「歷史科學」의 一節은 다음과 같다.

吾人は 歷史的으로 人民의 視野를 가리고 있는 一切의 封建的 歷史觀이나 特別히 日本御用史家의 植民主義的 歷史觀에 立脚하여 쓰여진 「朝鮮史」의 體系를

完全히 一掃하지 않는限 “科学的이며 眞實한 우리들의 歷史를 追求할 수 있다  
云云”( 1965年 北傀「歷史科學」第五号 “震檀學會-韓國史를 論評한다” )

北傀史家들이 「韓國史」- 더우기 民族史學을 批判하거나 學論할 資格要件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이같은 挑戰을 無視하거나 神經을 쓰지 않아서는 안된다.

北傀의 戰略史筆이 指摘하는 것 마냥 震檀學會의 「韓國史」가 「朝鮮史」의  
半島史觀을 踏襲하고 漢四郡의 陰謀마위를 오히려 더 敷衍하여 華麗한 圖版과  
함께 실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니 앞으로는 이따위 利敎, 害國史筆을 祖國統一의  
根本哲學과 戰略이라는 次元에서 一切/ 封塞하는 政策的 勇斷이 아쉬운 것이다.

다시금 強調한다. 앞으로는 北傀史學의 戰(政)略의 攻擊의 「的」이 될만한  
「史學活動」이나 著史를 中斷하고 北傀의 偽裝의 民族史學挑戰을 本質的으로 克  
服할 수 있는 民族史學의 開發 育成을 期해야 한다. 이것이 思想 哲學 理念  
學術 精神面에서 北傀의 挑戰을 拔本塞源하고 平和統一의 大路上에 一躍邁進하는  
길이다.

史觀革命이야 말로 이나라 價值觀 祖國觀의 革命이며 精神風土上的 改革이며  
勝共戰略의 完成 勝共統一을 向한 體制와 體制哲學의 完成으로 치닫는 길이 될  
것이다. 史觀革命이야말로 오늘날 韓國이 거쳐야할 最後의 革命 곧 絶對革命임  
을 銘心해야 한다. 이같은 警告가 아직도 “曠野의 소리/”域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으니 實로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先知的 豫言은 안될 망정 이말을 祖國史와 憲政의 責任을 맡고 있는 朝  
野, 政治人과 愛國同胞에게 바치고져 한다.

## 5. 結 言

### - 韓國史의 歷史精神 -

眞理는 항상 平凡한 곳에 있다.

韓國史를 縱深으로 貫徹하는 歷史精神, 民族史의 指導理念은 高尚하고 複雜한  
學說이나 理論속에 있는것이 아니다.

花郎五戒 儒仙의 宗教理等 韓國精神에 影響을 주고 支柱가 되어온 精神文化  
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精神文化의 根底를 흐르는 「理念」이나  
「哲學」은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를 「忠」이라 定義한다. 「忠」은 現代의 概念의 愛國, 나라사랑이다.

이같은 真理는 五千年을 連綿히 이어온 韓國史의 展開 패턴이 이를 雄弁하고 있다. 勿論 「忠」「愛國」이라는 概念은 現實으로 陳腐하고 世俗的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지도 모르겠다. “버린돌이 짐모퉁이의 요긴한 돌이 된다”는 「바이블」의 格言처럼 陳腐하게 世俗化된 「愛國」(忠)의 概念속에 韓國史의 「正統」을 起死回生 시키는 「活力素」와 「真理」가 있다는 事實이다.

이제 韓國史의 展開 패턴과 本質속에서 「愛國」의 精髓를 抽出코져 한다.

東洋史는 中原大陸의 支那族과 周邊을 包圍하고 있는 狩獵民族 - 「알타이族」의 角逐史라고 하는 側面을 지닌다. 그런데 韓國史의 本質은 어느쪽이나 하면 狩獵族의 歷史이며 支那史는 傳統的 農耕族의 歷史이다. 그런데 世界文化史는 狩獵族이 農耕族을 蹂躪하고 支配하여 왔다」는 「文化史의 通則」을 提示한다.

이같은 通則이 韓國史에서만 例外가 아닐진대 韓國의 敗北主義는 實로 韓國史의 本質과는 無緣한 後天的 強迫概念에 不外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族 - 東夷」를 武斷一辺倒의 蒙昧無知한 蠻族으로 格下하라는 뜻이 아니다.

알타이族 一般에는 果然 蠻族다운 性格을 지닌 民族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東洋古典이 狩獵族인 東夷를 描写하는 態度가 本質으로 異色的 讚美型, 憧憬型이 었다는 事實은 東夷族의 「武斷의 次元」을 示唆하는 많은 暗示를 준다.

위선 儒敎의 大宗師, 孔子가 그의 生前에 「欲居九夷」……를 의쳤다는 事實도 그렇거니와 許慎의 「說文」(漢文玉篇의 原祖)이 「夷」를 풀이한 것을 보면 차라리 神秘롭기 까지하다.

“朝鮮은 東夷인데 天性이 柔順하여 「西南北」 三方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夷」는 「東方人」을 말하며 「大」와 「弓」을 쫓아 된 말이다. 夷字는 甲骨文文字의 「廾」인데 古交의 「仁」과 같다. 「蠻門」는 「虫」에서 「」은 「彡」에서 「」은 「羊」에서 따온 말이니 모두 異種이며 「夷」만이 「大」를 쫓아 된 말이다. 「夷俗」은 仁하고 壽하여 「君子不死之國이있기에 이르렀다. 故로 「孔子도 九夷에 살고 싶노라」한 것이다. (原文 9)

뿐만 아니라 中國의 經典(禮記十二, 王制)는 夷를 다음과 같이 풀이 한다.

「夷는 「仁」이다 「仁」하여 萬物을 살리기를 좋아한다.

「戒」은 「凶」이다 斬伐殺生에 그 中庸을 얻지 못하고  
 「蚤」은 「慢」이다. 「君臣」이 同川에서 沐浴하며 簡慢이  
 「極」에 이르며 「秋」은 「」이다. 父子 叔이 同穴에  
 居하니 그 行爲가 「邪」 하노라. (原文 10)

中国古典인 設文과 禮記는 「夷」를 武斷의 象徴인 「弓」, 「大」로 풀이하는  
 가 하면 武斷과는 相剋觀念이 되는 甲骨文字의 「𠄎」 古文의 「仁」과도 같은  
 것이라 했다. 또 「夷」는 「柔順하며 -」 「仁하며 - - -」 「君子不死之國」이다.  
 「仁하고 壽하다 - - -」 「孔子도 欲居九夷라 했다」 「東方의 夷는 西南北 - 三  
 方의 野蠻과는 다르다 등으로 讚美, 憧憬했다. 「武」와 「仁」을 二元論의으로  
 「헛치」하지 않고 「一元論의」으로 看做하는 中国古典의 「東夷觀」 이것은  
 바로 東夷武斷의 次元을 聖化하는 中国古典의 「審美眼」이다. 弘益人間이라는 建  
 國理想은 實로 「仁」이나 「사랑」만을 強調한 人道主義나 世界主義의 世界觀의  
 發想만이 아니라 여기에 「武」와 「仁」을 調和統一한 韓國哲學의 極致를 表象  
 한 理想이라 하겠다.

또 中国古典은 東夷族을 狩獵人으로 規定하여 「引弓之民」이라 했고 匈奴王  
 老上 单于(선우)는 農耕族인 支那天子(漢高祖)를 가리켜 「嗟! 土室之人아!」<sup>①</sup>  
 라고 叱咤(질타)했다. 뿐만아니라 東夷庸棋 등의 記事와 함께 屬性(附屬物)처럼  
 따라 다니는 檀弓 楛矢 石碯 등은 東夷의 狩獵의 性格을 實証하는 것이다.  
 또 禮記에는 檀弓篇이라는 「篇名」이 있고 저 有名한 「千步弓」의 故事는 統  
 一新羅代의 唐나라 까지도 그 技術을 부러워 하여 輸入하려 했던 것이다.

却說, 東夷族의 歷史- 韓國史의 本質은 傳統的으로 狩獵族의 特性과 그 展開  
 (패턴)을 지녔다. 따라서 狩獵人의 生活은 農耕族과는 判異한 것이있다. 原  
 始林속에서 무서운 猛獸와 對決하는 原始狩獵人의 生活을 想像해 보면 알만하다.

狩獵人에게 있어 部族이나 團體(終國엔 國家)는 곧 生命의 保全手段이다.  
 團體를 떠난 개인의 狩獵이란 「죽음」의 概念과 直結된다. 다시말하면, 狩獵族  
 의 生活信條는 部族-團體-國家를 떠나서 「個人의 安全」은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生活속에서 狩獵人들은 團體(곧 國家)에의 「忠誠!」 곧  
 「愛國!」이라는 道德律을 體得하게 되었다. 한편 農耕族, 支那人의 경우는 다  
 르다. 저들은 團體- 곧 國家에의 忠誠이라고 하면 - 에겐대 賦役이나 義務

兵役따위 이는 農期를 놓지는 「죽엄」의 概念으로 直結된다. 더우기 中國史는 無數한 外侵과 戰亂으로 「史統의 斷絶」을 茶飯事로한 歷史였다. 이러한 受難의 歷史속에서 支那人들은 나의 生命과 財産을 依託할수 없는 믿음직스러운 安息처는 國家가 아니라 차라리 家族(庭)이다 라는 哲學을 體得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世界에 類例없는 大家族制度」를 創設 하게 되었고 이 家族制度의 運營과 秩序維持를 爲해 「忠誠」/보다 「孝道」/를 앞세우는 「價值觀」이 생겨났다.

同一한 儒敎文化圈에 屬해 있는 韓中兩國이지만 韓國은 君主나 國家에의 「忠誠」을 第一의 德目으로 삼고 中國은 「孝道」를 앞세운다.

이같은 史實은 韓中兩國史의 「伝統」속에 歷歷히 窺보이고 記述되어 왔다.

花郎五戒의 德目中 「事君以忠」 「臨戰不退」는 곧 「忠」의 宗教的 昇華이며 乙支文德 - 三別抄 - 李忠武公의 愛國忠誠은 바로 韓國精神 - 忠思想의 連綿한 歷史事象이다. 忠=愛國은 이토록 韓國史의 「本質」속에 깊숙히 뿌리박은 韓國의 “얼”이다. 愛國(忠)을 陳腐하게 생각하는 오늘의 不條理/ 이는 韓國史의 發展을 阻害하는 歷史的 雜草들이다.

오늘날 이나라가 時急히 復活 시켜야 할 最大의 價值觀 그것은 저 雜草 속에 파묻혀 있는 「愛國」을 復活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分斷祖國의 再統一을 가져다 줄 現代 花郎의 誕生이다.

勝共統一을 爲해 「어느 花郎의 復活」/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韓國의 所望/ 이는 「愛國」의 生活化/ 「나라사랑」의 土着化/ 「忠」의 現代的 昇華로 비로소 成就된다.

參照史料 與 參考文獻

- ① 遂定朝鮮為四郡 封參為泗清侯 陰為菽且侯  
昧為平州侯 長為幾侯 最以父死頗有  
功為溫陽侯（史記，朝鮮列傳 第五十五）
- ② 太子-----遂不渡淇水 復引歸 衛山報天子  
末子誅山-----濟南太守公孫遂-----  
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 即命左將軍摩下  
執捕樓船將軍 並其軍以報天子 天子誅（孫遂---  
左將軍徵至。坐爭功相嫉乖計 棄市 樓船將軍亦  
坐兵至列口 當待左將軍 檀先從 死亡多 當斬贖  
為庶人（史記 朝鮮列傳 第五十五）
- ③ 元封三年（BC 109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  
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己又反 復攻更  
左將軍使右渠子長 降相路人之子最 告諭其民 誅成己  
以故遂定朝鮮為四郡（史記 朝鮮列傳 第五十五）
- ④ 東夷在史上有廣狹二義 狹義專指在中國境內者  
本書就狹意而言 東夷在秦以前居於中國東部  
即今山東江蘇安徽近海及淮之地-----  
東夷之廣義 則為秦漢以後版圖擴張在 中國境內東  
夷已歸同化 因別稱指滿洲朝鮮日本琉球等族為東夷  
（林惠祥 「中國民族史」）
- ⑤ 秦將為從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池易水 地方二千餘萬 車七百乘  
騎六千四 粟支二年 南有謁石雁門之 北有棗栗之利



民雖不田作 粟粟之實 足食於民矣 此所謂天府也  
(戰國策)

⑥ 朝鮮城在永平府境內-----後魏置縣屬北平郡

(大明一統志 卷五 永平府)

郡名弧竹為古名 北平為奏名 盧龍為魏名 北燕為平州  
及樂浪郡 後魏改樂浪為北平郡

(大明一統志 卷五 永平府)

註. 朝鮮城 = 永平府 = 樂浪郡 = 北平郡 = 盧龍 = 弧竹

(目夷·叔弟)

⑦ 左十二軍出 万，長嶺，玄兔，扶餘，沃沮，樂浪，等道  
右十二軍出粘蟬，渾弥，臨屯，堤奚，肅慎，石，東施，帶方，  
襄平等道 (隋書 卷四 帝紀第四 帝下)

(貞觀政要 卷九 三國史記 嬰陽王)

⑧ 東亞日報 (73.8.11) 가 「樂浪古墳等 發掘努力旺盛」

「最近의 北傀考古学界」라는 題下에 日本 「아사히」

新聞 73年 8月 7日 夕刊에 紹介된 아끼야마 (秋山) 記者의  
北傀社会科学院 歷史研究所長 金錫亨과의 “인터뷰” 記事에 依  
하면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 (1) 韓國戰爭 이후 北傀考古学界는 數十個의 樂浪古墳을 發掘  
「遼東半島의 한 古墳 (樂浪古墳) 에서는 一百名 以上을  
殉葬한 墓를 發見했으며」 平壤近郊의 「고분물」 先史遺跡地에서  
는 熱帶動物인 코볼소의 뼈를 파내는 注目할 成果를 얻었다  
고 (註：原本 그대로 轉載)

- (2) 北京의 周口店과 비슷이 石灰岩洞窟로 이루어진 「고분물」遺跡地를 旧石器時代 前期四, 五十萬年前的 것으로 測定한 金錫亨은 特히 「樂浪古墳이 朝鮮人の 무덤」이란 見解를 밝혀 從來의 通說( 著者 註: 이 通說은 朝鮮史의 半島史觀 通說이다 )을 뒤집을 可能性을 示唆했다. 그는 또 前記 遼東의 樂浪古墳에 大規模의 殉葬이 있는 것으로 보아 「相當한 規模의 國家權力」이 存在한 것으로 推測했다. - - - - - ( 後略 )
- (3) 六十年代 初에 「分國論」을 主張( 註: 日本이 韓國의 分國 “양키”라는 主張) 日本의 任那伽耶 支配說을 正面으로 否定하고 韓國人이 거꾸로 日本列島를 支配했다는 見解로 注目받은 金錫亨은 自身이 著述한 「朝鮮通史」는 今年末 修正版으로 增刊될 것이라고 말했다.
- ⑨ 朝鮮東夷 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夷東方人也 人大人弓 夷字作 “尽” 与古文 仁同 蛮門人虫
- 人大 豹人彡 人羊 皆異種 夷独人大 夷恪仁寿  
有君子不死之國 故子欲居九夷也( 說文 通訓定聲 )
- ⑩ 夷者仁也 仁而好生萬物 戒者凶也 斬伐殺生不得其 中  
蛮者慢也, 君臣同川而浴 極為簡慢 者 也  
父子 叔同川而居 其行邪 ( 礼記 十二 王制 )
- ⑪ 皆會長大倨傲其辭 自称天地所生日月所置 匈奴大单于( 中略 )  
今中国雖云有禮儀及親屬益疎 則相殺奪以至以  
至易姓皆此類也 嗟土室之人 顧無多辭喋喋佔佔  
顧漢所輸匈奴絳絮 米 令其量中 必美善而已矣 何  
以言為乎 且所給備善則 已備若惡則 侯熬以騎馳  
蹂而稼樞耳( 資治通鑑 卷十四 漢紀六 文帝 )

# 主体的 史觀定立을 爲한 試論

金 宗 勉  
韓國反共聯盟事務總長

## 序 論

오늘날 지구상에는 2백여 종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무수한 종족이 거품처럼 소멸되었고 지금도 소멸되어 가고 있다. 종족의 소멸이라는 현상은 분석하기에 따라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가까웠던 女真族의 경우를 통해서 단편적이거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 적어도 16세기까지 韓半島의 북단인 平安道와 咸鏡道를 비롯하여 南滿州 일대에 퍼져 살아가고 있던 女真族은 오늘날 자취도 찾기 힘들게 되었다. 太祖 李成桂가 즉위하기 전 高麗 말기까지만 하여도 女真族은 제법 강성했고, 太祖 건국 후 世祖때까지 북쪽 변방을 시끄럽게 흔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된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우리 민족이나 中國민족에 흡수·동화(同化)되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제 제 지구상에서는 女真族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한 민족이 이같이 이민족에게 흡수·동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족의 내실(內實)한 문화와 사상이 업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女真族과는 달리 猶太민족의 끈덕진 생명력은 경탄할 바 있다.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래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기까지 이 민족이 겪어야 했던 2천여년 동안의 신산고초는 필설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세계 도처에 유리걸식(流離乞食)하면서도 猶太민족이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유일신「여호와」를 믿는 강인한 종교적 신념과 어느 때인가는 고국에 돌아가 나라를 세우고 말겠다는 자자전승(子子傳承)한 「시오니즘」의 소산이었다.

이제 韓半島에 자리잡아 古朝鮮 이래로 大韓民國에 이르기까지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이루려 온 우리 韓民族도 허다한 역사적 고난과 물락의 비운을 극복하

고 웅장한 내일의 꿈과 소망을 오늘의 역사위에 기록하게 되었다. 내일은 희망과 번영과 빛나는 문화적 유산 위에 바람직한 민족의 융성이 있을 뿐이다. 소망과 사랑과 창조에의 열망(熱望)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단과 노력과 인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과거와 같이 헛되게 보낸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女真族과 같은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소비에트」연방국에 합병되어 버린 中央「아시아」와 「시베리아」의 무수한 소수민족의 전철을 우리 민족이라서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황금의 시간처럼 중요하고 한 치의 시간도 유예(猶豫)할 수 없이 급하고 절실하다.

우선 이 절실한 문제의 해결은 민족사상의 주체적인 확립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민족다운 韓國민족의 민족사상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문화·사회·경제 정치가 언젠가는 쉽사라 무너질 모래성밖에 될 수 없다. 여기에 최근 우리의 생활신조로서 維新理念이 주어졌다. 새로이 제시된 維新理念은 어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維新理念을 바탕으로 민족사상의 확고한 수립 위에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융성이 따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西歐의 황금만능주의와 세기말적인 퇴폐문화의 홍수에 다소 침식을 당해 이미 存在해 있는 순수한 우리 이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우리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전통과 미풍양속(美風良俗) 또는 조상의 지적(知的) 생산품마저도 조금씩 조금씩 잊혀가고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세대는 특히 우리의 본모습을 되살리고, 진정한 민족문화의 확립을 통해서 오늘을 인내와 근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 의무가 있다고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維新理念을 바탕으로 韓民族사상의 주체적인 확립이 있어야 하겠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양심을 회복하여야 하겠으며, 내일의 확실한 소망과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 조그만 試論은 그러한 작업을 위해 던지는 한 조각의 벽돌이고자 한다.

밝고 隆盛한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을 勤勉과 眞實로 살아가려는 韓國人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삼가 바치려 한다.

## 1) 올바른 民族史觀

韓國史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역사라고 한다.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은 이론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어느 일면 일리가 있기도 하다.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는 고난이라기 보다는 형극의 역사라고 보아도 좋을 정도다.

壬辰倭亂을 필두로 丙子胡亂과 각종 반란이 접종하였고, 高宗이 즉위한 후로 열강의 거센 이권다툼과 침략의 위협하에 허덕여야 했다. 그리고 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고, 1910년에는 드디어 망국의 비운을 맛보아야 했다. 日本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하의 36년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손실과 암흑의 세월이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으나 5년 뒤 北韓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韓國史는 또 한번 시련과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이같은 우리의 근대사는 비극과 좌절로 점철된 정체(停滯)의 역사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소망과 애정은 결핍되었고, 탐학과 절망만이 마치 역사의 주류를 장식해 온 것처럼 오해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아 보였다. 그리고, 그런 어느 일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사를 존재한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사실(史實)에의 접근과 파악, 그리고 판단을 정직(「정직」이란 말이 적당치 않다면 「솔직」이나 「진실」로 바꾸어도 좋다)하게 내려야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교육 받아온 韓國史는 거의 日本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어용사학자들이 날조하고 과장한 역사적 업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36년동안 지배를 받아오면서 입은 손실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반인간적(反人間的)인 것이 바로 韓國史의 오도(誤導)라고 해서 결코 잘못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날조에 반기를 들고 민족사학을 주창하고 나선 학자로서 丹旆 申采浩 선생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의 민족사관은 독립된 조국의 전설을 회구하는데 기초를 두었으며 그것이 어려울 때는 조국의 민족사를 똑바로 써서 시들지 않는 민족정기가 두고 두고 자유독립을 달성하는 날이 오도록 기다리게 하려는 데 있었다.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선 자를 我라 하고 그 외에는 非我라 하나니, 이를테면

朝鮮人은 朝鮮을 我라 하고 英·露·法·美 (영국·러시아·프랑스·미국을 말함) 등을 非我라 하지만, 英·美·法·露 등은 자기 제나라를 我라 하고 朝鮮을 非我라 하며, 무산계급은 무산대중을 我라 하고 地主나 자본가 등을 非我라 하지만, 지주나 자본가 등은 자기 계 불이를 我라 하고 무산계급을 非我라 하며,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밖에 무엇에든지 반드시 本位인 我가 있으면 따라서 我와 대치한 非我が 있고, 我중에 我와 非我が 있으면 非我중에도 또 我와 非我が 있어, 그리하여 我에 대한 非我的 접촉이 번극할수록 非我에 대한 我的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人類社會의 활동이 휴식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나니, 그러므로 역사는 我와 非我的 투쟁의 기록이니라.』 (丹齋지음 『朝鮮上古史』제1편 총론에서)

丹齋의 민족사관은 我를 韓國으로 보고 기타 異民族을 非我로 보아 我(韓國)와 非我(外國)의 투쟁을 역사로 파악한다. 그러나 역사를 단순한 투쟁사로 보는 듯하는 그의 사관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의 충돌로 파악하고 있다.

『西京戰役(註·妙淸의 반란을 말함)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王師가 反賊을 친 戰役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그 실상은 이 戰役이 즉 郎弘兩家 對 儒家의 戰이며, 國風派 對 漢學派의 戰이며, 獨立黨 對 事大黨의 戰이며, 進取思想 對 保守思想의 戰이니, 妙淸은 곧 전자의 대표요 金富弼은 곧 후자의 대표이었던 것이다. 이 戰役에 妙淸 등이 패하고 金富弼이 勝하였으므로 조선사가 事大的·保守的·束縛의 사상—儒家思想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金富弼이 패하고 妙淸이 勝하였다면 조선사가 독립적·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戰役을 어찌 1千年來 第一大事件이라 하지 않으랴.』 (丹齋 『朝鮮史研究草』에서)

여기 인용할 글가운데 낭불(郎弘)이란 화랑도(花郎道)와 弘敎를 지칭한 것으로 丹齋는 특히 韓民族의 고유한 사상으로서 화랑도를 들었으며 이를 國風(國風)·독립(獨立)·진취적(進取的)인 사상으로 보았고 이에 대한 유가사상(儒家思想)을 漢學(漢學)·사대(事大)·보수(保守)로 파악하였다. 丹齋의 모든 학문적 노력은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전통과 사상을 파악하려는 데 완전히 집중되었다. 물론 丹齋의 민족사관이 지니는 결함으로 역사를 我와 非我的 투쟁으로서만

인식하려 했기 때문에 초래되는 지나친 민족의식과 배타적·부쟁적 사관을 말할 수 있겠으나 종래의 좌절적 역사관을 배척한 점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높이 평가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日本 제국주의 어용사학자들이 저지른 韓國史의 오도와 죄과는 과연 무엇인가. 朝鮮總督府의 지원아래 방대한 예산을 뒷받침으로 하여 日帝 어용학자들이 저지른 「민족사상 말살」의 작업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主体性) 박탈에 있었다. 日帝 어용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하나는 韓國문화의 발전에는 주체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타율성(他律性)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韓國史에는 내적(內的) 발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정체성 이론으로 집약된다. 韓國민족은 근대사회로 넘어갈 만한 주체적인 역량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갈파하는 그들은 따라서 韓國민족은 외세(外勢), 즉 日本민족에 의해서 근대적 발전이 인도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日本의 韓國지배는 역사적 이론으로 보아 합당한 것이며,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일원으로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공동운명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전개를 위해서 어용학자들은 韓國민족은 사대주의(事大主義) 근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정치적으로는 당쟁(黨爭)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왜곡된 이론은 오늘날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놀랍게도 식민지시대에 국사교육을 받은 지도층이나 기성세대의 열등사관 형성에 너무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대주의란 太祖 李成桂가 내세운 실리와교정책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당쟁이란 것도 정치역학(政治力学)의 보편 타당한 정쟁(政爭) 현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물론 사대주의 외교정책이 이땅의 일부 지식인들에게 모화사상(慕華思想)을 심어준 점에서 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문제는 대륙문화를 흡수하여 독자적인 半島문화를 이룩한 문화창조적 업적을 도외시해 버리고 폐해점만을 짐소 봉대(針小棒大)하여 강조한 극히 왜곡되고 편협된 日本 어용사학자들의 연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쟁도 『韓國민족이기 때문에 빚어진 분파작용』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인류집단의 정치조직이 존재하는 한 일어날 수 있다는 정치의 개연성(蓋然性)을 유독 우리 민족에게서만 무시해 버린 점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日本 제국주의자들은 그리하여 韓國민족에게 뿌리깊은 역사적 「컴플렉스」와 「니힐리즘」을 심는데 성공하였고, 그 해독은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간단없이 출몰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史를 깊은 검토나 성찰(省察)도 없이 「고난의 역사」·「정체의 역사」라고 정의해 버리는 소이는 우리가 깊이 경제해야 하며 그것은 日帝 식민주의 사관의 망령(亡靈)이라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P·H·카」교수(「캠브리지」대학)의 말대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 것이다. 과거의 사실(史實)의 집적(集積) 가운데서 필요한 사실을 추출해 내어 판단하고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로서 역사의 기능은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의 회랑(廻廊)을 통과하여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韓國史는 이미 존재해 있는 사실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범위에서 살피는 실증사학적(實証史學的) 태도와 韓國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긍지와 애정을 갖고 살피는 민족사간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태도에도 엄격한 절제(節制)와 극기(克己)가 요구된다.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면 2차대전 당시의 獨逸 「나치즘」이나 日本 제국주의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관으로 침몰되기 쉽다.

독선적인 사관의 말로는 세계로부터의 백척과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폐쇄적인 문화「패턴」을 초래하며 그 해독은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열등·좌절에 져있는 식민사관은 민족발전의 제기를 근본으로부터 말살해버리는 백해무익의 결과를 초래한다.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 우리의 현대사는 이러한 열등사관의 망령이 회오리치던 좌절의 현대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식민주의 사관은 당시 아무런 비판이나 저항없이 간존했었고, 항간에는 『엽전이 별 수 있나』하는 자포자기적 망언이 유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식민주의사관이 행세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우리의 것을 존재한 그대로 올바르게 보고 그리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강하고 힘찬 긍지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도 세계와 어깨를 겨눌수 있다는 신념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국적있는 韓國史의 정립(定立)은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하고 전개되었던 것이며 그러한 민족적 요구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 2) 韓國文化에 대한 省察

인간이 주어진 자연상태에서 깨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이상을 실현해 보려는 활동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의 내적(內的)인 정신활동의 소산을 일반적으로 문화라 한다. 이에 반하여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물질적으로 생활이 편리하여지고 정신적으로도 깨우쳐 진보되는 기술적(技術的)인 발전을 문명이라 한다.

물론 문화와 문명의 차이는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한마디로 구별하기 힘들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혼용(混用)해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편의상 여기서의 韓國문화라 함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리 민족의 높은 정신활동, 내지는 지적(知的) 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성조(聖祖)인 檀君의 개국이념을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고 한다. 그 뜻을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기본 「모열」은 선린정신(善隣精神)에 있다. 이를 다스리는 자의 편에서 보면 선정으로서 백성을 따뜻하게, 안락하게 하여 주겠다는 것이며, 백성의 편에서 보면 착한 이웃으로 서로 돕고 아끼는 정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三國史記를 보면 三國時代부터 왕들은 나라의 재난을 자신의 부덕(不德)과 실정(失政)으로 보고 책임을 통감하는 기사를 도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홍익인간이라는 정치윤리는 李朝시대 덕치주의(德治主義)를 표방하는 성리학(性理學)의 정치이념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면서 더욱 심세하고 전개되고 정치적 이상(理想)으로 결정(結晶)을 보게 된다.

말하자면 홍익인간은 韓國의 정치윤리와 생활감각의 주류(主流)를 이루어 온 韓國민족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하고 값진 윤리라는 것이다.

新羅의 三國統一에 공로가 컸던 화랑도(花郎道)의 정신사적 의의는 높게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제 24대 眞興王때 源花의 뒤를 이어 그 신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화랑 5계를 지켜 학덕을 갖추고 심신을 단련하는 민간수양 단체였던 화랑도는 후진국 新羅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엘리트」 청년들의 모임이었다.

이들은 첫째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둘째 효도으로써 부모를 섬기며, 세째 믿음으로써 벼를 사귀고, 네째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 생명을 죽일때는 장소를 가린다(事君以忠·事親以孝·交友以信·臨戰無退·殺生有損)는

세속 5계를 신조로 하였다. 弘敎와 儒敎·仙敎의 3가지 종교의 사상을 혼합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한 실천도 덕을 제시했던 세속 5계는 新羅의 국가적 이념이었다. 高句麗·百濟 등에 비하여 가장 문화적으로 후진국이었고, 국력으로도 가장 열세했던 新羅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화랑도와 화랑도의 이념인 세속 5계의 철저한 이행에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령 百濟·新羅의 黃山별 싸움에서 개진 벽두, 강용한 百濟 정예병에게 여러차례 패전하여 사기가 떨어져 있던 新羅兵이 심기일전(心機一轉), 대공세를 취함으로써 승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화랑 官昌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번이나 階伯장군의 포로가 되도록 단도직입하여 百濟병영에 뛰어들어 官昌의 용기는 화랑정신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그가 죽어 말에 묶이 매달려 돌아오자 新羅병정들은 비로소 제몸을 돌보지 않고 입전무퇴의 정신으로 싸움에 임했다. 新羅의 국운이 시들기 시작하면서 화랑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었으며, 화랑도 정신의 해이(解弛)는 新羅문화의 타락과 좌절을 초래하고 말았다. 韓國문화에 빛나는 업적을 더한 외래 사조로서 仙敎의 공헌은 잊을 수 없다.

「韓國人是 본시 현실주의적이고 낙천적(樂天的)인 기질」이었는데 仙敎의 유입으로 인해 「仙敎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이고 극히 사변적(思辨的)인 내용이 韓國人 기질에 정작」하게 되었다(崔南善의 「朝鮮常識 問答」에서). 따라서 韓國人是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고, 元曉·圓光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나왔는가 하면 고도정치(高度精緻)한 예술성 위에 仙敎의 철학적인 내용을 가미한 仙敎예술가 金大成의 석굴암같은 걸작이 남게 되었다.

高麗에 들어와 仙敎는 호국(護國)仙敎로서 면목을 새로이 하였다. 蒙古軍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高麗人들은 깊은 신앙심으로 뭉쳤으며 그 결과 저 위대한 海印寺의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 각인(刻印)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각자공(刻字工)들은 몸을 정결히 하고 글자 1자마다 뜨거운 신앙심으로 합장(合掌)하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아로새겼다. 이와 함께 이룩한 高麗의 세계적 업적은 서양의 활자 발명보다 2백년이나 앞서는 활자술의 발명이었다. 활자·인쇄술의 발명은 모든 문화의 길잡이인 출판문화의 근본으로서 韓國문화사상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高麗 도자기의 예술성은 언급의 여지가 없이 뛰어난 세계적인 것이었다. 中國

에서 도자기 굽는 방법을 터득해 온 高麗의 도공(陶工)들은 中國의 송나라 도자기의 모방이라는 아류문화(亞流文化)로 만족하지 않았다. 거의 종교적 깊이에 값할 만큼 도자기의 모양·빛깔·열처리(熱處理) 과정을 통하여 독창적인 예술성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에 유일무이한 高麗 청자문화(靑磁文化)를 이룩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별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자기의 예술성에 대한 학문적 교육도 달리 받았을까 의심되는 도공들의 손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청자 예술이 빛어졌다는 것은 음미하면 할수록 감격적인 사실인 것이다.

「바른 마음과 정성으로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린 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케 한다(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儒學은 三國時代 초기부터 유입되었으나 佛教의 융성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高麗때 安裕에 의해 그 기본이 잡히고 高麗 말기 鄭夢周에 의해 학문으로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졌다. 이 무렵 부패한 佛教에 대한 반동으로 신진세력인 李成桂·裴克兼·趙浚 등이 국가창업의 이념으로서 儒學을 표방하게 되었다. 儒學은 孔子가 옛 도리를 집대성하고 그의 제자인 孟子·荀子에 의해 발전되다가 송나라때 程朱가 佛教의 영향을 받아 이를 철리적(哲學的)으로 확립시켜 이른바 성리학(性理學, 또는 朱子學·程朱學)이라 일컫게 되었다. 高麗 후기의 사대부(士大夫) 계층에 의해 연구 발전되어온 儒學은 退溪 李滉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니 退溪를 유학의 최종적 완성자라 칭한다.

儒學의 기본윤리는 효도(孝道)에 둔다. 임금에 대한 충성도 결국은 부자관계의 효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효도는 사회·국가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규범으로 파악되는 것이었다. 효를 닦은 뒤라야 학문이 있고 정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儒學은 무엇보다 효에 의한 인격완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儒學이 국가 정치이념으로 표방되면서 李朝 초기에 이룩된 번성한 儒敎文化는 儒學의 창조적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한 결과였다. 世宗·世祖·成宗의 연간에 한글의 창제, 동(銅)활자의 제작, 간외대(簡機臺)와 측우기(測雨器)의 발명, 각종 도서의 편찬 등 눈부신 업적이 이룩되었다. 건축·회화·문학·음악·무용등 예술·문화방면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양식(樣式)이 출현하고 추구되었다.

許筠의 『洪吉童傳』이나 작자미상의 『春香傳』·『沈清傳』·『興南傳』은 우리 국문학의 빛나는 성과이며, 극적인 감동과 우아한 무용으로 구성된 『処容舞』는

중중무용의 백미(白眉)로 꼽을 만한 것이다.

李朝 후기에 등장한 실학(實學)은 근대화와의 자각으로 평가를 받는 중요한 학풍이었다. 柳馨遠을 비롯하여 李舜光·韓百謙·李德懋·朴趾源·丁若鏞·金正喜·申景澹·李翼·柳得恭·朴齊家·李書九 등 여러 학자들이 성리학의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배격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을 연구했다. 비록 그 뜻은 현실에 이용되지 못하고 학문으로서 끝나고 말았지만 자아(自我)의 발견, 의식의 확대, 근대화에의 발돋움 등으로 보아 문화사적인 위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울배반적으로 우리 나라는 식민지화와 함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물론 1890년대의 獨立協會같은 민간단체의 활발한 근대화운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보수 반동주의자들의 탄압으로 그효과는 단시일에 그치고 말았다.

어쨌든 시련의 근대화 속에 韓國은 민족·언어·문화의 말살이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혹하고 처절한 日帝의 탄압·수탈정책에서도 3·1운동 같은 대대적인 민족적 시위를 감행하기도 했다. 그러한 排日 저항운동은 대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순교정신(殉教精神)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韓末「프로테스탄트」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심어준 것은 기독교의 사랑·평등·자유에 대한 개념이었다. 이같은 기독교 정신은 민족주의와 연결되면서 교회들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日帝가 105인 사건(安岳에서 애국투사 검거)을 날조한 것도, 3.1운동때 전국 수백개의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처형·구금한 것도 민족주의의 온상을 교회로 본 때문이었다. 日帝 말기에 日本「후쿠오카」형무소에서 옥사한 기독교인 尹東柱의 빛나는 저항시는 당시 日帝의 탄압에 침묵하거나 변절한 많은 문학인·지식인들의 그것에 대해 값지고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 문화는 무분별한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크게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日帝 36년동안 참혹한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韓國문화는 쇠잔하기 그지 없었다. 언어와 문자마저 소멸될 위기에 봉착했고, 창씨개명으로 이름도 제것을 지닐수 없었다. 따라서 해방은 우리 문화를 기사회생(起死回生)시키는 듯 했으나 西洋의 퇴폐적인 문화가 쏟아져 들어와 극적도 알 수 없는 기형문화가 탄생된 것이다. 외래문화의 수입은 선택적(選別的)이어야 함은 너무도 자명

한 것이다. 西洋문화는 수백년동안 장구한 세월을 거쳐 다듬어지고 발전되며 변형되어 탄생되었다. 그러한 수백년 문화가 우리의 기질과 문화와의 조정은 커녕, 불과 20~30년이란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옴으로써 문화적 소화불량을 초래했던 것이다.

1960년대 초기부터 정권의 안정과 함께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검토와 재건작업이 「주체성 확립」이란 「슬로건」밑에 모색되고 있는 점은 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것이었다. 경제적 번영도 주체성 확립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문화·사상적 뒷받침 아래서만 건전하게 발전되고 합리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 3) 民族思想의 展開

어떤 것에 의해서, 살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을 신조(信條) 또는 신념이라고 한다. 이 신조가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그것을 민족사상이라 일컫게 된다. 따라서, 민족사상이란 우리 민족의 생활 신조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이란 결코 관념적인 것만은 아니다.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추진시키는 힘인 것이다. 사상이 결여될 때 그 인간의 생활은 공허하며, 내일이 없으며, 사랑과 윤리를 등지게 된다. 사상이 없는 정치, 사상없는 경제, 사상없는 교육—그것은 몰락과 파멸을 초래하는 장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상의 부패도 정권과 민족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민족에 있어서 튼튼한 자주적·주체적 사상의 확립은 존재방식의 기본에 속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 단일국가로서 행세하게 된 것은 민족적인 어떤 생활신조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생활신조를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 할 수 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선린정신은 연면히 우리 민족사상 깊이 젖어 계승되어 온 신념이었던 것이다. 이 신념이 퇴색될 때 정권은 부패하였고, 왕조(王朝)는 바뀌어 주인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한다.

新羅가 그렇고 高麗가 그렇고 李氏朝鮮도 그러했다. 高句麗나 百濟도 마찬가지였다. 집권자가 일신의 안락과 쾌락만을 추구할 때 홍익인간의 민족적 신조는

호려졌고, 기강은 문란하여졌던 것이다. 自由黨 정권의 몰락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건철을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민족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민족사상은 백성의 밑바닥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스리는 자는 그 뿌리깊은 민족사상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을 때 비로소 균형있는 발전과 진정한 향상이 가능한 것이다.

민족사상의 형성은, 그러므로 오늘날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신장된 국력에 비례하여 더욱 그 당위성(當爲性)이 요청된다. 維新理念은, 따라서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민족사상의 총화(總和)요 결집(結集)인 것이며, 생활신조인 것이다. 신분과 생활 차이와 믿음의 종류와 가치관의 상이(相異)함을 초월하여 전 韓民族이 다듬고 빛을 내어야 할 생활의 신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한번 維新理念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관의 맥락(脈絡)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주상적인 維新理念에서 떠나 더욱 실제적이고 전통적인 사상적 배경을 더듬어 그것을 우리의 체질로 변화시켜야 진정한 민족사상으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韓國민족의 윤리·도덕은 근본적으로 효도(孝道)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선 전제하고 싶다. 효도란 부자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람됨의 도덕률(道德律)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화랑 세속 5계 가운데 두번째의 계율(戒律)인 사친이효(事親以孝)를 우리는 주의깊게 기억해야 한다. 첫번째 계율(戒律)이 물론 사군이충(事君以忠)이지만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부자관계적 개념인 것이다. 군왕을 아버지와 동일시 한다는 것인데, 가령 儒敎에서 말하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군이충의 충(忠)은 효(孝)와 동질성(同質性)이고 두 글자는 짝을 이루어 충효(忠孝)라는 윤리적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윤리의 규범이 효도에 있음을 이로써 알게 되는데, 차츰 儒學이 정착하게 됨에 따라 삼강오륜(三綱五倫)의 儒學 실천윤리와 합일하여 우리 민족 정신사에 뿌리깊이 주류를 이루어 오게 되었다.

부자관계는 불변(不變)의 혈연관계이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고 하여도 부자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이상의 것도 아니고 이하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효도야 말로 불가변(不可變)의 도덕률인 것이다. 불가변의 효도 위에서 이웃에 대한 예의와 엄치, 부부관계, 벗과의 우정등 모든 윤리가 전개되고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윤리는 여하한 외부적 도전(逃戰)에 의해서도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基督教의 윤리도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가 효도를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효도 위에 세워져 있다. 「모세」가 「여호와」신에게 받았던 10계명 중 제5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성경에는 효도의 실천을 엄격하고 준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성경은 효도한 자에게 장수(長壽)의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자적 개념에서 基督教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성부·성자는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이지만 성자가 육화(肉化)하여 세상에 임했을때 성부는 그를 『내 아들』로 호칭하고 있는 점에서 부자적 관계로 보아 무방한 것이다. 그러므로 基督教 윤리도 효도에 근본하고 있으며, 모든 윤리가 효도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基督教의 이같은 윤리규범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基督教도 불변하는 부자관계에 모든 가치명가의 기준을 두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같은 東洋圈인 「이스라엘」과 韓國의 윤리적 근본이 동일하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임에 반하여 西洋윤리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西洋의 그것은 부부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西洋중세사를 보면 기사도(騎士道)라는 것이 있다. 기사도란 용맹·경신(敬神)·예절·엄치·인협(仁俠)·충성·부녀숭배·노약보호를 말한다. 즉 충의롭고 엄치를 중하게 여기며 인협을 배워 부녀노약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윤리규범에는 전혀 효도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더구나 중세기 기사도라면 십자군원정시대를 전후하여 특히 발달하였고 따라서, 이들은 基督教윤리로서 철저히 무장하였을 것이었다. 효도를 준엄하게 요구한 基督教윤리는 그러나 西洋에서는 어느 일면이나 배제된 채 정착된 것이라 보겠다. 부자관계의 효도를 거부한 西洋윤리는 부부관계에 근본을 두어 오늘날 소위 「퍼스트 레이디」를 신조로

하는 신사도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부부관계란 부자관계와 달라 가변적(可變的)인 것이다. 사랑이 식으면 이혼하고, 이혼하면 서로가 냉랭한 타인으로 변한다.

이같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부부관계 위에 윤리의 규범을 설정한 西洋윤리가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혼탁하기 짝이 없는 西洋윤리를 보면 자명한 해답을 얻게 된다. 오늘의 西洋윤리는 본말(本末)을 잃고 성적으로 극히 타락하여 저 유명한 旧約聖經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 효도를 거부한 윤리가 정상적일 수 없는 본보기인 것이다.

維新理念은 그러므로 집차 혼탁해 가는 부부중심의 가변적 윤리관을 배격하고 우리 본래의 민족사상 근원이었던 효도에의 복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효도를 모든 윤리의 기준으로 삼은 뒤에 우리 고유한 홍익인간 이념과 新羅의 삼국통일 원동력이 되었던 화랑 세속 5계를 생활신조로 삼는 전통적 가치관의 회복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그 위에 국민 각자가 자기 나름의 종교를 갖고 겸허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한다. 아마도 그 길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명량한 복지사회를 이룩할 첩경이 아닐까 믿어진다.

#### 4) 主体性 문제

60년대 중반기부터 번번히 識者들의 입에 오르내린 말로써 주체성 문제만큼 허다하게 논의된 것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우리 현대 정신사에 있어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반증도 된다. 바꾸어 말하면 60년대 중반기 이전까지 주체성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주체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시 철학용어의 하나로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객관(客觀)에 대립하는 주관(主觀)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즉 의식하는 것으로서의 자아(自我)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체성의 반대말은 객체성(客體性)이라 하겠다.

우리가 오늘날 주체성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게 된 것은 주체성에 대한 자각도(自覺度)가 상승되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므로, 주체성은 韓國민족이 韓國민족임을 자각하는 적극적인 자기 개발인 것이다. 이같은 논의가 전개된 그 저변에는 韓國민족이 韓國민족이면서도 韓國민족이 아닌 국저불명의 사관(史觀), 가치관



속에 살아왔다는 반대개념을 생각하게 된다.

주체성의 회복은 매우 광범위한 전문화적(全文化的) 현상을 포괄한다. 경제적 자립, 정치적 안정, 독창적인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의 저절난 조화, 韓國실정에 맞는 교육, 韓國人的 종교 등등 모든 문화 현상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주체적인 사관의 확립에서 비롯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한다. 즉 자아의 사관을 가져 보자는 것이다.

자아의 사관이란 무엇인가? 객관의 사관에 대립하는 개념을 말한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맑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 보자는 뜻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종래 우리의 역사의식은 객관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고 얼룩져 왔다는 뜻이 된다. 역사는 존재한 사실(史實) 그대로를 솔직하게 파악하는 순수한 태도가 바람직한 것이다.

아울러 주체성의 확립은 주체적인 사관 위에서 자기가 소속한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대한 긍지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믿고 싶다. 그 긍지의 출발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太極旗는 大韓民國의 상징인 것이다. 그것은 韓國역사와 韓國민족의 표상인 것이다. 국기에 대한 尊嚴性과 의의의 正確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우리의 주체성 確立의 첫걸음은 시작된다고 본다.

우리의 太極旗는 다른 나라와의 국기와 달라 매우 심오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太極旗는 첫째, 창조적 뜻을 말한다. 태극(太極)이라는 일원(一元)이 음양(陰陽)이라는 두가지 힘의 형태로 변화되고 이 힘의 상호작용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 태극의 이론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창조성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예술·문화 등 각 분야에서 보여준 우리 조상들의 찬연한 창조적 업적이 太極旗에 담겨 있다고 보아 좋은 것이며, 또 장차 창조성을 발휘하라는 책임과 의무의 부여로 보아 좋을 것이다.

둘째, 발전을 뜻한다. 태극은 언제나 동적이며, 우주의 근원인 태극의 움직임은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에서 처엽말단에 이르기까지 작용한다. 한 곳에서 정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며 움직이라는 뜻이 太極旗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세째, 자유를 의미한다. 만물이 각각 소유하는 성격에 따라 서로 침해됨이 없이 이성을 발휘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이 태극이론이다. 이는 우리의 자유를 애호하는 국민성의 상징인 것이다.

네째, 평등을 뜻한다. 우주 삼라만상이 무한히 복잡하고 천차만별(千差萬別)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음양(陰陽)의 조화가 고르게 분배되어 있어 균등할 뿐 아니라 부분에 이르러서도 서로 대립의 위치에서 평등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태극이론이므로 이는 우리 민족의 평등사상을 뜻하는 것이다.

다섯째, 영원 무궁을 상징한다. 태극도형의 붉음과 푸름은 음양의 극선인 바 이는 주기적인 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신진대사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이론의 표현인 것이다. 이는 우리 역사의 영원 무궁한 발전과 계속을 상징한다.

여섯째, 청정(淸淨)과 순결의 뜻이다. 太極旗의 바탕은 순백색이다. 깨끗하고 순결한 민족성의 상징인 순백색은 모든 전체를 포괄하고 종합하는 군자적(君子的) 포용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太極旗는 천하의 허다한 위치와 이를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신비와 사상을 한 폭의 간명하고 우아한 그림속에 집약시킨 결정(結晶)인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도형은 조물주(造物主)인 신의 권화(權化)이며 우주의 결정이요, 모든 철학과 사상을 포괄하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대자연의 진리가 상형화(象形化)된 태극도형은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군림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혹자는 太極旗가 1875년 수신사 朴泳孝 등이 日本에 갈 때 배안에서 작도하여 제양한 것이 그 사용의 시초라고 하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당시 朴泳孝 등이 기록한 사화기략(使和記略)이란 책을 보면 高宗에서 올린 장계(狀啓)중 『본국 국기를 새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미 처분이 제셨으므로 지금 대·중·소 3개를 만들어 그중에서 작은 기 하나를 상송하옵니다(本國國旗新製事既有處分今已造就大中小旗三本而其小旗一本上送緣由馳啓)』라는 귀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朴泳孝 등이 배안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미 처분이 제셨으므로(既有處分)』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제작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전에 太極旗에 대한 논의는 조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흥미있는 것은 태극도형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상징이란 사실이다. 1959년 12월 국립박물관 발굴대가 발굴한 新羅時代인 감은사(感恩寺) 사지(寺址)에서 나온 석각(石刻)에 선명한 태극도형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1144년에 죽은 高麗 仁宗때의 호부상서(戶部尚書) 許載의 무덤에서 나온 석관의 천판(天板) 무늬 한 복판에도 태극도형이 새겨져 있었다(창경원에 보관중).

더욱 중요한 사실은 百濟·新羅의 고분에서 곡옥(曲玉)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양을 보면 곡옥 2개를 서로 엇바뀌어 합했을 때 그것이 바로 태극도형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고대인들이 태극도형을 직관적인 우주관의 표현으로 보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상서로운 길조로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같이 태극도형은 우주 삼라만상의 총체적인 표현으로 韓民族의 사상·신념·생활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 오늘날 우리 나라 국기로 승양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太極旗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지식은 우리 주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작업이라 할 수 있다. 太極旗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우리의 주체성은 출발하는 것이며 維新작업도 이러한 주체적 사상과 문화적·역사적 자각으로서 더욱 완전함을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結 論

우리는 짧게나마 민족사관·韓國문화·민족사상·주체성 문제 등에 관해서 살펴왔다. 민족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외부적·내부적 제모순과 도전에 의해서 異民族에게 흡수·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요소도 지녔다.

우리 민족은 오랜동안 異民族에게 흡수되려고 했거나 점령되었던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 隋나라의 대대적인 高句麗침공이 그 하나였다. 統一新羅의 唐나라 군사 주둔이 또 그 하나였다. 靺鞨족(契丹族)의 高麗침공이 있었으며 蒙古族인 元나라의 지배가 있었다. 근세에 들어와서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다. 전국토가 초토화되었던 壬辰倭亂과 淸나라의 丙子胡亂이 있었다. 韓末에 이르러 「러시아」·청나라·英國을 비롯한 선진 열강의 각축이 半島 위에서 벌어졌다.

끝내는 日本 제국주의자들에게 병탄되어 36년이라는 기나긴 암흑의 역사가 기록되었다. 1945년 광복이 되었으나 1950년 蘇聯의 앞잡이 공산정권의 침략으로 우리 나라는 공산화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실로 고난과 형극의 역사라 할 만 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의 측면만이 노출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세계에 으뜸가는 창조적 예술과 문화가 허다하게 꽃피어 나기도 하였다. 자기 일신을 희생하여 대업을 이룩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역사 위에는 준비했던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의 총제인 태극이론을 비롯하여 홍익인간 이념과 화랑 세속5계와 仏敎의 사상적 확립, 심오한 儒敎사상의 완성 등 사상·철학적 측면에서 이룩한 높은 정신적 업적도 또한 팔목할 만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 韓國의 이념적 지표이며 오늘의 생활신조인 維新思想을 전통 위에 확립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維新理念은 우리 앞에 제시된 방향타이며 새로운 신념인 것이다. 새시대를 살아가길 정신적 생활적 지향점인 것이다. 維新理念이 꽃 피어나기 위해서는 민족사상과 주체성의 확실하고 완전한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위에 외래의 문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목적인 수입, 무비판적인 수입은 자칫 우리의 순수한 민족정신을 좀먹기에 좋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살피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수용문화(受容文化)의 「패턴」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때 경제적으로 부의 축적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독자적인 창조적 문화와 사상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어느때인가 무참히 경제적 번영마저도 오유(烏有)로 돌아갈 것이다. 다행히 우리 나라는 옛부터 창의성 있는 문화를 생산해 왔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더욱 개발하고 집합시키어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존자의 시간도 헛되게 보낼 수 없다. 반면에 결코 조금허 서둘러 재촉해서도 안 된다. 어떤 모순과 도전에 처해서도 완강히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 이념과 사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생활신조로서의 維新理念의 탐을 세우고 부유한 민족, 강성한 국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준 역사와 시대의 준엄한 배당인 것이다.

# 3.1 運動에 對한 北 傀의 評價와 民族史의 主体性

李 喆 周

## 目 次

- I. 序
- II. 三·一運動의 契期에 對하여
- III. 三·一運動의 展開에 對하여
- IV. 三·一運動의 動力과 性格에 對하여
- V. 三·一運動의 失敗原因에 對하여
- VI. 三·一運動의 歷史的 教訓에 對하여
- VII. 三·一運動과 民族史의 主体性에 對하여
- VIII. 結

### I. 序

悲劇的인 祖国分斷, 그로부터 三〇年이란 世月이 相反된 政治的目的을 追求해서  
흘렀다.

北傀는 그 첫해부터 赤化統一의 企圖 밑에 三〇年間 武力南侵을 促求했으며 北  
傀共産党 創建(1945.10.10) 30 歲 前으로 大野望의 武力統一을 위한 一時  
觸發의 現時點에서 三·一運動에 對한 北傀의 評價(史觀)을 考察해 본다는 것  
은 매우 意義 깊은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는 北傀의 歷史觀, 民族史의 主体性에 對한 評價를 客觀的으로 測定하는 尺  
度로 되며 나아가서 北傀의 本質과 正체를 把握함에 現實的인 解答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認識해야 할 問題는 北傀가 3·1運動을 어느 程度의 比重으로  
이 問題를 取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筆者가 體驗 및 探問한 바로서는 3·1運動을 独自の 史料로서 研究結果 單行本으로 發表된 것을 보지 못했다.

即 3·1運動에 對한 單一問題 取扱의 研究論文集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現在 北傀 大學의 教材로 利用되고 있는 「朝鮮近代革命史」(北傀歷史研究所發行)와 北傀勞動黨學校의 黨員들의 政治學習 材料로 利用되고 있는 「朝鮮民族解放鬪爭史」(註 李羅英 著-勞動黨 出版社 發行)에서 一個章中 一個節로 取扱되고 있는 뿐이다.

即 「朝鮮民族解放鬪爭史」目次에서 본다면 總十章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3·1運動은 第六章「日本帝國主義의 殖民地支配를 反對한 1910年代의 反日獨立運動(1910~1919)」의 第三節「十月社會主義大革命的 勝利와 3·1運動」에서 取扱되고 있으며 頁割當은 總21頁(菊版10枚半)에 收錄되고 그代身 「金日成」의 反日運動은 三個章에걸쳐 總128頁(64枚)로 되고 있는 點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3·1運動을 어떤 比重에서 取扱되었는가를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取扱된 3·1運動

## II. 三. 一運動의 契機에 對하여

不朽의 抗日民族解放鬪爭이었던 3·1運動은 그 契機가 무엇보다도 重要的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點을 北傀도 重要視했던 까닭에 매우 長惺하게 敘述을 했다.

어떻게?

『大十月革命<sup>1)</sup>』은 朝鮮人民에게 처음으로 解放의 前途를 明白히 밝혔으며

1) 大十月革命이란 러시아十月革命을 뜻함. 1917年2月 케렌스키가 帝政 러시아를 軋覆하여 帝政로시아統治에 終止符를 적어 러시아最初의 立憲 臨時政府를 樹立했으나 레닌 트로츠키等を 主動으로 한 共產暴徒들이 臨政의 混亂期를 利用하여 1917年10月(陽曆11月7日) 暴動을 일으켜 케렌스키臨政을 軋覆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를 러시아社會主義十月革命이라 함.

세계의 푸르레타리아革命運動과 朝鮮의 民族解放運動을 有機的으로 連結시킴으로서 우리나라 民族解放運動에 있어서 勞動階級の 指導 밑에 일어난 植民地革命의 時代代를 열어 놓았다. 또한 大十月革命은 朝鮮人民에게 처음으로 맑스·레닌主義의 革命的思想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大十月革命은 우리나라 勞動者階級の 覺醒을 促進시켜 各界各層의 人民들을 눈뜨게 했으며 그들을 勞動者 階級과 함께 日本帝國主義와의 決定的鬪爭에 걸기시켰다』 2)

이것이 北傀歷史資料가 보여준 3.1運動의 契機說明의 全部이다.

痛憤아니 할 수 없는 일이다.

當時 韓國人口 2千萬中 3.1運動에 參加한 人員 2百2萬餘名(朴殷植)에 達하고 이들中 아직도 많은 國民이 生存하고 있을뿐 아니라 指導級人士들의 証言과 史料가 嚴然히 存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3.1運動의 基本 契機를 完全抹消시키고 터무니없이 歷史的 事實을 虛偽捏造하고 있는 가담이다.

即 北傀는 3.1運動의 契機가 露西亞 十月革命의 影響에 依해 마련 된 것처럼 十月革命의 意義를 먼저 強調하고 그 影響으로 日帝를 反對하여 3.1運動이 發生된 것처럼 叙述하고 있는 것이다.

3.1運動의 基本要因 및 契機는

첫째 韓日合併後 日帝武斷統治의 無慈悲한 強化와 彈圧

둘째 이를 反對하는 우리 民族의 굳은 獨立思想과 國內外에서의 獨立運動의 激化, 即 滿洲와 露領沿海州에 亡命했던 20餘萬 僑胞들이 武力抗爭을 위해 據點 確保를 위한 鬪爭, 上海에서의 獨立運動, 日本에서 留學生들의 獨立運動, 美國에서의 獨立運動等이 國內의 獨立鬪士와 緊密히 連繫되어 抗日運動이 高潮되고 있었다 3)

2) 李羅英著 1960日語版「朝鮮民族解放鬪爭史」, P. 275

다음을 또 보면

『大十月革命의 勝和의 影響下에 朝鮮에서는 1919年3月 日本略奪者들을 反對하여 民族의 獨立을 싸워 얻기 위한 最初의 大衆의 暴動이 일어났다』 同, P. 277

3) 朴殷植著「朝鮮獨立運動血史」

셋째 이러한 抗日獨立運動의 高潮期에 美國 윌슨大統領의 「民族自決主義 原則宣言」(1918.1)이 發表되어 獨立運動을 더욱 促求케 했다

넷째 이렇게 國內外的으로 獨立運動이 充溢되어 그 機會를 찾고 있던 무렵 李朝마지막 高宗皇帝가 崩逝하게 되어 國民의 悲憤이 마침내 3·1運動을 發勃케 할 基本契期로 되었다.

北傀는 이 四大基本要因과 契機를 故意的으로 默殺하여 한글자도 비치지 않고 마치 소련의 十月社會主義革命의 影響으로 3·1運動이 胎動된 것처럼 歷史의 史實을 根本的으로 捏造했는데 이는 北傀의 意圖의이며 反民族的 歷史觀이 必要性에 依해 歪曲되었음을 다음의 3·1運動의 展開部門에서 더욱 具體的으로 證明하게 된다.

### Ⅲ. 三·一運動의 展開에 對하여

그렇다면 北傀는 3·1運動의 展開를 어떻게 敘述하고 있는가?

이 問題에 對해 北傀는 우선

『로시아대十月革命의 影響아래 勞働者의 罷業과 農民의 反日進出이 強化되어 學生들을 先頭로 勞働者 農民 小市民 各界各層人民의 反日蜂起氣勢는 한층 높아졌다.

他方 이렇게 人民들의 高潮된 反日氣勢속에서 資本家와 小부르조아 인테리겐 차출身의 國內外 獨立運動家들도 움직이기 始作했다.

그러나 그들은 自己의 社會的階級的限界線에 依해 請願的方法 或은 平和의인 示威의 方法으로 어찌구니 없게는 美國같은 侵略의帝國主義國家의 所謂 「國際的援助」에 依해 朝鮮의 獨立을 達成하려는 幻想을 품고 있었다.

當時 그들은 美國大統領 윌슨의 欺瞞의인 所謂「民族自決論」과 第一次世界大戰의 終結과 關聯한 帝國主義強盜들의 植民地再分割을 위한 「巴里講和會談」에 큰 期待를 걸고 있었다』<sup>4)</sup>

北傀는 이렇게 言及한 다음

4) 李羅英著「朝鮮民族解放鬪爭史」, P. 276



『国内에서 宗教界出身의 一部 부르조아民族主義者등 33人이 登場하여 所謂 「朝鮮民族代表」라고 自称하면서 一月下旬부터 「獨立宣言書」를 作成하여 學生들과 連携를 取하면서 三月初 高宗의 國葬日을 期하여 獨立宣言書를 發表하고 平和的인 示威를 하려고 準備하였다』<sup>5)</sup>

北傀는 이래 놓고 三·一蜂起를

『當時 朝鮮에서는 아직 勞動者階段의 力量이 弱했으며 따라서 人民들의 革命的 進出을 組織指導할 수 있는 革命的政黨이 없었던 까닭에 初期에는 人民大衆의 反日蜂起의 組織은 自然히 그들의 獨立示威運動이 契期가 되어 實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19年3月1日 서울에서의 33人의 이른바 「獨立宣言書」의 發表를 契機로 全人民的反日蜂起가 爆發했다』<sup>6)</sup>

여기서 北傀는

『그러나 이날 서울에서 人民大衆의 革命的 氣勢와 大衆의 蜂起에 접을 먹은 所謂 三三人的 「民族代表」들은 學生들과 約束한 公園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料理店太和館에 自己들만 秘密裡에 集合하여 겨우 「朝鮮獨立萬歲」를 부른것으로 끝냈다.

이것은 當時 그들의 主觀의 意圖 如何에 關係없이 客觀的으로는 變節하여 屈服하는 行動이었다. (事實 一部少數의 愛國의 人士를 除外하고는 其後 그들중 大部分이 곧 民族的良心을 버리고 變節하고 말았다.

그러나 人民들은 그들과는 反對로 이날 自然發生的으로 일어나 일어났다』<sup>7)</sup>

이렇게 敘述한 北傀는 其後의 三·一運動의 展開에 對해

『三月五日에는 學生들을 先頭로 한 서울人民들은 赤旗를 휘날리면서 다시 暴動에 捲기하여 憲兵·警察과 英雄의인 피의 鬪爭을 展開했다』<sup>8)</sup>

5) 李羅英著「朝鮮民族解放鬪爭史」,P.277

6) 上 同 ,P.277

7) 上 同 ,P.277

8) 上 同 ,P.278

이렇게하여 三千里 山河로 퍼져 三月부터 五月까지 二百萬以上の 朝鮮人民이 三・一運動에 參加했다는 것이 國內에서 展開된 三・一運動에 對한 北傀의 評價 全部이다.

以上과 같이 北傀의 評價를 全部 引用한 것은 北傀가 三・一運動을 故意의로 捏造하였다는 式의 說明만으로는 무엇을 어느 程度 어떻게 捏造歪曲했는지 讀者들로서는 理解할 수 없기 때문에 三・一運動 展開部分에 對한 全文을 紹介한 것이다.

國內에서의 三・一運動 展開에 對한 北傀의 評價를 綜合한다면

첫째-三・一運動의 展開는 러시아十月革命의 影響을 받은 學生 勞働者 農民

小市民이 日帝를 反對하여 巨族의인 抗日獨立運動이 展開된 것처럼 強調되고 있으나 이는 根本的으로 事實無根의 虛偽捏造이다.

三・一運動의 全過程은 소련의 十月革命의 影響에 依해 胎動되었거나 또 이에 鼓舞되어 民族的 抗日運動을 展開했다는 史料는 그 어떤 部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둘째-三・一運動의 展開는 愛國的 勞働者 農民 學生 小市民에 先頭에 섰으며 부르조아 및 小부르조아・인테리겐차出身의 國內外 獨立運動家들은 그 뒤를 달았다는 式으로 力說되고 있으나 이도 또한 完全한 虛偽捏造이다.

三・一運動을 組織計劃한것은 當時 韓國의 各界各層의 代表 및 元志들 例하여

靑道敎-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등등...

基督敎-이승훈 양진백 이명룡 등등...

仏 敎-한용운 백용성 등

商工業-최재우 최시형 오하영

言論界--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등등

其外 金法麟 印宗益 鄭秉憲등 實로 總網羅되어 있었다 9)

이렇듯 民族主義指導人物과 깊은 連繫를 맺고 있던 인테리겐차들이 先頭에 섰다. 이는 三・一運動에 앞서 東京留學生中心의 二・八獨立宣言發表로 推進한 人

9) 白基琑著「義兵과 獨立運動의 底辺」

士들의 活動을 보아도 明白하다.

오히려 당시 近代産業構造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던 手工業의 生産分野의 勞動者 農民들은 三·一運動을 像想도 못하고 있다가 民族代表들의 指導에 의해 各地에서 呼応될기 했었던 것이다.

셋째-北傀는 民族代表 33人이 無氣力하고 變節하여 3·1運動을 途中拋棄했음에도 不拘하고 學生·勞動者 小市民들이 끝까지 抗日運動에 나섰다.

라고 虛偽中傷捏造했다.

共產革命 遂行에 있어서 基本的 敵對의階級이 곧 資產階級이며 그中 政治的으로 民族主義이기 때문에 北傀는 3·1運動이 失敗했음을 奇禍로 民族代表 33人의 役割을 無慈悲하게 格下하는데 화살을 集中시키고 있는 것이다.

北傀의 意圖로는 3·1運動 自体가 없었음을 바꿨을지 모른다. 事件은 있으며 抹殺할 수 없게 되어 北傀는 最大限의 中傷을 했으나 民族代表들이나 당시 知識層의 核心的 活動은 우리 民族史와 함께 永遠한 金字塔를 세웠음은 再論할 餘地도 없다.

넷째-北傀는 3·1運動이 學生들을 先頭로한 서울市民이 赤旗를 휘날리며 日軍 警과 피의 鬪爭을 벌였다고 強調를 했다.

이것 또한 3·1運動의 全過程을 통해 서울市民이 赤旗를 휘날리며 피의 鬪爭을 했다는 것은 完全 虛偽旗幟이다.

三月五日의 경우 歷史的 記錄에는

『三月五日에는 서울驛에서 南大門에 이르는 거리에서 市内 全學生이 평양에서 上京한 約三百名의 學生을 맞고 그에 一般民이 加勢하여 數萬의 큰 示威가 벌어졌다. 이들은 日軍警의 저지를 뚫고 大漢門앞과 鍾路等地로 行進하였다 日警側 記錄에 의해도 群衆數가 約萬名에 達했다고 했다. ...아날의 이 示威運動은 三月一日前에 學生代表들에 依해 綿密히 計劃推進되어 三月一日을 계승하는 第二次運動이었음』<sup>10)</sup>

라고 되어 있다.

10) 中央年監 1969年版「三·一運動五〇年」, P.56

다섯째 - 北傀는 3·1運動의 契機를 造成한 일승大統領의 民族自決主義原則宣言을 欺瞞의인 것으로 規定을 해 놓고 巴里講和會談自体도 否定했다. 이 또한 反論할 價值조차 없는 歪曲임으로 省略을 하지만 美國을 처음부터 侵略의帝國主義라고 捏造한것은 冒險의共產集團아니면 敢히 할 수 없는 極惡한 中傷이 아닐 수 없다.

어쨌던 北傀는 民族代表 33인이 獨立宣言文을 朗誦한 것이 아니고 「朝鮮獨立萬歲」만을 부르고 日帝앞에 投降變節하고 學生 勞動者 農民들만이 끝까지 流血의으로 鬪爭을 展開한것처럼 捏造한데는 또 다른 伏線이 있다는 것을 後述에서 理解하게 될것이다.

#### IV. 三·一運動의 動力과 性格에 대하여

3·1運動의 動力을 言及함에 앞서 強調되어야 할것은 3·1運動을 누가 指導 및 領導했느냐 하는 問題이다.

歷史가 証明하듯 3·1運動의 領導는 어느 個人이 아니라 民族代表 33인에 依해 展開된것을 再論할 必要도 없다.

그러나 北傀는 이問題에 對해

『不撓不屈의 革命鬪士이며 우리나라 反日民族解放運動의 卓越한 指導者인 金亨稷<sup>11)</sup> 先生은 内外의 広範한 反日愛國勢力을 網羅한 朝鮮國民會를 組織하여 人民을 反日愛國鬪爭으로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壓制者를 打倒하고 祖國의 自由와 獨立을 成就하려는 朝鮮人民의 志向과 日帝에 對한 民族의 憤怒는 마침내 一九一九年三月一日 全民族的인 人民蜂起로 爆發했다』<sup>12)</sup>

11) 金亨稷은 金日成의 生父

12) 김일환著「三·一人民蜂起五五週年(오늘의朝鮮, 1974.5月号, P.34

北傀는 이項 評價에서 마침내 金日成의 生父 金亨稷을 三・一運動의 唯一한 民族的 指導者로 내세우는데 주저치 않았다.

三・一運動을 計劃推進한 民族代表 33人의 役割을 根本的으로 格下黜殺해 놓고 영등하게 金亨稷을 내세웠는데 金亨稷은 당시 韓國에는 居住치 않았으며 東滿地方에서 無許可 漢菜種商을 하고 있었다. 13)

滿洲에 居住하고 있던 金亨稷이 어떻게 國內에서 三・一運動을 指導했는지 그 部分은 一切 言及치 못하고 있는 點을 미루어 보드래도 北傀의 捏造가 前後 矛盾된 荒唐之說이 아닐 수 없다. 厚顏無恥한 北傀도 民族代表 33人과 獨立宣言文은 抹殺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그렇다면 三・一運動의 動力에 對해 北傀는 또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

첫째로

『三・一運動에 있어서 젊은 朝鮮勞動階級이 民族的解放을 爲해 政治的鬭爭의 舞臺에 進出하기 始作했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三・一運動을 契機로 勞動者의 罷業은 그 前年에 比해 急進的으로 發展했으며 1919年에 罷業件數는 84件이며 이에 參加한 勞動者數는 9,000名에 達했다. 이것은 單純히 量的인 增大일뿐만 아니라 一定한 質的發展을 隨伴한 것이었다』 14)

『當時 國內에 있어서 一般人民들의 大衆的 蜂起는 日帝의 惡辣한 彈壓에 의해서 七月次後 漸次 下降期에 들어 갔는데도 勞動者들의 罷業鬭爭은 계속 擴大發展하여 三・一運動을 힘차게 推進發展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三・一運動을 통해 朝鮮勞動階級은 經濟的鬭爭과 함께 政治的鬭爭의 舞臺에 最初의 第一歩를 내 디디게 되었다. 그리하여 三・一運動에서 發揮된 朝鮮勞動階級의 강인한 鬭爭은 벌써 勞動者階級만이 朝鮮人民가운데 가장 先進的이며 革命的인 階級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13) 韓載德著「金日成論」北韓總鑑 P.780

14) 李羅英, 上同, P. 284

둘째로

『다음으로 三·一運動의 基本的인 勢力은 農民大衆이었다. 많은 경우 示威와 暴動의 主力은 農民大衆이었다. 農民들은 到處에서 示威와 暴動의 先頭에 섰을뿐만 아니라 日本帝國主義의 支配機關과 日本人 土地会社와 惡質 親日地主를 襲撃하여 小作契約書를 불태웠으며 税金納付를 拒否했다... 많은 部落의 暴動群衆이 集結하여 몇개의 武装部隊를 編成한後 比較的 組織的인 武装闘争까지 展開한 事實이다』<sup>15)</sup>

셋째로

『三·一運動에 있어서 勞働者 農民의 革命的進出은 青年學生들의 革命的進出과 緊密히 連繫되어 있었다. 三·一蜂起에는 各中等學校以上の 學生들, 뿐만 아니라 各小學校의 兒童까지 參加했었다』<sup>16)</sup>

끝으로 北傀는

『以上과 같이 三·一蜂起의 민음적한 過程을 돌이켜 볼 때 三·一蜂起의 原動力은 過去에는 一部 宗教家와 民族主義者들이 生覺하고 있드시 宗教人들이 아니라 勞働者 農民 學生들을 中心으로한 各界各層의 反日的愛國勢力이었음을 明白히 認識하게 되었다』<sup>17)</sup>

北傀는 이렇듯 三·一運動의 基本動力을 力說한 다음 三·一運動의 性格에 對해

『三·一運動은 全人民的인 反日蜂起였으며 全民族的인 民族解放闘争이었다. 이

15) 上同, P. 286

16) 上同, P. 286

17) 上同, P. 286

運動의 性格이 反帝民族解放鬪爭이었다는 것은 再論할 必要도 없다. 그뿐이 아니라 三·一運動은 微弱하기는 했으나 反封建의 性格을 內包하고 있었다. 그것은 當時 革命的指導勢力이 欠如되어 있었기 때문에 假令 明白한 反封建의 鬪爭口號를 내걸지는 못했으나 무엇보다도 朝鮮에서 封建의 搾取關係를 極力 維持하고 強化하고 있던 日本帝國主義에 反對하는 朝鮮人民의 特히 農民들의 鬪爭에는 처음부터 一定한 反封建의 鬪爭과 連結되어 있어다』(註 前同 287 頁) 라고했다.

以上 北傀의 三·一運動 動力說을 볼 때 이 項目은 三·一運動에서 우리民族이 獨立思想과 反帝思想으로 결기했던 歷史的事實을 意圖의으로 勞動者 農民 學生으로 分離하여 階級意識 내지 階級鬪爭으로 捏造誇張하여 共産黨 特有的 階級鬪爭論敎理에 두들겨 맞췄다는 것을 容易하게 찾아 볼 수 있다.

三·一運動當時 韓國의 産業構造는 封建의 生産關係에 있었던 까닭에 勞動階級이 形成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勞動階級이 三·一運動의 先頭に 섰다는 것은 全的인 根拠없는 虛偽造作이었다.

이러한 意識의인 虛偽捏造는 三·一運動의 性格을 規定함에 있어서 더욱 虛構를 들어 썼다.

北傀는 三·一運動 自体를 否定할수가 없어서 民族解放鬪爭이라는 것은 認定해 놓고 이를 吸物史觀 見地에서 造作하기 위해 農民들의 反封建의 鬪爭인양 性格을 歪曲했다.

그러나 여기서 明白히 할것은 三·一運動은 民族代表 33人이 主動이 되고 이 運動을 主導的으로 展開한 것은 당시 勞動者 農民이 아니라 中産級以上에 屬하는 宗教界와 知識人 學生層이었다는 事實이다.

## V. 三·一運動의 失敗原因에 對하여

三·一運動이 日帝의 殘忍한 彈壓에 依해 失敗한 原因을 北傀는 다음 다섯가지로 들고 있다. 卽

『第一로 朝鮮勞動階級은 當時 成長이 아직 弱했던 關係로 이 運動을 指導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 運動을 組織指導할 수 있는 革命的 黨이 없었던 데 起因한다. 이것은 이 運動을 非組織의인 自然發生的인 運動에 멈추게 했다. 이것이 이 運動을 失敗케 한 基本的인 弱點이었다』<sup>18)</sup>

『第二로 當時 朝鮮勞動階級の 힘이 弱했던 까닭에 初期에는 이 運動의 「指導部」에 부르조아 民族主義者들이 암아 있었던 事實이다. 그들은 三·一運動의 爆發에 一定의 契機를 만들어 또 平和的인 示威運動의 全國의 擴大를 위해 部分的인 組織活動에 있어서 어느 程度 役割은 했다. 그러나 그들의 請願的 平和的 「鬪爭」方法, 美國帝國主義者에게 依拠하여 獨立하려는 幻想的計劃, 또한 屈服 妥協의 路線과 動搖性, 中途半端性等은 그後 오히려 人民의 革命的 覺기와 힘찬 鬪爭을 弱화 麻痺시켰다.

그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부르조아民族主義者들의 誤謬는……美國大統領 윌슨이 發表한 所謂「民族自決論」에 큰 期待를 걸고 朝鮮의 獨立을 美國侵略者가 援助해주리라고 믿고 있었던 點이다. 윌슨의 所謂「民族自決論」은 完全한 欺瞞的인 것이었다』<sup>19)</sup>

『第三으로 三·一運動에서 土地問題의 解決을 비롯하여 勞動者 農民 各界各層 人民들의 切實한 要求를 明白히 밝힌 具體的鬪爭綱領이 없었다』<sup>20)</sup>

『第四로 大衆의 人民蜂起가 全國의으로 展開되기는 했으나 그大部分이 分散的 或은 自然發生的으로 展開된데 있다. 特히 발끝까지 武裝한 日本軍과 憲法警察과의 鬪爭에서 그 蜂起를 革命的 더욱 組織的인 武裝鬪爭으로 轉化시키지 못한데 失敗의 主要한 原因의 하나로 되었다』

『第五로 三·一運動이 失敗한 또 하나의 原因은 對外的으로 當時 國際情勢가 不利하여 偉大한 쓰련을 비롯한 國際革命勢力의 積極的인 支持를 얻지 못한 데 있다』<sup>21)</sup>

18) 上同, P. 288

19) 上同, P. 290

20) 上同, P. 291

21) 上同, P. 292



北傀는 以上과 같이 失敗의 原因을 다섯가지로 羅列했다. 그러나 이는 三·一運動의 根本的 目的과 姿勢를 意識으로 歪曲冒瀆됨을 批判하지 않을 수 없다.

三·一運動은 根本性格에 있어서 非暴力的 大衆運動으로 自由의 意思에 依해 展開된데 찬연히 빛나고 있다

이 非暴力的 獨立運動은 當時 民族代表 33人이나 其他 指導者들이 武力抗爭을 물러서가 아니었다.

三·一運動에 앞서 東京留學生들에 의한 「2·8宣言」에는 『吾族은 生存의 權利를 위하여 온갖 自由行動을 취하여 최후의 一人까지 자유를 위하는 熱血을 流할』것을 毅然히 主張하는 獨立決意를 다지고 있으나 當時 環境으로서는 暴惡한 日帝軍과 流血의 鬪爭을 展開한다는 것은 根本적으로 無謀한 抗爭이었음을 主客觀的情勢가 許用치 않았다는 것은 수많은 史料가 證明해 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非暴力的 抗日獨立運動을 벌인 것은 當時 國際情勢에서 일본大統領의 民族自決論이 植民地國民에게 鼓舞의 與件을 扶與했던 까닭이다.

이 機會를 最大한 利用하여 民族의 要求를 呼訴하려고 했던 까닭에 33人의 民族代表는 오늘날에도 높은 欽慕와 讚揚으로 歷史的 評價를 받고 있다.

이들 北傀는 故意的으로 默殺하여 三·一運動 性格 自体도 歪曲하고 賊反荷杖 格으로

第一原因에서 勞動階級이 없었으며 革命的政黨이 없었다던 까닭에 失敗했으며  
第二原因에서 부르조아 民族主義者가 屈服 動搖 中途半端으로 鬪爭을 弱화시켰으며  
일본大統領의 民族自決論이 欺瞞의인 것인 것처럼 歪曲中傷하였으며  
第三原因에서 大衆들의 經濟的 鬪爭綱領이 없었으며  
第四原因에서 三·一運動을 武裝鬪爭으로 轉化시키지 못했으며  
第五原因에서 朝鮮의 支援을 받지 못한데 있는 것처럼 捏造 歪曲 造作 中傷 格下하여 三·一運動 全過程을 冒瀆했던 것이다.

특히 第五原因에서 朝鮮의 支援을 받지못해 失敗했다는 式의 捏造는 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다.

1917年 2月 케린스키에 依해 帝政로써야政府를 轉服하여 새 民主政權이 樹立된

것을 共產主義者인 레닌이 그해 十一月 革命後의 混亂期를 利用하여 다시 暴力으로 共產政權을 造作하여 不過1年4個月이 經過되었을 때이다. 당시 레닌의 赤派軍은 白派軍과 國內戰을 벌리고 있어 他國에 대한 支援이란 思想조차 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歷史的 事實을 두고 그토록 捏造했다는 것은 그렇게 造作해야만 다음 敘述할 三·一運動의 教訓에서 國際共產運動의 連帶性を 強調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以上 다섯가지 北傀의 原因規明은 모두 三·一運動의 失敗를 歷史的으로 分析評價한것이 아니라 唯物史觀과 辯證法的 唯物論에 立脚한 階級鬭爭論의 公式에 뜬어 맞추기 위해서 意圖的으로 評價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VI. 三·一運動의 歷史的 教訓에 對하여

北傀는 三·一運動의 意識을 我田引水格으로 다음과 같이 評價했다.

『第一로 反日蜂起를 통해 朝鮮人民의 愛國의 革命傳統과 그 힘찬 鬭志를 유감 없이 發揮하여 「武斷政治」를 閉止하고 所謂「文化政治」를 標榜했으나 民族解放鬭爭의 發展에 一定한 可能性을 만들어 왔다』

『第二로 三·一運動을 통해 朝鮮人民의 民族的 또는 階級的覺醒이 急激히 提高되어 이때로부터 朝鮮人民은 偉대한 十月革命이 배워준 것을 따라...偉대한 朝鮮의 뒤를 따르므로서 만이 解放과 自由를 戰取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sup>22)</sup>

『第三으로 三·一運動이 十月社會主義革命의 影響下에 發生되었다는 것과 이 運動을 契期로 朝鮮人民의 民族解放鬭爭이 世界무로레타리아革命運動의 一部分으로 勞動者階級이 指導하는 새民族解放運動의 最初의 一步를 내건데 큰 意義가 있다』<sup>23)</sup>

---

22) 上同, P. 293

23) 上同, P. 293

『第四로 日帝를 反對한 三・一運動은 十月革命을 固守하던 러시아人民의 鬪爭에 一定한 寄與를 했다. 또한 當時 中國人民의 反帝反封建의 鬪爭인 五・四運動에도 一定한 影響을 준 外에도 其後 東方植民地民族解放鬪爭의 發展에도 저지 않은 影響을 주었다』<sup>24)</sup>

三・一運動에 對한 北傀의 四大意義는 三・一運動의 歷史的 意義와는 向等關聯이 없는 北傀의 自意的인 意義로 代贊되고 있다. 卽

第一意義는 鬪爭의 可能性을 強調함으로써 三・一運動에서가 아니라 現時期 韓國에 對한 赤化鬪爭可能性을 暗暗裡에 鼓吹하기 위한 遠大한 伏線에서 있으며

第二意義는 朝鮮의 革命路線을 따르자는 것인데 中朝紛爭以後 이部分은 回避하고 있으니 北傀의 評價自体도 너무나 利己의 이란 뜻에서 糾彈을 받고 있으며

第三意義는 三・一運動이 마치 朝鮮의 十月革命의 影響을 받아 發生한 것처럼 捏造함으로써 60年代까지 上典이었던 朝鮮에게 아부했으며

第四意義에서는 三・一運動이 反對로 朝鮮中國五・四運動에 影響을 준 것처럼 歪曲했다. 이 項에서는 海外獨立鬪士들에게 影響을 주었던 事實까지 默殺하고 이렇듯 造作한 것은 將次 北傀가 南侵을 해도 國際的 孤立이 아니라 國際的 支援이 있으리라는 自負을 갖도록하기 위한 遠大한 侵略野慾으로부터 두들겨 맞춘 條項이다.

北傀는 이렇듯 三・一運動의 意義를 階級鬪爭論에 有利하도록 捏造한다음 三・一運動의 歷史的 敎訓에 대해

『三・一運動은 自体의 制限性과 日帝의 苛酷한 彈壓으로 비록 失敗했으나 朝鮮民族의 反民族의 解放鬪爭에 深刻한 敎訓을 남겼다.

三・一人民蜂起의 全過程은 外勢에 依存하여 獨立을 얻어 보려고 한 부르조아民族主義者들의 試圖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으며 오직 勞働者 農民을 비롯한 人民大衆이 卓越한 首領의 領導 밑에 맞스

24) 上同, P. 294

레닌主義에 基礎한 偉은 鬭爭綱領을 내세우고 굳게 團結하여 組織的으로 決定的인 鬭爭을 벌리므로서만 民族解放鬭爭에서 勝利할 수 있다는 것은 뚜렷이 確證하여 준다』<sup>25)</sup>

北傀가 叙述한 以上の 三·一運動 敎訓은 敎條主義( 맑스레닌主義 )이면서도 獨裁者 金日成을 놓고 金日成의 領導만이 또한 共産党的 領導만이 民族解放鬭爭의 勝利는 可能하다고 主張함으로써 三·一運動을 根本的으로 冒瀆을 했다.

이렇게 볼 때 三·一運動의 領導를 한것이 金日成의 父 金亨稷이 있었다고 力說을 해놓고 結論에 가서는 金亨稷의 領導는 흔적도 없어지고 金日成을 登場시켰다는 것은 三·一運動에 對한 北傀의 用意周倒하고 또 意圖的인 歪曲捏造에도 不拘하고 北傀가 우리 民族의 文體的 革命運動史를 끝까지 음폐할 수 없다는 것을 歷史에 實証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여기서 混沌해서 안될 問題는 北傀가 말하는 民族解放鬭爭에 對한 定義이다.

北傀가 말하는 民族解放運動이란 共産党이 主導하는 共産暴力革命을 뜻하며 이는 우리가 常用的으로 使用하는 民族傳統性에 立脚한 民族의 獨立과 解放運動을 意味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 VII. 三·一運動과 民族史的 主体性에 對하여

以上이 三·一運動에 對한 北傀의 評價全過程이다. 이 全過程을 놓고 볼 때 三·一運動에 對한 民族史的 主体性を 言及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北傀는 아직도 우리民族의 氣憶에 生생하게 살아 있는 거룩한 三·一運動까지도 民族史的 主体性を 無慈悲하게 유린하고 反民族的인 共産革命의 追求를 위해 三·一運動의 契機로부터 敎訓에 이르는 全過程을 故意的으로 意圖的이며 計劃的으로 假借없이 歪曲捏造黙殺抹殺 中傷하고 共産主義 革命理論을 敎條主義的으로 두들겨 맞춰 歷史를 偽造한 때문이다.

25) 노동신문, 1974.3.1日字

三·一運動은 그 始作부터 民族史的 正統性에 依해 民族的 自主獨立國家를 回復하려는 民族의 主体意識에서 出發한것이 있다.

이 運動을 組織推進한 民族代表三三人에는 당시 天道教 基督教 仏教 및 學界와 商工界代表들이 總網羅되어 있었으나 어느 한 代表도 民族主体意識을 벗어나서 天道教나 基督教을 위해 三·一運動을 展開하자고 主張하지 않았다.

오로지 日帝로부터 剝奪당한 獨立을 되찾기 위해 民族的 正統性에 立脚한 獨立을 위해 一致團結했던 事實 또한 三·一獨立宣言文이나 其他 史料들이 證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歷史的 事實이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北傀의 三·一運動 評價過程은 그 始初부터 民族史的 正統性 乃至 主体性은 아예 默殺-抹殺 度外視해 버리고 오로지 反民族的인 共產主義的 唯物史觀에 依해 或은 辨記法的唯物論의 世界觀에 依해 敎條主義의 共產革命에 長期的인 目的을 두고 租雜하게 맞춰졌다.

뿐만 아니라 共產革命과 民族解放을 同意語의 巧妙히 驅使함으로써 人民을 欺瞞하여 影響力을 扶殖하려는 惡辣한 煽動을 걸드려 民族史的 正統과 主体性을 背信했던 것이다.

이 한가지 評價의 實例와 証據만으로서도 北傀가 우리 民族의 將來運命과 正統性과는 何等關聯이 없는 民族主体性을 喪失한 反民族的 叛逆集團임을 歷歷히 찾아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北傀는 世界赤化를 노리는 國際共產主義의 侵略的 走狗로서 民族의 傳統 主体性도 自進하여 버리고 祖國도 民族도 서슴없이 壳渡하고 있는 民族의 탈을 쓴 壳國集團임을 스스로 暴露해 주고 있다.

## VIII. 結

여기서 或者 疑問을 느낄 수 있다면 北傀가 그렇도록 三·一運動을 歪曲捏造하고 있는데 現在 北傀地域住民가운데 三·一運動을 體驗한 一部 高齡層에서는 그런 捏造的인 評價를 否定 反對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北傀治下에서는 그런 否定과 疑問은 問題視되지 않는다.

党的 政策路線이 그러함으로 이를 外形的으로 反对意思를 表明한 言論放送機關도 없으며 萬若 否定한다면 反黨分子로 회의 肅清을 면할 길이 없는 때문이다. 때문에 一定時間이 흘러 다음 世代에 가서는 北傀의 이러한 虛偽捏造的 評價는 곧 絶對的 眞理로 絶對的 歷史로 認識하게 되어 있다.

現在 北韓의 四〇代末滿層은 北傀의 三・一運動 評價를 秋豪도 疑心하지 않고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여기에 共產主義와 北傀의 反民族的인 可恐할 罪惡이 있다.

어쨌든 北傀는 三・一運動뿐만 아니라 韓國史와 世界史까지도 모두 唯物史觀과 辨証法的 唯物論의 世界觀에 依해 改造하여 共產革命을 위한 教育的 材料로 逆用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것이 斷面的이나마 오늘날 北傀의 正體이며 本質로 된다. 따라서 北傀는 現 이 時刻에도 全力을 投球하여 武力南侵을 위해 虎視眈眈 機會를 노리고 있으며 어떤 事件이든 모두 武力統一에 有利하도록 歪曲捏造하여 人民들을 共產旗발 밑에 묶어 놓고 있다는 嚴然한 事實을 우리는 다시 한번 覺醒아니할 수 없다.

#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에 關한 論考

金 俊 熙  
政博・前建大教授

## 目 次

머 리 말

### I. 概念上으로 본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

1. 分斷國家의 定義
2. 分斷國家와 一般國家와의 相異點
3.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
  - (가) 統治權의 合法性
  - (나) 政府의 合法性
  - (다)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

(以下 紙面制限上 省略)

### II. 實際상으로 본 分斷國家의 正統性

1. 分斷國家 主權 合法性의 憲法的 表現形態
  - (가) 獨逸의 境遇
  - (나) 베트남의 境遇
  - (다) 韓半島의 境遇
2. 分斷國家 國際關係의 實際

結 語

머 리 말

〔分斷國家는, 그 對內的關係에 있어서나, 그 對外的關係에 있어서, 一般國家와는 相異하다. 一般國家는 UN에 加入申請을 하면 原則적으로 無條件 그것이 許容되지만 分斷國家의 境遇는 그 國家內에서 對立關係에 있는 두 政治的單位의 同時加入이 아니고서는 UN에의 參加가 不可能함은 이 特徵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分断国家의 國家主權의 正統性은 分断国家 그 自體의 性格에 基因한다. 即, 對內的인 面에서는 兩分된 하나의 分断国家 主權의 所有者가 누구냐? 하는 데서 問題가 提起되고, 對外的 面에서는 하나의 分断国家 안의 對抗關係에 있는 두 政治的單位中 어느 쪽을 兩者折一하여 國家로서 承認하여야 하느냐? 하는 國家承認制度에 基因한다.

勿論, 이와같은 問題는 世界 強大國들의 所謂 「緊張緩和」政策에 基調한「現狀維持 (Statu quo) 政策에 依하여, 1950年代와 現在를 比較해볼 때, 많이 그 嚴格性이 누구러진 稱相으로 表現되고 있지마는, 再統一問題에 關한 完全한 解決을 보지 못한 限 이 國家主權正統性 問題는 그대로 남았다.

以下에서는 于先 이 問題를 抽象的 理論 即, 概念上으로 究明한 뒤, 그 實際的 表現稱相을 觀察코자 한다.

## I. 概念上으로 본 分断國家主權의 合法性

分断國家主權의 合法性이란 무엇이나? 를 理論的으로 또는 概念上으로, 追求하기 爲해서는 「分断國家」가 무엇이며, 또 이것이 一般國家와 어떻게 다르냐? 를 究明함이 論理的으로 必要하다.

### 1. 「分断國家」의 定義

「分断國家」를 定義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概念들은, 國際公法上의 概念인 併合 (annexation, annexion, Annexion) ' 分裂 (dismemberment, démembrément) ' 分離 (secession, disjonction) 및 國家의 繼承 및 相統에 關한 理論, 承認理論等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概念들은 오래동안 다듬어져 定立된 概念이기 때문에 論者에 따라 概念의 內容이 相異한 念慮가 없다.

그런데 「分断國家」를 概念化하기 爲하여 어떤 獨特한 用語를 使用해도, 그 말의 內容이 正確치 못하면, 結局 成果를 얻지 못하게 마련이다. 例컨대 diuide 라는 말과 Partition이란 말을 써서 divided nation 과 Partitioned Country로 区分하고, 이것을 번역해서 各各 『分断國』 또는 『分裂國』으로 区分해본들, 「分断」은 무엇이며, 「分裂」은 무엇이나? 라는 疑問이 생기게 된다.



(李榮一, 書評, 「分斷된 世界의 分斷國家」, 季刊「統一政策」 第1卷 第1号, 194 페이지 參照). 「分斷國家」라는 「分斷」은 政治的 概念이며, 「分裂國家」라는 「分裂」은 國際公法上的 概念이므로 混頓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分裂國家」는 英語로는 diomembered country 이지, Partitioned Country는 아니므로, 後者를 「分斷國家」라고 번역함은 二重으로 混頓되어 있다.

또, 「分斷國家」의 定義如何에 따라서는 世界에 存在하는 分斷國家數가 하나일 수도 있고 6個以上일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同一한 國家, 例컨데 中國이 定義如何에 따라서는 「分斷國家」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 「分斷國家」의 定義의 困難性과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分斷國家의 定義는 이와 같이 구구하지만, G. 카머 (gilbert caty) 博士는, 『分斷國家는 法的으로 持續되는 하나의 國家가, 國際法上 兩者 다 部分國家의 同等한 地位를 가진, 두 개의 國際的인 主体로 暫定的으로 分斷되어 있는 國家다』 (gilbert gaty, Le statut gurictique des Etats divisés, Paris, Pédone, 1969, P.112) 라고 定義하고 있다. (筆者著, 分斷國家 一般理論에서 본 우리 再統一問題解決方案의 輪廓, 國土統一院 1974.4.7~13 페이지 參照).

筆者의 見解로서는, 이 定義가 狹逸의 境遇에는 完全히 適合하지만, 韓半島와 베트남의 境遇에는 多少 無理하다고 判斷됨으로, 이 定義를 修正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即, 分斷國家는 法的으로는 持續되고 있는 하나의 國家, 또는 源泉的으로는 하나의 國家形成을 想定하여 出露된 國家主權이, 現實的으로는 二分되어 國際法上 兩者 다 部分國家로서의 同等한 地位를 가진 國際的인 主体로 暫定的으로 区分되어 있는 國家다. (筆者의 分斷國家로서의 韓半島의 將來 (I), 기러기 通卷 126号, 第11卷第7号, 25 페이지 參照).

## 2. 分斷國家와 一般國家와의 相異點

國家概念은 歷史的으로 變遷되어 왔다. 近代國家는 『領土, 하나의 社會로 組織된 住民 및 國家의 對內的, 對外的 機能을 保障할 能力이 있는 政府, 特許法的 秩序와 實質的으로 體系있게 整備된 施設의 確立等의 結合』 (Paul Reuter, Droit international, Paris, P.U.F., 1968, PP.101~102) 을 말한다. 換言하면 近代國家는 地球表面의 一部分을 自己 領土로 삼고, 그 領土內의 一切의 사람과 物건에 對하여, 他國의 權力을 排斥하여 最高이며 最終的인 支配權을 갖

고있는 것이 近代國家의 特徵이다.

이 支配力을 主權 또는 領土主權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國際法上的 國家는 對內的으로 最高의 權力者라는 것 만으로서는 不充分하다. 對外的으로는 他國에 依存하지 않으며, 他國의 命을 받지 않고, 對等한 立場에서 여러 나라들과 交際함이 要請된다. 이것을 國家의 獨立이라고 한다. 따라서 多數說에 따르면 主權과 獨立은 同意語다.

이와같이 近代國家의 中心概念은 主權인데, 이 概念의 中心要素는 最高 絶對意志 또는 權力이다. 國際的으로 國家主權이란 말이 쓰여질 때에는, 만 어떠한 나라에 依해서도 命을 받고 強制되지 않을 意味한다. 義務를 지는 境遇에 있어서도 늘 國家 스스로가 承認하고 同意하여 비로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國家自身이 承認하지 않고 反對인데, 억지로 義務를 지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最高 絶對 權力을 가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近代國家의 主權은 國際社會의 現發展段階에 있어서는, 國際法에 依한 制限 特히 國際聯合에 依한 制限을 받고 있다.

以上이 主權의 一般的인 意義인데, 國際法上, 國家가 主權을 가졌다는 것은, 첫째로, 對內的으로는, 그 領土內의 住民에 對하여 完全히 任意로 命을 하고 強制할 수 있으며, 둘째로, 對外的으로는 他國에 對하여 完全히 自由로 行動할 수가 있다고 解釋되고 있다. 勿論 國際法을 遵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國家 스스로가 國際法을 承認하고 同意한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他國에 依하여 強制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主權과 矛盾되지 않는다고 主張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一般國家의 主權 思想은 近代國家가 領土團體임을 反映하고 있는데, 分斷國家의 國家主權은 領土의 分斷現象이 對內的으로는 한 分斷國家內의 相對方 部分國家에 關한 領土主權, 따라서 住民에 對한 命을 또는 強制行爲가 實質的으로 不可能하며, 對外的으로도 強大國들과의 關係 때문에 實質的으로 對外活動에 있어서 制約을 받고 있을뿐더러, 相對方 部分國家를 實質的으로 代表할 수 없다는 制限을 받고 있다. 이 점이 바로 一般國家와 分斷國家와의 根本的인 相異點이다.

[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國家는, 그 構成要素인 領土, 人民, 實際

의으로 能力이 있는 政府 以外에 他國에 依한 承認을 얻어야 하는데, 一般國家의 境遇에는, 이 세가지 承認要件이 具備되면, 原則의으로 承認되지만, 分斷國家의 境遇에는 承認國의 承認要件으로서의 主觀的要件이 一般國家 承認에 있어서 보다 더 두드러지게 浮刻된다. 即, 國家의 自由裁量行爲인 承認은, 하나의 分斷國家 안에 存在하는, 두 개의 部分國家들 中에서, 어느 便을 選擇하느냐의 行爲로 變質된다」

또한, 一般國家의 「國際聯合에의 加入은 普遍性原則에 依하여, 그것이 許容되고 있으나, 이原則의 例外로, 分斷國家에 對해서는 한 地域의 두개의 部分國家들의 同時 加入이 認定되던지, 或은, 5個安保常任理事國들이 保留하고 있는 拒否權이 行使되고 있다.」

### 3.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

元來, 正統性 또는 合法性 (Legitimité, Legitimacy, Legitimität)은, 憲法에 있어서는 國家權力, 即 統治權의 合法性이 問題되고, 國際公法에 있어서는 政府가 非憲法的인 方法으로 變更되었을 境遇에 그 合法性 與否가 問題되는데에 局限된다.」 다시 말해서 國家主權의 合法性 與否는 問題가 안된다.

그러나 分斷國家의 出現 以來, 이 國家의 主權의 合法性 與否가 論議의 對象이 되고있는데, 그 原因은 分斷國家 그 自體의 性格에 있다.

#### (가) 統治權의 合法性

막스·웨버 (Max Weber)는 國家權力의 合法性에 關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型을 区分하고 있다 (Wirtschaft and Gesellschaft, in Grandriss der Sozialökonomie, t.Ⅲ, 1922). 即, 社會學者인 그는 (1)國家權力은 傳統的인 것 (君主統治)이며, (2)國家權力은 카리스마의인 것 (威信에 依하여 資格이 附與된 首領에 依한 統治)이며, 끝으로 (3)國家權力은 理性的인 것 (實定法에 依하여 任命된 政府에 依한 統治)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그는 歷史的으로는 國家權力에 關한 이 세가지 型들 間에 서로 衝突이 있었고, 特히 統治者의 精神的 影響力에는 항상 天賦의인 能力 (Charisme)의 一部가 包含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区分은, 이 세 境遇에, 合法性은 資格附與의 表現, 換言하면 統治者는 統治機能을 行使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추고 있다는 意味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資格의 基準이 무엇이나? 가 問題된다. 이 基準에 關한 意見들은 對立되고 있는데, 그것은 政治哲學의 異異에 基因한다. 그러나 가장 一般의이고 多數에 依하여 支持되고 있는 思想은, 集團의 熱望과 政治權力行使의 目的과의 合流를 國家權力の 根柢로 보는 思想이다.

그런데, 國家組織에 適合하도록 充分히 統一된 모든 政治社會에서는 바람직한 社會秩序의 中心이되는 表現이 있다. 이 表現을 졸즈·볼도 (Georges Burdeau) 教授는 「法思想」(Idée de droit) (Georges Burdes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Paris, Librairie Géné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962, P.21)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理由는 그에 따르면, 이 表現과 關係되는 社會의 型은, 法的規制에 依하여 實行되어야 하며 保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國家權力の 機能은 이와 같은 熱望된 未來像안에 包含된 要求들을 滿足시키는 데에 있다. 바로 이 未來像이 國家權力 發生의 根源이다. 따라서 國家權력은 命令하는 그의 資格을 變質시키지 않는 限, 이 未來像을 背反할 수는 없다.

勿論, 法思想의 形成方式, 그 內容, 그 強度의 變動等은 國家權力の 機械的인 從屬關係를 招來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國家權力 또는 統治權이, 合法的인 일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國家權력은 이 未來像을 恒久的으로 無視하지는 못할 것이다.

要컨데, 統治權의 合法性은, 政治社會가 熱望하는 未來像에 內包된 要求들을 滿足시키는 데 있어서 統治機能을 行使할 수 있는 資格을 말한다. (Georges Burdesu Traité de science Politique, t.I (Le pouvoir politique), noo 73 et suiv, t.III (Le statut du pouvoir dans l'Etat), noo 57 et suiv. 參照).

#### (4) 政府의 合法性

國家權力の 合法性이 政治的 概念인데 對하여 政府의 合法性은 法的 概念이라고 말할 수 있다.

國際公法上의 概念으로서 國家의 合法性이 問題되는 일이 있다. 即, 國家成立의 要件으로서 客觀的 要件과 主觀的 要件이 있는데, 前者는 領域, 國民, 權力行使의 实效性이며, 後者는 國際法을 遵守하는 義務인데, 이 主觀的 要件中의 하나

로서, 正統主義 卽, 國民의 意思에 反하는 國家權力은 容認되지 않는다는 主張이 過去에 主唱된 일이 있었다.

事例로서 美國國務長官 스티imson (Stimson)은 1932年 1月 7日 字 覺書로, 中國과 日本에, 美國은 不戰條約 (1928年 8月 27日 파리에서 調印된 條約인데 所謂 부리양-켈로그-Brian-Kellog 一條約임)에 違反된 方法에 依하여 成立된 事態, 條約 또는 協定을 承認하지 않을 것이라고 通知했었는데, 이 覺書는 滿洲國은 非法的으로 成立된 國家이기 때문에 美國으로서는 承認할 수 없다고 主張한 것이다.

이것이 所謂 스티imson主義의 原則이다. 當時의 國際聯盟에서도 1932年 3月 11日 總會決議에 依하여, 滿洲國의 承認에 關하여, 國際聯盟規約과 파리條約에 違反하는 모든 事態를 加盟國들이 承認하는 것을 拒否하도록 勸告하였었다. 1936年 7月 4日 國際聯盟 總會는 이탈리아에 依한 에티오피아 合併에 關하여 同一한 原則을 適用했었다. 또한 스티imson主義의 原則은 1939年의 체코슬로바키아가 獨逸의 保護領으로 되었을 때에, 蘇聯, 英國 및 프랑스에 依하여 再確認되었으며, 蘇聯에 依한 발트海 沿岸國家들의 合併에 關하여, 美國에 依하여 再確認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에 서는, 美洲 國際法의 基本原則으로서 一般協定 안에 이 原則이 採用되어 있다.

( Paul Reuter, Institutions internationales, Paris, P.U.F., 1969, PP. 121 ~ 122 )

國家成立時의 合法性에 關한 理論은 大略 以上과 같은데, 이 理論은 分斷國家의 考察에 있어서는 直接的으로 關聯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國家成立時의 要件은 그 合法性 보다는, 權力行使의 实效性이 核心이 되어있는데, 國家에 內亂이 發生했을 때나, 他國에 依한 侵略에 依하여 占領狀態에 빠지게 되어, 設使 그 權力行使의 实效性이 制約되는 境遇가 있다할지라도 그 國家의 存立은 如前히 容認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卽, 分斷國家에 있어서는 相對方 部分國家의 領域에 對한 權力行使 그 自体가 바로 問題인데 反하여, 一般國家에 있어서는, 國家로서의 一貫된 全領域에 걸친 權力行使의 实效性이 可能視되고 있다.

要컨대, 新國家의 成立은, 鬭爭 없이 行해질 수 있으며, 또한 鬭爭이 있는 境遇일지라도, 對立關係에 있는 權力的 一方은, 그가 떨어져 나갈라고 하는 그 國家 全體의 利益을 代表한다고 主張하지는 않고, 다만 새로운 國家形態를 갖추기를 願하는 새로운 共同社會의 利益을 代表한다고 主張하는 데에 그친다.

그런데 이와는 反對로 革命等에 依한 政府의 變更에 있어서는, 두 개의 組織이 同一한 國家를 代表한다고 서로 主張한다. 바로 여기에 政府의 合法性 問題가 提起된다.

이 政府의 合法性은, 國家成立 要素中の 하나인 權力行使의 实效性 原則을 民主主義的 合法性에 連絡시키고 있다.

따라서 權力行使의 实效性은 權力의 安定性을 包含하게 되고, 이 安定性은 오로지 輿論의 自由스러운 支持에만 根拠한다고 主張하게 된다. 에크아돌 外相 토발 (Tobar) 博士는 人民의 同意에 依한 憲法的 合法性을 갖추지 않은 어떠한 政府도 承認되어서는 안된다는 原則을 主唱했었다.

이 原則은 中美 5개 共和國에 依하여 1907年 12月 20日과 1928年 2月 7日에 各各 調印된 두 條約에 依하여 認定되었으나, 現在로서는 廢棄되어 있다. 이 토발主義는 어느 時期에 있어서의 美國政策의 動機가 되었었고 또한 아직도 動機가 되고있다 (Paul Reuter, op. cit., P.116).

그런데 政府의 合法性 問題는 對立되고 있는 두 權力間에 展開되고 있는 鬭爭의 段階와 形態에 따라서 相異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鬭爭의 始初에 있어서는 既往에 承認된 合法政府는 領土 全域을 統制할 수 없게되며, 反亂政府는 事實上 一部 領域의 支配者가 된다.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이미 承認된 合法政府 만이 國家를 代表하고, 相對方은 國際的分野에 있어서 何等의 權限이 없다.

萬一 內亂狀態가 持續되면, 이 鬭爭은 必然的으로 隣接國家들의 이데올로기의, 商業的, 政治的 關心對象이 되게된다. 이 鬭爭이, 革命이 進行中인 國家의 領土內에 局限되어 展開되고 있을 때에는, 國內의 性格에만 머물러있게 되지만, 이 範圍를 벗어나는 刹那, 特別히 公海에 미치게되면 國際的인 性格을 띠게된다.

그런데 國內的鬭爭이 國際的인 鬭爭으로 變化하게되는 것은 交戰狀態에 對한 承認에 依해서 行해진다 (Paul Reuter, op-cit., PP.126~128).

要컨대 政府의 合法性은 그 政府가 國家를 國際的으로 代表할 수 있는 資格의 表現인데, 다만 留意할 點은, 承認이란 法的 行爲에 依하여 承認國이 對象이 되는 政府에게 이 資格을 附与한다는 事實이다.

또한 여기서는 詳細히 論할 수 없지만 政府의 合法性을 認定하는 現存 承認 制度의 性格이 相對的이며 分離할 수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 (나)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

얼마 前까지, 台灣의 國民黨政府는, 國際聯合會에 있어서의 그의 地位의 合法性의 根柢는 中國大陸을 法的으로 代表하는에 있다고 主張하였었다. 內亂의 境遇, 即 前述한 政府 承認의 境遇에만 생각할 수 있는 이 論拠는 모든 分斷 國家의 政府들에 依하여 採択되었었다. 例컨대, 獨逸聯邦은, 1950年 10月 東獨에서 있었던 總選舉는 造作되었었으며 따라서 東獨의 憲法은 人民의 意思에 根柢하여 制定된 것이 아니더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美·英·仏 西方側 3管理理事國들은 同機構의 멤버인 蘇聯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抗議했었다. 即 비록 포츠담協定과 其他 國際協定에 依據하여 蘇聯이 民主主義의인 政府를 樹立할 義務가 있다 할지라도 그 選舉節次는 民主的이며 自由的인 選舉에 必要한 慣例的인 條件과 明白히 矛盾된다고 指摘했었다.

따라서 美·英·仏 3聯合國 政府들은, 獨逸聯邦이나 獨逸人民과 마찬가지로, 東獨政權에게 合法性을 認定하며 또한 現在 東獨에 살고있는 住民에 關한 如何한 代表權도 認定할 수 없다는 理由가 바로 이 造作된 選舉에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獨逸의 實例에서 두 가지 法的要件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는,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住民이 살고있는 領域部分은 國家를 形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人民의 意思에 依한 行爲가 없는 國家 構成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드·골大統領은 1959年 3月 25日 新聞記者들과의 會見에서, 獨逸民主共和國에 關하여, 『우리는 그것을 主權을 가진 獨立된 國家로서 承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蘇聯占領에 依해서만 또한 苛酷한 獨裁 德分에 誕生할 수 있었으며, 存在하기 때문이다』라고 言及하고 있다.

法的要件의 둘째는, 民主主義의으로 構成된 政府만이 承認될 수 있으며, 또한 이 政府와 같이 外交關係를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48年에 國際聯合 總會는, 南韓에 있어서의 政府樹立은 選舉集團의 自由意思의 有効한 表現의 成果이며, 또한 이와같은 資格에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

한 合法的인 (lawful) 政府라고 宣言했었다. 또한 總會는 加盟國들에게 外交關係의 樹立을 위하여 이 事業을 參酌할 것을 勸告했었다.

同一한 表現方式으로 美·英·仏 外相들은, 1950年 9月 3日 뉴욕에서 다음과 같은 宣言文을 採択했었는데, 其後 이 宣言은 北大西洋條約機構 加盟國家들에 의하여 再確認되었었다. 卽, 『獨逸이 그의 單一性을 되찾지 못하는 동안은, 세 나라 政府들은 聯邦共和國의 政府가 自由的으로 合法的으로 構成된 唯一한 獨逸政府이며, 또한 이와같은 事實에 依하여, 聯邦共和國政府가 獨逸을 代身하여 말하는 資格과, 國際關係에 있어서 獨逸人民을 代表하는 資格을 가진 唯一한 政府다』라고 公言했었다.

첫째, 要件은 前述한 國家成立에 關한 主觀的 要件, 特히 自由스러운 人民의 意思表示가, 客觀的 要件 보다 두드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要件은 現存 承認制度和 關聯되는데, 承認의 政治性이 露骨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分斷國家 主權의 正統性 또는 合法性이란 概念은, 하나의 分斷國家 안에 있는 두 개의 部分國家들 中의 一方이 가지는, 全領土에 對한 對內的 및 對外的 代表資格의 表現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이라는 概念의 內容은 以上과 같은데, 國家權力的 合法性은, 例컨대 他國의 侵略에 依하여 國家領土의 一部가 占領되어 있을 境遇라도 權力行使의 可能性이 國際的으로 認定되어 있지만, 分斷國家의 境遇는 그렇지 않다.

또 政府의 合法性의 境遇에는 終局에 가서는 內亂에서 勝利한 側이 合法性을 갖게 되지만, 分斷國家의 境遇에는 또한 그렇지 못하다. 萬一 權力行使의 实效性을 根拠로해서 分斷國家內의 各部分國家들을 一般國家 처럼 處理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도 할 수 없는 事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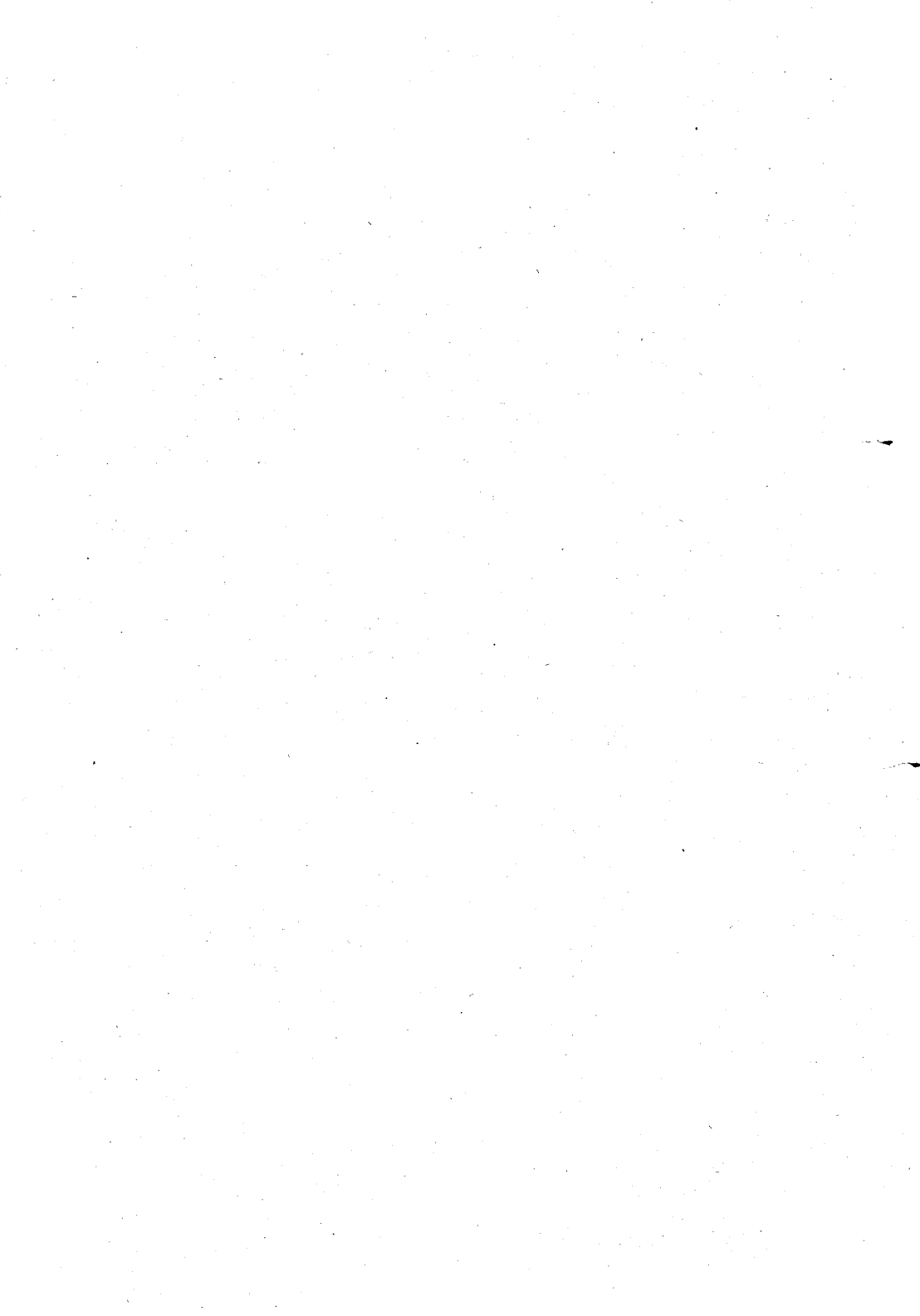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은 現存의 國際社會를 支配하고 있는 政治的偶然性 (Contingences politiques) 에 基因하고 있다. 바꾸어서 말하면 分斷國家와 一般國家를 比較하면 前者에게는 後者에게 있는 對內的인 合法性과 對外的인 獨立이 事實上 欠如되어 있는데, 이 兩者를 人爲的으로 附與하고 있는 것이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이므로 이 合法性은 政治的 偶然性의 產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 偶然性에 依하여 構成된 分断國家主權의 合法性이 分断國家內的 集團의 熱望인 再統一을 概念的으로 滿足시켜주고 있다.

끝으로 分断國家 主權의 合法性은 以上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暫定的인 것, 따라서 不安定한 것이다. 이 合法性이 不變하고 安定되고 完全한 것으로 化身하기 위해서는, 分断國家 그 自体가 一般國家로 轉化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再統一, 即 두 개의 部分國家들의 「併合」이 이루어지든지, 경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分離」 또는 「分裂」 過程을 거쳐서 分断國家의 消滅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므로 問題는 이 分断國家의 存統이 얼마동안 繼續되느냐에 있으며, 또한 비록 한 分断國家 안의 두 部分國家들이 가진 各其의 相反되는 國內的 및 國際的 與件이 相馳된다 하더라도, 如何히 平和的으로 民族的 連帶意識을 強化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 大韓民國의 法統性 論究

(法的地位를 中心으로)

韓 亨 健  
漢陽大學校 教授

## 目 次

- I. 序 論
- II. 大韓帝國의 法的地位
- III. 大韓民國의 法的地位
- IV. 結 論

### I. 序 論

大韓民國의 法統性을 究明하기에 앞서 우선 大韓帝國의 法的地位부터 解明할 必要가 있다. 1910年 8月 29日의 韓·日併合條約으로 因하여 大韓帝國은 國際法上의 意味에 있어서의 國家로서의 性格을 상실하고, 따라서 大韓帝國이라는 國家가 消滅되고 말은것인가 하는 문제가 提起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併合條約의 締結에도 不拘하고 그 條約自体가 그 當時의 事實로 이루어 볼 때 日本의 強迫에 의해 締結되었으므로 여기에 強迫에 의한 條約은 無効라고 主張하여 大韓帝國의 國家性이 持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大韓帝國의 國家로서의 存統與否에 관한 法的解明에 따라 1948年 韓半島內에 樹立된 大韓民國과 北傀政權의 法的地位도 自然히 解決되리라고 본다. 즉 大韓帝國의 國家性에 對한 存統性이 認定되는 경우 그의 領土上에 存立하는 두개의 政權, 大韓民國政附와 北傀政權, 中 어느것이 合法政府인가 하는 문제가 提起된다. 萬一 大韓帝國이 併合條約으로 말미암아 國家性이 消滅되었다고 본다면 이에 따라 1948年에 樹立된 두개의 政權은 新生國家들로서 어느 것도 大韓帝國과는 無關한 國家 내지 新政府라는 見解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立場으로서는 이러한 法的문제의 提起에도 不拘하고 韓·日併合 條約은 日本의 強迫에 의해 締結된 것이므로 이 條約은 無効라고 본다. 따라서 日本의 併合이라는 事實에 拘碍됨이 없이 大韓帝國은 國際法上 國家로서 如前히 潜在的으로 存続하여 오다가 1948년에 樹立된 大韓民國政府가 이를 繼承하여 大韓帝國을 對外的으로 代表하고 있다는 觀點에서 考察하고자 한다.

## II. 大韓帝國의 法的地位

大韓帝國의 法的地位는 1904年 2月 23日의 韓·日議定書締結以前과 이 議定書以後 1910年 8月 22日의 韓·日併合條約以前까지의 保護關係, 그리고 併合以後 1948年 8月 15日의 大韓民國政府樹立時까지 3期로 区分하여 究明하고자 한다.

歷史上으로 볼 때 朝鮮王朝는 1644년부터 1894年 下関條約前까지 4년에 한번씩 中國에 朝貢(Tribute)을 받쳤다는 記錄이 남아있다.<sup>1)</sup> 1895年 4月 17日의 下関條約에서 中國은 終局的으로 韓國의 完全獨立과 自主性を 認定함과 同時에 韓國이 그때까지 받쳐왔던 朝貢과 儀禮를 將次 完全히 終息한다는 것을 表明하였다.<sup>2)</sup> 朝貢을 中心으로 하여 생각하여 볼 때 中國과 韓國의 關係는 國際法上으로는 一種의, 交易 形態이지(宗主) 付庸關係(Suzerainty)라 할 수는 없다. 즉 付庸關係의 內容은 여러가지의 경우에 따라 달리하나 大體的으로 보아 宗主國은 從屬國(Vasal state)에 관한 對外的 혹은 軍事的인 事項을 處理하고 이에 對해 從屬國은 財政의 支援(朝貢)으로서 報答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韓中間의 朝貢關係는 物物交易에 그쳤지 外交軍事上의 代行業 한 일은 없다. 그 當時 中國에 對한 朝貢關係는 비단 韓國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라 亞

1) Quincy Wright, The Legal Background in the Far East, in: Legal Probleme in the Far Eastern Conflict, International Secretariat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New York 1941, S. 32. 그러나 朝貢의 回數는 4년에 1회가 아니라 年 3回씩 하다가 그後 年 4回로 되었다. (韓國史 近世後期篇, 震檀學會, 110~111面)

2) 條約原文은 K. Strupp, Urkunde II, S.125 參照.

細亞 여러나라에도 關聯되었다. 例를 들면 류구는 1875년까지 3년에 2회씩 Nepal은 1790년부터 1882년까지 5년에 1회씩, Burma는 1895년까지 10년에 1회씩, Laos도 10년에 1회씩, Siam(태국)은 1882년까지 5년에 1회씩의 朝貢關係를 持續하여 왔다.<sup>3)</sup>

近代國際法은 본시 歐羅巴國際法 혹은 歐羅巴公法이라고 稱하여졌고, 그 妥當範圍는 歐羅巴의 文化를 가진 基督教國家에만 限定되었다. 그러나 이 限界는 19世紀의 中葉에 이르러 무너지기 始作하였다. 1856년의 Paris條約에 非基督教國家인 터키가 처음으로 歐羅巴公法과 協調의 利益에 參加하는것이 許容되었다. 亞細亞地域에서는 中國이 1842년의 南京條約에 의해, 또한 日本은 1854년의 神奈川條約에 의해 開國이 되어 처음에는 比較的 制限된 不平等한 地位에 놓여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國際法共同社會의 一員으로서 國際法에 의한 規律을 받게 되었다.

極東에 있어서 韓國은 이미 오래前부터 中國 및 日本과 國交關係를 維持하여 왔다. 그러나 歐羅巴國際法の 適用은 언제부터 받았으며, 또한 언제부터 國際法의 一員이 되었는가 하는 點이다. 1882년의 韓·美간의 條約을 爲始하여 그 後 4년에 걸쳐 英國, 獨逸, 伊太利 및 러시아등과 條約을 締結하였으니 이로써 韓國은 漸次的으로 國際法の 規制를 받게된 獨立國임을 알 수가 있다.<sup>4)</sup>

위에서 본 바와같이 中國이나 日本은 1842년 내지 1854년에 비로소 歐羅巴國際法の 一員으로 受容되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兩國은 그 受容以前에는 國際法上的의 主体로 볼 수 없는 것이다. 中國에 대한 韓國의 朝貢關係는 오늘날의 國際法에 의하면 附庸關係가 아니라 交易關係의 範疇에 屬한다. 또한 中國이 最少限 1842년에야 비로소 國際法の 一員이 되었다는 點을 勘案해 보면 그 受容以前까지의 朝貢關係는 國際法の 適用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42年以後 1882年 韓美間의 條約締結로서 韓國이 國際法の 一員이 될

3) Quincy Wright, The Legal Problems, a. a. o. S. 32.

4) H. B. Morse and H. F. MacNair, Far Ea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Boston 1931, pp. 32-6. 382-400; 500-9, 517-29; Q. Wright, a.a.o. S. 22.

배까지의 40년간의 韓·中간의 朝貢關係는 韓國이 아직 國際法의 一員으로 受容되지 못하였으므로 如前히 國際法上の 附庸關係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淸·日戰爭을 終結짓는 1895年 4月 17日의 下関條約 第1條에서 中國은 1894년까지의 朝貢關係를 없애고 韓國의 完全獨立國임을 認定하였다.

이 條約으로서 韓國은 비로소 中國에 對한 朝貢關係로 부터 解放됨과 同時에 1904年 韓·日議定書로서 日本의 保護關係가 成立될 때 까지 國際法上の 完全主權國家로 存統되었다.

1904年 2月 28日에 締結된 韓·日議定書<sup>5)</sup>의 內容을 살펴 보면, 그 第2條에서 日本政府가 大韓帝國의 皇室의 安寧을 保障하고, 第3條에는 日本이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할 것을 規定하였다. 그리고 第4條에서는 第3國의 侵襲, 혹은 內亂으로 因하여 大韓帝國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有할 경우에는 日本은 大韓帝國에 干涉할 수 있는 權利와 軍略上 必要한 地點을 임시 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保障받았다.

國際法上 이 議定書는 하나의 保護條約에 該當되는 것이다. 즉 議定書에 의하면 日本이 大韓帝國에 對하여 一聯의 保護關係가 規定되어 있다. 國家가 保護條約을 締結하여 他國家의 保護下에 놓이게 되는 경우, 他國家는 自國의 對內外的인 統治權의 一部를 그 相對國으로 하여금 許容하게 되는 것이다. 韓·日議定書가 지니는 法的性質은 日本이 大韓帝國의 對內的인 統治權의 一部를 制限하는 國際法上の 保護關係라고 볼 수도 있다.

大體的으로 보아 이 對內的인 保護關係를 規律하는 保護條約은 保護國이 被保護國에 對한 保護義務가 典型的인 것이다. 保護國은 被保護國을 外部의 侵略으로부터 持續的으로 保護할뿐만 아니라 被保護國의 對內的인 不安狀態에 對해서도 干涉할 權利와 義務가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한 具體的인 例로서 保護國에 의한 被保護國의 獨立과 領土保全 및 一定한 政府나 皇室의 保護義務등을 들 수 있다.<sup>6)</sup> 韓·日議定書에 規定하고 있는 一聯의 保護關係는 被保護國인 大韓帝

5) 旧韓末條約 彙纂 (1876~1945) 上卷, 立法參考資料 第18号, 国会圖書館 立法調查局, 1964年 66~69面 參照.

6) Josef Kunz, Die Staatenverbindungen, in: Handlunch des Völkerrechts, 2. Bd. 1929, S. 338.

國의 獨立과 領土 保全 및 大韓帝國皇室의 安寧에 危險이 있을 경우 이에 對한 日本의 干涉權을 認定한 對內的인 保護關係라 볼 수 있다.

國際法上으로 볼 때 이 議定書의 法的性質은 하나의 保護條約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保護條約의 締結로 因하여 그때까지 存在하였던 大韓帝國의 完全主權國家性이 이 條約과 더불어 消滅된 것은 아니다. 한 國家가 主權獨立國이라 하는 것은 그가 國際法으로 부터의 獨立이 아니라 他國家의 命令權으로 부터의 獨立을 意味하는 것이다. 大韓帝國은 主權國家로서 他國과의 保護條約에 의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自由를 部分的으로 制限받는다 하더라도 그가 主權國家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完全한 主權國家에 比하면 保護條約의 內容에 따라 어느 程度 主權이 制限되었다는 點에서 이러한 國家를 半主權國家라고 稱하기도 한다.<sup>7)</sup>

위에서 본 바와같이 保護國은 一面 保護條約에 의하여 被保護國에 對한 干涉權을 包含한 保護義務가 있는가 하면 他面 保護國이 被保護國의 外交權을 要求하는 國際法上的 保護關係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保護關係에 該當되는 것이 1905년에 締結된 乙巳保護條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條約을 究明하기에 앞서 우선 外交權을 要求하는 國際法上的 保護條約은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 첫째 形態로서 監督(Überwachung)과 統制(Kontrolle)를 들 수 있다. 被保護國은 外交權을 行使하되 保護國의 外交에 符合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被保護國은 外交權을 行使함에 앞서 우선 保護國으로부터의 事前承認을 얻거나 혹은 保護國에게 拒否權이 許容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被保護國이 第3國과의 外交關係를, 위하여 被保護國과 保護國의 通常的인 外務機關으로서 構成되는 合同機關에 承認權과 異議申請權을 부여하는 수도 있다<sup>8)</sup>.

被保護國이 第3國과의 外交權을 行使함에 있어서 保護國의 事前承認을 要하는 경우로서 1904年 8月 22日에 締結된 韓·日外國人顧問僱聘에 關한 協定書<sup>9)</sup>를

7) Josef Kunz, a.a.O. S. 334f.

8) Josef Kunz, a.a.O. S. 340; Verdross, Die Verfassung der Völkerrechtsgemeinschaft, 1926, S. 100.

9) 條約의 原文은 旧韓末條約 彙纂 上卷 70~71面 參照.

들 수 있다. 이 協定書의 第2條에 의하면 大韓政府는 日本政府가 推薦하는 外國人 1名을 外交顧問으로 하여 外部에 僱聘하고 外交에 관한 用務는 一切 그 意見을 詢하여 施行토록 하고, 第3條에서는 大韓政府가 外國과의 條約締結, 其他 重要한 外交案件등의 處理에 關하여는 事前에 日本政府와 相議하도록 되어 있다.

이 協定書에 의하여 日本政府는 大韓政府가 第三國과 外交權을 行使時 이에 對한 事前承認權과 監督權을 留保하였다. 그러나 外交使節의 派遣 및 接受에 關한 行使權은 如前히 大韓政府에 歸屬되어 있었다. 또한 大韓帝國은 條約締結國인 日本이나 혹은 第3國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國際法上的 國家로서의 主體性에는 아무런 變함도 없었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다.

國際法上的 保護關係의 두번째 形態로서 保護國이 被保護國의 外交關係와 事務를 直接 監理 (Führung) 하고, 指揮 (Leitung) 하는 것을 들 수 있다.<sup>10)</sup> 國際法에서 말하는 保護關係는 普通 이러한 形態의 것을 意味한다. 保護國과 被保護國은 이러한 形態의 保護條約을 새로 締結함으로써 이미 위에서 본 바와같은 對內的 保護關係에 代替되는 것이다. 保護國은 監理 指揮라는 權限에 의하여 被保護國이 第3國에 對하여 保有하였던 모든 外交權 및 領事代表權을 代理 行使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保護國은 外國에 있는 被保護國의 國民도 保護하게 된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被保護國은 國際法上的 權利能力은 如前히 保有하고 있으나 外交關係에 있어서의 行爲能力이 保護國에 의하여 代行됨으로 그러한 國家는 半主權國家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905年 11月 17日에 締結된 韓·日協商條約 (一名 乙巳保護條約)<sup>11)</sup> 은 上記에 該當되는 條約이라 볼 수 있겠다. 이 條約 第1條에서 日本政府는 韓國의 外國에 對한 關係 및 事務를 統理 및 指揮하겠다고 日本國의 外交代表者 및 領事는 外國에 있는 韓國의 臣民 및 利益을 保護할것을 規定하였다. 第2條에서 韓國政府는 今後 日本政府의 仲介 없이는 어떠한 性格의 國際條約이나 約束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規定하였다. 이러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外國에 있는

10) Josef Kung, a.a.O. S. 341.

11) 李基白, 韓國史新論, 1970年 340面 參照.



韓國國民은 如前히 大韓帝國의 國籍을 保有하였고, 또한 大韓帝國에 歸屬되어 있는 領土主權, 즉 權利能力도 아무런 支障을 받음이 없이 存続하였다.

이 條約 第3條에 의하면 日本政府는 一名의 統監을 韓國皇帝陛下 閣下에 派遣하여 外交에 관한 事項을 管掌케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이로써 大韓帝國이 가지고 있었던 條約締結權을 統監에게 移讓한것은 아니다. 따라서 韓國과 日本간의 條約締結에 있어서 統監이 韓國을 代身하여 日本과 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아니라 兩國政府간에 條約의 締結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反하여 被保護國인 韓國이 第3國과 條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에는 條約에 의해 日本에 監理와 指揮權이 認定되었으므로 日本을 통해 條約을 締結하여야 될 것이다.

위에서 본 乙巳保護條約은 形式上 하나의 國際法上的 條約으로 認定되는 感마저 있으나 그 實質的인 面을 考察하여 보면 日本의 強迫에 의해 締結된 것임을 立証할 수 있다. 즉 伊藤博文은 이 條約案의 受諾을 強要하기 위하여 日兵을 거느리고 宮闕에 亂入하여 直接 會議에 干涉하고 皇帝와 韓國大臣들에게 脅迫을 恣行하였다. 이러한 伊藤博文의 脅迫에 대해 參政大臣 韓圭萬이 완강히 反對하자, 그는 日兵을 外部로 보내 外部大臣印을 強奪케 하여 不法的으로 條約에 捺印하였다.<sup>12)</sup>

이렇게 不法的으로 調印된 條約에 對하여 高宗皇帝는 美國에 滯在中인 皇室顧問 Hulbert를 通하여 이 條約이 無効임을 通報하고 이 事實을 美國政府和 萬邦에 宣布할 것을 指示함에 있어서 朕은 銃劍의 威脅과 強要아래 最近 韓·日兩國간에 締結된 所謂 保護條約이 無効임을 宣言한다. 朕은 이에 同意한 적이 없고 今後에도 決코 아니 할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하여 두었다.<sup>13)</sup>

이제 그럴 여기서 強迫에 의하여 調印된 乙巳保護條約을 國際法上的 理論에 따라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하나의 國際條約이 그 効力を 發生하려면 條約當事者간에 아무런 瑕疵가 없는 意思의 合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14)</sup> 國際法은 意思의 不合致에 의한 條約의

12) 旧韓末條約彙纂, 上卷 76面 參照.

13) Friedrich Berb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Bd. 1, 1960, S. 436; Alfred Verdross, Völkerrecht, 5, Aufl. S. 169.

14) Friedrich August Freiherr von der Heydte, Völkerrecht, Bd. 2, 1960, S. 101.

不成立에 관하여 여러가지의 境遇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強迫 (Zwang)에 의해 締結된 條約에 重点을 두고 考察하기로 하겠다. 國際法上에 있어서의 強迫은 반드시 暴力行使를 意味하지는 않는다. 이와는 反對로 國際法上の 暴力行使는 恒時 強迫을 必要로 하고 있다. 暴力行使는 一國家의 法的領域에 對한 干涉을 意味하며, 普通 主權國家의 權利面에 對한 強迫行爲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干涉이라는 것은 他國家의 法的領域에 對해 干涉하는것을 意味하는데 反하여 強迫은 一國家에 對하여 他國家에 設定된 一定한 行爲를 할것을 強要하는데 그 差異點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國家가 條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點에서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즉 國家自體의 意思가 存在하는가. 萬一 이 意思가 存在한다고 하는 경우 그러한 意思를 가지는 國家에 對한 強迫은 어떠한 法的效果가 發生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條約締結에 臨하는 國家機關으로서의 個人의 意思에 對한 強迫은 어떠한 法的效果를 招來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國家意思를 認定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法的 擬制에 不過한 것이다. 外見上으로는 國家自體의 意思로 看做된다 하더라도 恒時 個人의 意思가 國家의 意思에 歸屬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機關으로서의 個人이 國家의 이름으로 條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그의 意思는 國家代表者로서의 意思이지 決코 以外에 또 하나의 國家意思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6)</sup>

傳統的인 國際法에 對하면 強要된 條約은 有效하다는 것이다. 萬一 이 條約의 有效性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모든 講和條約은 無効라는 結果마저 招來하게 된다. Grotius는 講和條約의 有效性을 主張하였으나 萬一 信義에 違背되는 不法인 威脅이나 暴力行使에 對하여 條約이 締結되었을 경우 如何한 者도 이것을 遵守할 義務가 없다는 것을 指摘하였다.<sup>17)</sup> 國家에 對한 強迫이란 있을

15) 裴載湜, 強迫으로 締結된 條約의 性質 및 効力, 서울大學校 法學, 제 10 卷 2號 (통권 19號), 1968, 56, 59面 參照; 田岡良一, 國際法講義; 上卷, 1953, 554面.

16) De Jure belli ac pacis, BK. II, Chap. XII, Sec. X-C. G.; Verdross, Völkerrecht, a.a.O.S. 170.

17) F. De Visscher. "Des traités imposés Par la Violence", in: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de législation Comparée 3rd. Ser., 1931.

수 없다는 見解로는 強迫은 個人이나 人間集團에 對해 行하여 지는 것이며, 決코 國家全體를 強制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他國家가 一國의 法的權益, 例를 들면 獨立, 自主政府, 領土高權등을 威脅하는 경우 國家全體에 對한 強迫이 있다는 主張도 있다. 또한 學者에 따라서는 國家機關으로서의 個人이나 國家에 對한 強迫은 結果적으로 國家機關인 個人에 對한 것이므로 구별하여 이를 區別할 實益이 없다는 것이다.<sup>18)</sup> 그러나 強迫은 私的個人이나 家族에 對해서 行하여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는 機關이 條約의 受諾을 拒否하는 경우 領土侵入 혹은 國家財産등에 對한 不法的인 侵害를 恣行하겠다고 威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理論은 看過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強迫은 恒時 國家機關에 對해 行하여 지게 되는 것이지만 強要된 強迫은 機關의 私的領域이나 혹은 國家的 法益에도 關聯될 수 있다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國家機關의 私的領域에 對해 加하여진 強迫으로 因하여 意思表示를 한 例로는 1526年 Madrid에서 監禁되었던 仏蘭西王 Franz 1世가 Karl 5世에 對해 強要된 條約을 들 수 있다. 仏蘭西는 그의 王이 Karl 5世의 強迫에 對해 條約을 締結하였으므로 이러한 條約에는 拘束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다고 宣言하였다.<sup>19)</sup> 國家的 法益의 侵害를 理由로 하여 國家機關에 對해 強迫한 경우로서는 1939年 3月15日 獨逸이 체코슬로바키아를 獨逸의 保護領으로 하기 위한 目的으로 그 當時의 大統領 Hacha를 強迫함으로써 締結된 條約을 들 수 있다. 獨逸은 그가 이 條約을 受諾하지 않을 경우에는 Prag市를 폭격하겠다고 威脅한 것은 大統領個人에 對한 強迫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國家에 對한 威脅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sup>20)</sup>

위에서 본 바와같이 國家機關의 個人 혹은 國家法益에 對한 強迫은 國家 혹은

18) Georg Dahm, Völkerrecht, Bd. 3, 1961, S. 38.

19) Verdross, Völkerrecht, a.a.O. S. 171, Paul Guggenbeim, Lehrbuch des Völkerrechts, Bd. 1, 1948, S. 86, Anm. 122는 1905年 11月17日의 乙巳保護條約 締結時 日本이 韓國側代表에 對해 加한 強迫은 그 個人에 對한 強迫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체코 大統領 Hacha에 對한 獨逸의 強迫도 大統領 個人에 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 Gerog Dahm, Völkerrecht, Bd. 3, S. 38.

은 그 機關의 侵害를 意味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強迫으로 말미암아 行하 여진 意思表示에는 拘束될 必要가 없으며, 國家는 그의 機關이 強迫된 것을 理由로 條約을 取消할 權利가 있다. 萬一 國家가 이 權利를 行使하게 되면 強迫된 意思表示는 아무런 効力도 發生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強迫을 加한 國家는 不法行爲에 對한 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sup>21)</sup>

勿論 上記의 學說은 어느 程度 妥當성이 認定된다. 그러나 條約은 이를 締結하는 國家代表간의 眞正하고도 自由로운 合意에 의해서만 그 効力이 發生한다는 私法上的 原則을 이에 援用하여 본다면 國家代表로서의 個人에 對한 強迫이나 強迫에 의해 締結된 條約은 取消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無効로 함이 妥當할 것이다.<sup>22)</sup>

이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強迫이란 어느 程度의 것을 意味하는가 하는 點과 아울러 無効를 主張할 수 있는 時期를 어느때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擡起된다. 強迫의 強度는 條約締結에 臨하는 國家代表인 個人에 對한 強制가 아주 強하여 그가 客觀的·合理的 立場에서 獨自으로 意思決定의 自由가 剝奪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自由를 박탈하기 위한 手段으로서는 그 個人에게 直接的인 身體的, 生命的 威脅이나 혹은 其他의 害惡이 加하여 지는 것이다. 強迫은 暴力을 수반할 수도 있고, 또는 身體的이나 精神的인 威脅일 수도 있는 것이다.<sup>23)</sup>

---

21) Oppenheim-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Vol. 1, § 499, S. 891; Grosch, *Der Zwang im Völkerrecht*, 1912, S. 92ff. 意思表示의 無効에 관해서는 意見의 對立이 있다. P. Guggenheim, *La Validité et la nullité des actes juridiques internationaux*, in: *Recueil des Cours,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1949, Bd. 1, S. 209는 將來에 限해서만 無効라고 볼 수 있다. 이에 反하여 *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條約法案 第32條에서는 無効에 관한 決定은 國際裁判機構에서 할 必要가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22) G. Dahm, a.a.O. S. 38f.

23) G. Dahm, a.a.O. S. 42.

無効를主張할 수 있는 時期에 對해서는 確立된 理論은 없으나 強迫 當한 國家機關은 合理的이고 適切한 期限内에 條約의 無効 혹은 取消에 對한 意思表示를 하여야 한다. 이 期限은 國家機關이 強迫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時點으로 부터 計算되는 것이다. 萬一 強迫 當한 國家機關이 이 期限内에 權利를 行使하지 않는 경우에는 條約을 遵守하는 것으로 看做된다. 또한 遲滯된 權利行使는 信義誠實의 原則에도 違背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1905年의 乙巳保護條約 締結當時 日本이 大韓帝國의 皇帝 및 大臣에 對한 強迫은 韓國의 國家機關에 對한 強迫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大韓帝國은 이러한 強迫에 의해 締結된 乙巳保護條約에 對해서는 그 無効임을 主張할 權利를 保有하게 되었다. 즉 이 條約이 不法調印된 直後 高宗皇帝는 上記한 바와같이 強迫에 의한 條約임을 宣言하였으므로 이 條約의 韓國에 對한 拘束性은 否認되었다고 看做된다. 따라서 이 條約은 無効로 됨과 同時에 日本은 韓國의 國家機關에게 行한 不法行爲에 對해 明確히 責任을 負야 되는 것이다.

乙巳保護條約은 日本의 強迫이 恣行 되었으므로 그 條約의 効力은 源泉의 으로 無効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後 1907年 7月 24日 韓·日新協定(一名 丁未七條約)을 補充의 으로 締結하여 大韓帝國이 保有하였던 內政에 關한 主權마저 奪取하기에 이르렀다. 이 條約에서 日本은 韓國의 富強을 圖謀하고 韓國國民의 幸福을 增進시킨다는 口實下에 韓國政府의 法令制定과 重要한 行政上의 処分에 있어서는 統監의 事前承認을 얻을것과(第2條), 高級官吏의 任命에 있어서 統監의 同意를 要하게 하고(第4條), 統監이 推薦하는 日本人을 韓國 官吏에 任命할것(第5條), 統監이 同意하지 않는 外國人을 韓國政府가 採用하지 않을것(第6條) 등을 規定하였다.<sup>25)</sup> 또한 1907年 10月 29日의 在韓國 日本臣民에 對한 警察事務執行에 關한 協定書<sup>26)</sup>와 1909年 3月 15日의 在韓國 外國人民에 對한 警察事務에 關한 韓·日協定書<sup>27)</sup>에 의하여 韓國警察官은 日本 官憲의 指揮監督을 받아야 하였으나, 이러한 것도 結局 1910年 6月 24日의

24) 條約原文은 舊韓末條約 彙纂 上卷, 88-89面 參照.

25) 原文은 上掲 條約彙纂 90-91面 參照.

26) 上掲 條約彙纂 92面 參照.

27) 上掲 條約彙纂 96-97面 參照.

韓·日政府 간에 調印된 韓國警察權委託覚書<sup>28)</sup> 로써 韓國이 그 때까지 保有하였던 警察事務마저도 日本에 移讓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韓國은 1909年 7月 12日의 乙酉覚書에 의하여 司法 및 監獄事務도 日本에 빼앗기고 말았다.<sup>29)</sup>

이러한 一聯의 條約을 통하여 日本은 大韓帝國이 掌握하고 있었던 內政權을 奪取하였으므로 大韓帝國이 外見上 保有하고 있는 權利로서는 겨우 關稅權의 行使와 大韓帝國의 國旗揚揚權, 그리고 1897年 以來 施行된 皇帝稱號權에 不過하였다.<sup>30)</sup>

1904年 以來 大韓帝國에 對한 日本의 保護關係는 國際法上 典型的인 植民地의 保護關係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外見上으로는 國際法上의 保護關係가 成立되어 있는 것 처럼 假裝되었으나, 그 實은 韓國의 自主性은 一聯의 保護關係로 말미암아 制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韓國의 植民地化가 完成段階에 到達하자 日本은 李完用으로 하여금 日本의 傀儡政權을 樹立케 함과 同時에 이 政權과 呼吸을 같이 할 수 있는 売國民團體인 “一進會”로 하여금 “韓·日聯邦論” 또는 “合併論”을 提唱토록 操作하였다. 이와같이 日本은 韓國國民의 民意와 民聲이 併合을 顯한다고 虛偽捏造하고 마침내 李完用傀儡政權으로 하여금 1910年 8月 22日 韓·日併合條約에 調印토록 하고 一週日後인 8月 29日에 이를 宣布하였으니 韓·日保護條約에 終止符를 찍고 大韓帝國은 日本에 併合되고 말았다.<sup>31)</sup>

이미 위에서 指摘한 바와같이 1904年 2月 23日의 韓·日議定書를 爲始하여 1905年의 乙巳保護條約은 日本의 強迫이 恣行되어 締結된 條約이므로 源泉的으로 無効인 것이다. 無効가 된 保護關係에 依存하여 締結된 韓·日併合自体도 無効임을 1965年에 締結된 韓·日 基本條約 第3條에서도 소급하여 併合條約이

28) 上掲 條約彙纂 94~95面 參照.

29) L. Riess, Zeitschrift für Politik, 1912, S. 483f.

30) 上掲 條約彙纂 98~103面 參照.

31) Walter Schätzel, Die Annexion im Völkerrecht, in: Archiv des Völkerrechts, Bd. 2, S. 11 u. 26f; 同著者, Gebietserwerb, in: Wörterbuch des Völkerrechts, 1. Aufl. (Strupp), Bd. 1, 1924, S. 366 ff.

無効임을 確認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立証할 수 있다.

國際法上 併呑은 暴力行使에 관한 法的效果를 意味하게 된다. 즉 併呑은 繼承國의 一方的이며 흔히 暴力行使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併呑의 効力은 限定되어 있다. 비록 併呑國과 被併呑國간의 合意에 의한 併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被併呑國의 一方的이고 暴力的인 行使가 이에 介在했을 경우, 併呑에 처한 아무런 法的效果도 發生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은 “法이 暴力으로 부터 發生하지 않는다는 法格言에도 符合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一國家가 他國家와의 條約에 의해 併呑을 承諾하고 그의 主權性을 拋棄하였다. 하더라도 그 國家는 追後 그 條約의 履行을 拒否하면 그의 國際法的 主体性은 消滅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被併呑國은 併呑國으로 부터 分離돼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分離國은 그의 條約破棄에 처한 國際法上的 責任을 背야 될 것이다.

위에서 본 法的理論을 土台로 하여 韓·日併呑에 처한 法的性質을 考察하여 보면, 日本은 大韓帝國에 대하여 越等히 우세한 地位를 利用하여 外見上으로는 平穩한 國家간의 合意로 볼 수 있는 韓·日併呑條約을 締結하였으나 實質的인 面에 있어서는 日本의 一方的이며 暴力的인 行爲에 의하여 成立된 것이었다. 즉 이 條約은 日本의 傀儡政權인 李完用內閣과 日本간에 締結된 것으로서 韓國國民은 이에 대해 전혀 贊成한 바도 없었다. 國民이 贊成하지 아니한 이러한 條約에 처한 國民의 不滿은 그 後 己未獨立運動을 통해 폭발되어 마침내는 日本에 의한 國土強奪과 支配에 抗拒하여 大韓帝國의 獨立을 부르짖게 되었다. 國土強奪이라는 日本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國土回復과 自主獨立을 主張한 韓國國民의 抗拒는 法律上的 “返還請求權”(rei vindicatio)으로서 韓國國民에 歸屬된 當然한 權利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國際法上的 原則은 一國家의 領土가 그 國民의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의한 合意와 아울러 利害關係國의 承認에 의한 變更이 있을 경우에 限하여 그와같은 領土變更은 終局的이며 疑心의 餘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當該國民의 意思에 違背된 領土變更은 違法的이므로 이에 따라 侵害된 國家 또는 國民은 私法上的 “返還請求權”에<sup>32)</sup> 의한 主權回復의

32) 獨逸國의 法的地位와 關聯하여 展開한 主權國家의 蘇生理論에 관하여는 Verdross, Die völkerrechtliche Stellung Deutschlands von 1945

權利를 保有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볼때 己未獨立運動은 바로 韓國國民의 主權 返還請求權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結果적으로 보아 韓·日간의 保護關係는 그것을 規律하는 保護條約 自体가 1904年の 韓·日議定書를 爲始하여 1905年の 乙巳保護條約에 소급하여 源泉의 으로 無効가 되었음이 強迫의 理論으로서 立証되었다. 이러한 強迫에 의해 체결된 乙巳保護條約은 高宗皇帝의 宣言으로서 無効가 되었다고 봄이 妥當하다. 外見上으로는 條約의 形式을 갖춘 1910年の 韓·日併合條約은 日本에 의해 세워진 李完用傀儡政權과 日本과의 合意에 不過하며 韓國政府나 韓國國民의 真正한 意思와는 關係없는 것이므로 이 條約에 對한 國際法上의 効力이 發生할 餘地도 없는 것이다. 이미 보아 온 바와같이 保護關係의 設定에도 不拘하고 大韓帝國은 國家로서 가지는 權利能力을 如前히 保有하였음은 勿論, 併合後에도 權利能力은 潛在的으로 存続하였고, 오직 國際法上의 國家에 있어서의 行爲能力, 다시 말하여 大韓帝國이 併合時까지 行使하였던 最高統治權을 併合條約에 의하여 日本이 代行하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日本에 의해 代行된 大韓帝國의 行爲能力은 併合이 持續되는 限 “休息狀態”(Ausruhen)에 놓여 있게 되며 併合이 解消될과 同時에 그 行爲能力은 自動的으로 蘇生되어 이미 持續되었던 權利能力과 아울러 行爲能力마저 回復되어 名實共히 主權國家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sup>32)</sup>

第2次大戰中 1943年 12月 1日 Roosevelt 美國大統領을 爲始하여 Churchill 英國首相 및 中國 蔣介石總統등은 Kairo 宣言<sup>34)</sup>에서 極東에 있어서의 聯合軍이 取할 바 戰爭目的遂行에 관한 原則을 表明하였다. 그들의 目的은 日

32) bis zur Bildung der westdeutschen Regierung in: Archiv des Völkerrechts, Bd. 3. 1951, S. 133; Grewe, Ein Besatzung status für Deutschland, Stuttgart, 1948, S. 177f.

33) Kairo 宣言에 관한 獨譯文은 E. Fraenkel, Korea-Ein Wendepunkt im Völkerrecht, 1951, S. 43.을 參照.

34) P. Guggenheim, Lehrbuch des Völkerrechts, Bd. 1, S. 54ff; v. d. Heydte, Völkerrecht, Bd. 1, S. 72f.



본의 攻擊을 粉碎하는데 있는 것이며, 決코 領土의 擴張에 對해서는 아무런 意圖도 없다는 것을 分明히 하였다. 그들은 日本이 1914年 第1次大戰以來 奪取 혹은 占有하였던 太平洋上의 島嶼들을 奪還하는데 目的이 있었고, 또한 日本이 中國으로 부터 竊取한 地域, 즉 滿洲, 台灣등을 中國에 返還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日本은 奸計와 暴力으로써 掠奪한 其他의 모든 地域으로 부터 逐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三大聯合國은 이 宣言을 通하여 韓國이 日本의 奴隸의 狀態下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韓國은 適切한 時期에 自由로워야 하며 또한 獨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決議하였다.

위에서 본 宣言은 大略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指摘할 수가 있다.

첫째로 聯合軍에 의한 日本領土의 占領은 國際法上의 軍事的인 占領(Occupatio bellica)에 不過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占領에 뒤따르는 領土擴張이라는 意圖는 없다는 것,

셋째로 過去 日本이 不法으로 奪取 혹은 竊取한 島嶼 및 地域은 中國에 돌려 줌으로써 第1次大戰以前의 狀態로 還元하자는 意圖였으며,

넷째로 其他地域에서 日本이 奸計와 暴力으로써 掠奪한 領土로 부터 逐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0年 日本의 不法行爲에 의하여 이루어진 韓·日併合은 应当 上記 네번째에 指摘한 奸計와 暴力에 의한 大韓帝國의 領土의 掠奪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을 念頭에 둔 3大聯合國은 韓國이 奴隸狀態로 부터 解放되어 獨立하여야 한다는 것을 決議함으로써 그들의 見解도 1910年의 韓·日併合이 強迫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을 明白히 하여 두었다. 그들의 이러한 決議는 또한 併合條約이 無効라는 것을 再確認하였다는 것을 意味하기도 한다.

이제 그럼 여기서 Cairo 宣言 自体가 어떠한 法的性質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問題視되는 것은 이 宣言이 하나의 共同的 意思와 目的만을 表示하는 政治的인 合意로 볼 것인가, 혹은 政治的인 合意와는 關係 없는 國際法上의 條約으로 볼 것인가 하는 點이다.

政治的 合意라 함은 多數國家가 一定한 內容에 對하여 共同的인 意思와 目的을 가지고 이에 對한 共同宣言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實質으로 遵守할 意思가 欠如되어 있는 意思表示를 意味한다. 따라서 政治的 合意에 參與한 國家

들은 그 때 그 때의 政治的 狀況의 變更에 따라 새로운 合意를 要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國際條約은 二個國 혹은 多數國간에 成立된 明示的 意思表示의 合意를 意味하며 本質上 條約當事國은 一定한 態度를 相互間이 遵守할 것이 要請된다. 다시 말하여 條約當事國은 意思의 自律에 의하여 成立된 條約을 信義 誠實하게 履行할 것에 同意 하였으므로 一方 當事國은 他方 當事國에 대하여 條約의 內容에 符合되는 態度를 取하여 줄것을 要請할 權利마저 있는 것이다.<sup>35)</sup>

3大聯合國과 追加로 加入된 소련은 이 宣言에서 韓國의 自主獨立에 관한 共同的인 意思表示를 함으로써 그들은 이에서 流出되는 義務를 誠實하게 遵守하겠다는 意思表示로 看做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政治的 狀況에 따라 随意的인 合意를 要하게 되는 政治的 合意하고는 그 性質을 달리하는 國際法上의 條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36)</sup> 이 宣言에서 表明하고 있는 韓國의 自由와 獨立에 관한 條項은 第3國인 韓國에도 權利가 부여되는 하나의 國際條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國際條約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立法行爲로서 오직 條約締結 當事國에만 有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條約에 參加하지 않는 國家는 自己의 意思에 反하여 이 條約의 拘束을 받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條約締結에 參加하지 않는 第3國에 對하여 一定한 態度, 즉 作為, 不作為 또는 忍耐등의 義務를 賦課함이 없이 오직 權利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第3國의 主權이나 獨立이 侵害될 우려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第3國에 權利만을 認定하는 條約에는 이를 부여하는 條約當事國만 아니라 第3國도 이에 拘束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Kairo 宣言은 하나의 國際條約으로서 第3國인 韓國에도 權利가 設定되었다 함은 이미 指摘한 바이지만 韓國을 爲한 利益條項이 權利로서의 利益을 設定한 것인지 혹은 保障받은 利益의 侵害에 對하여 韓國이 當事者로서 國際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 없는 單純한 反射的인 利益을 意味하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國際條約으로서의 Kairo 宣言은

35) E. Fraenkel, a.a.O. S. 6; 政治的 合意와 國際條約에 관한 差異點은 v.d. Heydte, a.a.O. S. 72f. 參照.

36) Philip Jessup, Moderne Völkerrecht, Deutsche Übersetzung. 1950, S. 30 u. 33; Fraenkel, a.a.O. S. 6.

韓國의 自由獨立이라는 權利를 規定하고, 이것을 潛在적으로 存続하여온 國際法上の 主体인, 즉 權利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大韓帝國이 受諾할 것을 提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利益條項은 韓國國民에 의하여 默示의으로 受諾한 것으로 看做되며, 이로써 3大聯合國을 爲始한 所련까지도 包含하는 宣言의 締約當事國과 第3國인 韓國간에 合意가 成立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4大國에 對하여 이 宣言에 規定된 韓國에 關한 利益條項을 誠實하게 履行하여 줄 것을 要求할 權利마저 있음은 勿論, 締約國은 韓國의 合意 없이는 이 利益條項을 修正 또는 削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 宣言에서는 韓國國民이 奴隸狀態下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韓國國民이 直接 이 宣言에 規定된 利益條項의 受取者로 看做하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現국의 國際法은 主權國家간의 權利義務에만 關與할 뿐만 아니라 個人 또는 個人的 集團의 權利 義務關係를 規律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個人 또는 個人的 集團도 國際法上の 權利義務의 受取者로 볼 수 있겠다.<sup>37)</sup> 이 宣言에서 말하는 韓國國民은 民族的, 地理的인 單一體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全體로서의 韓國國民이 權利義務의 受取者로서 利益條項에 의한 自由와 獨立에 對한 權利를 主張할 수 있는 것이다.<sup>38)</sup>

또한 宣言에 表明되어 있는 韓國의 自由와 獨立이 뜻하는 바는 條約締約國이 이러한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併合後에도 潛在적으로 存続되었던 大韓帝國의 權利能力은 認定하나 行爲能力(最高統治權)이 日本에 의해 代行되었다는 점을 考慮하여 直接的으로 民族的 單一體로서의 韓國國民에게 自由와 獨立이라는 權利가 부여된 것으로 解釋된다.

Kairo宣言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가지 法的解釋으로 미루어 볼 때 第2次大戦直後 韓國이 分斷되었다는 事實은 그들이 엄숙하게 宣言한 Kairo宣言의 精神에도 違背되는 것이다. 第3國인 韓國國民에게 利益條項을 부여한 聯合國은 條約의 性格을 지닌 이 宣言의 內容에 符合되는 態度를 信義誠實하게 履行하여 韓國의 國土統一을 다할 義務를 負야 하는 것이다. 또 한편 韓國國民은 條約國에 對하여 分斷된 國土를 다시 統一 시켜 줄 것을 要求할 權利마저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37) So auch Fraenkel, a.a.O.

38) Fraenkel, a.a.O. S. 7.

Kairo 宣言에 規定된 韓國에 관한 利益條項은 今後 1945 年の Potsdam 宣言에서도 再確認되었다.

1945 年 8~9 月 美·蘇軍의 韓半島進駐는 그 目的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日本軍의 武装解除와 아울러 그때까지 日本의 掌握下에 있었던 모든 行政權을 美·蘇軍이 引受하고 適切한 時期에 韓國의 自由와 獨立을 成就시킨다는 Kairo 宣言을 履行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38 線을 中心으로한 美·蘇軍의 駐屯은 어디까지나 日本軍의 武装解除라는 軍事的인 目的下에 兩軍 軍司參謀간의 合意에 의하여 劃定된 境界線에 不過하며, 政治的인 意圖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9)</sup>

國際法上으로 볼 때 美·蘇軍의 韓半島駐屯은 大略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分析할 수 있다.

첫째로, 그들의 駐屯은 第2次大戰後 생겨난 새로운 占領形態로 볼 수 있는 “友好的 占領”(Friendly occupation)으로서 駐屯國은 敵國으로부터 被占領國을 解放시키기와 同時에 被占領國의 同意下에 그 地域을 保護할 目的으로 駐屯하게 되는 것이다. Kairo 宣言의 履行을 目的으로 하는 美·蘇軍의 駐屯은 “友好的인 占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둘째로 美·蘇軍의 駐屯은 韓國에 對한 一種의 信託統治關係라고도 볼 수 있다. 普通 信託統治라 함은 隸屬에서 國家의 自主獨立에로의 過渡的인 制度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sup>41)</sup> 韓半島에 있어서의 美·蘇軍의 信託統治目的이 있다면 否定的인 面에서 韓半島內에서의 日本의 支配를 排除하는데 있는 것이며, 肯定的인 面으로는 Kairo 宣言과 Potsdam 宣言에서 表明한 自主·民主獨立國家의 樹立에 관한 國際法的인 合意를 實現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42)</sup>

39) Fradnkel, a.a.O. S. 15.

40) G. Deck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Nationen, Göttingen 1955, S. 267.

41) H. K. Han, Die Aufnahme von Staaten als Mitglieder in die Vereinten Nationen, Bonner Diss. 1966, S. 136.

42) M. Schweitzer, Das Völkergewohnheitsrecht und seine Geltung für neuentstehende Staaten, in: Völkerrecht und Aussenpolitik, Bd. 5, 1969, S. 54.

日本の 無條件降服에 뒤이어 美·蘇軍의 韓半島進駐로서 韓國은 解放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말 하는 解放은 어떠한 것을 意味하는가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新生國家의 樹立이라함은 普通 그 國家가 母國으로 부터 分離되어 母國의 一地域에 國家를 樹立하는 것을 意味한다. 萬一 이 分離가 母國의 承認 없이 이루어 졌을 경우 이른바 母國의 憲法에 違背된 分離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母國의 承認, 다시 말하여 合憲法的인 節次에 따라 分離가 이루어 졌을 때에는 解放이라고 하는 것이다.<sup>43)</sup>

韓國은 日本의 合意에 의해 解放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日本은 無條件降服으로 말미암아 모든 法秩序와 行政權이 駐屯軍인 美軍에 의하여 行使되었다. 이에 따라 日本의 舊憲法은 廢止되고 新憲法의 制定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機能을 喪失한 舊憲法에 의한 合憲法的인 韓國의 分離, 다시 말하여 解放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볼 때 韓國의 解放은 日本의 承諾下에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Kairo 宣言에 規定된 韓國에 대한 利益條項을 誠實히 遵守한 條約締約國에 의하여 解放되었다고 보는것이 法的은 勿論 事實的인 面에도 符合되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말하여 韓·日議定書를 爲始하여 乙巳保護條約 그리고 一聯의 條約을 거쳐 1910年의 韓·日併合條約은 日本의 暴力行爲에 의하여 締結되었으므로 源泉的인 無効라는 것은 위에서 본 바이지만 併合後에도 大韓國民의 生하고도 精神的 政治的인 單一的 意思는 3.1運動을 通하여 日本의 暴力行爲에 대하여 國土回復이라는 返還請求權으로 具現되었다. 뿐만 아니라 中國에 樹立된 上海臨時政府는 大韓帝國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亡命政府로서의 役割을 担当하였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볼 때 大韓帝國의 主体性, 즉 權利能力은 保護關係 및 併合이라는 事實에도 不拘하고 潛在的으로 存続되어 오다가 大韓民國政府의 樹立과 더불어 蘇生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大韓帝國이 保有하였던 行爲能力, 즉 最高統治權은 保護關係의 設定으로 因하여 制限되었고, 또한 併合으로 말미암아 日本이 이를 代行하였다.

43) A. Verdross, Die völkerrechtliche Stellung, a.a.O. S. 138.

### Ⅲ. 大韓民國의 法的地位

解放時까지 日本에 의하여 代行되었던 大韓帝國의 行爲能力은 南·北韓에 駐屯한 美·蘇軍이 日本에 代替하여 1948年 8月 15日의 大韓民國政府의 樹立時까지 代行하였다고 볼 수 있다. 解放된 韓半島에 大韓民國과 北傀政權이 樹立됨으로써 國際法上은 勿論, 國內法上으로도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韓半島의 法的問題를 解明함에 있어서 우선 손 쉽게 適用될 수 있는 國際法上의 原則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實効性的 原則과 適法性的 原則일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이든가에 個別的으로 適用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介在하고 있다.

實効性的 原則은 法과 事實과의 關係에 있어서 法이 어느 程度 事實에 의하여 規制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의 統治機關이 對內·外的으로 出現하고, 一定한 地域에 人間共同體가 形成되고 있다면 이러한 統治機關은 이 原則의 適用을 받게 되리라고 推定된다. 그러나 實効性이라 함은 終局的이며 繼統적으로 展望되는 正當하게 이루어진 事實에만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時的인 事態를 곧 正當한 事實로서 認定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sup>44)</sup> 따라서 領土取得은 單純한 事實의 結果로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實質적으로 支配하는 狀態가 終局的임을 要한다.

이 原則을 土台로 하여 韓國의 分斷狀態를 考察하여 볼 때 或者는 大韓民國과 北傀政權의 樹立으로 말미암아 그 때 까지 單一的이며 潛在적으로 存続하였던 大韓帝國이 兩쪽에 分割됨과 同時에 舊國家는 消滅되고 南·北韓에 두개의 新生國家가 成立되었다고 볼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源泉이 쓰련의 傀儡政權에 不過한 北傀는 비록 北韓地域을 強占하고 있으나 이것은 一時的인 事態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을 正當한 事實로서 認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UN의 決議는 그것이 意味하는 바가 分斷이라는 事實이 終局的이며 正當한 것으로 認定하고 오직 韓

44) J. B. Moore,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Bd. 1, 1906, S. 120.

國政府에 만 唯一合法性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政府가 國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樹立되었기에 이에 適法性的 原則을 適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適法性的 原則에 立脚하여 韓國의 法的地位를 解明하고자 한다. 이 原則은 1792年 Jefferson<sup>45)</sup>에 의하여 提唱되었는데, 關係國民은 變更된 事態에 대하여 그 者들이 自由롭게 表現된 意思에 의하여 樹立된 政府만이 適法性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大韓民國은 1948年 5月 10日 UN의 감시하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名實共に 國民의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의해 樹立되었으므로 이 適法性的 原則이 그대로 適用되는 合法的인 政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北傀政權의 樹立은 소련軍의 駐屯下에 스탈린이 主張한 소비에트化 政策을 達成하는데 一翼을 担当한 北韓共產黨에 의해 造作된 것에 不過하며, 決코 北韓住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北韓住民의 自由로운 意思가 反映되어야 할 選舉는 完全히 그 意義를 喪失하고 이른바 立候補者 推薦制度와 黑白函投票方式<sup>46)</sup>에 의한 党的 恣意的인 人選을 合理化하는데 不過하였다. 또 한편 이러한 政權은 北韓住民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그들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生疎한 權力에 不過한 것이다.

이미 위에서도 본 바와같이 美·蘇軍의 韓半島駐屯은 Kairo 宣言을 誠실히 履行하기 爲한 信託者로서의 友好的 占領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소련은 그가 駐屯한 北韓地域에 그의 "延長된 팔"의 役割을 担当한 傀儡政權을 樹立한것은 Kairo 宣言의 義務에도 背馳될 뿐만아니라 占領地에 傀儡政權을 樹立할 수 없다는 戰時國際法規에도 違反된 行爲인 것이다.

이렇게 適法성이 欠如되어 있는 北傀政權으로서로는 東獨이 主張하고 있는 二國家說(Zweistaatentheorie)<sup>47)</sup>을 援用하여 그의 國際法的 主体性을 主張할 可能性마저도 엿보인다. 1950年頃 東獨의 學者들에 의해 主張된 二國家說은

45) 朴一慶, 北傀〈憲法〉論, 15~16面.

46) Peck, Zum völkerrechtlichen Status der DDR, Berlin (ost), 1956, S. 7.

47) 仔細한 것은 Hyong-Kon Han, Die Aufnahme von Staaten als Mitglieder, a.a.O. S. 109ff. 參照.

東獨의 法的地位을 有利하게 展開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解釋되었다. 이 學說의 分派說인 分解說 (Dismembrationstheorie)에 의하면 1949년에 成立된 東·西獨은 어느 쪽도 舊獨逸을 繼承하지 않았다. 따라서 西獨과 東獨은 新生國家이며 이 新生國들의 成立으로 말미암아 舊獨逸은 消滅되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分離說 (Separationstheorie)에서는 西獨은 舊獨逸國과 同一한데 反하여 東獨은 獨逸國民에 의해 成立된 新生國家이므로 舊獨逸國과는 同一하지 않을 뿐더러 舊國家를 繼承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sup>48)</sup>

北傀政權은 上記의 分解說을 韓國의 法的地位에 援用하여 1948年 8月 15日의 大韓民國政府의 樹立과 9月의 北傀政權의 樹立이 두개의 新生國家의 成立을 意味하며 그에 따라 大韓帝國은 消滅되었다고 보고 그의 國際法上的 自主性을 共産 “플럭” 特히 소련과의 友好關係에서 찾으려고 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理論을 土臺로 하여 그의 主權性을 立証할 수는 없는 것이다. 國際法上 國家의 主權性이라 함은 一國家가 他國家에의 隸屬性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 國家의 主權性은 國際法的 直接性 (Völkerrechtsunmittelbarkeit) 과 憲法의 自律性 (Verfassungsautonomie)에서<sup>49)</sup> 찾게 된다. 또한 北傀政權은 分離說에 立脚하여 自己만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合法政府이고 大韓民國은 美國에 의해 樹立된 傀儡政權에 不過하다고 主張한다 하더라도 北傀와 소련과의 關係를 參酌하여 볼 때 그의 實質적인 獨立性은 否認된다. 비록 現今의 北傀가 政策上 中共과의 親交政策에 치우치는 傾向은 있으나 北傀共産黨은 直接的 혹은 間接적으로 소련共産黨에 隸屬되어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北傀는 소련의 衛星國家의 性格을 免치 못하는 것이다. 北傀의 6.25南侵을 爲始하여 赤化統一의 野慾은 그가 合法政府임을 自勉하려는 좋은 証拠라 할 수 있다.

東獨의 二國家說과는 對照的으로 西獨學者의 見解와 國家實際는 獨逸의 無條件降服 및 1949年 東·西獨의 樹立에도 不拘하고 獨逸帝國 (Deutsches Reich)은 如前히 存続하고 있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그러나 東·西獨이 舊獨逸과

48) A. Verdross, Völkerrecht, 5. Aufl. a.a.O. S. 194.

49) v.d. Heydte, Deutschlands Rechtslage, in: Die Friedens-Warte, Bd. 50, 1950, S. 333; Mangoldt-Klein, Bonner Grundgesetz, 2. Aufl. Bd. 1, 1957, S. 35ff.



의 關係는 어떠한 것인가에 對해서는 大體的으로 보아 部分序列說 (Teilordnungs theorie), 同一說 (Identitätstheorie) 및 競爭的 要求說 (Theorie der rivalisierenden Ansprüche) 의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번째 部分序列說에 의하면 東·西獨이라는 部分序列은 存統된 獨逸帝國的 準聯邦國家的인 序列로 看做된다는 것이다.<sup>50)</sup> 普通 이 學說을 支拂說 (Dachtheorie) 이라고도 稱한다. 그러나 이 學說로서는 東·西伯林的 法的地位를 解明할 수 없다는 欠點이 있다. 또 한편 部分序列로서의 東·西獨이 行하는 政治的 行爲가 各己 그 自身을 爲한 것인지 혹은 全體國家를 爲한 것인지를 그 때 그 때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sup>51)</sup> 東·西獨의 實際에 의하면 東獨은 二國家說에 의한 自主新生獨立國家임을 自處하고 있는데 反하여, 西獨은 民主的 適法性을 主張하고 있다. 單一國家的인 體制를 挾하고 있는 南·北韓의 法的關係에 이 學說을 適用하기에는 너무나도 不適當한 面이 많다.

두번째의 學說인 同一說을 檢討하고 이에서 얻어지는 結果를 韓半島에 適用해 보기로 하겠다. 이 說도 역시 舊國家의 存統을 認定하며 兩國家形態든지 혹은 두개 중의 一國家形態만이 舊獨逸과 同一하다는 것이다. 同一說에 관해서는 다시 領土 同一說 (Gebietsidentität), 部分同一說 (Teilidentitätstheorie) 및 核心國家說 (Kernstaatsstheorie) 등 세가지로 分類된다.<sup>52)</sup>

첫번째의 學說에 의하면 西獨의 現境界線은 1937年의 舊獨逸의 그것과 同一하다는 것이다.<sup>53)</sup> 두번째의 學說은 舊獨逸國의 法的主体性이 東·西獨이라는 兩國家形態에 兩分되어 存統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4)</sup> 끝으로 核心國家說은 西獨만이 存統하여 온 舊獨逸을 對內外的으로 代表한다는 것이다.<sup>55)</sup>

50) v. d. Heydt, a.a.O. S. 334.

51) Mangoldt-Klein, Bonner Grundgesetz, a.a.O. S. 33f.

52) Mangoldt-Klein, a.a.O. S. 34.

53) Krüg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utsches Reich, in: Süd-Deutsche Zeitung, 1950, S. 113f.

54) E. Kaufmann, Die These von den zwei deutschen "Teilstaaten" oder "Teilvölker",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3, von 1.1. 1955, S. 19.

55) 仔細한 것은 H. K. Han, a.a.O. S. 114ff.

以上에서 본 3가지의 同一說은 그것 나름대로의 欠点を 內包하고 있다. 즉 憲法의 適用範圍가 西獨의 境界線에 限定되는 데에도 不拘하고 領土同一說을 主張하기에는 無理가 있는 것이다. 또한 旧獨逸의 法主体性이 東·西獨에 兩分되어 存続한다고 하지만 東·西獨以外에도 東·西伯林의 法的關係는 如何히 解決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끝으로 核心國家說은 西獨政府의 民主的 適法性을 잘 說明하는 利點은 있다. 그러나 西獨이 合法政府라는 見解에서 東獨地域을 그의 “利害關係範圍”로 看做하여 適切한 時期에 核心인 西獨에 收縮시키려고 試圖한다면 東獨은 그의 持論인 2國家說을 實現하는 意味에서 新生國家를 設立하고 永久히 分斷을 完遂시킬 可能性도 있다는 欠點을 露出하고 있다.<sup>56)</sup>

獨逸과는 与件을 달리하는 韓半島의 法的問題에 이 學說을 適用하기에는 無理한 點이 많다. 첫째로 大韓帝國이 保有하였던 領土와 南·北韓이 各기 限定된 地域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과는 同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大韓民國의 憲法은 休戰線以南에서만 効力이 發生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듯 大韓民國政府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民主的 適法性에 의해 樹立된 合法政府로서 大韓帝國의 後繼者인 것이다. 이러한 適法性은 그 憲法規定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憲法前文에는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大韓”民族은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서 民族의 團結을 公고히 하며”라고 規定함으로써, 우리 民族은 獨立을 維持하여 半萬年의 歷史를 쌓아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韓國이 單一民族으로서 된 民族國家임을 宣言하는 同時에 “韓國은 언제나 하나”이라는 理念下에 分斷된 國土의 統一에 對한 強力한 要求를 立証하고 있다. 또한 憲法 第3條에 의하면 韓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構成되어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北韓도 當然히 韓國의 領土인 것이다. 그리고 大韓民國의 憲法은 北韓地域에 樹立된 傀儡政權의 現實的인 支配로 말미암아 그 地域에 있어서의 効力이 暫定的으로 休息狀態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北傀儡政權이 除去될과 同時에 憲法의 効力도 또한 自動的으로 蘇生된다고 할 수 있겠다.<sup>57)</sup> 이런 意味에서 볼 때 大韓民國憲法은 西獨基本法에 比하여 永久的인

56) 韓亨健, 憲法과 安保, 中央日報, 1970年 7月17日 第1面 參照.

57) Scheuner, Die Entwicklung der völkerrechtlichen Stellung Deutschlands seit 1945, in: Die Friedens-Warte, Bd. 51 (1951/53), S. 9, 11 und 15.

憲法임을 알 수 있다. 즉 西獨基本法은 第 146 條에서 全獨逸國民의 自由로운 意思決定에 의하여 制定된 獨逸憲法이 効力發生하는 그날 까지 有效하다고 規定함으로써 이 憲法の 暫定性은 勿論, 그 國家의 暫定性마저도 認定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大韓帝國의 法人格이 大韓民國과 北傀에 계각기 分有되어 있다고 假定한다면 이것은 韓半島의 法的문제를 解明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假說에 不遇한 것이다. 北傀政權이 소련에 의해 세워진 하나의 傀儡政權이라는 점을 勘案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에 反하여 大韓民國政府만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 合法政府라는 점에서는 核心國家說의 部分的인 援用도 可能하다. 그러나 이 學說을 固執한다면 大韓帝國은 核心인 大韓民國이 이를 繼承하여 對外的으로 代表하는데 反하여 北傀는 舊國家와는 關係없는 하나의 新生國家를 成立하여 恒久的인 國土의 分斷을 招來할 우려성마저 있는 것이다. 平和的 方法에 의한 國土統一을 念願하는 大韓民國으로서 이러한 分斷을 願치 않는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이제 그럼 西獨學者들이 主張하는 마지막 學說인 “競争的 要求說을 紹介해 보기로 하겠다. 이 學說에 의하면 舊獨逸內에 있는 두개의 政府는 서로가 優越權을 爭取하려고 努力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獨이라는 두개의 國家形態는 部分序列이 아니라 事實上 一部地域에 限定된 政府로서 全地域에 對한 支配權을 行使하려고 試圖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8)</sup>

이 學說과 核心國家說의 差異點은 大略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前說은 舊獨逸의 存統을 認定하고, 獨逸의 現法的地位는 法的政府가 “準暴徒的”인 地域的 事實上 政府( *de facto* Regierung )에 對한 鬭爭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後說은 이미 內亂( *Bürgerkrieg* )은 끝나고 事實上으로나 法的으로나 國家의 分斷이 招來되었다는 것이다.<sup>59)</sup>

58) Bieberstein, Zum Problem der völkerrechtlichen Anerkennung der beiden deutschen Regierungen, Diss. 1959, S. 141, Anm. 282.

59) 朴大統領의 8.15 宣言全文은, 國토통일, 1970, 8. 제 2 号, 3 ~ 8 面 參照.

이 競争의 要求說은 韓國의 法的地位解明을 위하여 그대로 援用하기에는 適合하지 않는 點들이 있다. 그러나 大體的으로 보아 이 學說이 內包하고 있는 內容이 韓半島의 事情에 部分的으로 適合한 面도 있다. 즉 韓半島內에 있는 大韓民國과 北傀는 南韓과 北韓地域에 限定된 政府 내지 政權들이며, 서로가 韓半島全域에 대한 權力을 爭取하려고 하는 點에서는 上記 學說이 主張하는 바와 類似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民主的 適法性에 의거하여 볼 때 大韓民國만이 이에 該當되며 大韓帝國의 後繼者로서의 合法政府임은 UN의 決議에 의해서도 確認을 받았다. 따라서 一國家內에 二個의 合法政府가 있을 수 없다는 國際法上的 理論에 따라 北傀는 하나의 地域的 事實上 政權의 法的地位를 얻게 되는 것이다. 上記의 學說에 따르면 北傀는 準暴徒의인 地域的 事實上 政權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이러한 法的關係는 法的政府인 大韓民國이 北傀가 支配하고 있는 北韓地域을 再取復하여 國權의 統合의 實現을 達成해 보겠다는 繼統的인 意思와 努力을 拋棄하지 않는 限 그대로 持續되는 것이다.

中央政府로서의 韓國政府는 北傀라는 地域的 事實上 政權이 支配하고 있는 北韓地域을 取復하여 國土를 統一할 權利를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1970年 朴大統領의 8.15宣言<sup>60)</sup>을 비롯하여 1973.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 및 南北不可侵協定提議 등에서도 明白히 한 바와 같이 大韓民國은 어디까지나 UN헌장의 原則에 順應한 平和的인 統一을 實現하려는데 注力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平和共存을 志向하고 있는 오늘날의 國際政治는 分斷國家群을 固定化된 狀態로 維持하려는 傾向조차 窺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現今의 國際法理論은 이러한 政權들을 國際法的 領域에 끌어 올리려고 試圖하고 있다. 즉 國際法은 長期間 固定化된 狀態에 놓여있는 分斷國家群을 國際法規의 受取者로 보자는 것이다.<sup>61)</sup> 따라서 法的政府에 對한 地域的 事實上 政權의 暴力行使는 勿論, 反對로 事實上 政權에 對한 法的政府의 그것도 禁하고 있는 것이다.

60) Wengler, Der Begriff des Völkerrechtssubjektes im Lichte der politischen Gegenwart, in: Die Friedens-Warte, Bd. 51 (1951/53), S. 113 ff.

61) U. Scheuner, Jahrbuch für das internationale Recht, Bd. 12 (1965), S. 11 ff.

이러한 暴力行使禁止의 原則은 비단 分斷國家群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라 UN의 加盟國을 包含한 其他의 모든 非會員國에도 適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UN헌장이 目的으로 하는 世界의 平和와 安寧이 維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IV. 結 論

1904년부터 始作된 大韓帝國에 對한 日本의 保護關係는 1910年の 韓·日併合條約의 締結으로써 終止符를 찍고 外見上 大韓帝國은 日本의 植民地로 되었다. 그러나 強迫에 의한 條約은 無効라는 原則에 立脚하여 볼 때 이러한 條約들은 源泉의 無効가 된 것이다. 따라서 併合後부터 解放時까지의 大韓帝國은 潜在的으로 그의 權利能力을 保有하였으나 併合이라는 事實로 말미암아 그가 保有하였던 行爲能力은 日本에 의해 代行되었다. 解放과 더불어 美·蘇軍의 韓半島駐屯은 Kairo 宣言을 誠實히 履行하려는 信託者로서의 友好的 占領이었다. 大韓帝國의 權利能力은 解放과 더불어 蘇生하였고, 解放時까지 日本에 의해 行使되었던 行爲能力은 美·蘇軍이 大韓帝國을 代身하여 行使하였다. 1948年 大韓民國政府의 樹立으로서 權利能力은 勿論, 駐屯軍에 의해 그 때 까지 行使되었던 行爲能力마저 大韓民國 政府에 歸屬되므로 大韓民國은 名實共히 大韓帝國의 後繼者로서의 地位를 차지함과 同時에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承認받은 바 있다.

이에 反하여 北傀政權은 大韓民國의 領土인 北韓地域에 樹立된 朝鮮의 傀儡政權에 不遇한 것이다. 一國家內에 두개의 合法政府가 있을 수 없다는 理論에 따르면 北傀政權은 하나의 地域的 事實上 政權으로 看做된다. 그러므로 法的 政府인 大韓民國은 北傀를 準暴徒的 地域的 政權으로 보고 그가 支配하는 北韓 地域을 暴力로 失地回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韓民國은 UN헌장의 精神下에 이와같은 暴力에 의한 國土統一을 止揚하고 어디까지나 平和의인 方法에 의한 統一을 達成하려고 온갖 努力을 다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北傀는 6.25南侵을 통해서 그랬듯이 現在에 있어서도 赤化統一을 위한 南侵의 機會를

노리면서 暴行을 恣行하고 있다.

北傀政權은 하나의 地域的 事實上 政權에 不過하다는 것은 立証되었으나 現今의 國際法學者들은 北傀를 包含하는 共產黨력에 隸屬된 分斷國家群이 長期間 固定化된 狀態를 유지하고 있다는 事實을 감안하여 이러한 政權들을 國際法의 領域에 끌어 올리려고 試圖하고 있다. 이리하여 法的政府와 地域的 事實上 政權 간에 惹起될지도 모르는 暴力行使를 未然에 防止함으로써 世界의 平和와 安寧이 維持되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關한 法的根據

金 東 熙  
서울대학교 教授

## 目 次

- I. 總 語
- II. 旧韓國의 存統問題
  - 1. 史的事實
  - 2. 韓·日合併條約의 法的問題
  - 3. 韓·日合併條約의 有効性 問題
  - 4. 合併條約의 無効確認
- III. 大韓民國의 正統性問題
  - 1. 解放以後 分斷時까지의 史實의 考察
  - 2. 大韓民國의 正統性의 法的根據
- IV. 1970年 以後의 主要政策宣言과 正統性問題
  - 1. 史實의 考察
  - 2. 法的分析

## I. 總 語 <sup>1)</sup>

分斷國問題는 國際社會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 바, 그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同問題는 基本的으로 二次大戰後의 美·蘇를 兩大頂點으로 하여 形成된 冷戰體制의 產物이기 때문이다.

1) 本稿에서는 脚註部分이 相對的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論理의 明確性이라는 觀點에서 本論의 展開에 있어 不可欠한 것이 아닌 部分은 原則的으로 脚註에서 다루었기 때문인 바, 이에 관해서는 미리 諒解를 구하는 바이다.

從來 一般的으로 分断國으로서는 韓國, 獨逸, 越南 및 中國<sup>2)</sup> 을 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法的觀點에서는 中國을 分断國의 範疇에 包含시키는데에는 問題가 있지 아니한가 한다.<sup>3)</sup> 따라서 分断國으로서는 韓國, 獨逸, 越南이 남게 되나, 越南의 경우는 今年에 그것이 自由陣營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方向이었기는 하나 分断問題는 實質적으로 解消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不遑間 解消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현재 典型的인 分断國으로서는 다만 韓國과 獨逸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韓國과 獨逸은 分断原因과 兩國의 民族이 이러한 分断狀態를 決定的인 것으로 認定하지 아니하고 恒시 祖國의 統一을 追求하려는 意志를 간직하고 있다는 데에 그 基本的인 共通性이 있다 하겠다. 이점에 관하여 1970年 5月 16日字의 記者會見에서의 「셀」外相의 發言은 일단 引用할 만하다. 그는 同會見에서 韓國과 獨逸問題에 관하여 言及하면서 兩國에 있어 「서로 共通되는 것은 두 나라가 다 같이 民族의 自決權을 認定하고 두 나라가 다 같이 民族의 統一을 지킨다는 것이며 이같은 目的이 韓國에서의 마찬가지로 獨逸에 있어서도 추구되고 있다는 事實이다」<sup>4)</sup>

- 
- 2) 本稿에서는 南北韓, 東西獨이라는 用語代身에 意識적으로 韓國, 獨逸 등의 表現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分断國이 적어도 法的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國家로 存続하여 있음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 3) 中國을 分断國의 範疇에 包含시킬 수 없는 理由는 다음의 두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中國의 경우 分断의 形成過程이 韓國, 獨逸 등에 比해서 相異하다는 것이며 보다 基本的인 것으로는 1949年 蔣介石 政府軍의 上陸時 대만의 法的地位 問題인 바, 당시 대만이 中國領土의 一部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G.Caty, *Je statut juridique des Ecats divisés*, Paris 1967, pp.22-37

T.P. Marelllo, *Me international legal status-of Formosa*, Me Hague, 1966, pp.94 et ss.

- 4) 최정호, 서독의 통일정책이 한국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태도, 국토통일원, 1970.9. pp.22에서 再引用 다만 著者는 同發言의 *reference*를 적고 있지 아니한다.



前記한 바와 같이 分断國으로서 韓國과 獨逸은 基本的 共通性을 共有하고 있으나 他面에 兩國間에는 多數의 實質的인 相異點이 介在하고 있음도 또한 否認할 수 없다. 우선 分断 以前에 있어서의 歷史的 背景에 있어서 韓國은 서기 7세기에 新羅에 의한 統一國家의 形成 以來 單一民族에 의한 統一國家로 계속되어 온 데 비해서 獨逸은 1870년에 비로소 統一國家를 形成하였다는 事實이다.

또한 獨逸의 경우는 1870年の 單一國家의 形成이 同年의 普仏戰爭 및 以後의 世界 才一·二次大戰을 誘發하는 하나의 契機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그것은 換言하면 獨逸統一은 歐羅巴 내지는 國際平和에 대한 不安定的 要因이 되었다는 것이다. 反面에 韓半島에 있어서는 그 分断이 6.25事變을 惹起하여 國際平和에 대한 不安의 要因을 造成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現時點에 있어 兩國의 統一에 관련된 周辺國家 및 其他 主要強大國의 利害關係에서 볼 때에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國家의 利害關係는 中立의 性格을 띠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獨逸의 경우는 過去의 歷史的 經驗으로 어느 國家도 獨逸이 統一되어 다시 強大國으로 登場하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事實이다.

이 중에서 特히 周辺國家 및 其他 強大國의 獨逸統一에 대한 否定的인 立場이 西獨의 對東歐 및 對東獨政策에 있어서의 從來 Haustein Doktrin으로 表現되는 法的 原則論的 接近方法을 止揚하여 現實的 實質的 接近方法인 東方政策(Ostpolitik)을 採択하게 한 主因이었다고 해도 誇言은 아닐 것이다. 特히 對東獨關係에 있어서는 從來의 唯一合法政府主張을 堅持한다는 것은 主要強大國의 統獨問題에 대한 否定的인 態도와 關聯시켜 볼 때 그것은 그 基本

目的과는 달리 오히려 統獨의 可能性을 보다 적게 할 可能性이 컸던 때문이다 5).

以上에서 分斷國으로서의 韓國과 獨逸의 分斷의 背景을 이루는 條件을 檢討하여 보았거니와 이제 끝으로 韓獨兩國이 현재 處하여 있는 分斷現狀을 考察함으로써 本稿의 研究目的을 劃定하고 序論에 代身하고자 한다.

獨逸의 경우 東西獨關係는 「브란트」에 의하여 代表되는 所謂 「東方政策 (Ostpolitik)」의 抬頭 以前까지는 制限의인 經濟交流를 除外한다면 同關係는 對立乃至는 敵對關係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66年 「키징거·브란트」大聯政이 形成되면서 우선 對東歐圈에 대한 活潑한 接觸이 展開되기 始作하였는 바, 이러한 西獨政府의 政策變化는 다음의 두가지 基本的問題에 대한 西獨國民의 傳統的 思考方式의 變化에 基礎한 것이었다. 그것은 우선 東獨의 광복할만한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從來 그 存在를 無視해 오던 態度를 止揚하고 그에 直面하여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獨逸國民의 大多數가 西方陣營에 의한 統獨努力이 實際, 实效性이 欠如되어 있음을 점점 더 確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二大要素의 結合으로 東方政策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具體的 結果가 「루마니아」와의 國交樹立(1967.1.27), 「유고」와의 國交再開(1968.8.3) 및 「체코」

5) R.Papiui & G.Cortese, *Ja ruptw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t ses consequences*, Paris, 1972. pp.45-72.

本書에서 Papiui와 Cortese는 西獨의 對東歐 및 東獨政策의 變化를 Hallstein doctrine과의 關聯에서 考察하고 있는바, 이들에 의하면 同原則이 1955年 西獨의 公式外交政策으로 闡明되었다가 1969년에 廢棄되게 된 要因은 대개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된다.

- ① 同原則이 처음부터 蘇聯을 例外로 한 결과 이미 基本的인 限界性을 內包하고 있었다는 것.
- ② 同原則의 实效性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後進國에 대한 經濟協助, 技術援助 등의 方式의 限界性.
- ③ 西獨의 東歐圈과의 積極的인 政治的 經濟的交流 展開慾求
- ④ 西獨國民에 의한 西方陣營의 統獨努力의 非現實性, 非效率性의 確信.
- ⑤ 國際的인 一般의 緊張緩和潮流과 그의 歐洲에 대한 영향

와의 通商協定締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西獨政府의 活潑한 對東歐接觸이 同時에 東獨과의 關係를 改善하는 要因이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東方政策의 初期에는 前術한 西獨의 對東歐圈 接近의 結果로 東獨은 所謂 「올브리히트」政策을 公表하였는바, 同原則은 東獨과 國交關係에 있는 才三國에 의한 西獨과의 모든 接近行爲는 東獨으로서는 非友好的行爲로 看做한다는 것을 미등으로 하는 것이었다.

兩獨間の 緊張이 緩和되고 그 關係가 改善되기 始作한 것은 「브란트」政權 (1969.10)의 樹立以後라고 할 것이다. 卽, 以前에 있어서는 西獨政府에 의한 對東歐圈接近에 있어 原則적으로 東獨은 除外되어 있었으나 「브란트」時代に 이르러서는 東獨과도 直接的이며 上位水準의 政治的 接觸이 開始되었다는 것이다. 「브란트」는 그의 首相 就任演說에서 東西獨間の 關係에 관한 그의 基本政策을 다음과 같이 闡明하였다.

- ① 獨逸內에 二個國家의 存在는 認定하나 이는 東獨에 대한 國際法上的의 承認이 아니라 國法上的의 承認이다.
- ② 兩獨은 相互 外國이 아니라 特殊關係이며 他國과의 條約과 同一한 効力을 가지는 武力行使拋棄條約을 締結할 용의가 있다. 6)

6) 이에 관한 「브란트」演說의 主要部分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實際政治의 課題는 西方이 現在의 難關을 克服하고 民族의 單一性을 어떻게 維持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 獨逸人들은 그들의 言語나 그들의 榮光과 不幸을 가진 歷史에 依해서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獨逸을 집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 안에 그리고 歐洲안에서의 平和라는 共同的인 課題와 責任을 가지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 지 20년동안 우리는 獨逸民族의 앞으로의 分離生活을 막아야 하며 그러므로 規制된 共存(Nebeneinander)을 거쳐 相互體制間에 배우는 共存(Miteinander)에 이르도록 試圖하여야 한다. ……西獨政府는……東獨의 內閣에게 政府의 次元에서 條約上, 合意되는 協力을 초래할 差別없는 兩側의 協商을 提議한다.

東獨에 대한 西獨政府의 國際法的承認은 考慮될 수 없다. 비록 獨逸 안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하고 있지만 그 두國家는 다만 特殊한 性質의 것에 不過하다. 西獨政府는 先任者의 改策과 연결하여 東獨에 대해서 武力의 行使 또는 威脅을 相互間에 拋棄하는 것에 대한 拘束的인 協定을 체결할 用語가 있음도 宣稱하는 바이다.

이렇게 「브란트」首相이 公式的으로 独逸内 二個國家의 存在를 認定하게 되자 西獨의 唯一合法政府性을 基調로 하는 「할슈타인」原則이 그 翌日 公式的으로 廢棄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셀」外相은 「次後로는 어떠한 國家에 의한 東獨의 承認도 西獨에 대한 非友好的의 行爲로 看做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宣言하였던 것이다. 7)

以後 東西獨間의 關係는 비교적 급속한 進展을 보여 1970年 兩次的 「에어푸르트」·「카셀」東西獨首相會談(3.19 및 5.21)이 行하여 졌으며 그 후 兩獨關係 樹立에 있어 必須的 豫備段階로 볼 수 있는 獨(西獨)·蘇條約(1970.8.12)과 獨(西獨)·波條約(1970.12.7)의 締結過程을 거쳐서 1972年 12月에는 兩獨間에 東西獨基本條約이 正式調印되었으며 1973年 9月에는 才 28次 UN總會에서 東西獨의 UN同時加入이 滿場一致로 可決되었다. 또한 今年 3月에는 基本條約 才 8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常駐代表部」交換 協定이 締結되어 東西獨에 各己 「常駐代表部」가 設置되게 되었다. 이로써 兩獨間의 關係에 있어 從來의 緊張, 對立關係를 止揚하고 協調體制로 向한 一連의 作業이 一旦 成功的으로 結果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東西獨接近類型이 반드시 肯定的인 것은 아니다. 가장 問題點은 獨逸國 二個 國家 存在의 公式承認과 그에 의거한 東西獨의 UN同時加入 및 兩獨間의 基本條約의 締結이 궁극적으로는 두개의 完全한 獨立國家를 惹起할 危險性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考察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우선 問題點만 提起하여 둔다.

以上에서 本稿와는 一応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獨逸問題를 概觀한 것은 本題의 意義를 劃定하기 위한 것이다. 確實히 東西獨接觸事例는 韓國과 一応 共通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分斷國으로서 分斷의 解消는 아니라도 적어도 그 苦痛을 緩和시킨 하나의 成功的 前例로서 韓國에 있어서의 南北韓關係에 관한 接近方法에 있어 하나의 有力한 指針을 提示하여 주고 있음은 事實이라 할 것이다.

然이나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과 獨逸은 그 分斷背景에 있어 看過할 수

7) 參照：(註 5)

없는 많은 相異點을 內包하고 있으며 또한 兩獨接近類型은 궁극적으로 國際法上的 完全한 두개의 國家의 形成이라는 否定的인 現象을 惹起할 우려가 크다는 點에서 이러한 接近方式의 基本的인 限界性이 있다 하겠다. 또한 하나의 暫定的 措置라는 留保下에 同方式을 援用하는 경우도 그에 임하는 北韓側의 誠實한 態度가 欠如되어 있는 限 그것은 大韓民國의 一方의인 讓步가 끝날 危險性도 또한 높은 것인 바, 1970年 8月 15日 大統領宣言 以後의 南北赤十字會談과 1972年 7.4 共同聲明 以後의 南北調節委員會에 있어서의 北韓側의 不誠實한 態度와 그 以後 6.23 平和宣言 및 7.18 特別宣言에도 不拘하고 北韓當局에 의한 數次에 걸친 軍事分界線 以南의 領空 및 領海上의 挑発的 行爲 및 땅굴事件 등은 南北對話에 임하는 그들의 態度가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 잘 實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本質적으로 口述한 두가지 理由에서 자칫하면 소홀히 取扱할 수도 있는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관한 法的根拠를 定立하여 韓半島에서의 唯一合法政府로서의 우리의 法的地位를 明白히 하여 두는 것은 매우 緊要한 일이라 하겠다.

以上에 考察한 것으로 序論에 代身하고 다음 本語에서는 먼저 旧韓國의 存統問題를 檢討하고 다음에 嚴格한 意味의 法的觀點에서의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관한 問題를 考察한 다음 끝으로 1970年 以後의 南北韓關係에 있어서의 一連의 聲明과 關聯된 北韓의 法的地位를 檢討함으로써 本稿를 모두 끝내고자 한다.

## II. 旧韓國의 存統問題

大韓民國의 正統性이란 問題를 檢討하기 爲해서는 必히 그 豫備的 段階로 旧韓國의 存統如否에 대한 問題에 관한 檢討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것은 旧韓國이 1910年의 韓日合併條約의 結果로 法上 消滅되었다고 想定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의 正統性問題는 論議될 餘지가 없기 때문이다.

即, 그 경우에 있어서는 1945年 以來 韓半島國에 하나 또는 두개의 新生 獨立國이 樹立되었는가 만이 問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問題에 관하여 먼저 結論부터 적는다면 旧韓國은 1910年 日本에 의한 合併에도 不拘하고, 적어도 法的으로 消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問題에 관해서는 우선 史的事實을 본 後에 그에 관한 法的인 分斷을 하기로 한다.

### 1. 史的事實

1905年의 日露戰爭이 日本의 勝利로 終結된 後, 日本은 美国, 英国 및 露西亞로부터 韓國에 대한 排他的 支配權에 대한 諒解를 얻어서<sup>8)</sup> 韓國의 궁극적 併合野慾을 보다 露骨化하기 始作하여, 同年 11月에는 朝鮮政府의 外交權 剝奪과 統監府設置를 內容으로 하는 乙巳保護條約을 締結하게 된다. 그런데 旧條約의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 8) 日露關係에서는 1905年 兩國間에 締結된 講和條約에서 日本의 韓國에 대한 支配權을 認定하고 있는 바, 同條約 第2조는 韓國에서 日本이 「政治上 軍事上 及 經濟上의 卓越한 利益을 갖는 것」을 承認하고 있다. 英日間에서는 才二次英日同盟條約(1905年 8월 2일 調印) 才三條에서 「日本은 韓國에서 政治上, 軍事上及 經濟上의 卓越한 利益을 有하는 故로 英国은 日本이 該利益을 擁護增進하기 위하여 正当且 必要로 認하는 指揮 監理及 保護의 措置를 韓國에서 執行하는 權利를 承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美日間에서는 Tart-桂覚書(1905.7.29)에서 美國은 韓國이 「日本의 許諾없이 是 如何한 對外條約도 締結할 수 없는 要求를 할 수 있는 程度의 保護를 日本軍隊로써 樹立하는」 것에 同意하고 있다.

才一條 日本政府는 在東京外務省을 經申하여 今後에 韓國이 外國에 對하는 關係 및 事務를 監理, 指揮할 것이요, 日本國의 外交代表者 및 領事는 外國에 있어서의 韓國의 漁民 및 利益을 保護할 것이요.

才二條 日本政府는 韓國과 他國間에 現存하는 條約의 履行을 完遂하는 任務에 當하고 韓國政府는 今後에 日本政府의 仲介에 經由를 얹고서 國際的 性質을 가진 何等의 條約이나 또는 約束을 하지 않기를 相約함.

才三條 日本政府는 그 代表者로 하여금 韓國皇帝階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을 置하되 統監은 全혀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기 爲하여 京城에 駐在하고 親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하는 權利를 有함].

그런데 이러한 乙巳條約이 締結된 當時의 狀況은 다음과 같다.

乙巳保護條約의 締結을 目的으로 同條約案을 가지고 來韓한 伊藤大使는 日本서 派遣된 增援軍으로 宮内外를 警戒하게 하고 11月 11日에 高宗皇帝를 만나 먼저 日本天皇의 親書를 진하고 同 15日에는 다시 高宗에게 미리 準備된 條約案을 提出하고 이에 同意할 것을 要請하였다.<sup>9)</sup>

同面談은 4.5時間 계속되었으나 高宗은 결국 「此條約을 認許하면 卽, 亡國과 一般이니 朕은 寧宗社에 殉할지언정 결코 認許치 못하리라」고 하며 拒絕하였다.<sup>10)</sup> 高宗의 同意에 失敗한 伊藤은 翌日 參政大臣 以下 8名의 大臣을 그의 宿所인 孫抃호텔로 招請하여 條約에 同意하도록 威脅하였으나 다시 失敗하자 同夜에 다시 御前會議를 開催하였으나 外交權의 委任은 獨立國의 體面에 關係된다 하여 역시 아무런 決定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伊藤과 林公使는 條約締結을 強行하기로 決定하고 있어서 그 翌日 林公使는 各大臣을

---

9) 伊藤의 謁見 (11월 15일), 伊藤博文傳, 下卷, pp.683-691;  
大韓每日新報, 11월 17일; 大韓日報, 11월 16일; 日本外交文書,  
才 38卷, 才 1冊, pp.499-503.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pp.89-90; 國史編纂,  
韓國獨立運動史, I, pp.67-68.  
董德模, 保護條約부터 七條約까지의 韓日關係, p.13에서 再引用

10) 上 同

自己官邸로 召集하여 保護條約을 強行하려 하였으나 大臣들 만으로는 決定할 수 없는 重大事件이라 하여 同日 午後 3時에 御前會議가 召集되어 밤 8時까지 계속되었으나 結論을 얻지 못하자 林公使, 伊藤大使, 長谷川司令官 등은 大臣들에게 強制로 會議을 열게 하여 翌日 새벽 1時까지 大臣들을 強迫하여 皇帝와 參政(首相)이 不參한채로 強制로 條約에 調印하도록 하였다. 11) 이와 같이 條約의 調印을 強行하기 위하여 伊藤과 林은 온갖 甘言, 脅迫은 勿論이고 軍隊를 示威하게 하여 恐怖雰圍氣를 造成하고 數十名の 憲兵을 關內로 까지 메리고 와 日本憲兵監視下에 撤夜會議를 強行하고 決死反對하던 韓圭高參政大臣을 監禁까지 하였던 것이다. 12)

그러나 이러한 乙巳保護條約은 韓國內閣의 最高責任者인 韓圭高參政을 비롯하여 3人的 大臣이 反對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宗皇帝 自身도 그 無効를 宣言하였는 바 1907年の 「헤그」万国平和會議에는 李儻, 李偉鍾 및 李相高 3人的 密使를 派遣하여 同條約의 無効를 主張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日本의 妨害와 列強의 無関心으로 會議에 正式으로 參席하지는 못하고 李偉鍾이 万国記者協會에서 「韓國을 爲한 呼訴라는 題目으로 日本의 侵略相을 暴露 譴탄하여 많은 注目を 끌었으나 外交的支持는 얻지 못하였다.

日本은 同事件을 契機로 高宗을 退位시키고 「內政에 관한 全權을 掌握」하는 縮結하기로 決定하였다. 長谷川司令官은 宮城内外에 多數의 日兵을 配置시키고 李完用 一派로 하여금 退位를 強奏하게 하자 高宗은 결국 7月 19日 皇太子에게 讓位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背景의 事實로 보아 이러한 高宗의 讓位는 伊藤, 長谷川, 林 등과

11) 日本外交文書, 才 38卷, 才一冊, pp.488-492. 大韓日報, 11월 19日, 董德模, op.cit, p.14에서 再引用.

12) 大韓每日申報 1905.11.27 号外; 皇城新聞, 11.20;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chap.5; McKenzie, Me Tragedy of Korea, pp.130-141; Hulbert, Me Passing of Korea, chap.14; Herbert Croly, Williard Straight, pp.176-189; 伊藤博文伝, 下卷, pp.683-698 등, 以上은 董德模 op.cit, p.15에서 再引用.



李完用 一派가 共同으로 恣行한 一種의 Coup d'erst 라고 할 것이다. 13)

高宗을 強制로 退位시킨 伊藤은 韓國의 內政權剝奪을 內容으로 하는 新條約案을 李完用에게 傳達하자, 李는 2次에 걸쳐 純宗을 謁見하여 同條約에의 同意를 強奏하고 7月 25日에는 李完用과 伊藤間에 新條約이 調印되었다. 이러한 韓日新條約(或은 七條約)의 結果 韓國은 日本에게 內政에 관한 거의 모든 權限을 넘겨 주었는 바, 그 主要內容을 보면 「韓國政府는 施政政策에 關於하여 統監의 指揮를 受할 事(才1條)」, 「法會制定 및 主要한 行政上의 處分은 豫히 統監의 承認을 經할 事(才2條)」, 「高等官吏의 任免은 統監의 同意로써 此를 行할 事(才4條)」 등이다.

이로써 韓國은 1905年의 乙巳保護條約으로 外交權을 剝奪당하고 1907年의 七條約으로 內政權이 상실되어 결국 「名目上의 獨立」만이 3年間 더 持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名目上의 獨立도 1909年 10月의 安重根義士에 依한 伊藤의 暗殺事件을 契機로 하여 1910年 8月 22日 李完用과 寺內統監間에 締結되고 同 29日 日本 憲兵의 삼엄한 경계속에서 李完用을 首班으로 하는 內閣의 의결을 거쳐 調印을 完了함으로써 終了되어 韓國은 日本의 植民地의 地位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2. 韓日合併條約의 法的問題點

위에서 우리는 1905年의 乙巳保護條約 以來 1910年의 日本에 의한 韓國의 併合까지의 과정을 概觀하여 보았거니와 따라서 적어도 事實적으로는 韓國은 1910년에 消滅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모든 事實이 法的效果를 發生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事實이 法現範의 要件을 充足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法的效果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問題는 1910年의 韓日合併條約의 國際法上의 有効性 如否의 問題로 歸着되는 것이다.

13) 董德模, op.cit., p.26.

### 3. 韓日合併條約의 有効性問題

一般的으로 國際條約은 一定한 法的 效果를 目的으로 하는 二者 以上の 國際法 主体間의 合意라고 定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條約이—특히 雙務條約의 경우에 있어서는— 完全한 效果를 發生하기 위해서는 合意의 過程에 있어 瑕疵가 없어야 하는 바, 이와 關聯되어 提起되는 것이 錯誤, 詐欺, 瀆職, 強迫 등의 問題이나 本題와의 關係에서는 強迫에 關係서만 考察하기로 한다.

伝統國際法上 一定한 경우에 있어서는 強迫의 結果 締結된 條約도 그 有効性이 認定되고 있는 바, 그것은 그러한 強迫이 國家全體에 대하여 加하여진 경우이다.<sup>14)</sup> 그러한 條約의 例로는 戰後에 勝戰國과 敗戰國間에 締結된 下部 講和條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反해서 強迫行爲가 條約締結權者 個人 또는 그 代表에게 加하여진 경우에는 同條約은 瑕疵있는 條約으로 無効로 認定되고 있다.<sup>15)</sup> 이에 關係서는 學說上 약간의 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나 大部分의 學者는 그 無効를 認定하고 있으며 또한 基本的으로는 條約法에 關한 *Leges latae*의 成文化로

---

14) Brierly, *The law of nations*, 5th ed, pp.243-245; 李漢基 國際法講義, p.327. 裴載湜, 強迫으로 締結된 條約의 性質 및 効力, 法學 제10권 2호, p.49.

15) P.Gusgenheim,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T.I. pp.191-192; Ch.Rousseau, *Droit international public*, T.I. pp.147-149. 裴載湜, *op.cit.*, p.49, 52-53.  
同論文에서 裴教授는 同聯學說을 多數學者의 說을 引用하면서 比較적 자세히 分析 檢討하고 있다.

볼 수 있는 1969년의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도 그 無効를 宣言하고 있다. 16)

따라서 同原則은 實定法上 確立된 國際法上の 原則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以上에 檢討한 것을 理論的 背景으로 하여 1905年 以後의 諸條約에 관하여 檢討하기로 했다.

우선 1905년의 乙巳保護條約과 1907년의 七條約에 관한 限 條約締結權者 個人에 대하여 強迫이 加하여 졌다는 點에 있어서는 의문의 餘地가 없다. 이에 反해서 1910년의 韓國合併條約에 관한 한 皇帝와 大臣들에게 直接的인 強迫이 加하여졌다는 言及은 없다. 그러나 同條約은 1905年과 1907年의 再條約의 결과 外交權과 內政權을 모두 剝奪당한 후에 締結되었다는 點과 또한 同條約의 調印을 위한 內閣會議가 日本憲兵의 監禁 警戒속에서 行하여

---

16) 이 문제에 관하여 우선 「하바드」大學의 條約法草案 (Draft Convention of the Harvard Research on the Law of Treaties)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An the term used in this Convention, duress involves the employment of coercion directed against persons signing a treaty on behalf of a state or against the person engaged in ratifying or according to a treaty on behalf of a State; Provided that, if the Coercion has been directed against a person signing a treaty on behalf a State and if with knowledge of this fact the treaty signed has later been ratified by that State without coercion, the treaty is not to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entered into by that State in consequence of duress. Supplement to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1935, pp.663-664.

한편 1969년의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제 51 조는 「全權代表에 대한 強迫」이라는 題目下에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The expression of a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which has been procured by the coercion of its representative through acts or threats directed against him shall be without any legal effect.

것다는 點을 감안하면 同條約이 自由로운 意思에 기한 合意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그 締結過程에 있어 皇帝 및 大臣들에게 心理的 強迫行爲가 있었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는 1905年の 乙巳保護條約, 1907年の 七條約 및 1910年の 韓日合併條約은 모두 條約締結權者 個人에 대한 強迫의 結果로 締結된 것이므로 無効라고 할 것이다.

#### 4. 合併條約의 無効確認

上述한 韓日合併條約의 國際法上の 無効原則은 二次大戰 終戰前後의 韓國關係 國際宣言 또는 條約에서 確認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다음에 關係文書を 보기로 한다.

우선 1943年の 「카이로」宣言은 「日本國은 暴力 및 野慾에 의하여 侵略한 一切의 地域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며」……「韓國은 適當한 時期에 獨立될 것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換言하면 當時 韓國은 國際法上 消滅한 것이 아니고 다만 主權行使의 停止 또는 行爲能力이 欠如되어 있었음을 示滅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이는 以後 「포츠담」宣言에서 明白히 표명되는 바, 同宣言은 「日本國의 主權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우리들(「포츠담」宣言 當事國)이 결정하는 諸小島에 局限될 것」이라 하여 日本의 主權이 韓國에는 미치지 않음을 確認하는 바, 이는 換言하면 1910年の 合併條約의 無効性을 確認한 것이다.

日本은 1945年の 降伏文書에서 「포츠담」宣言의 規定을 誠實히 遂行」할 것임을 誓約하였으며 1951年の 對日平和條約 才2條(a)項에서 「日本은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고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를 韓國에 대한 權利, 權原 및 主張을 拋棄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포기한다」라는 語句의 解釋은 問題가 없지 않겠으나 위의 二大宣言과의 關聯下에서 보면 日本의 韓國 占領은 不法한 것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음을 確認한다라는 意味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妥当性은 1965년에 締結된 韓日基本條約에 依해 再確認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同條約 才2條는

1910年 8月 22日 및 그 以前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間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이미 無効임을 確認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同條는 그 締結過程에 있어서 韓日兩國間에 많은 意思對立이 있었고 또한 現在도 그 해석만 兩國間에 見解의 差異가 있는 것은 事實이다. 17)

然이나 條約의 해석에 있어서의 基本原則은 그 條約의 用語의 通常의意味 (Ordinary meaning)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18) 이러한 觀點에서는 韓日 基本條約 才 2條의 「無効」는 同用語의 通常의意味인 「始初부터 効力を 發生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앞의 「이미」라는 文句는 그를 다시 強調 한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한 해석일 것이다.

以上에서 檢討한 事實을 背景으로 하여 볼 때에는 舊韓國은 1910年의 合併條約에도 不拘하고 國家로서 그대로 存続하고 있었으며 다만 日本의 事實上의 軍事占領으로 因하여 그 主權行使가 停止되어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달리 表現하면 舊韓國은 權利能力은 가지고 있었으나 行爲能力만이 欠如 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

---

17) 襲載混, 強迫으로 締結된 條約의 性質 및 効力, op.cit., pp.60-62

18) 條約法에 관한「비엔나」協約은 「(조약) 해석의 一般原則」이라는 題目下에서 제31조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19) 韓日合併 以後의 狀態를 日本의 事實上의 軍事的 占領狀態라고 보고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韓國의 消滅問題는 如前히 提起될 수 있다. 即 軍事的 占領의 경우에도 完全占領(debellatis)의 경우에는 국가가 消滅할 수 있는 것이다. 當時 日本의 韓國合併 意思는 明白히 表明된 바 있었고 또한 어떠한 韓國의 中央 또는 地方政府形態도 存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完全 占領의 要件이 一応 充足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1919年 以後는 一種의 亡命政權으로서 上海臨時政府가 樹立되어 계속 活動하여 왔다는 점에서 完全 占領에 依한 舊 韓國의 消滅은 妥當한 主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完全占領에 관하여는 參照 P.Reuter, Droit international Public, Paris, 1963, pp.113 et ss.

旧韓國의 不消滅原則은 또한 南北韓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文書라 할 수 있는 7.4 共同聲明書에도 宣稱되어 있다. 共同聲明書에서는 數次에 걸쳐 「祖國統一」에 關하여 言及하고 있는데 여기서 「祖國」은 단순히 感傷의 表現으로 볼 수는 없고 어떠한 韓半島 全体에 걸친 法的實體를 想定하는 것으로 解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Ⅲ. 大韓民國의 正統性問題

앞에서 우리는 旧韓國이 法的으로는 그대로 存続하고 있음을 보았거니와 本章에서는 그러한 旧韓國을 分斷된 兩政治體制 即, 南北韓中에서 어느 것이 代表하는가의 問題를 檢討하기로 한다. 그를 위해서 우선 1945年の 解放以後 分斷의 固定時까지의 過程에 대한 事實的 考察을 先行하기로 한다.

#### 1. 解放以後 分斷時까지의 事實的 考察

終戰이 가까워 오며 따라 聯合國은 1943年 카이로宣言에서 韓國이 「適當한 時機에 獨立될 것」을 宣稱하고 이는 以後 1945年の 포츠담」宣言에서 再確認되었다.

여기서 「適當한 時機」란 表現은 韓國을 一定期間 信託統治下에 두려는 「루즈벨트」案의 反映이었다.

그러나 同年 8月 日本이 無條件降伏하자 軍事的 便宜에 따라 韓半島에서는 38°線을 基準으로 하여 그 以北에서는 蘇聯軍이 그 以南에서는 美軍이 日本軍의 降伏을 接受하고 그 武装解除에 當하기로 決定하고 이를 同年 9月2日 聯合軍「一般命令 第一號」로 布告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完遂된 以後 同年 12月에 「모스크」에 美·英·蘇 三國의 外相이 모여 韓國問題 處理에 關하여 協議한 결과 韓國에 原則적으로 5年間の 信託統治制度의 實施 및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合意하였다.

- ① 韓國民主臨時政府를 樹立한다.

② 韓民主臨時政府의 樹立을 爲해 美·蘇占領軍司令部의 代表들로 構成되는 共同委員會를 設定한다. 이 委員會는 韓國의 「民主的」諸政黨 및 社會團體와 協議한다.

③ 韓民主臨時政府와 韓國의 民主的 諸團體의 參加아래 韓國人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進歩와 民主的 自治의 發展 및 韓國의 國家的 獨立의 達成을 協力, 援助하는 方法을 作成하는 것도 共同委의 課題이다.

上記한 目的으로 1946年 3월에 才一次 美·蘇共同委員會가 召集되었으나 共委에 參加할 韓國의 政黨 및 社會團體 代表의 資格問題에 關하여 合意를 보지 못하고 無期休會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47年 5월에 召集된 才二次 共委에서도 同一한 問題로 論難을 거듭하다가 同年 8월에 同共委는 마침내 결렬되고 말았다.

그 결과 交渉은 다시 政府間交渉으로 옮겨져 同年 8月 29日 美國務長官 代理 「로버트」는 「워싱턴」에서의 四大國會議 開催를 提案했으나 蘇聯은 이를 拒否했으며 美國은 결국 同年 9月 17日 韓國問題를 正式으로 UN에 上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UN總會는 蘇聯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韓國問題를 政治委員會에 회부하였으며 (贊41, 反6) 以後 다시 同委員會의 결의를 거쳐 總會는 「UN韓國臨時委員團」의 設置와 南北韓總選에 關한 決意를 採択하였는 바, (贊43, 反9)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韓國에서 同委員國의 監視下에 總選舉를 實施하고
- ② 選舉後 가급적 빨리 國會를 構成 政府를 樹立하며
- ③ 政府는 南北韓의 軍政當局으로부터 政府의 諸機能을 移讓받는다는 것이다. 20)

同委員國은 1948年 1月부터 서울에서 活動을 開始하였다. 그러나 北韓에 關한 한 蘇軍의 入北拒否로 그 完全한 機能을 遂行할 수 없게 되자 결국 南北地域만에서라도 總選을 實施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당시 北韓地域에는 이미 共産黨의 单独政權의 独裁體制가 이미 確立되어 있었고 政府樹立은 다만

20) U.N., Official Record G.A.Res.112 (II)

形式的 節次만이 남아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UN監視委員國에 대한 入北拒否는 당연한 것이었다. 21)

이러한 蘇聯側의 UN韓國委員國에 대한 入北拒否로 결국 1948年 5月10日 南韓地域에서만 總選舉가 實施되어 198名의 議員을 選出하였는 바, 5月31日에 最初의 制憲國會가 召集되었고 同國會는 7月에 大韓民國 憲法을 制定하고 李承晩을 初代大統領으로 選出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美國은 新政府가 「1947年 11月14日의 UN總會 決意에 의하여 構成된 韓國의 政府로 간주된다」라고 宣言함으로써 默示的承認의 意思를 表明했으며 翌年의 1949年 1月 1日자로 韓國政府를 公式的으로 承認하였다. 22) 이어서 8月 15日 大韓民國樹立이 宣布되자 「하지」將軍은 同日로 美軍政은 終結된다고 發表하였다. 同年 9月 12日 制憲國會는 將次 UN監視下에 大韓民國國會로 選出될 北韓地域의 代表를 위하여 國會에 百席을 留保하여 두었다.

이렇게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자 UN總會는 同政府가 韓國의 唯一한 政府임을 宣言하는 決意를 1948年 12月 12日에 48對 6이라는 圧倒的 多數로 採択하였는 바, 이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檢討하기로 한다.

이렇게 南韓에 政府가 樹立되자 北韓地域에서는 1948年 4月에 人民會議 特別會議에서 憲法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同年 8月 25日에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가 實施되어 그 결과로 最高人民會議가 構成되었으며 同會議는 9月 3日 北韓憲法을 公式的으로 採択하여 同9日에 金日成을 首相으로 하는 소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樹立을 宣布하였다. 23)

結果的으로 韓半島에는 南쪽과 北쪽에 事實上 두개의 政府가 樹立되게 되어 當初에는 軍事的 便宜主義에 따라 暫定的으로 劃定되었던 38°線은 固定的인

21) 金學俊, 韓半島分斷의 背景 및 分斷固定化 過程에 관한 研究, 統一政策, 一권一호, p.92.

22) Press release, Aug.12 1948, XIX Bulletin Department of state, no 477, Aug. 22 1948, P.242; White House press release, Jan.1 1949, XX Bulletin, Department of State, no. 497, Jan.9 1949, pp.59-60.

23) 金學俊. op.cit., pp.94-95.



性格을 띄우게 되어서 결국 韓國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되는 分斷國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以上에서 韓半島의 分斷過程을 事實的側面에서 檢討하여 보았거니와, 一般的으로 分斷國의 特徵으로서는 分斷되어 있는 事實上으로는 國家의 性格을 띄우고 있는 두개의 政治體制가 그 分斷狀態를 既定事實로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항상 統一에의 意志를 堅持하면서 그 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排他的인 正統性을 主張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法的인 觀念에서는 그 正統性의 歸屬主體가 어느것인가는 必히 解決되어야 하는 問題로 提起되는 바, 다음에 韓半島와 관련하여 同問題를 考察하기로 한다.

## 2. 大韓民國의 正統性의 法的 根拠

從來 大韓民國政府는 北韓과의 關係에 있어 排他的正統性 即 大韓民國만이 唯一合法政府라는 原則을 견지하여 왔고 이는 1970年 以來의 一連의 基本政策宣言과 南北共同聲明에도 不拘하고 그 基本原則은 不變인 것이 없다. 다만 後者에 關하여는 章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면 大韓民國政府의 唯一合法性原則은 法的인 根拠에 基한 것인가 또는 순전히 政治的 考慮에 의한 主張에 不過한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이에 關하여 먼저 결론부터 적는다면 同原則은 具體的인 法的根拠에 依拠한 것이 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法的根拠는 基本的으로는 南北韓의 成立過程과의 關聯下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副隨的으로는 上海臨時政府와의 關係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後者에 關해서는 우선 현재 당시 臨的의 活動에 關한 연구가 尙尙 未진한 편이고 더욱이 解放以後 南韓地域에 臨的의 要員의 大部分이 오기는 했으나 大韓民國政府의 樹立은 同臨的인 美軍의 政權引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는 一応 問題가 있으므로 이 問題는 追後의 研究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南北韓의 成立過程과의 關係에서만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關한 根拠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의 大韓民國의 正統性은 北韓當國에 비하여 大韓民國은 政府 樹立形式을 살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事實檢討에 본 것과 같이 大韓民國政府는 南北韓總選舉에 의하여 新政

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1947年 11月の UN總회의 決意에 따라 거행된 總選에 따라 樹立된 것이다. 이에 反하여 北韓當局은 当初부터 이러한 國際機構의 決意를 違反한 상태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UN總회도 이러한 점을 勘案하여 1948年 12月 12일 字의 決意 才 195号(II)로써 大韓民國政府가 唯一合法政府임을 宣言하였다. 따라서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 또는 合法性은 現存 國際社會의 가장 代表的 國際機構인 UN에 依하여 一種의 集團의 承認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韓國政府의 正統性은 다만 美, 英, 仏外 相의 共同宣言에서 그 正統性이 確認된 西獨政府에 비하여 훨씬 더 客觀的인 承認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1950年 9月 3日 字의 同宣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獨逸이 統一되지 아니하는 限, 三國政府(美, 英, 仏)는 聯邦共和國 西獨政府만이 自由롭고 合法的으로 樹立되었으며 따라서 同政府만이 獨逸을 代辯할 수 있고 國際關係에서 獨逸民族을 代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4)

여기서 잠간 UN總회 決意의 法的性格과 同決意 195(III)号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UN總회 決意 才 195(III)号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UN韓國臨時委員團의 報告書에 基하여 25) 採択된 同決意에서 UN總회는 「國際聯合 臨時韓國委員團이 監視하고 協議할 수 있었으며 또한 韓國國民의 大多數가 居住하고 있는 韓國地域에 效果的인 統治와 管轄權을 가진 合法政府(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으며, 同政府는 韓國의 大部分의 選舉人의 自由로운 意思의 妥當한 表現인 選舉

24) 괄호속의 語句는 筆者가 添加한 것임. 同宣言은 以後 北大西洋條約機構의 會員國들도 수락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參照: G.Caty. Le statut juridique des États divisés, 1969, pp.83-84.

25) General Assembly Official Report, III, Supplement of (A 1575 and Add 1-4) 同報告書에서 UN韓國臨時委員團은 「1948年 5月 10日에 實施된 總選舉의 결과는 同委員團이 接近可能하였으며 全韓國國民의 約 3分之 2의 人口를 가지는 地域에 있어서의 有權者들의 自由意思의 正當한 表示」라고 宣言하고 있다.

에 기반 것으로 그것이 韓國內의 如斯한 (sult) 唯一의 合法政府임을 宣言하고 있다<sup>26)</sup> 同決意에서 UN總회는 또한 會員과 餘他の 國家에 대하여 「大韓民國政府의 外交樹立에 있어서는 (前記한) 事實을 勘案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sup>27)</sup>

이와 같이 UN總회는 大韓民國政府가 以前의 總회의 決意(才 112号)에 따라서 UN監視委員團의 監視下에 韓人의 大多數의 参与下에 實施된 自由選舉에 基하여 樹立되었음을 確認하고 따라서 大韓民國政府는 韓國의 唯一의 合法政府임을 宣言하고 있다. 同決意에서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政府의 性格에 대한 몇몇의 制限의 表現은 同決意의 前文에서 밝히고 있듯이 「韓國統一이 아직 成就되지 않았다는 事實을 留意」한 데에 基因하는 것이고 그것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서의 大韓民國의 基本的인 法的地位에 어떠한 修正을 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以上에서 UN總會決意 才 195 (III) 号의 내용에 관하여 檢討하여 보았거니와 다음에는 總會決意의 法的性格에 관하여 考察하여 볼 것이나 이에 앞서 우선 1947年 9月의 韓國問題의 UN總會에로의 移管이 合法的인 것이었는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그것은 換言하면 總會는 韓國問題에 대한 管轄權이 있는가의 문제인 바, 筆者의 見解로는 總會는 當然히 그러한 權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바, 그것은 UN憲章 才 14條에 基한 것이다.

그러나 同條項은 「總會는 그 根源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一般福利 또는 國家間의 友好的關係를 阻害할 성질의 모든 事態에 대한 平利의 調整을 이룩할 수 있는 措置를 勸告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1947年 8月의 美蘇共同委員會의 決裂後의 韓國事態가 同條에 규정된 「事態」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47年 9月의 UN總會에로의 韓國問題의 移管은 合法的인 것이었다 할 것이다. 以上으로 前提의 考察을 마치고 다음에 總會決意의 法的性格에 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UN總會의 決意는 豫算事項 및 一定的 對內의 問題에 관한 것을

26) GAOR. III 1, Resolutions(ALSIO) Res.195 (III) 제 2항.

27) 괄호속의 語句는 筆者가 添加한 것임. 決意 제 195 (III) 号 제 8항.

除外하고는 法的 拘束력이 없다는 것이 一般적으로 認定된 見解이다.<sup>28)</sup> 그러나 어떠한 見解가 絶對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이 總會의 決意에 대하여 어떠한 拘束력도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Sloan氏는 「UN總會 決意의 拘束力」이라는 그의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UN憲章에서 總會의 決議의 拘束력에 관한 直接的인 規定을 찾을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同決議의 「非拘束性이………決定的으로 確立된 것도 아니다. (現段階에서의) 最大限의 主張은 拘束性에 反對적인 把握이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복될 수 없는 성질 的인 것은 아니다. 또한 總會의 決議에 대하여 法的拘束력을 否認하는 경우에도 多數의 見解에 의하면 最少限 Moral Force는 인정하여야 한다는 바, 이러한 道德的 拘束力이란 用語는 法的인 拘束력이 없다는 것의 間接적인 外交의 表現은 아니고 보다 實質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總會決議의 拘束力の 根柢는 그것이 國際社會의 大部分의 國家로 구성된 國際聯合의 主要機關의 意思表現이며 또한 그것은 特定 國際法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과 同一한 多數의 考慮에 의하여 支持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集團의 國際意思로서의 總會의 判斷에는 特定 國家의 個別意思와는 区分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理由에 基하여 Sloan은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고 있다.<sup>29)</sup>

「總會(決議)의 Moral Force는 生成中의 法的拘束力인 것이며 그것은 國際社會가 그에게 法的性格을 부여할 때까지는 法과 道德의 中間的領域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Sloan의 見解는 그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lege lata*가 아니라 基本的으로는 *lege ferenda*의 觀點에 선 것이기도 하나 그가 이러한 結論에

28) F.B. Sloan, *The Building Farce of a "recommend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48, pp.21 et. ss.  
L.D. Qual, *Les effets des resolutions des Nations Unies* 1967, pp.109-130.

29) F.B. Sloan, *op. cit.*, p.24.

30) *Ibid.* p.33.

到達함에 있어서 그 根拠로서 提示한 몇가지 理由는 상당히 客觀的 妥當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의 見解는 敬청할만한 價值가 있는 것이라 한 것이다.<sup>31)</sup>

위에서 우리는 UN 總會 決議 第 195 (III) 号에 의하여 大韓民國이 韓國의 唯一合法政府임을 國際社會에 의한 一種의 軍國의 承認을 받았음을 보았거니와 이러한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은 以後의 國際條約에서도 確認되고 있는 바, 그것이 1965年의 韓國基本條約으로 同條約의 第 3條는 「大韓民國政府가 國際聯合總會의 決議 第 195 (III) 号에 명시된 바와 같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確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同條는 總會決議 第 195 (III) 号의 性格內容 即 大韓民國政府의 唯一合法性原則의 客觀的 妥當性을 確認했다는 意味에서 그 基本的 意義가 있다 하겠다.

---

31) Sloan의 論文의 關係部分을 原文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The force of a recommendation is not derived from a judgement made in an internal court of conscience but from a judgment made by an organ of the world community and supported by many of the same considerations which support positive international law. The judgment by the General Assembly as a collective world conscience is itself a force external to the individual conscience of any given state. It is submitted that in view of these considerations the "moral force" of the General Assembly is in fact a nascent legal force which may enjoy, in the rounded words of Justice Cardozo, a twilight existence hardly distinguishable from morality or justice until the time when the imprimature of the world community will attest its jural quality. *ibid*, pp.32-33.

#### IV. 1970年以後의 主要政策宣言과 正統性問題

Nixon의 中共訪問을 契機로 하여 美·中, 美·日의 接近으로 급변하는 國際情勢와 北韓側의 緊요한 平和攻勢에 能動的으로 対応하고 궁극적으로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政府는 1970년에 접어들어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一連의 劃期的인 宣言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 宣言으로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어떠한 修正이 加하여 졌는가. 與否가 여기서 高찰하려는 問題이다.

이를 위해서 이들 宣言을 우선 事實的 側面에서 본 후에 그에 대한 法的 分析을 하고자 한다.

##### 1. 事實的 考察

###### (1) 8.15 宣言

1970年 8.15 慶祝辭에서 朴正熙 大統領은 以後의 南北關係의 基調가 될 劃期的인 宣言을 發表하였는데, 여기서 朴大統領은 「① 北韓은 武裝共匪 南派 등의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即刻中止하고 소위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에 의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기도해 온 從前의 態度를 완전히 拋棄하겠다는 점을 明白하게 内外에 宣言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踐하고 ② 이러한 우리 要求를 北韓이 受諾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 明白하게 認定될 경우에는 나는 人道的見地와 統一 基盤造成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 놓인 人爲의 障壁을 段階적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朴大統領의 劃期的인 8.15 宣言以後 그 翌年 8月 12日에 大韓赤十字社 總裁가 「南北韓離散家族찾기運動」을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을 北韓側에 提議하였는데, 北韓側이 이를 受諾하여 以後 豫備突務者會談을 거쳐 서울과 평양에서 一連의 會談이 開催되었음은 周知하는 바이나 이 問題는 本稿와의 關係에서는 一応 특별한 考察을 要하지 않다고 사려되므로 더 以上 부연하지 않기로 한다.

## (2) 7.4 共同声明

1972年 7月 4日 「서로 上部的 뜻을 받아들여」 「서울」의 情報部長 李厚洛과 「平壤」의 組織部長 金英柱의 共同名義로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에 發表된 同声明은 7個項으로 되어 있으나 그 主要骨字는 다음과 같다.

- ① 外勢依存 없이 平和的인 祖国統一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民族的 大團結 圖謀
- ② 相互 中傷 않고 軍事衝突 積極防止
- ③ 多方面的인 積極交流 實施
- ④ 南北赤十字會談 成事되도록 積極協調
- ⑤ 統一위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 (3) 6.23 宣言

1973年 6月 23日 朴正熙 大統領은 궁극적인 祖国統一에 앞서 南北韓의 平和共存, 平和競爭의 与件造成을 위하여 7個項의 特別宣言을 發表하였는바 그 骨字는 다음과 같다.

- ① 祖国의 平和統一 위해 모든 努力 계속
- ② 韓半島 平和維持 南北韓間의 內政 不干涉
- ③ 誠實과 忍耐力로 南北對話 계속
- ④ 緊張緩和 위해서라면 北韓의 國際機構參與 不反對
- ⑤ 統一에 障礙 안되면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不反對
- ⑥ 互惠平等原則 아래서 모든 國家에 門戶開放
- ⑦ 友邦과의 既存紐帶 더욱 공고화

## (4) 不可侵協定締結提議

1974年 1月 18日 年頭記者會見에서 朴大統領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하여 南北韓間의 相互不可侵協定の 締結을 提議하였는바 同提議는 다음 세가지를 그 主要骨字로 하고 있다.

- ① 相互間에 武力侵略意圖의 明示的拋棄
- ② 內政干涉 排除
- ③ 休戰協定은 存続

## 2. 法的分析

위에서 1970年以後의 一連의 劃期的인 措置의 검토하여 보았거니와 本稿와 관련에서의 同宣言措置가 제기하는 문제는 承認의 問題인 것으로 다음에 그러한 觀點에서 이들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 (1) 7.4 共同聲明

同聲明의 共同發表가 北韓에 대한 默示的 承認을 意味하는가의 문제는 同聲明書가 嚴格한 意味의 條約인가 또는 單純히 政治的 意圖를 밝힌 聲明書인가의 문제로 代替될 수 있는 바, 그것은 後者の 경우에는 承認의 問題는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32)

그런데 同聲明書의 條約性을 金總理에 의하여 明示的으로 否認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內容的으로 同聲明을 條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33) 따라서 同聲明書에 의한

### (2) 6.23 特別宣言

6.23 平和宣言에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北韓의 國際機構參與 및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條項이다. 그런데 前者는 後者에 準해서 考察될

---

32) Hackworth, Memorandum, Des 13, 1940. Department of state.

"Political recognition of a foreign State or government is primarily a matter of intention. Such recognition may be express or implied, but to bring about recognition by implication, the act must be an unequivocal one and of such character as clearly to indicate that recognition was intended or is inescapable, as for example, by the exchange of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the negotiation of a treaty, etc."

33) 그 主要한 理由로 同聲明에서 雙方의 公式名稱이 使用되지 않았고 또한 各者の 職責이 聲明書의 끝에 記載되지 않았으며 條約의 一般形式인 條文形式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끝으로 聲明書의 內容이 法的인 權利義務를 規定한 것으로는 지나치게 一般的이고 抽象的이라는 것이다.



수 있는 것이므로 後者에 관해서만 考察하기로 한다. 여기서 問題點은 南北韓의 中극적인 「UN」에의 同時加入이 北韓에 대한 默示的承認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인 것이다.

이에 관해서도 嚴格한 法的觀點에서는 그러한 可能性은 否認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承認은 個別的 行爲이고 또한 原則的으로는 承認意思의 明示的表示行爲이기 때문에 特定國家에 대한 「UN」에의 加入決定이라는 國際機構의 어느 特定機關의 集團의 決定과는 區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4)

34)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B.Y.B.I.L., pp.370-371, 405-406.

"...As often happens, the doctrine of implied recognition has been more conspicuous in the writings of authors than in the practice of states. In the literature of international law it has often appeared under the more innocuous name of modes of recognition. It is true that recognition may be granted in a manner other than an express and formal declaration to that effect. In this we are justified in referring to various modes of recognition. But it is permissible to speak of modes of recognition only so long as we keep in mind the fact that we are entitled to treat a particular act as amounting to recognition only when there is no doubt as to the intention to recognize. Otherwise, and this is what happens with perplexing regularity, we run the danger of introducing the vagaries of implied recognition through the backdoor of modes of recognition. Recognition is primarily and essentially a matter of intention. Intention cannot be replaced by questionable interferences from conduct. Such interferences particularly inappropriate when the general attitude of the State in question points to its continued determination to deny recognition."

UN軍務總長의 메모펜덤, 1950, S/1466, SCOR.V.Supp. pp.18-23 보다 最近의 事例로는 불란서의 「몽고」의 UN加入申請에 대한 불란서의 贊成投票가 없는 바, 불란서는 이것이 承認行爲와는 別個의 문제란 立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L.D.Qual.op.cit., p.122.

더욱이 6.23 平和宣言은 同宣言이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의 期間中の 暫定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한다.」는 明示的 留保와 함께 公露된 것이므로 北韓에 대한 承認問題는 어떠한 意味에서든 提起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6.23 平和宣言에 依해서도 北韓의 承認問題는 제기되지 아니하고 다만 事實上的 政治集團으로서는 北韓의 存在가 좀더 부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 (3) 1.18 特別宣言

끝으로 1974年 1月 18日字의 朴大統領의 對北韓 不可侵協定 締結提議가 北韓에 대한 國家로서의 承認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에 대하여도 原則적으로는 그러한 可能性의 否定인 바, 그것은 다음의 몇가지 現中에 基한 것이다.

우선 南北韓間에 궁극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不可侵協定 自体가 國際法上的의 嚴格한 條約形式으로 締結되어야 할 必然的 理由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이를 條約으로 國際法上的의 條約으로 看做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條約은 항상 獨立된 國家間에만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 例컨대 聯盟 또는 聯邦과 그 構成員間, 또는 그 構成員 相互間의 關係도 條約으로 規制될 수 있으며 또한 特定國家와 特定聯邦國家의 構成員間에도 條約은 締結될 수 있는 바 佛蘭서와 「카나다」의 「퀘벡」州와의 文化協定 締結의 그 最近의 事例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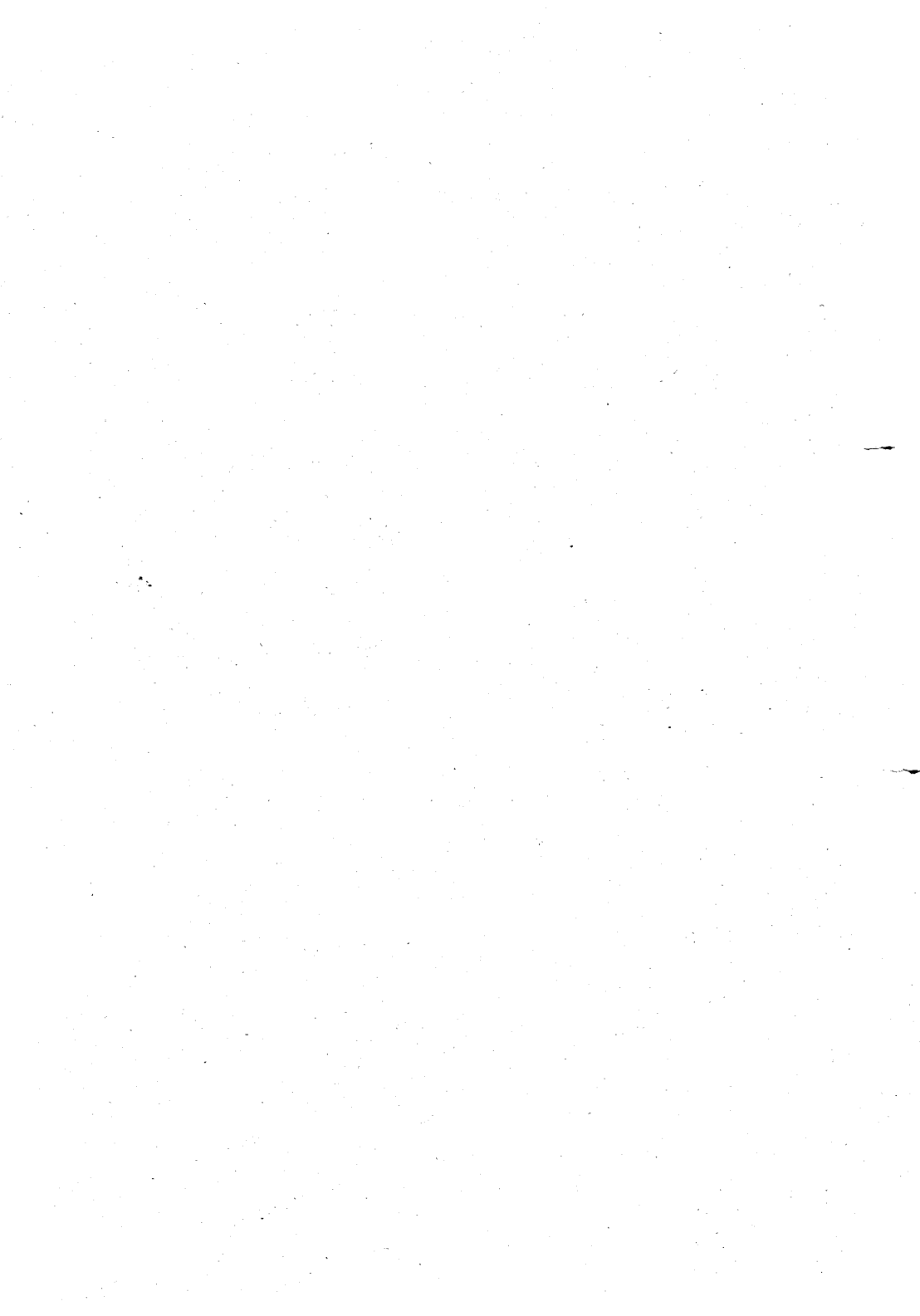
끝으로 承認은 基本的으로는 그 對象國을 國家라 認定한다는 明示的 意思表示이고 特定한 경우에 一応 默示的 承認으로 간주될 수 있는 行爲도 明示的인 反對意思의 表示에 의하여 그러한 可能性은 排除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朴大統領의 不可侵協定 締結提議에 관한 聲明에서 金總理는 「우리는 休戰線 以北地域을 事實上 支配하고 있는 共產政權이 있다는 事實을 認定한다. .... 우리로서는 民族的 統一의 念願에 비추어 北韓을 「하나의 國家」로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北韓에 대한 默示的 承認의 可能性을 排除하였던 것이다.

以上에서 檢討한 바를 要約하면 1970年 以後의 一連의 宣言에도 不拘하고 北韓에 대해서는 國家로서의 地位가 부여된 것은 아니고 다만 休戰線 以北을

事實上 「支配하고 있는」 政治集團으로서의 存在가 認定되었을 뿐이다. 그以前에 있어서는 大韓民國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傀儡集團」 또는 「叛亂集團」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1970年以後의 一連의 宣言으로 北韓은 「地方的 事實上的 政權 (de facto local government)」으로서 默示的으로 承認되었던 것이다. 이는 傳統國際法에 의하면 對韓은 「交戰團體」로서의 默示的 承認을 받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內亂狀態에 있어서는 母國政府와 叛徒集團 또는 交戰團體와의 境界線은 尙시 流動的인데 反해서 現在의 南北韓間의 境界線은 相對的인기는 하나 固定的 性格을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傳統國際法上的 內亂理論을 南北韓關係에 그대로 適用할 수 없는 問題點이 있다.

따라서 이를 補充하기 위하여 主로 西獨에서 形成된 冷戰的 內亂說 (Katter Bürgerkriegstheorie)를 援用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冷戰的 內亂은 적어도 傳統國際法上으로는 生소한 問題로 그에 관한 確立된 法原則이 存在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또 다른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點은 分斷國이라는 比較적 새로운 現象을 傳統國際法의 으로 설명하려는 것 自体에 無理가 있다는 점에 基因한다 할 것이며 分斷國 問題가 그대로 支統되는 限 그에 妥當하는 새로운 國際法 原則이 形成된 것이라고 믿는다.

以上の 檢討에서 UN總會 決議 195 (III) 号에 의하여 一種의 國際的 承認을 받고 以後 韓日基本條約에 의하여 確認된 大韓民國의 正統性은 1970年以後의 一連의 宣言에 의해서도 本質的인 修正을 겪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嚴格한 法的 觀點에서 導出한 結論이며 實제에 있어서 앞으로 北韓이 多數의 國際機構에 加入하고 또한 南北韓이 同時에 UN에 加入하고 또한 南北韓間에 不可侵協定이 체결되는 경우 韓國의 友邦國까지도 北韓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할 可能性은 크다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國際社會에서는 두개의 韓國이라는 否定的 現象을 야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前記한 궁극적인 諸措置로 南北韓間에 緊張이 緩和되고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어 그것이 궁극적인 祖國의 平和統一을 促進시키는 要素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감수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關한 法的究明

(韓日基本條約을 中心으로)

朴 東 熙  
法博·建國大學校教授

## 目 次

- I. 序 言
- II. 國際法上으로 본 韓日合併
- III.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
- IV. 結 論

### I. 序 言

全文 7條로 되어 있는 韓日基本條約은 1965年 2月 22日 도쿄에서 締結되었으며 同年 12月 18日 發効되었다.

이는 多年間의 紛爭을 겪으면서 탄생된 條約이다. 이후부터 韓日關係는 정상화되었다.

同 條約에 비친 大韓民國의 法的正統性問題는 第2條와 第3條에 나타나고 있다. 第2條는 大韓民國의 母體인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間에 締結된 1910年의 韓日合併條約 및 그 以前의 모든 條約 및 協定이 無効임을 確認했고, 同條約 第3條는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合法政府임을 規定하고 있다. 同基本條約 第2條의 規定問題가 되는 것은 「이미無効」라는 用語中 「이미」라는 말이 어느 때를 말하는가에 있다. 우리말의 「이미」라는 英文條約으로 「already」라고 되어있고, 日本語로 「もはや」라고 規定되어 있다. 어떤 나라의 表現이건 우리말의 「이미」라는 表現과 一致한다.

同條文이 말하는 「이미」라는 말이 日本이 패망한 1945年 8月 15日 以後부터 無効임을 뜻하는가 또는 問題의 強制條約 締結當時인 처음부터 無効인가에 있다.

同條文의 規定이 상당한 興味를 나타내는 것은 1945年 8月 15日부터 無効이건 처음부터 無効이건간에 막론하고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間에 締結된 모든 強制條約과 協定이 無効라고 確認한데 있다. 왜냐하면 國際法의 一般原則에 따르면 瑕疵에 의한 條約이라 하더라도 有効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액면 그대로 同條文을 관찰할 때, 過去의 支配說인 國際法의 一般原則을 거부하고 強制로 체결된 國家間의 條約은 無効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라고 表現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無効가 아니라 1945年 以後부터 無効라는 主張이 나올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對한 國際法的 解答을 求하기 위하여는 強制로 締結된 國家間의 條約이 無効가 될 수 있는가를 解明해야 한다.

그리하여 大韓帝國과 大韓民國間의 國際法的 同一性이 밝혀져야 한다.

두번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同條約 第3條의 唯一合法政府 規定이다.

이는 大韓民國憲法 第3條 및 1948年 12月 12日 UN總회의 韓國의 獨立問題에 關한 決議와 一致한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問題는 自명한 일이나, 6.23 宣言과 더불어 北僞의 位置가 어떤 것이냐가 밝혀져야 하겠다.

## II. 國際法上으로본 韓日合併

1910年 強制로 締結된 韓日合併條約이 有効하며, 이로 인하여 大韓帝國은 消滅했다는 것이 日本側의 見解다.

이러한 見解를 근거로 日本은 1965年 韓日基本條約을 締結할 당시 同條約 第2條가 밝힌 「이미 無効」라는 말을 1945年 以後부터를 뜻한다고 主張했고, 日本側의 여론은 「앞으로부터의 無効이지 처음부터 無効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國際法의 一般原則에서 볼 때 「強壓에 의한 合併」은 國際法違反-

일 따름이다. 이와같은 國際法의 새로운 原則에 따라 日本側의 主張에도 다  
음과 같은 問題가 뒤따른다.

日本의 主張대로 1945년까지는 韓日合併이 有効했다면 大韓帝國은 完全消滅  
했으며, 오로지 日本國이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어떤 國際法的 理由에서 우  
리 大韓民國이 日本으로부터 獨立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된다.

大韓民國의 獨立은 日本의 意思에 反한 것이며 敗戰으로 인한 代價임이 틀  
림없다. 2次大戰에 對한 敗戰의 代價가 領土의 喪失이었다면(日本側의 立場  
에서 볼 때) 이는 國際法 違反의 強壓밖에 될 수 없다. 勝戰國인 聯合軍또  
는 美軍에도 日本의 領土를 빼앗을 國際法的인 권한을 오늘날의 國際法이 부여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獨立을 明文으로 規定한 1951年9月8日의 聯合國과의  
平和條約 第2條가 國際法違反이 아니냐는 問題가 發生될 수 있다.

이래 對한 國際法的 合法性은 오로지 韓日間의 合併條約이 원천적으로  
無効였다는 데에서만 그 正當性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無効」  
라는 韓日基本條約의 明文規定은 日本側의 見解와는 달리 「처음부터 無効」라  
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無効」가 「처음부터 無効」가 되기 위하여는 「強壓」에 의하여 締  
結된 國家間의 條約은 國際法的으로 어떤 性格을 지니고 있는가를 물어 보아  
야 한다.

오늘날의 國際法的 理論으로 볼 때 強壓에 의한 合併條約은 無効이나, 韓日  
合併當時의 一般의 國際法的 見解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對한  
本格的인 國際法的 理論을 전개하기에 앞서, 어찌하여 國際法的 理論이 이와  
같은 변천을 갖고 왔는가를 살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 1. 合併理論에 對한 史的變遷

歴史的으로 볼 때 合併은 戰爭이나 또는 武力的 威脅에 의하여 이루어진  
例가 絶對多數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強壓的 合併은 國際法的 合法性이 있음을 支配說은 認定했다.

國際法の 元祖라고 말할 수 있는 Grotius는 Titus Lergius가 로마議會에서 「우리 로마국이 戰爭에 의해서 습득한 領土는 가장 명예스러운 취득이며 合法的인 취득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습득한 領土를 다시 반환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國際法學者 Kohler는 戰爭이라는 것을 國際法이 認定하고 있는 한 領土의 습득권은 自然法을 근거로 한 것이며, 勝戰의 노획물로서 領土습득을 法的으로 認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見解는 強壓에 의한 合併을 合理化하는 歷史的 背景임이 틀림없다.

이런 見解가 主張되어진 背景은 西洋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格闘다.

그러니까 1914年 以前の 戰爭은 두 무사의 格闘로서 決定지은 적이 많이 있었다. 이때 패배를 당한 者는 모든 非難과 侵害 및 強壓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이 無條件의이 아니었으며 一律的이 아니었다.

格闘를 請한 者가 敗했을 때는 肉體的인 上해를 감수했던 것이다.

이는 바로 侵略的인 것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侵略的 格闘申請은 보다 큰 非難性을 갖고있다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性格이 國際法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戰爭도 正當한 戰爭과 犯罪的인 不當한 戰爭으로 大別되기 始作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소개한 Lergius 및 Kohler가 認定하는 國際法的 戰爭은 모든 경우가 正當性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戰爭을 통한 合併은 그 戰爭이 正當性을 결여하지 않았을 때를 前提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 戰爭이 不當한 侵略性을 갖고 있을 때는 이로 인한 強壓의 合併은 國際法 違反이 될 따름이다.<sup>1)</sup>

---

1) Schätzel Annexion im Völkerrecht. 1920. S. 2 Schuner. Die Annexion im Modernen Völkerrecht, im Friedens-worte. Bd 49, 1949. S 826



따라서 不當한 侵略戰爭에 對한 自國防衛戰爭만이 國際法이 認定하는 戰爭이 될 따름이다.

侵略戰爭이진 侵略戰爭이 아니건간에 勝戰國에는 強壓的으로 合併시킬 權利가 國際法的으로 認定된다는 論調는 戰爭自體의 目的이 敗戰國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며 勝戰國에는 취득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sup> 國際法効力의 安定, 바로 이것이 世界平和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던 當時의 強大國 國際法學者들의 見解는 勝戰國이 斷行한 強壓的 條約의 변경은 世界平和에 逆行하는 것이며 따라서 勝戰國의 強壓的 權力을 認定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不當한 侵略戰爭에 의하여 強制로 습득한 領土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도로 찾아올리는 敗戰國의 努力에 의한 再挑戰을 받았으며, 不當한 戰爭에 의하여 強制로 취득한 領土의 國際法的 認定은 勝戰國 學者들이 말한 것과 같은 國際法 安定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이와같은 行為는 國際法違反이란 것에 一致된 見解를 갖고 있다.<sup>3)</sup>

그리고 이는 Augustinus의 正當한 合法的 戰爭論에 의하여 발전된 理論이다. 이와같은 理論을 근거로 1908年 오지리-헝가리 國家가 Bosnien과 Herzegowina를 強制로 合併시켰을 때 끊임없는 터어키의 반발에 부딪쳤으며 그로 인하여 終局에 가서는 合併이 無効化되었으며, 英國이 第1次 大戰初인 1914年 사이프러스를 合併하고도 그의 정당성을 끝까지 主張하지 못하고 終局에 가서는 포기하고 말았다. 이당시의 強大國들의 方法을 볼 것 같으면 合併의 法的正當性을 얻기 위한 手段으로 他國의 承認을 얻을려고 努力했거나 또는 國民投票形式을 採했다. 그러나 이는 合併을 正當化시키지 못하고 좌초했던 것이다. 또한 外國으로부터 合併을 承認받았거나 또는 國民投票에 의하여 形式的인 合法節次를 받았다 하더라도 無効化된 例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1912年 터어키가 이태리와의 平和條約協商때 이태리가 트리폴리스 ( Tripolis )와 씨레나이카를 第3國들의 承認을 얻어 合併시킨 것을 無効化시킨 것이다.<sup>4)</sup>

2) Fichte, Rechtslehre 1812.

3) Schätzel S.10

4) Schätzel S.15.

German 法史에서 볼 때 強圧에 의한 合併은 國民의 저항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한 언제라도 無効가 될 수 있으며 그에 對한 時効가 없다.<sup>5)</sup>

실사 武力에 의한 強壓의 合併이 國際法違反이라는 一般說이 第1次大戰 以後에 支配說이 됐다 해도 이런 學說은 이미 1881年度에 表面化되어 있음을 알아 두어야겠다.

1881年 美 國務長官이었던 Blaine 은 合併이란 國家利益에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宣言했으며 이어서 1890年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던 美州會議가 合併을 認定치 않기로 決議하고 合併은 國際法의 無効임을 宣言했다.

이는 第1次大戰以後 國際法이 이를 一般原則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國際聯盟이 그의 憲章에다 이의 原則을 明文化했다.

다만,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원칙이 1930年代에 와서 支配說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2次大戰 以後의 Nürnberg 軍事裁判所의 判示는 이 原則이 1939年 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見解를 바탕으로 1945年 8月 8日에 체결된 4大強國 런던協定이 侵略戰爭의 拒否와 平和保護를 宣言하고 있는 것이며 UN 憲章 역시 侵略戰爭을 否定한 것이다.

이것으로 現代國際法은 侵略戰爭을 拒否하고 強壓의 合併을 國際法違反으로 認定하게 된 것이다.

실사 古典學說이 強壓에 의한 合併을 認定했다고 이에 對한 反對意見이 美州에서 1881年에 처음으로 事實化했다 하더라도 이에 對한 學說은 이미 1600年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1600年代의 燭蘭인 그로티우스다. 이를 이은 先覺者의인 學者들로서는 1800年 以前의 사람들로서 Vattel, Heffter, Amari, Laghi, Ni Pold 等을 들 수 있다.

---

5) Posse. Über das Staatseigentum in den deutschen Reichslanden.  
1974. S.16,

理由は 如何한 間に 合併을 否定하게 된 背景이 侵略戰爭을 拒否하고 國家의 분쟁은 平和的으로 解決해야 한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런 原則이 國際社會에서 활기를 띠고 實質的인 반영을 나타내기 始作한 것은 1920年代를 들 수 있다.

1929年 11月 5日 체결된 美洲 平等 및 調整條約, Saavedra Lamas 反戰爭協定 (1933年 10月 10日), 1933年 12月 21日의 몬테비데오 國家들의 義務와 權利 協定 等은 侵略戰爭을 포기한다고 했다.

특히나 上記 두개의 協定은 平和의 方法이 아닌 強壓에 의하여 合併시킨 行爲는 認定치 않기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2次大戰이 막바지에 이른 1945年 3月 6日의 멕시코에서 開催되었던 美洲會議에서 모든 國家의 領土는 尊重하며, 強壓에 의한 合併은 認定치 않기로 決議했으며 1948年 4월 30日의 보고타會議에서는 이를 再確認했다.<sup>6)</sup>

이러한 美洲의 움직임은 1938年 나치가 오지리를 強壓의으로 合併하고 다음 해인 1939年 체코를 合併한 것을 認定하지 않았다. 또한 美國과 英國은 1940年 소련이 세계의 발틱國을 合併한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認定치 않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の 例 以外에도 成功与否는 不問에 불이고라도 強壓의으로 체결된 條約에 對한 無効化鬭爭이 國際社會에 흔히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實例로서는 韓日合併條約이 우리 國民의 意思에 反하여 체결된지 5年後인 1915年 中國이 日本의 強壓에 의하여 체결된 21個 要求條約을 1922年 워싱턴會議에서 無効라고 主張했으며, 第1次 世界大戰以後 敗戰國인 對獨, 對 오지리, 對 匈牙利 및 對 불가리아에 對하여 強제로 체결된 벨사리유條約(1919), 성게르만條約(1919), 트리다논條約(1920), 노이리조약(1919) 등의 취소 소동을 들 수 있다.

---

6) Solf, Friedenswarte 1949, S.42.ff.

특히 美國의 Stimmson主義는 中國과의 問題로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이는 만주事件과 關聯된 것이다.

1932年 1月7日 當時 美國務長官이었던 Stimmson氏는 日本에 보낸 覚書에서 美國은 國際聯盟規定 및 不戰條約에 違反된 어떤 強制로써 체결된 條約約定 등 모든 것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을 明白히 했다.

이러한 Stimmson主義는 同年 3月11日 國際聯盟이 받아드리는 데까지 이르렀다.<sup>7)</sup>

Stimmson主義의 發想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1881年의 美國務長官 Blaine의 宣言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Blaine의 宣言을 土台로 合併을 認定치 않은 1890年의 美洲會議의 再確認으로 解釋된다. 또한 이는 1600年代의 Grotius의 主張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以上の 年代는 모두가 1910年의 韓日強制合併을 앞지르는 年代라는 데서 주목을 끌만 하다.

Stimmson의 主張이 1881年의 Blaine의 연속이라고 볼 때 1943年의 카이로宣言에서 大韓民國의 獨立을 保障한 것을 위시하여 1951年 9月8日 調印된 對日本 平和條約 第2條의 明文規定도 역시 1881年의 Blaine의 宣言을 근거로 한 것으로 解釋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카이로宣言이나 또는 對日 平和條約을 1910年에 강제로 체결된 韓日合併條約을 「源泉의으로」 無効化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런 풀이가 成立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카이로宣言이나 또는 對日平和條約이 國際法 違反이라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第1次大戰以後의 國際法은 明白히 強壓에 의한 領土박탈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日本領土를 박탈한 規定이라는 역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日基本條約 第2條 속에 「이미 無効」는 日本側이 我田引水格으로 解釋하듯이 1945年以後 또는 「앞으로의 無効」가 아니라 「처음부터 無効」일 따름이다.

---

7) Verdroß Völkerrecht 4Auf1 S.172.

## 2. 強壓의 두 가지 類型

韓日基本條約締結 當時 日本은 「韓國合併條約이 強制로 締結된 것은 事實이나 그 強制가 國家全體 즉 大韓帝國 全體에 加한 強制였기 때문에 有效한 것이다」라고 主張했다.

이는 바로 國家全體에 加한 強制는 有效하다는 國際法의 學說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比하여 條約締結當事者인 個人에게 強制를 加하여 成立된 條約은 無効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論理의 근거는 個人에 強壓을 加하여 問題의 條約이 成就했다 해도 當該國家의 全體國民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反抗하는 경우는 自然히 그의 効力を 상실하게 된다는 데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만일 國民全體의 反抗을 극복할 수 있으면, 이는 結果的으로 個人에 對한 強壓의 限界를 넘어 國家全體에 對한 強壓이라는 論理가 成立될 수 있으므로 다시 有效하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國家全體에 加한 強制로 체결된 條約은 有效하다는 日本側의 主張을 어느 程度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果然 國家全體에 加하는 強壓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발생된다. 國家全體에 加하는 強壓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 國際法的으로 有效하다는 見解는 強大國 爲主的인 見解에 不遇하다.

이런 強壓正當論에 모순을 指摘하고 國家全體에 加하는 強制는 있을 수 없다는 學說을 主張한 사람이 獨逸의 Weinschel이다. 條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國家가 強制를 당했다는 말은 國家를 形成하고 있는 國民全體가 強制를 당했다는 말이다. 國家에 加한 強制는 結果的으로 擬人인 國家個人(代表)이 強制 當한 것이지 國民全體가 強制當한 것은 아니다.

勿論 國家全體를 強壓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바로 그 國家의 國民全體를 武力으로써 監獄에 투옥시키는 등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實質的으로 가능한가는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고로 國家全體에 對한 強壓은 있을 수 없고 거의 모든 경우가 國家代表個人이 強制를 당하여 條約을 체결하게 되니 強制에 의한 條約은 自然的으

로 無効일 따름이다. 이것이 바로 Weinschel의 論調다.<sup>8)</sup> 따라서 韓日合併條約은 첫째 不當한 侵略行爲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無効이며 또한 日本側 主張대로 國家全體에 加한 強制가 아니고 서명當事者인 個人에게 加한 강제이기 때문에 無効이다.

### 3. 瑕疵를 근거로 한 條約

過去의 國際法은 瑕疵있는 條約中에서 詐欺, 錯誤로 인한 條約은 無効라고 했다. 그러나 유별나게 強制로 締結된 條約만은 有効하다고 主張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際法的 理論에 커다란 모순이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詐欺 그 자체가 嚴格한 意味에서 볼 때 強制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個人間의 詐欺는 該當國家間의 戰爭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인하여 유발되는 戰爭을 극복할 수 있는 國家만이 詐欺를 할 수 있으므로 強制와 同一하다.

이에 對한 구체적인 例가 1907년에 있었던 伊藤博文의 詐欺에 의한 新皇帝即位式이다.

當時 伊藤博文은 皇太子代理攝政의 뜻이었는데도 日本은 讓位로 宣伝, 祝電까지 보내 日本의 뜻대로 되고 말았다. 실사 이것이 日本의 欺罔行爲였다 하더라도 結果的으로 강제로 말미암아 有効했던 것이다.

강제는 결코 기망, 착오에 우선하는 고로 강제에 의한 條約은 認定하고 기망, 착오로 인한 條約은 認定치 않는다는 國際法の 과거 論調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4. 合併時効

日本이 「이미 無効」라는 韓日基本條約 第2條의 明文을 解釋할 때 1945年以後부터 또는앞으로의 無効라고 말하고 있는 底意속에는 韓日合併條約이 36年

8) Weinschel. Willensmängel bei vörrkehrlichen verträgen, ZV 15 (1930), S.446.

間 有効했다는 것을 根拠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은 1938年 3月 13日부터 1945年 5月 8日까지인 7年間 有効했던 나치獨逸과 오지리간의 合併條約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이다.<sup>9)</sup> 다시 말하여 보자면, 合併期間이 7年 밖에 되지 않는 오지리는 獨逸의 配當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었으나 36年間 지속된 韓國의 경우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勿論 오리지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否定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強制로 條約이 締結된 以後 有効期間의 算出 問題이다. 이에 對한 明白한 國際法上的의 理論과 規定은 없다. 따라서 이는 解釈上的의 問題다.

첫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왜정지하 속에서 우리 國民이 國內外的으로 合併에 反對한 적이 있었던 가이다. 이는 바로 國家가 完全死亡한 적이 있던 것과 直結되는 것이다.

둘째로 고찰될 것은 國際法의 時効와 國內法의 時効다.

前者의 경우 우리 國民이 國內外的으로 日本에 抗拒하고 鬭爭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例를 들 必要없이 在重慶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對日宣戰聲明(1941年 12月 9日) 및 1919年の 國內 3.1 運動 等으로도 충분하다.

이는 바로 大韓帝國의 政府는 없어졌다 해도 그와의 國家同一性을 유지한다는 데서 國家의 消滅은 없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在重慶臨時政府가 西方強大國에 의하여 承認받지 못했다고 해서, 國際法的인 國家消滅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國際法의 一般原則을 根拠로 하는 論調다.

앞에서 이미 指摘한 바와같이 美國과 英國은 소련이 1940年에 발틱國을 強制合併한 것을 承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上記國家는 國家消滅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國家는 우리 國家의 경우처럼 抗拒도 없는데도, 그리하여 臨政의 承認與否 問題도 없는데도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

9) 1943年 오리지의 合併條約을 나치의 強制로 인한 條約이기 때문에 無効가 됐다.

따라서 臨政 또는 抗拒에 對한 外國으로부터의 承認與否 問題는 旧學說에서 強制에 의한 合併이 認定될 때 論할 문제이지 強制에 의한 條約을 認定할 수 없는 正當한 國際法 理論에서는 論할 問題는 되지도 않는다.

後者의 경우는 즉 36年間 支配當했기 때문에 時間적으로 오지리의 경우와 다르다는 論調는 한 國家의 수명을 볼 때 不當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私法上의 時効를 보아도 2年 내지 30年의 時効가 있는데 國家의 수명 時効를 36年間으로 본다는 것은 明白한 모순이다.

國家의 수명은 世代가 바뀌어도 그의 國際法의 同一性이 유지되는 것이며, 人間의 歷史가 지속되는 한 國家의 수명은 지속되는 것이다.

또한 소련이 合併시킨 발틱國들이 合併된지 오늘에 이르러 36年이 되었어도 時効問題가 論難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때 日本側의 論調가 不當함을 심사할 수 있다.

##### 5. 同一性의 回復

日本이 36年間 韓國을 支配했고 大韓帝國과 合併條約을 締結했다 하더라도 첫째, 앞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不當한 強制」로 合併 條約을 締結한 것이기 때문에 國際法違反이며, 두번째, 36年間に 걸쳐 韓國民의 獨立抗爭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國民의 國家 포기 意思가 없었으므로 大韓帝國은 지속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理由를 根拠로 Verdross는 韓日合併條約은 國際法違反이라고 말했다<sup>10)</sup> 1904年의 第1次 韓日協約도 無効라고 Hans Kelsen이 宣稱했으며<sup>11)</sup> 1905年의 乙巳保護條約 역시 國際法違反이라고 Guggenheim이 말했다.<sup>12)</sup>

10) Verdross Völkerrecht S.170

11) Hans Kelsen: 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 13 Bd.1932 S565.

12) Guggenheim, Völkerrecht, 1948, Bd1, S68 및 Schlohauer, Das Wörterbuch des Völkerrecht, Bd 2, S 307



이는 바로 韓日基本條約 第2條가 1910년에 強制로 締結된 韓日合併條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締結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다」라고 말한 것 과도 一致한다.

실사 合併이 됐다 해도 強制에 依한 것이며 또한 國民의 抗拒가 있었던 限 合併시킨 國家가 (즉 日本) 戰爭에서 敗亡하고 敗亡시킨 勝戰國이 合併당한 國家를 合併시킬 意思가 없는 限 合併당한 國家는 國家로서 回復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國際法 通說이다.<sup>13)</sup>

이를 다시 말하여 보자면 日本이 強制로 大韓帝國을 合併하고 36年間 支配했다 하더라도 우리 國民의 지속적인 獨立鬪爭이 있었던고로 國家의 포기가 없었으며, 日本이 聯合國에 敗戰하고, 勝戰國인 聯合國이 日本으로부터 獨立을 도로 찾는 大韓民國을 合併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國家는 다시 回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韓民國과 大韓帝國은 國際法上的 同一性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社會에서의 實例는 우리 大韓民韓의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 上記原則에 따라 強制合併을 극복하고 再回復을 한 알바니아, 에치오피아, 오지리 및 체코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國際法的 見地에서 오지리는 1955年 5月 15日 소련과 締結한 國家條約 前文에다가 1943年 10月 30日 獨逸에 의한 強制合併은 「零」이며 「無効」라고 宣言했다.<sup>15)</sup>

---

13) 이러한 判示로서 Züricher Berufungsgericht, 1945.12.1日字 AD 1946 No.86, Schweizerischer Gerichte, Schjir 3 (1946年), S.204: 4 (1947年), S.143 및 10(1953年), S.205, E.Menzel Deutschland-ein Kondominium oder Koimperium? Jahrbuch für interat.und ausl. Öffentl.Recht I (1948年), S.43.; Stödter, Deutschlands Rechtslage(1948): Verdross Die Völkerrechtliche Stellung Deutschlands von 1945 bis zur Bildung der westdeutschen Regierung, Arch VR 3(1951), 129ff.

14) Verosta, Die internationale Stellung Österreichs. 1938 bis 1947. (1947年) S.1~9

15) Cansacchi und Strebel, Festgabe für Makarov, Z.19(1958年), S.483~508

### Ⅲ.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

韓日基本條約 第3條는 大韓民國이 唯一合法政府임을 明文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우리 憲法規定과도 一致하며, 1948年 12月 12日의 UN總會의 決議와도 合致된다. 法理論上으로 볼 때 우리 大韓民國의 樹立은 合法的인 國民投票 즉 主權者인 國民의 權力行使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니 이를 絶對多數의 外國과 UN이, 承認한 것이므로 唯一合法上에 異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國家의 唯一性이 반드시 國民의 投票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反對說도 있다.

勿論 그렇지 않을 경우도 國際社會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의 實例가 東歐共產國家들이다.

만일 國民投票에 의해서만 한 國家의 唯一合法性이 成立될 수 있다고 한다면 東歐 共產國家는 國家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大韓民國과 北傀와의 關係에서 볼 때 北傀의 政權樹立은 東歐의 경우와 嚴然히 다르다.

그의 法的理由는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國民投票에 의하여 樹立되는 政府와 國民投票없이 세워지는 政權이 同一國家內에 있을 때는 國民投票에 의하여 수립된 政府만이 合法性과 唯一性を 갖는다. 따라서 大韓民國과 北傀와의 法的關係에서 볼때 大韓民國은 무엇에도 優先하는 自由國民投票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므로 唯一合法政府가 된다.

이와같은 것에 비하여 東歐의 共產國家 內에는 한 國家內에 두 政府가 없으므로 北傀와 같지 않은 法的現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 IV. 結 論

韓日基本條約 第2條에 「이미 無効」라는 말은 「처음부터 無効」임을 뜻한다. 그의 國際法的 理由로서는

첫째, 大韓帝國 意思에 反하는 武力的 強制에 의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侵略行爲(侵略戰爭)는 不法의 行爲였기 때문에 國際法上的 強制權이 認定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美國의 Stimson主義는 1881년의 Blaine國務長官의 強制合併을 拒否하는 宣伝과 一致하며 이는 또한 1951年9月8日의 日本이 聯合國과 締結한 平和條約 第2條의 解釈에 對한 指針이 된다. 즉 同條約 第2條가 韓國의 獨立을 保障한 것은 日本의 領土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日本이 強壓의 으로 大韓帝國을 合併시켰기 때문에 Blaine原則에 입각하여 無効化시킨 것이며 이는 「처음부터의 無効化」를 意味한다. 따라서 大韓帝國과 大韓民國은 國際法上的 同一性을 유지한다. 故로 韓日基本條約 第2條內의 「이미 無効」는 「처음부터 無効」임을 確認한 것이다.

韓日基本條約 第3條는 大韓民國을 唯一合法政府라고 明示의 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國際法의 大原則인 國民에 의하여 이루어진 政府를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는 原則과 合致되는 것으로서 이에 對한 外交的 再確認이다.



#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에 關한 法的究明

(UN의 承認과 그 效果를 中心으로)

裴 載 湜

서울法大 教授·法博

韓國의 統一은 안으로 民族的 念願을 바탕으로 한 國家의 至上課題로서 追求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그것은 同時に 國際聯合이 이루어야할 目的 課題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統一問題는 一面에 있어서 國內問題인 동시에 他面に 있어서 國際問題로서의 兩面性을 갖는데에 그 特性이 있다.

國際聯合은 대한민국 成立의 기초적 절차인 5.10 總選舉의 監視 및 報告, 그 결과로서 正當히 樹立된 大韓民國 政府의 正統性(唯一合法性)에 대한 總會의 承認, 6.25事變에 있어서의 安保理事會와 總會가 취한 軍事的 및 기타의 一聯의 措置(援助), 그리고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의 回復과 統一에 관한 문제등 이른바 「國際聯合에서의 韓國問題」(The Korea Question at U.N.)를 그 憲章上的 權能에 속하는 事項으로서 다루어 왔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한국문제는 총체적으로 國際聯合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그러한 限에서 그것은 國際問題로서의 性質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世界的 組織으로서 綜合的 機能을 担当하는 國際聯合이 成立한지 어언 30년이 되는 오늘날, 그 構造的 變化와 아울러 國際政治의 多元化 現象이 展開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國際聯合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특히 統一문제의 討議, 審議에 있어서 대한민국 成立의 正當한 기초 및 그 위에 樹立된 同政府의 合法性에 관한 國際聯合 總會의 諸決議를 適切이 適用하는것—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考慮」 또는 「妥意」하게 하는 것은 名分上的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實利的인 觀點에서도 決코 不利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課題와 關係되는 두 決議의 內容과 意民를 분석, 검토하고 아울러 그 效果의 問題를 考察하기로 한다.

## I. 大韓民國 成立의 正当한 根拠에 관한 總會의 決議

第2次 世界大戰後 韓國의 獨立에 관한 Moscow協定이 流產함에 이르러 韓國 獨立問題는 결국 1947年의 제2차 U.N. 總會에 提起되었다. 同年 9月 28日 總會는 그 문제를 議題로 採択하고 政治委員會(第1委員會)로 하여금 討議, 報告토록 하였다. 그 후 11月 14日 總會는 — 소련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 韓國의 獨立을 위한 節次規定을 내용으로 하는 美國의 決議案을 絶對多數로 採択하였다. 이것은 國際聯合의 總意를 形成하는 總會에서의 韓國問題에 관한 最初의 決議이며, 또한 大韓民國 成立의 正当한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서 法的으로나 政治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主要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韓國獨立問題의 討議에 參與하도록 選출된 韓國民 代表들을 招請한것.
2. 그같은 參與를 促進하고 또한 그 代表者들이 事實上 正当하게 韓國民에 의하여 選出되었으며 또한 韓國에 駐屯하는 外國軍當局에 의하여 단순히 任命된 者가 아님을 保障하기 위하여 韓國 全域에서 旅行, 監視할 수 있으며 協議할 權能이 부여된 國際聯合臨時韓國委員會를 設置할것.
3. 韓國民의 自由와 獨立의 조속한 成就에 관하여 同委員會가 協議할 수 있는 代表者를 選出하고 同代表者들이 國會를 構成하여 韓國(中央)政府를 樹立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48年 3月 31日 이내에 U.N. 委員會의 監視下에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舉를 實施할것.
4. 選舉후 가능한 限 조속히 國會를 召集하여 政府를 조직하고 이를 同委員會에 通告할것.
5. 委員會는 事態의 進展에 비추어 中間委員會(小總會)와 本 決議의 適用에 관하여 協議할 수 있다.
6. 關係 會員國은 委員會의 任務遂行에 必要한 모든 協助과 便宜를 提供할것. 이상과 같은 내용의 總會 決議(112-II)에 의하여 設置된 委員會는 1948年 1月 8日 서울에 도착하여 同月 12日에 첫 會합을 가지고 豫定된 活動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同委員會의 任務遂行에 協力하기를 거절하고 그 占領下의 38線 以北地域에 同委員會가 들어가는 것을 拒否하였기 때문에 委員會는 2月 6日 以南地域에서만 總會에서 決議된 計劃을 實施할것인가에 관하여 U.N.

小總會와 協議하였던 것이다. 이에 관하여 小總會는 2月 26日 다음과 같은 要旨의 決議를 採択하였다.

즉, 1947年 11月 14日付 總會決議에 의하여 設定된 計劃은 實施되어야 하며, 이 目的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로서 U.N. 臨時韓國委員團은 全韓國을 통한 選舉의 監視에 임해야 하며, 그것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委員團이 接近 可能한 韓國의 地域에서 選舉의 監視에 임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와같은 小總會의 決議에 依拠하여 同委員團은 同年 4月 5日부터 11日까지 登錄과 投票를 包含한 南韓의 全選舉區域에서의 綜合的인 監視計劃을 수행하였다. 同年 6月 25日 委員團은 위의 監視를 기초로 하여 決議文을 採択하고 「5月 10日의 選舉 投票의 結果는 委員團이 接近 可能했으며 全韓國民의 約 3分の 2의 人口가 居住하는 地域에 있어서의 有權者들의 自由意思의 正當한 表現인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同年 5月 31日에 처음으로 制憲國會(代議員 198名)가 召集되었는데 後日 以北地域에서 選出될 것으로 豫定한 代議員들을 위하여 人口에 比例한 議席(約 100席)을 空席으로 남겨 두었다. 그리고 國會는 同年 6月 11日 對 U.N. 公翰에서 韓國國會는 1947年 11月 14日付 U.N. 總會의 決議에 의거하여 構成된 것으로서 全韓國 政府를 組織할 權能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같은 國會의 意思表示(國民의 總意)는 前記 U.N. 總會 決議가 그 施行過程에서 소련 占領軍의 拒否로 一部地域(38線以北)에서는 實施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成立의 法的 正當性을 阻害하는 것이 아님을 闡明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正當한 基초위에 制定된 대한민국 憲法은 第4條에서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 島嶼로써 구성된다」고 명백히 規定하였다.

여기에 附言해야 할 것은 同年 8月 25日 以北地域에는 이른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는 共產主義 傀儡集團이 成立한데 대하여 1949年 國際聯合 韓國委員團은 「……北韓傀儡政權은 占領軍의 造作物에 不過하며 同占領軍의 本國政府로부터 權力을 單순히 移讓받은 權限에 의하여 支配하고 있다. 同集團은 그 支配權을 公平한 國際機關의 監視下에 人民들에게 自由勞働속에서 同政權의 統治要求에 대한 意思表示를 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려고 한 적이

없다. ……」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 II.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에 관한 總會의 決議

1948年 12月 6日 第3次 國際聯合 總會의 政治委員會는 大韓民國 代表를 委員會에 招請하여 韓國 國民 自身の 韓國獨立問題에 관한 意見を 聽取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大韓民國 政府代表(張勉)가 同委員會에 參席하여 韓國統一의 조속한 實現과 그것을 위하여 大韓民國 政府의 合法性을 正式로 承認해 줄것을 力說했다.

12月 12日 總會는 決議 第195号(III)로써 韓國에서의 選舉에 관한 國際聯合 臨時韓國委員會의 報告書의 結論을 承認하고, 동시에 大韓民國 政府를 韓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서 承認함을 宣言하였다. 同 決議는 韓國의 統一이 아직 成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留意하면서 「U.N. 臨時委員會가 監視 및 協議할 수 있었으며 또 韓國國民의 大多數가 居住하고 있는 韓國地域에 効果的인 統治와 管轄權을 가진 合法政府(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었다는 것과 또한 이 政府는 韓國의 如斯한 地域의 有權者들의 自由意思의 正當한 表現이고 臨時委員會가 감시한 選舉에 基礎를 두었다는 것과 또 이 政府가 韓國內의 如斯한 唯一의 政府임을 宣言」 하였다. 이 決議에 의하여 國際聯合은 그 總意로써 大韓民國 政府의 正統性(合法性)을 正式로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決議의 意味內容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解釈論上 異論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특히 同決議를 援用한 韓·日基本關係條約 第3條의 規定內容에 관한 論難으로 集約될 수 있다.

同 基本條約 第3條는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聯合 總會 決議 第195号(III)에 명시된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確認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은 韓國側의 이른바 「大韓民國 政府의 唯一合法性 條項」이며 동시에 日本側의 이른바 「管轄權限定條項」으로서 基本條約의 解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정이다. 이 條項에 관한 論難의 초점은 前記 U.N. 總會 決議가—日本側의 主要한 要求에 의하여—그 規定속에서 援用되었다는 점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 조항의 規定內容의 의미를 混亂케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그 條項의 設定에 대한 兩 当事國의 真意와 입장을 보면, 韓國側은 「현재 韓半島의 以北은 不幸히도 傀儡集團이 不法으로 占拠하고 있으나, 대한 民國 政府가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은 U.N.은 물론, 世界 大多數의 自由友邦國이 承認하고 있는 바이며, 우리의 主權은 憲法에도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全韓半島에 미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日本側은 「國際聯合(總會의) 決議가 인정하는 限度內에 있어서 大韓民國 政府의 唯一한 合法性을 認定하나, 現實的으로 管轄權이 南韓에만 미친다는 사실이 고려(表現)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韓國側은 그와같은 「日本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으며, 國交正常화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 드릴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側은 「日本側이 한국 政府의 管轄權을 以南에만 限定시킨다는 표현을 두고자 기도한 것을 封鎖하는 동시에 U.N. 總會 決議에서 明示된 바와 같이 大韓民國 政府가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明確히 규정하므로써 日本國으로 하여금 이 밖으로 逸脫할 餘地를 주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의 前記 U.N. 總會 決議의 規定內容은 어떠한 法的 意味를 갖는 것이며, 또한 그것의 援用이 대한민국 政府의 唯一合法性에 어떠한 影響을 주는 것인가를 考察할 必要가 있다.

위에서 본 同決議(195-III)의 內容은 韓半島內에 國際聯合이 승인하는 正統 政府 또는 合法政府(de jure government)로서 대한민국 政府가 唯一의 存在라는 것을 宣言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北韓의 傀儡集團이 「地方的 事實上的 政權」(local de facto government)으로서 以北地域을 점거하고 있다는 事實을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같은 內容의 決議의 援用은 全 韓國을 正當하게(法的으로) 代表할 수 있는 大韓民國 政府의 國際法上的 地位에 影響을 주는 것이 못된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統治權이 現實的으로 以北地域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즉 바꿔 말한다면, 大韓民國의 國法이 北韓地域에도 그 妥當性을 가지나 現實的으로 实效性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그 條項의 規定은 日本側의 이른바 管轄權限定條項으로서 적합한 形式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본 日本側의 본래의 意圖는 결국 同條項속에 U.N. 總會의 同決議

를 不適當하게 援用하는 경도로써 — 즉 政治的 妥協으로서 奇型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韓日基本條約 第3條에 있어서의 同 U.N. 決議의 援用方式은 正確한 것이 못되나, 그 條項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對日講和條約(第2條)에서 한국의 獨立을 承認한 日本國으로서 韓國과 外交關係를 設定함에 있어 그 國家를 代表할 수 있는 合法(正統)政府로서 大韓民國 政府를 明示的(條約)으로 認定(確認)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國家는 하나의 合法政府에 의해서만 代表되는 것이 國際法의 基本 原則이며, 이는 또한 國際法秩序를 위하여 要求되는 基本 原理이다.

### III. U.N. 總會에 의한 承認의 效果

國際聯合 總會는 모든 加盟國으로 構成되며 形式上 聯合의 最高機關이다. 總會에 있어서 加盟國 會員의 意思가 直接으로 反映되어 國際聯合의 總意가 形成된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總會의 決議가 갖는 效果는 政治的으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특히 本課題와 關聯되는 것으로서 新國의 U.N.에의 加入을 승인하는 總會의 決議와 같은것은 一定한 法的 效果를 가지며 그것은 동시에 모든 會員國(따라서 法的으로는 그 決議에 反對한 國家도 包含하여)이 集團的으로 新入國에 대한 國家承認을 부여하는 效果가 아울러 認定된다(個別會員國과 新入國과의 外交關係의 設定은 別個의 문제이다). 이와같은 法理는 大韓民國 政府의 唯一合法性을 승인한 前記 總會決議의 效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妥當하며, 따라서 그 決議에 反對한 會員國들(소련陣營)도 法的으로는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承認한 것이 된다. 그것은, 前述한바와 같이, 國際聯合의 總意로서 形成된 效果이다.

끝으로 留意해야할 것은 이상과 같은 U.N.에 의한 大韓民國 政府의 合法性에 관한 承認의 效果는 南·北韓이 同時에 U.N.에 加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그 妥當性을 喪失하게 된다는 것이다.

# 韓國外交의 正統性 概念

李 昊 宰  
高麗大學校 教授·政博

## 目 次

- I. 正統性的 現代的 基準
- II. 韓國政府의 正統性概念의 內容
- III. 7.4 와 6.23 以後의 正統性概念의 力點
- IV. 結 言

### I : 正統性的 現代的 基準

政權의 統治權을 正當化하는 근거와 理論은 여러 가지나, 크게 王權神授說의 인 것과 公權契約說의 인 것 2 형태로 분류된다. 王權神授說의 正統性 主張은 過去 王位계승자문제 혹은 새로 樹立된 어떤 政權의 法統性문제 논의에 基準點으로 많이 論議되고 있었다.

神權說의 인 主張이 어떤 統治權을 正當化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일은 現代에 와서는 별로 없는 일이다. 그러나 現在도 새로 樹立된 新政權이 그 統治權의 正統性 根柢를 過去에 公認되어 正統性을 確固히 가졌던 前政權에서 찾과 그들이 그 前政權의 合法的인 계승자임을 主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現象은 傳統性和 法統性(正當한 王位계승권 혹은 國家계승권 같은 것)을 중요시하는 王權神授說의 正統性 主張과 깊은 關係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1)</sup> 또 新政權이 國家의 同一性(Identity)과 繼統性 그리고 統一領土權(Integrity)과 계승권을 前政權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國家계승권과 領土權을 內容으로 한 傳統性繼承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王權神授說의인 正統性主張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西獨政府가 1937年 以前 獨逸의 唯一한 合法的 繼承國임을 主張하고 統治權과 領土繼承의 正當性을 한편으로 이 계승권에서도 찾고 있는 것은 상기한 正統性主張의 한 좋은 例이다.

公權契約說의인 正統性主張만이 現代에 와서는 사실상 統治權의 근원과 正當性을 說明하는 지배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존·록크가 神權說을 否定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公權觀을 개발하여 統治權은 被治者의 同意 즉 계약에 의하여만 형성된다는 人民主權說을 주장하므로서 公權契約說의인 正統性主張이 確立되었던 것이다. 이 主張에 의하면 統治權은 被治者의 同意와 이들의 自然權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限에서 正當性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人民主權說에 근거하는 公權契約說의인 正統性主張은 統治權의 正統性은 國民의 同意, 적법적이고 公정한 선거, 그리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같은 自然權신장에 어느정도 寄與한 與否에 달려있다고 한다.

現代政治에서는 國民同意는 議會政治와 選舉制度로 確認된다. 그러나 統治權의 正當性은 한번의 選舉나 國民同意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定期的 選舉로 國民의 信任을 얻으므로서만 계속 正統性을 享有할 수 있게 된다. 定期的 選舉는 어떤 政權이 어느정도까지 國民의 自然權을 신장하였는지를 定期的으로 判定받는 機會가 되기때문에 定期的 選舉는 現代 民主政治時代에서는 正統性維持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시에 選舉의 公정성 역시 正統性평가에 必要한 기준이 된다.

---

1) 論者에 따라 主張이 크게 다르겠지만 共產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革命 혹은 그 政權樹立의 正當性과 必然性을 超人間的인 歷史의 뜻(宗教에서 神의 뜻과 같은것)에 찾고 있는 것도 역시 統治權의 正當性을 超人間的인 것에 찾고 있다는 측면에 神授說인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Vol. 9, p. 245. • Legitimacy • 참조.

王權神授說적인 正統性주장과 公權계약설적인 正統性주장을 綜合하여 政權이나 統治權의 正統性 형성 基準을 대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설정하여 볼 수 있을 것 같다.

1. 政權變化와 상관없이 존속하여온 오랜 傳統國家 (national identity) 와 領土 (territorial integrity) 繼承權의 繼承與否

2. 政權의 成立이 被治者인 國民의 同意에 의한 것인 여부, 그리고 政權의 존속 및 교체가 公正하고 合法的인 절차로 進行되고, 또 定期的 選舉制度에 의하여 國民의 信任을 묻어 政權에 위임된 統治權에 대하여 再確認 받고 있는지의 與否.

3. 어떤 政權의 統治結果로 統治權행사의 근본목적인 公共利益 신장에서의 공헌 여부, 여기서 말하는 公共利益은 일반적으로 國民의 自然權신장을 뜻하고, 具體적으로는 社會의 안정과 질서확립, 近代化 그리고 經濟生活向上 (經濟開發) 같은 것이 포함 된다.

모든 政權은 그 統治權의 正當性을 確保하거나 더하기 爲하여 각자의 政權이 以上에서 제시한 것 같은 基準에 준하는 合法的이고 正統性있는 統治體制임을 主張하는 것이 一般의 現象이다. 그러나 統治權의 正統性을 形成하는 要因과 근원은 現代政治에서는 더욱 복합적이고 多元的이기 때문에 不法한 政權도 그 나름의 理由를 명분으로 내세워 그 統治權의 正當性이나 正統性을 主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現實 政治에서의 이러한 現象 때문인지 Max Weber 같은 사람은 正統性있는 統治 (legitimate domination) 와 正統性없는 統治 (illegitimate domination) 를 區別하지 않고 예언자나 영웅같은 支配者가 누리는 카리스마적 正統性 (charismatic legitimacy) 을 正統性의 한 類型으로 들고 있다.<sup>2)</sup> 實際로 歐美先進國을 제외한 많은 後進國 政治에서는 統治權이 民主的인 正統性에 보다는 카리스마적 正統性에 근거하고 있어서 公權契約說的인

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op.cit., p.247.

正統性의 평가기준이 되는 상기한 세가지점은 現實性보다는 理想的이고 當爲의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sup>3)</sup>

그러나 正統性論議는 本質的으로 現實性보다는 當爲性을 中心으로 다루는 것이 좋은 問題이므로, 本論文도 위에 提示한 3가지 當爲의基準點을 기본으로하여 韓國政府의 正統性 개념을 우선 밝혀 보고자 한다. 그 後에 最近의 變化를 論하고자 한다.

## II. 韓國政府의 正統性概念의 內容

### 1) 傳統的 韓民族國家와 領土權繼承에 의한 正統性

大韓民國의 建國은 오랜 歷史를 가진 傳統的인 韓民族의 單一民族國家와 領土權의 繼承에 의한 것임을 強調하면서 韓國政府는 1948年 第一共和國樹立 이래 第三共和國에 이르기까지 그 政府의 樹立과 統治權행사의 正統性을 傳統性과 繼承權에서 찾고 있다. 韓國政府의 이러한 傳統성과 繼承權主張은 1948年 7月 17日에 공포된 最初의 憲法 前文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즉,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民國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 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4)』

이 憲法前文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大韓民國은 3·1獨立運動으로 建立된 오랜 傳統國家를 계승하여 『再建』된 國家임을 強調하여 正統性을 누리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大韓民國을 오랜 韓國民의 傳統國家의 繼承國임과 國家로서의 同一性이 따라서 韓國政府로 繼承·維持된다는 主張은 불가피하게 全

3) 現在에 와서는 金日成의 北韓統治도 非合法的인 일종의 카리스마적 正統性을 형유하고 있는 한 좋은 事例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4) 第三共和國의 維新憲法에는 “大韓民國은 三·一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계승하고...” 라고만 표현하고 있지, “三·一運動으로...建立”한 大韓民國을 “再建” 한다는 구체적 표현은 빠져있다. 1962年 12月 26日의 改正憲法 前文에도 維新憲法의 경우처럼 3·1獨立精神을 繼承한다고만 되어 있다.

韓國領土에 관한 主權까지 要求하게 된다. 한편 全韓國領土에 대한 支配權主張은 實際로 民族國家의 同一性과 계승권이 유지되고 있는 증거로서 韓國政府에 正統性을 더 確認하여주는 結果가 되므로 全韓半島에 대한 領土權主張은 韓國政府의 正統性을 確認하는 內容이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大韓民國政府는 역시 憲法條項으로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全韓國領土에 대한 支配權을 主張하고, 領土繼承權을 통해 그 正統性을 確認하고자 努力하고 있다.<sup>5)</sup>

大韓民國이 建國 이래 오늘까지 國土統一을 國家基本政策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韓國政府의 正統性 確立을 위한 努力이었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이 北韓을 포함한 全韓國領土에 대한 支配權을 回復하여야 完全한 領土繼承權을 통해서 누구의 挑戰을 받지않는 완벽한 正統性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韓國政府의 統一政策은 正統性의 確保 및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重要하게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主張하는 우리로서는 歷代의 政治指導者들이 모두 機會있는대로 非現實性에 불구하고 祖國統一을 國家의 最高목표로 역설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해왔었던 것이다.

韓國政府는 建國初부터 憲法에 밝혀져 있는 國家繼承權과 전체國土에 대한 領土繼承權을 國際적으로 承認받는 것을 目的으로 한 外交를 적극적으로 전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大韓民國의 統治權은 南韓에 限定되어 있고 허위라 할지라도 正統性을 主張하는 다른 하나의 政權이 北韓에 存在한다.는 事實 때문에 이것에 근거하는 韓國의 正統性 주장은 韓國의 國內政治에서만 받아들여 졌을 뿐이었던 것이다. 國際政治에서는 사실상 전혀 說得力이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韓國政府의 國家繼承과 全國土繼承權에 근거하는 正統性主張은 主觀的이요 感情的인 것이었던 것이다.

國際社會에서는 실사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을 認定하는 경우에도 韓國의 統治權이 全韓半島에 미친다거나 韓國이 韓國의 全領土權을 가졌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은 극히 피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外交가 이런류의 正統性을 추구한

5) 이 憲法上的의 領土규정 조항은 以後 여러차례 改正된 憲法에서도 조금의 수정도 보이고 있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

다는 면에서는 별로 成功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

美国이 1949年1月1日 韓國政府를 外交的으로 承認하고 唯一合法政府로 받아 드릴 때도 그 理由로 選挙가 可能했던 地域에서(南韓) 自由로운 의사표시로 有効한 支配權과 管轄權을 갖인 合法政府가 樹立했다는 點만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sup>6)</sup>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이 傳統國家의 繼承權이나, 全韓半島에 대한 正當한 領土繼承權을 가진 점 때문에 형성된다고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 韓國戰爭後 美国이 韓國과 맺은 相互防衛條約 第3條에 다음과 같은 內容을 넣어 美国이 認定하는 韓國의 支配權이 미치는 地域은 南韓에 限定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되지 않았으나 美国은 韓國의 主權이 全韓半島에 미친다는 점을 事實上 조심스럽게 否定하고 있는 것 같다. 즉,

『各當事國은 各自의 行政管理下에 있는 領土 또는 今後 當事國이 他當事國의 行政管理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領土에 있어서 他當事國에 대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武力 공격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sup>7)</sup>

더욱 美国은 本條約文 말미에 다시 『大韓民國의 行政管轄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美国이 認定한 領土에 대한 무력공격의외에는 美国이 韓國에 援助를 提供할 義務가 있다고 해석할 아무런 條件도 없다고 理解한다』고 強調하여 美国이 認定하는 韓國의 管轄권은 現在로서는 南韓地域에 限定되어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sup>8)</sup> 오랜 전통 끝에 1965年6월에 맺어진 韓·日條約에서도 韓國은 日本側으로부터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確認』받았으나, 역시 對美 外交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國際聯合總會의 決議 第193号(Ⅲ) 明示된』理由에 의하고 있지 그 以上の 理由로 韓國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韓·日간의 基本條約 第2條에는 『1910年8月22日 및 그 以前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간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無効임을 認定

6) 美国의 大韓民國承認을 發表한 1949年1月1日字 백악관 聲明·韓國外交의 二十年(서울, 1967)大韓民國 外務部, 外交研究院, p.294.

7) Ibid., p.412.

8) Ibid., p.413.



한다』는 内容이 있다. 이 条項으로 日本은 韓國政府를 『大韓帝國』의 繼承國으로 간주하여 大韓帝國과 맺은 모든 條約을 폐기할 正當한 權利를 가진 國家로 事實上 認定했다는 해석도 可能하게 하고 있다. 이 条項을 확대해석하여 이조항으로 日本이 韓國政府의 「大韓帝國」의 繼承權과 이 繼承權에 따른 正統性을 認定한 것이라고 主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条項은 그 해석에 많은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상기한 것과 같은 해석은 立場에 따라서는 지나친 해석이 될 수 있다. 日本은 實際로 제 2條 보다는 第 3條로서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에서 채택한 決議第 195條(Ⅲ)에 근거하여 韓國政府를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確認』하고 있다.<sup>9)</sup>

그래서 韓·日관계의 경우에도 日本이 韓國政府의 正統性주장을 「大韓帝國」 같은 前韓國政權으로부터의 繼承權때문에 받아 들인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韓國政府도 繼承權에 의한 國家의 同一性과 正統性을 主張하면서도, 무엇으로부터의 繼承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憲法에도 大韓民國은 3·1獨立運動을 계승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上海臨時政府라든가 「大韓帝國」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런 事實로보면 韓國政府도 過去 어떤 韓國政權으로부터의 繼承權에서 그 正統性의 근거를 찾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2. 國民의 同意와 公定한 選舉에 의한 韓國政府의 正統性

韓國政府의 統治力에 正當性과 正統性을 주는 가장 重要한 事實上의 근거는 그 政府樹立이 韓國民 絶對多數의 同意에 의해서, 특히 國際聯合總會가 파견한 유엔臨時韓國委員團의 감시하에 공정한 선거로서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國際聯合總會를 비롯한 여러나라가 韓國을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할 때 근거로 삼은 것도 바로 이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韓國外交가 政府樹立後 즉각적으로 美國을 비롯한 많은 自由陣營의 國家로부터 外交的 承認

9)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 1bid., pp.534 ~ 535.

을 얻어 正統性을 國內外的으로 다지는에 成功할 수 있었던 근거도 이점에서 찾았던 것이다.

어떤 政權의 正統性이 國際的으로 認定받는 가장 重要한 手段은 各國의 外交의 承認이고 특히 戰後世界政治에서는 國際聯合의 承認이기 때문에 韓國政府는 正統性 強化를 위해서도 유엔과 보다 많은 國家로부터 國家 承認을 얻으려고 극력 努力하였다. 韓國外交는 1948年 파리에서의 第3次 國際聯合總會가 48對6(기권1)이라는 圧倒的 多數로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을 認定하는 決議案이 통과된 이후 계속하여 國際聯合會員국이 되어 그 正統性을 確固히 하려고 努力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和 正統性은 그 政府樹立을 후원하고 감시한 國際聯合의 承認을 무엇보다 重要한 內容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韓國은 北韓政權樹立은 극히 소수인 北韓共產主義者들이 恠暴 暗투표에 의해 韓國民의 同意를 조작하여 強制로 된 것으로 전혀 不法한 행위로 단정하고 北韓의 統治權을 전적으로 否定하였던 것이다. 더욱 北韓共產政權은 國際聯合이 파견한 國際的 기관에 의하여 그 선거의 公正성이 객觀적으로 감독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大韓民國이 누리는 것 같은 正統性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韓國政府의 正統性은 전혀 挑戰받을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上述한 것 같은 論理에 근거한 韓國政府의 正統性主張을 극단한 형태로 적용하려고 한것이 近來까지 韓國外交의 重要原則이었던 하인 스타인 原則이었던 것이다.

大韓民國 國會가 장차 유엔監視下에 실시될 선거로 大韓民國 國會로 들어올 北韓地域의 代表를 위해 議席 100을 留保시킴것도 國聯감시하의 선거를 통해 얻은 韓國政府의 正統性을 全韓國民의 信任을 強調 하기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後에 韓國政府가 南北문제의 解決을 위해 유엔감시하의 公正한 선거로 南北韓 人口비례로 國會를 구성하고자 主張하였던 것도 公正한 선거에 의한 國民의 同意에 의해서 成立한 統治權만이 正当性和 正統性을 享有할 수 있다는 宗敍 主張의 되풀이였던 것이다.

韓國은 定期的으로 또는 政治的으로 必要할 때마다 大統領과 國會議員을 선거로 뽑거나 國民의 信任을 묻는 행위로 政府의 正統性을 確認하고, 또 이선거에 대한 언커크의 감시와 總會에 대한 보고를 통해 國際的으로 韓國政府가 누

리는 正統性을 계속 外交的으로 再確認 받아왔던 것이다. 韓國政府는 實際로 이런 方法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正統性을 形成하는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正統性은 地域的으로 全韓國의인 것이라고 主張되기에는 事實上 여러 條件을 欠하고 있다는 점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을 認定한 유엔決議文 內容이 大韓民國이 韓半島 全域에 걸친 全國的 政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엔위원단의 감시가 可能했던 地域 다시 말해 南韓에서 選舉로 成立한 唯一合法政府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또 이 決議文은 유엔이 유엔위원단의 활동이 不可能했던 地域 즉, 北韓에 대한 별개조치에 대한 決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총회의 그 決議文이 大韓民國이 韓半島全域에 걸친 全國的 政府라고 宣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특별히 선언하지 않고 있다하여 그 內容을 韓國側에 유리하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北韓地域에 대한 유엔의 행동은 이 決議文으로 制約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現在 國內外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南北韓 유엔同時加入같은 것이 실현될 경우, 이것은 유엔이 北韓地域에 대한 北韓政權의 統治權을 承認한 것인데, 例하여 이러한 유엔의 행위가 韓國의 唯一合法性을 認定한 유엔決議文內容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北韓이 韓國과 비슷한 비율로 國際社會에서 國家로서 外交承認을 받을 경우에는 단순한 유엔承認, 유엔會員國으로 加入한 地位 혹은 外國의 外交承認이 南北韓간의 正統性 論爭에는 별 意味를 못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將次는 유엔 및 外國의 外交承認이 南北韓이 主張하는 正統性 개념구성에 過去와는 달리 별로 큰 問題가 되지 않을 것 같다.

### 3. 統治結果에 의한 正統性

모든 政權의 統治權은 특히 現在와 같은 世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統治의 結果가 全体國民의 自然權등 公共利益 신장에 기여함으로써만 合法化되고 正統性을 主張할 수 있으므로 韓國政府의 正統性概念에도 이런 內容이 強하게 내포되어 있다. 특히 最近에 韓國政府가 그 正統性을 主張하는데는 北韓共產

政權이 不法的으로 樹立했을 뿐 아니라 金日成 一人獨裁의 統治結果가 北韓人民의 노예와 經濟침체를 가져온 것에 근거하여 韓國의 正統性을 내세운다. 大韓民國은 그 統治結果로 國民 전체가 前에 비하여 훨씬 잘살게 되어 이 結果만으로도 韓國側이 民族의 正統性을 享有하기에 足하다는 主張인 것 같다.

大韓民國은 國民의 同意에 의하여 合法的으로 樹立되었을 뿐 아니라, 그간의 統治로 눈부신 祖國近代化 經濟開發을 이룩하여 祖國을 國際社會에서 영광된 存在로 개발하여 그 正統性이 自明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最近에 와서는 韓國의 正統性概念에는 祖國의 近代化 및 경제개발에의 기여가 韓國側에 正統性을 부여한다는 主張이 첨가되어 있다. 이것은 韓國民을 南北政權중 어느 쪽이 더 잘 살게하는 競争에 韓國이 이기고 있는 現實이 韓國의 統治權에 正統性이 더욱 주어진다는 主張이기도 하다. 最近에 와서는 韓國政府가 그 正統性을 主張할때 다른것 보다 이점을 더 내세우고 이 점 때문에 自信感을 얻고 있는것 같다.

世界強大國간의 平和共存을 추구하는 趨勢로 30年間 存在하여 온 2個의 韓國政權을 現實로 認定하여 南北間에도 過去와 같은 正統性論爭이 意味를 잃고 있는 오늘에 와서는 韓國政府가 北韓에 비하여 월등히 이룩한 祖國近代化와 經濟개발에 근거하여 正統性을 主張하는 것 만이 國內外的으로 상당한 說得力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項에서 7.4共同宣言과 6.23宣言을 契機로 韓國의 正統性 개념에 變化가 일고 있는 것을 論述하면서 더 論하여 보겠다.

### Ⅲ. 7·4와 6·23以後의 正統性概念의 力点

大韓民國은 政府樹立이후 지난 四半世紀동안 매우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正統性主張을 지키기에 상당히 努力하여 왔었다. 現實的으로 祖國의 北쪽 半은 共產主義者가 支配하고 있어 그 統治權은 사실상 南韓에 限定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韓國政府가 韓半島에서의 全韓國을 代表하는 唯一合法政府임과 正統性을 主張하기

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욱 世界政治의 勢力分布가 多元化하여 韓國外交의 強力한 지원국인 美國의 영향력이 유엔總會를 비롯한 國際社會에서 크게 감축된 70年代에 들어와서는 韓國의 唯一合法性主張과 正統性主張은 더욱 공허한 것이 되어 종전과 같은 立場을 堅持하기에는 많은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情勢라는 객관적 條件변화 이외에 韓國이 主張하여온 唯一合法性이 政治的 스펙트럼으로만 계속남아 있었지 法理論으로 보완되어 확고히 자리잡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큰 시련에 직면하여 가고 있었던 것이다. 獨逸의 경우는 西獨政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法理論으로 그 唯一合法性을 지킬려고 努力했었던 것이다. 즉,

첫째는 獨逸國家縮約理論 ( contraction doctrine )이다. 西獨政府가 1937年이전 獨逸聯邦共和國의 唯一하고 合法的인 계승국으로 同一性을 유지하고 있으나, 現實적으로 東獨地域이 外國占領下에 있어 그곳까지의 主權행사는 저지되고 있어 西獨은 唯一合法國이지만 축소된 獨逸國으로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核心國家理論 ( core-state doctrine )으로도 알려져 있다.

둘째는, 『非現實的 두 國家理論』이란 것으로 이것에 의하면 西獨政府는 主權國家의 要件을 모두 갖춘 民主적이고 合法的인 한개의 獨逸政府나 全獨逸國으로는 活動 못하고, 東獨은 民主的正統성이 전혀 결여하고 있어서 政權성을 못 가진다고 한다. 이 見解에 의하면 全獨逸國은 領土의 一部를 支配하는 國家와 다른 것으로 현재에는 휴식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세째는, 西獨政府를 獨逸연방공화국의 계승자로 보나, 新國家로서 前獨逸共和國과 同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見解에 의하면 東獨地域을 外國支配下에 있어 회복되지 않은 獨逸領土로 본다.<sup>10)</sup>

獨逸의 경우는 以上에 약술한것 같은 잘 研究된 많은 法理論과 東獨을 承認하는 國家에 대하여는 보복할 수 있는 막강한 經濟力에 불구하고 西獨政府는 그 外交에서 결국 하인 스타인原則을 결국 폐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西獨이 對東獨관계에서 누리는 優位에 비할만한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韓國政府로서는 같은 理由에서의 正統性主張의 고수는 더욱 어려워져 새로운 活路를 찾아야 했던 것이 韓國政府가 7.4 共同宣言과 6.23 宣言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7.4 共同宣言과 6.23 宣言에는 韓國政府의 正統

10) Ferenc A. Vali, The Quest for a United German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pp. 54 ~ 55.

性主張의 근거를 종전과 다른 次元에서도 찾으려는 의도가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政府는 現在에 와서 그 正統性主張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더 強調하려고 試圖하고 있는 것 같다.

(1) 韓國의 正統性主張의 目的은 어디까지나 祖國의 統一成就에 있는데 冷戰의 思考로서 繼續 北韓을 외면하기만 하는 것은 結果的으로 韓國의 統一可能性을 더 감소시킨다. 따라서 韓國이 現단계에서는 北韓과의 平和共存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意味에서 民族의 同一성과 正統성을 지키는 보다 現實的인 길이 될 수 있다. 南北對決보다는 南北 平和共存이 韓國의 正統성을 더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지에서 韓國의 正統性概念에 平和共存主張이 첨가된 것 같다. (7·4 共同宣言).

(2) 國際的 現實로 봐서 祖國統一의 可能性이 사실상 共產強大國인 소련과 中共과의 外交關係가 斷絶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不可能하므로, 韓國의 正統성이 신장될 수 있는 祖國統一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도 共產國家에게도 外交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 現實的이다. 다시 말해 韓國政府의 正統性主張은 韓國이 소련과 中共등과 外交關係를 가짐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그 正統성이 國際社會에서 一般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6·23 宣言).

(3) 종전과 같은 理念에 입각한 外交가 民族의 同一성과 正統性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反對로 實際로는 民族의 同質성을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民族의 正統성과 同一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實用主義的 立場에서 脫理念의인 方向으로 外交를 하여야 한다.

(4) 國家繼承權이나 領土繼承權같은 過去에 기준하여 正統성을 찾기보다는 南北 政權이 자기 現在 그리고 將來에 이룩할 全民族과 國家에 이룩한 업적에서 正統성을 主張할 근거를 찾는 것이 옳고 意味가 있겠다. 다시 말해 正統성의 기준점을 政權이 成立하던 過去에 두지 말고 統治結果가 나타나고 있는 現在와 未來에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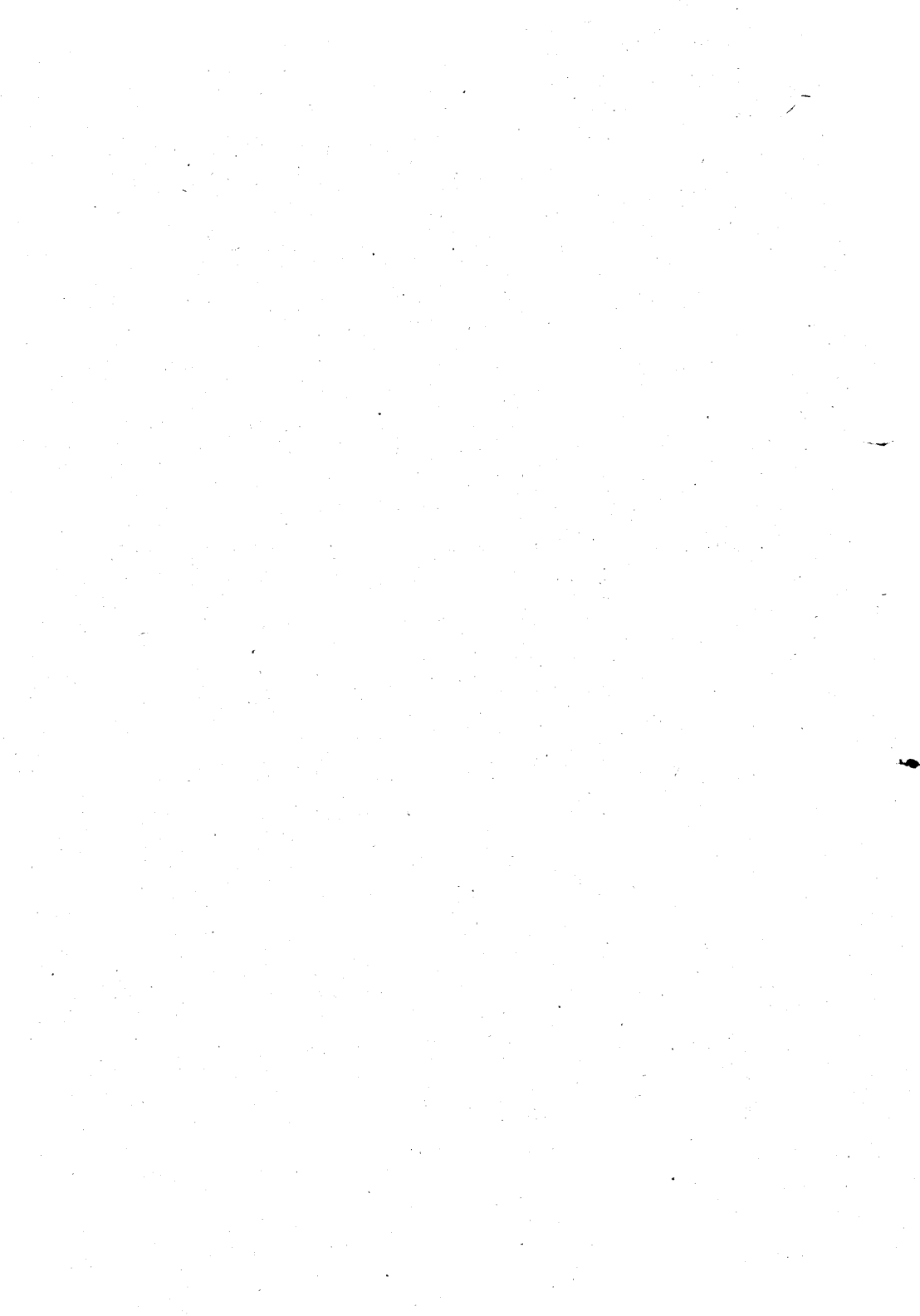
(5) 正統性 競爭에서 具體性없는 名分論을 떠나 祖國의 近代化나 經濟개발에 기

여한 實質的 結果를 正統性측도의 기준으로 삼자.

#### IV. 結 言

以上에 열거한 韓國政府의 正統性概念에 추가된 概念 혹은 內容이 筆者의 獨斷적 추출이 아니고 7·4共同宣言과 6·23宣言이 포함하고 있는 內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70年代에 들어와서는 韓國外交의 正統性 概念에는 事實上 革命같은 큰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실사 以上의 內容이 지나친 확대 해석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런 면이 있을 것임을 筆者도 否認하지 않는다. 종래의 正統性概念에 큰 「改革」이 가해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그리고 本論文의 I章에서 제시된 正統性判斷의 기준 3가지점 중에서, 南北關係에 있어서는 이제는 점차 3번째 기준 즉, 統治結果로 政權의 正統性을 따지자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韓國의 正統性論은 名分보다는 業績中心으로 또 過去보다는 現在와 未來指向의인 立場에서 政權의 正統性은 주어질 것이라기 보다는 各政權이 만들어 나간다는 方向으로 發展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 東西獨 協商과 民族史的 正統性

(1972年 基本條約 締結 中心으로)

李 源 明  
平和統一研究所 研究委員

## 目 次

- I. 序 論
- II. 獨逸統一民族史의 性格
- III. 東西獨의 民族史的 正統性 論爭
- IV. 結 論

### I. 序 論

1972年 12月 東西獨은 歷史的인 基本條約을 締結함으로써 法的으로 規制된 平和共存關係에 들어갔다.

實로 이로 인해 歐洲平和에의 劃期的 巨步가 이루어졌고 美·蘇平和共存體制의 礎石이 세워졌다 하겠다. 그러나 東西獨基本條約은 獨逸의 民族의 視角에 비추어 보는 경우 아무리 높히 評價를 하려 해도 失敗의 作品이라고 看做하지 않을 수 없다. 卽 同基本條約에는 民族統一에 관한 文句는 한마디도 言及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民族統一의 念願을 規定하지 않고 있는 兩獨基本條約은 獨逸分割主義를 내세운 東獨호네크의 2民族 2國家論을 適用하는 경우 民族 分裂에의 길을 事實上 활짝 터 놓고 있다.

西獨 브란트 首相은 民族的 單一性을 回復 保存하여 統一에로 나아가기 위해 兩獨協商過程에 있어서 열렬히 民族問題를 提起하였지만 東獨의 唯物史觀에 立脚한 非獨逸의 觀念 때문에 究竟은 獨逸民族問題의 解決을 完遂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兩獨은 民族問題에 對한 激烈한 意見對立을 解消하지 못하고

基本條約 前文에 「民族問題를 포함한 諸般根本問題에 對한 兩獨間의 見解差異에도 不拘하고」<sup>1)</sup> 라는 文句를 挿入함으로써 協商을 終結지었다. 더욱기 하나의 獨逸을 前提로 하는 獨逸人의 國籍問題는 協商議題로 조차 抬頭하지 못했다.

獨逸 民族意識이 보다 強하고 세차게 發揮되었더라면 獨逸人自身들이 民族自決權 原則에 立脚하여 統一意志의 文句를 同基本條約 內容속에 分明히 規定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對해서는 어느 強大國도 敢히 否定하고 나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75年間的 너무나 짧은 獨逸統一民族史와 民族意識을 가진 獨逸人으로서, 더욱기 히틀러의 反人類的 罪過를 自覺하고 자기네들의 國家主義的 統一民族史조차 論하기를 꺼려하고<sup>2)</sup> 있는 獨逸人으로서,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國際法上的 獨逸化를 嚴格하게 制約하고 있는 條項(條約 前文, 才 8條 및 其他附屬文書)이 兩獨基本條約에 挿入됨으로써 獨逸民族統一에의 길은 法形式上으로 封鎖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民族統一에의 길을 法的으로 閉塞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西獨 브란트首相의 歷史的 功勞이자 獨逸民族意識의 勝利이라 하겠다.

民族問題에 對한 東西獨間의 激烈한 意見差異는 基本的으로 哲學, 思想 및 民族史觀에 對한 本質的 見解對立에서 出發하고 있다.

周知하다시피 1871年 以來의 獨逸統一民族史는 75年間이라는 너무나 짧은 時間的 傳統을 가지고 있지만 兩次大戰의 人類的 大悲劇과 直結되어 世界史展開에 決定的 影響을 주었다.

獨逸統一民族史의 프로이센의 軍國主義的 性格에 對해서는 오늘날 世界史家들이 날카로운 批判을 加하고 있지만 獨逸人 自身들도 깊은 史的 反省을 하고 있다.

1)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1 Dezember 1972, 參照.

2) R.H. Tenbrock, Geschichte Deutschlands, 1965, 金相泰 林采源 共識, 獨逸史(上), 著者 序文參照.

東西獨은 다같이 人種의 民族主義亡靈인 히틀러의 大게르만主義에 對해 여지 없이 무서운 叱責을 던지고 獨逸特有의 國粹의 抵抗의 民族主義로부터 脫皮하고 있다.

오늘날 西獨史家들은 分斷獨逸의 生存과 活路를 찾기 위해 統一民族史의 새 方向과 歷史意識에 對한 再創造作業을 活潑히 展開하고 있다. 이와 同時에 西獨政府도 獨逸統一民族史의 한 支流로서 脈脈히 흘러온 自由主義의 傳統을 土臺로 하여 獨逸民族의 統一과 自由理念의 現實을 國家最高目標로 設定하고 힘차게 推進하고 있다. 이것은 勿論 獨逸의 民族의 單一性和 國家的 單一性 (Die Nationale und Staatliche Einheit)을<sup>3)</sup> 明白히 規定하고 있는 西獨基本法을 土臺로 하고 있다.

西獨 브란트首相은 美·蘇強大國의 틈바구니 속에서 獨逸民族의 生存權을 確保하기 위해 하나의 獨逸, 하나의 獨逸人을 부르짖으면서 現狀維持인 歐洲平和概念과 現狀打破인 獨逸統一概念을 奇妙하게 連結시켜 소위 歐洲平和 속의 獨逸統一에의 길을 提示했다.

이와 같은 1970年代 브란트의 1民族 2國家論에 立脚한 平和統一方案은 獨逸人의 天才인 現實主義的 思考方式에 依해 創案된 것이다. 마치 1870年代 「비스마르크」가 當時의 狀況으로 보아 至極히 現實主義인 鐵血統一政策을 採択하여 기어코 獨逸統一民族國家를 創設하였듯이 100年後인 1970年代의 브란트는 世界的 火藥庫 속에서 獨逸民族의 生存을 위해 철저히 現實인 東方政策을 내세워 歐洲平和의 基礎를 세우고 同時에 統獨의 基盤을 造成하고 있다.

그런데 東獨은 1871年 以來의 統一民族史를 反民主主義的 軍國主義者의 歷史라고 規定하고<sup>4)</sup> 根本的으로 否定한다. 맑스·레닌主義에 立脚하여 獨逸史를 觀照하며 階級鬥爭史로 再構成하고 있다. 특히 東獨은 1848年 3月革命

3)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Präambel 參照.

4) 獨逸民主主義共和國. 國家評議會議長 울브리히트, 國際新聞協會會議 演說文 (1970.1.19) 參照, Neues Deutschland (東獨新聞) 20. Januar 1970, 및 國土統一院編, 東西獨關係文獻集, 1973.9, p.166.

의 勞動階級運動의 性格을 크게 浮刻하여 東獨政權의 革命的 正統性과 連結시키고 있다. 獨逸民主主義共和國(東獨)이 3月革命에서 獨逸勞動階級이 追求하고 希望했던 獨逸의 理想的 平和國家<sup>5)</sup> 라는 것이다.

이러하여 東獨 호네크는 소위 2民族 2國家論(Die Zwei Nationen und Zwei Staaten Theorie)를 내세워 獨逸勞動階級の 平和國家인 東獨과 資本家階級の 帝國主義的 傳統을 가지고 있는 西獨을 도저히 統一시킬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露骨의으로 分立主義的 態度를 밝히고 있다.

將次 獨逸民族이 西獨 브란트의 1民族 2國家論을 挾하여 民族統一에로 나아갈지 혹은 東獨 호네크의 2民族 2國家論(Die Zwei Nationen und Zwei Staaten theorie)을 挾하여 民族分裂에로 나아갈지 그것은 歷史의 神만이 알 수 있는 未來之事에 속한다.

그러나 人類文明의 歷史 科學的 思考에 立脚해서 판단해 볼 때 獨逸統一은 獨逸民族自決權의 所管事項이며 獨逸統一 民族史의 傳統, 即 民族史의 正統性에서 發揮되는 獨逸民族의 創造力에 달려 있다는 것을 分明히 알 수 있다.

## II. 獨逸統一民族史의 性格

### 1. 獨逸民族主義 抬頭

무릇 英, 仏等 西유럽에서 탄생하고 발달한 民族主義는 본시 市民階級の 主導에 依해 反封建的 政策을 目的으로 한 市民民族主義로서 이른바 自由民主主義와 깊이 연관되었다. 그러나 19世紀初에 比較的 늦게 出帆한 獨逸民族主義는 나폴레옹 戰爭期를 通하여 強烈한 外勢意識 속에서 抬頭한 抵抗民族主義의 性格을 本質로 하고 있다.

---

5) 獨逸民主主義共和國內閣首相 W. Stoph: 人民議會報告文, Protokoll der 41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n 20. März 1970. 獨逸國土統一院編, 前掲書, p.309.

이리하여 獨逸民族主義가 創造한 統一民族史도 必然的으로 個人보다는 國家를 至上概念으로 看做하는 國家主義的 性格을 가지게 되었다.

戰後 美·소中心의 國際政治秩序가 其實 國家主義的 獨逸民族主義를 攘滅시킨 土台위에서 形成되었기 때문에 傳統的인 國粹的 獨逸民族主義의 復活에 依한 獨逸統一이란 그리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오늘날 東西兩獨은 다같이 國粹的 獨逸民族主義에 對해서 날카롭게 批判을 加하고 있으며 統一民族史에 對한 歷史意識의 再創造作業을 展開하고 있다.

獨逸의 統一民族意識은 1806年 나폴레옹 軍隊에 依한 神聖로마帝國滅亡과 더불어 그 萌芽가 싹트기 始作했다<sup>6)</sup>.

神聖로마帝國을 求心點으로 하여 300餘個 小領封國家(Territorial Staat)가 構成하고 있던 獨逸聯邦體는 나폴레옹에 依해 領土의 折半이 仏蘭西에 事實上 併合되어 버리고 30餘個의 領封君主國으로 分割되어 버렸다<sup>7)</sup>.

이와 같은 獨逸分割의 狀況속에서 仏蘭西革命의 影響을 받아 괴테(Goethe), 칸트(Kant) 등 獨逸知性에 依해 發展되어 오던 獨逸의 世界市民思想은 及其他 民族主義에 轉化하기 始作한다. 仏蘭西革命의 自由理念을 讚揚하던 피취테(Fichte)가 民族主義의 旗幟를 높이 들고서 나폴레옹 軍隊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祖國愛와 民族統一을「獨逸民族에게 告」(Reden an die deutsche Nation 1808)<sup>8)</sup>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예나(Jena)를 侵攻(1806)하는 나폴레옹 軍隊의 砲聲속에서 헤겔(Hegel)은 그 有名한 精神現象學(Phänomenologie des Geistes)을 脱稿하고 絶對自由를 實現하는 神話의 人格體로서의 民族國家觀<sup>9)</sup>을 獨逸人 가슴속에 깊이 呼訴했다.

6) C.J.H. Hayes, Nationalism,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60. 및 車基濤譯, 民族主義, 文明社 1975, p.98.

7) 金成燾著, 近代西洋政治史, 白映社, 1958, p.176.

8) J.G.Fichte著, 金致鎮譯, 獨逸國民에게 告함, 三星文化財團 1971, 參照

9) George H.Sabine; A.History of Political Theory, George G.Harrap & Co.LTD, London, 1959 pp.529 ~ 535

이처럼 外勢意識 속에서 國家意識을 強調하면서 抬頭한 獨逸民族意識은 모스크바遠征을 失敗한 나폴레옹과의 라이프찌히 民族戰爭(1813年)을 契機로 하여 全獨逸의 燎原의 불길처럼 솟아 올랐다<sup>10)</sup>.

그러나 나폴레옹의 失脚以後 歐羅巴의 國際政治는 獨逸內의 民族主義의 물결과는 전혀 180度로 相反되는 復古의 反動的 暴風雨를 맞이하기 始作했다.

周知하듯이 史上初有의 一大國際會議인 1814年 위인會議를 통해 오스트리아 메테르니의 復古의 國際政治시스템이 登場한다. 메테르니는 나폴레옹戰爭에 依해 攪亂된 歐洲平和의 回復이라는 政治名分을 내걸고 反動的 正統主義에 立脚하여 封建의 舊秩序를 復活시키기 始作했으며 革命的 民族主義를 단호하게 단압했다<sup>11)</sup>.

이어 그는 나폴레옹이 分割編成해 놓은 獨逸領土를 改編하여 39個 領封國과 4個 自由都市로 構成된 獨逸聯邦을 設置하여 獨逸內의 主導權을 掌握하고 獨逸民族主義者를 彈壓했다. 其實 메테르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帝國의 維持를 위한 歐洲의 政治人으로서 오스트리아의 多民族性 때문에 反民族主義者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獨逸統一에는 靚心조차 없었다.

따라서 獨逸聯邦이란 오스트리아의 獨逸霸權掌握을 위한 메테르니의 政治的 道具에 不過했고 獨逸統一과는 아무런 關連性이 없었다.

한편 위인會議의 結果, 푸로시아는 나폴레옹에 依해 分割된 領土를 回復하여 獨逸聯邦內에서 오스트리아와 맞먹는 強國으로 登場하고 反封建의 改革을 活潑히 展開했다.

其實 푸로히센은 1806年 예나(Jena)와 아우어슈테트(Auerstett) 兩戰爭에서 나폴레옹에게 무참하게 敗北한 以後 內政改革의 必要性을 痛感하고 1807年 슈타인(Stein)에 依한 封建的 農奴制의 廢止를 契機로 하여 소

10) 林采源著, 獨逸近代史研究, 一潮閣 1975.p.81

11) Paul Reut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George Allen & Unwin LTD, Paulton and London, 1958. pp. 46 ~ 52.

위 "위로부터 (Von Oben)의 革命"을 遂行하기 始作했다<sup>12)</sup>. 이리하여 프로이센에서는 封建的 土地貴族인 융커 (Junker)階級이 近代的 市民階級을 제쳐 놓고 스스로 改革의 主体로 登場하여 王權을 頂点으로 한 旧制度의 維持속에서 独逸近代化를 推進하는 独特한 独逸的 現象을 露呈하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市民階級의 革命을 통해 封建的 貴族階級을 打倒하고 推進된 仏蘭西近代化와는 아주 对照的이다.

프로이센의 융커階級은 프로이센의 勢力膨脹과 比例하여 그 勢力基盤을 擴張해 나갔으며 同時에 융커가 主導한 위로부터의 独逸近代化運動에 依해 独逸市民階級이 封建的 王權의 庇護下에 成長하기 始作했다.

独逸産業化와 더불어 새로 登場한 独逸市民階級은 1834年 独逸封建國 相互間의 關稅同盟 (Zollverein) (오스트리아 除外)<sup>13)</sup>을 맺는때 成功함으로써 飛躍的으로 發展한다. 그후 이 關稅同盟은 独逸의 單一經濟圈形成에 決定的 作用을 하고 其實 政治的統一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저 有名한 國民經濟學者 프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t)가 世界主義的 古典經濟學派를 熱火 같이 批判하고 「政治經濟學의 國民的體系」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를 著述하여 独逸民族의 政治經濟的 統一을 主張한 것<sup>14)</sup>도 바로 이때이다.

独逸關稅同盟이 發効된 一年後에 바이에른의 資本家들은 뉘른베르크에서 튀르에 이르는 独逸最初의 철도를 부설했고 1837年 브르시호는 베르린에 最初의 機械工場을 建設했다. 유명한 独逸鐵鋼會社인 구르프는 英國을 능가하는 높은 質의 새로운 鑄鋼을 生産했다.

바야흐로 独逸의 國民經濟는 急速히 胎動하기 始作했고 分割独逸된 小領封國

12) H.Rosenberg, Bureaucracy, Aristocracy, and Autocracy. The Prussian Experience 1660~1815, p.203. 및 Friedlander & Oser, Economic History of Modern Europe. 1953, p.32.

13) Jurgen Kuczynski;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Voraussetzungen der Revolution von 1848~49 (Berlin, 1948), s.15.

14) F.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Neudruck Von H. Waentig, Fünfte Auflage, s.268.

들을 社會經濟的으로 結合시켜 나가기 始作했다. 새로 登場한 獨逸市民階級은 經濟的 利害關係로 말미암아 獨逸民族의 統一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反民族主義的인 멧테르니히 政治시스템과의 衝突을 避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獨逸市民階級은 仏蘭西革命을 憧憬하여 民族統一과 自由의 理念을 부르짖는 獨逸知性人層과 이데올로기 面에서 굳은 精神的 結合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편 1830年代에 들어와서는 民主主義 革命과 民族主義運動이 歐羅巴到處에서 遼原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1830年의 仏蘭西 7月革命, 1836年의 英國 차아티스트 勞動運動, 그리고 1831年 以後의 伊太利 마치니의 民族統一運動 등은 멧테르니히의 反動的 國際政治시스템을 崩壞시키기 始作하였다.

더우기 勞動者層의 階級鬭爭이 抬頭하였던 1848年의 仏蘭西 2月革命은 歐羅巴의 革命무드가 最高潮에 이르는 契機가 되었다. 마침내 同年 3月 獨逸에서도 오스트리아 首都 비엔나의 群衆이 打倒멧테르니히의 口號를 絶叫하면서 暴動을 일으켰고 同時에 프로이센의 首都 베르린의 市民도 民族統一과 立憲制 實施를 내세워 烽起하였다.

30餘年동안 歐羅巴 國際政治를 주름잡아 오스트리아의 國際的地位를 유지하고 있던 復古主義者 멧테르니히는 自由를 부르짖는 群衆의 壓力에 依해 失脚 당하고 英國으로 逃亡해 버렸다. 드디어 그 유명한 反動的인 歐羅巴 위인體制는 幕을 닫게 된 것이다.

이 群衆烽起가 바로 獨逸近代史에 新紀元을 劃하고 있는 3月革命이다.

3月革命은 獨逸統一民族史가 自由民主主義를 扞하느냐 혹은 國家至上主義를 扞하느냐 하는 두 갈래의 史的方向을 決定하는 分水嶺이 되고 있다.

獨逸史家들도 1848年 3月 革命을 大轉換點으로 看做하여 “三月前期” Vormärz와 “三月後期” Nachmärz라는 政治用語를 政治史에서 使用하고 있다 15).

---

15) Heinrich Heffer; Die deutsche Selbstverwaltung in 19 Jahrhundert, 1950, 및 Karl Obermann; Einheit und Freiheit, Die deutsche Geschichte Von 1815 ~ 49 등에서 試圖(現在 普遍的으로 容認되고 있음)



## 2. 1848年 3月革命失敗과 統一民族史 性格

오늘날 獨逸分斷의 民族的 悲劇은 獨逸自由主義者들이 3月革命을 失敗하고 封建的 容커 (Junker) 階級인 비스마르크가 統一民族國家를 創設함으로써 獨逸統一民族史가 國家至上主義를 挾하였는데 그 根本 要因이 存在한다.

獨逸市民階級과 自由主義的 民族主義者들이 民族統一과 自由理念의 崇高한 目的을 가지고 일으킨 3月革命을 失敗한 後, 封建的 土地貴族層인 容커는 프로이센王權을 頂點으로 하여 獨逸統一과 近代化의 主役으로 登場하였다.

이것이 바로 獨逸民族史의 主流가 西유럽民族史의 自由主義 모델과 전혀 相異한 國家主義方向을 挾하게 되는 基本要因이다.

周知하다시피 英, 仏等 西유럽의 民族統一과 近代化運動은 封建的 旧秩序를 打破하고 새로운 自由社會를 創造하려는 市民階級の 革命的 精神과 그들의 強力한 主導에 依한 「밑으로부터의 革命運動」에서 出發하였고 革命的方法을 通해 成就되었다.

그러나 獨逸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달랐고, 이로 因해 獨逸民族史는 必然的으로 西유럽民族史와 相異한 運命的 方向과 性格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하튼 1848年 獨逸市民階級이 主導한 3月革命은 世界的인 革命潮流에 便乘하여 獨逸안 (Inland)의 諸領封國境界를 넘어서서 全獨逸地域으로 무섭게 傳播되었다.

이로서 하나의 獨逸, 하나의 獨逸民族意識이 中世神聖로마帝國 以來의 分權主義的 意識을 完全克服하고 完成을 보게 되었다. 巴야흐로 하나의 獨逸民族的 共同體意識이 獨逸聯邦 속에서 形成된 것이다<sup>16)</sup>.

其實 1970年代의 브란트 西獨首相이 하나의 獨逸民族論을 자신있게 展開하면서 自身の 政治生命과 民族運命을 賭한 처소 및 東獨協商을 果敢히 實踐한 것도 모두 3月革命에 依해 完成된 하나의 獨逸民族精神과 民族自主力量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16) Gebhardt; Handbuch der deutschen Geschichte s.149.

3月革命的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난 革命的 市民앞에 오스트리아의 멧베르니히 反動體制가 崩壞되고 프로이센의 빌헬름 4세가 「獨逸統一 속에 프로이센을 融合」시키고 立憲民主主義制度의 實施를 約束하고 있을 때, 獨逸의 自由主義的 民族主義者들은 汎獨逸의 規模로 平和的民族統一運動을 展開하기 始作하였다.

獨逸民主主義發達史에 있어서 最初의 全獨逸의 民選으로 構成된 푸랑크푸르트 國民議會가 3月革命的 民族統一 무드와 自由主義者들의 努力에 依해 1848年 4月 聯邦議會의 決議에 따라 파울教會에서 開催된 것이었다<sup>17)</sup>.

830餘名中에 大部分 教養의 知識人들로 構成된 國民議會議員들은 3月革命的 目標인 民族統一과 立憲民主主義를 平和的 國民投票方式을 통해 成就하려고 試圖하였다.

그들은 尙蘭西人權宣言과 美國獨立宣言書를 모델로 하여 個人的 自由權을 保障한 獨逸民族의 基本法(Die Grundrechte des deutschen Volkes)<sup>18)</sup> 과 最初의 統一獨逸憲法을 制定하였다.

특히 自由鬭爭의 蓄積된 열매인 獨逸民族의 基本法의 精神은 1次大戰後의 獨逸바이마르共和國 憲法과 2次大戰後의 西獨 본 憲法속에 그대로 繼承되고 있다<sup>19)</sup>.

그리고 統一方法에 있어서는 國民議會의 自由主義者들은 오스트리아를 除外한 小獨逸主義를 挾하여 統一獨逸帝國의 皇帝로서 프로이센의 빌헬름 4世를 選定하여 帝位捧呈을 提請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빌헬름 4世는 裏面的으로는 오스트리아와 歐羅巴列強의 外交的 壓力을 考慮하는 한편 表面上으로는 호오엔졸렌王家의 神權說을 내세워 國民議會의 要求를 一就하였다.

이리하여 푸랑크푸르트 國民議會의 平和統一運動은 領封群主國의 傳統的 分權

17) Gebhard; 前掲書 S.144

18) Wilhelm Keil; Deutschland 1848~49 (Stuttgart, 1948), ss.80~8.

19) 林采源; 前掲書, p.88.

主義와 獨逸의 地政學的 條件 때문에 막판에 가서 餘地없이 失敗되어 버리고 獨逸民衆에게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크나큰 失望을 안겨 주고 말았다.

스페인 演劇家인 코르테스(Cortes)의 適切한 表現과 같이 獨逸最初의 國民議會는 “獨逸民衆에 依해 自由의 女神처럼 歡迎되었다가 1年後에는 娼婦처럼 내쫓기고”<sup>20)</sup> 말았다.

3月革命이 勃發하기 直前に 그 유명한 共產黨宣言을 發表한 칼· 맑스<sup>21)</sup>와 프로이센의 封建의 용커인 비스마르크는 각기 極左右의 立場에서 國民議會의 無能과 平和統一의 非現實性を 批評하고 그 失敗의 不可避性を 미리 豫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프랑크푸르트 國民議會의 理想성과 非現實성을 充分히 짐작할 수 있겠다.

革命이 勃發된지 1年後인 1849年初에 이르러 獨逸의 民衆烽起는 러시아 支援을 받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王家擁護派인 鐵의 사나이 슈바르첸베르크(Schwarzenberg)와 프로이센의 王權 支持派인 용커階級에 依해 完全 消滅된다. 드디어 獨逸聯邦君主權에 依한 反革命이 成功하고 프로이센의 封建의 용커勢力은 政治權力의 核心을 掌握하게 되었다.

한편 1840年 以來 獨逸의 大工業을 急速度로 發展시킨 獨逸産業資本家層은 프랑크푸르트 國民議會運動의 失敗로 自由主義的 民族主義者들에게 失望하고 同時에 3月革命 以後 猛烈한 氣勢로 抬頭한 全獨逸의 規模의 勞動階級運動에 對해 크게 恐怖를 느끼게 되어 政治權力層인 封建의 용커勢力과 結合한다.

勞動者層의 階級鬭爭의 性格을 지닌 仏蘭西 2月革命의 影響을 받아 獨逸勞動者들은 1848年 8月「獨逸勞動者議會」라는 最初의 近代的 勞動組合을 베르린에 創立하고 3月革命에 積極 參與하는가 하면 全獨逸의 勞動스트라이크

20) 林采源; 前掲書, p.74.

21) 맑스와 켈스는 프랑크푸르트 國民議會를 그의 著書인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of Germany in 1948」에서 非正常的이고 無能力한 組織體라고 非難.

를 벌였다 22).

이와 같은 獨逸勞動階級の 役割을 크게 浮刻하여, 오늘날 東獨은 3月革命의 本質을 階級鬭爭으로 解釈하고 있다. 그리고 獨逸民族史의 基本問題는 브란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民族問題가 아니고 바로 階級問題라고 主張한다.

한편 3月革命 後 獨逸의 對外條件을 보면 1848年 12月,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世의 傳統繼承을 主張한 루이 나폴레옹 3世의 帝國主義의 仏蘭西가 登場하여 獨逸前面에 무서운 壓力을 加하기 始作했다 23).

이처럼 밖으로 부터 나폴레옹의 惡夢을 되살리고, 안으로 부터 勞動階級運動의 威壓을 받아 딜레마에 빠진 獨逸市民階級은 旧秩序(앙시앙레짐)을 打破한 仏蘭西의 市民階級과는 달리 封建의 옹커를 支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겠다.

革命主体勢力인 近代의 市民階級이 反革命의 核心勢力인 封建의 옹커와 妥協하고 支持하게 되었다는 것은 獨逸民族史의 特殊性을 招來하는 決定的 要因이 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獨逸特有的 內的 狀況條件과 地政學的 位置 때문에 不可避했는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프로이센의 王權을 頂點으로 하여, 土地貴族옹커의 政治權力和 産業資本家層의 經濟力을 土臺로 한 獨逸軍國主義가 3月革命의 歷史的 目標인 民族統一의 旗幟를 높이 내걸고 滔滔한 勢力을 가지고 堂堂하게 抬頭한다.

트라이치케(1834 ~ 96)와 같은 獨逸知性史家들도 처음에는 비스마르크의 非民主的 憲法鬭爭을 非難하였으나 終局的으로는 獨逸民族의 生存과 活路를 찾는다는 名分下에 비스마르크의 鐵血統一政策을 支持하고 封建의 옹커勢力의 擁護者가 되었다 24).

이와 같은 風土 속에서 1860年代에 登場한 軍國主義的 프로이센의 비스마

22) P.H Noyes, Organization and Revolution, p.193.

23) H.G. Wells; The Outline of History, Cassell & Comany.LTD, London, 1956, pp. 986~988.

24) Friedrich Meinecke, Die Deutsche Katastrophe, Betrachtungen und Erinnerungen, 1946, 및 李光周訳, 獨逸의 悲劇, 乙酉文化社, 1974, p.72.

르크 政治体制은 마침내 1866年 普·奧戰爭의 勝利를 통해 宿命的 強敵인 오스트리아를 獨逸聯邦에서 遂出해 버리고 獨逸霸權을 掌握하여 小獨逸主義에 立脚한 獨逸統一의 基礎를 形成한다.

그리고 1871年 普·仏戰爭에서 2個月만에 電擊의 으로 루이 나폴레옹 3世의 仏蘭西軍을 擊破하여 파리를 占領함으로써 獨逸統一의 最大障礙要素인 外勢의 壓力을 除去해 버렸다.<sup>25)</sup>

이로서 파리市民이 지켜보는 가운데 華麗한 베르사이유宮殿에서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빌헬름 1世를 統一獨逸帝國의 皇帝로 擁立하고 統一民族國家를 創設하였다.

當時의 歷史的 狀況에서 볼 때 우리는 小獨逸主義에 立脚한 비스마르크의 鐵血統一政策에서 天才的 獨逸人의 철저한 現實主義를 엿볼 수 있다. 만일 비스마르크가 小獨逸主義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包含한 大獨逸主義를 挾하였다면 英·露·仏 등의 共同戰線形成에 依한 國際的 大壓力 때문에 獨逸統一은 永久히 不可能했을지도 모른다.

1870年代의 비스마르크의 武力統一方式은 100年後인 1970年代의 브란트의 平和統一方式과는 方法上으로 正反對이지만 철저한 現實主義路線이라는 點에서 一脈相通한다.

軍國主義的 프로이센傳統을 繼承하고 있는 容커勢力이 統一主體가 된 獨逸統一民族史는 必然的으로 神話的인 國家主義的 性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鐵과 血에 依해 創設된 統一獨逸帝國은 結局 一次大戰의 敗北로 인해 滅亡해 버리고 1918年 自由主義的인 바이마르共和國이 登場한다.

그러나 바이마르共和國도 베르사이유體制에 對한 獨逸民族의 깊은 挫折感 때문에, 프리드리히大王의 榮光과 프로이센의 軍國主義的 傳統을 부르짖는 히틀러의 大게르만主義 앞에 屈服해 버리고 히틀러의 大獨逸帝國이 誕生하였다.

周知하듯이 히틀러의 人種的民族主義와 大獨逸主義는 19世紀初 以來的 抵抗的 民族主義傳統과 獨逸民族의 非正常的인 挫折意識에 依해 胎動되었기 때문에 결국 才 2次大戰의 人類的 悲劇을 惹起하게 되었다.

---

25) Wolfgang Treue, Germany Since 1848, Inter Nationes Bad Godesberg, Germany, 1968, pp.32~33.

여기에서 獨逸統一民族史는 「統一民族國家創設=프로이센의 軍國主義傳統=分斷의 不可避性」이라는 獨逸 特有的 歷史的 公式를 成立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獨逸民族史의 特徵을 볼 때, 東獨이 主張하고 있는 共產主義階級革命은 獨逸風土 위에서 그 설 땅을 찾을 수 없다 하겠다. 브란트가 主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獨逸問題의 本質은 階級問題가 아니고 역시 民族問題라 하겠다.

英國 라스키(H. Laski) 教授가 要領있게 指摘하고 있듯이, “만드시 成功해야 할 獨逸史上 最大의 事件인 3月革命이 不成功의 悲劇的 革命으로 끝났기 때문에, 獨逸分斷은 世界史를 움직이는 理性的 狡智에 依해 不可避했는지도 모른다.”<sup>26)</sup>

### III. 東西獨逸의 民族史의 正統性論爭

#### 1. 獨逸分斷의 現實과 하나의 獨逸概念

獨逸은 地政學的 位置로 볼 때 歐羅巴의 心臟部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歐羅巴列強의 勢力均衡에 決定的 作用을 하고 있다. 19世紀初 나폴레옹은 푸로시아 首都 베르린을 占領한 후 仏蘭西의 歐羅巴霸權을 掌握하기 위해 神聖 로마帝國을 解体하고 獨逸領土를 再編成하였다.

나폴레옹은 露西亞와 結託하여 獨逸의 改造에 着手, 神聖 로마帝國內의 300餘個의 領封君主國을 100以下로 激減시키고, 라인江 西岸의 100個의 獨立諸邦을 仏蘭西에 併合하였다. 同時에 바이에른, 빌텐베그, 바이덴의 南獨逸領封國들에게는 王号를 授與하는 한편, 帝國直屬의 大小諸侯領, 伯爵領, 騎士領 등을 處分 割讓해 주어 仏蘭西에 臣從시키고 獨逸안의 強國인 壤地利와 프로이센 兩君主國에 對한 均衡勢力으로 活用하였다.

---

26) H. J. Laski, Reflection on the Revolution of Our Time(London, 1943), p.106.

이와 같이 나폴레옹은 오늘날의 獨逸分斷現象처럼 獨逸을 分割하여 獨逸聯邦과 유럽의 主導權을 장악한 것이다.

역시 才2次大戰後 獨逸의 無條件降伏文書(1945. 5. 8)를 받아 聯合國들도 歐洲平和와 世界平和에 對한 獨逸의 威脅을 永久히 除去하기 위해 雅타原則(1945. 2)에 입각한 獨逸分割을 果敢히 實踐하기 始作했다.

이리하여 敗戰獨逸의 戰前國土는 1945年 6月 5日 四大國共同宣言과 同年 8月 2日 포츠담協定에 依해 事實上 10個地域으로 分斷되는가 하면 오데르나이세(Oder Neisse Line)의 東部國境線이 設置되므로써 獨逸은 戰前獨逸國土의 1/4을 喪失하게 되었다<sup>27)</sup>.

그후 戰後 美·소間의 熾烈한 冷戰開始와 더불어 四分五裂된 獨逸은 1949年에 들어와 西獨聯邦共和國(9月 20日)과 東獨民主共和國(10月 7日) 樹立으로 일단 終結되었다.

1971年 以來 하나의 獨逸民族統一國家를 形成해 오던 獨逸帝國은 事實上 두개의 獨逸國家로 分斷된 것이다. 그러나 事實上 두개의 獨逸國家가 樹立되어 存在하고 있다 하더라도 50年代에 있어서는 東西獨은 勿論 四強大國들도 하나의 獨逸觀念을 既定事實로 看做하여 받아드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戰後 獨逸에 關한 諸協定 및 四大國協定에 依拠하여 獨逸帝國의 法的實體 即, 하나의 獨逸의 法的存在를 明白히 認定하였다<sup>28)</sup>.

其美 1945年 5月 8日의 獨逸의 無條件降伏文書에는 獨逸의 分割에 關한 規定은 들어 있지 않았다<sup>29)</sup>. 獨逸人懷柔를 위한 교묘한 스탈린의 戰術이 介在되어 있었겠지만 1945年 5月 9日 蘇聯은 「獨逸人民에 對한 布告」에서 「蘇聯은……獨逸을 分割하거나 파괴할 의도는 없다」고 明示의으로 宣言하였다. 이리하여 1945年 8月 2日의 四大國포츠담宣言에서도 獨逸分割이

27) 國會國土統一研究特別委員會報告書, 統一白書, 國會圖書館立調法查局, 1971. pp. 117~118.

28) 金俊熙, 分斷國一般理論에서 본 韓國統一問題의 性質, 統一政策, 1卷3号 平和統一研究所, 1975. 6. pp. 90~93.

29) 金哲洙, 金芝雲共著, 分斷國의 問題, 三星文化財團, 1972. p. 23.

表面上으로 明示的으로 規定되어 있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聯合國의 獨逸分割에 對한 態度가 모두 獨逸人의 民族感情을 傷하게 하지 않으려는 政治的 意圖가 숨어 있는 것은 不問可知이다. 오히려 四大國은 政治名分上으로 하나의 獨逸論理下의 獨逸統一을 認定하고 獨逸民族의 統一主張을 적극 支持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四大國의 獨逸統一政策이란 戰後 새로 抬頭한 東西冷戰의 戰略 戰術과 密着되어 있고 其實 美·蘇는 獨逸統一보다 各己 相對方壓力을 위한 政治名分으로 獨逸統一政策을 活用하였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여하튼 美·蘇兩國은 모두 內面的으로 獨逸의 統一을 否定하고 實際로 두개의 獨逸化를 政策的으로 追求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밖으로는 明示的으로 하나의 獨逸의 法的 實體와 獨逸統一을 否定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55年 9月 蘇聯은 獨·蘇 모스크바協定締結을 통해 西獨을 外交的으로 承認하고 이후부터 두개의 獨逸國家存在을 認定하는 前提 위에서 統獨 問題를 論하기 始作했다.

이와 같은 蘇聯의 對獨逸政策에 呼應하여 1957年 東獨 울브르히트는 獨逸의 新生 2國家論 (Zwei-Neustaaten Theorie)을 提示하고 統獨方式으로 두개 獨逸國家의 國家聯合創設을 主張하였다<sup>30)</sup>. 이와 같은 울브르히트의 新生 2國家論은 오늘날 東獨 호베크의 2民族 2國家論 (Die Zwei Nationen and Zwei Staaten Theorie)이라는 獨逸 分割主義로 發展하고 있다.

이에 對應하여 西獨 브란트首相은 獨逸民族의 永久分裂 막기 위하여 하나의 獨逸을 大前提로 한 1民族 2國家論 (The theory of One Nation and Two State)을 내세우고 있다.

1970年 8月 獨·蘇不可侵條約과 1972年 12月 東西獨基本條約의 締結에 있어서도 西獨은 蘇聯과 東獨에게 政府黨書를 手交하는 法形式的 節次를 통해

---

30)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 und Dokumentation, Herausgegeben von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April 1973, p. 4.



獨逸民族統一과 하나의 獨逸觀念을 明白히 하였다<sup>31)</sup>. 또한 東西獨基本條約은 才 8 條에 兩獨間의 常駐代表部設置를 規定함으로써 主權國家間의 大使交換이 招來하는 國際法의 承認의 效果를 防止하고 있다. 이것은 法形式次元에서 國際法上의 두개의 獨逸國家化를 엄격하게 制約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하나의 獨逸이라는 法的實體는 戰後獨逸에 關한 諸協定 및 4 大國協定에 依해 明確히 保障되어 있다. 이것에 對해서는 東獨은 勿論 四大強國의 어느 一方도 恣意的으로 否認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19 世紀初 以來 獨逸統一民族史가 創造한 하나의 獨逸, 하나의 獨逸人, 또는 하나의 獨逸民族觀念은 아직도 客觀的으로 法과 政治現實 속에 살아서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 2. 西獨의 民族史的 正統性 主張

1970 年 1 月 브란트 西獨聯邦首相의 民族地位에 關한 施政演說以來 獨逸의 民族史的 正統性問題가 本格的으로 東西獨協商의 核心的 主議題로 登場되었다<sup>32)</sup>.

平和共存概念 適用에 依한 獨逸問題解決은 基本的으로 獨逸分斷의 永久化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西獨 브란트首相은 獨逸統一과 民族問題에 對한 東西兩獨逸人의 民族的 合意을 通해 永久的인 民族分裂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1850 年 3 月 獨逸 自由民主主義者들이 3 月革命의 歷史的 使命意識 속에서 平和의 方法에 依해 獨逸統一民族國家를 創設하려고 시도한 由緒 깊은 에어프루트에서, 브란트는 하나의 獨逸人, 하나의 獨逸을 主張하는 1 民族 2 國家論 (Eine Nationen und Zwei Staaten Theorie) 을 내세워 獨逸民族의

31) Brief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deutschen Einheit an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參照

32) 東西獨資料集 才 1 卷 (接觸關係上), 中央情報部, 1973, pp. 411~430.

統一을 부르짖었다<sup>33)</sup>. 브란트의 1民族 2國家論( The theory of One Nation and Two State )은 『獨逸統一民族史=프로이센의軍國主義=分斷의 不可避性』이라는 獨逸沒落的 悲劇的 歷史公式를 根本的으로 否定하고 獨逸統一民族史의 한 支流로서 즐거우게 흘러온 獨逸自由主義理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3月革命의 主体인 獨逸市民階級과 自由主義的 知識層이 열렬히 推進한 平和的 統一民族國家創設方案은 當時의 時代的 條件으로 볼 때 必然的으로 失敗할 수 밖에 없었고 非現實的이었다.

하지만 1970年代初에 브란트가 推進한 東方政策과 平和的統獨政策은 비록 3月革命 當時의 獨逸自由主義者가 提唱한 平和統一理論을 그대로 繼承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의 歐洲狀況에서 볼 때 至極히 現實主義的인 政策이다.

브란트가 내세운 1民族 2國家論은 3月革命 主体인 獨逸市民階級の 自由主義的 理念을 土臺로 하여 再創造되고 있는 새로운 獨逸統一民族意識에서 出發하고 있다. 이 理念은 美·蘇의 現狀維持的 平和共存概念과 獨逸民族의 現狀打破的 統一概念을 天才的으로 連結시키고 있고, 獨逸의 새로운 統一民族史 創造를 野心滿滿하게 企圖하고 있다. 또한 오늘의 國際政治現實을 철저히 反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歐洲平和의 旗手役을 担当하여 分斷狀況 속에서 獨逸民族의 새活路를 開拓하려는 무서운 野心을 가지고 있다.

브란트는 1民族 2國家論( The theory of One Nation and Two State )에 立脚한 平和統一政策을 提示하여 獨逸人의 民族統一要求와 美·蘇等 強大國의 平和共存要求를 奇妙한 手法로 調和시키고 있다.

即, 그는 한편으로는 “歐洲平和 속에 獨逸統一을 融和시키겠다”는 歐洲平和의 比喩를 提示하고 歐洲平和의 礎石이 되는 東西獨平和共存 關係를 設定하기 위해 兩獨協商을 活潑히 展開하였다.

이로 因해 美·蘇를 비롯한 四強大國의 積極的 協調와 讚辭를 얻어냈다. 同時에 또 한편으로는 東西獨平和共存을 土臺로 한 “歐洲平和의 強化와 이에

33) Erfurt March 9, 1970, A documentation,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71, pp. 33~47.

따른 歐洲斷絶의 克服 속에서 獨逸統一을 成就 하겠다고 하는 民族統一의 分明한 비론을 提示함으로써, 獨逸人의 統一要求를 充足시켜 주었고 國民의 支持를 獲得하였다.

이처럼 現實主義的 政策路線을 主唱한 브란트를 選拔하여, 獨逸民族은 20世紀의 恐怖의 核均衡時代 속에서 다시 한번 強한 生活力과 民族的 底力을 世界萬方에 誇示한 것이다.

歐洲心臟部에 자리잡고 있는 獨逸의 地政學的 位置와 分斷現實을 考慮해볼 경우 무서운 美·蘇核對決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선 民族의 生存을 保障하고 먼 將來이긴 하지만 將次 統一의 聖業을 成就할 수 있는 길이란 其實 브란트가 提示한 길 以外에는 따로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브란트는 가까운 將來에 거의 實現不可能한 國家的統一性 (Die Staatliche Einheit)을 國家最優先目標로 設定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非現實의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愚鈍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사 兩獨逸政府가 지금 당장 國家的統一을 이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危險한 不安을 世界에 심각히 불러 일으키고 오늘의 世界事情이 許諾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sup>34)</sup>.

이리하여 그는 아테나위가 힘의 統一政策을 통해 正열적으로 追求한 國家的統一性 (Die Staatliche Einheit)을 먼 將來의 窮極의 目標로 삼아 뒤로 미루어 버리고 民族的 單一性 (Die Nationale Einheit)을 當面의 國家最高目標로 設定하였다. 그리고 兩獨逸人 사이의 民族的 分裂을 防止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維持하는 것을 統獨政策의 核心課題로 삼았고 同時에 獨逸人의 分斷苦痛을 輕減시키는 데에 政策的 力點을 두었다.

이와 同時에 브란트의 獨逸民族理論이 必然의으로 展開된다. 即 브란트의 民族觀에 依하면, 統一民族史 發展과 더불어 形成된 獨逸民族은 오늘날 西獨과 東獨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相異한 體制下에 두개의 國家生活를 營爲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의 獨逸人이라는 共同歸屬感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34) Grundsatzliche Ausführungen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anlässlich des Erfurter Treffens, 19. März 1970. 參照

獨逸人이라는 概念은 言語的 共通性, 文化的 共通性 以上の 高度의 政治的 意味을 內包한 概念으로서, 東西兩獨逸 모두가 共通의 으로 가슴이 뭉클하는 鄉愁心을 가지고 意識하고 있다고 主張한다<sup>35)</sup>。

이리하여 브란트는 獨逸民族概念이야말로 東西兩獨逸의 永久的 分割을 막을 수 있는 唯一한 띠(紐帶)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社會主義 獨逸民族과 資本主義 獨逸民族을 区分하여 두개의 獨逸民族論을 내 세우고 있는 東獨逸의 民族概念이란 獨逸民族의 現實을 無視한 推象의 論理的 概念에 不適當하다고 反駁한다.

社會體制와 國家秩序의 相異性이 民族分裂의 根本的 要因이라고 말하는 東獨逸의 主張에 對해서도 그는 “獨逸人이라는 짧은 한마디에 共同意識을 強烈하게 느끼고 있는 東西兩獨逸人의 現實性을 直視하라”고 忠告하고 있다.

勿論 이와같은 브란트의 民族觀은 自由主義理念에 立脚하여 히틀러의 人種的 民族概念과 國粹的 大게르만主義를 排斥하고 있다. 이것은 戰後 오데르·나이세 國境線에 對한 暫定的 認定이라든가, 歐洲平和 속의 獨逸統一이라는 政策口號 속에 如實히 實証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西獨逸 브란트는 歐洲의 自由人인 同時에 바로 獨逸의 民族主義者이다. 오늘날 西獨逸의 統獨政策理論도 自由主義的 理念을 土臺로 한 브란트의 民族理論을 基底로 하여 構造的으로 體系化되어 있다.

또한 이 民族理論은 브란트의 獨創的인 國家理論과 結付되고 있다. 브란트는 領土, 住民, 主權의 3大要素가 主權的 獨立國家를 形成한다는 古典的 國家概念의 東西獨逸適用을 拒否한다. 그리고 東西獨逸에 對해서는 獨逸特有의 歷史的인 國家(Staat) 概念을 適用할 것을 主張하고 國法上(staatrechtlich)의 東獨承認政策을 提示한다.

브란트는 獨逸統一 以前에 獨逸內部(Inland)에는 여러개의 國家(Staat)가 存在하여 그들 相互間에 獨逸外部(Ausland)의 外國과 다른 特殊關係를

---

35) Ausführungen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in der Nachmittags-sitzung des Kasseler Treffens, 21. Mai 1970, 參照.

맺고 있었다는 歷史的 經驗事實을 想起시키면서 獨逸의 國家概念을 提示하였다.

이러한 獨逸特有의 經驗의 國家觀에 立脚하여 西獨은 東獨을 國際法上이 아니라 國法上으로 承認하고 서로 外國이 아닌 兩獨間의 特殊關係를 主張하였다<sup>36)</sup>. 브란트의 新國家觀에 依해 西獨의 國法上 東獨承認이 可能해졌고, 兩獨 平和共存의 制度化를 爲한 基本條約이 締結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리하여 獨逸內部에는, 하나의 獨逸民族을 똑같이 構成要素로 한 西獨과 東獨이라는 두개의 部分國家( Component State )가 同等權을 가지고 存在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브란트의 1民族 2國家論이며, 소위 獨逸構成國 獨트린이다. 이 理論을 土台로 現狀維持的 平和共存과 現狀打破的 統一이라는 相互二律背反의 兩개의 概念이 기묘하게 調和를 이루게 됨으로써 西獨의 統獨理論은 構造的으로 體系化된다.

이와 같은 西獨의 統獨政策理論은 3月革命의 自由主義的 理念을 繼承하고 있고, 同革命 主体인 獨逸市民階級과 知識層이 要求한 民族統一과 自由理念의 實現을 分斷狀況속에서 다시 追求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西獨이야말로 獨逸民族史의 正統性을 그대로 繼承하여 새로운 統一民族史의 偉大한 創造를 서두르고 있다 하겠다.

### 3. 東獨의 民族史의 正統性 主張

東獨은 西獨과 根本적으로 相異한 歷史觀, 民族理論 및 國家理論에 立脚하여 西獨의 統獨政策理論을 날카롭게 批判攻擊하면서 獨逸分割主義 立場을 取하고 있다. 1971年 3月 失脚당한 올브리히트는 新生 2國家論( Die Zwei Staaten Theorie )에 立脚하여 國際法上的 兩개의 獨逸國家化를 政策的으로 追求하였지만, 한편으로는 1957年에 提示한 國家聯合에 依한 統一方式에서 如實히 實証되듯이 獨逸統一을 明視的으로 拋棄하지 않았다. 其實 政策的으로는

36) 1970年 5月 21日 西獨 브란트首相이 坎실會談 午後會議에서 提案한 「20個項目」 參照

分裂과 統一의 模糊性을 면 二重主義를 採択하고 있었다<sup>37)</sup>。

그러나 울브리히트가 主導하여 1949年 以來의 人民民主主義憲法에서 社會主義 憲法으로 改正한 1968年 憲法은 才8條에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市民은 帝國主義로 말미암아 獨逸民族에 強要된 獨逸分割의 克服,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基礎로 하는 統一에 到達하여야 할 兩獨國家의 漸進의 融和를 위하여 努力한다」고 規定하여 獨逸統一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울브리히트 後繼者로 登場한 호네크는 新生 2國論을 所謂 2民族 2國家論으로 發展시켜 獨逸分割路線을 露骨의 露骨으로 내세우고 있다<sup>38)</sup>。

호네크에 依해 1974年 10月 全面修正된 새로운 東獨憲法은 前文에 맑스·레닌主義의 歷史的 必然性을 記載하여 이데올로기의 性格을 크게 強調하고 68年 憲法속에 規定되어 있는 獨逸統一條項(前文 才8條 2項)을 모두 削除해 버렸다<sup>39)</sup>。 또한 하나의 獨逸을 象徵하고 있는 「獨逸民族」(Die Deutsche Nation)이라는 單語를 憲法 文章속에서 모두 除去함으로써 東獨의 分立主義路線을 明白히 했다.

3月革命의 自由主義精神을 계승한 바이마르共和國憲法(1919年)을 모델로 하여 獨逸民族의 統一을 뚜렷히 밝힌 1949年 東獨의 人民民主主義憲法<sup>40)</sup>과 比較해 볼때, 1974年 東獨의 憲法은 그야말로 전혀 本質的 性格이 判異한 憲法으로써 隔世之感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獨逸分立主義를 내세우고 있는 東獨 호네크의 2民族 2國家論 (Die Zwei Nationen und Zwei Staaten Theorie)은 唯物史觀에 立脚하

---

37) Die neue Verfassung der DDR, Miteinem Einleitenden Kommentar von Dietrich Muller-Romer,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Köln, Germany, 1974, p.14.

38)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4,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Elsner druck KG, Berlin, Aug.1974, p.p 17~18.

39) Die neue Verfassung der DDR, 前掲書, pp. 27~30

40) 1949年の 西獨基本法과 東獨憲法은 다 같이 1919年の 바이마르共和國 憲法을 모델로 하여 制定되었음.

여 再構成한 階級鬭爭의 獨逸歷史觀과 스탈린式 民族理論을 根本바탕으로 하고 있다.

歷史觀面에서 볼때, 東獨은 15世紀 마르틴 루터의 宗教改革 當時 貴族과 聖職者에게 對抗하여 大의으로 일어난 農民革命과 1848年 3月革命의 傳統을 繼承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所謂 革命的 正統性을 내세우고 있다. 特히 獨逸近代化運動의 最高峰을 이루고 있는 3月革命의 性格을 위요하고 東獨은 西獨과는 전혀 相異한 歷史解釋을 加하고 있다. 3月革命에 대해 西獨이 市民階級과 知識層을 主体로 한 獨逸市民革命으로 把握하고 있는데 反해 東獨은 勞働者·農民이 主導한 階級革命으로 看做한다.

3月革命 當時 맘스도 平和的 獨逸統一과 近代化를 내세운 自由主義者와 그들의 푸랑크푸르트·國民議會運動에 對해 新달한 非難을 던지고 유명한 「共產黨宣言」에 立脚하여 勞働階級の 革命路線을 強調했다. 이처럼 3月革命의 한 構成멤버로 參加한 獨逸勞働階級の 役割과 革命精神은 오늘날 東獨이 獨逸民族의 進歩的 傳統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革命的 正統性의 本質이 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勞農階級の 社會主義國家 東獨은 獨逸進歩主義者들이 曠을 던져 渴求해 오던 獨逸最初의 理想的 平和國家라고 主張한다. 한편 東獨은 1871年 以來의 獨逸統一民族史가 軍國主義와 帝國主義를 本質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勞農階級の 利益을 抹殺하였다고 主張하고 統一民族史 自体를 獨逸帝國主義者의 歷史라고 非難한다 41).

이처럼 東獨은 獨逸統一民族史를 전혀 否定하고 獨逸歷史란 基本的으로 階級問題를 本質로 하는 階級鬭爭史라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東西獨問題의 本質도 브란트가 主張하는 것처럼 民族問題가 아니라 바로 階級問題라고 主張한다 42).

또한 獨逸勞働階級은 3月革命, 카이제르 統一獨逸帝國, 그리고 히틀러 大獨逸帝國 아래서 革命과 平和를 위해 軍國主義勢力과 熾烈한 鬭爭을 벌여왔지만

41) 前掲書, 國土統一院編, 東西獨關係文獻集, 1973.9. p.166

42) 前掲書, 東西獨資料集 才IV卷(基本條約, 附屬文書), p.267 (슈토프 獨逸民主共和國 首相의 1970.5.21 演說文 參照)

不幸히도 失敗하고 大戰後 蘇聯의 積極의 後援으로 歷史上 最初로 東獨平和政權을 樹立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호네크는 平和를 위해 鬪爭해 온 獨逸勞動階級の 革命的 正統性을 계승한 社會主義 民族國家인 東獨과 統一獨逸帝國의 帝國主義的 傳統을 계승한 資本主義 民族國家인 西獨과는 도저히 統一할 수 없고 嚴格히 分立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sup>43)</sup>.

이러 하나의 獨逸民族概念을 土著로 하고 있는 브란트의 東西獨特關係理論에 對해서도, 호네크는 「內政干涉을 통해 東獨을 實際로 西獨의 後見」 아래 두려는 帝國主義 狡猾한 術策이라고 攻駁한다. 그리고 하나의 獨逸民族概念이란 非現實的인 虛構의 概念에 不過하다고 말하고 있다.

東獨人和 西獨人は 社會經濟 體制의 根本的 對立과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決定的으로 別個의 民族으로 發展되었고 아무런 共通性도 없다고 主張한다. 即, 아직은 같은 獨逸語를 使用하고 있다고 하지만 東西兩獨人は 獨逸語의 個別單語 內容에 關해서는 전혀 異質的인 思考論理에 依해 異質的 意味를 가지고 把握하고 있다는 것이다. 兩獨人의 血緣的 共通性도 民族의 本質的 構成要素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戰後 20餘年이 지난 오늘날, 東獨에는 社會主義 獨逸民族이, 西獨에는 資本主義 獨逸民族이 創造되어 戰前의 獨逸民族은 마침내 두개의 異質的 獨逸民族으로 分化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두개의 獨逸의 分離獨立化를 내세우고 있는 東獨호네크의 2民族論(Die Zwei Nationen Theorie)이다.

東獨의 2民族論은 獨逸統一을 否定하는 代身에, 獨逸人을 包含한 모든 歐洲人에게 높은 說得力을 가지고 있는 歐洲平和 및 兩獨平和共存概念과 構造的으로 巧妙하게 連結됨으로써 東獨住民과 더불어 全歐洲人의 支持를 求하고 있다.

即, 호네크는 東西獨立을 위한 政治名分으로서 平和概念을 강조하고 平和守護야 말로 東獨政策의 核心이자 偉大한 目標라고 말한다.

43) 前掲書, 東西獨資料集 才 I卷(接觸關係上), p. 696 (호네크 東獨 SED 才 I書記의 1971. 5. 3 演說文 參照)



또한 그는 獨逸勞動階級の 至上天國인 東獨平和體制를 守護한다는 口實下에 「完全한 境界의 確定」(Abgrenzung) 概念<sup>44)</sup>을 들고 나와 兩國間的 國境線 承認을 보다 強力히 要求하고 同時에 올브르히트가 固執하던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을 다시 要求했다. 이리하여 兩獨基本條約이 假調印되기 7日前인 1972年 11月 2日까지만 하여도 其實 東西獨協商은 중대한 難關에 逢着하였다. 美·英·仏을 비롯한 西獨의 強力한 姿勢와 이에 同調한 蘇聯의 壓力으로<sup>45)</sup> 東獨은 드디어 끈질긴 國際法的 承認要求를 撤回하고 兩獨基本條約을 正式調印 하였다.

이로서 두개의 獨逸民族論에 立脚한 호네크의 獨逸完全分立路線은 基本條約의 法形式面에서 不遂 失敗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東獨의 法的 地位問題에 대해 西獨側에 讓步하는 代身에 東獨은 蘇聯과의 合意를 통해 74年 10月 全面改正한 新憲法에 「東獨과 蘇聯은 永久히 確定的으로 同盟關係를 맺는다」는 才6條의 最終同盟條項을 挿入하여 基本條約을 補充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東獨이 上記와 같이 徹底히 東獨分割路線을 追求하고 있는 것은 그 背後에 는 蘇聯의 깊은 影響力도 介在되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東獨에 비해 國土의 2倍以上 人口의 3倍以上을 가지고 있는 西獨이 經濟總生産面에서 월등히 높다」라는 東西獨間의 国力差異 때문에 必然的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때 東獨共產主義者들이 어마 어마한 西獨의 国力과 自由의 물결 앞에서 自身的 生存을 유지하기 위해 「두개의 新生獨逸國家論」을 「두개의 獨逸民族論」으로 發展시켜 구차한 論理를 展開하고 있는 것도 理解합적 하다.

國家理論에 있어서도 東獨은 西獨 브란트가 提示한 獨逸의인 國家概念을 奇妙한 抽象論이라 하여 否定해 버리고, 맑스·레닌主義의 階級國家觀을 主張하고 있다. 勞動階級과 맑스·레닌主義의 共產黨의 指導아래 人民의 勞動活動을 組織하는 政治機構인 社會主義國家야말로 가장 發展된 最善의 國家形態라고 한다<sup>46)</sup>.

44) 前掲書, 東西獨資料集 才IV卷, p.291 (東獨 호네크의 1971.5.3 演說文 參照)

45) 1972年 11月 9日 4大國은 全体獨逸에 對한 獨逸最高權力을 再確認하는 共同宣言을 發表하여 東獨에 壓力을 加하여 東西獨協商의 不進展을 打開.

46) 前掲書, Die neue Verfassung der DDR, p.30.

“이데올로기上的 鬭爭에 있어서는 平和도 妥協도 있을 수 없다”는 共產主義者 立場에서 볼때 國家란 共產黨의 道具에 不過하기 때문에 獨逸의 國家的 統一은 아예 想像조차 하기 힘든 觀念이다.

이렇게 分析해 볼때 東獨政權이 主張하고 있는 革命的 正統性, 歷史觀, 民族 理論, 그리고 國家理論等은 모두 首尾一貫하게 맑스·레닌主義의 革命的 戰略戰術을 基底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I. 結 論

美·蘇·英·仏 四大大國은 1945年 6月 5日 베르린宣言이 發表한 獨逸最高 權力掌握에 依拠하여 아직도 統獨問題에 對한 最終決定權을 가지고 있다<sup>47)</sup>. 이와 같은 鐵壁과 같은 限界性을 前提로 하고 있는 西獨의 統獨努力은 東獨의 反民族的인 獨逸分割路線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높은 絕壁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西獨이 아무리 民族自決權을 부르짖고 民族統一을 渴望하고 있다 하더라도 獨逸統一의 前途는 그리 밝지 못하다 하겠다.

1972年 基本條約締結을 爲한 協商過程에서 西獨 브란트 首相의 1民族 2 國家論에 立脚한 獨逸構成國 독트린 (The Doctrine of Component Parts on Germany)이 東獨 호네크의 2民族 2 國家論을 물리치고 勝利한 것은 獨逸民族의 立場에서 볼때 至極히 多幸스러운 일이다. 勿論 分斷獨逸의 現實을 깊이 洞察하고 있는 브란트의 天才的인 現實主義路線이 호네크의 推象的 獨逸分立主義를 屈服시킨 것은 當然한 結果라 하겠다.

그러나 將次 먼 未來에 있어서 獨逸은 東獨의 2民族論에 立脚한 分割路線에 依해 永久히 分斷되고 이에 따라 獨逸民族도 깊이 分裂될 可能性이 存在한다. 왜냐하면 兩獨基本條約은 獨逸民族統一에 對해 한마디의 言及도 없을뿐 만 아니라 獨逸分割의 길을 法的으로 활짝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勿論 條約이란 法律이 政治現實을 完全規制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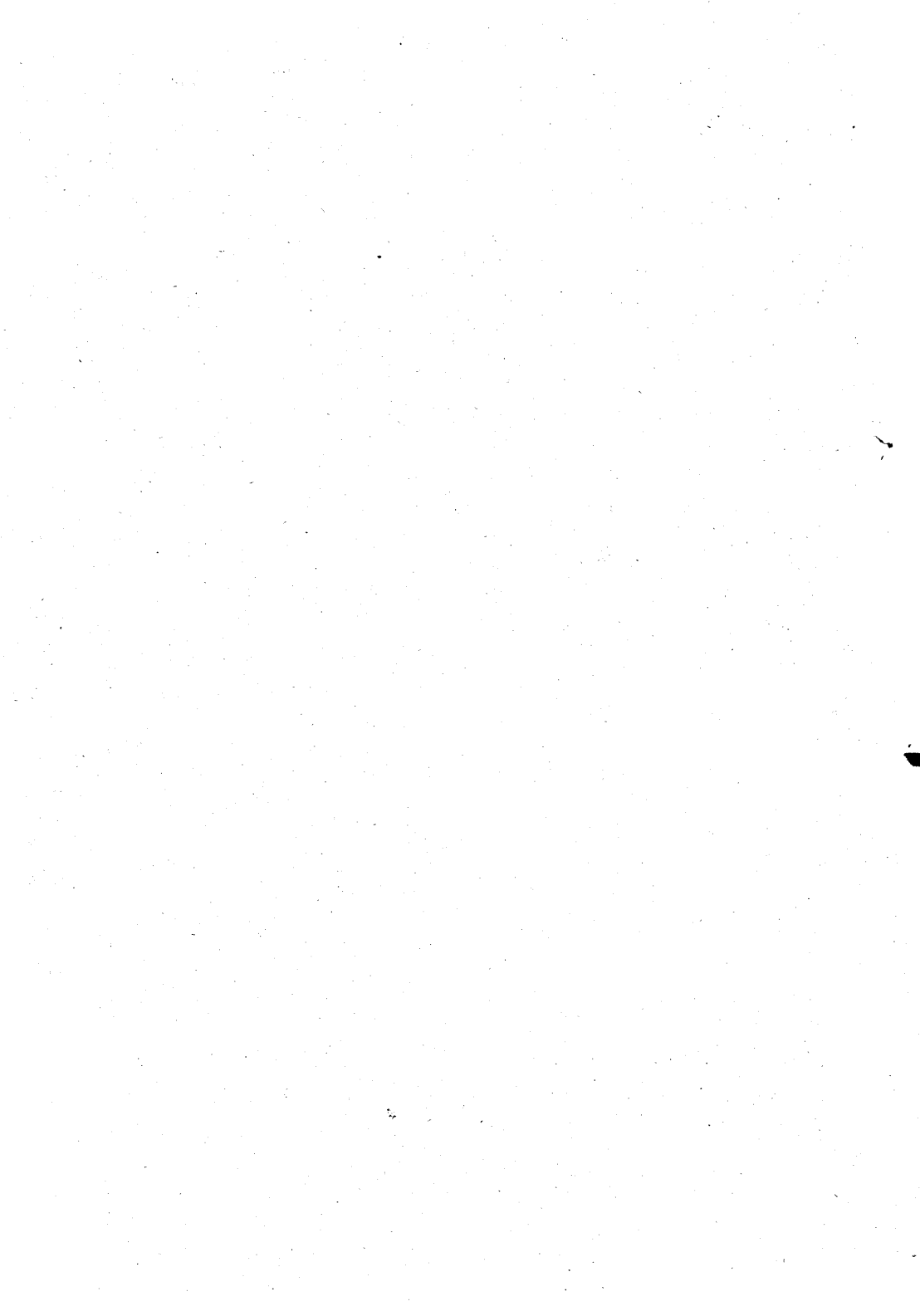
47) 1945.6.5. 4 大國共同宣言 參照.

아니지만 그러나 兩獨條約이 獨逸民族統一의 指標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現實은 無視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兩獨基本條約은 美·蘇·英·仏 4 大國은 勿論 東西兩獨의 政治的 妥協의 產物로서 브란트의 1 民族 2 國家論을 強하게 反映하고 있지만 호네크의 2 民族 2 國家論도 事實上 否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耳懸鈴 鼻懸鈴의 奇才를 가지고 있는 東西獨 基本條約이란 法의 тал을 쓰고 있는 20 世紀의 幽靈이라고나 할까? 또는 東西冷戰을 治療한 萬病通治藥이라고 할까?

終局的으로는 獨逸民族을 統一할 수 있는 힘은 4 大國이 共同으로 掌握하고 있는 獨逸最高權力도, 또는 兩獨基本條約도 아니며 本質적으로 獨逸統一民族史形成과 더불어 創造된 獨逸民族意識에서 發揮되는 民族的 創造力이다. 다시 말하면 3 月革命의 民族史의 正統性을 繼承하여 民族自決權을 부르짖고 民族統一을 追求하고 있는 西獨의 國力이야 말로 獨逸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根本 열쇠이다.

그러나 歐洲平和를 民族統一보다 上位位置 概念으로 設定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獨逸民族主義의 処地로 보나, 또는 歐洲統合을 부르짖으면서 單一民族主義를 克服하고 있는 유럽史의 發展向方과 20 世紀의 世界史의 主流를 勘案해 볼 때, 과연 獨逸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 韓國과 西獨의 正統性問題比較研究

全 正 煥  
國防大學院教授

## 1. 問題의 提起

大韓民國과 獨逸聯邦共和國는 비슷한 時期에 分斷國으로 誕生하였고 또한 兩國은 자기 韓半島와 獨逸에서의 正統性과 唯一合法政府의 地位를 주장하였다.

正統性 혹은 合法性이란 一般의 統治者側으로서는 統治할 正當한 權利를 가졌다는 認識과 被治者側으로서는 이러한 權利에 대한 認定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正統性은 統治權의 基礎가 되는 것으로 政治安定의 重要한 要件이 된다.

따라서 모든 時代 모든 國家나 政府들이 正統性을 確立하고 確認시키려 하였지만, 특히 韓國과 西獨 같은 分斷國들의 경우 正統性問題는 內的 政治安定을 위해서도 重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오히려 그 보다도 兩國이 각각 對峙하고 있는 北傀나 東獨과의 競爭이나 나아가 兩國이 각각 追求하는 統一問題와 결부해서 더욱 重要性을 가진다 하겠다.

그런데 正統性의 概念은 時代와 社會, 文明에 따라 相異하고 그 類型도 여러가지이다. 특히 오늘날은 自由民主主義諸國과 共產圈諸國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概念이 또한 相異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韓國과 西獨의 政府樹立의 過程, 兩國의 正統性과 唯一合法政府 主張을 中心으로 兩者間의 類以點과 相異點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2. 分斷의 發想과 政府樹立過程의 差異

韓國과 西獨은 같은 分斷國들이기는 하나 分斷의 起源과 發想, 大韓民國政府의 樹立과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樹立過程과 性格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우선 統一·獨立·主權 韓國의 樹立은 이미 第2次世界大戰中에 關係 強大國들에 의하여 約束 宣言되었던데 反하여 獨逸의 分割·占領은 終前 以前부터

聯合國들에 의하여 合意되었다.

즉, 1943年 11月 「카이로」에서 會合하였던 美·英·中 3國首腦들은 「三  
大國은 韓國人民의 奴隸狀態에 留意하여 適當한 時期에 韓國이 自由 및 獨立  
하게 되어야 할 것임을 決意하였다」라는 內容의 共同聲明을 發表함으로써 韓國  
의 獨立을 國際的으로 保障하였다. 蘇聯 역시 「카이로」會談 직후에 열렸던  
「테헤란」會談에서 韓國의 獨立에 同意하였다.

그리고 韓國의 獨立은 「알타」會談이나 「포츠담」會談, 그리고 1945年 12月  
에 열렸던 「보스크바」外相會談에서도 美·英·蘇·中 4個強大國들에 의하여 再  
確認되었다.

그러나 獨逸의 分割問題는 1943年 10月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美·英·  
蘇 3國外相會議에서 이미 論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열렸던 「테  
헤란」에서의 美·英·蘇 3巨頭會談에서도 獨逸分割에 關한 具體的 案이 제시되  
고 論議되었으며 「알타」會談에서는 獨逸分割에 關한 原則的 合意가 3國間에  
이루어졌다.

즉, 「알타」會談 後 發表된 共同聲明에서 3國은 「獨逸內에 各己 個別的인  
占領地帶를 가질 것」과 「仏蘭西가 願한다면 占領地帶를 가지고 또한 管理委員  
會의 一員으로 參加하도록 招請한다」는데 合意를 보았다고 宣言하였다.

그리고 「포츠담」協定 第7項은 獨逸 中央政府 대신 當분간 獨逸國中央行政機  
關이 設置되어 聯合國들의 管理理事會指揮下에서 行動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終戰과 同時에 表面化되었던 美·蘇間의 對立, 뒤이은 東·西間 冷戰의 台頭와  
深化로 因하여 韓國에 對한 強大國들의 統一·獨立 約束과 保障이 霧散되어 南  
·北分斷이 固定化되고, 永久分割이 아니라 占領目的을 위하여 分割한다는 獨逸에  
대한 聯合國들의 約束 역시 지켜지지 않고 獨逸의 分斷이 固着되어 結果的으로  
南·北韓의 分斷과 東·西獨의 分斷은 같은 形態가 되었으나 起源과 發想은 上  
述한 것처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다음에 大韓民國政府의 樹立과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樹立過程 역시 같지 않다.  
먼저 韓國政府의 樹立經緯를 考察하여 보면 統一·獨立·主權 韓國政府 樹立의  
失敗는 戰後 露骨化된 蘇聯의 共產主義 및 勢力圈 膨脹政策과 이로 因한 美·  
蘇間의 對決, 蘇聯의 指令과 指導下에 움직이던 少數 共產主義者들의 反民族的

行動과 陰謀에 主로 起因하였다.

1945年 12月, 韓國問題處理에 關한 「모스크바」協定の 內容은 大략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民主臨時政府를 樹立한다.

둘째, 韓國民主臨時政府의 樹立을 위하여 美·蘇占領軍司令部의 代表들로 構成되는 共同委員會를 設置한다. 이 委員會는 韓國의 民主的 諸政黨 社會團體 代表들과 協議한다.

셋째, 韓國國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進歩와 民主的 自治의 發展 및 韓國의 國家的 獨立의 達成을 協力·援助하는 方法을 作成하는 것도 共同委의 課題이다. 原則적으로 5年間の 信託統治 實施를 前提로 한 美·英·蘇 3國間的 合意였으나 韓半島에 獨立·民主政府를 樹立한다는 原則에는 「카이로」나 「알타」 「포츠담」會談 때와 變함이 없었다.

그러나 激化되기 시작했던 美·蘇間의 對決과 韓半島全體를 衛星國化하려던 蘇聯의 野心은 이러한 合意事項의 履行을 不可能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美·蘇共同委員會도 決裂되었다.

美·蘇 共委의 決裂 後 美國은 4大國會議의 開催를 계의하였으나 이것 역시 蘇聯에 依하여 拒否하자 韓國問題는 1974年 9月에 美國에 依하여 「유엔」에 上程되었다. 따라서 韓國問題는 적어도 外形上 그리고 公式의으로는 韓半島關係國들로부터 「유엔」이라는 世界機構에 移管되었다. 「유엔」總會는 1947年 11月에 韓國政府樹立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案을 채택하였다.

첫째,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의 監事하에 韓國에서 總選舉를 實施한다.

둘째, 選舉 後 加급적 빨리 國會를 構成하고 政府를 樹立한다.

셋째, 政府는 南·北韓의 軍政當局으로부터 政府의 諸機能을 移讓받는다.

그러나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의 入北이 蘇聯軍에 依하여 拒否당하여 北韓地域에서의 同委員團의 機能遂行이 不可能하였으므로 새로운 「유엔」의 決定에 따라 南韓地域에서만 「유엔」의 監事하에 總選舉가 실시되어 制憲國會가 召集되었고, 憲法이 制定되어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다.

뒤이어 12月 12日에 「유엔」總會는 大韓民國政府가 韓國의 唯一合法政府임을 宣稱하는 決議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大韓民國政府는 世界機構인 「유엔」의 決議와 正當한 民主節次에 依하여 樹立되었으며 同機構에 依하여 唯一合法性을 公認받았던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樹立過程은 韓國과 여러面에서 相異點을 가지고 있다.

獨逸의 分割占領에 關한 聯合國間의 合意는 이미 戰爭中에 이루어졌으며 戰後 獨逸問題 處理에 關한 基本原則도 「포츠담」會談에서 議決되었다. 그리고 이 會談의 決議에 따라 設置되었던 聯合國外相會議에서 獨逸問題가 계속 論議되었으나 蘇聯과 美·英·仏 3 個國間의 對立은 深化되었다.

1947年 3月에 열렸던 「모스크바」外相會議 以後 獨逸問題에 關하여 西方 3 個國이 蘇聯과 合意에 도달할 可能性은 더욱 희박해졌다.

1948年 2月과 3月에 걸쳐 上記 西方 3 個國과 「벨기에」 「네델란드」 및 「룩셈부르크」 6 個國은 「런던」에서 會談을 가지고 西歐經濟再建에 西方 3 個國 占領地域인\* 西部獨逸도 포함시키고 獨逸을 自由世界의 一員으로 만들 計劃을 明白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蘇聯은 이러한 決定들이 이제까지의 4 個國 合意事項 및 「포츠담」協定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獨逸分斷의 責任을 西方側에 돌리고 1948年 3月 20日에 聯合國管理理事會로부터 代表를 철수시킴으로써 이 理社會의 機能은 마비되었다.

그러나 上記 6 個國은 다시 會晤를 가지고 6月 7日에는 「포츠담」協定에 따라 西自治政府를 樹立할 節次로서 憲法의 制定을 위하여 制憲議會를 召集할 것에 合意하였음을 發表하였다. 西方側은 이 協定에 따라 1948年 7月 1日에 西獨 11 個州政府首相들에게 聯合憲法의 制定을 위하여 憲法制定會議을 1948年 9月 1日까지 召集할 것을 제안하는 文書를 전달하였다.

西獨州政府首相들은 이와 關聯하여 會晤를 가지고 獨逸의 分斷을 피하기 위하여 制憲議會의 召集과 憲法制定은 뒤로 미루고 議會評議會의 構成과 西方側占領 地域의 統一의 行政을 위한 基本法의 制定을 제안하였다.

그 後 占領軍政長官과 州政府首相들이 그들의 意見을 調整한 후 7月 25日 州政府首相會議에서 基本法의 制定을 위한 專門家들이 任命되어 基本法의 草案이 作成되었다.



基本法은 総選에 依하여 構成된 制憲議會가 아니라 各州代表 65名으로 構成된 議會評議會에서 1949年 5월에 通過되었고 各州 議會의 承認을 얻어 5月 24일에 發効하였다.

1949年 8月 14일에 聯合議會選舉가 실시되었고, 西獨政府가 樹立되었다. 그리고 9月 21日에는 西獨에 대한 西方聯合國들의 새로운 占領條項이 發効하였다.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 西獨政府가 樹立되었으나 西獨은 아직 完全한 主權獨立國家의 地位를 回復한 것은 아니었다. 西獨이 完全한 主權國家의 地位를 回復한 것은 1954年 10월에 締結되었던 「빠라」條約이 發効되어 西獨이 NATO에 加入되었던 1955年 5月 5日이었다. 이와 同時에 聯合國들의 占領條項도 폐기되었다.

그러나 獨逸의 蘇聯占領地에서도 1949年 10월에 東獨政府가 樹立되었고 蘇聯은 東獨政府에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移讓하였다가 1954年 3月에는 東獨의 主權을 承認함으로써 東獨 역시 完全한 主權國家로 宣言하게 되었다. 東獨의 完全한 主權回復 宣言으로 西獨과 東獨間에는 唯一代表權問題를 놓고 날카롭게 對立하였다. 특히 西獨은 唯一代表權의 관철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西方 3個占領國들은 西獨의 이러한 主張에 同調하여 1954年 1월에 「獨逸聯邦共和國政府만을 自由롭고 合法的으로 形成되고 따라서 國際的 事項에서 獨逸國民의 代辦者로서 獨逸을 위하여 代辦할 수 있는 唯一의 獨逸政府로서 看做한다」라고 宣言하였다. 이 宣言은 다른 NATO 國家들에 의하여서도 수락되었다.

北傀와 東獨에 대한 韓國과 西獨의 正統性和 唯一合法性 主張과 그 根柢는 뒤에 考察하는 바와 같으나, 韓國과 西獨政府의 樹立 背景과 過程만을 우선 비교하여 보면 이와 같이 韓國의 主權·獨立政府의 樹立은 이미 終戰 以前부터 強大國들에 의하여 約束 保障되었던 事項이며 獨逸에 關해서는 그 分割·占領의 戰爭中에 이미 聯合國들에 의하여 合意되었다는 差異가 있다.

또한 東·西 冷戰의 台頭와 激化로 因하여 韓半島와 獨逸의 分斷이 固着되고 兩 地域에 각각 두 개의 政權이 樹立되었다는 共通點은 있으나 大韓民國政府는 世界機構인 「유엔」의 決議에 따라 그리고 「유엔」의 監視하에 制憲議會가 構成되고 憲法이 制定되었으며 「유엔」에 의하여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이 認定되었는데 비하여 西獨政府는 西方占領國들의 管理下에서 議會評議會에 의하여 制定

된 基本法을 根拠로 樹立되었으며 西獨政府의 唯一合法性은 西方占領 3 個國과 NATO 同盟國들에 의하여 認定되었다는 差異點이 있다. 그리고 西獨이 完全한 主權을 回復한 것은 韓國의 경우처럼 政府樹立과 同時가 아니라 1955年 5月 이었음은 前述한 바이다.

또한 大韓民國憲法은 永久的인 憲法이었던데 反하여 西獨의 基本法은 第146條에서 全獨逸國民의 自由로운 意思決定에 의하여 制定된 獨逸憲法이 効力を 發生하는 날 까지 有効하다고 規定함으로써 이 基本法이 過渡的인 憲法임과 西獨이 部分國家라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韓國과 西獨의 正統性 主張 比較

韓國이 北傀에 대하여, 西獨이 東獨에 대하여 絶對的인 不承認主義를 固守하고 正統性과 唯一合法性 혹은 單獨代表權을 主張하면서 제시한 理論과 根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과 西獨 政府는 有權者들의 自由意思의 正當한 表現인 選舉에 基礎를 두었던데 反하여 北傀와 東獨 政權은 占領軍인 蘇聯軍의 造作物에 不適當으로 民主主義的인 資格에 결함이 있고 自主性이 결여되어 있는 不法政權이라는 점이다.

「막스 베버」가 分類하고 있는 세 가지 類型 가운데 하나인 「合理的인 正統性」이라는 概念에 따르면 權力の 掌握過程이 正當하지 못했던 東獨과 北傀政權은 分明히 正統性이 결여되어 있고 不法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政權은 그 支配權에 대하여 人民들이 自由로운 분위기 속에서 意思表示할 機會를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唯一代表權을 主張하는 西獨政府의 公式見解는 1945年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獨逸은 法的으로 國家로서 繼續되며 西獨만이 獨逸國家의 唯一한 繼承國家로 西獨과 獨逸國家는 同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西獨의 主張에 대하여 東獨은 獨逸國家는 1945年의 항복과 聯合軍의 分割占領으로 解体되고 沒落되었으며 이렇게 沒落한 獨逸國家의 領土 위에 두 개의 主權國家가 成立한 것이고, 따라서 東獨과 西獨은 서로 獨立된 外國으로서 두 개의 國際法主体라고 主張했다.

즉, 繼承說과 同一說 그리고 沒落說과 部分國家說이 맞았던 것이다. 韓國 역시 大韓帝國의 繼承者임을 主張하였다. 즉, 大韓帝國은 韓·日議定書나 乙巳保護條約 그리고 韓·日合併條約 등이 日本의 暴力的 強迫에 의하여 締結되었으므로 源泉으로 無効임으로 潛在적으로 存統되어 왔으며, 上海臨時政府는 大韓民國을 對外的으로 代表했던 亡命政府였고, 大韓民國은 大韓帝國을 繼承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東獨과는 달리 北傀는 韓國의 正統性에 逃蔽하고 오히려 그들의 正統性을 특히 最後에 더욱 適極적으로 主張하고 있다. 물론, 40年代 後半이나 50年代, 즉 北傀에 대한 蘇聯의 支配權이 強力하고 또한 6.25 逃遁과 敗戰으로 國際社會에서 侵略者로서의 烙印이 아직도 鮮明하고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內外與件이 갖추어져 있지 못할 때까지는 正統性이나 더욱 唯一合法性은 감히 크게 主張하지 못하고 오히려 韓國과 同等한 資格이나 地位를 追求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中·蘇紛爭의 激화로 北傀에 대한 이들의 支配權이나 牽制력이 弱화되고 武力南侵準備가 一段落지어지고 더우기 國際社會가 現狀固定과 脫「이베올로기」의 原則을 志向하고 특히 中共의 登場과 第3世界國家들의 發言權이 높아지면서 北傀의 國際社會進出이 용이해지고 地位가 어느 정도 強化되자 正統性과 唯一合法的 地位를 적극적으로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北傀는 이른바 「主體」를 내세우고 民族史를 捏造하고 匪賊行爲에 불과한 金日成의 日帝時 行爲를 「抗日武裝斗争」으로 虛偽造作하면서 內外로 적극적인 宣傳을 전개하고 있다. 西獨과 韓國의 正統性 主張은 兩國이 각각 全體人口의 約 4분의 3과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고 絶對적으로 優勢한 國力を 가지고 있다는 것

韓國과 西獨이 自由民主主義體制를 確立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傀와 東獨이 非民主主義의 이고 非人間的인 獨裁體制下에 있다는 것, 韓國과 西獨이 다 같이 古有한 傳統과 文化, 生活樣式 등을 繼承 發展시키고 있는데 反하여 北傀와 東獨은 完全히 異絶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選拔 信奉하고 異質的인 文化와 生活樣式을 追求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強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北傀는 6.25 南侵을 감행함으로써 國土를 焦土化시키고 엄청난 民族의 財產과 人命의 損傷을 가져오게 한 反民族의 罪惡을 犯했고 또한 世界機構인 「유엔」에 의하여 「侵略者」로

規定되었다는 점에서도 反民族的 不法集團일 뿐만 아니라 韓半島내에서나 國際社會에서 公認된 犯法集團임을 否定할 수 없다.

合法과 正義의 確立보다 自國의 國家利益을 優先시키는 國際社會에서 北傀의 地位가 向上되었고 活動이 增大되었고 韓國이 이미 單獨으로 加入되어 있던 여러 國際機構에 北傀도 함께 加入되어 있다 해서 北傀의 이러한 反民族的 不法集團과 犯法集團으로서의 性格은 變化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現代에 있어서 첫째, 國家가 志向하는 價值와 國民이 志向하는 價值가 얼마나 一致하고 있는가, 둘째, 國民의 意思가 얼마나 올바르게 代辦되고 있는가, 셋째, 政治의 產物들이 社會正義에 위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들이 正統性의 重要한 根柢가 된다는 것이 一般의 人學說이기 때문에 北傀가 主張하는 正統性은 더욱 虛構이다.

왜냐하면 우선 北韓住民들의 意思는 北韓政治에 全연 反映되고 있지 못하며 金日成의 一人獨裁政治와 神格化는 一方的으로 住民들에게 強要되고 있는 것으로 金日成 一人과 一族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住民을 포함하여 韓半島의 5千萬民族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 統一을 願하고 追求하고 있는데 反하여 金日成一黨은 緊張의 高潮와 새로운 戰爭을 追求하고 있고 民族의 兩團合과 統一을 妨害 沮止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韓國과 西獨의 正統性 主張의 變遷過程

建國以後 韓國이 公式의 으로는 變換 없이 계속해 왔던 北傀에 대한 絶對的인 不承認政策은 1970年 朴正熙大統領의 8.15宣言으로 部分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즉, 上記 宣言에서 朴大統領은 北傀가 武力이나 暴力에 의한 赤化統一企圖를 포기하면 南·北間의 人爲의 障壁을 除去할 劃期的인 方案을 제시하겠으며, 北傀가 韓國의 民主統一과 獨立, 平和를 위한 「유엔」의 權威와 機能을 수락하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傀가 參席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北傀에 대하여 民主主義와 共產獨裁間에 開闢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을 제의 하였다.

이 宣言을 계기로 韓國은 그 存在를 全연 認定하지 않고 또한 一切의 公式接觸을 拒否하던 北傀와 南·北對話를 제의 實現시켰다. 즉, 北傀를 競爭과 처

話의 相對로 일단 認定한 것이다.

그리고 1973年 6月에는 朴正熙大統領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通하여 北傀의 國際機構參與 默認과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 不反對, 共產諸國에 對하여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相互門戶開放 등을 闡明하였다.

그러나 上記宣言에서도 朴大統領은 이러한 政策 가운데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의 暫定指置로서 우리가 北傀를 國家로 認定하는 것은 아님을 分明히 밝혔다.

즉, 8.15 宣言이나 南·北對話, 6.23 宣言, 그리고 1974年 1月에 北傀에 對한 南·北間 不可侵協定 締結 제의 등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北傀에 대한 韓國의 政策이 部分的으로 修正되고 變化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韓國의 正統性이나 唯一合法性 主張, 北傀에 대한 國家承認의 拒否 등의 原則을 포기하거나 修正한 것은 결코 아니다.

韓國의 對北傀政策의 이러한 修正과 變化는 크게 變化된 國際情勢를 背景으로, 그리고 統一보다 우선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과 平和定着, 戰爭再發의 防止, 平和統一을 위한 效果的인 基盤造成을 目的으로 하는 現實主義에 立脚한 것이라 하겠다.

反面 「할슈타인」原則으로 代表되는 西獨의 對東獨不承認政策은 根本的인 變化를 보여주었다.

즉, 1952年에 「西獨政府와 公式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第3國이 東獨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은 獨逸의 分割을 深化하는 非友好的인 行爲로 看做한다」는 內容의 「할슈타인」原則을 宣言했던 西獨은 東獨을 國家로 承認하지 않는 것은 물론 第3國들의 東獨承認도 적극적으로 沮止하려 하였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와 이미 西獨의 「할슈타인」原則은 變質을 보여 東獨과 修交하고 있는 나라들과도 國交를 맺기 시작하였고 基民黨과 社民黨이 大聯政을 實現했던 60年代 後半에는 東歐諸國과의 修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할슈타인」原則은 事實상 폐기된 상태였다 하겠다.

그리고 1969年에 社民黨이 執權하면서 10月 28日, 「셸」外相은 議會에서의 演說을 通하여 「할슈타인」原則의 폐기를 公式的으로 宣言하였고 東獨과의 公式的인 政治的 接觸을 시작하여 1972年 11月에는 兩獨間에 基本條約이 締結되었

다.

基本條約 第1條에는 兩獨의 同等한 權利, 第2條에는 兩獨間에 主權·平等·獨立·自主·領土保全의 존중, 第3條에는 武力威脅과 使用의 포기, 境界線의 不可侵性과 領土保全의 無制限 尊重, 第4條에서는 兩獨中 어느 一方이 相對方을 國際的으로 代表하거나 또는 自國의 名의로 相對方을 대신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것이 規定되어 있다.

물론, 西獨은 아직까지 兩獨間의 關係를 完全한 外國間의 關係가 아니라 外國間의 關係와 內國으로서의 關係가 混合된 것이고 國際法的인 要素가 混合된 獨逸內部的 國家關係라는 理論을 펴기도 하면서 東獨에 대한 明示의이고 法的인 國際法上的 承認을 拒否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西獨은 東獨에 대하여 條約에 의한 國家承認과 平等을 認定하였으며 따라서 西獨의 唯一合法性和 單獨代表權 主張은 포기된 셈이다.

西獨의 이러한 「一民族 二國家」論의 實現은 現段階로는 韓國의 對北僞政策과 根本的으로 相異한 點이라 하겠다.

# 分斷國에서 正統性問題가 擡頭되는 要因

李 承 憲  
建国大学校 教授

## 目 次

- I. 民族史的 正統性的 定立이 要求되는 内外狀況
- II.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內容과 實質的基準

### I. 民族史的 正統性的 定立이 要求되는 内外狀況

#### 1. 1950年代의 狀況

1950年代에 있어서는 国内的으로 國民들의 意識속에 北傀 金日成集團이 蘇聯이라는 外勢의 介入에 依해 形成되었고 國際社会에서도 그 存在가 外面當하고 있는 不法集團이라는 明確한 認識이 들어 있었는데다가 六·二五動亂을 통하여 그들의 好戰性과 反民族性을 再確認하였으며 또한 對外的으로도 國際政治의 冷戰構造속에서 自由友邦諸國이 北傀에 대하여 封鎖政策으로 一貫해 왔고 中共에 대해서도 侵略者의 烙印을 적고 國際社会에서 孤立시켜 왔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은 自명한 것이었으며 그에다 國際聯合에서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 唯一合法政府라는 公認을 받고 있었으므로 우리의 正統性問題는 學論할 必要조차 없었다.

#### 2. 北傀의 挑戰-主体思想의 本体

한편 北傀 金日成集團과 그 背後操從者로서의 「로마빙코」政治司令部는 当初부터 北傀集團의 不法性을 隱蔽하기 위하여 마치 正統性이 그들에게 있는것 처럼 偽裝하기 위한 欺瞞의 術策을 展開하기에 血眼이 되었다. 즉 「로마빙코」司令부와 金日成一黨은 解放直後 北韓地域의 赤化를 試圖하는 過程서 부터 이미 正統性을 偽裝하는데 銳敏하였다. 當時 韓半島全民族의 念願은 解放의 기쁨속에 民族主義의 感情이 高潮되어 있었고 그 當然한 歸結로서 即時 自主獨立國家를

建設하고 自由民主主義社會를 實現시키자는 熱望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金聖柱」를 所謂 「金日成」으로 捏造함으로써 民族主義者로서의 이미지를 造作하여 正統性을 偽裝할 第一步를 내디뎠고 아울러 「祖國의 獨立」이라던가 「民主主義社會의 建設」이라는 등의 象徵的 言語를 動員해 나갔다. 金日成은 共產獨裁라는 實體를 「民主主義」란 象徵的 言語로 粉飾함으로써 金日成이 民族史的 要請인 祖國의 政治的 近代化에 寄與하려 하고 있는 듯한 偽裝戰術을 展開하였으며 또한 階級革命이라는 實體를 「民族主義」란 象徵的 言語로 粉飾함으로써 北韓을 赤化하기 위한 統一戰線戰略을 展開해 나갔던 것이다.

그後 1950年代를 통하여 金日成集團은 그들의 反民族的 傀儡性을 隱蔽하기 위하여 正統性 造作에 注力하였다. 이어 1960年代에 들어 共產陣營이 中共과 蘇聯의 反日·對立으로 因하여 分裂되기 始作하면서 부터 北傀는 金日成個人崇拜을 骨子로 正統性的 捏造方向을 굳히기 始作하였고 60年代 中半期부터는 이른바 「主體思想」을 再強調해 나갔다. 즉 北傀는 「主體思想」을 내세워 「金日成唯一體制」를 構築하면서 民族史를 捏造 또는 歪曲하고 金日成을 神格化시킴으로써 好戰的이고 反民族的인 戰爭政策(武力革命政策)이 民族史的 要請인樣 偽裝하고 金日成 個人獨裁를 正當化시켜 나갔다. 아울러 對外的으로는 이른바 平和攻勢를 展開함으로써 그들의 好戰的 侵略性을 隱蔽하고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毀損하기 위한 갖가지 心理戰을 展開해 나갔다.

그 內容을 좀더 깊이 살펴 보면 金日成은 1955年 12月 28日 所謂 『思想事業에 있어 敎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하는데 對하여』라는 演說에서 이른바 「主體」를 強調함으로써 北傀의 反民族性을 隱蔽하고 오히려 그들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억지 主張하기 始作하였다. 그의 主張內容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民族史는 階級鬭爭의 歷史이고 따라서 共產革命이 民族史的 要請이며 그러기 때문에 共產化를 위한 暴力革命만이 民族史的 正統性을 繼承하는 것임을 北韓住民에게 洗腦시켜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또한 그와 같은 「階級革命」을 위한 煽動過程에 있어서는 民族主義的인 北韓住民의 感情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結局 「主體思想」의 特質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첫째 北韓의 「主體思想」은 國際共產主義에 의하여 規制된 主體를 強調하는 것으로서 우리 民族의 歷史性, 傳統性과는 無關한 것이다.

둘째, 이 「主體思想」은 「맑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이라 하면



서 金日成以外の 사람이 適用하면 教条主義나 修正主義로 물아 肅清하고 있어 「主体思想」이라는 政治口號를 操作할 수 있는 者는 오직 金日成뿐이다.

셋째, 이 「主体思想」은 思想도 哲學도 아닌 알맹이없는 言語의 遊戲에 不過하며 오직 住民強圧과 統制의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

네째,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革命傳統」을 強調하고 金日成中心의 「抗日빨치산」 運動을 誇張宣傳함으로써 우리의 傳統的인 民族史觀을 歪曲시키고 北韓의 모든 政治思想의 傳統의 根柢를 金日成으로 부터 찾게 하고 있다.

다섯째, 金日成은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造作해낸 「主体思想」을 對外的으로는 統制防禦의 實利를 獲得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그리고 對內的으로는 派閥整理와 金日成偶像化등 一人獨裁確立의 武器로서 利用하고 있다.

여섯째, 「主体思想」의 窮極目標은 民族自決이라는 名分下에, 美軍을 비롯한 UN 軍의 介入을 排除한後 韓半島를 共產化統一하려는데 있다.

### 3. 60年代以後의 内外狀況變化-새로운 挑戰

北傀의 對南心理戰은 1960年の 4.19 學生義拳當時를 前後하여 高潮의었다가 70年代에 들어와서 武力挑發과 併行하여 強力히 展開되고 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 北傀의 이러한 一連의 政治攻勢는 60年代의 挑戰과는 그 性格이나 強度에 있어 質的인 差異가 있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的 狀況의 變化에 있다. 이 狀況變化는 크게 나누어 韓半島内部에서의 狀況變化와 國際的 環境의 構造的 變化이다.

우선 國內의 狀況變化로 본다면 첫째 우리大韓民國社會에 6.25 動亂을 體驗해 보지 못한 世代가 이미 30歲 以前의 年令層을 이루고 있어 北傀의 反民族的 性格을 皮膚로 意識하지 못하는 層이 漸漸 增加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지난 20餘年동안의 安定期와 또한 지난 10餘年동안에 걸친 經濟成長에 따른 安逸한 生活風潮로 말미암아 國民一部分의 安保意識이 抽象化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國際的 狀況變化를 들면 첫째로 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北傀의 國際的 地位가 相對的으로 上昇하고 있으며 따라서 自由陣營의 一角에서 北傀에 대한 批判的 視角이 鈍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 둘째로 70年代부터 表面化되기 始作한 東西兩陣營間의 緊張緩和趨勢가 물고 오는 衝擊과 中共의 國際社會進出이 가져오는 衝擊에 있어서 非同盟中立主義國家群이 政治的 壓

力勢力으로 抬頭되고 있다는 事實, 國際聯合의 構造의 變化로 그內部에서의 投票性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印支戰爭이 共產化로 終幕을 告함으로써 亞細亞太平洋地域의 勢力構造가 全体的으로 變化하게 되었다는 事實등을 들수 있다.

#### 4. 大韓民國의 對應策—正統性定立·維持의 必要

이러한 情勢變化를 反映하여 우리 大韓民國政府는 7.4 南北共同聲明,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그리고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에 主導的 役割을 하는등 對北政策에 있어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立場을 展開해 왔다. 大韓民國의 이와같은 韓半島政策에 대해 北傀는 「分斷의 永久化」나 「民族分裂의 策動」이니하고 非難하는가 하면 南北韓의 UN 同時加入에 反對치 않는다는 우리의 政策的 立場에 대해 北傀는 「高麗聯邦制」에 依한 單一 UN 加入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우리政府가 取하고있는 政策은 暫定的 過渡的인 共存段階를 거쳐 窮極的으로 平和統一을 이룩하려는 것이지 決코 北傀의 惡宣傳과 같이 祖國의 永久分斷을 意圖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政府가 北傀를 交涉相對로 認定하는 것은 平和統一을 위한 暫定的 措置이지 決코 國際法上 國家로 承認하려는 豫備段階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主要國際機構에 北傀의 參加를 拒否하지 않는 것도 民族의 再結合을 拒否하는 「一民族二國家論」의 解釋을 誘導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對의 解釋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이러한 새로운 事態發展을 自己便에 有利하게 戰略的으로 利用하려 들고나왔다. 北傀가 「自主路線」을 부르짖고 「對美平和協定」을 提議하고 南北間의 「大民族會議」나 「聯邦制」를 提議하면서 心理戰的 側面에서 「攻勢的 戰略」을 追求하고 있는것이 그것이다. 그런 點에서 같은 分斷國家이면서 獨逸式方式은 韓半島의 경우에 그대로 適用할 수 없다는 特殊性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北傀는 最近에 와서(虛構的인) 北侵威脅의 除去, 對美平和協定の 締結, 大民族會議의 召集등을 骨子로 하는 共產側決議案을 提出하여 第31次UN 總會에서의 外交對決을 再次 強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共產側 決議案에 대한 國際的支持獲得, 美軍撤収에의 國際輿論喚起등을 노려 板門店事件을 일으키는등 大韓民國에 대한 政治外交的·軍事的 挑戰을 加增해 오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 우리가 北傀의 挑戰을 克服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면서 段階的으로 平和統一을 達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特殊性을 바탕으로한

民族史的 正統性的 理論을 体系化하고 이를 北傀와 國際社會에 대하여 널리 弘報하면서 優越者の 立場에서 우리의 統一政策을 果敢히 推進시켜 나갈 것이 緊急히 要請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첫째로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体系的인 理論으로 定立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全韓半島의 規模로 具現되게 할 具體的 戰略과 獨自의 手段까지 開發할 것이 緊要하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우리는 北傀가 그동안 民族史的 正統性을 偽裝하기 위하여 構築해온 各種 似而非 論拠를 論理的으로 批判・暴露할 것이 重要하다. 그러할때 우리는 韓半島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國際輿論을 醇化시켜 大韓民國에 대한 國際的 支持・支援을 增進시키고 아울러 相對的으로 北傀의 國際的 孤立을 가적으로 함으로써 窮極的으로 우리의 主導下에 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國際的 條件을 造成하는데 決定的 役割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II.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內容과 實質的基準

### 1. 分斷國인 大韓民國의 特殊性을 反映한 概念內容

우리 大韓民國은 現代 歐美社會에 있어서의 正統性에 관한 一般概念의 設定만으로는 充足될 수 없는 特殊性을 갖고 있다. 그 基本的인 理由는 첫째로 韓國이 가지고 있는 歐美와는 다른 政治文化의 傳統때문이며 둘째로 韓國이 分斷國家로서 안고 있는 特殊性때문이다.

國際社會에 있어 모든 單位國家들은 그 存立을 위하여 正統性的 內容의 根拠를 形成하는 論理體系를 갖출 것이 要請되고 있는데 分斷國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政治體制라는 論理에서의 正統性的 問題뿐만 아니라 分斷된 政治實體의 單位들을 再統合시켜야 한다는 現實的 論理的 根拠로서도 正統性이 問題가 된다.

金日成集團은 自體의 反民族性과 非正統性때문에 일찍부터 正統性問題에 骨沒해 왔으며 그 나름대로의 理論的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갖가지 事實을 歪曲・捏造하면서 北韓住民들을 洗腦시켜 왔다. 이러한 狀況下에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論理的으로 立証하는데 要求되는 點으로는 다음 두가지 側面이 있다. 그 하나는 歷史的・動態的 接近方式에 의해 民族史속에서 우리의 正統性을 連結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平面的・靜態的 接近方式으로서 우리 社會의 優秀性을 立証하고 우

리 社會의 進路가 우리 民族史의 要請과 符合되는 것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러한 立證過程에 있어서 우리는 恒常 北傀의 捏造된 正統性 論說의 虛偽性·欺瞞性을 暴露해야 한다.

民族史의 正統性的 모델概念은 韓民族의 5千年 民族史와 民族文化의 傳統이라는 經驗的 土台위에서 認識되어야 하고 一貫성과 永統性을 가진 韓民族 特有的 歷史的 價值型으로 設定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概念모델은 韓半島에 살고 있으면서 土着的 韓國思想의 源流를 알고 日常的 行動으로 實踐하고 있는 真正한 主体의 韓國人에 의해서만 設定될 수 있다. 이렇게 歷史的 價值모델로 設定된 民族史의 正統性은 必然的으로 現在와 未來의 韓國史 推進의 原動力이 될 것이며 우리 民族의 至上課題인 祖國統一의 土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民族史의 正統性은 民族文化論의 概念인 民族的 主体性과 國家論의 概念인 國家의 法統性을 根本土台로 하여 形成發展된 民族的 總和性을 그 本質的 特性으로 하고 있는바 이들 3構成要素는 構造的으로 體系化되어야 한다.

그중 民族總和性(8.1運動後부터는 民族과 國民이 合一된 國民總和性으로 昇華)은 韓民族이 歷史的 理念體系로 啓發하고 發展시켜온 民族精神, 弘益人間理念花郎精神 敬天愛人思想, 民本思想, 人乃天思想등을 精神的 土台로 하여 形成되어 왔다. 이들은 個人的 創造的 最善我實現(民主主義의 理想)을 保障하면서 全体秩序(國家秩序)의 維持·發展을 指向하는 다시말해서 個人과 全体를 調和시키는 總和性을 特質로 하고 있다. 이러한 思想的 傳統은 오늘날 韓國民主主義發展의 本質的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將次 祖國統一과 民族中興의 原動力이 될 수 있다. 그런데 萬若 우리가 國粹的 排他主義에 흐를 경우에는 文化創造能力과 新時代適應能力을 喪失하여 도리어 民族總和性을 破壞하는 逆機能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外來文化를 無批判的으로 提取한 나머지 우리의 思想的 傳統이 外來文化에 壓倒되어 文化的 主体性을 喪失하게 될 때에도 民族總和性을 깨트리고 民族的 創造力을 萎縮시켜 民族的 危機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날 北傀가 「삼스·레닌」主義라는 異質的 外來思想에 盲目的으로 陶醉되어 우리의 思想的 傳統을 根源的으로 破壞시키고 있는 것은 民族的 精神的 分裂을 助長하여 民族總和性을 基底로 부터 흔들어 놓는 일로서 우리 歷史上 類例없는 反民族的 行爲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民族史의 正統性은 民族의 얼과 民族意識을 土臺로한 民族的 主体性의 原理를 前提로 해야 비로소 成立된다. 民族의 主体性은 民族文化創造의 核心이 되는 만큼 民族의 主体性이 사라지는 경우 民族은 歷史創造의 能力을 喪失하여 民族史의 停滯를 가져오고 窮極의으로는 民族存在의 消滅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民族의 主体性이란 바로 民族生存의 原理인데 民族의 主体性을 確立하는 길은 過去의 民族史 傳統속에 담겨져 있는 主体의 歷史意識을 再創造하여 民族史創造의 本質인 「民族精神」을 되살리는데 있다. 具體的으로는 五千年 民族史의 生命力인 韓民族의 얼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民主自主力量 (自主民主, 自立經濟, 自主國防, 自主外交, 文化的 主体性等)을 培養함으로써 民族의 主体性을 強化·發展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歷史적으로 볼때 人類은 民族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國家의 테두리속에서 生活해 왔기 때문에 民族의 主体性은 國家의 正統성과 連結된다. 韓民族의 政治의 主体勢力은 民族의 主体性을 바탕으로 하여 行動할때만이 正當한 國家의 正統性을 獲得하게 된다. 民族의 主体성과 連結되지 않은 政治勢力은 不法의 叛亂集團에 不過하며 힘에 依래 政權을 奪取하였을 경우 名分上 正當한 法統을 認定받지 못하여 結果의으로 民族史의 停滯와 後退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民族主体성과 國家의 正統性의 關係는 相互 正比例關係에 놓여져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視角을 若干 달리하여 民族史의 正統性을 文化的 正統性, 政治的 正統性 및 國際的 正統性의 세 가지 側面에서 把握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民族의 文化傳統은 固有한 土俗信仰에서 出發하여 佛敎, 儒敎, 基督敎等 外來宗教를 民族化시켰고, 近代에 와서는 이들을 綜合한 天道敎가 東學革命이나 3.1 運動을 이끌었다는 宗教의 背景위에 서있다는 點을 指摘하고, 民主選好的이고 平和指向의인 民族에게 北傀와 같이 全体主義體制와 好戰性을 불어넣는 것은 民族性을 文化傳統·歷史傳統과 背弛되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그리고 韓民族의 政治傳統은 德治主義를 土臺로 하여 民本主義的 要素를 涵養해 왔으며 國難을 당하였을때 超階級·超宗教의으로 對外鬭爭을 展開하여 個人이나 階層보다 民族과 國家를 優位에 두어 왔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끝으로 國際的 正統性에 있어서는 우리 民族이 新羅王朝때 民族統一國家를 形成하여 國際社會에 登場한 以來 外勢侵略과 列強角逐아래 많은 試鍊과 苦難을 겪기는 하였으나 國家의 主權과 獨立을 國際的으로 連綿히 認定받아 왔으며 大韓民

国建立後에도 國際的 正統性을 堅持해 오고 있으나 北傀의 存在로 이점에 관한 外交的 對決이 持續되어 오고 있는 現實을 直視하여 이 對決에서 끝날내 이겨 大韓民國 主導下에 祖國統一을 達成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 2. 普遍의 概念에 비추은 留意點

民族史的 正統性이라 할때 이것은 上述한 바와 같이 包括的 概念인데 그중 「政治的 正統性」의 概念과 그 普遍的 實態를 좀더 깊이 살핌으로써 問題의 所在을 한層더 깊이 究明해 본다.

一般의으로 歐美의 政治學者들이 政治的 正統性이라 할때에는 「legitimacy」라는 單語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正統性, 合法性, 正当性 또는 認定받는 大義名分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政治的 正統性이란 簡單히 말해서 「한 國家社會가 그 構成員들에게 納得이 갈만한 說得力을 지니고 있는 機能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正統性이란 單純히 주어지는 것, 既成品으로서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政治體制가 그 體制의 存統을 위한 基本的 機能으로서 繼統 追求해 나가는 것을 意味한다는 論理가 나오게 된다. 즉 어떠한 政治體制에 있어서든지 正統性의 保持라는 것은 그 政治體制의 存統을 위하여 基本的이고 必須的인 要求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正統性이라는 實體는 決코 固定概念이 아니라 時間과 空間의 差異에 따라 正統性의 存在樣式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正統性의 確立을 위한 持續的인 追求過程을 가리켜 正統化(legitimation)라고 부른다. 그러기 때문에 正統性은 正統化를 可能케 하며 또한 正統化는 正統性을 維持케 한다는 相關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막스·웨버」(Max Weber)는 正統性을 얻기 위한 權力의 正當化를 어떠한 手段과 方法에 의하여 達成하고 있는가를 세 가지 類型으로 区分하여 ①理性的 土臺를 根拠로 한 正統性 ②傳統的 土臺를 根拠로한 正統性, ③「카리스마」의 權威를 土臺로한 正統性을 基準型으로 들었다. 이러한 三個類型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時代와 地域的인 特徵에 따라 適當히 配合되면서 展開되어 왔는데 現代 國家에 있어서는 大體로 다음 네 가지 樣相을 呈示하고 있다. 첫째로 歐美의 自由民主主義 諸國에 있어서는 國民이 政治權力을 受容해 가는 過程에 있어 열어나 民主的인 節次와 條件이 具備되었는가를 正統性의 測定值로 삼는 傾向이

濃厚하다. 그러나 軍國主義의 全体主義國家에 있어서는 주로 「種族」이라든지 「國家」라는 象徴을 통하여 正統性을 維持하려 하고 있고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階級」이라는 概念을 통하여 正統性的 維持를 企圖하고 있다. 한편 新生開發途上國家들은 大部分이 그 植民地의 經驗 때문에 大衆의 民族主義的 感情과 政權과의 一体感에 呼訴함으로써 正統性을 維持하고 있다.

### 3. 70年代後 韓半島에서의 正統性的 새로운 評價基準

또한 論者에 따라서는 政治的 正統性的 基準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設定하고 있다.

① 政權變化와 相關없이 存続하여 온 오랜 傳統國家와 領土權의 繼承與否

② 政權의 成立이 被治者인 國民의 同意에 의한 것인지 與否. 그리  
고 政權의 存続 및 交替가 公正하고 合法的인 節次로 進行되고 또한 定  
期的 選舉制度에 의하여 國民의 信任을 물어 政權에 委任된 統治權을 再  
認받고 있는지 與否.

③ 어떤 政權의 統治結果로 統治權行使의 根本目的인 公共利益 伸張에  
貢獻하였는지 與否. 여기서 말하는 公共利益은 一般的으로 國民의 自然權  
伸張을 뜻하고 具體的으로는 社會의 安定과 秩序確立, 近代化 그리고 經濟  
生活向上과 같은 것이 包含된다.

現代世界에서는 統治의 結果가 全体國民의 公益增進에 寄與함으로써만 政  
權의 合法性이나 正統性을 主張할 수 있는 狀況이 되었으므로 大韓民國政  
府의 正統性概念에도 近來에 이르러 이러한 內容이 強하게 內包됨에 이르  
렀다. 즉 最近에 이르러 大韓民國政府는 北韓共產政權이 不法의으로 樹立  
되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一人獨裁의 結果 北韓住民의 奴隸化와 經濟沈滯  
가 招來되었는데 反하여 大韓民國은 그 統治結果로 國民全体가 前에 比하  
여 훨씬 잘 살게 되었으며 이 結果만으로도 大韓民國側이 民族史的 正統  
性을 享有하기에 充足하다고 主張함에 이르고 있다. 즉 大韓民國은 國民의  
同意에 의하여 合法的으로 樹立되고 그 唯一合法이 國際的으로 承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統治로 눈부신 祖國近代化와 經濟開發·國家發展을 이

록하여 世界속의 韓國으로 國際社會에서의 地位를 크게 向上시킴으로써 그 正統性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最近에와서는 大韓民國의 正統性概念에 祖國의 近代化와 經濟開發·國家發展에의 寄與가 大韓民國側에 正統性을 賦與한다는 主張이 添加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韓國國民을 南北政權中 어느쪽이 더 잘 살게 하는가 하는 競争에서 大韓民國側이 이기고 있다는 現實이 大韓民國 統治權의 正當性을 增大시키고 있다는 主張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陣營對決을 止揚하여 世界強大國이 平和共存을 追求하게 된 國際環境속에서, 過去 30年間 對決속에 存在해온 韓半島 南北두개의 政權을 現實적으로 認定하게 되어 過去와 같은 正統性論爭이 意味를 減少하게 된 70年代에 와서는 大韓民國政府가 北韓에 比하여 越等하게 이룩한 祖國近代化의 成果에 依拠하여 正統性을 主張하는 것이 國內外的으로 보다큰 說得力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70年代 國際情勢 客觀條件의 變化에 適応하여 大韓民國政府가 宣布한 7.4 共同聲明과 6.28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는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을 主張하는 根拠를 從前과 다른 次元에서도 찾으려는 意圖가 間接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大韓民國은 統治結果로 政權의 正統性을 마지자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結局 이제 大韓民國의 正統性論議는 名分보다는 業績中心으로 過去보다는 現在와 未來指向의인 立場에서 그리고 政權의 正統性은 주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各政權이 競争적으로 만드려 나간다는 方向으로 發展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具體적으로 말해서 大韓民國政府는 現在 그 正統性主張에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더 強調하려고 試圖하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1) 大韓民國의 正統性主張의 目的은 어디까지나 祖國統一의 成就에 있으며 冷戰的 思考에서 繼續 北韓을 外面하기만 하는 것은 結果적으로 韓半島의 統一可能性을 減少시킨다. 따라서 現段階에서 大韓民國이 北韓과의 平和共存을 追求하는 것이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고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維持하는 보다 現實적인 길이다. (7.4 共同聲明)

(2) 國際的 現實로 보아서 祖國統一의 可能性은 共產大國인 蘇聯 및 中共과의 外交關係가 事實上 斷絶되고 있는 狀態에서는 不可能하므로 大韓民國의 正統性이 伸長될 수 있는 祖國統一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共產國家에게도 外交의 門



戶를 開放하는 것이 賢明하다. 다시말해서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主張은 大韓民國이 蘇聯·中共등과 外交關係를 가짐으로써 毀損되지 않고 오히려 그 正統性이 國際社會에서 一般性을 가지게 될수도 있다. (6.23宣言)

(3) 從前과 같은 理念에 立脚한 外交는 民族의 同一性和 正統性維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反對로 民族의 同一性을 破壞하고 있다. 따라서 民族의 同一性和 正統性을 지키기 위해서는 實用主義的 立場에서 脫理念的인 方向으로 外交를 하여야 한다.

(4) 國家繼承權이나 領土繼承權과 같이 過去之事에 基準하여 正統性을 찾기 보다는 南北政權이 各己 現在 및 未來에 이룩할 全民族을 위한 業績에서 正統性을 主張할 根拠를 찾는 것이 옳고 意味가 있다. 다시말해서 正統性的 基準點을 政權이 成立하던 過去에 두지 말고 統治結果를 나타내는 現在와 未來에 두자는 것이다.

(5) 正統性競爭에서 具體性없는 名分論을 떠나 祖國의 近代化나 發展에 寄與한 現實的結果를 正統性測度の 基準으로 삼는다.

